언론조정신청사례

언론조정신청사례

지면 관계상 신청사례 원문의 일부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와 관련, 면허조차 없는 신청인 업체가 구두 계약만으로 하청을 딴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미군기지 부지조성 '봐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9일자 7면)
내 용 : H사 "토사는 자재 아니다"

대기업이 평택에 미군기지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도급계약도 하지않은 특정업체에 토사 및 운반장비 구입 등의 권한을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방부와 H(주)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7년 9월 H(주)에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시 팽성읍 일대 공여지역내에 Lprecel.K 부지조성공사(76만㎡)를 290억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H(주)는 토사구입 및 선별, 운반 등 장비구입의 모든 권한을 평택소재 건설면허가 없는 J사에 도급계약도 없이 구두로 위임한 뒤 운반 등의 업체들이 토사 등을 납품하기 위해 H사를 문의하면 J사와 상의를 하도록 밀어주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서면계약서에 납품단가를 비롯한 수량, 기간, 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문에 영세 운반업체 등은 토사구입은 물론 토사 선별, 운반장비 구입 등의 모든 사항을 J업체에 상의한 뒤 H사에 토사를 납품하고 운반대금은 J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H(주)의 한 관계자는 "공사에 쓰여지는 토사가 부족한 실정이여서 각 개인과 토사협상을 하면 토사단가 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J업체에 토사구입과 운반 등을 100%로 위임하고 있다"며 "납품받는 토사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운반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군기지 부지조성 '봐주기' 논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2월 29일자 7면에 "미군기지 부지조성 '봐주기' 논란"이란 제목으로 'H(주)는 토사구입 및 선별, 운반 등 장비구입의 모든 권한을 평택소재 건설 면허가 없는 J사에 도급계약도 없이 구두로 위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토사 운반업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J사가 장비 구입을 한 바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규정위반 사항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면계약 또한 필요사항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

신청인 노조가 신임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지회장 황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가스공 사장 "노조가 사장 됐으니 선물 달라고 요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31일자 1면)
내 용 : (전략)

"지난 10월 초 임명장을 받고 분당 본사로 출근하려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나를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MB의 낙하산 하수인'이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했다. 결국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출근을 한 뒤 노조대표 3명과 어렵게 대화를 하게 됐다. 노조대표가 '자진 사퇴하라'고 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했더니 노조측은 '사장이 됐으면 선물을 달라. 관행 아니냐'고 하더라. 이면계약을 하면 사장 자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난 선물을 줄 게 없다. 원칙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니 '발전용 가스 도입 다변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선물을 달라'며 타협을 요구했지만 결국 뿌리쳤다는 얘기다.

주 사장은 "나중에는 노사 분규로 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스안전사고가 터지면 사장도 옷을 벗을 수 밖에 없다는 협박까지 들었다"고 소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가스공사 노조가 사장에게 "선물 달라" 요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12월 31일자 1면에 『가스공 사장 "노조가 사장 됐으니 선물 달라고 요구"』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이 낙하산 사장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면서 '선물을 달라'는 이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스공사 사장 일방의 얘기만을 인용한 잘못된 보도로 사실 확인결과, 노동조합에서 사장에게 '선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강수 사장 본인이 "신임사장이 회사에 무슨 선물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데 내가 바로 가스공사의 선물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파일이 면

담 자리 전체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일부일 뿐이고, 취재원인 가스공사 사장이 그런 발언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으므로 반론은 실어줄 수 있으나 정정은 불가능함. □

대학축구연맹 회장 선거장에서 대의원인 신청인들이 반대 측 원로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유감표명)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외 3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돈 선거'와 축구지도자협의회 해체』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3일자 A21면)
내 용 : (전략)

지도자협의회는 줄곧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보다는 발목 걸기식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11월 말부터 시작된 축구협회 산하 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곤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중략)

지난달 26일 대학축구연맹 회장 선거장에서 지도자협의회 쪽 인사인 이○○ 세종대 교수를 지지하는 일부 대학 감독이 보여 준 행동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현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보다는 트집 잡기로 일관했고 원로들이 "그만하라"고 말하자 "저 ×× 끌어내"라는 몰상식한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8년 12월 13일자 스포츠 카페의 '돈 선거'와 축구지도자협의회 해체의 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3일자 스포츠면에 "[스포츠 카페]돈선거와 축구지도자협의회 해체"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대학축구연맹 회장선거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기사가 작성되어 정정합니다.

- 이○○ 교수를 지지하는 대의원측이 "저 XX끌어내"라는 욕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구계 원로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보도되었고,

- 당시 총회에 참석하여 문제제기를 했던 대의원들이 돈선거와 관련있는 지도자 협의회처럼 보여졌으나, 문제제기를 했던 대의원들은 지도자협의회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13일자 A21면 「'돈 선거'와 축구지도자협의회 해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는 한국 축구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취지의 보도였으나, 일부 대학감독들이 몰상식한 언사를 마치 원로들에게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신청인들은 이건 합의서를 신청인들의 소속 대학 인사위원회 자료로만 활용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받았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국 현 (국회의원)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3席 당수, 1審 유죄' 문국현 씨가 교섭단체 대표라니』 제하의 사설 (2008년 12월 24일자 31면)

내 용 : 내년 1월부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국회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를 맡게 된다. 두 당은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해마다 번갈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자유선진당이 대표를 맡았다. 18석을 가진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창조한국당 3석을 끌어들이면서 그런 합의를 한 것이다. (중략)

더구나 문 대표는 4월 총선 때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국회를 방패막이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9차례나 불응하며 노골적으로 법치를 우롱했다. 어느 모로 보나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를 맡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24일자 31면에 "3석 당수, 1심 유죄 문국현 씨가 교섭단체 대표라니"라는 제목으로 문국현 대표가 공천헌금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는 사설 특성 상 함축적 용어를 쓴 것이고 판결문의 취지를 왜곡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론보도도 불가능하다. □

갯벌 매립에 쓰이는 순환골재 때문에 철새들이 집단 폐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폐혈증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유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화호 시멘트 침출수 오염』 제하의 보도 (2008년 12월 15일 21:00)

내 용 : 요즘 매립하거나 복토하는 공사장에 가

면 폐 콘크리트를 잘게 부순 순환골재가 흔히 대량으로 쓰입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환골재가 환경에 골병을 들게 한다고 합니다. 박○○ 기자가 시화호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잇따라 흙을 쏟아붓고 포크레인이 갯벌을 메우는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멀티 테크노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매립에 쓰이는 골재는 폐 콘크리트를 잘게 부순 것입니다.

▷김기완/안산시 의원 : "시멘트 섞은.. 시멘트 냄새가 상당히 강하다."

곳곳에서 희뿌연 시멘트 침출수가 새어 나와 철새들의 낙원으로 변한 시화호로 흐르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생존력이 강한 미꾸라지를 넣어봤습니다. 온 몸을 비틀더니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바닷 고기인 숭어도 하얀 배를 드러내며 숨지고 우럭과 망둥어는 껍질이 녹아내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오리도 풀었습니다. 부리를 연신 물에 담그며 비정상적인 날개짓을 합니다. 눈 주변에는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30분만에 비틀거리더니 모두 2-3일안에 죽었습니다. 이유는 시멘트 독성 때문입니다. 침출수의 PH 산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무려 11.9 , 양잿물같이 강한 부식성을 갖는 강알칼리 독성물질로 변한 것입니다.

▷최○○ 목사/숲생태지도자협회 : "시멘트 자체가 PH 12가 넘는데 순환골재의 시멘트성분이 물을 강알칼리로 바꾼 것입니다."

한달전 주변에선 철새 천여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죽은 오리의 배는 부식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시 PH 산도 검사 결과도 강알칼리였습니다. 침출수에 손을 넣었습니다. 따갑거나 아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시멘트 화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시화호 시멘트 침출수 오염'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15일자 9시 뉴스데스크 '현장출동'에서 "시화호 시멘트 침출수 오염"이라는 제목으로 순환골재는 시멘트와 똑같고, 물과 만나면 독으로 변한다며, 한 달 전 시화호 철새 천여마리의 폐사원인을 독으로 변한 순환골재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시화호 철새 천여마리의 폐사의 원인은 국립과학검역원 등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폐혈증'이 원인이라고 공식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과학적 검증 없이 철새의 집단 폐사 원인을 순환골재로 지목하여 보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전국 400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순환골재의 경제성, 환경성 등 전반적인 활용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후속보도를 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 프로그램에 보도하되, 통상적인 보도형식으로 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주대학이 교육센터 공사 입찰과 관련,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으나 관련법 위반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제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제주대학교 (총장 고 ○ ○)
2.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이사 고 ○ ○)
피신청인 : 제주타임스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주타임스 : 『제주대 수십억 공사 수의계약 의혹』 제하의 사설 (2009년 1월 6일자 11면)
내 용 : 제주대학의 공사입찰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추정가격 92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중략)

교수회가 제기한 의혹들 중에는 "특정업체로부터 발전기금명목으로 7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와 수십억 공사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사전거래 특혜의혹 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약 7억 5천만 원이 더 발생한 것은 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발전기금 납입대가로 특정 금융기관에 향후 20년간 제주대학교 금고 관리권을 부여 했다는 의혹, 발전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27억 원을 기성회가 매년 원리금 3억 원씩 10년간 상환하여 기성회 회계에 엄청난 자금압박을 초래하고 향후 기성회비 인상 요인을 유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대학측의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주대 수십억 공사 수의계약 의혹" (본지 2009년 1월 6일자 11면 사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9년 1월 6일자 11면 '사설'을 통해 "수십억 공사 수의계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대학교측이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검은 커넥션의 뒷거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에 제주대학교의 금고관리권을 부여하는 과정이나 발전기금재단이 위 교육센터 건립기금의 조달을 위해 차입한 27억 원을 기성회가 1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도 악취 풍기는 검은 돈의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재단 및 그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위 교육센터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검은 커넥션의 뒷거래도 없었고, 특정 금융기관에 금고관리권의 부여 및 기성회비로 발전기금을 보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악취 풍기는 검은 돈의 뒷거래를 의심할 만한 의혹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지가 사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작성한 위 사설로 인하여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학교 및 재단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제주대 수십 억 공사 수의계약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9년 1월 6일자 11면「수십 억 공사 수의계약 의혹」제하의 사설에서 제주대학이 교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뒷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제주대 발전기금이 교육센터 공사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검은 커넥션의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

합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제주타임스〉 2009년 1월 19일자 사설란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주타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타임스 : 『"제주대 수십 억 공사 수의계약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9일자 1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의 예산과 인사를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공영방송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나라당 (대표 박 희 태)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송법, 재벌에 소유 허용』 제하의 보도 (2008년 12월 19일 21:00)
내 용 : 이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재벌방송과 유력 신문사 방송의 출연이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본사 잔치에 나와서 싸늘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 기자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재벌기업과 대형 신문사들의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각각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현 상황에선 지분을 살 수 있는 지상파는 MBC, KBS, SBS 가운데 민영방송인 SBS 한 곳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MBC나 KBS2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오늘 MBC 행사에 참석해, 사실상 공영과 민영 사이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후략)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송법 개정, 일방 처리 안된다』 제하의 보도 (2008년 12월 22일 21:00)
내 용 : 이어서 MBC 논평입니다. 오늘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황○○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황○○ 논설위원 : 지금 우리 국회는 대화나 논리가 없고 수적 우위나 완력만 내세우는 우둔한 중우정치만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은 FTA 국회비준 상정을 강행한 데 이어서 집시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도 일방 처리할 태세여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입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심산이어서 여러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어서 어느 특정 정파만의 생각대로 방송의 틀이 바뀌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언론은 다양성이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의 요체인 MBC 위상과 관련해서 MBC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략)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9 방송계, 격랑

몰아치나』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1일 21:00)
내　　용 :여당의 언론법 밀어붙이기는 이제 서막에 해당할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언론법 처리 한 뒤 공영방송을 강력하게 통제할 법을 준비해 뒀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나라당 공영방송법안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저희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1일 「2009 방송계, 격랑 몰아치나」 제목 하에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의 예산과 인사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공영방송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공영방송법안은 현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단계에 있어 내용상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방송광고공사의 폐지 문제, 민영 미디어랩 도입 등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안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저희 뉴스데스크는 지난 12월 19일과 22일, 1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MBC와 KBS2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은 MBC나 KBS2의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여수시가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은 증액시키면서 교육예산은 인근 시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여수시 (시장 오 현 섭)
피신청인 : 동부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부매일 : 『정신없는 여수시, 교육예산은 뒷전 행사비와 해외여행비만 잔뜩 인상』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9일자 1면)
내　　용 : ・2009년 서울대 수시합격자
・목포 19명, 순천이 12명, 광양 7명일 때 여수는 겨우 3명
・시민들 "행사비 줄여서 자녀교육에 투자하자"
목포시는 2007년부터 '목포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5년 동안 10개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233억 원씩, 1,164억 원의 사업비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목포시의 한 해 예산은 5천 300억 원으로 여수시 예산 8,000여억 원 보다 2,700억여 원이나 적은 도시다.

그런데 여수시가 8천억 원의 예산중에 50여억 원을 교육예산으로 사용할 때, 여수시보다 2,700억 원이나 예산이 적은 도시에서 교육예산만으로 한해 평균 233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집은 가난해도 먹을 것 아껴가며 자식들 교육에 투자하는 집안과 자식들 교육보다는 우선 당장 먹고 즐기는데 쓰는 집안을 보는것 같다는 시민들이 많다.

가난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매진하는 집과 잔치판에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집안의 미래가 같을 수는 없다.

그 사례들을 들어보자. 여수시가 2009년에 교육에 쓰겠다고 한 예산은 60여억 원이다. 이에 비해 여수시가 내년에 민간행사 보조비로 잔치판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82억 원이다.

또 각종 잔치판 행사실비 보상금만 15억 4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전년에 비해 34억 원이나 증가한 40억 원에 이른다.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여행 보낸다고 13억 2천만 원이나 사용하겠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2월 19일자 1면에 "목포시 2007년부터 목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5년동안 10개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233억 원씩 1,164억 원의 사업비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목포시의 한해 예산은 5,300억 원으로 여수시 예산 8,000억 원 보다 2,700억 원이나 적은 도시인데 교육 예산은 목포시 233억 원, 여수시는 50억 원을 교육예산으로 사용할 때"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목포시의 '09년 교육예산은 10,797백만 원이었으며 여수시의 '09년 교육예산은 50억 원이 아닌 11,367백만 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19일자 1면 "정신없는 여수시, 교육예산은 뒷전" 제하의 기사에서 한해 예산이 5,300억 원인 목포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33억 원씩 1,164억 원의 사업비를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반면 8,000억 예산의 여수시는 한해 50여억 원만을 교육예산에 배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여수시의 '08년 교육관련 예산은 111억 원이었고, '09년 교육관련 예산은 113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2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부매일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009 서울대 수시 합격자…)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부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사업을 위한 발전시설이 주변경관을 해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여수시 (시장 오 현 섭)
피신청인 : 동부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부매일 : 『400억 원의 야간경관 사업』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9일자 1면)

내 용 : 여수시가 총 사업비 400억 원이 들어가는 야간경관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우리 도시를 국제적인 야간경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를 시설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리고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야간조명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무릎 쓰고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마땅히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명품의 야간조명시설을 해야 함도 당연하다.

400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무늬만 현상공모지 이미 공사업체는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에서 낙

찰된 (주)나이토피아측의 구역별 공사계획 조감도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중략)

자본금이 3,190억 원에 아시아 최대의 조명 디자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대문조명, 동작대교조명, 서울역사조명, 상암동 월드컵구장조명, 경복궁 홍례문 조명 등 국가적 조명을 설치했던 업체들은 탈락하고, 부채 포함해서 자본금이 겨우 6억 2천만 원인 업체가 탁월한 계획서도 없이 경쟁입찰에서 선정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고집스럽게 강행하는 여수시의 의도와 석연치 않은 업체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400억 원의 야간경관 사업, "방귀냄새는 나는데 누가 뀐지는 모른다」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9일자 1면에 「400억 원의 야간경관 사업, "방귀냄새는 나는데 누가 뀐지는 모른다. 시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강행하는 이유. 시작단계에서 업자선정에 이르기까지 아리송하기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번 1차사업에 대한 입찰이 조달청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어 낙찰자가 정해졌으며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타시군에 이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조명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풍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성공사례가 있었으며, 해외에서는 해상풍력발전 등 풍력발전시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에 반영된 풍력·태양광 시설은 대형발전시설이 아닌 조명 전원용 소형시설물이었으며, 전체 사업비 중 경관조명등의 구입비에 비해 전체 인건비와 풍력·태양광 조명의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찰된 업체는 입찰제도에 의거 법적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탁월한 기술제안과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낙찰되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주간경관과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야간경관 조명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친환경 세계박람회」로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시범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해당기사는 평가기사이므로 신청인의 정정 및 반론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여수시가 야간경관사업의 사업자로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를 내정해두고 형식적인 현상공모를 실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여수시 (시장 오 현 섭)
피신청인 : 여수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여수신문 : 『여수 경관조명 입찰 잡음…탈락업체 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3면)
내 용 : 최근 실시된 여수시 경관조명 제작·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탈락업체가 '입찰이 불공정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는 오동도 주변, 원도심, 소호동 일대 3곳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6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낸 후, 4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지난 21일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입찰이 끝난 후 탈락한 A사가 "낙찰된 B사는 이 공사를 설계한 업체로, 설계업체가 공모에 참가한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입찰공고가 났을때 조명업계에서는 '무늬만 현상공모 형식을 취했고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업체는 감사청구서에서 "2~3억짜리 공사에도 보통 14개 정도가 입찰에 참여하는데 예정금액이 87억 원에 달하는 큰 공사였음에도 불과 7개 업체만 참가한 것은 이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67억 원을 써낸 업체가 탈락되고, 78억 원을 써낸 B사가 낙찰된 것은 B사가 금액을 높게 써도 낙찰될 자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냐"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67억 탈락, 78억 낙찰' 여수 경관조명 입찰 잡음」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4일자 3면에 '67억 탈락, 78억 낙찰' … 여수 경관조명 입찰잡음(탈락업체 "설계업체가 공사까지 낙찰 … 짜고친 고스톱", 여수시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 진행 … 의혹은 감사에서 밝힐 것")이라는 제목하에 탈락한 A사의 주장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제 낙찰가는 69억 4천 5백만 원인데 탈락한 A사의 말만 듣고 낙찰가가 78억 원이라고 보도하는 등 A사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여수시
시장 오 현 섭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여수신문
대표이사 황 상 석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여수신문 3면(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탈락업체 "설계업체가 공사까지"…)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별지〉 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4일자 3면 "여수 경관조명 입찰 잡음…탈락업체 감사청구" 제하의 기사에서 여수시가 실시한 야간경관조명 제작·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67억 원을 써낸 업체는 탈락하고, 78억 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돼 잡음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제 낙찰가는 78억 원이 아닌 69억 4천 5백만 원 이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장이 신청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사건(2008서울조정367)에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수용했다고 보도했으나 '반론보도'에 합의했을 뿐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건설기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건설기계신문 : (1)『7기종연합 '수급조절' 등 현안 협의』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2면)

내 용 : 이날 기종연합 회의에서는 이달숙 타워크레인조합 이사장이 가장 먼저 현안보고를 시작했다. 조종사의 산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노동장관을 면담했으며 노동부 쪽이 건설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놓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와 대립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중략)

최석근 콘크리트펌프카협회장은 기종연합을 대표해 한국건설기계신문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건설기계업계를 분열시키는 보도에 엄중 항의한 이야기를 전했다. 또 건설기계협회를 잘 활용해 기종별로 표준샘플 원가표 등을 받아 업계에서 사용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후략)

(2)『한국건설기계신문 불공정보도시비 휘말려』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5일자 15면)

내 용 : 콘크리트펌프카협 고소장, 서굴연 정정보도 요청키로

'한국건설기계신문'이 건설기계 관련단체들을 폄훼한 의혹을 사며 불공정보도시비에 휘말렸다. 해당 단체들은 정정보도, 불매운동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콘크리트펌프카사업자협회(이하 펌프카협)는 26일 최석근 회장 명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 2항)죄로 '한국건설기계신문'(이하 신문)의 발행인 김용복씨를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 단체는 또 신문 불매운동(서명)도 벌이고 있다. (후략)

(3)『한국건설기계신문정정보도 조정합의』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일자 15면)

내 용 : 콘크리트펌프카협·서굴연 반론보도 신기로언론중재부 조정 수용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최석근 회장과 서울굴삭기연합회 김태영 회장이 한국건설기계신문 김○○ 발행인을 상대로 신청한 정정(손배)보도 청구가 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졌다.

언론중재위 서울제1중재부(부장 여상원)는 최 회장이 신청한 정정보도를 수용해 요청한 제목과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주문대로 보도하라고 조정했고, 결국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키로 해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1월 2일자 15면 한국건설기계신문 정정보도 조정합의기사 중에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 최석근 회장이 한국건설기계신문 김○○ 발행인을 상대로 신청한 정정(손배)보도 청구가 언론중재위원에서 받아 들여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반론문을 게재키로 했을 뿐 정정보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또 언론중재위 서울 제1중재부(부장 여상원)는 최 회장이 신청한 정정보도를 수용해 요청한 제목과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주문대로 보도하고 조정했고, 결국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회장이 정정보도를 수용해 요청한 제목과 내용을 피 신청인에게 주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최 회장에 대해서 반론을 게재키로 조정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건설기계신문 2008년 10월 15일자 2면 7기종연합 '수급조절' 등 현안합의 기사중에 최석근 콘크리트펌프카 회장은 기종연합을 대표해 한국건설기계신문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건설기계업계를 분열 시키는 보도에 엄중 항의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건설기계신문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제보바란다를 빼줄 것을 부탁 및 당부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협박했다고 바로잡습니다.

또 한국건설기계신문은 건설기계업계를 분열시키는 보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업계를

분열시키는 보도에 엄중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기계신문 2008년 12월 15일자 15면 내용 한국건설기계신문 불공정보도 시비 휘말려 기사 중에 한국건설기계신문의 어떠한 기사와 11월 15일 사설에는 전국굴삭기연합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전혀 언급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굴연의 한 임원은 "서울과 경기지역 연합회를 폄훼한 보도로, 이 신문이 잘된다고 추켜세운 지역 연합회와 이간질시켜 '전국굴삭기연합'(전국 굴삭기사업자 단결)활동에 타격을 주고있다"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정보도 내용은 한국건설기계신문의 11월 15일자 사설내용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폄훼한 보도로, 이 신문이 잘된다고 추켜세운 지역 연합회와 이간질시켜 '전국굴삭기연합'(전국 굴삭기사업자 단결)활동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기사는 사설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서울굴삭기연합회가 주장한 서울굴삭기연합회에 폄훼한 보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나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9년 1월 2일자 15면 "한국건설기계신문 정정보도 조정합의"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 최석근 회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 및 손배청구에 대해 한국건설기계신문 김○○ 발행인이 정정보도를 수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건설기계신문 김○○ 발행인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25일자 2면 "7기종연합 '수급조절' 등 현안협의"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한국건설기계신문 김○○ 대표는 최석근 콘크리트펌프카협회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건설기계업계를 분열시키는 보도에 대해 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5일자 15면 "한국건설기계신문 불공정보도시비 휘말려"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김○○ 대표는 건설기계업계를 분열시킬 목적의 보도를 게재하거나 전국굴삭기연합 활동에 타격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2월 6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건설기계신문 15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2009년 1월 2일자 조정대상 기사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2009년 1월 2일자 조정대상 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양 당사자는 향후 건설업계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기사를 작성하기로 약속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건설기계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중국에서 '한국상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면서 참가업체의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충청매일 : (1)『中서「한국상품전」사기극』 제하의 기사 (1996년 7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해까지 충북부여상사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조○○ (주)○○관광(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회장이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서 열고 있는 「한국상품 특별판매전」 과정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참가업체 및 중국인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를 비롯한 무역관련 기관들도 이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 및 써니·○○전자 ○○컴퓨터 등 국내 12개 업체들에 따르면 (주)○○관광은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서 한국상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면서 "참가업체들에게 판매대금(피해추정액 8억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는 것"

○○관광은 또 중국 소비자들을 끌기 위해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을 약속하고도 경품을 제공하지 않아 입장권을 구입한 중국인들이 한때 판매장을 찾아와 격렬히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최측인 ○○관광이 들여온 화장품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인민 공안당국이 조○○ ○○관광 회장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관광은 한국상품 특별판매전을 기획하면서 국내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뒤 광고비조차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후략)

(2) 『「국제무역사기극」 파문』 제하의 기사 (1996년 7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이달말까지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상품 특별판매전」이 조○○ ○○관광 회장의 국제사기극(본보 17일字 19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무역협회 충북지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조회장은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일간지에 참가업체 모집광고를 내고 무역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수차례의 「중국진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적(?)으로 「한국상품 특별판매전」을 준비해왔고 또 무역관련 기관들도 이 행사가 중국시장 개척 및 북한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정도 및 단동시 시장규모와는 달리 행사장은 단동시에서 택시를 타야만 왕래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현지고용인들도 한국말을 전혀 몰라 참가업체들이 중국인들에게 제품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지 상황이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기극」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후략)

(3) 『조○○ 그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1996년 7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서 한국상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면서 참여업체들에게 판매대금 8억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국제적인 사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 씨(46)는 누구인가.

(주)○○관광이라는 유령업체와 함께 션사인 관광(단양읍 ○○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는 단양군 적성면 ○○리 태생.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단양 조○○ 회장 누명 벗었다!

• 내 용 : 충청매일 1996년 7월 17일자 〈한국 상품권 사기극〉, 익일인 18일자 〈국제 무역 사기극〉, 〈조○○ 그는 누구인가〉 및 19일자 〈曺씨 고소 움직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확실한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듯 조○○ 회장을 8억 원 사기와 횡령한 범법자로 몰아 연일 수차례 시리즈 속보로 보도되었던 것은 100% 잘못된 보도였음이, 인천지방검찰청 조사결과 2008년 12월 4일자로 무혐의 결정 통지됨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조○○ 회장의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수차례의 계속된 보도, 초상권, 성명권 침해 및 정신적 충격 피해를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추후

로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 회장의 가족 친지와 (주)○○관광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사죄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200,000,000원 □

경찰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이 아니며, 야간집회 금지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국일보 :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2일자 6면)
내 용 : 경찰 상층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촛불시위, 집시법 등과 관련, 수뇌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임○○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과 권○○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5일 발간된 〈경찰학연구〉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불순세력의 폭동이 아닌 소수자들의 저항운동이었고, 야간집회 금지는 경찰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권 교수는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3·1만세운동, 4·19혁명 등과 같이 전 국민이 스스로 주체화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촛불시위는 특정 불온세력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경찰 수뇌부의 '촛불 배후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22일자 6면에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 아니다":경찰 내달 인사 앞두고 "야간집회 금지는 잘못" 내부 기고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권○○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경사)가 「경찰학 연구」에 게재한 논문("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에서 "촛불시위는 불순세력의 폭동이 아닌 소수자들의 저항운동이라며 경찰 수뇌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을 제기하여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권○○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이번 촛불시위는 10대들의 전면적 등장 등 참여자의 성격이 다양하고 지난 2002년, 2004년 촛불시위와 달리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된 점이 있어 특히, 촛불시위의 주도세력인 진보진영이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12월 22일 보도하였던 내용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2008년 12월 22일자 6면 '촛불시위는 불순세력 폭동 아니다' 기사의 당사자인 권○○ 중앙경찰학교 교수는 "논문은 일반국민이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을 지적하였고, 소수자의 참여라는 점에서는 3.1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가치가 동등하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또한 "경찰 수뇌부 입장에 반대하는 취

지는 아니며 경찰인사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월 21일까지 한국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부제목(경찰, 내달 인사 앞두고…)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피신청인 및 소속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불법음원을 사용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지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7 참조)

보도내용

시사저널 : 『"올챙이들이 모여 뻔뻔한 음저협 횡포 널리 알리겠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0일자 98~99면)

내 용 : "음악 저작권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뭉쳤다."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이하 올챙이) 이○○ 대표(31)는 음악 저작권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한다. 올챙이가 활동을 개시한 것은 지난 7월 중순이다. 가수 서태지 씨가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탈퇴하고, 저작권료 소송을 겪으면서 음악 저작권 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태지 씨 팬들을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 자정운동이 퍼져나갔고, 70여 명의 올챙이가 모여들었다. (중략)

이 대표는 대중을 배려하지 않는 음저협에 분노했다. 최근 블로그나 카페 등에 불법 음원을 사용했다며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그는 "최근 경향을 보면 청소년을 무슨 '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무조건 고소해서 범법자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런데도 고소부터 하고 있다"라며 목청을 높였다. 올챙이는 향후 가수들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음저협의 문제를 알리고 연대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소남발 행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시사주간지가 지난 제999호 발행분 '사람과 사람' 면에 '올챙이들이 모여 뻔뻔한 음저협 횡포 널리 알리겠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 (이라 올챙이) 이○○ 대표(31)의 인터뷰 내용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고소남발 부분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음저협의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였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음저협은 직접 혹은 법무법인을 통해 카페, 블로그에 불법음원을 올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고소 남발 사건은 일부 법무법인이 제기하고 있

는 것으로 음저협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음저협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소년원에 수감중인 한 소녀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그 가족인 신청인들의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서 ○ ○
2. 장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미안해 엄마, 여자 소년원의 희망고백』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7일 23:05)
내 용 : 〈보도내용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1. 서○○, 신청인 2. 장○○에게 2009년 2월 20일까지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들에게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본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신청인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항소를 하여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문 국 현 (국회의원)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문화일보 : 『'오후여담' [문국현]』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7일자 38면)
내 용 : (전략) 정치권으로 들어오기 전, 문 대표가 소위 잘나가는 기업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 경영인으로 투명·윤리 경영을 한 공로로 2003년 청렴·봉사의 상징인 '일가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미스터 클린'의 대명사처럼 불리기 시작했다. 그 이전 일가상의 수상자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고(故) 문창모 박사나 태국의 청백리 잠롱전 방콕시장 등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그 역시 청렴의 한자락쯤 잡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중략)

결국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나 번갈아 맡는 공동 교섭단체 대표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역시 클린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합의하에 이뤄졌다해도 대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고사해야 할 직책을 덥석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든 의원 자리만은 지키려는 '더티 본색(本色)'이 아닐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였던 큰 재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술수만 남은 격이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문국현 '공천장사' 기술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7일자 38면에 "문국현"이라는 제목으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공천장사'를 한 탐욕스런 정치인으로 기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검찰의 기소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으며,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천헌금등의 모든 기소내용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1심 재판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했음"을 밝혀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문 국 현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번지
대표이사 이 병 규
조정대리인 최 ○
주 문 : 1. 신청인의 반론청구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1월 3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문화일보의 통상적인 '알림'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아 래 -

• 제 목 : 알림
• 내 용 : 본지 1월 7일자 38면 '오후여담'과 관련, 문국현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6. □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네덜란드 연구기관이 작성한 경인운하 보고서에 '운하 이용 선호도 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허위기재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2004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9일자 1면)

내　용 :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의 경제성(B/C,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네덜란드 연구기관에 의뢰한 경인운하 보고서가 부실·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하 자문사인 네덜란드의 DHV는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DHV 보고서 내용을 경인운하 사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9~12월 이 보고서를 기초로 경인운하 재검증을 진행, 사업 타당성 의견을 최종 제시했다.

• DHV "시간 부족 SP조사 못해"

서울신문이 8일 입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작성한 'DHV사와의 질의 및 응답내용' 영문 녹취록을 보면 DHV의 경인운하 연구가 물동량 등 경제성 분석의 주요 조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수행한 것처럼 조작되는 등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 목적, 자료조사 내용, 북해운하 견학 등 3개 항목에 총 15장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20일 암스테르담의 DHV 본사를 방문한 국내 국책기관 전문가들과 DHV 경인운하 보고서 원저자들인 윔 클롬프 박사와 짐므 박사와의 영문 면담 내용이 기록돼 있다. 면담에는 경인운하 재검증 작업을 총괄한 KDI P센터장과 K연구원, KMI 해양물류연구부의 J박사, DHV의 공동 컨소시엄 파트너인 ㈜삼안 측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경인운하 관련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DHV는 경인운하의 수도권 물동량 분석의 핵심 조사인 국내 수출입 화주들에 대한 운하 이용 선호도 조사(SP·Stated Preference Survey)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영문 보고서의 부록(Appendix)에는 SP 설문조사를 이행한 것처럼 기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4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9일자 1면에 "2004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라는 제목으로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가 작성한 DHV사와의 질의 및 응답내용 영문녹취록이 있으며, DHV 보고서에는 경인운하 물동량 산정을 위한 SP 서베이(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사실 확인 결과, KMI에서 작성한 영문녹취록은 없으며 KMI가 질의응답내용(출장복명서)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은 있으며, DHV사는 보고서에 SP 서베이(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기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1월 9일자 1면 「2004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투성이」, 3면 「KDI·DHV 보고서 물동량 등 예측 수치 거의 같아」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해당 영문보고서 부록에 DHV사가 SP 서베이를 한 것처럼 기록한 사실이 없고, KDI의 물동량 예측수치가 DHV보고서의 것보다 약 24% 적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A2면에 2009년 1월 2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이 통상적으로 싣는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가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사비를 일부 제외하여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기고문 게재)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경인운하 경제성 부풀렸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9일자 1면)

내 용 : 굴포천 방수로 확장 공사비 빼 비용 줄여 "물동량 키우려 비현실적 가상선박 만들어"

정부가 최근 경인운하 공사를 오는 3월부터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과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인운하(18㎞)의 핵심구간인 굴포천 방수로 구간(14.2㎞)의 일부 공사비를 제외하는 등 비용은 줄이고, 운하에 투입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을 내세워 편익은 부풀렸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와 관련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용역 의뢰로 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경인운하의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7로 나와 경제성이 있다며 경인운하 공사 재개를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굴포천 방수로 구간은 경인운하와 무관하게 홍수 방지 등 치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 항목에 넣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으로 굴포천 방수로와 한강을 연결하는 3.8㎞ 미굴착 구간, 그리고 기존 굴포천 방수로 구간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천 바닥을 1.6m 더 깊이 파는 공사비는 경인운하 사업비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1995년 정부가 경인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 사업에 포함시켰다"며 "정부가 애초 굴포천 방수로 너비를 40m로 계획했다가 향후 경인운하의 수로를 염두에 두면서 80m로 늘린 만큼, 다른 건 몰라도 추가로 늘어난 너비 확장 비용은 사업비에 넣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3년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굴포천 방수로 너비를 80m로 확장함에 따라 공사비가 34% 더 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략)

편익도 장밋빛으로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애초 경인운하 계획 때는 화물 2,500 톤을 실을 수 있는 피더선(소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설계했으나 이번에는 선적용량을 4천톤으로 올리면서 바다와 강을 함께 다닐 '하해겸용선'(RS)으로 배종류를 바꿨다. 이를 통해 예상 물동량을 1.6배가량 늘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운하 경제성 부풀렸다"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9일자 종합1면에 "경인운하 경제성 부풀렸다"라는 제목으로 "굴포천 방수로 구간의 일부 공사비를 제외하는 등 비용은 줄이고 운하에 투입할 비현실적인 가상선박으로 선적용량을 올려(2,500톤→4,000톤)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RS선박은 유럽 등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20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 입장을 기고문으로 받아 게재하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10매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9일자 22면)

내 용 :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6월부터 직접 시행하여 2011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인운하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되었던 사업이며, 현재 공사 중인 굴포천 방수로의 홍수 처리 기능과 함께 경인지역 물류 운송체계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그간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객관적인 검증이 시행되어 왔으며,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네덜란드 데하베(DHV)사의 경제성 분석 용역이 수행된 바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1.07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본격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중 현재 시공 중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용의 누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사업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비용을 투입하여 편익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때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는 현재의 공정률에 관계없이 향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매몰 비용으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경인운하 사업 비용에 포함시킨다면, 방수로 홍수처리로 인한 편익도 경인운하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경인운하 사업의 편익 중에서 환경오염 저감 편익이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 누락만 부각할 게 아니라 편익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굴포천 방수로의 연간 치수 편익 및 환경오염 저감 편익도 고려하게 되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더 커질 것이다. 더 나아가 경인운하를 통해 한강과 서해가 만남으로써 창출되는 수변의 각종 문화·관광·레저 휴식공간은 도시민들에게 휴양의 혜택을 줄 것이므로 이것 또한 편익에 더해질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 때 2500톤급 선박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경인운하 사업 대상을 4000톤급 '강-바다 겸용'(RS) 선박으로 바꿈에 따라 물동량을 1.6배로 늘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은 단지 대상 물동량을 계획된 경인운하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물동량 자체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선박 규모로 인해 물동량이 변동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경인운하 대상 선박은 국내 최초의 운하에 사용될 선박이므로 당연히 국내에 존재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운하 선진지역인 유럽에서 활용되는 선박을 모델로 하여 데하베사에서는 4000 톤급 강-바다 겸용 선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선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합한 선박 건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인운하 사업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 중 하나이므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찬반 양쪽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로 앞으로 남은 세월을 허비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경인운하는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 및 각광받는 상징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

신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학동 서당에서 기숙 여학생들이 훈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2.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청학동 스캔들』 제하의 보도 (2008년 11월 15일 23:15)

내 용 : ▷사회자 : 경상남도에 한 지방일간지 사회면에는 믿기 어려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절교육으로 유명한 청학동에 한 서당 훈장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 저희들이 안 것은 사건이 있은 지 한 두 달 만에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하동교육청에도, 경찰서에도, 군청에도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자가 제일 늦게 알았죠

▷사회자 :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9월 서당에서 생활하는 장기교육생들이 모두 단잠에 빠진 새벽이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항상 저녁때 되면 10시 11시 되면 순회점검을 한답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순회점검하는 애가 휴가를 갔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담당을 마침 이 서당 훈장이 하게 된 거예요.

▷사회자 : 저녁 무렵부터 외출을 했던 훈장이 서당에 돌아온 것은 새벽 2시경

▷교육청 관계자 : 밤 2시쯤에 술 먹고 와서 창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들어갔답니다.

▷사건 취재기자 : 방문을 연 게 아니구요?

▷교육청 관계자 : 예, 방문을 연 게 아니고 다리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불을 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가 그 옆에 주변에 목욕탕인가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짝 그 옆으로 도망을 간거죠 그러고나서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고 조용하니까 다시 옆에 또 학생이 있었잖아요.

▷사회자 :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한 뒤에도 훈장은 다른 아이에게 몹쓸짓을 계속 했습니다.

▷훈장 ○○○ : 속으로 손을 넣고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자다가 애들끼리 서로 장난 치는건줄 알았다. 그런데 깨보니까 훈장이었다.

▷사회자 : 잠에서 깬 여학생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서당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피해학생 친구 : 그 서당 남학생 한명이 걔를 밥 먹여주는 아주머니 방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부터 그 뒤로 며칠 학교에 안 나오고, 나왔던 날도, 걔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요 얼굴 창백해져가지고

▷사회자 :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훈장은 매스컴에도 자주 소개됐던 인물입니다.

▷훈장 : 적어도 우리 아이가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나쁜 짓 안 하도록만 키워놓으면 그거는 성공한 아들이고 성공한 부모예요 그게

▷사회자 : 기업체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활발한 초청강연도 해왔다는 그의 강의 주제는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인성교육

▷훈장 : 사람이 가장 중요한게 인성입니다. 인간이 인성을 잃어버리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동물이 될 수 있는게 인간입니다. 인성을 바르게 깨우쳐서, 깨우쳐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 학당이 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사회자 : 낮에는 인성과 예절을 가르치던 훈장이 밤에는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 청학동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청학동 스캔들'이란 제목으로 2008년 11월 15일 밤 11시에 방영된 내용은 청학동 서당 훈장이 장기교육생 2명을 성추행하고 학당에서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 집단 수용소를 방불하게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방영된 서당이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방영된 서당은 청소년기본법 제 26조 4항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로 정식 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합법적인 서당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체벌도 과장 확대 되었고, 문제된 성추행 사건도 실체적 진실이 외면되고 왜곡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김 ○ ○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하 금 열
조정대리인 민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보도문을 2009년 2월 14일까지 SBS-TV「그것이 알고 싶다」프로그램 말미(클로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이 나오도록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제 목 : 청학동 스캔들 관련 반론

• 내 용 : 작년 11월 15일「청학동 스캔들」제하의 보도에서 청학동 서당 훈장이 장기교육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훈장은, 피해 여학생들의 방이 훈장이 묶는 내실과 1~2m정도의 거리에 있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잠을 잤을 뿐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에 대한 회초리 체벌은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9.

조정결정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2009년 2월 7일 23:15)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수요예측조사를 RS선이 아닌 일반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실시했다고 보도했으나, RS선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경인운하, KDI조사에 근본적 하차』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2면)

내 용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 과정에서 실시한 운하선호도조사가 경인운하에 투입될 선박이 아닌 일반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기초조사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KDI는 재검토 과정에서 기존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비용편익비율(B/C) 계산 때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정부는 2005년 경인운하 경제성 검토를 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시민단체와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정부는 2005년 경인운하 경제성을 분석하게 될 경우 폭 40m까지의 사업비는 비용에서 제외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공사비를 포함시키기로 시민단체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운하 사업성 재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 관련 합의 내용' 문건에는 당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대표가 공사비와 관련해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이미 끝마친 사업인 굴포천 방수로 투자비를 모두 B/C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운하, KDI조사에 근본적 하자"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0일자 종합2면에 "경인운하, KDI조사에 근본적 하자"라는 제목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 과정에서 실시한 운하선호도 조사가 일반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5년 시민단체와 경제성 분석방법(방수로는 40m만 비용에서 제외)을 합의하였으나 굴포천 방수로 확장(40m→80m) 비용을 누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2009년 1월 10일자 2면 「경인운하, KDI조사에 근본적 하자」 제하의 기사 관련, 국토해양부는 "일반 컨테이너선을 기초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발표한 바가 없으며,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제성 분석 시 방수로 공사비를 포함시키기로 한 최종 합의는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2월 16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 또는 경제면에 제목은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제목 양식의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향닷컴'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조정대상기사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3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작성된 경인운하 보고서들이 운하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신문 : 『경인운하 경제성 다시 산출하라』 제하의 사설 (2009년 1월 10일자 27면)

내 용 : 정부가 3년간 2조 25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2만 5000개를 만들어내고 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의 하나인 경인운하 사업이 3월 착공을 코앞에 두고 추진 근거인 경제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이 엎치락뒤치락한 원인이 바로 경제성 평가였다는 점에서 자칫 사업추진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경인운하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인 경제성(B/C)은 △0.92~1.28(2003년・KDI) △1.76(2006년・네덜란드 DHV) △1.065(2008년・KDI)로 평가 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보기에도 석연치 않다. 일찍부터 평가용역 주문자의 입맛에 맞춰 경제성이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추진 근거가 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평가에 적용된 자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KDI가 경제성이 겨우 1을 넘는 것으로 밝힌 보고서에 인용된 네덜란드 DHV의 참고자료가 엉터리였다. DHV는 경인운하의 물동량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화주의 운하 이용 선호도(SP)를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처럼 꾸몄다. 물동량 산정을 분석하면서 적용된 수치도 북해(北海)운하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다.

정부가 화물을 실어나를 선박을 2500t의 소형 컨테이너선에서 기술적으로 제작이 어려운 4000t급의 강・바다 겸용 바지선으로 바꾼 것도 물동량을 끌어올려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의 은폐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운하에 물동량이 없으면 사람도 모이지 않는다. 정부가 건설할 배후도시 등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점에서 다시 경제성을 투명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낸 뒤 경인운하 사업을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운하 경제성 다시 산출하라" 사설 내용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0일자 사설에서 "경인운하 경제성 다시 산출하라"라는 제목으로 "DHV는 경인운하 물동량 분석시 필수적인 화주의 선호도를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꾸몄고 물동량 산정을 문석하면서 북해운하에 사용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선박을 2,500톤에서 4,000톤급으로 바꾸어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네덜란드 DHV 보고서를 인용한 이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사실 확인 결과, DHV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보고서에 기록한 사실이 없으며 DHV사는 물동량 분석시 유럽 북해운하의 경험을 토대로 로짓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용역에 참여한 KMI 조사결과를 토대로 물동량을 보완하였고, 금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DHV분석방법과 달리,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석을 위해 국내업체 설문조사, 그간 여건변동 반영 및 국내 로짓모형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KMI는 물동량이 선적용량을 올린다고(2,500톤→4,000톤급)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 밝혔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정부가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사비를 일부 제외하여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기고문 게재)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1) 『경인운하 수요예측 조사도 왜곡』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2) 『국토부 "RS선 투입"… KDI 일반선으로 수요계산』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9일자 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리젠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미용주사 채혈키트의 원가가 4,000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피주사' 장비 고가 논란,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1일자 의료섹션)
내 용 : 최근 '연예인주사'라고 불리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PRP주사(이하 피주사)'에 대해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판매가가 원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개원의들에 따르면 피주사의 시술가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하 100만 원 이상으로 보통 200만 원 정도에 시술이 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주로 시술되는 필러나 보톡스에 비하면 고가다.

현재 국내에서 PRP에 사용되는 ACR채혈키트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리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국내 업체들의 제품이 사용된다.

특히 개원의들은 리젠코리아에서 20개로 된 한 세트를 30~40만 원에 판매해 원가 4,000원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은 "피주사의 제조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요령만 알면 전문의들도 만들 수 있는 장비인데 원가에 비해 너무 비싸게 팔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피주사' 장비 고가 논란,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몫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31일자에 "'피주사' 장비 고가 논란,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몫"이라는 제목으로 리젠코리아의 'ACR채혈키트' 원가는 고작 4천 원임에 불구하고 한 세트 30~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가격에 대한 거품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젠코리아는 “본지에서 보도한 가격 원가가 4천 원이라는 부분은 실제 원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적인 가격이 아니며, 보도내용에 등장하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31일자 “‘피주사’ 장비 고가 논란,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몫” 제하의 보도에서 ACR채혈키트의 원가가 4천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수입원 리젠코리아는 보도된 가격은 실제 원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1월 23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메디컬투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위 항의 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메디컬투데이 : 『〈반론보도〉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3일자 의료섹션)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119 상황실에 근무하는 도중 응급환자의 이송을 외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KBS-1TV, 부산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1) 「뉴스광장」 프로그램 『119 구급환자 외면』 제하의 보도 (2008년 11월 28일 06:00)
내 용 : ▷접수자 : 지금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데예?
▷신고자 : 네. 네. 지금 자꾸 기침이 나옵니다.
▷접수자 : 기침이 나오고? 다른 데는 아픈거 아니고예?
▷신고자 : 네
▷접수자 : 기침만 조금 나옵니까?
▷신고자 : 네
▷접수자 : 기침만 나오시면 죄송하지만 저.. 택시를 타시면 안되겠습니까?
▷신고자 : 네 알겠습니다.
▷접수자 :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아주 위급한 환자만 이송을 하는데, 할아버지 기침을 조금 하신다 하니까 택시 콜을 하셔가지고

부산KBS-1TV : (2) 「뉴스9」 프로그램 『119 구급환자 외면』 제하의 보도 (2008년 11월 27일 21:00)
내 용 :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19구급요청 환자 외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11월 27일(부산방송), 28일(중앙방송) “119 구급환자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운전자는 숨지기 전,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지만 119상황실은 응급환자 이송을 끝내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및 “소방본부는 감기나 타박상 환자, 취객 등은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안 씨를 감기환자로 판단해 빚어진 실수였고 해명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에서 알 수 있듯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으며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환자에게 기침 외에 다른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다른 이송수단까지 안내하여 환자가 동의한 사항이고, 지병이 있다고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호흡곤란이라는 추측방송을 내보내 소방본부에 피해를 끼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따라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방본부 및 직원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천연 간수로 만든 재래식 두부가 일반 두부보다 맛도 좋고 몸에도 유익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2TV : 「스펀지 2.0」 프로그램 『두부의 진실』 제하의 방송 (2009년 1월 3일 18:35)
내 용 : (전략)
▷ 나래이션 (남) : 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두부의 진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식품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드셨습니까?

▷ 나래이션 (여) : 재래식 두부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본재료인 콩을 물에 6시간 이상 불려 둡니다. 그리고 불린 콩을 맷돌에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간 콩을 물에 넣어 끓이면 콩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거품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촘촘한 무명천에 콩물을 넣어 비지와 콩물을 분리한 후. 콩물에 천연간수를 넣어 응고시킵니다.

▷ 안문태 (농촌 체험마을) : 간수는 우리가 천일염을, 천일염을 가져 와서 쌓아두면요, 거기에서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그게 간수입니다. 그게 간수인데 …

▷ 나래이션 (여) : 천연간수는 천일염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수를 이용해 응고된 콩물을 10여 분간 숙성시키면 이것이 바로 순두부. 그리고 무명천에 깐 틀에 순두부를 부은 후 무거운 돌로 눌러 물기를 빼면 이제 우리가 즐겨먹는 일반 판두부가 완성됩니다. (중략)

▷ 나래이션 (남) : 이렇게 참기름에 비해 화학적 작용으로 확실하게 거품을 가라앉히는 '실리콘 소포제' 과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가요?

▷ 임종환 교수 (인하대 산업의학과) : 실리콘 수지는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로 사용됩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암, 신경독성, 간독성 등 위해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약한 독성은 있기 때문에 식품 1kg당 0.05g 이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두부의 진실" 이라며 진실을 왜곡한 방송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 방송
• 내 용 : 2009년 1월 3일(토요일) 오후 6시 35분 KBS2TV "스펀지 2.0 - 알아야 산다."라는 코너에서 "두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 중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지난 1월3일 “두부의 진실”을 방송하는 과정에 재래식 두부 만드는 방법이라며 소개한 천연간수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때와 쌓아놓은 천일염 소금가마나 포대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폐기물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존재할 수 있는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 성분이 잔류할 수 있고 호염성 미생물의 오염 등의 이유로 약 30년 전부터 두부류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두부 제조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현재 두부제조에 사용되는 응고제(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글루코노델타락톤 등)는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유럽에서도 두부응고제로 그 안전성이 인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부제조에 사용되는 소포제(실리콘수지)는 냄새가 거의 없는데 반해 방송 중 사용된 소포제는 유효기간이 6년이나 지난 것으로 변질되어 냄새가 났던 것으로, 두부제조에 첨가되는 소포제의 양은 미량(0.002%이하)으로 안전하나, 방송 중 끓는 콩물에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넣은 소포제의 양은 첨가허용치를 수십 배 초과된 과장된 장면 이었습니다.

사과문 : 지난 2009년 1월 3일 방송에서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실제 생산되는 두부와 달리 첨가 허용치의 수십 배 이상 지나치게 많은 양의 첨가물을 첨가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된 소포제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두부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들게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간수를 사용해 만든 ‘재래식 두부’가 “건강식답다”라고 소개하여 오인과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시청자 및 두부제조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심리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관계자와 관련기관 및 관련학계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검토 후 방송하겠습니다.

합의사항

1. 후속보도시 포함할 내용

• 식품영향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두부의 장점

• 두부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명

▷ 두부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약청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내용

▷ 두부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에서 사용된다는 내용

다. 두부의 긍정적 효과 안내

▷ 두부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내용

▷ 해외 사례(제작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2.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14일까지 KBS-2TV「스펀지 2.0」 프로그램에 제1항에 기술된 내용의 취지를 포함하여 방송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이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2TV :「스펀지 2.0」 프로그램『달팽이가 두부를 만나면…』제하의 방송 (2009년 3월 14일 18:35)

내 용 : 달팽이가 “두부”를 만나면 집 평수가 커진다. 달팽이에게 두부를 먹이는 실험 (이유) 달팽이의 성장에는 칼슘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달팽이 집은 칼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장기에 칼슘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 집의 색과 길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험내용) 일주일간 달팽이에게 한쪽은 두부를, 한쪽은 배추를 제공한다. 일주일 후, 두부를 먹인 달팽이와 배추를 먹인 달팽이의 집 크기와 색 등의 차이 비교함으로써 두부 속 칼슘 성분에 대해 이야기 한다.

두부의 체내 흡수도 실험 두부와 고기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흡수되는 영양성분의 %를 알아본다. 두부의 경우 95% 흡수되는 반면, 고기의 경우 65%의 흡수율을 보인다. (실험내용) 우리 몸의 위와 같은 환경의 실험 기구에 고기와 두부를 넣어 흡수되는 영양성분을 비교 분석해 본다.

세계의 각양각색 두부들 일본, 중국, 미국의 특이한 두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외국 두부의 경우, 두부에 다른 재료를 넣어 다양한 두부를 제작

한다. 하지만 우리의 두부는 콩 100%가 들어가야만 두부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의 두부가 외국 두부에 비해 훨씬 영양학적으로 뛰어남을 밝힌다. □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모 씨가 '나라사랑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5.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8 참조)

보도내용

중앙일보 : 『대선 때 MB 퇴진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1면)

내 용 : '미네르바' 박○○(31) 씨가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9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 박씨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네르바, 나라사랑청년회 가입해 활동 사실과 달라(또는 미네르바 나라사랑청년회 활동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0일자 1면에 "대선 때 MB퇴진 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 박○○ 씨가 '나라사랑청년회' 회원인 것으로, 나라사랑청년회를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라고 일축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 씨는 나라사랑청년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나라사랑청년회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단체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단순 질의한 내용을 신청인 명의로 기사화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시온교회 성도 억울합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9일자 종합면)

내 용 : 불기소처리한 용천노회는 기탁금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 본 질의인(문○○)은 예장통합 용천노회 (북시찰)시온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시온교회 시무장로 5인(박○○, 최○○, 신○○, 신○○, 안○○ 장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2007년 4월에 당회를 통해 노회위탁으로, 그리고 시온교회 담임목사(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2007년 5월에 용천노회 앞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당시 용천노회 기소위원회는 고발 접수된 2건 모두에 대하여 同年 6월과 8월에 각 불기소 처리한 바,

2.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용천노회는 규정에 따라 본 고발인에게 기탁금 1,500,000원(장로고발건-당회로부터의 위탁 500,000원 및 목사고발건 1,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용천노회는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리가 "패소판결"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현재까지 기탁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주 제 : 시온교회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부 제 : 기탁금 처리에 관한 개인 질의를 기사화한 것 유감
• 내 용 : 본인은 '에클레시안'의 대표 및 편집인으로서 문○○ 씨로부터 2008년 11월 26일 한 통의 "질의서"를 받아 읽고, 질의서에 진술된 사실, 즉 '예장통합 용천노회가 제기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리하고도 기탁금을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호소한 질의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인 명의로 2008년 11월 29일자 기사(제목 : "시온교회 성도, 억울합니다.")화 하였습니다. 사전에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또한 질의인은 본사의 기자가 아니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 후 보도문

에클레시안뉴스 : 『에클레시안정정보도(시온교회, 성도 억울합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2일 종합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 및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5.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9 참조)

보도내용

내일신문 :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 건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3일자 종합1면)
내 용 :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지에 경인운하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소유권자인 서울시나 환경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절차의 문제와 함께 수도권에서 제2의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립지 바로 옆에 경인운하 화물터미널이 입지할 경우, 자칫 매립장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경인운하 건설계획을 밝히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지 약 85만평(280만㎡)에 배후단지를 포함한 인천터미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지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곳으로 소유권은 서울시가 70%, 환경부가 30%를 갖고 있다.

12일 서울시 환경기획관 소속 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전화나 어떠한 협의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소속 한 관계자도 "매립지 부지에 경인운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몰랐다"며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 건설, 국토부 일방적 계획발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3일자 종합1면에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 건설, 국토부 일방적 계획발표, 서울시, 환경부와 협의 없어"라는 제목으로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지에 경인운하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소유권자인 서울시나 환경부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환경부, 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08년 2월에는 DHV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에 협의 요청하여 서울시는 경인운하사업 확정시 협의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육류의 원산지 부정표기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점포 내부를 자료 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춘천KBS-1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춘천KBS-1TV : 「뉴스9-강원」 프로그램 『원산지 표시 위반 '육류'가 가장 많아』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8일 21:40)
내 용 :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83건으로, 이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가 전체의 32.6%인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55건, 과자류 46건, 버섯류 28건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종별로는 슈퍼마켓이 64건, 가공업체, 식육점이 각각 61건, 노점상 55건, 일반 음식점 42건 등이며, 모두 5천88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춘천KBS가 지난 1월 8일 뉴스9-강원에서 「원산지표시위반 "육류" 가장 많아」라는 제목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입소고기 전문음식점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의 수입소고기 전문음식점은 원산지 표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춘천KBS-1TV : 『원산지 표시 업소 준수율 늘어』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21일 09:49)
내 용 :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업소가 해마다 늘면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해 18,746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준수율은 98%로 2007년 96%이어 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 업체로 모두 85곳을 선정해 자율관리 효율성과 소비자들의 신뢰

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화면 : 신청인 음식점 상호명, 신청인 부부가 고기와 원산지 표기된 메뉴판 설명하는 모습 15초 가량 방송됨.) □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제하의 방송 (2009년 1월 8일 23:30)
내 용 : 원산지표시제 시행, 12일 후. 단속반과 함께 한 음식점을 찾았다. (사람 지나가고) 100% 국내산 고기만 쓴다는 문구가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작업에 들어가보자 냉장고에서 나온 고기재료들. (그런데) 원산지 라벨이 어디에도 없다. 어디 출신인지 알길이 없고 고기재료를 담은 또 다른 마대자루. 멀리 스페인, 벨기에에서 물건너온 돼지고기되겠다. 그런데 식당 홀, 계산대 아래에 붙어있는 원산지 표시판! 여기엔 실제원산지가 적혀있었다. 손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원산지 표시를 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삼겹살원산지표시 사실과 달라(또는 관련정정방송)
• 내 용 : 본 방송은 1월 8일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모 식당이 삼겹살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식당이라고 방송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 해프닝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식당은 감자탕 돈목뼈는 스페인과 벨기에산이라고 원산지표기를 분명히 하였으며, 삼겹살은 100% 국내산으로 방송관계자나 단속 직원이 확인한 바 있어 수입산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식당 관계자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KBS-2TV 사극 '대왕세종'의 일부 내용이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2. 윤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9.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12 참조)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KBS사극 '대왕세종' 표절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9일자 11면)
내 용 : KBS-2TV 사극 '대왕세종'이 표절 논란에 올랐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하우스)의 저자인 소설가 김종록(45)씨는 "'대왕세종'이 『장영실…』의 메인 스토리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28일 서울남부지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05년 출간한 『장영실…』을 통해 노비 신분에서 세종의 총애를 받아 벼슬까지 하며 조선의 과학 입국을 이끌었던 장영실이 느닷없이 삭탈관직당하고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 이유에 대한 독자적인 가설을 내놨다. 세종의 지원을 받은 장영실이 독자적인 천문과 역법을 개발하는 바람에 명나라와 조선이 갈등을 빚었고, 명의 견제로 장영실이 희생됐다는 것이다. 정사에서는 장영실이 세종이 탈 가마를 부실하게 제작하는 바람에 삭탈관직당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나온다. 김씨는 "가마 부실 제작이 삭탈관직의 주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요즘의 핵 사찰에 비견할 만한 '천문의기 사찰'이라는 설정을 소설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드라마 '대왕세종'의 주요 내용과 상당히 겹친다. 특히 명의 천문의기 사찰에 앞서 간의대를 해체하고 천문의기와 관측 기록을 은폐하느라 아수라장이 된 조정을 다룬 26일 방영분은 『장영실…』의 핵심 아이디어와 일치한다.

김씨는 "이 작품으로 2005년 드라마 프로덕션 JRN과 원작 계약을 체결하고 30부작 드라마 시놉시스까지 준비해 각 방송사에 뿌린 상태에서 원작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대왕세종의 윤선주 작가는 처음엔 표절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왕세종'의 김성근 PD는 "책을 읽어 본 뒤 표절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작가는 이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

(2) 『'대왕세종' 표절 쓰나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0일자 20면)

내 용 : "장영실·신빈 김씨·세종대왕 삼각관계 베꼈다"

『소설 장영실』 작가 김미숙씨도 도용 의혹 제기

KBS-2TV 사극 '대왕세종'의 표절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설가 김종록(45)씨가 "드라마 '대왕세종'이 내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하우스)의 메인 스토리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28일 서울남부지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중앙일보 29일자 11면〉 또 다른 저자들도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KBS, 드라마 시놉시스도 꿀꺽?=『소설 장영실』(시나리오친구들)의 저자 김미숙(43)씨는 29일 "(내 작품속 설정인)장영실과 신빈 김씨, 세종의 삼각관계를 '대왕세종'이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식객'의 제작사인 JS픽처스 소속 작가인 김씨는 "2006년 KBS와 드라마 '장영실'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고 시놉시스와 대본까지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중단됐다"라며 "제작이 미뤄져 대본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드라마 소설'인 『소설 장영실』을 써서 올 2월 먼저 출간했다"고 말했다.

올 1월 말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대왕세종'은 장영실과 신빈 김씨(이정현)의 관계를 비중있게 그려낸 바 있다. (중략)

▷상식적인 추론이다?=세종 연구의 권위자인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실장(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도 "지난해 쓴 내 저작『세종, 실록 밖으로 행차하다』(푸른역사)의 상당 부분을 '대왕세종'이 갖다 쓰는 등 여러 책을 뒤섞어 베낀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사에서 그런 문제를 원작자와 미리 의논만 해도 좋을 텐데 모두 자기들이 창작한 것인 양 하는 건 나쁜 태도"라 지적했다. (중략)

'대왕세종' 대표 자문을 맡고 있는 서울대 국사학과 문중양 교수는 "제작진이 제작 초반에 몇 마디 물어본 것 외엔 자문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틀린 게 엄청나게 많아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BS '대왕세종' 표절관련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29일 "KBS사극 '대왕세종' 표절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왕세종의 윤○○ 작가가 표절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작가는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사실이 없고 표절사실을 인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지난 10월 30일 "'대왕세종' 표

절 쓰나미"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대왕세종'이 김미숙씨의 "소설 장영실"에서 장영실과 신빈 김씨, 세종의 삼각관계를 허락없이 도용하였고, 대왕세종의 대표자문을 맡고 있는 서울대 국사학과 문중양 교수가 "대왕세종은 자문을 그대로 받지 않아 역사적으로 틀린 게 엄청나게 많아 곤란하다"라고 인터뷰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왕세종에는 장영실과 신빈 김씨, 세종 사이에 삼각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소설 장영실을 표절하지 않았으며, 위 문중양 교수는 대왕세종의 7명의 자문 중의 한명으로 대표자문이 아니고, 문중양 교수는 대왕세종에서의 일부 픽션은 드라마에서 허용되는 상상력의 범위 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신청인 재단이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에 적극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5월단체들도 이에 찬성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5.18 기념재단 (이사장 윤 광 장)
피신청인 : 시민의 소리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민의 소리 : (1)『옛 전남도청 철거 진앙지는 5.18 기념재단』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2일자 2면)

내 용 : 옛 전남도청 전면의 3/5을 헐도록 문화전당이 설계된 근본원인이 5·18기념재단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그것도 5월단체가 이미 예전에 도청별관 철거에 합의한 결정적 증거라며 추진단이 제시한 홍보자료에서 나왔다.

원래 추진단 연구실장이었던 김양현교수가 방송토론회에서 "문화전당 국제공모 전에 5월단체들이 도청별관 철거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의 문화전당이 설계된 것"이라며, "과거에 다 합의해 놓고 이제와 반대한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5월단체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중략)

분명한 것은 5·18기념재단이『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5·18관련 보존공간 활용계획안』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위조된 공문서를 근거로 옛 전남도청 철거의 윤곽이 잡혔고, 이 철거범위에 따라 국제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위조된 공문서가 나간 팩스번호,『보존공간 활용계획안』모두가 5·18기념재단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결국 5·18기념재단은『보존공간 활용계획안』용역을 통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옛 전남도청 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5·18말살재단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후략)

(2)『'5·18민주유공자회'로 통합 추진한다』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9일자 2면)

내 용 : 5월 단체들이 '5.18민주유공자회'로 통합을 추진한다. 28년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가 아닌 투항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 5월어머니는 실종 자녀에 대해 일체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금도 매주 목요일이면 5월광장을 순례하며 자식들의 죽음을 민주주의로 승화시키고자 행진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는 그 항쟁의 대가를 국가유공자와 연금으로 대치시키려 한다며 곱지 않은 눈으로 흘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총에 맞아죽고 부상당

하고 구속됐으면 이미 보상받은 걸로 끝나야지 여기에 굳이 공법단체를 만들어 상이군경처럼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연금까지 받으려 하는 것은 숭고한 5월정신을 이권단체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5·18기념재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22일자 2면 NGO칼럼(김상집)을 통해 "옛 전남도청 철거 진앙지는 5·18기념재단"이라는 제목으로 "옛 전남도청 전면의 3/5을 헐도록 문화전당이 설계된 근본원인이 5·18기념재단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분명한 것은 5·18기념재단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5·18관련 보존공간 활용계획안』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위조된 공문서를 근거로 옛 전남도청 철거의 윤곽이 잡혔고, 이 철거범위에 따라 국제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5·18 기념재단은 『보존공간 활용계획안』 용역을 통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옛 전남도청 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5·18말살재단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5·18기념재단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5·18관련 보존공간 활용계획안』 (이하 '활용계획안')이라는 자료는 2006년 초에 시작하여 2006년 9월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2005년 5월에 공모에 들어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공모와 2005년 12월 3일에 발표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공모 당선작과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2006년 2월 20일자 공문도 재단에서 보낸 공식 공문이 아닙니다. 해당 공문은 재단의 공문수발신철에도 없습니다. 관련 공문 수신 후 문화관광부에서 5월 3일 단체에 공문을 잘 받았다는 회신을 한 것만 보더라도 문제의 공문이 재단의 공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활용계획안'과 '위조된 공문서'(2006년 2월 20일자 공문)를 근거로 옛 전남도청 철거의 윤곽이 잡혔고, 이 철거범위에 따라 국제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시간의 선후관계를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소리와 NGO칼럼의 김상집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기념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5·18말살재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단을 비난하였습니다.

또 12월 29일 NGO칼럼(김상집)을 통해 "'5·18민주유공자회'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제목으로 "그동안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은 5월단체가 공법단체로 나가려는 것은 5월정신을 금전과 맞바꾸고 합법테두리에 안주하려는 투항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나아가 5월정신계승과는 상관없이 상이군경처럼 떼거지나 쓰려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해왔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18기념재단은 공법단체 추진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5·18민주유공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법단체로의 전환을 축하해 왔고, 사무실 개소와 관련하여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시민의소리 칼럼을 통해 주장한 5·18기념재단에 대한 악의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시민의 소리와 김상집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5월단체와 5·18기념재단의 갈등을 부추긴 것은 양식 있는 언론의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이번 정정보도를 계기로 시민의 소리와 칼럼인 김상집은 5·18기념재단에 대한 왜곡·음해보도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앞으로 참언론과 양식 있는 언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22일자 2면 "옛 전남도청 철거 진앙지는 5·18기념재단" 제하의 칼럼 기사에서 옛 전남도청 전면의 3/5을 헐도록 문화전당이 설계된 근본원인이 5·18기념재단이 수행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내 5·18관련 보존공간 활용계획안』을 근거로 철거범위가 정해져 국제공모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옛 전남도청 철거의 원인이라고 지목된 『보존공간 활용계획안』은 2006년 초에 시작하여 2006년 9월에 작성된 것이므로 2005년 5월에 공모에 들어가 12월에 발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공모 당선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12월 29일자 "'5·18민주유공자회'로 통합 추진한다" 제하의 칼럼기사와 관련해 5·18기념재단은 자체의견으로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추진에 대해 5월 정신을 금전과 맞바꾸고 합법테두리에 안주하려는 투항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2월 16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민의 소리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옛 전남도청 철거 진앙지…)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민의 소리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가출신고 후 경찰수사 끝에 신청인 딸의 살해범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신청인이 낸 실종신고를 묵살하고 단순 가출로 처리,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경북인터넷뉴스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북인터넷뉴스 : 『경찰,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 20대 구속』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5일자 사회면)
내　　용 : 문경경찰서는 14일 박모(24. 공평동 거주)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밤10시 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20. 대구 모 대학생)와 함께 술을 마시고 7일 새벽 1시 50분쯤 점촌시내 모 여관에 함께 투숙해 서로 다툼 끝에 박씨가 여자 후배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이어 자신이 직장에서 운행하던 모 택배회사 차량에 여자 후배의 사체를 싣고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새재 IC에서~문경휴게소 사이 도로변에 사체를 유기한 후 외지로 도주를 했다는 것.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해 옴에 따라 수사를 해오던 중, 살인사건 단서를 잡고 전화 등 추적을 통해 14일 형사대를 충주시로 급파해 칠금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PC 방에 은신중이던 범인을 긴급 체포해 박씨에 대해 계속 조사를 펴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문경 살인사건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15일자 사회면에 "여후배 성폭행후 살해 20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20대 박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후배와 술을 마신 후 여관에 투숙 후 성폭행 후 신고가 두려워 살해를 하고 사체유기를 하였으나, 경찰의 수사로 인해 잡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택배기사를 하던 가해자가 택배배달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택배를

통해 알게된 연락처로 끊임없이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관계였으며, 실종 다음날(1월7일) 경찰에 그러한 정황을 들어 경찰에 실종사건으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밀월여행으로 규정짓고 단순가출로 초동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1월 13일에 경찰은 여관과 술집에 탐문수사를 처음 시작하였으나 신변에 불안을 느낀 가해자가 14일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와 범죄사실을 고백하였고 15일 충주에 있던 가해자를 데려온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경찰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발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북인터넷뉴스 : 『문경 살인사건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0일자 종합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지구대가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놓친 것은 소극적인 초동수사 때문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
(지구대장 한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부일보 : 『백주대낮 주택가서 2인조 강도 발생』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4일자 18면)
내 용 : 집주인 둔기로 폭행후 도주… 경찰, 인근 순찰에 그쳐 초동수사 미흡 논란

대낮에 수원 아주대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집 주인에게 들키자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

13일 오후 1시 15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 A빌라 5층 박모(38)씨의 집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귀가한 박시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도주했다. 박씨는 회사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위해 귀가했다가 집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범인들에 의해 이같은 변을 당했다.

주민 이모(54·여)씨는 "이웃 주민이 머리에 피투성이 상태로 실려나와 깜짝 놀라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로 추정되는 건장한 체구의 2인조 남성이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인근 지역만을 순찰하는 등 소극적인 초동수사를 벌여 범인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해 예상 도주로 추적이 불가능했다"며 "전문강도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백주대낮 주택가서 2인조 강도발생 집주인 둔기로 폭행후 도주, 경찰 인근 순찰에 그쳐 초동수사 미흡논란" 사실과 달라(또는 경찰 초동수사 미흡논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4일자 사회면에 "백주대낮 주택가서 2인조 강도발생, 집주인 둔기로 폭행후 도주…경찰 인근 순찰에 그쳐 초동수사 미흡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은 소극적인 초동수사를 벌여 범인을 놓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인들이 처음부터 강취의사를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단순 절도범이 주인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폭행

이 있었던 것이며 경찰은 신고받은 즉시(3분여 안에 도착) 용의자 인상착의와 입술이 터지고 정을 소지했다는 피해진술을 청취 관할 순찰차·도보근무자, 인접 경찰서에 모두 전파한 후 순찰차 등을 증원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목 검문소에서도 검문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였고, 여타 과학수사요원과 형사들도 신속 출동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안으로 소극적인 초동수사에 그쳤다는 점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9년 1월 14일자 18면 『백주대낮 주택가서 2인조 강도 발생, 집주인 둔기로 폭행 후 도주 … 경찰 인근 순찰에 그쳐 초동수사 미흡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소극적인 초동수사를 벌여 범인을 놓쳤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받은 즉시(3분여 안에 도착)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 진술 등을 청취, 관할 순찰차·도보근무자, 인접 경찰서에 모두 전파한 후 순찰차 등을 증원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목 검문소에서도 검문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9년 1월 31일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집주인 둔기로 폭행후 도주…)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31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쇄석기를 설치·가동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5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담양석재산업(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담양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
취 하 (정정·손배)

보도내용

담양신문 : 『"행정과 자본가, 민초들을 물로 보는가?"』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1일자 4면)
내 용 :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담양군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불법으로 크락샤를 설치하고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양석재는 쇄석기 설치 전에 공장 업종변경(업종 추가)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해 8월 25일자로 담양군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또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 이 또한 위반행위로 고발당했다. 공작물 쇄석기 축조신고도 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담양군으로부터 자진철거 지시를 받았지만 이 또한응하지 않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담양군은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현재도 쇄석기를 가동하며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1월 11일자 4면에 '행정과 자본가, 민초들을 물로 보는가', '불법 투

성 크락샤 계속 가동, 피해 극심'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담양석재산업 주식회사는 담양군에 공작물축조신고 및 업종추가 신청을 한 후 크락샤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4면 "행정과 자본가, 민초들을 물로 보는가", "불법 투성 크락샤 계속 가동, 피해 극심" 제하의 기사에서 담양석재산업(주)가 공장업종변경(업종 추가)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작물축조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쇄석기를 가동하여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담양석재산업(주)는 담양군에 업종변경(추가) 승인신청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지만 담양군이 일부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해와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전남행심 2008-31)을 통해 담양군의 해당 공작물 축조신청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며, 현재에도 담양군의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2월 2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담양신문 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불법 투성 크락샤 계속 가동…)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담양신문 : 『무정면 담양석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방송법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신청인 언론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송 필 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송법 개정 산업효과 보고서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4일 21:00)
내 용 : 요즘 일부 신문들은 방송법이 개정되면 방송 산업이 육성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어떤 신문은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자, 중앙일보 1면.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2만6천개가 새로 생겨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보도 자료에도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해당 연구원에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줄 걸 요청했더니 그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 : "보고서 절대 아

닙니다. 보고서라면 책자로 인쇄가 되고요."

▷연구실 관계자 : "정상적인, 보통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 차원의 연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는 "연구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이며,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보고서는커녕 엄밀한 조사나 분석 과정도 거치지 않은 단순 자료 수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송법 개정 산업효과 보고서' 존재 사실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4일(일)자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법 개정 산업효과 보고서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방송법 개정 산업효과와 관련 "중앙일보가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보고서는 중앙일보 보도 당시 실재했었고, 이는 1월 19일자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 보고서 책자(KISDI 이슈리포트)로도 발간돼 그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가 있지 않다고 잘못 보도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본 방송은 "방송법 개정으로 현 방송계 종사자 4만 여명의 70%인 2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타당성이 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미디어 개정 법안의 경제효과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를 '방송서비스 분야'와 '관련 산업 분야'로 구분해 방송서비스 분야의 경우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는 4470개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본 방송은 방송서비스 분야와 관련 산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숫자를 단순합산 한 다음 현 방송계 직접 종사자 인원과 비교해 마치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시청자와 중앙일보에 깊이 사과 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잘못되지 않았으므로 정정보도 할 수 없다. □

신청인들이 중고 타이어나 생산된 지 오래된 타이어를 새 것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타이어뱅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무늬만 새 타이어 당신을 위협한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7일 23:05)

내 용 : ▷사회자 : 중고타이어나 제조일이 오래 된 타이어를 새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새 타이어로 둔갑한 중고 타이어의 유통실태 교통 전문 기○○ PD가 취재했습니다.

▷기○○ : 서울에 사는 도씨 일행은 지방 출장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운전대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간신히 큰 사고를 모면한 도씨. 그가 발견한 건 터져 버린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였습니다.

▷도○○ : 뭘 밟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기○○ : 새 차를 산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타이어가 터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 : 타이어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

고 운전습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 모든 차가 이렇게 되야죠.

▷기○○ : 타이어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건 도씨뿐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결함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특히 고속주행시 타이어로 인한 사고는 사망률이 9배나 높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타이어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매상 : 오래 되면은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다 삭아버린단 말이에요. 싸다 해서 무조건 그냥 끼우면 큰일납니다.

▷기○○ : 더욱 무서운 것은 겉만 멀쩡한 오래된 타이어, 무늬만 새 타이어인 묵은 타이어가 자칫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 타이어가 새 타이어처럼 유통된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타이어 가게 50여 곳을 조사했습니다.

▷판매상 : 2005, 6, 7 사면 안 되죠. 못 써요, 그거. 재고가 한 2년 넘은 거는 우리는 반품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소비자들도 눈이 높아져서, 왜냐 하면 날짜를 확인하는데 작년 거 팔았다가는 그냥 가게 망해요.

▷기○○ : 많은 가게들은 타이어가 1, 2년만 묵어도 판매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3일째 우리는 한 가게에서 출고된 지 오래 된 타이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제조년도는 옆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2002년 10번째 주에 만든 타이어였습니다.

▷판매상 : 새 거랑 중고는 구분이 되죠. 이렇게 바닥에 페인트가 있고 이런 거는 새 거고.

▷기○○ : 주인이 모두 새 타이어라며 또 다른 제품을 권합니다. 놀랍게도 이 타이어의 제조년도는 2004년, 벌서 5년째 된 타이어입니다. 오래 된 타이어를 새 타이어라며 손님에게 속여 팔고 있을까. 여성운전자에게 문제의 가게에 가서 타이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운전자 : 안녕하세요.

▷판매상 : 예, 안녕하세요. 타이어 가시게요?

▷운전자 : 예.

▷판매상 : 우리 집이 오래 된 큰 집이고.

▷운전자 : 오래 되셨어요?

▷판매상 : 30년식 됐고, 이게 국산 타이어. 이게 골이 엄청 깊죠.

▷기○○ : 주인은 가게 곳곳에 있는 타이어의 성능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판매상 : 이런 건... 이건 거의 새 거야, 이건.

▷운전자 :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된 건데요?

▷판매상 : 거의 새 거네요, 이거는.

▷운전자 : 예.

▷기○○ : 타이어 제조년도를 묻자 거의 새 것이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합니다.

▷판매상 : 이게 이제 주행을 하면 미끄럼방지, 벌어지는, 이걸 그냥 책임지는 거야, 우리는. 가게 명예를 걸고. 명함 하나 드릴 테니까 저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기○○ : 결국 여성운전자는 가게 주인이 추천한 타이어를 구입했습니다. 가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제조년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타이어 바깥부분을 꼼꼼하게 살폈지만 제조년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차 밑으로 들어가 타이어 안쪽에 있는 제조년도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새것처럼 판 타이어는 2005년도에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중략)

▷기○○ : 새 타이어가 비바람과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몇 년을 나는 동안 새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제 성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제조한 타이어와 출고된 지 오래 된 타이어의 성능은 어떨까. 제동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선 50m 앞에 실험용 인형을 세워 봤습니다. 빙판길에서 새 타이어의 제동거리를 시험했습니다. 제동거리는 51m. 차량은 인형에 살짝 부딪칩니다. 이번에는 3년 전에 만든 타이어로 실험했습니다. 똑같이 50km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인형이 나동그라집니다. 이때 제동거리는 54m. 같은 새 제품이지만 출고된 지 오래 된 타이어가 제동능력이 떨어집니다. 불과 3m의 차이지만 이 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쓰는 스노우 타이어의 경우는 어떨까. 새 스노우 타이어의 제동거리는 40m.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새 스노우 타이어는 어떻까. 제동거리는 50m였습니다. 제동거리가 올해 출고된 것보다 10m이상 차이 납니다. 출고된 지 오래 된 스노우 타이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 진열용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 문구 사용하는 업소 중 타이어뱅크는 오래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이 모두 같은 업소가 아님을 정정 보도합니다.

• 내 용 : 지난 12월 17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 소비자고발 “무늬만 새 타이어, 당신을 위협한다.” 라는 제목의 방송에 타이어뱅크(주) 직영점 및 체인점의 간판과 작업장, 그리고 타이어뱅크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를 타이어뱅크(주)의 허가 없이 임의로 노출시키며, “(타이어가)비바람과 햇볕에 몇 년씩 무방비로 노출 되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몇 년을 나는 동안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제 성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마치 타이어뱅크(주)의 직영매장 및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몇 년씩 햇볕이나 비바람에 노출되어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타이어뱅크(주)의 직영점 및 체인점에서는 1~2개월 이내에 판매할 물량만을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비바람과 햇볕에 노출되는 타이어는 대부분 판매목적이 아닌 진열용 폐타이어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무단사용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점, 영업에 피해를 드린 점, 타이어뱅크(주)의 직영점 및 체인점주님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방송 중 타이어뱅크(주)의 직영점 및 체인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간판, 현수막, 깃발, 타이어 진열용 카트, 유니폼 등을 사전협의 없이 방송에 노출 시킨점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 단체가 징수한 분담금을 회원사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돌려주고 회계장부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류 ○ ○) 외 1인
피신청인 : 반월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반월신문 : 『회계장부 짜맞추기… 투명성 의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5일자 1면)

내 용 :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안산투명협) 사무국에서 ‘분담금’을 받으며 ‘회계장부 짜맞추기’를 주도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투명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안산투명협의 회계장부 짜맞추기가 알려지며 2008년 1회 추경예산 포함 1억 1,300여 만 원의 예산 사용 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안산투명협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회원사에 분담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때 안산투명협 사무국장은 A 분야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분담금은 형식적 납부하는 것으로 각 사에 투명협의 광고비 명목으로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B 협회사 관계자는 돈을 즉시 돌려 줄 거면 “입금하고 출금하는 일이 번거로우니 서류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사무국장은 “분담금 납부 현황을 시에 보고 해야 하며 입출금 내역 장부는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장부 짜맞추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안산시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출범한 안산투명협 관계자의 이와 같은 기강해이(紀綱解弛)와 관련 안산투명협을 관리하는 안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월 15일자 1면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회계장부 자 맞추기… 투명성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회계장부를 짜 맞추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무국장이 A분야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분담금은 형식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각 사에 투명협의 광고비 명목으로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과 안산투명협이 박주원 시장의 선거공약에 의해 만들어진 시 산하단체이며 서울 본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안산시에만 있는 유일한 단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무국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분담금 납부요청을 하였고 언론 부문 홍보사업 중 신문광고에 대해 광고 시안이 만들어졌으므로 신문에 광고가 나가면 바로 광고비를 입금시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분담금은 형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거나 분담금을 광고비로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B협회 관계자가 "입금하고 출금하는 일이 번거로우니 서류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데 대해 "분담금 납푸현황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입출금 내역 장부는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 내용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원천적으로 항시 예산 집행에 대해 안산시의 감사를 받고 있고 회계시스템이 시 보조금 통장과 분담금 통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무국에서 임의로 입출금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며, 시 보조금의 입출금도 카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입출금내역 장부를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안산투명협은 시 산하단체가 아니고, 시민사회의 제안에 따라 시장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민간협의체이며 안산시 뿐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에서 운영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류 ○ ○
조정대리인 원 ○ ○
2. 원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반월신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33-5번지
한도빌딩 2층
대표이사 홍 ○ ○
조정대리인 장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반월신문〉 1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우측 사진설명 활자(박주원 시장 선부 2동 연두방문)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반월신문 :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9일자 1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신청인들이 야간 순찰 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 수면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임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일선경찰 '얼빠진 심야 순찰'』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5일자 6면)
내 용 : (전략)
이와 함께 같은날 새벽 3시2 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리츠호텔 인근 도로변에는 남부서 ○○ 지구대 소속 49도76XX 순찰차(SM3)가 20여분 넘게 정차돼 있었으며 차량 내부의 경찰관 2명은 수면과 휴식을 취했다.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이 대대적인 수색 및 검문검색에 나서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원지역 일선 경찰관들의 심야 근무가 극도의 기강해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매탄지구대 관계자는 "원칙상 인솔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의경들만 내보내는 것이며 의경들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지구대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된 업무도중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1월 15일자 사회면 '차에서 잠자고… 일선 경찰 얼빠진 심야순찰' 제하로 '1월 14일 새벽 3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리츠호텔 인근 도로변에는 수원남부서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도로변에 20여분 넘게 정차돼 있었고, 차량 내부의 경찰관 2명은 수면과 휴식을 취했다.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의 대대적인 수색 및 검문검색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원지역 일선 경찰관들의 심야 근무가 극도의 기강해이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 2명은 편의점 강절도 예방을 위해 편의점 앞에서 거점 근무하는 등 정상근무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내용을 정정합니다. □

광명시가 도로를 불법 점용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효 선)
피신청인 : 수도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수도일보 : (1) 『현수막 게시대 허가 없이 불법 신설·교체』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9일자 15면)
내 용 : 홍보효과 없는 곳 설치 '혈세 낭비'
광명시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면서 도로점용도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광명2동 1개, 광명5동 2개, 광명6동 2개, 광명7동 2개, 철산3동 4개, 하안1동 1

개, 철산2동 1개, 하안4동 1개, 소하동 2개 등 모두 16개(신설 10개, 교체 6개)의 행정 현수막게시대를 1억4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N테크를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해 12월초까지 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시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면서 주무 부서의 사전협의와 함께 도로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후략)

(2) 『光明, 행정 현수막게시대 고압선 지나가는 곳 설치』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2일자 15면)

내 용 : 〈속보〉광명시가 도로점용도 받지 않고 행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 문제(본보 9일자 15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수막게시대를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는가 하면 비좁은 인도에 설치하는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N테크를 시공사로 선정, 행정 현수막게시대 16곳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하지만 시는 현수막게시대의 재료의 경우 스테인레스의 재질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율이 높아 게시대 설치시 인근 고압선을 감안, 향후 전기누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해 하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수막게시대 허가없이 불법 신설·교체』, 『光明 행정현수막 게시대 고압선 지나가는 곳 설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9일(현수막게시대 허가없이 불법 신설·교체)라는 제목으로 현수막게시대를 도로점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를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였고 인도폭이 좁은곳에 설치하여 통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전선과 붙어 있어 현수막게시대가 우천시 감전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수막게시대는 도로점용허가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 협의사항이고, 현수막게시대에 인접해 있는 전선은 통신케이블선이며 4개의 전선은 고압선이 아닌 저압선으로 감전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현수막 게시대설치로 인해 인도폭이 비좁아져 통행인들의 불편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실제통행에는 현수막 설치전·후와 별 차이가 없으며 현수막게시대에 인접한 고압선은 최소 4m이상 이격되어 설치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4개의 저압선은 본래 피복선으로 방호관을 덧씌워 감전사고등을 예방하였는데 큰 위험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 보도한 사항등을 정정하도록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수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15면)

내 용 : 본보에서 지난달 9일 보도한 '현수막게시대 허가없이 불법 신설,교체', 12일 '광명 행정 현수막게시대 고압선 지나가는 곳 설치'에 대한 보도와 관련, 광명시에서는 현수막게시대의 신설교체는 보도점용 허가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 협의사항 이라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는 광명2동에 설치한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인접해 있는 전선은 통신케이블선이라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개봉교입구 목감천변에 설치한 현수막게시대는 주민들의 행정게시대 설치민원으로 설치한 것으로 도로여건상 기존게시대보다 너비가 40~50cm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한 것은 물론 이번에 설치한 현수막게시대는 태양열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며 저압선은 전선방호관을 덧씌워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

산성동 주택재개발조합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 ○ ○) 외 2인
피신청인 : 대전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전투데이 : 『산성동2구역 주택조합 설립 난항』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7일자 1면)
내 용 :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이하 주택조합)이 8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불공정선거 이의제기에 이어 선거자체를 원천 무효화해야한다며 선거동참을 거부해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조합 정관 24조와 26조에 관한 회의 개회, 선출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데도 지난달 31일 긴급히 회의를 강행해 선거관리위원장 A씨를 해임하고 새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해 선거를 치른데 기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한 송○○ 후보(전 추진위 부위원장, 기호 2번)측은 조합장선거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선거중립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후보는 지난 5일 검찰청, 경찰청, 시청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기호 1번 조남철 후보(전 추진위원장)측이 후보가 됐으면 따로 선거캠프를 차려 선거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해 온 추진위사무실과 선거인 명부, 전화와 각종자료 등을 사용하면서도 송후보에게는 열람만 허용하고 있어 불공정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측은 또 "임원선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는 커녕 투표용지에 기본적인 선관위원장 직인도 없으며 송 후보측 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절차도 없이 투표를 강행해 부정선거를 의도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515명의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오는 11월 8일 남부교회에서 실시되는 주민총회의 조합장선거는 불공정선거에 대한 각종 회의록과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승복할 수 없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위법사실을 증명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8년 11월 8일 실시될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날인 11월 6일자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과 7일자 본지 일간신문 사회면에 게재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확인 결과 내용 전체가 허위 및 음해석 내용임이 밝혀졌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잡으며, 동 기사로 인하여 산성동2구역 주민들과 조합장에 출마한 기호1번 조남철 후보님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당시 본 대전투데이 신문사에서 게재한 기사내용은 조합장 출마자 기호2번 송○○ 씨가 기사내용을 미리 작성해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본 대전투데이에서는 기사내용이 모두 사실일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38,787,750원

합의사항

• 제 목 : 산성동 2구역 주택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가 지난 2008년 11월 6일자 인터넷 신문, 11월 7일자 1면 『산성동2구역 주택조합 설립 난항』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산성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 위원장과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한 추진위원회가 무효라는 내용 및 송진호 후보의 '조남철 후보가 추진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등 조합장 부정선거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확인이나 상대후보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기에 이를 바

로잡습니다.

한편 본지 기사와 관련해 산성동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남철)와 주택재개발설립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선)는 다음과 같이 반론해왔기에 이를 게재합니다.

당일 개최된 제19차 추진위원회는 관할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재적추진위원의 과반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선관위원장 A씨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 거듭된 중대과실로 인해 더 이상 선거관리 업무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관위를 해체한 것입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불공정 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조남철 후보는 선거램프를 별도로 차리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선관위원장 직인이 없으며 송 후보 측 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절차도 없이 투표를 강행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투데이 2009년 2월 6일까지 1면 우측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산성동 2구역 주택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일부 조합원…)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투데이 : 『산성동 2구역 주택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고비용을 지출하고 편법을 동원해가며 언론에 지나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효원라이프상조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상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상조뉴스 : 『효원라이프 '언론보도자료 홍보' 지나쳐』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상조/장례면)

내　　용 : 동종업계 회사가 특별 세무조사를 당해도 우리하곤 상관없다? 과연 그럴까?

대형 상조 회사의 특별세무조사로 인해 상조업계가 뒤숭숭한데 그 틈을 이용 고 비용을 지출 여러 가지 편법으로 자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업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 해 보이진 않다. TV 광고는 적게 하면서 대신 기형적 홍보(매체 언론보도자료)를 하면서 지출을 과다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이나 소비자 모두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효원라이프 장례서비스(대표:김○○)는 2004년 (주)효원라이프 법인으로 설립된 상조회사이다. 홈 쇼핑을 했던 경험을 살려 상조업계에 뛰어든 회사이며 초기엔 케이블 홈쇼핑을 통해 상조 고객을 모집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기존의 방문판매영업으로 전환, 대대적 광고전을 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상조업계는 홍보나 광고를 통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으나 2005년 3월 31일 '상조뉴스'가 상조업계 대변지를 자임 창간되면서 상조 회사들이 홍보와 광고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2004년엔 웹상의 대형포털(네이버, 다음) 사이트의 검색 창에서 '상조'또는 '상조회사'를 검색해도 뉴스는 물론

이고 그 어떤 것도 상조에 관한 검색이 되지 않았었다.

신문 기사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상조기사'는 경제 전문지인 한국경제신문에 '우수중소기업'및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어 '한라상조 기사'가 난 것이 최초이다.(포털검색 참조)

그 때의 상조 시장은 그야말로 고객모집에 혈안이 되어 수도권 상조 회사들의 온갖 불법과 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기였다.

(주)효원라이프 장례서비스의 속보이는 홍보전략

결국 오늘날 상조업계가 광고 홍수로 이어진 단초를 제공한 그 원조가 '상조뉴스'이며 그 다음이 '효원라이프상조'라고 해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효원이 처음 시장에서 적응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너도나도 상조업 마케팅을 홍보와 광고에 목을 메진 않았을 것이다. 효원의 메이져 일간지 전면광고는 그야말로 상조업계 대 파란이었다.

지금은 효원의 광고 홍보전이 변질되어 얄팍하게 '뉴스통신사'와 일부 주요 일간지를 이용 해당 언론사에' 고비용을 지급'하고 '언론보도자료'라는 형식을 통해 교묘히 자사 홍보전을 하고 있다. 어쩌면 상조 시장에서 살아 남기위한 한 방편일진 몰라도 고객과 상조영업자 대부분은 이러한 얄팍한 효원의 태도를 익히 알고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국내 유수 뉴스통신사와 보도자료 제공 계약 후 공격적 홍보

그런데 금년 7월말 경 갑자기 국내 모 메이저 일간지 인터넷 판에 언론 보도 자료를 제공 하면서 고객들과 상조 종사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결국 메이저 일간지에서 효원 자신들을 특별히 취재해서 기사화를 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정보로써 해당언론사와 계약에 의해 고비용 지급 시 계약자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 기사화 해 주는 것으로써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광고게재를 통한 편법의 홍보 기사도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효원라이프 상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7일자 상조/장례 페이지에 "효원라이프 '언론보도자료 홍보' 지나쳐"라는 제목으로 효원라이프상조가 편법을 이용하여 고비용을 지출하며 언론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를 진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효원라이프 상조가 진행해온 언론보도자료 홍보는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진행하고 있고 편법이 아니며 타 홍보매체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입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의 집계와 동떨어진 재무현황자료를 인용하여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효원라이프상조가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홍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진행한 홍보는 모두 홍보심의를 필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대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조사 없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정확한 조사 없이 유추한 사항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를 진행하여 효원라이프상조의 브랜드 이미지와 회원탈퇴를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주)효원라이프 상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7일자 상조/장례 페이지에 "효원라이프 '언론보도자료 홍보' 지나쳐" 라는 제목으로 효원라이프상조가 편법을 이용하여 고비용을 지출하며 언론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를 진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 방식은 현재 통용되는 광고 기법 중 하나로 오히려 TV 광고 등에 비해 저렴한 홍보수단이며, 편법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효원라이프 상조에서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자산 총액이 79억 여원이고, 2007년도 매출액이 143억 여원, 2008년 말 현재 상시 종업원 수가 85명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16일부터 2009년 2월 17일까지 1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상조뉴스〉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상조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상조뉴스 : 『효원라이프 상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과의 전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GTB-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GTB-TV : 「뉴스820」 프로그램 『터널 파면서 물 끊겨』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21일 20:20)

내 용 : 겨울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영월지역에 한 마을은 터널 공사 때문에 물이 끊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 달 가까이 위생처리가 제대로 안된 물을 마셨는데도, 철도공단이 약속한 관정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략)

▷주민 : "그 물을 한 달동안 먹었다. 너무 이상해서 샘물에 가봤더니 거머리가 가득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참다 못한 주민들은 영월군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공단측에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대체 용수를 개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물이 끊긴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관정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 "설 끝나고 한 번 더 관정개발을 해보고, 안되면 기존에 쓰던 물을 생활하기 편하게 공급하겠다."

주민들은 먹는 물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가 올 농사철에 어떻게 물을 대야 할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

신청인이 주식투자로 3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이 작년 금융위기 시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 승 덕 (국회의원)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고승덕 의원 주식투자 3억 대 손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8일자 3면)

내 용 : 주식 전문가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해 두세달 만에 마이너스 40%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던 국회의원 및 직계가족들이 대부분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및 직계가족들은 행정안전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다는 결정을 통보받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승덕 의원, 금융위기로 주식 손실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8일자 종합면에 "고승덕 의원 주식투자 3억대 손실"이라는 제목으로 "주식 전문가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해 두세달 만에 마이너스 40%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던 국회의원 및 직계가족들이 대부분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승덕 의원은 작년 금융위기로 주식투자에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으며, 보도된 비상장주식은 2000년 이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 재산등록시 액면가 신고 원칙에 따라 손실이 신고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세계일보 : 『고승덕 의원 "지난해 주식투자 손실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9일자 홈페이지)

내 용 :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고승덕 의원이 지난해 두세달 만에 마이너스 40%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1월 28일자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 "손실을 본 주식은 2000년도 취득해 IT버블 붕괴로 2000년도 후반 자산가치를 거의 상실한 비상장 주식으로, 그동안 사실상 명의만 보유하고 있던 중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비상장인 해당 주식들을 지난해 7월 23일 재산등록 때 관련 법에 따라 주식의 실제 가격과 상관없이 액면가로 신고했고 그 주식들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 모두 처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에 따르면 고 의원은 2006년 투자자문사 설립 이후 주식에 신규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법으로 허용되는 펀드투자만 하다가 2007년 11월에 보유펀드도 처분했다.

고 의원은 "하락장을 예측하고 펀드를 처분했고 그 결과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신청인이 중국에서 개최한 '한국상품 특별판매전'이 국제무역사기극이라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9.

처리결과 : 각 각하

보도내용

충청매일 : 『中서 「한국상품전」 사기극』 제하의 기사 (1996년 7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충북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2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충청매일
충청북도 홍덕구 운천동 962번지
대표이사 변 주 연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충청매일 1면 상단에 [별지]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1996년 7월 17일자 기준)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의 2배로 한다.

2. 위 1항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보도한 횟수와 동일한 횟수로 연일 이어서 보도하되, 신청인들의 고향인들이 볼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정면 사진을 명함 크기로 동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주)○○관광 대표로 있던 신청인이 지난 96년 중국에서 개최한 '한국상품 특별판매전' 당시 저질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오십이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언론사라 함은 당해 언론보도를 게재한 언론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원 보도를 게재한 '충청매일'은 1997년 부도로 폐간 되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지목한 '충청매일'은 지난 1999년 창간된 한빛일보사가 2007년 4월부터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제호로, 제호만 동일할 뿐 '구 충청매일'과는 무관한 별도의 법인이므로 이는 '언론중재법'이 명시하고 있는 언론사라고 볼 수 없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 및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6.

〈별 지〉

〈2009충북조정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에 위그선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조차 없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3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13 참조)

보도내용

경향신문 : 『경인운하에 검증안된 '위그선' 추진』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9일자 2면)
내 용 : 정부가 경인운하에 위그선(Wing-In-Ground Effect Ship)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위그선을 선박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선박은 사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참여정부가 보류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추진되면서 예산낭비와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8일 "위그선에 대해 항공기인지 선박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됐다"며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그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현재 선박법·해상안전법 등 8개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위그선을 선박법에 기선으로 등록하면 유권해석만으로도 운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인운하에 도입하려는 위그선은 수면 위 5m 높이에서 시속 250~300㎞로 운항하는 200인승 짜리로 알려졌다. 경인운하는 수로가 좁은 만큼 접이식 날개를 적용할 계획이며 가격은 350억~4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 말로 계획하고 있는 경인운하 완공 즉시 운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배에 대해 운항 계획부터 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운하에 검증안된 '위그선' 추진"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종합 2면에 "경인운하에 검증 안된 위그선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경인운하에 위그선(WIG)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정부는 경인운하에서 위그선을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과 관련, 농성자가 망루에서 시너를 붓고 있는 동영상이 확보됐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동영상에는 사람이 찍혀 있지 않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검찰 '시너 붓는 동영상' 확보』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8일자 1면)
내 용 :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6명의 사망자를 내게 된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의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계단으로 붓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망루 밖에서 뜯어진 함석 사이로 촬영된 이 동영상에는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1차 진입했다가 후퇴한 뒤 2차 진입을 앞둔 시점에 농성자로 보이는 사람이 시너통을 들고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은 농성자와 경찰특공대가 3층과 4층에서 대치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망루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 "'망루 연소의 매개체는 (화염병 재료인) '시너'로 한정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를 지난 26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검찰 '시너 붓는 동영상' 확보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8일자 종합 A1면에 "검찰 '시너 붓는 동영상' 확보" "농성자 추정 인물, 화재 직전 망루 계단에 뿌려" 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계단으로 붓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사람이 찍히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액체를 붓는 행위도 찍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 (국회의원)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서울 : (1) 『친박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4일자 3면)
내 용 : 박근혜 전 대표의 '정중동'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 전 대표의 남자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과 사이가 심상찮다는 말이 나왔다. 친박 진영에서 조차 '둘의 관계가 소원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마포 한 호텔에서 가진 비밀회동이 친박 의원들에게 들켜 친박 진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도 모르게 만났다'는 등 '나홀로 행보'를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김의원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독자 행보는 계속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맹 수석과 만남 이후 '김무성 입각설'이 불거져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친박 진영에서는 김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친박 인사 1호 장관이 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각을 보내고 있다. (중략)

또한 최근에는 김의원을 둘러싼 음해성 소문으로 박 전 대표와 관계가 더 악화된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됐다.

소문의 내용을 보면 부산 출신의 태광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같은 동향인 김의원이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부산 정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 회장은 부산에서 IMF 위기때에도 신발 공장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며 "통상 정가 인사들과 만날 때마다 500만 원씩 현찰로 건네주곤 했다는 말은 공공연히 알려진 얘기"라고 전했다. 그는 김의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 현직 의원 2~3명이 더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후략)

(2)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5일자 2면)
내 용 : (전략)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들 각종 구설수 '곤혹'

그는 "사정기관에서 잇권 개입 의혹을 가지고 내뒷조사를 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최근 내사를 했다는 점이 공식라인을 통해 전해듣고 불쾌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박 캠프에서 근무한 인사들 중심의 모임을 만들어 대선 이후 캠프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친이 진영에서 '예의

주시' 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의 오찬 참석 여부를 두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까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무성 의원에 관한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4일자 "친박측, '정치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는 두 건의 기사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무성 의원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사실 자체도 없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인 없이 보도하여 김무성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향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4일자 "친박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및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 두 건의 기사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무성 의원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후원금과 관련하여 구설수에 오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시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과 김무성 의원에게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2월 16일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2009년 1월 4일자 조정대상 기사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2009년 1월 4일자 조정대상 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일요서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1월 4일자 및 1월 25일자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13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시가 사무용 집기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입해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오 세 훈)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서울시 사무집기 구매 비리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6일자 1면)
내　　용 : 서울시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집기를 구매하면서 특정 납품업체 제품만을 구매, 오 시장의 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시는 한 기업이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납품업체를 마치 다른 기업인 양 구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6년 취임한 이후 조직개편이 발생할 때마다 코아스웰로부터 의자와 소파, 책상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특히, 집기를 납품한 기업에 대해 서울시는 코아스웰, 한국오에이, 한국OA(주) 코아스웰 등으로 마치 다른 기업처럼 표기했으나, 이들 명의는 코스닥에 등록된 코아스웰 한 업체다.

코아스웰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5년 코스닥 등록하면서 코아스웰로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 결국 한 기업에서 납품한 것을 마치 세 개의 기업이 납품한 것처럼 된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집기 등을 구매할 때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오 시장의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6월 오 시장 취임 이후 시는 모두 167개의 실국장실 집기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코아스웰이 납품한 품목이 무려 118건에 달했다.

여기에 전자제품이 18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구용 집기의 79.19%를 한 기업에서 납품받은 셈이며, 이 같은 행위는 조직개편이나 일부 부서가 신설될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시 사무집기 구매 비리의혹"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6일 1면에 "서울시 사무집기 구매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사무집기를 구매하는데 비리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실 집기를 구매하였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설치한 불량 새시에 대해 교체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건업(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5.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서울중재14 참조)

보도내용

m b n : 「mbn뉴스」 프로그램 『LG화학, '불량새시' 설치 빈축』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8일 5:00 및 8:00)
내　용 : ▷새 아파트 입주 전에 발코니 새시 공사 많이 하는데요. 비싼 돈을 주더라도 브랜드 가치를 믿고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대기업에서 곳곳에 녹물로 얼룩져 있고, 흠집투성이의 '불량 새시'를 설치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기자 : 지난달 16일부터 입주에 들어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절반 이상 이뤄지는 상황 속에 입주민 박모 씨는 입주를 못하고 있

습니다. 이유는 새시 공사 때문입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9백만 원에 가까운 많은 돈을 주고 LG화학의 인테리어·자재 통합브랜드 '지인' 대리점과 새시 시공 계약을 체결했지만, 설치된 새시는 문제 투성이었던 것. 곳곳이 심하게 긁혀 있고, 흠집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새시의 경우 3센티미터에 가까운 큰 흠집이 나 있습니다. 더욱이 새시의 일부분은 아예 녹물로 얼룩져 있어 박씨는 새 것인지 조차 의심이 들 정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합니다.

▷박모 씨 /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스크래치나 녹을 보면 누가 봐도 중고지. 저걸 누가 신상품을 갖다가 설치해 놓았다고 보겠어요."

여기에 대해 회사 측은 중고 제품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새시의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LG화학 대리점 직원 : "중고품이라는 것은 나올 수 없고요…보완하는 컬러펜이라는 게 있고, 시트지가 따로 나와요. 그런 부분을 덮을 수 있게 나오는 제품 부분인데…"

이처럼 새시 설치 문제로 박씨와 회사 측이 갈등을 보이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모 씨 /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입주를 해야 하는데, 새시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사 측이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강○○ / 변호사 : "새것을 썼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녹이 슬거나 또는 보관상 문제로 인하여 긁힌 자국이 심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입주 지연이 이뤄지는 경우 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 :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명 브랜드라 하더라도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LG화학 불량새시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8일자 5시, 8시 뉴스에서 "LG화학 불량새시 설치 빈축"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불량 새시를 설치하고 교체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측은 "정확한 판단기준 없이 공사제품 전체를 불량제품으로 몰아가는 방송을 보도하여 이에 대한 반론을 표한다. 시공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마무리도 하기 전에 마치 불량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 보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불신을 갖도록 고의적 방송을 하였으며 소비자와 해당 방송사 직원간의 인맥관계를 이용하여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만 편파보도 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라

영화 포스터에 신청인 얼굴사진을 합성한 패러디물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이코노믹리뷰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5.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이코노믹리뷰 : 『보스상륙작전엔 매뉴얼이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3일자 42면)
내 용 : 〈패러디사진 생략〉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2009년을 맞아 재벌 3세들의 '보스상륙'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최근 단행된 기업별 임원인사에서 재계 3세들의 승진 소식이 잇따를 정도로 이들의 입지가 더 탄탄해진 탓이다.

그런 점에서 '불황'의 암초를 만난 국내외 경제를 감안한다면 재벌 3세들에게 있어 2009년은 '위기극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만하다. 여느 해보다 재벌가 3세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9년이 주목하는 재벌 '황태자'들. '경영권 승계'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엄연히 '따로 또 같은'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행보 속에서 3세들은 어떤 '경영수업의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코노믹 리뷰〉가 추적했다. (중략)

조○○ 대한항공 상무는 작년 8월 자재부에서 대한항공의 핵심부서인 '여객사업부'로 자리를 옮겨 부본부장으로 일하다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하며 대한항공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여객사업본부는 조양호 회장도 경영수업을 받을 당시 거쳤던 곳일 뿐만 아니라 고위 경영진들이 거치는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는 한진그룹의 '노른자 부서'다.

조 상무 이외에 조양호 회장의 맏딸인 조○○ 상무도 기내식사업본부에서, 조○○ 팀장은 통합커뮤니케이션실에서 각각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3세는 아니지만 '창업주 2세'인 보령제약의 김○○ 회장도 '한 우물 파기'로 성공작을 만든 케이스다.

부회장에서 최근 회장으로 승진한 그는 1986년 보령제약에 입사한 이후 전 부서를 거치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그룹의 혁신활동인 이노비알(inno-BR)을 주도하며 제약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편 경영수업을 그룹의 '주력부대'가 아닌 곳에서 데뷔하는 경우도 있다.

정○○ 현대유엔아이 전무는 그룹 내 IT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에서 본격적인 임원으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호텔신라 상무도 1995년 삼성복지재단 기획지원팀에서 경영수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조정대리인 변호사 김 ○ ○, 김 ○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주간아시아경제(이코노믹리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대표이사 박 성 태
조정대리인 편집국장 강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3월 19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3.

조정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 지급〉 □

군산수협 조합장인 신청인이 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한국수산경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수산경제신문 : 『현직 조합장, 상임이사 선거에 사전개입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2일자 11면)
내 용 : 현직 조합장이 상임이사 사전 선거 논란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G조합 L조합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상임이사 대신 친척인 S씨(전 직원)를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들을 동원, 강제적으로 추천서명을 받고 있어 지구별수협 임원선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L조합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선출문제는 조합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데도 이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의원들을 미리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선출은 수협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조(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부터 15일 사이를 두고 있는 데도 조합장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친인척을 뽑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관련 규정 이외에도 훈시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미리 찬반투표로도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관련규정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며 "L조합장의 행위는 사전 선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15일자 '현직 조합장, 상임이사 선거에 사전개입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G수협 L조합장이 조합장의 친척을 조합 상임이사에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개입이나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L조합장 및 해당 수협, 그리고 관련 대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한국수산경제신문 : 『군산지역 수산물 판매 총력』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4일자 수협면)
내 용 : 군산시수협(조합장 임○○·林○○)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상품화와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어업인 권익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산시수협이 수산물 상품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지난해 어업인들의 어획 부진에도 불구, 외지 어선 유치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판고가 전년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4백58억 원을 올린 것이 계기다.

군산시수협은 올해 상품화 방안으로 이곳의 특산물인 주꾸미 아귀 등 신선수산물의 가공비율을 높여 군납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어업인들이 직접 잡아 위판한 꽃새우와 꽃게 멸치 갈치 조기 등을 다양한 선물 용품으로 출시해 수협 자체 브랜드화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물량을 늘려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어업인들의 어가안정과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수협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체결조합을 인식하고 우선 경영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의 어려움에도 불구, 새만금사업이 시작되는 비응도항에 대규모 통합 위판장을 건립해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하는 등 어업인 편의시설 건립도 빼지 않고 있다.

새로운 위판장 건립은 현재 군산항의 항로가 비좁고 금강 하구둑 축조 이후 토사 퇴적으로 밀물

과 썰물의 간조 때 일정 수심을 확보할 수 없어 어선입출항이 어려워 기존 위판장의 위판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임 조합장은 "어려운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본 시설투자들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 같은 투자는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 조합장은 새만금 주변인 고군산도서지역이 육교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되면서 조합소유인 관리도와 방축도 53만평의 부지 가격이 덩달아 올라 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MOU 체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잘 관리할 경우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임 조합장은 올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흑자실현을 기필코 달성해 빠른 시일 내에 MOU 체제를 벗고 조합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교복업체가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불량 청소년 및 졸업생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충청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충북중재1 참조)

보도내용

충청일보 : 『불량 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공주시에 있는 특정 교복업체가 불량 청소년, 학생을 동원해 판촉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신학기 입학철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교복값의 인상으로 학부모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는 마당에, 특정 교복업체가 지난해 판촉을 잘했던 졸업생과 학교에서 잘나가는 학생(일명 짱)을 동원해 몰아오기식의 비양심적인 판촉영업 행태를 매년 일삼아 타 경쟁업체 및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중동에서 교복점을 운영하는 U씨는 "아이가 정해준 업체에서 교복을 안 사면 학교 다니기 어려운줄 알라며 일명 학교짱이 옷 속에 있는 상표(라벨, 텍)를 뒤집어 보고 위협을 주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하고 "특정 교복업체의 비양심적인 불법 영업 행태가 일부 학교에서는 극에 달해 재학생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특정업체의 교복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전했다.

또 신관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모 학교에 다닐 아이가 학교 발표하는 날 갑자기 학생들의 권유로 B교복점에서 교복을 맞추고 왔길래, 그 교복점에 전화를 해 항의, 취소하려 하는데 예약 취소하는 학생은 육백 명 중에 한 사람뿐이라고 하더라고요"하며 기막혀 할 말을 잃었다. (중략)

이에, 해당 업체의 W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째 고용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알바를 쓰지도 않았다. 교복을 사면 사후 A/S를 잘 해줘서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 말하고 "우리 제품의 질이 월등히 좋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타 업체를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불량 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3일자 사회면에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공주지역 내의 한 교복업체 W대표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W씨가 대표로 있는 교복업체에서는 불량 청소년을 동원하여 기사내용과 같이 영업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인 신청인이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생활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0.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KBS-2TV : 「뉴스타임」 프로그램 『서민의 희망 '무보증 소액 대출'』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9일 20:00)

내 용 : 오죽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면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셨을까.. 안타까운데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즉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가 어려운 이들에게 자활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중략)

기초생활수급자로 12년째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 씨도 여기서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42세) :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조이비전'에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회가 너무나 크구요. 더 업그레이드된 기회를 얻으려고 참여하게 됐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이 병 순
조정대리인 제작팀 차장 안 ○ ○,
변호사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3월 13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0.

조정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0.
처리결과 :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1 참조)

보도내용

중앙일보 : 『'고교생 시인' 60년 만에 등단』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5면)
내 용 : 계간 시전문지 '시인세계'는 제13회 신인작품 공모에서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991년생 노지연 양(18·사진)이 당선했다고 5일 밝혔다. 노양은 '세상의 모든 저녁'을 비롯한 열두 편의 작품으로 당선했다.

시인세계에 따르면 한국 문단에서 고교생이 정식 등단절차를 밟아 시인이 된 것은 1949년 17세에 '문예'지로 등단한 고(故) 이형기 시인 이후 60년 만의 일이다. 한국 문단의 역대 등단 최연소 당선 기록은 아동문학가 고 윤석중이 14세에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가작 입선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교생 시인 관련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6일자 우측 하단에 "고교생 시인 60년 만에 등단"이라는 제목으로 만 17세의 고교생 시인 노지연 씨가 고 이형기 시인 이후 60년 만에 탄생한 10대 시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보다 앞선 2006년, 당시 15세의 여고생 윤○○ 양이 월간지 〈문예사조〉 주최의 공모전에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2 참조)

보도내용

한겨레 : 『60년 만에 최연소 '고교생 시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1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19 참조)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17세 등단 시인 60년 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0 참조)

보도내용

매일경제 : 『고교생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3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16 참조)

보도내용

한국경제 : 『17세 여고생 최연소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3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Ⅵ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15 참조)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연합뉴스 : 『등단 10대 시인 60년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5일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결별을 선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야구협회 (회장 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야구협회, KBO와 결별…집행부 인사 단행』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스포츠면)

내 용 :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협회가 6년간 운영 자금을 대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결별을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강승규 국회의원을 새 회장으로 추대한 협회는 6일 아마추어 인사들 일색으로 새 집행부 인사를 단행하고 프로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 (중략)

협회는 이번 인사에서 김소식 부회장, 이규석 심판이사, 구경백 홍보이사, 이희수 육성이사, 이상일 KBO 총괄본부장 겸 협회 특임이사 등 프로야구에 잠시라도 몸 담았던 인사를 전원 물갈이하고 아마추어 야구 인사들로 메워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KBO 운영팀장 출신으로 협회 살림을 맡고 실무 행정을 이끌어 온 이상현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하면서 KBO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략)

일부 야구인들은 야구협회가 KBO의 지원이 없다면 2001년 정몽윤 전 회장이 물러난 뒤 KBO가 지원하기까지 약 2년 동안 겪었던 '사고 단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프로와 완전히 관계를 끊자는 의도가 아니냐. 기금 지원 계획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야구협회 집행부 인사 단행(또는 야구협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6일자 인터넷뉴스에 "야구협회, KBO와 결별… 집행부 인사 단행"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야구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결별을 선언하고, 프로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보도하였고, KBO 하일성 사무총장의 "프로와 완전히 관계를 끊자는 의도가 아니냐, 기금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야구협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으며, 하일성 사무총장도 결별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피신청인 : 디앤디포커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7 참조)

보도내용

디앤디포커스 : 『"동맹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한국 못 믿겠다"며 게이츠 미 국방장관, SCM 회의를 보이콧 하려 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호 40~45면)

내 용 : 좌파정부 10년간 와해된 한미동맹을 '복원' 한다던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설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이상희 - 게이츠 국방장관 간의 대화라인은 굉장히 서먹서먹해졌다. '미국과 친구 되기'를 외교안보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은 '더 멀어지는 친구'가 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사상 초유의 SCM 보이콧

지난 10월 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를 앞두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자신이 SCM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굳이 미 합중국의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과의 안보대화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를 비롯한 대사관의 정치·군사 관계자들은 총동원되어 "게이츠 장관이 SCM을 보이콧할 경우 한·미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오해를 받게 된다"며 게이츠 장관의 참석을 펜타곤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래서인지 SCM 회의 전 어느 시점에서야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애초 불참 방침을 번복했다.

이러한 정황을 필자에게 말해준 한 관계자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미동맹에는 유례없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직을 유지하게 된 게이츠가 이처럼 이상희 국방장관을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뜻밖이다. 그동안 틈만 나면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이 장관을 미국이 기피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매년 연례행사로 서울과 워싱턴이 번갈아가며 개최해온 40년 역사의 안보협의회(SCM)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군 통수지침을 받은 국방장관이 한반도 방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력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고위 협의체다. 여기에 미 국방장관이 불참하게 되면 SCM은 실체가 없는 '종이호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이츠 장관이 SCM에 불참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선 바쁜 장관들끼리 만나 논의해야 할 굵직한 안보 현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략동맹'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현안을 발굴한 것이 없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와 같은 너절너절한 의제들은 미 국방장관 차원의 전략적 의제가 아닌 주한미군사령관 차원의 실무적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 때문에 "괜타곤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이 아닌 주한미군사령관을 미국 측 대표로 참석시키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앞의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상징적 의미가 중차대한 회의에 장관이 참석 못하겠다고 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계속되는 기자의 추궁에 이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대화를 자기네들의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앞의 관계자는 말한다. 계속되는 그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미 간의 대화가 있으면 한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확대·과장하여 언론에 발표해왔다고 미국은 본다. 말로는 '전략동맹'이라고 뱉어놓고 실제로는 '전략'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한반도 방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고만 하지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SCM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략)

한국에 지원해 줄 탄약 없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이 부임한 직후부터 "핵심전력은 미국에 의존한다"며, 한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현존위협에 초점을 맞춘 무기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신의 국방관리 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여 이 장관은 4월 계룡대 워크숍에서 소위 '연계전력(Bridge capability)' 개념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 국방장관의 국방지침이 미국과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라는데

있다. '연계전력' 개념에 의해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사지 않기로 하면서 국방부 고위층은 언론에 "우리가 사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까지 내비쳤다. 이러한 미숙한 발언은 즉시 미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중략)

게이츠 장관은 이날 "한국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를 이라크로 차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11월에 아파치 헬기 아프간 차출로 무색해졌다. 더 놀라운 일은 6월 3일 방문한 게이츠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주선하려는 청와대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출국했다는 사실이다. 본지의 취재 결과 게이츠 장관은 대통령 면담 뿐만 아니라 지금은 퇴직한 당시 청와대 한 실세 비서관이 "만나자"는 전갈을 보낸 데 대해서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미국과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이라는 화려한 언사를 구사하는 이면에서 양국의 분위기를 보면 불신동맹, 갈등동맹이라는 현실이 더 피부로 와 닿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 국방장관, 제40차 SCM 보이콧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디엔디 포커스는 1월호에 "한미동맹 이상기류"라는 제목으로 첫째, 美 국방장관이 제40차 SCM을 보이콧하려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미 국방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 국방장관은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둘째, 한국 국방부 장관이 美側과 조율없이 "연계전력"개념을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연계전력"의 개념은 '06년 SCM시 한·미간 공식 합의된 사안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지난 6월 美 국방장관 방한시 청와대의 초청에 불응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청와대는 초청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 인선시 국방부에 한·미동맹 관련 지침을 하달하였음을 들어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청와대에서 그러한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적이 없는 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디엔디 포커스는 지난 1월호 "한미동맹 이상기류"라는 보도로 인하여 한·미 양국간 건강한 동맹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Ⅶ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스포츠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17 참조)

보도내용

스포츠칸 : 『고양예고 노지연 양 최연소 시인 등단』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Ⅷ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18 참조)

경향신문 : 『고교생 시인 60년 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4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5 참조)

서울신문 : 『60년만에 17세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인물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Ⅹ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6 참조)

세계일보 : 『'17살 고교생' 시인으로 등단』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사람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Ⅺ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3 참조)

보도내용

서울경제 : 『17세 여고생 시인탄생 고양예고 노지연 양』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37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XII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4 참조)

보도내용

국민일보 : 『17세 여고생 시인 나왔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구치소 부소장으로 재직 당시 채권채무 관계로 위장하여 수감자인 건설업체 회장 측에게 3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수백억 횡령혐의 구속됐던 건설사 회장 당시 구치소 부소장과 3억 원 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A12면)
내 용 : 교정당국의 전직 고위간부가 수도권의 한 구치소 부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속 수감돼 있던 중견 건설업체 회장 측과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중견 건설사인 S사 회장 홍모(49) 씨가 2003년 11월 회사 돈 2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있을 때 홍씨의 부인이 구치소 부소장 A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돈을 받은 뒤 경남 거제시의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2003년 초 홍씨 부인에게 넘겼다. 하지만 이 근저당권은 선순위 저당이 많아 실제 재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약 3900㎡ 규모로 당시 공시지가가 2억여 원이었지만, 선순위 저당권만 7

억 원이 넘게 설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근저당권 양도가 홍씨 측과 A씨의 돈 거래를 채권채무 관계인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홍씨 부부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구치소장과 지방교정청장을 지낸 뒤 퇴직했다.

검찰은 또 처남 이모 씨와 고교동창 박모, 원모 씨 등이 '홍씨가 입원치료와 상당 기간의 통원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홍씨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게 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씨 등은 "홍씨의 백내장이 재발해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가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하루 만인 2004년 2월 7일 홍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검찰은 최근 이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홍씨가 이들을 사주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홍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것은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야 알았으며 나와는 상관없다. 모두 박씨 등이 주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부인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에는 "박씨가 아내를 시켜서 한 일이며,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구치소 부소장 돈거래 의혹 검찰, 곧 수사종결 방침』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3일자 A14면)

내 용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전직 구치소 부소장 A씨와 중견 건설업체 S사 회장 측 사이에 3억 원이 오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S사 회장 처남에게서 빌린 3억 원을 1년 뒤에 갚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렇다 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신청인이 구치소 부소장으로 재직 당시 채권채무 관계로 위장하여 수감자인 건설업체 회장 측에게 3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건설사 회장, 구속 당시 구치소 부소장과 거액 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정치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XIII (반론 및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전일보 : 『10대 시인 등단 60년 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17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2월 6일자 17면 『10代 시인 등단 60년 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와 관련, 윤○○(당시 15세)양이 2006년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한 바 있어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9년 2월 20일자 14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대전일보가 통상적으로 싣는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 보도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사를 2009년 2월 21일까지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수정된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구치소 부소장으로 재직 당시 채권채무 관계로 위장하여 수감자인 건설업체 회장 측에게 3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OBS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OBS : 「뉴스1200」 프로그램 『구속됐던 건설사 회장, 구치소 부소장에 3억』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6일 13:06:18)
내 용 : 〈2009서울조정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OBS : 「뉴스1200」 프로그램 『전직 지방교정청장 무혐의 종결』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27일 12:00)
내 용 : 〈2009서울조정51의 신청후 보도문 내용 참조〉 □

광명시가 조형보도교 시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효 선)
피신청인 : 광명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광명일보 : 『광명시, 〈조형보도교〉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공무원들이 개입한 사실 곳곳에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7일 1면)

내 용 : 광명시가 개명교회와 광성초교 앞 등 2곳에 추진 중인 〈조형보도교〉 공사 시공업체인 'A'사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 회계과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입과 업체 전송 공문 명시 사항 불이행, 심지어는 조형보도교 공개입찰 선정 당시 입찰에 참여한 'B'업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인데도 'B'사를 상대로 담당사업부서인 도로과 공무원이 회유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광명시가 'A'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는, 회계과 모 공무원이 입찰 실시 이후 이의신청 기간중에 당시 3순위였던 'A'사 관계자를 만나서 당시 2순위 업체였던 'B'사의 실적에 대하여 메모해 주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A'사가 6월 30일(월) 광명시청에 보낸 "입찰에 대한 이의신청(00 제 2008-6-30호)"에서 확인되었다.

이 공문에 의하면 회계과 모 공무원이 'A'사 직원에게 'B'사의 실적에 대하여 메모를 전달하였고, 'A'사는 이 메모에 기초하여 자체 실사를 벌이고 ▷ 'B'사의 입찰 참여 당시 공동도급자의 육교실적이 46M 이상 실적이 2개가 되지 않고 ▷ 'B'사의 실적으로 제출한 육교의 형태가 '아치교'가 아닌 '트러스교'라며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즉, 회계과 모 공무원이 메모를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업체들과 광명시 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고, 결국 광명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유력한 낙찰 후보였던 'B'사의 공사실적에서 'A'사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유출하여 준 격이 되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A'사의 직원이 자료 요구를 하여 'B'사가 제출한 사업명을 메모해준 것 뿐이다. 또한 낙찰 이후에 메모를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중략)

한편 지난 6월 24일(화) 준공한 실내체육관 내의 안현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A'사가 철구조부문(일명 '강 공사') 공사에 관여 했다고 한다. 그래서 도급업체인 'T' 건설의 관계자에게 전화 확인을 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거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시 1개월 이내로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당시 'A'사는 하도급 업체 명단에 없었다.

이에 대해 광명시 담당 공무원은 "당시에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명시, 〈조형보도교〉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8년 12월 17일자 1면 『광명시, 〈조형보도교〉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공무원들이 개입한 사실 곳곳에서 드러나…』 제목의 기사에서 〈조형보도교〉 시공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A사가 실내체육관 내의 안현주차장 공사의 철구조 부문에 관여하였으나 신고명단에 A사가 없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2008카합166사건의 판결에서 광명시가 〈조형보도교〉 시공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광명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또한 안현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에서 A사를 미신고한 것으로써 광명시가 해당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광명일보 : 『광명시, 〈조형보도교〉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4일자 2면)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8년 12월 17일자 1면 "광명시, 〈조형보도교〉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회계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계약집행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예산 2천억 시대'를 자랑하던 구례군의 2009년도 실제 예산규모는 1,700억 원이라고 보도했으나, 2009년도 예산은 2,571억 원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구례군 (군수 서 기 동)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남도일보 : 『구례군 예산규모 연일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9일자 8면)

내 용 : 전남 구례군의 예산규모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구례군이 군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예산 2천억 시대'를 만들었다며 연일 자랑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군회계간 내부거래까지 포함돼 실제로는 예산규모가 2천억 원이 안된다고 반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기동 구례군수는 최근 '군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위해 읍·면을 순회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주민에게 '의도적'이라며 감정적으로 질타, 군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구례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서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21일과 22일 간전면·광의면을 방문,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일부 언론의 '실제 예산규모가 2천억 원도 안되면서 2천억 원이 된다고 한 것은 뻥이다'는 보도에 대해 진실 규명과 함께 '언론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자 서 군수가 답변에 앞서 이들의 질문이 '의도적'이라며 감정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군수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군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장에서 군의 예산 규모가 2천억 원을 돌파한 것이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대비표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략)

한편, 구례군의 2009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모두 합해 총 2천11억341만6천 원이지만, 전년도 이월 사업비 400억 원과 내부거래금인 회계간 전입금 등을 공제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1천7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구례군 예산규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지역면에 "구례군 예산규모 연일 도마위"이라는 제목으로 구례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모두 합해 총 2,011억 원이지만 전년도 이월사업비 400억 원과 내부거래인 회계간 전입금 등을 공제

하면 1,7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구례군이 제시한 자료 확인 결과, 군의 재정현황은 금년 일반·특별회계 예산 2,011억 원 이외에도 지난해에서 이월된 이월사업비(계속비·명시이월비)는 473억 원이며 기금회계는 87억 원으로 이를 포함한 예산현액 총규모는 2,571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1월 29일자 지역면 "구례군 예산규모 연일 도마위" 제하의 기사에서 구례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모두 합해 총 2,011억 원이지만 전년도 이월사업비 400억 원과 내부거래인 회계간 전입금 등을 공제하면, 1,7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구례군의 재정현황은 금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 2,011억 원 이외에도 지난해에서 이월된 이월사업비(계속비·명시이월비) 473억 원과 기금회계 87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총규모가 2,571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2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지역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서기동 군수, 진실…)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남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범 보도에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이 공개되어 피해를 받았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2TV : 「뉴스타임」 프로그램 『'법규 위반 차량' 노려 보험금 갈취』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11일 21:00)
내 용 : 법규를 어긴 차량 등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갈취한 폭력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또 사고 차량을 주인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보관료 폭리를 취한 레커차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김모 씨는 3년 전 실수로 일방통행 도로에 들어갔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건장한 남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김모 씨(보험사기 피해자) : "문신있고 뚱뚱하고 머리짧고, 3명이 같이 내리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협박을 한 사람들은 주로 평택에서 활동해온 폭력배들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두세 배 많은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견적료가 비싸게 책정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합의 문제로 병원을 찾은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박○○(보험사 특수조사팀) : "저희들이 가도 자기들의 문신을 보여준다든지, 속칭 병풍치기라고 있습니다. 자기 조직원들을 도열시킨다든지 협박을 하고"

5년 간 50여 차례 약 4억 원을 챙기다 결국 경찰

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4억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갈취한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 임모 씨 외 총 10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을 견인한 다음 보관료 2천만 원을 부풀려 받은 레커차 업주 등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 90여 명을 입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최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3월 9일까지 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800,000원 지급〉 □

신청인 농협이 벌꿀 정화를 핑계로 벌꿀 판매 및 홍보에 소극적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양분시켜 양봉인의 분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 ○)
피신청인 : 양봉협회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양봉협회보 : (1) 『'선무당이 장구 탓' 하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호 13~17면)

내 용 : (전략) 최근 양봉 농가는 4년 간 최악의 아카시아꿀 생산량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계 유지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FTA 다자간 협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양봉 농가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양봉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양 축에는 한국양봉협회와 한국양봉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두 축은 서로 틀어진 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양봉협회의 기본방향과 의무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본 틀을 짜고, 4만 양봉 농가들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정부차원의 큰 틀에서 생산농가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협회, 조합, 판매업체가 함께 공생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협회의 역할이다.

양봉조합 역시 양봉 농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경영과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봉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006년 10월, 양봉업계는 큰 위기를 맞았다. 언론에 터진 벌꿀 항생제 파동으로 벌꿀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생제 파동은 정부 또는 소비자에게 양봉산업의 밑바닥까지 드러내게 했다. 뒤늦게 식약청에서는 벌꿀에 대한 클로람페니콜 기준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양봉협회는 기존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검사에 더해 클로

람페니콜을 추가키로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됐다. 양봉협회의 양봉산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기기로는 실험에 어려움이 있어 좀 더 성능이 좋은 새로운 기계(LC/MS/MS)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식약청에서도 벌꿀의 클로람페니콜 시험기계(LC/MS/MS)를 이용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이 기계가 워낙 고가이어서 협회 차원에서 기계 마련에 고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미 FTA가 한참 진행 중이던 시기에 한국양봉협회를 방문한 전 박흥수 농림부장관이 양봉산물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안전한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약속을 믿고 농림부에 각종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양봉협회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위기의 원인에는 한국양봉조합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봉협회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클로람페니콜 시험기계(LC/MS/MS) 구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조합장은 농림부 관계자에게 한국양봉협회가 사양꿀 유통을 조작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양봉협회 및 양봉인에 대한 대정부의 신뢰도를 허물어뜨렸다.

이에 더해 벌꿀을 판매하는 농협 조합장과 회의하여 회의 결과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주 내용은 한국양봉협회에만 새로운 기계를 사주지 말고 양봉조합과 농협중앙회에도 지원을 바라며, 농림부에서 직접 벌꿀을 관리, 협회연구소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시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정부에게 아예 협회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장은 항생제 파동 발생 후 벌꿀 정화를 위해서는 현 벌꿀 규격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100ppb, 클로람페니콜 불검출로 갈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양봉협회에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해 국제적인 규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300ppb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양봉조합은 양봉협회가 판매업자들을 위해 규격을 낮추고 있다는 식으로 협회의 동기를 의심하고 모함하여 회원들에 대한 양봉협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클로람페니콜 규격과 관련해서는 양봉협회도 양봉조합과 동일하게 불검출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양봉조합은 클로람페니콜 검사기계(LC/MS/MS)로 검사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0.5ppb(LOD-Limit of Detection, 검출한계)를 벌꿀에 대한 클로람페니콜 규격으로 잘못 판단해 마치 양봉협회가 불검출이 아닌 0.5ppb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매도함으로써 벌꿀 규격과 관련, 회원들의 혼돈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조합은 현재 보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꿀 규격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농림부에 계속 건의, 협회, 양봉조합, 농림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회의 결과가 양봉조합에서 요구하는 벌꿀 규격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현재 벌꿀 항생제 규제는 총 9가지로 늘어난 상태다. 다른 축산물의 경우 하나라도 규제를 풀거나 추가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이러한 타당성 없는 발언은 협회와 양봉인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이다.

한국양봉농협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 벌꿀 정화를 명분으로 양봉농가와 협회,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대외기관 및 소비자단체에 양봉업계를 비방하는 사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전체가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물론 벌꿀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현실이지만 벌꿀 정화를 빌미삼아 생산농가, 판매업체, 협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합장은 이전에도 벌꿀 정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4만 양봉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를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후략)

(2) 『'숯이 검정 나무란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호 14~19면)

내 용 :한국양봉농협이 주장하는 벌꿀 정화는 그 명분이 타당하며 장기적인 벌꿀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양봉협회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여 왔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고 대외적으로 사양꿀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고, 대다수 양봉 농가와 판매업체까지 사양꿀 생산자 및 판매업자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양꿀은 양봉 농가 중 일부가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자도 있지만 로얄제리, 화분 생산과 꿀벌을 사육하는데 부수적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계획적으로 사양꿀을 생산하는 농가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사양꿀에 대해서는 판매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금년 1월부터 일반 잡화꿀 인증제를 폐지하고 일반 잡화벌꿀 판매자에게 사양벌꿀 첨가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가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글씨를 더욱 크게 표시해 보완할 계획이다.

양봉농협에서도 진정 정화의 의지가 있다면 비방에서 벗어나 벌꿀 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조합은 사양꿀 때문에 조합 꿀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매년 40억 원(약 40만포)어치의 설탕을 조합원에게 판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조합이 '벌꿀 정화, 벌꿀 정화'를 외치고 있지만 조합 이사가 조합장이 승인해 넘겨준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수입꿀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벌꿀 정화가 안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중략)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는 이 시기에도 양봉조합은 양봉인들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양분시켜 분열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양봉대회 유치단이 출발할 당시 인천공항 내에서 양봉조합에서 비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금일봉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도사업비 명분이었다고 하나 조합장 임의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한 지붕 두 가족 갈등 심화
• 내 용 : 본 협회보는 지난 11월호 13면~17면, 12월호 14면~19면에 "한 지붕 두 가족 갈등 심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양봉농협에 대한 실태를 알리겠다는 글을 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양봉농협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봉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마치 양봉농협인 것처럼 글을 쓰고 협회 검사업무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시키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으며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국제 규격이 300ppb라고 하였는데 유럽에서는 30~50ppb로 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데도 필자가 100ppb 주장을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협회가 사양꿀 유통을 조작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협회 위상이 정부로부터 떨어졌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2/3 ~ 4/5정도면 실제 검사한 량중에 사양꿀이 아닌가! 이러한 꿀이 규격기준을 통과한다고 품질보증이라는 필증을 붙여 준 것이 사실이며 전 농가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개선은 하지 않고 이를 얘기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누가 바른 소리를 하겠는가?

2006년 항생제 파동이 조합에서 60t을 구입하여 100드럼 정도 판 꿀 때문인 것처럼 했는데 2004~2006년까지 수입된 꿀이 3,000t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중에 1,000t 정도는 원산지를 붙여서 팔았고 나머지 2,000t 이상 대부분이 양봉 업계에 검사실이 협회밖에 없다보니 협회 검사를 통하여 판매했다고 보는데 조합꿀 30t 정도가 팔린 것이 원인 제공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조합은 원산지를 그대로 드럼으로 팔았고 잘못되었다면 사간 업체가 잘못한 것이고 협회가 검사 합격해 준 것은 국산으로 팔아도 좋다는 확인을 해 준 것인데 이 당시 꿀도 흉년일 때 검사량은 줄지도 않았는데 이는 설탕꿀과 수입꿀 원산지 위반한 것 때문이 아닌가?

수입꿀이 남은 것을 폐기 처분하기로 한 것을 조합장이 마치 다른 임원에게 임의로 팔아서 수입꿀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쓰여 있는데 이사회에서 폐기처분이 아닌 장부상에서 손실처리 하였으며 공업용으로 팔 곳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조합손실이 적도록 하라고 하고, 임원에게 파는 금액이나 누구라는 것도 의결을 받았는데 조합에서 부도덕하게 판 것처럼 글을 씀으로서 조합과 조합장, 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과대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조합 잡화꿀이 800드럼이 항생제 기준초과로 못 팔아 12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2005년에는 감로꿀이 사상 유례없이 잘 났으며 이 꿀은 전화당이 규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꿀이 많게 되는데 800드럼 중에는 순수한 꿀이지만 전화당 부족 되는 것이 3/4정도 이상이 되고 이 당시에는 항생제 기준이 없이 항생제 검사는 하지 않을 때라서 순도검사만 하여 수매를 하는데도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조합원에게 쉬쉬한다고 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숨기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항에서 조합장이 돈가방 메고 금일봉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조합장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회원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지도사업비를 세워 지원하고 있는데 조합원 해외 선진지 견학 때 아시아 양봉총회와 세계 양봉총회비 20~30만 원씩 주도록 예산을 세워서 잘 다녀오시라고 공항에 나가 인사하며 전달한 것을 마치 조합장이 임의로 조합원에게 돈 봉투나 뿌려 조합장 하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조합정책을 비판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협회는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설탕꿀 생산자나 판매업자에게 장관이나 훈장까지도 상신하여 포상하였는데 이는 조합원과의 갈등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수매한 꿀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마치 협회와 판매업자에게 처리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마치 조합꿀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는데 협회가 설탕꿀만 몰아내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 꿀이 모자라 판매하는데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설탕꿀만 생산 및 판매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결국 조합의 좋은 꿀이 판매하는데 역행하면서 도와주는 뉘앙스를 풍기게 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양봉협회를 조합 소유물인 것처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합이 소유물처럼 행동해 왔는가! 경기지회총회에서 한 말은 일방적인 지도자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며 조합장을 떠나 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장기 집권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면서 차기 선거에서 매운 맛을 보여주자고 주장하는 바라고 썼는데 이는 바른 소리를 하며 설탕꿀 봉인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는 조합장이 협회로서는 껄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호도하면서 조합장 제거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연 협회와 조합 두 단체가 어느 단체가 생산농가를 위해서 정도의 길을 걸어 왔고 정책에서 개혁을 해 왔는지 한번 토론회라도 가져보자고 건의하는 바이다.

장기 집권을 탓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라고 바른 소리를 하는 조합장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하여 원인 제거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양꿀이나 설탕꿀이 조합장이 떠들어 소비자에게 부각되었다고 하여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협회나 조합원이 4만 명의 양봉인 중 90%는 순수한 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라서 그들이 소비자에게 시중 판매되는 대다수 벌꿀이 불량꿀이라고 떠드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협회 봉인꿀 중 20%대가 순수한 꿀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설탕꿀을 봉인 붙여 주어 시중 벌꿀 중에 60%가 설탕꿀이 차지하다 보니 벌꿀은 소비자 스스로 못 믿는 식품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합의사항

• 제 목 : 한국양봉농협 반론보도
• 내 용 : 2008년 11월호 13~17면 「'선무당이 장구탓' 하나」, 동년 12월호 14~19면 「'숯이 검정 나무란다'」 제하의 각 보도에 대한 한국양봉농협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양봉농협 조합장이 협회의 검사실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시키라는 취지의 회의결과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고 보도됐으나, 농협에서는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시행한다면 공인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2)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수입 꿀에 대해 농협 이사회가 폐기 처분을 승인했는데 농협 임원이 이 꿀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농협 이사회에서는 수입 꿀에 대해 폐기 처분이 아닌 '손실처리'했고, 조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업용으로라도 판매하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3) 조합의 잡화꿀 800드럼이 항생제 기준 초과로 팔지 못해 12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했으나, 800드럼 중 일부만이 항생제가 검출됐을 뿐 3/4 분량은 순수한 꿀인데도 전화당이 부족하여 불합격된 것으로, 수매 당시에는 항생제 기준이 없어 순도검사만을 거쳐 수매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4) '2010년 아시아 양봉대회' 유치단 출국 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만 금일봉을 전달하여 조합과 협회 회원간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해외 선진지 견학시 지급되는 지도사업비에 따라 정당하게 지원한 것입니다.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양봉협회보〉 2009년 3월호 20쪽 이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8년 12월호)의 부제목크기("양봉조합 16년 장기집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으로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www.korapis.or.kr〉의 '양봉협회보'에 PDF 파일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양봉협회보 : 『한국양봉농협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호 1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상용화 기술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에너지마스타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물이 '불'로 변한다』 제하의 보도

내　　용 : 물로 연료를 만들었다는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170억을 모았습니다. 검찰이 과연 정말로 물로 불을 만들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 전북 완주에 있는, 물로 불을 만든다는 업체입니다. 가스렌지 위에 물이 들어있는 연료통이 있는데, 손잡이를 돌리자 가스불꽃이 올라옵니다. 업체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를 이용한 불꽃이라고 자랑합니다.

▷사장 : "이거 일반 우리 먹는 수돗물입니다. 먹는 수돗물이에요. 이 물이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기자 : 업체는 물로 가동되는 보일러와 온풍기, 수소 자동차를 곧 시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장 : "지금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런 걸로 까불어 대는데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되죠. 탄소배출권도 사야되잖아요. 지금 이 기술로 해결되는거야"

▷기자 : 이 업체는 현재 전북 과학연구단지안에 축구장 5개만한 땅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내세우고 있는 근거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전기연구원의 인증이 있고, 여기에다가 카이스트가 선정한 친환경 에너지 10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농민이나 영세상인 2백명에게서 170억 원을 끌어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농민 :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 아닙니까, 이거보고 안 믿겠습니까?"

▷기자 : 그런데 전기연구원은 업체가 광고하는 그 기계를 인증해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기연구원 : "오해하게끔 돼 있고, (그쪽에선) 그걸 악용하고 있고"

▷기자 : 카이스트측은 심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있어 에너지 10대 기업에 최종 선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스트 : "환경부장관상부터 시작해서 상을 무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게 영향을 좌우했고 실제로, 제품이 확실하다,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거기서 기업에서"

▷기자 : 이런데도 업체 사장은 물 연료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장 : "우리 지금 특허 등록된 게 5개입니다. 출원된게 4개 또 있어요.이게 또 등록됩니다."

▷기자 : 학계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며 불가능하고 지적했습니다.

▷홍성안/KIST수소연료전지개발단장 : 열역학 법칙을 넘어서는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의 하나 그게 맞다면 노벨상을 10개는 받아야죠"

▷기자 : 검찰은 오늘 진보신당이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 용 : 2008년 11월 17일 저녁 9시 뉴스에서의 방송내용 제목 : "물"이 "불"로 변한다는 제목에서 업체가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긴 수소로 보일러, 온풍기, 수소자동차를 곧 시판한다고 방영하였으며, 업체가 농민, 영세상인 등, 투자자 200여 명으로부터 170억 원을 모았다고 보도하였으며, 본 기술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상업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하여 업체가 상업화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농민, 영세상을 현혹하여 170억 원을 모아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업체에서 수소자동차를 곧 시판한다고 한 적은 없었으며, 농민, 영세상등 200여명으로부터 170억 원을 모은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업체는 대리점, 총판 보증금의 계약금조로 118명에게 2,729,100,000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보도된 170억 원의 피해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업체의 기술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상용화될 수 없다고 보도한 것은 과학적 사실 규명 없이 보도된 것입니다. 업체는 현재 고발되어 경찰청에서 조사 중인데 업체 및 관계자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보도함으로써 업체 및 관계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00원 □

신청인 회사가 언로를 통제할 목적으로 기자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익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8.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한겨레 : 『KBS, 도 넘은 '언로' 통제』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1일자 16면)

내 용 : 〈한국방송〉이 기자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고 출입기자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안팎으로 '언로' 차단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은 지난 6일 보도본부 내부 보도정보게시판을 전격적으로 실명제로 전환해 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율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은 지난 6일 사내 보도정보게시판에 올린 '익명 게시판의 실명제 전환 공고'를 통해 "최근 익명성에 기댄 비방과 욕설, 인권 침해적인 글들이 난무함으로써 케이비에스(KBS) 보도게시판은 본래의 설치 목적은 사라지고 '편 가르기의 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실명제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필규 한국방송 기자협회장은 "보도본부 게시판은 애초 기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기자협회가 요구해 만든 것이며 그동안 대다수 글이 익명으로 올려졌다"며 "기자들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명제로 전환하고 찬반투표 기능까지 없앤 것은 전횡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이 민회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글을 올리도록 방침을 정해, 10일까지 100건 가량의 글 가운데 '민필규'라는 아이디로 95% 이상 올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본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기자들의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협회장과 만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 2. 11. "KBS, 도 넘은 '언로' 통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9년 2월 11일자 "KBS, 도 넘은 '언로' 통제"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방송〉이 기자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등 안팎으로 '언로' 차단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가 보도본부 기자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한 취지는 익명 게시판의 폐해(비방, 욕설,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를 시정하여 기자 게시판 본래의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일 뿐, '언로' 차단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KBS 관련 책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BS의 정책을 왜곡 보도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3월 18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4.

〈별 지〉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월 11일자 "KBS, 도 넘은 '언로' 통제"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국방송공사는 게시판의 실명제 전환은 언로 차단 목적이 아니라 비방, 욕설, 인권 침해 등의 익명 운영의 폐해를 시정하여 게시판 본래의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3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제작·납품한 철도용 체결장치가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팬드롤코리아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고속철, 금간 침목 위 레일을 시속 300km로 달리나』 제하의 사설 (2009년 2월 17일자 A31면)

내 용 :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인 대구~부산 레일 부설공사에서 콘크리트 침목 일부가 금이 가며 갈라졌다. 열차와 레일 무게를 떠받치는 침목이 파손되면 레일이 뒤틀리고 시속 300㎞로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 7조원이나 들어가는 고속철의 안전성에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놓인 침목 15만3000여 개 중 금이 간 것은 332개이지만 모든 침목이 위험한 상태다. 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체결(締結)장치를 침목에 붙들어 매는 부품 매입전(埋入栓)이 모두 불량품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엔 매입전에 방수물질을 쓰게 돼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아 빗물이 스며 들어갔고, 날씨가 추워지자 고인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져 침목에 금이 갔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 침목도 언제 갈라지고 깨질지 모른다. (중략)

금간 침목과 별도로 철도시설공단이 2단계 구간에 쓸 체결장치로 선정한 영국 팬드롤사(社) 제품도 시속 300㎞ 고속철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도 2007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라 궤도 비틀림과 레일 손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경부 고속철 레일 체결장치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7일자 사설 "고속철, 금간 침목 위 시속 300km로 달리나"에서 "경부고속철 2단계 체결장치로 선정한 영국 팬드롤사 제품도 시속 300km 고속철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도 2007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라 궤도 비틀림과 레일 손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팬드롤 사는 "팬드롤 체결장치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의 시속 300km이상으로 운영되는 고속철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부 고속철 2단계에 적용된 팬드롤 SFC(Single FASTCLIP) 체결장치는 콘크리트 궤도용 체결장치로 개발된 제품으로 한국 고속철도 성능 기준을 만족할 뿐 아니라 시공성, 유지보수성에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제품임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입증받아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지난 17일자 『고속철, 금간 침목 위 300km로 달리나』 제하 〈사설〉 관련, 팬드롤사 체결장치는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시속 300km 이상 고속철에 사용되고 있고, 2007년 감사원의 안전성 입증에 대한 지적은 2008년 2월 '궤도재료적합성검토위원회'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여 감사원에 보고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6일까지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반론보도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제목의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제작·납품한 철도용 체결장치가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팬드롤코리아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부실시공 예고된 설계… '인증서' 조작의혹』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16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5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5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KBS-1R : 「뉴스와 화제」 프로그램 (2009년 4월 9일 08:00)
내 용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침목에 금이 간 원인에 대한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콘크리트 침목에 물이 스며들어 얼어붙으면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고속철 27km 구간에서 콘크리트 침목 1,200개 등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빙압에 의해 침목에 금이 갔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침목과 체결 장치를 연결하는 부품인 매립전에는 방수성 소재를 넣어서 물이 흡수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물을 흡수하는 흡수성 소재를 사용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달 말까지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매립전을 제외한 침목이나 체결 장치 등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2007년 분당 샘물교회 봉사단을 지원했던 신청인 단체가 최근 또다시 분쟁지역인 '다게스탄'에 목회자들을 보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단체는 분당 샘물교회 사태와 무관하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터콥선교회 (대표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1) 『한국 개신교 신도 다게스탄行』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7일 19:21)
내 용 : 한국 개신교 신도들이 러시아 내 위험지역인 다게스탄 공화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모스크바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44명의 목회자와 신도들의 러시아 입국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게스탄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외무부에서 즉각 위험 지역에서 나오도록 경고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종교 단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체육부 등 관련 부처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 한국대사관도 10여 명의 목사를 포함한 이들 목회자가 지난 11일 모스크바에 입국했으며 다음날 버스를 통해 다게스탄 등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선교가 아닌 봉사활동이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1, 2차 독립 전쟁을 치른 체첸공화국에

인접한 다게스탄은 최근 들어 카프카스 지역으로의 세력 확대를 시도하려는 이슬람 반군이 지방과 연방 관리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다. (후략)

(2)『개신교 '공격적 선교' 논란 재연』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0일 21:44)
내 용 : 개신교계의 한 선교단체가 겨울 방학을 맞은 학생과 휴가를 낸 직장인들을 꾸려 해외의 위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단기 선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묵은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신교계 인터넷 포털 뉴스사이트 '뉴스 앤 조이'가 지난 17일 러시아 내 위험 지역인 다게스탄 공화국에 간 목회자와 신도 등 20여 명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이후 네티즌들은 20일 오후까지 이 기사에 댓글을 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게스탄 공화국은 작년 10월 이슬람 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경찰 1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지난 수년간 테러와 폭력이 빈발해 여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과 관련된 선교단체 '인터콥'의 관계자는 "정부의 경고 공문을 받고 이들이 지난 18일 현지를 떠나 현재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며 "조만간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다게스탄 관련 일부 기사 '편파 보도'로 밝혀져
• 내 용 : 본 뉴스통신사는 인터넷 뉴스홈페이지 세계면에 (2009년 1월 17일자 "한국 개신교 목회자 44명 다게스탄 행", 1월 20일자 "개신교 '공격적 선교' 논란 재연"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콥 선교회의 다게스탄 봉사팀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터콥 다게스탄 봉사팀은 목회자들 44명이 아닌 일반인 22명이었으며, 인터콥 선교회가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것은 '경고' 공문이 아닌 '권고' 공문이었고 또 팀은 이 권고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게스탄에 있었으며, 인터콥 선교회는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된 교회를 지원한 단체가 아니며, 다게스탄은 위험하기만한 지역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인터콥 선교 활동에 관하여 후속보도하기로 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그 이행기한은 2009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 인터콥 선교회가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것은 '경고' 공문이 아니라 '권고' 공문이었다는 점
• 인터콥 선교회는 아프간 피랍사태와 관련된 교회를 지원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
• 인터콥 다게스탄 봉사팀 44명은 목회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러' 다게스탄과 한국의 인연』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 10:00)
내 용 : 러시아 내 최대 분쟁 지역으로만 알려진 다게스탄 공화국이 고려인들과의 오랜 교류와 한국인들의 숨은 봉사활동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도 반군과의 교전이 끊이질 않는 그곳이 이처럼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한국민은 별로 없다.

특히 지난 1월 한국의 기독교 단체인 '인터콥'을 통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한국의 기독교 신자 22명에게 다게스탄은 더는 남의 나라가 아니었다. (중략)

척박한 중앙아시아 땅에 먼저 정착한 고려인들은 다게스탄 강제 이주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1957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다게스탄인들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했다.

그들은 고려인들을 초청해 농사짓는 방법까지 익히면서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인의 민족성을 새롭게 알게 됐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들을 무조건 신뢰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였다"고 말했다. (중략)

인터콥은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

한 한국 봉사단체 피랍 사건과 관련, 당시 샘물교회 봉사팀을 조직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샘물교회 측도 자신들과 인터콥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인터콥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세계 각국의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한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과 관련, 인터콥은 다게스탄이 우리 정부의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외교통상부로부터 다게스탄 입국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터콥 관계자는 "'경고'가 아닌 '권고' 공문이었다"면서 "현지인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고 귀국도 가급적 서둘렀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성폭행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인 신청인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피신청인과 인터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닷컴 : 『민노총 '성폭력 파문' 확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5일자 사회면)

내 용 : 민주노총의 한 핵심 간부가 이석행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동료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해당 간부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민주노총이 피해자를 압박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키로 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민주노총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간부 K씨가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제보가 민노총에 접수됐으며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K씨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피해 여성은 다른 조합원의 부탁을 받고 당시 경찰 수배로 도피 중이던 이위원장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해 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K씨를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 노조에도 제명을 권고했다"며 "제명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명할 계획"이라며 사태의 진화에 나섰다.

또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조직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노조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인 간부 K씨를 내일 중으로 검찰에 형사 고소하는 한편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 고위간부들은 피해자에게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위원장이 체포된 뒤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된 피해 여성에게 위원장의 도피 과정과 은신처 제공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노총 성폭행 관련 피해자 대리인

의 기자회견 개최 관련"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사회면에 "민노총 '성폭력 파문' 확대"라는 기사에서 "피해 여성의 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인 간부 K씨를 내일 중으로 검찰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그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민주노총 성폭행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인 신청인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피신청인과 인터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성폭행 시도 뒤 사흘간 따라다니며 이석행 숨겨준 경위 허위진술 강요』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0일자 10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10일자 A10면 "성폭행 시도 뒤 사흘간 따라다니며 이석행 숨겨준 경위 허위진술 강요" 기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취재기자와 만나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3월 10일까지 (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내지 알림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배후이며 폭력 조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파크앤시티
(대표이사 이 ○ ○) 외 2인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21 : 『용산의 사각동맹』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3일자 14~19면)

내　용 :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정한 '배후'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 〈한겨레21〉은 세입자와 경찰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용산구 재개발 4구역 일대에서 폭력조직, 재벌 계열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지역 토건세력이 한데 뒤엉켜 각종 불법·탈법을 벌인 현장을 추적했다.

주민을 대표해야 할 재개발조합은 폭력조직 출신으로 용산구 의원을 지낸 인물에게 정비사업 용역과 시행을 맡겼다. 정비사업 용역업체(정비업체)는 각종 인허가 신청과 사업 진행을 담당하는 컨설팅 회사로, 재개발의 핵심 주체다. 때로는 시행사를 겸하기도 한다.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은 문제의 정비업체인 (주)파크앤시티가 시장 관행에 반하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용인했다.

(주)파크앤시티 회장이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검·경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철거용역 업체를 운영하면서,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용산구청이 정비업체 및 철거업체와 맺은 '끈끈한' 인연의 일부도 새롭게 드러났다. 세입자 철거와 무관하다고 강변해온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삼성물산은 재개발조합이 철거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기로 했다. 개발 추진 기간 내내 재개발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던 삼성물산 직원은 지난해 철거용역 업체인 호람건설로 자리를 옮겼다고 다수의 취재원이 증언했다.

폭력조직을 배경 삼은 정비업체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언들도 나왔다. 〈한겨레21〉은 용산구청의 전직 간부가 (주)파크앤시티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주)파크앤시티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단골로 드나들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 (중략)

폭력조직 출신 구의원이 정비업체 회장

(주)파크앤시티의 등기상 대표는 20대의 이아무개(29)씨다. 그러나 회사의 실제 운영은 그의 아버지 이아무개(56) 회장이 맡고 있다. 이아무개 회장은 어떤 인물일까? 범서방파에 속한 한 조직폭력배는 "이회장은 용산에서 힘을 쓰는 축인데, 감방에서 김태촌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고 말했다. 폭력조직 계보에 밝은 한 경찰 관계자는 "이회장이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술집을 운영했으며, 정치권 등에도 지인이 많아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안 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파크앤시티 등은 폭력조직이 아닙니다.

• 내　용 : 〈한겨레21〉은 지난 2월 23일자 제748호 표지이야기(제14~19쪽)에서 "용산의 사각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주)파크앤시티는 폭력조직이고, (주)파크앤시티의 실제 운영자인 이회장은 김태촌씨와 의형제를 맺은 조폭이며, (주)파크앤시티의 대표이사인 이회장의 아들이 바로 용산참사의 제3의 철거용역 업체인 모노에스엔이의 사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파크앤시티와 이회장은 조직폭력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회장의 아들인 (주)파크앤시티의 대표이사는 제3의 철거용역업체로 보도되었던 모노에스엔이의 사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한겨레21〉은 748호 '단독확인 용산커넥션' 기사와 관련해 전직 용산구의원·(주)파크앤시티 회장 이아무개 씨의 전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철거용역업체 모노에스엔이의 등재이사 명단을 살펴본 결과, (주)파크앤시티의 이회장 및 그 아들 이사장은 이 업체의 이사진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회장은 "범서방파 김태촌 및 목포파·동아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한 적이 없으며, 용산 4구역 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적이 없고, 허구의 명목으로 높은 용역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역통합 업무의 성공적 수행 등에 따라 통상의 재개발보다 다소 높게 용역비가 결정된 것으로 2007년 서울서부지검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장을 수사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한겨레21〉 2009년 3월 22일자 753호 '독자와 함께' 면에 상자와 음영처리하여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 및 형태는 〈한겨레21〉의 통상의 '바로잡습니다' 활자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16일 이내에 인터넷 〈한겨레21〉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조정대상 기사(제748호)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현재 제기한 형사고소 이외의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2일자 독자와 함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기관이 대전유일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이라는 점을 앞세워 용역계약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금강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유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4.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대전중재1 참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문화재발굴기관 믿는 구석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2일자 6면)
내 용 :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대전시 회계계약심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중략)

지난해 회계계약심사에서 감액된 부분은 당초부터 계상이 불가능했던 국내 여비 1680만 원과 보통인부 임금 2267만 원(이상 직접경비), 제경비 2690만 원, 학술료 6320만 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1374만 원 등이다. 발굴기관은 전문성이 전혀 필요치 않는 보통인부 임금을 1일 6만3,530 원으로 책정한 것을 비롯해 제경비와 학술료를 기준(문화재청 고시) 범위의 최대치를 적용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개공이 만약 시의 계약심사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에서 중대한 지적사항이라는 게 시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이 발굴기관이 제시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희소성 때문에 '귀한 몸'이 되신 발굴기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P발굴기관은 자신들이 제시한 설계금액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빠지자 도개공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더 이상 공기를 미룰 수 없는 도개공으로서는 결국 P발굴기관을 겨우 달래 당초 금액으로라도 이번에 계약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3억 10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전국에 입찰토록 돼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에 42개 발굴기관(대전 소재 1개)이 있지만 용역 의뢰를 하더라도 아예 답신조차 오지 않는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설령 발굴을 진행치 않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게 형성된 '지역카르텔' 때문에 지역업체 외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공공연한 이들만의 관행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화재 발굴기관 독과점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2일자 사회면에 "문화재 발굴기관 믿는 구석 있다?"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P문화재 발굴기관이 독과점에 '큰소리'를 쳐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의 문화재 발굴기관들이 공공연히 '지역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의 관행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전지역에서는 그동안 P문화재 발굴기관 설립 이전부터 타 지역 발굴기관들이 조사를 주도하여 왔기에 설립된 지 1년에 불과한 P발굴기관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비용산출 및 계약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전국의 발굴기관들이 지역 제한 없이 타 지역 발굴에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 소방도로 노선을 자신의 땅 인근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노선변경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양 규 (군의원)
피신청인 : 함안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함안신문 : 『소방도로 노선 변경 사전모의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3일자 1면)
내 용 : 군북면 중암리 시장을 관통하는 소방도로가 반대편 산비탈을 절개, 소방도로가 개설된 데 대해 의혹과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 2008년 7월 15일 3면 보도)

군북면은 2008년 5월 시장으로 진입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입구 도로변 주택 주인의 반대로 반대편 산비탈을 절개 소방도로 120m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당시, 변경된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그 주위에 군북면 ㅈ군의원의 땅이 있기 때문에 ㅈ의원의 입김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그 해 10월 경부터 모 건축업자가 원룸 40동을 신축하고 있어 사전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모(군북면 덕대리) 씨에 따르면 2008년 4월경 시장통 소방도로 개설 주민설명회에서 철거 해당 주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반대편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전제를 깔아 놓고 군북면에서 추진했다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동회의석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다음 2차 공사는 시장통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합동민원을 제기해 소방도로 개설의 부당성을 파헤칠 것이라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더구나 지난해 6월 군북 월촌 사도리 일원에 두산중공업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보상위원회를 설립, 보상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촉된 김모 씨가 ㅈ군의원과 동갑내기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회사 사원아파트를 월촌지역이 아닌 군북면 소재지에 건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역 모기관장에게 말을 해 이

말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월촌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월촌지역의 조모(63) 씨는 군의원이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 못하고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기름 한 방울 안나는 국가에서 월촌~군북간 거리가 10여 Km나 되는데도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회사원들의 주거지를 산업단지 주변에 건립하면 되지 월촌지역은 안된다고 폄하하는 발언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ㅈ모 의원은 취재진에게 월촌은 군북면이 아니고 외국이냐고 되묻고 있어 질문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소방도로 노선 변경 사전모의 의혹
- 군북시장 관통 당초계획 바꾸고 반대편에 개설 →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2월 13일자 1면에 『소방도로 노선 변경 사전모의 의혹』라는 제목 아래 군북시장 관통 당초계획 바꾸고 반대편에 개설이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가. 변경된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그 주위에 군북면 ㅈ군의원의 땅이 있기 때문에 ㅈ군의원의 입김 때문이라는 주장과 원룸 40동을 신축하고 있어 사전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나. 보상위원회를 설립 보상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촉된 김모 씨가 ㅈ군의원과 동갑내기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다. 군의원이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고 소지역주의 부추기면서,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회사원들의 주거지를 산업단지 주변에 건립하면 되지 월촌지역은 안된다고 폄하하는 발언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조양규 부의장은

가. 내용에 대해서

-당초 계획구간은 군북소로 2-26호선 (L=130m)으로서 시장통을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어려워 함안군에서 군북소로 2-30호선(L=760m)으로 변경한 것임. 본인 토지(군북면 중암리 135-1)는 변경된 도로 2필지를 건너 (떨어져)있으며 앞쪽은 기존 큰도로(증2참조)와 연접해 있어 불편사항이 없음.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로개설을 해 줄 것을 이야기 한 사실이 없음

나. 내용에 대해서

-군북일반산업단지(주)에서의 현지인 추천에 의해 함안군에서 위촉한 사무실 보조원이며 보상위원은 아님. 따라서 군의원 조양규와는 전혀 무관하며 선임 이후에 알았음

다. 내용에 대해서

-군북면 발전을 위하여 군북면 사도·월촌리 일원에 군북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이며, 지난 2008년 11월경 월촌초등학교 장학금 지급시 교장선생님과 대화 중 아파트(기숙사 등)에 입주할 종업원들이 도시계획 기반시설(학교, 의료시설, 주거공간 등)이 조성된 곳을 원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임. 한편 월촌지역은 안된다고 폄하 발언을 한 적이 없음.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3일자 1면 "소방도로 노선 변경 사전 모의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군북면 중암리 시장을 관통하는 소방도로가 반대편 산비탈에 개설된 데에는 군북면 ㅈ군의원의 입김 때문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ㅈ군의원은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도로 개설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보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정과 ㅈ군의원은 전혀 무관하며 사원아파트를 특정지역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조성된 곳을 입주민도 원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9년 3월 1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함안신문〉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군북 시장관통' 당초계획 바꾸고 반대편에 개설)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

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함안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합창단원들에게 입시생 과외를 연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레슨을 받지 않은 단원에게 근무 평가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강릉KBS-2TV, 1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강릉KBS-2TV : (1) 「뉴스타임-강원」 프로그램 『공정성 시비』 제하의 보도 (2008년 12월 12일 20:30)

내 용 : 강릉시립합창단 운영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의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립합창단 지휘자와 일부 단원들 간의 갈등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휘자 이모 씨는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입시생 과외를 자신에게도 연결시켜주고 과외비를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했다고 일부 단원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일부단원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레슨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단원들의 주장입니다.

▷A단원 (음성변조) :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5만원 받는다며…

권한을 가진 지휘자가 레슨을 하면 단원 위촉부터 평가까지 모든 권한이 지휘자에게 쏠려 있어서 불만이 있어도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고 단원들은 토로합니다.

▷B단원 (음성변조) : 한 번 평가를 받고 그 다음부터 (레슨을) 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해에 제가 경고를 받았어요. 반면에 지휘자 이씨는 모든게 단원들의 자발적 의사였고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모 씨 지휘자 : 지금 제가 서울에서 수험생 레슨을 한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받았겠지만 그런데 5만 원 받았다면 그것은 돈을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올 해부터는 지휘자가 주는 근무 평정에 따라 단원들의 재계약과 연봉이 결정됩니다. 상호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단원이 많습니다.

▷단원 (음성변조) : 왜 우리는 평가를 하면서 정작 지휘자는 왜 테스트를 안 하고 왜 매년마다 평가를 안하고 반주자도 마찬가지… 여기 다 밥줄 싸움이거든요.

수년째 이런 저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강릉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릉KBS-1TV : (2) 「뉴스9 - 강원」 프로그램 『공정성 시비』 제하의 보도 (2008년 12월 12일 21:30)

내 용 : 〈위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강릉시립합창단 공정성 시비에 대한 오보
• 내 용 : 본 방송은 2008년 12월 12일자 뉴스에 강릉시립합창단 지휘자 이모 씨가 일부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입시생 과외를 자신에게 연결시켜주고 과외비를 나누어가질 것을 요구했으며 레슨을 받지 않은 단원들은 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모든 내용이 일부 불만

이 있는 단원들의 악의적인 거짓 제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입시생 과외를 연결시켜주고 과외비를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레슨을 강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슨을 받지 않은 단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12월 12일「공정성 시비」제하의 보도에서 강릉시립합창단 지휘자 이모 씨가 단원 위촉 및 평가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에게 레슨을 받지 않은 단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일부 단원들에게 입시생 과외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과외비를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모 씨는 단원의 위촉 및 평가의 권한은 강릉시장 및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단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과외비를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3월 13일까지 KBS강릉의「뉴스9 강원」및「뉴스타임 강원」프로그램 말미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위 항의 내용을 진행자 중 1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시와 같은 속도로 낭독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강릉KBS-2TV :「뉴스타임-강원」프로그램『밝혀왔습니다』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1일 20:00)
내 용 :〈합의사항 참조〉

강릉KBS-1TV :「뉴스9-강원」프로그램『밝혀왔습니다』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1일 21:00)
내 용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하나로 마트 운영과 관련, 조합에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CJB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CJB :「8시뉴스」프로그램『폭력으로 얼룩진 충주모조합 대의원 대회』제하의 보도 (2008년 11월 28일 20:30)
내 용 : △앵커 : 오늘 충주축협의 대의원 대회가 폭력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로 마트의 부실경영이 화근이었습니다.

△기자 : 충주축협 임시 대의원 대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신모 대의원이 또 다른 대의원인 한○○ 씨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한씨는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충주축협 대의원 : "갑자기 데리고 나가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

△기자 : 한씨 측은 이번 사태가 이모 전무대행의 해임건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씨가 이 전무대행의 해임 이행 촉구안을 상정하려 하자 반대 측이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사태까지 불렀다는 것입니다. 충주축협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조합에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이모 전무대행에

대해 해직을 의결했지만 조합장이 해임을 미루면서 검찰 고발과 서명사태로 불거지는 등 내부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양○○ 대의원 협의회장 : "앞장서서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아예 미리 회의를 막으려 한 것이다"

△기자 : 이에 대해 신씨 측은 평소 자신을 비방하고 다니는 한씨와 대화를 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모 씨 충주축협 대의원 : "앉힐려고 하는데 나한테 대드니까 어디다 대드냐고 (밀었는데) 했는데 의자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해요"

△기자 : 한씨 측은 가해자인 신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충주축협의 내부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신청인이 하나로 마트 운영과 관련, 조합에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중부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5.
처리결과 : 취 하

중부매일 : 『충주축협, 대의원 총회서 폭력사태』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5,000,000원 □

신청인이 하나로 마트 운영과 관련, 조합에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5.
처리결과 : 취 하

동양일보 : 『충주축협 대의원 간 '주먹질'』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5,000,000원 □

신청인이 하나로 마트 운영과 관련, 조합에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충북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5.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9충북조정4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충북일보 : 『충주축협 총회 중 폭력사태』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하나은행이 고객 계좌에 돈을 무단으로 입출금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만든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8 참조)

보도내용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황당은행~멋대로 입출금, 고객 연체자 만들어』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23일자 금융면)

내 용 : 하나은행(대표 김정태)이 무단으로 고객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해 소비자가 연체자로 전락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이 고객의 통장에 돈을 멋대로 넣은 뒤 다시 인출해 멀쩡한 사람을 연체자로 만든 사례는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최근에도 인터넷 뱅킹 해킹으로 고객 돈 210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융시스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26) 씨는 지난 17일 하나카드 직원의 실수로 카드가 연체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씨는 카드 결제일에 맞춰 부족한 잔액을 입금하기 위해 16일 인터넷을 통해 하나은행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현금 2만2834원이 입금돼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나은행에 전화로 문의하니 이씨가 작년 12월 할부로 구입한 물품을 취소해 이월된 취소 수수료를 입금시켜 줬다는 것.

큰 의심없이 이씨는 이날 하나 비씨카드와 기업카드 사용액을 맞추어 63만여 원을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하나은행에서 입금한 돈이 다시 빠져나가 있었고, 이 때문에 2개 카드가 모두 연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 황당해진 이씨가 하나은행에 문의해 보니 "내부 시스템 오류로 2만 2,834원이 잘못 송금돼 있어 회수해 간 것"이라며 "(사과의 뜻으로) 영화표 2장을 선물로 주겠다"고 무마하려 했다.

결국, 하나카드에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고 연체된 비용은 이씨 명의의 하나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지만 기업카드의 연체기록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씨는 "통장에 입금된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전화해 이상 없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은행에서 내부 시스템 오류라는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현금을 입출금해 가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은행 시스템 오류로 고객을 억울하게 연체자로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또 시스템 오류 문제를 영화표 두 장으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하나카드의 실수로 한동안 카드거래도 못하고 하루 종일 통화만 하면서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피해를 영화표 2장으로 얼렁뚱땅 무마하려는 하나은행 태도에 질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대

금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 간에 오해가 생겨서 발생된 문제"라며 "현재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 꼽히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하나은행 콜센터 민원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금융면에 [제목 : 황당은행~ 멋대로 입출금, 고객 연체자 만들어] 기사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돈을 입출금하여 고객을 연체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입출금은 BC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제방식에 대한 안내도 이용대금청구서에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청구된 신용카드 대금은 BC카드사의 결제방식에 근거한 방식으로 하나은행에서 청구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BC카드사에서 청구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으며, 동 방식으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및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신청인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코스닥 상장법인 GBS가 파산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언론사는 GBS 계열사가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강원방송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저녁뉴스」 프로그램 『코스피 상장 GBS 금융위기 후 첫 파산』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22일 19:00)
내 용 : 강원방송을 계열사로 둔 코스닥 상장법인 GBS가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12부는 "GBS의 총자산이 358억 원인데 반해 총부채는 417억 원에 이르러 부채가 59억 원 초과하는 상태"라며 파산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GBS에서 600만 달러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ABN 암로 뱅크가 작년 11월 법원에 GBS의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번 파산선고로 GBS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강원방송은 GBS 계열사가 아님(또는 강원방송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22일 7시 저녁뉴스에서 "법원, 코스피 상장사 GBS 파산 선고"라는 제목으로 강원방송을 계열사로 둔 GBS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원방송은 GBS의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징광저수지 준설공사비를 타 지역에 비해 과다 지급했다고 보도했으나, 각 지역의 공사여건에 따라 단가가 다르며, 공사비는 적법하게 산정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사장 조 ○ ○)
피신청인 : 남도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남도투데이 : 『"공사비 5배 이상 부풀려 지급"』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3일자 15면)
내 용 : 한국농촌공사 보성지사가 벌교읍 징광저수지 준설공사 준설토 불법매립 사실에 이어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를 타 지역 대비 5배 가량을 부풀려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촌공사 보성지사는 지난해 말 약3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벌교 징광저수지 준설공사를 했다.

하지만 준설공사가 저수지 옆면에 준설토를 붙여 쌓아놓아 위험하기 그지없고 또다시 준설토가 저수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준설토 사토장으로 사용한 임야와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 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준설 공사비를 부풀려 "건설사 살찌우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보성지사가 발주한 징광저수지의 경우 1㎥를 650m 운반하는 운반비로 2,264원을 책정 지급했다.

그러나 고흥지사의 경우 1,132원, 강진·완도지사의 경우 1,162원이며 인근 순천지사의 경우 447원을 지급했다. 작업여건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성지사가 지급한 징광저수지 준설토 운반비와 순천지사의 운반비를 비교하면 징광저수지 준설량 86,469㎥운반비로 1억9천5백7십여만 원을 지급했고 순천지사는 3천8백6십여만 원으로 약1억 5천7백여만 원을 과다 지급하여 특정 건설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건설사와의 '유착'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사비만 5배 이상 부풀려 지급"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사회면에 "공사비만 5배 이상 부풀려 지급"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징광저수지 준설공사비를 5배 이상 부풀려 지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저수지 준설공사비를 부풀리지 않고 적법하게 산정 지급하여 특정 건설사와 '특혜'나 '유착'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인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킨 것에 대해 본사 임직원은 사과합니다.

취하 후 보도문

남도투데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6일자 2면)
내 용 : 본지에서는 지난 2월 23일자 사회면에 "공사비 5배 이상 부풀려 지급"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말썽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성 징광저수지 사토 운반비는 도로 여건과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한 것으로 턱없이 부풀려 지급한 것이 아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남도투데이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거제빙등축제 추진위원장이었던 신청인이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새거제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새거제 : (1)『희한한 사기극으로 막 내렸다』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1면)
내 용 : 대한민국 빙등 대축제를 거제에 유치한다며 요란하게 떠들던 'FUN FUN 거제빙등축제' 가 희한한 사기극으로 바뀌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다. 여름에 개최한다던 빙등축제가 겨울이 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축제준비를 위해 설립됐던 (주)페스티발 거제랜드(대표 황모 씨)는 지난 10월초 폐업해 버렸다. 지난 5월 삼성호텔에서 거창하게 출범한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황모 씨)도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유야무야 돼 버린 축제추진이 사기극이라는 혹평까지 받는데는 축제추진 관계자들이 법인 구성 전 '월 5%의 고이자를 주고 3개월 뒤 갚는다' 는 조건으로 박모(여) 씨로부터 준비자금 5억 원을 빌려(추진위 관계자는 투자약정금이라고 함) 쓰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6개월째 갚지 않는 등 적잖은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빙등축제 준비관계자에게 준비자금을 빌려준 뒤 아직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박모(여) 씨 등 진정인에 따르면 축제추진위원회 황모(추진위원장)·정모(집행위원장)·유모(실행위원장) 씨 등이 거제빙등축제 추진 법인이 설립될 경우 자신에게 일정지분(15%)과 함께 법인이사로 참여시켜 줄 것을 제의하며, 우선 준비자금조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지난 6월 23일 모 법무사 사무소에서 5억 원을 건네 줬다는 것.

진정인 박씨가 이들에게 5억 원을 선뜻 건넨 데는 월 5%의 고액 이자에다, 확실한 담보물건을 제시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고, 축제추진 운영위원장 직함을 주며 법인이사로 참여시킨다는 제의도 곁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박씨는 3개월 간 7,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금은 커녕 한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올 7월 열릴 예정이라던 빙등축제는 차일피일 미뤄지며 유야무야 돼 버렸고, 축제추진을 위해 설립했던 법인도 지난 10월 초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당초의 고액 이자 제시가 자신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다고 확신한 박씨는 이들에게 수차례 원금상환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서로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만남을 회피하거나 때로는 '법대로 하라' 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2)『거제빙등축제 사기극 황모 씨 본지 신○○ 국장 검찰에 고소』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5일자 1면)
내 용 : '펀펀 거제빙등축제, 희한한 사기극으로 막 내렸다' 제하 사회고발 기사(본지 12월 4일자 1면)와 관련, 축제 사기극의 주역이었던 황모 씨가 해당기사를 쓴 본지 신○○ 편집국장을 검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홍성원 검사는 지난 19일 본지 신○○ 편집국장에게 보낸 고소사건 접수통지에서 "황모(거제빙등축제 추진위원장) 씨가 피고소인(신○○)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토록 지휘했으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록 일체를 송치받아 검찰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가 검찰에 낸 고소사실 요지는 '2008년 12월 4일 발행된 새거제신문 1면 「요란했던 FUN FUN 거제빙등축제 희한한 사기극으로 막 내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였다. (후략)

(3)『FUN FUN 거제빙등축제 주역 '뻔뻔한 사기극' 으로 피소(被訴)』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5일자 1면)
내 용 : 거제빙등축제를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행사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당초 계획했던 축제가 유야무야 된 지금까지 투자자의 돈을 갚지 않은 황모 씨 등 빙등축제 주역 5명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거제빙등축제 사기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2월 4일자 1면 "홍보 요란했던 'FUN FUN 거제 빙등축제' 희한한 사기극으로 막 내렸다" 제하의 기사 및 12월 25일자 1면 "거제빙등축제 사기극 황모 씨 본지 신기방 국장 검찰에 고소", "FUN FUN 거제 빙등축제 주역 뻔뻔한 사기극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거제빙등축제가 사기극이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황모 씨 등이 박모 씨로부터 준비자금 5억 원을 빌려쓰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모 씨로부터 빌렸다고 하는 5억 원은 준비자금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자금으로 밝혀졌으며, 5억 원을 빌려주면 축제추진 법인의 일정 지분과 법인이사 참여를 제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황모 씨가 제공한 담보물건이 평당 80만 원을 호가한다고 했지만 활용가치가 없는 맹지로 땅값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보도와 관련, 황씨 또한 다른 이에게 속아 담보를 제공했으며 담보 물건에 대해 박모 씨와 논의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3) 또한 황모 씨 등이 자신의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박모 씨의 고소장 진술을 인용보도한 바 있으나 황씨는 6천여만 원을 선투자한 사실이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황모 씨 관련 고소사건을 사기극으로 단정 보도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4) 또 페스티벌 랜드(대표 황모 씨)에 지난 6월 23일 3개월 후 상환조건으로 빌려주었다고 보도했으나 반환기간이 없는 투자자금으로 황모 추진위원장은 투자약정서의 작성과 담보를 제공했을 뿐이며, 또다른 투자자 박모 씨의 고소건과 관련 황모 씨도 속아 보증을 섰을 뿐 직접적인 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과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신청인이 감사원 처분 불이행과 조합 대출금에 대한 횡령으로 해임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감사원 부분은 이행 승인 요청을 해둔 상태이고, 대출금은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영남일보 : 『대·경 조경수유통조합 최○○ 대표이사 해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대구경북조경수유통영농조합법인의 최○○ 대표이사가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과 법인운영 비리와 관련,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

〈사〉한국조경수협회 대구경북조경수유통영농조합법인은 "지난 5일 임시 조합원 주주총회를 열고 최대표이사가 과다 지급된 국고보조금 4천880여만 원을 환급하라는 2008년 감사원 감사처분을 이행치 않았고, 법인의 국고보조금 지원시설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의결했고, 9일 고령등기소에 임원변경 등기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2년 만에 8억여 원의 부채를 안는 등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공인회계사 대구시지부에 외부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최○○ 대표이사 횡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1일자 사회면에 "대·경 조경수유통조합 최○○ 대표이사 해임" 제하로 대구·경북 조경수유통영농조합 법인의 최○○ 대표이사가 임시 조합원 주주총회에서 국고보조금 4,880만 원을 환급하라는 감사원 처분사항 미이행과 법인 대출금에 대한 횡령 책임을 물어 해임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 대표이사는 국고보조금 4,880만 원은 3회에 걸쳐 납부키로 승인 요청하였으며 대출금 2억 원은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 조합장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조합 등기신청을 하고, 시공사에 향응과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곡강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강 ○ ○)
피신청인 : 경북도민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북도민일보 : 『포항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1일자 5면)

내 용 : 포항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장의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현 조합장 강모(55) 씨는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장 및 임원 취임 승락서 등 상당수의 공문서를 위조 또는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10일 곡강지구 도시개발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강모 씨를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포항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현 조합장인 강씨는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위해 지난해 12월 6일 총회소집(보궐선거) 통지서를 지주들에게 보내기 이틀 전에 취임 승락서를 위조해 이사·감사를 임의대로 선임, 포항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마치는 등의 불·탈법을 저질렀다는 것.

또 강씨는 지난달 20일께 흥해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토목) 관계자로부터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계약해 주겠다며 35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이들에게 20여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비상대책위 장모(56) 씨는 "조합장 강씨는 지난해 5월 2일, (주)C사와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주)P와 또다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강씨가 조합원 총회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직인 및 인감을 위조한 허위 문서를 참석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강씨가 지난해 12월 6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2006년 총회 당시 조합 인원에 대한 결원 보선에 관한 결의사항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장을 2008년 총회용으로 조작했고, 인감증명서 역시 사용 용도란에 발행당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강씨는 "비상대책위 장모씨가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있어 경찰에 맞고소할 방침"이라며 "모든 것은 경찰조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1일자 사회면에 "포항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로 얼룩"이라는 제목으로 현 조합장 강모 씨가 임원 취임 승락서 등의 공문서를 위조, 조작하여 등기신청을 마치는 등의 불, 탈법을 저질렀다는 것과,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350여만 원 향응제공과 20여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것과, 조합장 강씨는 (주)C사와 (주)P사와 계약 체결하였다는 것과, 조합총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였고 취임 승락서 등의 등기신청 첨부서류는 적법하게 작성되어 불, 탈법이 아님이 밝혀졌고, 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향응제공과 금품요구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주)C사 및 (주)P사와 계약체결한 적이 없으며, 조합총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공문서 위조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포항 곡강지구 개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1일자 사회면에 『포항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에서 장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현 조합장 강모 씨가 임원 취임 승락서 등의 공문서를 위조, 조작하여 등기신청을 마쳤고,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350여만 원 향응제공과 20여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으며 조합은 조합설립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취임 승락서는 12월 6일 총회 이후 12월 17일자에 법무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어서 신청하였고, 취임 승락서를 위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곡지구시공사(토목)는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향응과 금품제공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장모 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도민일보 사회 5면에 상자기사로 2009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포항 곡강지구 개발 관련 반론보도)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으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도민일보 : 『포항 곡강지구 개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의 임원 인준이 충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부회장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집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신문 : 『충남태권도협회 환골탈태 비상』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각종 비리와 관련해 안개 속을 헤매던 충남태권도협회가 주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상화추진위(위원장, 김○○)를 구성하고 대책방안 모색 등의 움직임을 가시화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청양의 모 음식점에서 충남 각 시·군의 태권도 관계자 대표들이 모여 정상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여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충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태권도협회의 임원 인준이 부결됐다고 밝히며 이는 충남태권도협회가 사고단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심판위원장은 "비리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 부회장 등의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임의 집행한 것은 엄연한 횡령이라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전 청양군 전무이사는 "충남태권도회관 건립기금으로 승, 품단 심사 시 응시자로부터 개인당 5000원씩 수납 받은 금액만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에 대한 불분명한 회계자료도 관계기관의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모 시군의 태권도 관계자는 "현, 최모 회장의 사퇴 촉구와 충남태권도협회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으며, "충남 체육회도 태권도협회의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해 신속히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충남태권도협회 환골탈퇴 비상, 제하의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6일자 "충남태권도협회 환골탈태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충남태권도협회가 충남체육회 이사회의에서 김△△ 부여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임원 인준이 부결되었다', '이○○ 전 심판위원장은 김모 부회장이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임의 집행한 것은 엄연한 횡령이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전 청양군 전무이사는 충남태권도 회관 건립기금으로 승품단 심사시 응시자로부터 개인당 5,000원씩 수납받은 금액만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에 대한 불분명한 회계자료도 관계기관의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충남체육회에서는 태권도협회 임원 인준건을 이사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고, 태권도를 비롯한 7개 경기단체가 금회 인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이사회의에서 부결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이 주장한 변호사 비용 횡령 또한 김○○ 부회장 개인이 변호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밝혀져 기사내용과는 사실과 무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김XX가 주장한 회관 건립기금은 대천 농협에 정기예탁(510,241,569원)하였고 2009년도 이자는 5월 30일 만기로 세금 미공제분 포함(30,104,252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충남태권도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대다수가 충남태권도협회 비회원들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충남태권도협회는 시·군태권도지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군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군지회에서 조차 회원의 신분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충남태권도협회는 350여개의 등록 도장과 학교팀 대표자들로 구성된 경기단체로서 충남체육 향상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충남태권도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6일자 사회면 '충남태

권도협회 환골탈태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충남체육회 이사회에서 충남태권도협회의 임원 인준이 부결되었으며 협회 김모 부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공금을 임의 집행하였으며 충남태권도회관 건립기금으로 승품단 심사시 응시자로부터 개인당 5000원씩 수납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충남체육회 이사회시 태권도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 선임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인준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 부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모 부회장의 송사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공금사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충남태권도협회는 태권도회관 건립과 관련해 태권도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결로 심사수익금 중 일부를 회관 건립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의, 승품단 심사비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을 뿐 개인당 5천 원씩 수납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발족회원이 태권도협회 시, 군대표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들은 협회 소속 회원이 아닌 비회원으로, 협회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신문 2009년 3월 12일까지 사회면 우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충남태권도협 관련…)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정상화 추진위…)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신문 : 『충남태권도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의 임원 인준이 충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부회장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집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충남인뉴스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남인뉴스 : 『충남태권도정상화 추진위원회 긴급회의』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5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대전조정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대전조정4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남인뉴스 : 『충남태권도협,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의 임원 인준이 충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부회장이 개인 비리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집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해동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해동일보 : 『충남태권도정상화 추진위원회 긴급회의』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5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대전조정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사행성 낚시터 영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신청인의 음성과 모습 등을 내보내 불법영업을 고발한 제보자로 오해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실내 낚시터, 도박판 전락』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24일 21:00)
내 용 : 최근 실내낚시터에서 불법 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박장이 돼버린 낚시터를 정○○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ＶＣＲ : 경남 창원의 한 실내 낚시터.

2천 제곱미터 남짓한 낚시터에 평일인데도 75석 전 좌석이 거의 꽉 차있습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자, 직원이 와서 바로 크기를 재고 순위를 기록합니다.

▷낚시터 업주 : "(좌석) 36번에 54cm, 55번 53.5cm…"

잠시 후,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백만 원, 2등에겐 10만 원이 든 봉투가 건네집니다.

▷낚시터 업주 : "정상적으로 (돈)봉투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두 차례 열리는 낚시대회 참가비는 평일 3만 원, 주말 5만 원. 큰 잉어를 낚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입질이 시원치 않아 돈만 날린다는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낚시꾼 : "(물고기) 못 잡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지…, 나오는데 밖에 안 나오니까…"

현금 경품을 내건 사행 행위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 후 처리결과	
20,000,000원	〈손해배상금 120,000원 지급〉	□

환경부가 낙동강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방상수도 광역화 시범지역으로 포항권을 미리 낙점했다고 보도했으나,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낙동강 정비사업과 무관하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21 :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자 48~49면)
내 용 : '(상수도 민영화+광역화)×4대강 정비사업=한반도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자신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강과 물을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내놓는 계획 곳곳에선 '삽질'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의 당초 모델이던 경부운하 구간 낙동강 주변 지역에선 상수도 민영화와 상수원 이전에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에서 쉽게 운하가 연상되지는 않지만, 두 사업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아귀가 들어맞는다.

처음부터 '포항권'을 찍었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는 경북 포항과 경주에 내린 '지방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서 "1년 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실시"를 요구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경영개선 명령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이어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집중돼 있던 5월 29일엔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지방 상수도를 3~15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무렵,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상수도 사업을 2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 모두 6천억 원을 쏟아부어 지자체 간 연결관망을 신설하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울진·영덕·영천 등과 함께 포항권역으로 묶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 5월 20일 환경부가 작성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포항권역)'이란 회의 자료를 보면, "시범지역인 포항권역을 대상으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안) 수립"이란 대목이 나온다. 포항권이 미리 낙점돼 있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 물산업육성과는 "행안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포항시 쪽이 먼저 찾아와 환경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포항시는 "경영개선 명령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양쪽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강호철 '포항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

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포항권을 찍어 상수도를 광역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무슨 말일까?

포항권은 경북 급수 인구 230만 명 가운데 40%가 넘는 90만 명이 사는 지역으로, 경북지역 하천 취수량의 41%, 임하·안동댐 등 댐 6곳에서 생산하는 물의 99.8%를 사용한다. 이 곳의 상수도를 광역화·민영화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지방상수도 취·정수장은 폐쇄되고,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광역상수도 취·정수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취·정수장 이전은 운하를 추진할 경우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골치 아픈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자체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리 상수도를 광역화·민영화해 취·정수장 이전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정부로선 운하의 '걸림돌' 하나를 손쉽게 해치우는 셈이 된다. (중략)

"운하를 건설하면 낙동강의 기존 취수원은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경북 지역 댐에서 생산하는 물 대부분을 사용하는 포항권은 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취수원 이전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는 얘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16일자 〈한겨레21〉 표지이야기 코너에서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라는 제목으로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포항을 미리 낙점해 두고 동 지역의 용수 수급 전망을 갑자기 변경하여 포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낙동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취·정수장 이전 문제를 쉽게 하여 운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운하 사업과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으로서 취·정수장 이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포항의 용수 수급 전망이 변경된 것은 2008년도에 본격적인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 급수체계 조정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증가 추세와 신규 개발계획 수요를 감안하여 재산정한 결과이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설명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상수도 광역화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16일자 48~49면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제하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항을 미리 낙점했으며, 포항의 용수 수급 전망을 물 부족 지역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은 낙동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운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항을 사전에 낙점한 것이 아니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은 인근 자치단체 간 과부족 용수를 연계 공급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운하와 무관하게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3월 25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1〉 8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독자와 함께' 코너의 통상적인 양식(줄간격 포함)으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상수도 광역화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농협 개혁법안을 심의 중인 신청인 상임위가 농협이 마련한 일본 시찰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시찰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이 낙 연)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농협-농식품위 이상한 동행』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1면)

내 용 : 농협 개혁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이낙연 민주당 의원)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이 개혁 대상인 농협이 마련한 일정에 따라 일본 시찰에 나설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식품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도쿄 등을 방문, 일본 농업협동조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의원들은 현지에서 농협 고위 인사와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 농식품위 여야 의원들이 개혁 대상인 농협의 주도 아래 해외시찰과 관계자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농협 개혁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농협이 '물밑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농식품위 의원들의 일본방문은 일본 농협의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혁안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시찰 일정 대부분을 농협이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식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은 '일본 농협이 우리와 유사하게 신용과 경제가 함께 묶여 있고, 일본 관계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상황을 부러워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일본 시찰이 농협의 이해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농식품위 여야 의원들은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선택권 확대 등 농협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에는 어둡지만 지방 선거를 의식해 '친 농협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농식품위 의원들은 현지에서 농협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도 예정돼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덕수 농업경제대표이사가 4일 열리는 식품박람회 '푸덱스 재팬 2009'에 참석한 뒤 농식품위 위원들과 만날 수 있을거라고 (실무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경비의 대부분은 상임위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등 이번 시찰은 농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농협-농식품위 이상한 동행' 기사 사실과 달라(또는 '농협-농식품위 이상한 동행'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7일자 1면에 '농협-농식품위 이상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여야 의원들이 농협의 주도 아래 해외시찰과 관계자 접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시찰 일정 대부분을 농협이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일본 시찰 일정은 국회의 공식 일정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국회 농식품위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27일자 1면 「농협-농식품위 이상한 동행」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이 개혁 대상인 농협의 주도 아래 일본 시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농식품위는, 일본 출장은 국회 예산으로 상임위 차원의 공식 일정으로 추진한 것으로, 일본 농협의 사례를 농협 개혁에 반영하고 선진 유통구조를 시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3월 13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개혁안 심의중 일본 시찰 추진")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송고하여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국회 농식품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을 포함한 상인회 일부 간부들이 노점상들로부터 장터 사용료를 부당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외 2인
피신청인 : 춘천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춘천MBC-TV : 「뉴스데스크-강원」 프로그램 『자릿세 내라 - 홍천 민속오일장터』 제하의 보도 (2008년 11월 28일자 21:30)

내 용 : 시골 5일 장터의 상인회 간부들이 영세 노점상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지만, 관계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시골 장터 군복 차림의 서너 명이 장터를 돌며 돈을 걷고 있습니다. 2, 3천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2-3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른바 5일 장터 상인회 간부들로, 군청에 내야할 장터사용료를 대신 걷어준다는 명목입니다. 처음 온 노점상에게는 이른바 입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수시로 불우이웃돕기, 행사비등을 명목으로 돈을 걷어갑니다. 상인회 측은 노점상들이 다들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상인회 간부 : 강제성은 없어. 안 낸다면 할 수 없는거야. 난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동네사람들 도울려고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거는 아니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터사용료로 이곳 노점상인들이 군청에 내야할 돈은 한 달에 90여만 원, 하지만 실제 걷어가는 돈은 3백만 원 이상이라는 게 상인들의 말입니다. 1년에 3600만 원 걷힌다고 봤을 때, 군에다 1100만 원 내고, 2500만 원을 갖다가, 엄청 과한 거죠 돈이 여윳돈이 많이 들어가면 비리는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주택가 골목길은 장터 임대 구역이 아닌데도 이처럼 바닥에 줄을 긋고 노점상들로부터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곳인데도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점상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인 : 200만 원씩 돈줘가면서 하겠어요?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럼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하더라. 다 팔아봤자 몇 만 원도 채

안 되는 노점상들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걷어가는 돈은 큰 부담입니다.

▷좌판상 : 뭐 3만8천 원이야, 2만 원만 주라고 얘기했는데… 아, 없어!

참다 못해 항의도 해봤지만, 대부분은 상인회 측의 위세에 눌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상인 :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못 보이면 자리를 짧게 주거나 자리를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관할 홍천군청은 장터 사용료 징수 문제는 자신들이 알 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박○○-홍천군청 담당자 : 도로상에서 어떤 상행위는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어떤 징수 이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에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고 하루 살기도 버거운 노점상들은 더욱 힘들기만 합니다. 법은 서민들에게 멀리 있나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홍천민속오일장터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8일자 9시 뉴스에서 홍천 민속오일장 상인회 일부 임원들이 시장의 노점상들로부터 관리비와 자릿세를 갈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점상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상인회 소속 임원들은 민속오일장 관리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노점상들로부터 화장실 사용료와 청소비로 1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노점상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인을 비롯한 전 홍천 5일장터 상인회 임원에 대해 수사결과 혐의 없음(일부 혐의 있음이 인정된 경우도 포함한다)이 인정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보도하되, 아래 항에서 기술된 요령으로 보도한다.
• 수사결과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일부 혐의 없음이 인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혐의 종결사실 및 관련 사실관계를 문서로 알리도록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통보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강원」을 통해 후속 보도한다. □

송천동 A마트 건설 관련 분진 및 소음피해 주민 대표자인 신청인이 피해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주KBS-1TV : 「TV 패트롤 무허가」 프로그램 『송천동 A마트 2억 천만 원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6일 19:30)

내 용 : ▷PD : 살다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도 또는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피해를 준 측은 피해를 받은 측에 돈을 지불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바로 피해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전주의 한마을에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PD! 어떻게 된 일입니까?

▷PD : 네. 지난 해 전주 송천동에 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생긴 일입니다. 마트를 지으면서 생

긴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건설회사가 주민들에게 2억 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호소했던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 피해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전주 송천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마을, 한 컨테이너 건물로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마트 건축 당시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마트에서 주민대표에게 피해수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마을주민 : 당신이 가져갔대요, 내놓으세요. 내놓으시라고요. (건설)회사에서 당신이 다 가지고 갔대요. 일괄지급을 했대요. 저희 보상금 주세요.

▷주민대표 K씨 : 못 주니까 법으로 해. 당신 법으로 한다고 했잖아. 법으로 해.

▷PD : 차를 막아서며 분노하는 주민들, 이에 호신용 가스총까지 꺼내들며 대응하는 주민대표, 양측의 갈등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일까? 주민들은 마트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대표가 보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는 데 원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눠줬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PD : 이렇게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 보상금 수령 여부를 알아본 결과 마트와 상당히 먼 거리에 살면서도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이 마트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언뜻봐도 보상금의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트는 어떤 기준으로 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것일까?

▷A마트 관계자 : 저희가 수차례 민원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나머지 분배는 그 쪽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누구누구 주라고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저희하고도. 그래서 대표성을 띤 사람하고만 얘기해서 그분이 정리를… 다른 지역 민원도 그렇게 했거든요.

▷PD : 돈을 나누는 건 대표의 몫이라는 것. 취재진은 2억천만 원을 받은 대표 K씨를 만나 배분기준을 물었습니다.

▷주민대표 K씨 : 누가 우리가 법으로 어디까지 주라는 잣대도 없고, 현장에서 어디까지 주라는 잣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건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가까운 지역으로 줘야한다, 해서 이렇게 끊었어요. 제일 가깝고 좀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분들은 300만 원, 또 그 다음 라운드는 250만 원, 그 다음 라운드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 폭을 두고 분배를 다 했습니다. 100% 다 했고.

▷PD : 마트 건축 당시에 공사현장과의 거리를 고려해 3단계로 분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3백만 원을,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2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 그런데 이 외의 기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자 리포터 : 앞 집 받고 뒷 집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던데요?

▷주민대표 K씨 : 예를 들어서 우리 집회, 회의도 참여하지 않았고 또 경비를 걷어서 뭐를 하자고 그러는 데도…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집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한 50만 원 불이익이 갔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열심히 나와서 참여를 하신 분은, 또 돈을 안낸 분은 또 50만 원 불이득이 가고…

▷PD : 주민대표는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신들을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중략)

▷PD: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사무실로 항의를 하러 찾아갔는데 언쟁을 하던 중 대표가 뭔가를 던졌고,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송천동 A마트 2억천만 원의 진실'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TV 패트롤 무허가」는 지난 2월 6일(금요일) 19:30분에 「2억천만 원의 진실」 제목으로 송천동 A마트 건설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분진 및 소음 피해에 관련된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보도된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무를 다한 주민들 이야기는

편집하고 제보를 신청한 주민들은 피해지역에서 벗어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및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천동 A마트 주변 민원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 씨는 대책위원회는 A마트의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분진 및 소음 피해를 입은 약 60가구로 판단되는 세입자를 포함하여 80여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며 제보자 중 실거주자가 아닌 세대, 대책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던 세대 등 5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 대책위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방송내용 중 K씨가 주민을 성희롱하고 폭행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다. 전화통화는 했으나 3월 초부터 보상금을 모두 분배할 때까지 전화 한 통 없었으며 ○월 ○일 ○시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과정을 이야기하며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20만원 배정되었다고 전하니까 사기꾼 등 모욕을 하여 전화를 끊었으나 계속해서 수차례 휴대폰 벨이 울려 무의식 중에 통화버튼을 눌렀더니 ○○번지 사는 ○○○라 하여 유선으로 그러지 마시고 사무실도 없고 대책위원회도 해산하였으므로 아무 때나 연락주시고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였지 성희롱 한 적은 없습니다.

또 폭행과 관련해서도 그 주민은 피해 주민도 아니고 단 통장이라는 명분으로 항의 하길래 불만, 불평하는 주민이 직접 오시도록 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피해자가 신체장애를 들어 모욕성 발언을 한 바 이에 격분하여 화장지를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힘으로 이는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송천동 A마트 2억 천만 원의 진실'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2월 6일「2억 천만 원의 진실」제목의 방송과 관련하여, 송천동 A마트 주변 민원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K씨는 자신은 성희롱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신체장애를 들어 모욕성 발언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전주KBS-1TV, TV PATROL 무허가」2009년 3월 13일 프로그램 말미에 위 보도문을 제목은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이 건 방송내용을 문제 삼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TV PATROL 무허가」프로그램『'송천동 A마트 2억천만 원의 진실'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3일 19: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직장 내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하는 등 문제 많은 사람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주간 불교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주간 불교 : 『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성희롱 '파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4일자 2면)

내 용 :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이하 상담개발원)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조계종 복무규정 정관 제7조에 상근직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부터 불교계의 한 사립대 교수를 겸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K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경 상담개발원 부하직원인 A씨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해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노동청은 공문에서 "K사무총장이 진정인인 A씨에게 2008년 8월 2회 이상 사업장 내에서 행한 언어적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판단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된다"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K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2009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상담개발원 직원인 C씨에 의하면 진정인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그동안 갈등해 오다가 지난달 말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사무총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단체 여직원이 남자 직원 때문에 잘못될까봐 걱정돼 여자로서 우려하는 충심에서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상근직 겸직을 금지하는 복무규정 조항이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돼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C씨에 따르면 K사무총장이 강의를 나갔던 S대에 지난해 1월 경 정교수로 임명돼 겸직하면서 겸직 금지 조항을 이사회 승인없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포교부장인 동범스님에게 자문을 구했었다"며 "동범스님이 포교원 산하 단체인 상담개발원 급여가 총무원 일반직 종무원에 비해 비교적 낮아 겸직을 해서 수입을 충당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신경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2월 14일 2면에 "2008년 2월 14일 주간불교 제2면 및 주간불교뉴스의 홈페이지 (www.bulgtonews.co.kr)을 통하여 [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성희롱 '파문']이라는 제목하에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경 노동청서 시정조치 받아", "교수겸직 위해 복무규정 누락의혹도"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불교상담개발원의 K사무총장이 직접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②교수를 겸직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삭제 누락하였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지가 이와 같이 사실이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하여 불교상담개발원의 K사무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정중히 ③사과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월 14일 「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성희롱 '파문'」 제하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K사무총장은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접 시정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며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종 복무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K사무총장의 교직 겸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사무총장은 불교상담개발원의 복무규정 제정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처음부터 겸직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 규정의 조항을 삭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K사무총장과 독자 제현께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3월 20일까지 주간 불교 2면에 2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

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위 보도문을 주간 불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목록 상단에 2009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불교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조합설립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곡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강 ○ ○)외 1인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국매일 : 『경찰 고발…조합원들 반발』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2일자 6면)

내 용 : 〈속보〉 출범 초기부터 고소 고발로 얼룩진 경북 포항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본지 2008년 6월 10일, 11월 13일자 보도〉의 불·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조합장 강모(55) 씨는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장 및 임원 취임승낙서 등 상당수의 공문서를 위조 또는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곡강지구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인 강모 씨를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포항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현 조합장인 강씨가 조합 설립을 위해 포항시에 제출한 서류(총회 회의록)는 물론 조합장과 임원 취임승낙서 등 상당수의 서류를 위조 또는 조작해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는 "조합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지난해 12월 6일 총회 소집(보궐선거) 통지서를 지주들에게 보내기 이틀 전에 취임승낙서를 위조해 이사·감사를 임의대로 선임, 포항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마치는 등의 불·탈법을 저질렀다"는 것.

강씨는 이어 지난 달 20일께 흥해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토목) 관계자로부터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계약해 주겠다며 35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이들에게 20여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비상대책위 장모(56) 씨는 "조합장 강씨는 지난해 5월 2일, (주)C사와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주)P와 또다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강씨가 조합원 총회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직인 및 인감을 위조한 허위 문서를 참석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강씨가 지난해 12월 6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2006년 총회 당시 조합 인원에 대한 결원 보선에 관한 결의사항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장을 지난해 총회용으로 조작했고, 인감증명서 역시 사용 용도란에 발행 당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장 강씨는 "할 말 없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월 12일자 사회면에 "경찰 고발…조합원들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현 조합장 강모 씨가 조합 설립 등기를 위해 지난 달 12월 6일 총회 소집 이틀전에 임원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사·감사를 임의대로 선임, 등기신청을 마치는 등의 불, 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과,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곡강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계약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350여만 원 향응 제공과 20여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또한 장모 씨가 "조합장 강씨가 지난해 5월 (주)C사와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6월 또다시 (주)P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조합원 총회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직인 및 인감을 위조한 허위문서를 참석 조합원에게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강씨가 지난해 12월 6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2006년 총회 당시 조합원 결원 보선에 관한 결의 사항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장을 당시 총회용으로 조작하고 인감증명 역시 발행 당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2008년 12월 6일 선출되었으나 시로부터 받은 12월 4일자의 설립인가 날짜를 취임승낙서에 법무사가 표시한 것으로써 첨부서류를 적법하게 작성해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취임승낙서 위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조합장이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성곡지구 개발사업 시공사에게 향응 제공과 금품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합장 강씨가 (주)C사 및 (주)P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나 총회에서 조합장이 장씨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8일 조합 총회에서는 2008년 제출된 위임장만을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위임장을 조작했거나 인감증명의 사용 목적을 위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K사무총장과 독자 제현께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29,17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2일자 사회면에 『경찰고발…조합원들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장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현 조합장 강모 씨가 임원 취임승낙서 등의 공문서를 위조, 조작하여 등기 신청을 마쳤고,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350여만 원 향응 제공과 20여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09년 12월 17일자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 설립 등기 신청시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의 날인 부분은 각 명의자가 날인한 것으로서 위 조합이나 조합장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고, 또한 총회에서 조합장이 장씨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강모 조합장이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나, 2008년 총회시 2006년도에 제출 받은 위임장을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은 장모 씨의 주장에 근거하여 보도하였던 내용으로 사실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국매일 2009년 3월 13일자 원 기사가 보도된 지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 기사 제목(경찰, 손 전 총장 등 2명 횡령 혐의 검찰 송치)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전국매일 인터넷 신문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국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3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2008년 이후부터 위성TV 유료방송 가입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디지털타임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4.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디지털타임스 : 『'미완의 IPTV'… 유료방송 시장 건전경쟁 촉매제』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일자 10면)
내 용 :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전망

(단위:천명, %) 자료 :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

구 분	2007E	2008E	2009E	2010E	2011E	2012E
전체가구수	18.643	18.971	19.312	19.667	19.916	20.166
위성	2.140	1.907	1.689	1.604	1.474	1.369
케이블SO	855	1.518	3.667	4.732	5.597	6.485
IPTV	1.132	3.035	5.414	6.309	7.197	7.782
IPTV(비율)	6.2	17.4	30.4	34.8	39.1	41.7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다. KT는 지난 해 11월 17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5개 홈쇼핑 등을 포함한 '메가TV'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LG데이콤이 올해 1월 1일부터 마이LGtv, SK브로드밴드가 1월 12일부터 '브로드앤TV' 서비스를 각각 시작했다. 이로써 IPTV 3사가 모두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

IPTV 상용 서비스 한 달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 전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IPTV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조급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IPTV 3사의 전략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전략은 각 사업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두고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도 성급한 측면이 많다. (중략)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IPTV가 과연 차세대 성장 동력이 맞나"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 융합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상용 서비스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케이블TV 가입자가 15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위성방송 가입자도 200만을 넘었다. 국내 세대수가 1800만이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PTV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지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미완의 IPTV'… 유료방송 시장 건전경쟁 촉매제」 관련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일자 「'미완의 IPTV'… 유료방송 시장 건전경쟁 촉매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성방송의 가입자가 2007년에는 214만 명 수준이지만 2008년부터 감소하여 2012년에는 136만 9,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취지로 미래에셋증권이 작성한 표를 인용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위 보도 내용 중 2008년 전망 부분은 이미 방송통신위

원회를 통해 확인된 통계 결과와도 맞지 않고 그 이후의 전망도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산정된 부정확한 수치이며, 현재까지의 성장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근거할 때 향후 위성방송 가입자 및 증가율은 다음 표와 같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방송 가입자 전망

(단위 : 천명)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위 성	2,150	2,354	2,520	2,770	3,040
증가율	9.4%	9.4%	7%	10%	10%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
사 건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몽 룡
조정대리인 김 ○ ○, 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디지털타임스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문화일보빌딩 8/9층
대표이사 조 명 식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일간신문 디지털타임스 10면에, 그리고 인터넷신문 디지털타임스의 정보미디어 면에 "2009년 3월 4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별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일간신문 디지털타임스 10면에, 그리고 인터넷신문 디지털타임스의 정보미디어 면에 신청인의 2008년도 가입자 전망수치를 2,354천명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IPTV 현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가 2008년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2008. 6. 2.)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를 전재하였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전망

(단위:천명, %)

구 분	2007E	2008E	2009E	2010E	2011E	2012E
위 성	2,140	1,907	1,689	1,604	1,474	1,369

이에 대해 신청인은 향후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위 예측치와는 달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의 경우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235만 명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2008년 위성방송 가입자가 197만 명에 머물 것이라는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은 가입자 수를 왜곡한 오보이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대외 이미지 훼손 및 신용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서 '정정보도'란 언론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서 인용된 위성방송 가입자 예상 수치가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래의 전망치를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이 사건 기사의 전망치는 언론이라면

충분히 인용·전재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신청인의 반론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끝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신용도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더 이상 살펴볼 것 없이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1. □

신청인이 2월 임시국회 중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회동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근 혜 (국회의원)
피신청인 : 데일리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데일리안 : 『박근혜-이상득, 지난 달 28일 전격회동』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4일자 정치면)

내 용 :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이 4일 범 여권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한 관계자는 "두 분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확인해 주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분이 만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사실상 두 사람의 만남을 시인했다.

여권의 또다른 의원 몇몇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만남을 기사화 해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의원은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회동을 기정사실화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두 사람의 동선도 광화문 일대로 일치한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 정두언 의원 등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이춘식, 권영진, 김성태, 신상진 의원도 함께 했다.

이 의원은 당초 이 대통령의 친위 그룹인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 골프를 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골프 회동을 취소하고 이들 '친이' 의원들과 저녁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도 28일 저녁 광화문에 있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사직동 광화문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연희단체총연합회 출범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날 만남은 이상득 의원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사람은 이날 각자의 일정이 끝난 뒤 만났고 회동에서 이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야당과의 '입법전쟁'과 관련, 박 전 대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3월 4일자에 게재한 〈박근혜-이상득, 지난 달 28일 전격회동〉 제하의 기사에서, 『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범여권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한 관계자는 "두 분이 회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점은 정확히 모르

겠다"고 확인해 주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분이 만난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사실상 두 사람의 만남을 시인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상득의원과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데일리안 : 『본보 '박근혜-이상득 회동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정치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3월 4일, '박근혜 - 이상득, 지난 달 28일 전격회동'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서울 성북동 인근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기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당사자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향후 보도에 있어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신청인 연맹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납세자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6일자 A12면)

내 용 : 부산에 사는 이모 씨(58)는 최근 생뚱맞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라고 밝힌 상대방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급액의 10%를 기부금으로 내 달라"고 다짜고짜 요청한 것. 이씨는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만 원의 환급금 중 일부를 당연한 듯이 기부해 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조세 시민단체'를 표방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일방적인 기부금 후원 요구가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전원 환급 운동을 벌여 지난해 2월 관련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납세자연맹 측은 '성공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 대상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액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급액 총액이 약 4,6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10% 요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해 "당초 발의된 학교용지 특별법에서 환급액의 이자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연맹이 제기한 이자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돼 이자까지 환급받게 됐다"며 "못 받을 뻔 했던 이자까지 받게 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맹 측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운동에 3년 간 소요된 비용은 약 4억 원이다. 또 2007년 납세자연맹이 사용한 전체 금액은 사무실 경비와 인건비 등을 모두 합쳐 6억 6,700만 원 정도다.

이씨는 "처음에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알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나 후원은 몰라도 시민단체가 환급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납세자 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 기사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입은 한국납세자연맹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6일자 사회면에 "납세자 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라는 제목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10%를 후원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짜고짜 요청' '보이스피싱 사기' '시민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자 명단까지 파악'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기부금을 요구'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인 표현을 동원해 보도함으로써, 한국납세자연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핵심 취재원인 연맹 측에 확인 취재를 한 바가 없으며, 연맹이 후원 권유에 활용한 게시물을 마치 취재한 것처럼 활용,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해 "당초 발의된 학교용지 특별법에서 환급액의 이자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연맹이 제기한 이자 소송이 법원에서 승소해 이자까지 환급받게 됐다"며 "못 받을 뻔 했던 이자까지 받게 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납세자연맹은 △연맹 회원 이외의 환급 대상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한 적이 없으며, △회원 이외의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자 명단을 파악한 사실도 없으며, △기자에게 후원 권유 게시물 이외의 주장을 한 적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본 신문은 기자가 납세자연맹과 관련한 해당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기사 작성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자체 조사한 뒤 후속 조치할 예정이며, 우선 잘못된 보도로 목적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국납세자연맹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문제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독자 여러분들께도 추후 같은 잘못이 없도록 언론보도의 자기 검증과 정확한 보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한국경제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9일자 A13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6일자 A12면 '납세자연맹 기부금 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환급금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연맹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회원 이 외의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자 명단을 별도로 파악한 사실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실질소득 5년만에 마이너스, 소비 최악』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27일 21:00)
내 용 : 지난 한해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얇아진 주머니로 소비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인터뷰 : "지난해 가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월세도 못 넣고 있어요."

▷인터뷰 : "많이 줄었죠. 지금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세울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세우고

있는 거에요. 손님이 없어서…"

경기 한파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긴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의 생활고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은 한 달 평균 302만 원, 1년 전보다 2.1%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4분기가 최악의 성적표를 내면서, 지난 한 해 전체 실질 소득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4월 16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의 조정대리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9년 4월 16일까지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현재의 물 부족 사태가 신청인 공사의 무분별한 방류와 무계획적인 관리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체계적인 수계 운영계획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29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물관리 실패로 바닥 보이는 낙동강 댐들』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2일자 A8면)

내 용 : (전략) 이날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기자의 눈길을 끈 대목이 한 구절 있었다. '우기(雨期)가 시작되는 올 6월 20일 전까지 낙동강 다목적댐에선 1억 7,000만 t의 물이 부족할 전망'.

1억 7,000만 t이라면 대구 시민(250만 명)이 6개월 동안 먹고도 남을 양이다. 대구시를 비롯, 영남권 29개 시·군 주민들이 의존하는 낙동강 유역 5개 댐(안동·임하·합천·남강·밀양댐)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는 쉬쉬하다 뒤늦게 국회에 한 구절 슬쩍 흘린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알고 보니 '천재(天災)'인 것만도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물 관리가 낙동강 물 부족 사태에 한 몫 하고 있었다.

◇ 초유의 '저수위' 미달 사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낙동강 유역 5개 다목적댐이 장마가 시작되는 6월 20일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은 예상 강우량까지 합쳐 5억 6,000만 t인 반면 실수요량은 7억 3,000만 t에 달했다. 댐 물을 아껴서 방류하더라도 6월 20일 이전에 물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구미·김천 등 9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임하댐의 사정이 특히 심각했다. 2월 28일 현재 임하댐이 담고 있는 물(저수위 이상의 유효 저수량)은 2,840만 t에 불과해 실수요량(하루 평균 110만 t)으로 공급하

더라도 이달 하순이면 댐 수위가 저수위(低水位) 아래로 내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저수위는 평상시 댐이 유지해야 하는 가장 낮은 수위로 이보다 수위가 떨어지면 발전(發電)이 중단되고, 하류에 물을 보내기 위해선 비상 통로로 물을 흘려보내거나 댐 한가운데에 호스를 넣어 물을 펌핑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목적댐 물이 저수위 아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수자원공사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최근 몇몇 댐에서 비상 공급 실험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물관리 실패로 바닥 보이는 낙동강 댐들" 제하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일자 A8면(사회면)에 "물관리 실패로 '바닥'보이는 낙동강 댐들" 제하에 "가뭄도 문제지만 댐 물 방류한 수자원공사 문제"라는 부제의 기사에서, "낙동강의 물 부족사태가 장기 가뭄에다, 비가 많이 내려줄 것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하는 '도박'을 벌이는 수자원공사의 댐 부실관리로 인한 '인재'의 합작품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자원공사는 작년 홍수 기간 동안 낙동강 수계 5개 댐 중 홍수에 취약한 남강댐만 장마 및 제7호 태풍 '갈매기'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홍수조절 수문 방류를 시행하고 안동·임하·합천·밀양댐에서는 홍수조절 방류가 없었으며, 또한, 수자원공사는 작년 홍수기 최근 5년 평균의 43%에 불과한 417㎜의 적은 비가 내림에 따라, 예상되는 장기 가뭄 및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생·공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박'이 아닌 수계 내 댐 운영계획(년, 월, 수시)을 수립,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일자 A8면(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

현재의 물 부족 사태가 신청인 공사의 무분별한 방류와 무계획적인 관리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체계적인 수계 운영계획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0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7일자 A2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제주도의 외국 의료법인 유치 사업 실적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제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케이앤컴퍼니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제주KBS-1TV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외국 영리법인 유치』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2일 21:00)

내 용 :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연중기획, 제주의 대안을 말한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영리병원'에 대한 대안을 연속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병원 연합과 국내 협력사인 케이앤컴퍼니, 헬스안홀딩스는 지난 2007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제주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백만 제곱미터 규모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연구소와 교육시설, 환자 주거단지와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케이앤컴퍼니는 6억 달러를 투자해 부지와 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PIM-MD는 4억 달러를 투자해 의료 휴양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현재 눈앞에 나타난 성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부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이앤컴퍼니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세계경제 침체로 부지를 확보할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에는 종합 신용등급이 CCC-등급, 현금 흐름 등급은 CF6, 부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회사가 자본을 유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병원 연합의 국내법인인 핌코리아 역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인 김○○ 씨가 김태환 지사의 조카란 점도 문젭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에 지사의 친인척이 관여하는 것은 특혜 의혹을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외국 영리법인 유치" 보도내용과 달라 (또는 외국병원 유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일 9시 뉴스에 "PIM-MD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이유가 케이엔컴퍼니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병원 연합의 국내 법인인 핌코리아 역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대표인 김○○ 씨가 김태환 지사의 조카란 점이 문제"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부지 확보는 외국 병원 유치 성과와 상관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핌코리아 설립이 안된 이유가 케이엔컴퍼니의 잘못이 아니며, 이 회사의 대표인 김○○ 씨가 김태환 지사의 조카인 점이 문제라는 보도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외국 의료법인 유치 관련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2009년 3월 2일 「외국 영리법인 유치」제하의 보도에서 PIM-MD의 국내협력사인 '케이앤컴퍼니'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재무구조가 열악해 국내법인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앤컴퍼니'는 외국 의료법인의 국내법인 설립 업무는 '케이앤컴퍼니'가 아닌 '헬스안홀딩스' 담당이며,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PIM-MD의 투자의사가 확정되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3월 23일 또는 30일에 제주KBS-1TV 「뉴스9」 프로그램 중(스포츠뉴스 전)에 보도하되, 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을 방영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

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외국의료법인 유치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2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주최한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 외 1인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시사저널 : 『'사기'에 우는 레이싱 모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자 40~41면)

내 용 : 최나리 씨(가명)는 최근에 열린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고도 수상 상금을 받지 못했다. 피켓에 적힌 수상금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대회가 끝난 뒤에 알았다. 상금의 20~30%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식사권, 와인·지갑 세트, 피부 관리·성형 수술 상품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다고 주최측에 말하자 갑자기 반말을 하며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었느냐'라고 큰소리 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당황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대회를 주최한 한 아무개씨에게 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한씨는 "행사 진행 비용이 예상 금액을 넘어섰다. 지급하지 못한 수상금은 협찬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협찬사인 'ㄹ스튜디오'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ㄹ스튜디오 최 아무개 실장은 "계약서에 적힌 2천2백여만 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추가 금액을 내라니 무슨 말이냐. 수상자들에게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몰랐다.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주최 측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여력이 없어 협찬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기에 우는 레이싱모델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3월 10일자 "사기에 우는 레이싱 모델들" 제하의 기사에서 최나리(가명) 씨의 인터뷰를 예를 들며 최근에 레이싱 모델대회를 통해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최근에 진행한 레이싱 모델대회의 상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 진행한 대회도 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진을 게재하여 이미지 추락을 입힌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신청인이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해 경미한 아파트 층간 소음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SOS 긴급출동 24:00」 프로그램 『위험한 층간 소음』 제하의 방송 (2009년 3월 3일 23:05)

내 용 : 늦은 밤, 아파트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의 반복된 행동이라는 것!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물도 못 내려요. 물도 못 내릴 뿐더러 사람이 살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뒤꿈치가 닿을 수 있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에는 완전 민감하고 소리가 안 나도 계속 두들기는 거에요. 벽, 문, 자기 천장.

밤 10시 30분부터 (새벽)3시까지가 피크에요.

아파트 안의 견딜 수 없는 소음에 주민들의 SOS가 이어졌다. 몇 년째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연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람은 바로 60대의 할아버지!!! 그런데 주민들의 말과 달리,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소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기나긴 싸움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SOS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먼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파트를 찾아가봐야 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아파트였는데…

제보자를 만나 자초지종부터 들어보기로 했다. 이 위에서(천장에서) 뭔가를 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집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스레버를 사용하려고 딱 세웠다가 모르고 딱 넘어트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치는 거에요. 그 공포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심할 때에는 아침 10시부터 두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심해요. 오늘 제가 퇴근하고 엘리베이터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바로 위층에 사는 부부라고 했다. 사소한 소리에도 아래층 주민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 고통이 심하다고 했는데…

제보자와 함께 찾은 집에는 한국말이 서툰 듯한 외국인 아내와,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 단 둘이 살고 있었다. 표현은 서툴지만, 분명히 무언가 괴로움을 호소하는 듯한 남편. 대체 아래층에서 내는 소리가 어느 정도기에, 청각장애인인 남편까지 견디기 힘든 소음이라는 걸까.

직접 들어봐야 한다며 제보자가 바닥을 살짝 눌러보는데…그러자… ('쾅쾅쾅' 세 번 듣고 바로) 살짝 발을 들었을 뿐인데도 아래층에서 바로 올라오는 쿵쿵 소리! 솔직히 이 소리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툭 넘어질 수 있는 소리잖아요. 얘네는 이렇게 다니는 거에요. 깨갱해서 이 걸 새벽에도 계속(쳐요). 결혼과 함께 처음 한국생활을 시작한 외국인 아내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도 무언가로 치는 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이 친구들은 아무 것도 안 해요. 11시에 잠이 드는데 이래요. 그 동안 사람들에게 표현조차 하지 못했던 터라 쌓아 왔던 서러움이 북받치는 듯했는데… 이런 소음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그러다보니 부부는 매 생활마다~ 아래층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는 듯했는데… 심지어 변기물 내리는 소리에도~ 곧바로 들려오는 쿵쿵 소리!!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집에서도 까치발로 다니기 일쑤라고 했다. (집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거에요. 이 친구들은 똑같이 공장을 다니는데 새벽에 나가면 한 시간도 못 자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집에서 아래층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위층 부부~

대체 아랫집은 왜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그날 밤. 대부분의 집에서 불이 꺼진…

자정이 가까운 시간~

무슨 일인지, 몇몇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로 나와 웅성거리는 듯 했는데… 부부가 사는 위층이었다.

급히 가보니 복도에선 이미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일고 있는 상황!

위층에서 뭘로 치시는지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 소리가 나서 지금 새벽에 왜 이렇게 치시는데요.

지금 발을 굴러 일부러..

그럼 적당히 하시면 되지.

수없이 했어. 항의 했는데 쇠귀에 경 읽기야.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 아래층 할

아버지인 듯했다.

아니 저것들이 일부러 구른다고. 그니까 이 거 환장할 노릇 아냐.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항의의 표시를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밤에 소란이 벌어진 것일까.

위층 부부가 사는 복도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아래층 할아버지!

야심한 시간에 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일까. 그런데~

문 앞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것!

그리고는 황급히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부부의 집, 벽 근처를 서성이더니~

현관문을 차는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급기야… 벽까지 힘껏 차고 있었다.

벌써 1년이 넘게 밤낮 없이 반복된다는 할아버지의 위협적 행동!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아파트 층간 소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3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보도하면서 박모 노인이 생활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위층 입주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보도하였으며, 또한 박모 노인이 오랜 독거 생활로 인해 불안정한 정신상태이며 피해의식과 망상에 젖어 있는 사회 부적응자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모 노인은 위층에서 발생시킨 오랜 소음으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와 위층 입주자에게 항의를 해 왔던 것이며, 또한 박모 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써 박모 노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문제상황 해결과 관계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획의도에 부합하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 실시한 솔루션지원 외에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솔루션 자립기금에서 생활지원금으로 금 2,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지급한다.

가. 피신청인은 월 1회 신청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나. 금원의 지급기한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0개월로 한다.

다. 피신청인이 위 항의 지급 일시를 1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신청인 병원이 시행해오던 AOLD 수술법(관혈적 자동화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1)『우리들병원 200만 원짜리 수술법 14만 원짜리 수술과 별 차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1면)

내 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 디스크 수술보다 뛰어나다며 치료비를 받아온 우리들병원의 대표 디스크 수술법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14만 원 가량을 내면 받을 수 있는 표준 수술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리들병원의 수술법에 대한 정부의 비급여 방침 이후 9년 동안 14배 넘는 수술비를 내온 환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우리들병원은 물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척추수술 전문병원도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우리들병원의 '뉴클레오톰을 사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수술'(AOLD)이 표준 디스크 수술에 비해 객관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따라서 현재 비급여로 허가된 AOLD를 보험이 적용되는 표준 디스크 수술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 재료 '뉴클레오톰'은 쓰려면 쓰되 정부는 물론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뉴클레오톰'은 병든 디스크 수핵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휘어지는 자동흡입기로 우리들병원이 수술용 집게를 쓰는 기존 수술보다 AOLD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는데 핵심근거가 돼왔다. 비용 역시 143만 원 가량으로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수술법으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고경화 전 의원에 따르면 청담 우리들병원은 2006년 8월 한달 동안 279회 시술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9년 가까이 시행됐다는 점, 우리들병원의 다른 지역 분원과 다른 척추 전문병원이 이 시술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환자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들병원은 이와 관련,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앞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를 수술, 유명세를 탄 척추수술 전문병원이다.

서울 청담동을 비롯해 김포공항, 부산 동래, 대구 등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계열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 10위에 든다.

(2)『우리들병원 '폭리수술' 피해 상상초월-1곳서 만 연간 3000여 건 시술』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19면)

내 용 : 우리들병원이 표준 수술법과 별 차이도 없는 새 수술법을 통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표준수술의 14배 넘는 수술비를 낸 환자들은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 디스크 수술'(AOLD)은 표준 디스크 수술의 대안으로 떠오른 만큼 우리들병원 등 척추 전문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상당수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 간 보험이 적용된 척추수술은 5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직접 환자에게 돈을 받는 비급여 수술은 적어도 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리를 취한 병원들=병원이 보험에 적용되는 표준 디스크 수술을 하고 버는 돈은 약 70만 원(검사 및 입원비 제외한 수술비 기준). 이중 환자에게 20%가량인 14만 원, 건강보험공단에서 56만 원 가량을 받는다.

하지만 AOLD 시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200만 원 가량을 복잡한 심사절차 없이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우리들병원에서 AOLD에 책정한 수술비는 199만 2000원.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표준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는 14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 AOLD를 받은 환자들은 별 효과없이 180만 원 가

량을 더 내는 셈이다. (후략)

표준 척추 디스크 수술과 우리들병원의 AOLD 비용 비교
(검사 및 입원비 제외)

	표준수술	AOLD
*환자 부담액	약 14만 원	약 199만 원
건강보험 부담액	약 56만 원	0원
병원이 버는 총액	약 70만 원	약 199만 원

*AOLD시 185만 원가량 환자부담 추가 발생.

(3) 『우리들병원, 高價 디스크 수술 시대 막내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 12:21)
내 용 :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표준 디스크수술에 비해 뛰어나다며 환자들에게 14배 이상의 치료비를 받아온 우리들병원의 디스크 수술법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들병원의 고가 디스크 수술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AOLD 급여 전환 환영, 환자 위해 꼭 필요한 결정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7일자 지면 1면에 〈우리들병원 200만 원짜리 수술법 14만 원짜리 수술과 별 차이 없다〉라는 기사와 인터넷에 1.〈우리들병원, 9년간 수술비 14배 폭리〉, 2.〈우리들병원 디스크 수술, 정권과의 추억〉, 3. 〈우리들병원, 고가 디스크 수술 시대 막 내려〉 제하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우리들병원이, 정권의 비호를 등에 업고 별 효과도 없는 치료법으로 환자들에게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전체적인 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재료비용이 고가임을 감안,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치료법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보험급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7일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비급여→급여' 의료행위로의 전환은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는 급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급여로 고시된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전환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병원은 정권의 비호를 받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처리결과

〈인터넷 기사 삭제〉 □

신청인 병원이 시행해오던 AOLD 수술법(관혈적 자동화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데일리메디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데일리메디 : 『우리들병원 수술법, 결론은 불인정』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7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병원이 시행해오던 AOLD 수술법(관혈적 자동화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코메디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코메디닷컴 : 『'뛰어난 수술법' 이라더니 9년만에 "하지마"』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7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코메디닷컴 : 『우리들병원 AOLD 이달부터 보험적용』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척추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 중의 하나인 AOLD(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치료)의 수술비에 대해 보험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AOLD는 뉴클레오톰이라는 자동 흡입장치를 이용해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 중의 하나. 우리들병원은 이 수술법이 수술용 집게를 사용하는 기존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고,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지금까지 시술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 중의 하나인 AOLD에 대해 수술비는 급여로 전환하되, 재료비는 비용 산정을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수술비는 보험 적용을 하되 재료비는 환자나 보험공단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환자의 치료비는 대폭 줄어든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은 "그동안 환자들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보험 적용을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재료비 비용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들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추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타 조합에 소속된 업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후 이를 빌미로 신청인 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9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경기도자동차부분정비1사업조합
(이사장 곽 ○ ○)
피신청인 : 시흥저널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시흥저널 : 『자동차정비조합 간 단속권 시비』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일자 3면)
내 용 : 시흥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소속한 조합들이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권을 내세워 조합

원 빼가기에 나서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하는 일명 카센터로 관내 245개 업체가 등록,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달부터 한 조합이 다른 조합원들을 자신들의 조합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불법 사항들을 적발, "조합을 옮기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등 두 조합간의 힘 겨루기로 정비업체들이 비상이 걸린 실정. 사정이 이러한 데도 시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는 "조합간의 문제이므로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는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등록한 부분정비1조합 임원들은 정왕동 내 카센터를 돌며 "1000만 원의 과태료 물릴까? 아니면 우리 조합으로 들어올래?" 라며 조합 가입서와 입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아갔다. 이에 3급 카센터 조합 측이 시에 강력히 항의하자 가입서와 입회비를 되돌려 주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담당자 또한 "그들 조합이 일부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을 옹호하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이들 조합에게는 단순히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권' 등의 위임 업무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시 담당부서의 비호 없이 특정조합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단속권'을 내세워 공갈, 협박을 할 수 있겠느냐"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도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잘 모르고 답변한 것"이라며 발뺌하고 있어 타 조합 소속 카센터 운영자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자동차정비조합 간 단속권 시비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시흥저널이 지난 2009년 3월 1일자 3면 『자동차정비조합 간 단속권 시비』 제목으로 시흥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소속한 조합들이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권을 내세워 조합원 빼가기에 나서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경기도에 등록한 부분정비1조합 임원들은 정왕동 내 카센터를 돌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까? 아니면 우리 조합으로 들어올래?"라며 조합가입서와 입회비 명목으로 받아갔다, 이에 3급 카센터 조합 측이 시에 강력히 항의하자 가입서와 입회비를 되돌려 주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부분정비1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4항에 의한 자율지도 활동을 나갔을 뿐 단속권을 내세우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한 카센터에서 폐기물관리 상황이 좋지 않아 '형사처벌이 될 경우 벌금이 1000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느냐?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을 교육, 지도하는데 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냐며 우리 조합에 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없고 회비가 2만 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고, 카센터가 가입을 원치 않았는데 가입시켰냐고 시에서 문의해 와 가입한 세 곳의 카센터에 다시 확인한 결과 한 곳만 가입을 원치 않아 가입원서와 회비를 돌려 준 사실이 있어, 조합을 옮기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거나 만행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자동차정비조합 간 단속권 시비』 보도와 관련하여 알립니다.

• 내 용 : 시흥저널이 지난 2009년 3월 2일자 3면 『자동차정비조합 간 단속권 시비』 제목으로 시흥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소속한 조합들이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권을 내세워 조합원 빼가기에 나서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경기도에 등록한 부분정비1조합 임원들은 정왕동 내 카센터를 돌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까? 아니면 우리 조합으로 들어올래?" 라며 조합 가입서와 입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부분정비1사업조합은 단속을 빙자하여 조합가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09년 1월 중순경 본 조합 자율지도 요원 3인이 정왕동 내 카

센터를 자율지도차 나갔는데 한 카센터의 폐기물 관리 상태가 엉망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상황이 형사 고발되면 벌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데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에서 잘 관리하도록 교육, 지도를 해준다. 그런데 왜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가? 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없고 회비만 2만 원이다' 라는 안내를 해 왔다고 밝혀와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흥저널 2009년 3월 23일자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간 제목 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시흥저널 인터넷 신문의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흥저널 : 『'자동차정비조합 간 단속권 시비' 보도와 관련하여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편법을 동원해 중견 기업체를 합병하려 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대신금속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1)『경남금속, 경영권 분쟁 '휘청'』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9일자 1면)

내 용 : 알루미늄 산업소재 생산업체인 '경남금속'(창원시 신촌동)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 600억 원대의 중견기업인 경남금속은 불황기 자구책 마련은 고사하고 자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 부실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남금속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은 2명이다. 지분 34.7%를 보유하고 대표이사 임기를 채우고 있는 서모 씨와 지난 1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등기를 완료한 박모 씨가 경영권을 다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의개서단행 가처분 제기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각종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발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18일 박씨가 제기한 명의개서단행가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씨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계약서에 따라 박씨에게 넘기라는 선고였다.

그러나 서씨를 포함한 경남금속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고,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또한, 3월 2일 열릴 주주총회를 놓고 서씨와 박씨가 각자 명의로 된 공문을 주주에게 돌리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남금속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사태에 대해 경영권 분쟁이라기보다는 'STX 협력업체의 편법 M&A'임을 강조하고 있다.

STX가 애초 경남금속을 인수하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 경남금속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협력업체(박 씨의 회사)를 인수기업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TX의 인수를 가정한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은 사정이 바뀐 지금에 와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씨는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주식을 인수했고 이를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남금속 직원을 설득하는 한편, 끝까지 주식 양도를 거부하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금속의 '편법 M&A' 주장에 대해 STX 측은 "사실무근이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2)『열리지 않은 주총서 대표이사 선임?』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6일자 8면)
내 용 : 열리지도 않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가 법원에 의해 등기 대표이사로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제의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는 법원 등기 절차상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확인돼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열린 경남금속 임시주총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박○○(대신금속·디에스아이 대표이사) 씨는 다음 날인 3일 법원에 대표이사·이사 변경 등기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등기 대표이사로 다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남금속, 경영권 분쟁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02월 19일자 1면에 경남금속, 경영권 분쟁 '휘청' 이라는 제목으로 '창원지법은 18일 박씨가 제기한 명의개서 단행 가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씨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계약서에 따라 박씨에게 넘기라는 선고였다.'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창원지법이 18일 내린 판결문은 명의개서 단행 가처분이 아니라 주식인도 소송이며 판결문에서 서씨가 보유한 주식 일부분을 계약서에 따라 박씨에게 넘기라는 선고가 아니라 서씨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대신금속(주)에게 넘기라는 판결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3월 6일자 경제면에 '열리지 않은 주총서 대표이사 선임?' 이라는 제목으로 '법원 등기 절차상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확인돼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열리지도 않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가 법원에 의해 등기 대표이사로 받아들여졌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신금속(주)는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은 분명하며,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출석 주주의 주식 수는 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서씨 측 지분은 대신금속(주)로 편입되었기에 적법한 주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경남금속 경영권 분쟁 관련 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9일자 1면 "경남금속 경영권 분쟁 휘청"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금속 경영권 분쟁과 관련 박○○(대신금속 대표이사) 씨가 경영권 분쟁의 다른 당사자인 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개서 단행 가처분에 대해 창원지법이 서씨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박씨에게 넘기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판결은 명의개서 단행 가처분이 아니라 주식인도 소송으로, 경영권 분쟁의 한 당사자인 서모 씨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박씨에게 넘기라는 소송이 아니라 서모 씨 소유 주식 전부를 대신금속에 넘기라는 판결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3월 6일자 '열지 않은 주총서 대표이사 선임?'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신금속은 3월 2일 오전 11시 40분경 경남금속 대표이사실에서 대신금속, 디에스아이, 신○○ 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금속 대표이사 박○○ 씨가 임시의장으로 주최한 주주총회가 열린 것은 분명하며,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출석 주주 주식 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서씨 측 지분이 대신금속으로 편입되었기에 적법한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3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9면 좌측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2009년 2월 19일자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M&A 과정서 법적 다툼…비대위 "STX가 약속파기")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경남금속 경영권 분쟁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9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의 플라스틱 배관 제품이 매설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평화 (대표이사 한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양일보 : 『제천 강저택지 상수도 배관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12면)
내 용 : 제천시가 강저택지지구 상수도 배관 선정 관련, 지역에서 한번도 사용치 않은 플라스틱(내충격식) 배관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강저택지 일원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고암정수장~강제동 택지지구내 경계지점까지 400㎜ 송수관을 매설할 계획이다.

송수관로 설계를 맡은 서울 소재의 ㄷ기술단이 '내충격식' 배관자재 제조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함에 따라 시공사인 주택공사는 8억여 원의 자재비를 들여 매설할 계획이다.

이 설계업체는 내충격식 수도관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천시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내충격식' 배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철관 보다 무게가 가벼워 교량 공사 등에 적합할 뿐 지하 매설용 배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배관을 5년 이상 사용하면 접합부 이탈현상 및 지침현상이 생겨 물 유속이 원활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내충격식 배관은 80~120㎜의 소형 배관만 사용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 같은 단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도 대구경 내충격식 배관을 설계에 반영치 않고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지구 택지 개발현장에서 150㎜ 내충격식 관을 사용했으나 접합부분의 누수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수도사업소 이모(30) 씨는 "내충격식(400㎜) 송수관은 강한 수압으로 인해 이음새가 이탈될 수 있어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 "내충격식 관은 저 수압의 소형 급배수관로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설계를 맡은 ㄷ기술단에 상수도 배관자재(내충격관, 폴리에틸렌관, 탁타일주관, 강관 등)에 대한 장점 등을 비교한 자료를 주문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시공 구간은 분기 목적이 아닌 단순 공급 기능만 갖고 있는 관로이므로 시범적으로 사용해 그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으로 어느 제품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용역사에서 내충격식 관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ㄷ기술단 관계자는 "시가 보낸 공문에 따라 현재 자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업무에 관한 내용들은 비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 줄 수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제천시 강저택지지구는 올해 12월 872세대가 1차로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8월 2차로 498세대와 내년 3차 800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9년 2월 24일자 인터넷판 및 2월 25일자 지면에서 『제천 강저택지 상수도 배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플라스틱 사용계획… 매설용으로 부적합」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제천시가 강저택지지구 상수도 배관 선정과 관련, 지역에서 한번도 사용치 않은 플라스틱(내충격식) 배관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송수관공사 설계를 맡은 서울

소재의 ㄷ기술단이 '내충격식' 배관자재 제조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함에 따라 시공사인 주택공사는 8억여 원의 자재비를 들여 매설할 계획이다. … 그러나 '내충격식' 배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철관 보다 무게가 가벼워 교량공사 등에 적합할 뿐 지하 매설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배관을 5년 이상 사용하면 접합부 이탈현상 및 지침현상이 생겨 물 유속이 원활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내충격식 배관은 80~120㎜의 소형배관만 사용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내충격식 수도관은 강저택지지구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전남 해남군과 장흥군 상하수도사업소 등 다수의 송수관공사에 공급되어 사용되어 왔고, 교량 공사뿐 아니라 지하 매설용 배관으로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내충격식 수도관 전체로 볼 때 2008년 조달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된 금액만도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400㎜의 대구경도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납품업체로 선정된 제조업체는 자체 제조한 내충격식 수도관에 접합부 이탈현상이나 지침현상이 생기거나 그로 인하여 물 유속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어 본지는 "남양주시 수도사업소 이모 씨(30)는 '내충격식(400㎜) 송수관은 강한 수압으로 인해 이음새가 이탈될 수 있어 사용한 적은 없다.' 면서 "내충격식관은 저수압의 소형 급배수관로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관으로 분류되는 400㎜ 내충격식 관을 송수관으로 선정하여 시공 중이거나 시공을 완료하였고, 위 납품업체가 공급한 내충격식 수도관 400㎜를 사용한 해남과 장흥군청 상하수도사업소장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접합부 이탈 등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발견된 바 없어 본지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의 의무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친 점 반성하고, 아울러 위 납품업체와 내충격 수도관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피해를 입힌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본지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매진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 회사의 플라스틱 배관 제품이 매설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평화 (대표이사 한 ○ ○)
피신청인 : 충청타임즈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충청타임즈 : 『제천시, 강저지구 송수관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2면)
내 용 : 〈2009충북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충북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3·1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향 래 (보은군수)
피신청인 : 보은신문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1.
처리결과 : 취 하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보도내용

보은신문 : 『3·1절 태극기 게양률 극히 저조』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6일자 11면)
내 용 : 올해로 90주년인 지난 1일 삼일절, 대부분의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가운데 군수 관사에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90주년을 맞아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우리 지역은 태극기 게양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3·1절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보은군은 읍내 등 주요거리 게양대를 이용해 가로변 태극기를 게양했지만, 일반 가정은 거의 태극기를 달지 않았다.

확인 결과 보은읍 이평리에 소재한 군수 관사조차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마저 태극기 게양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층의 의식 확립이 요구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향래 보은군수, 3·1절 태극기를 게양했기에 사과드립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6일자 종합 11면에 제목 "3·1절 태극기 게양률 극히 저조" 부제목 "군수 관사조차도 태극기 게양 안해"라는 제목으로 군수조차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등 지역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마저 태극기 게양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은군수는 분명히 태극기를 게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보은군수를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의식 없는 지도층으로, 3·1절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에 반하는 사람으로 왜곡한 보도기사에 대해 이향래 보은군수를 비롯한 보은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보은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3일자 1면)
내 용 : 본보 3월 6일자 925호 11면에 보도된 3·1절 태극기 게양 저조와 관련한 기사 중 군수 관사조차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군수 관사에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손배청구)

정정보도 이외에 손해배상은 어렵다. □

신청인이 동료 교수의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고의적으로 학교 이사회에 흘려 재임용에서 탈락되도록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국기독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기독신문 : 『바람 잘 날 없는 부산장신대학교』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7일자 7면)
내 용 : (전략) 논문 중복 기재한 배교수 건… 학내 새로운 변수

서울대를 나와 신학을 전공한 배현주 교수는 한국의 지방 신학교가 미국 신학교에서도 하기 어려운 '생명목회, 생명선교'를 발족시켰다.

새 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될 배교수한테 이사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유화준 목사, 서기 조지제 교수(장로)로부터 새 학기부터 임용이 탈락됐다는 통보를 한달 전에 했다. 문제가 시끄럽게 되자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를 하고 학생총학 집행부가 "너무한 처사"라며 배교수 논문 평가 성적표를 공개하라며 새로운 학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것은 배교수가 낸 교수 논문 내용과 전문학술지 한글 논문과 영어 논문 등 3곳에 중복이 된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그 연구논문을 내기 위해 학교로부터 받아 간 연구비용은 교수로서의 양심적 품위에 해당되는 점 때문이라고 이사회는 탈락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배교수가 처음으로 임용될 때와 조교수로 승진할 때 똑같은 내용을 중복 게재한 부분이 이번 배교수 임용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략)

단지 문제의 '논문이 중복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해당 학술지나 논문에 한 두 부분은 삭제하고 올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획위는 이를 기피했거나 해당 교수한테 통보를 늦게 한 부분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교수는 임용할 때와 조교수 승진시 낸 논문 내용을 이사회가 알 까닭이 없어, 박모 교무처장이 고의적으로 이사회에 흘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래서 배교수는 교무처장을 향해 "오랫동안 교무처장직을 했는데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며 개인적인 감정까지 토로한 부분을 보더라도 교무처는 오히려 탈락 쪽으로 몰고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교수사회에서는 갈등도 만만치가 않다는 여론이 학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산장신대학교 사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7일자 1면에 "바람 잘 날 없는 부산장신대학교"라는 제목으로 부산장신대 사태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서 언급한 "배교수의 논문 내용의 사전 유출"이 부산장신대학교 박○○ 교무처장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본 신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인해 심대한 명예를 훼손한 박○○ 교수에게 깊이 사과하는 바이며, 앞으로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한국기독신문 : 『부산장신대 박○○ 교수, 본보에 반론 제기해와』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8일자 2면)
내 용 : 본보 지난 3월 7일자 7면에 '바람 잘 날 없는 부산장신대학교'라는 큰 제목 아래, 부산장신대 학내 사태를 보도하면서 배현주 교수의 논문 내용이 박 교무처장이 이사회에 흘린 것처럼 추측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즉각 반론해 왔다. 이에 대해 본지는 학교 내 일부 학생들의 확인되지 않은 학내 여론과 배교수가 지난 2월 23일자로 직접 쓴 "저를 먼저 생각해주시는 그리스도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추신 난에 "본래 인간미 넘치는 박교수님께서 동료 교수들의 고충과 아픔에 대해 이토록 놀라운 불감증을 키우시게 된 데에는 학교의 불행한 상황 속에서 교수님이 너무 오래 교무처장직을

맡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교수 공동체를 위하여 교무처장직에서 물러나시고 몇 년간 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페이퍼를 근거로 단정기사가 아닌 추측성 기사 형태로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한 바 "박교수는 이에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혀왔다.

박○○ 교수는 "어떤 학생이 그런 루머를 퍼뜨렸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터무니 없는 루머에 시달려야 하는지, 교수사회에서 비애를 느낀다. 본인은 앞으로 이같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격살해를 자행하는 비열한 행태를 대학사회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박교수는 '배교수 재임용 탈락 건'과 관련해 최근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

지난해 11월부터 방부목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보도했으나, 고독성 비소화합물이 함유된 방부목재의 사용만 금지됐을 뿐이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Y T N : 「24시뉴스」 프로그램 『친환경 합성목재 각광』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8일 04:12)
내 용 : 나무가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한 방부목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새로 개발된 친환경 합성목재가 방부목재의 대체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합성목재는 폐자원을 재활용한 인체에 해가 없는 무공해 목재라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공지천변 산비탈 아래에 수변 산책로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로 사용하던 방부목 대신 합성목재가 사용돼 눈길을 끕니다.

횡성의 한 야외 테니스장의 관중석도 이 합성목재가 차지했습니다.

▷김○○, 횡성군 자치행정과 직원 :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나무가 뒤틀리지 않고 손상도 안가고 청소하기도 편해 이걸로 쓰게 됐습니다."

나무에 방부제를 처리한 방부목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방부목 사용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때 맞춰 강원도 횡성의 한 중소업체가 새로 개발한 친환경 건축자재인 합성목재가 방부목재의 대체나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 동해산업 대표이사 : "인체에 해가 있는 방부목을 저희들이 대체하기 위해 인체에 해가 없는 합성수지에 목분과 왕겨를 첨가한 합성목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왕겨와 고분자 합성수지의 혼합비율을 51:49로 배합해 만든 합성목재.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지 않은 합성수지를 사용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무공해 건축자재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소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합성목재는 버려진 폐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인공목재로 천연목재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합성목재.

그동안 생태공원과 야외 놀이시설 등에 쓰였던 방부목재의 빈 자리를 대체하면서 불황을 이겨내는 효자품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나무가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한 방부목재 사용의 전면 금지"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12월 8일 24시 뉴스에서 "각광받는 친환경 합성목재"라는 제목으로 방부처리한 방부목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4회에 걸쳐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성의 비소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CCA계 목재방부제 및 이것으로 처리한 방부목재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ACQ, CUAZ, CB-HDO 등 비소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저독성 목재방부제로 분류되어 있는 약제 및 이것으로 처리한 방부목재는 여러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야외용 데크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YTN : 「24시뉴스」 프로그램 『방부목재…조경 시설물에 인기!』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4일 02:21)

내 용 :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친환경 자재인 일반 나무의 단점을 보완한 ACQ 방부목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부목은 쉽게 썩지 않고 내구성이 강해 주로 구조재나 야외 조경 시설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점차 그 사용 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그네와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자재인 일반 나무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썩지 않도록 가압 처리된 방부목재가 사용됐습니다. 물이 많은 저수지나 생태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에도 인체에 해가 없는 ACQ 방부목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 한국목재보존협회 부회장 : "가압처리된 방부목은 수명이 20년이 넘고 인체나 환경오염에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데크공사 등 조경 시설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은 내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어린이가 부러진 썩은 지지목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부터 방부목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 "적절한 방부처리를 했을 경우,목재는 20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목재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보존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일반 목재를 사용해 만든 산책로입니다. 습기에 약한 바닥 나무판은 물론 난간 기둥이 심하게 썩어 조만간에 방부목재로 교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처럼 방부처리되지 않은 일반 목재는 강도가 떨어지고 빨리 썩어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개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과 암벽 등산로에 설치된 계단, 계곡을 이어준 다리도 습기에 강한 방부목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노출된 일반 나무와 사용이 금지된 CCA 방부목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ACQ 방부목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출간된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을 신청인 협회가 발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중친선협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세계일보 : 『中서 나라망신 시킨 한중친선협회』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1일자 10면)

내 용 : 최근 중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인쇄 비용을 둘러싸고 한국인 발행인 측과 중국 출판사 간에 분쟁이 발생,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책은 한중친선협회 베이징지회가 출간한 이 대통령의 자서전인 '경영미래'(사진)다. 책을 펴낸 출판사는 한중친선협회에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대통령의 명성에도 누가 될 수 있다"며 2억 원에 달하는 인쇄비를 받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20일 중국 인민출판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선이 끝난 지난해 초 이 대통령의 자서전인 '경영미래'를 중국어판 단행본 형태로 3만 권(40위안·한화 8000원) 출간했다. 자서전 발행의 총괄 책임은 안모 한중친선협회 베이징지회 부지부장이 맡았고, 김모 베이징지회장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한중친선협회는 이세기 전 통일부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중략)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은 지난해 2월 말 대통령 취임 축하사절로 방한하면서 '경영미래'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자서전이 중국 내에서 반응이 좋자 안씨는 같은 해 5월 출판사를 찾아가 "단행본을 양장본(98위안·한화 2만 원)으로 바꿔 5만 권을 새로 찍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찍는 책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3만 권을 사고, 나머지는 다른 한국기업이 구매할 것"이라며 판매를 장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씨는 출판사에 총 인쇄 비용 138만 위안(한화 2억7600만 원) 중 35만 위안(〃 7000만 원)을 지불한 뒤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양장본 자서전이 출간되자 안씨와 김씨는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책 구매를 요구하는 한편, 한중친선협회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이명박학 특강'을 실시한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특강이 개최되면서 삼성전자 중국지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 1만 권을 구매했고, 현대자동차그룹과 SK차이나는 특강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자서전과 특강으로 한중친선협회 베이징지회가 거둬들인 돈은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작 협회는 출판사에 밀린 인쇄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민출판사는 지난해 말 이 회장과 안씨에게 인쇄비 지급을 촉구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중친선협회 중국서 나라망신 시킨 일 없어

• 내 용 : 본보 2월 21일자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한 "中서 나라망신 시킨 한중친선협회"라는 기사는 잘못된 기사로 판명되어 바로 잡습니다.

한중친선협회 북경지회가 이명박 자서전 중국어 번역판《경영미래》를 출간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한중친선협회(회장 이세기)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6개월 간 5차례에 걸쳐 이명박학 특별강좌를 주관하여 순조롭게 마무리했을 뿐 이명박 자서전 중국어 번역판《경영미래》 출판·판매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명박 자서전《경영미래》 추가제작 비용 2억 원을 내지 않아 인민출판사가 마치 한중친선협회를 걸어 법적 소송을 제기할 듯이 보도했으나 이 역시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인민출판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회장에게 협조요청 서한을 보낸 것은 이○○ 회장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인민출판사가 스스로 해명하였습니다.

인민출판사와 추가제작을 계약한 안영수는 동방문화중심 대표 자격으로 계약했을 뿐 한중친선협회와는 관련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북경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은 북경대학 이명박학 강좌에 직접 참여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등의 관계로 5차례의 강좌에 대한 후원금을 북경대학 측 Agent에게 직접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친선협회는 외교부로부터 매년 3억 원의 보조비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1억 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대표이사 윤 정 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4월 8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계일보〉 2면 우측에 2단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통상적인 2단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 및 굵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한중친선협회 관련 정정

2)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21일자 10면 「中서 나라망신 시킨 한중친선협회」 제하의 기사에서 한중친선협회 베이징지회가 출간한 이 대통령 자서전과 관련해 중국 인민출판사와 인쇄비 분쟁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이 대통령과 자서전은 한중친선협회가 출간한 것이 아닌, 안모 씨가 동방문화중심 대표 자격으로 계약·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출판사는 한중친선협회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었으며, 협회가 외교부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매년 1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0

조정결정 이행결과

세계일보 : 『한중친선협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2004년 관련 법 제정 이후에도 '지역아동센터'라는 법정 명칭 대신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강 명 순 (국회의원)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2TV :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경기 침체 속 공부방 대기 아동 급증』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 08:00)

내　　용 : 요즘 지역아동센터, 즉 공부방에 들어가려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공장들이 모여있는 수도권 공단 지역의 공부방이 모자란 형편인데… 경기가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겠죠?

네, 갑작스런 실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녀들을 예전처럼 학원에 보내기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지역아동센터, 즉 공부방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은 한정돼 있어 기약 없이 대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부방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요는 많아졌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대기 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공단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 이용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실제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올해 1, 2월, 공부방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백97개 지역아동센터에 2천2백60여 명의 아이들이 증가했습니다. 공부방을 이용하게 된 사유로는 부모의 실직이 23.4%였고, 여러 사유로 인한 수입 감소 그리고 부도, 파산 때문이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기침체 속 공부방 대기 아동 급증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11일자 아침뉴스타임에서 "경기침체 속 공부방 대기 아동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법정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공부방이라는 비 법정 명칭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된 정부예산지원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비 법정 명칭을 사용한 본 방송의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 보도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정보도할 의사가 없다. □

신청인 협회가 펜싱 대표팀 구타 사건을 제보한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펜싱협회 (회장 손 ○ ○)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1)『펜싱 이석 코치 버젓이 지도자 활동』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5일자 8면)
내 용 :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수 구타 문제로 무기한 자격정지를 당한 이석(34) 전 대표팀 코치가 소속팀에서 버젓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 코치는 현재 소속팀 양구군청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도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지난 3일 대한펜싱협회에 경고 문서를 발송했다.

대한체육회 선수권익보호팀의 김재원 팀장은 4일 "자격정지를 받은 코치가 현장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해 펜싱협회 측에 진상조사와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코치는 지난해 12월 홍콩 전훈을 떠나는 펜싱 에페 대표팀 김승구(28·화성시청)를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인천 국제공항과 홍콩 숙소에서 구타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았다. 구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진 뒤 펜싱협회는 진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해당 코치를 두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한체육회는 펜싱협회가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어 선수권익보호팀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 조사에 나섰고, 결국 이 전 코치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후략)

(2)『구타 진술서 썼다고 전훈 제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6일자 종합면)
내 용 : 대한펜싱협회가 납득하기 힘든 처사로 체육계의 물을 흐리고 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수 구타 사실이 인정돼 무기한 자격정지를 당한 이석 전 대표팀 코치가 소속팀인 양구군청 감독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가운데 이번에는 특정선수를 배제하는 스웨덴 전훈을 실시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한펜싱협회 이석 코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5일 스포츠면에 "선수 구타 이석 코치, 무기한 자격징계에도 코치?"

와 3월 6일 종합면에 “구타 진술서 썼다고 전훈 제외? 펜싱협회 자격정지 코치 활동 이어 파문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이석 코치가 대한체육회의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인 양구군청에서 감독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대한펜싱협회가 이석 코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박민태 선수와 정진선 선수를 3월 스웨덴 전지훈련에서 제외한 것은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석 코치는 지난 1월 7일부로 양구군청 실업팀 감독에서 직위해제 되었고, 3월 스웨덴 전지훈련에서 박민태 선수와 정진선 선수가 제외된 것은 대한펜싱협회가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대회 직후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를 대비하여 수립하고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4개년 계획에 따라 신인발굴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신청인 협회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발부하면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회원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부산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제신문 : 『부산개별화물차운송협회 ‘증명서 장사’ 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8일자 8면)

내 용 : 중소형 화물차 운전사들의 단체인 부산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개별협회)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발부하면서 수십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아 운전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명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며 개선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1t 초과 5t 미만 화물차 운전사들이 회원인 개별협회에 따르면 협회 측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운전사들에게 회원가입을 전제로 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가입비는 정회원의 경우 51만4000원, 준회원은 10만 원이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사는 ‘자격증명’을 업종별 관할 운송사업협회에서 발부받은 후 이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야하며 위반 땐 운행정지 10일과 5만~10만 원(일반 10만 원, 개별·용달 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한달(1월 20일~2월 19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산개별화물차운송협회 ‘증명서 장사하나’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8일자 사회 8면에 “부산개별화물차운송협회 ‘증명서 장사하나”라는 제목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가입회비 51만 원을 내야 발급하는 등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편향되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협회 가입은 협회 정관에 따라 강제가 아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된 사실과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왜곡 편향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부산시의 화물운송 자격증명의 단속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게재할 때 사전에 신청인 협회 측과 협의한다.

• 피신청인은 후속 보도시 신청인 협회 측의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한다. □

KBS가 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을 특종 보도한 것에 대해 KBS 고위층은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노컷뉴스 : 『KBS, 법원 이메일 특종은 자살골? 기자가 기막혀』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9일자 종합면)

내 용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이메일 파문은 이번 주에도 핫 이슈. 9일은 신영철 대법관이 조사를 받는다. 또 일선 법원 판사 중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닮아가며 행정권력이 비대해지다 보니 판사들을 관료처럼 다루기 시작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니 사법부 스스로 깊은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겠다. 그러나 그건 사법부 문제일 뿐이고….

◇KBS, 법원 이메일 특종은 자살골? 기자가 기가 막혀!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연거푸 이메일을 보내며 압박했다고 이메일 내용을 폭로한 특종은 KBS 사회부 법조팀의 개가.

MBC가 2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촛불 재판 몰아주기 배당"이란 첫 특종으로 사건을 폭로하고 주가를 올려가자 KBS 법조팀은 이를 만회하느라 심기일전 뛰었다.

그 결과 낙종 열흘 만인 지난 5일 아침 6시 〈뉴스광장〉부터 문제의 재판 간섭과 압력의 실체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이메일 내용을 보도했다. 당사자의 부인과 변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멋진 후속 특종.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밤 9시 〈뉴스 9〉에 내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으로 넘어 간 것은 이메일 내용을 입수한 것이 밤 11시였기 때문이라고)

KBS 보도 이후 법원 행정처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판사들의 항의글과 시민단체들의 규탄집회가 시작돼 파장 면에서도 특종다운 특종. 그런데 이렇게 크게 특종 한 건을 올린 KBS 법조팀으로 말미암아 KBS 내부 분위기가 '썰렁 ~' 내지는 '싸 ~ ' 하다는 게 문제.

특종을 하려면 잘 할 것이지 왜 그런 특종을 했느냐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수 정권에 자칫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특종하고 나니 KBS 윗선에서 상당히 당황 내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모양.

왜 그런가. 우선 현 이병순 사장의 임기는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 간이다. 지난해 8월 27일에 취임했으니까 올 상반기는 현 사장이 재임해 제대로 된 임기를 한 번 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 잘 해서 잘 보여야 하는데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려?

특종을 한 5일 밤 9시 뉴스를 비교해도 MBC는 6꼭지로 엄청 크게 보도했지만 특종한 KBS는 4꼭지에 그쳤다. KBS 특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다음날 〈뉴스광장〉에서 기자 리포트로 소개하려던 것도 반영이 안돼 무산됐다고 하니 특종 키우기가 아닌 특종 줄이기로 가는 모양이다.

신임 사장이 들어서 간부 인사를 통해 보수적인 지휘부를 꾸렸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 못한 특종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다 KBS도 이메일

파문 등장하는 것 아닐 지 몰라.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년 3월 9일 "KBS, 법원 이메일 특종은 자살골? 기자가 기막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당사는 2009년 3월 9일자 "KBS, 법원 이메일 특종은 자살골? 기자가 기막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KBS 한국방송〉이 법원 이메일 특종 보도와 관련해 특종 키우기가 아닌 특종 줄이기로 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이번 특종 보도와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취재팀과 수뇌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위아래가 함께 이번 특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KBS의 특종 보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사실과는 상이한 보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BS의 대외 이미지를 왜곡·훼손하고 KBS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KBS, 법원 이메일 특종 축소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9일 「KBS, 법원 이메일 특종은 자살골? 기자가 기막혀」 제하의 기사를 통해, "KBS가 법원의 이메일 사건 관련 특종을 했음에도 KBS 윗선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썰렁~' 내지는 '싸~' 하다"면서 "KBS는 특종 키우기가 아닌 특종 줄이기로 가는 모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종 보도와 관련해 KBS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취재팀과 수뇌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위아래가 함께 이번 특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노컷뉴스가 정확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함으로써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정체성까지 뒤흔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KBS, 법원 이메일 특종 축소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7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KBS가 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을 특종 보도한 것에 대해 KBS 고위층은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피신청인 : iPD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iPD저널 : 『KBS, 법원 이메일 특종은 자살골? 기자

가 기막혀』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9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4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iPD저널 : 『KBS, 법원 이메일 특종 축소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6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상수도 관리 위탁을 맡은 신청인 공사가 독점적 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폐쇄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정수장 폐쇄는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항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한겨레21 : 『물값이 기가 막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자 38~46면)
내 용 : 회천(會川). 가야산 계곡에서 출발한 회천은 경북 고령군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고령 운수 땅을 지난 회천 물줄기는 고령읍 본관리에서 소가천과 몸을 섞고, 내처 남쪽으로 흘러 안림천까지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름도 '모일 회'(會)자를 쓰는 회천이다.

회천은 대가야 시절부터 고령의 젖줄이었다. 물이 맑았고, 수량은 풍부했다. 고령 주민의 절반은 아직도 1급수인 회천 물을 먹는다. 가까운 대구와 부산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가 터질 때, 고령 주민은 물 걱정을 몰랐다. 회천 덕분이었다.

회천은 1급수, 낙동강 물은 2~3급수

2009년이 지나면 회천을 취수원으로 활용했던 고령정수장은 폐쇄될지 모른다. 고령 주민이 더 이상 회천 물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중략)

수공의 독립적 지위 확보 욕망

고령정수장은 수공에도 장애물이다. 수공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내는 물을 팔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다. 고령정수장이 계속 물을 생산하는 한, 수공이 고령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제한된다.

고령군과 수공은 2006년 6월 상수도 위탁 협약을 맺으며 아예 고령의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수공이 상수도 운영을 맡는 첫 2년 간은 기존 정수장을 활용하되, 3년째인 올해 1월부터 수공의 광역정수장 물을 100%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과 수공은 현재 환경부에 고령정수장 폐쇄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환경부가 이를 허가하면 고령 주민은 1급수 회천 물 대신 그동안 '똥물'이라고 욕했던 낙동강 물을 비싼 값을 치르고 마시게 된다. (중략)

수공이 지방의 상수도 관련 업무를 맡은 뒤 지자체 정수장 폐쇄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수공은 이를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고 설명한다. 수공이 지자체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은 대개 20년이나 30년 단위다.

이 기간에 자체 정수장을 없앤 지자체는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공의 물을 사먹어야 한다. 정수장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상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어렵사리 상수원을 찾아내도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뒤따른다. 자신의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사람은 거의 없다.

수공에 상수도 관리를 맡기며 자체 정수장을 폐쇄한 정읍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 시행 5년 째를 맞는 올해, 정읍은 수공과 '물값 분쟁'에 휘말렸다. 정읍이 수공에 지급하는 상수도 운영 대가가 문제다.

지자체가 지불하는 운영 대가는 t단위 기준 운영 단가에 물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정읍시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공의 행태를 "양약스럽다"고 했다. 양약스럽다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로 "치사하다"는 뜻이다.

"애초 수공과 운영 단가를 협의할 때 투자보수라는 이름으로 수공의 이윤을 3%로 잡아놨는데, 올해부터 물값이 또다시 3%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운영 단가에 다 포함된 셈이니, 물값에도 적용하는 것은 좀 봐줘야죠."

투자보수는 지자체가 수공에 보장해주는 일종의 수익이다. 지자체가 직접 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용이다. 투자보수 규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2007년 이전에 수공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논산·정읍·고령 등은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비의 3%를 투자보수로 주기로 했다. 반면 2007년 이후 계약한 충북 단양·경남 거제·경기 양주 등은 5% 안팎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관리 위탁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9년 2월 16일자 제747호의 표지면 및 본문 38~46쪽에서 "물값이 기가 막혀(공룡 수자원공사와 끊이지 않는 전국 수돗물 분쟁 르포)"라는 제목으로 수공이 지방상수도 위수탁 관리시 지자체 정수장 폐쇄에 집착, 수돗물값 폭등 전망, 위탁계약을 조용히 처리, 경인운하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공룡"으로 거듭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 정수장 폐쇄는 수도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서 중앙부처 등에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항이고, 수돗물값 인상여부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는 고유 사무이며, 또한, 경인운하는 굴포천 유역 수해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평상시 활용하기 위하여 운하로 전환·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조정대리인 변호사 안 ○ ○,
지방상수도팀 차장 양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겨레신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조정대리인 한겨레21
정치팀장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4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21〉 독자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통상적인 한겨레21의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6.

〈별 지〉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6일 '물값이 기가 막혀' 관련 기사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수도요금 상승 전망과, 수공의 2007년 수도사업 매출 총이익은 1,300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공은 2007년 수도사업의 매출 총이익은 1,195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719억 원, 지방상수도 사업의 영업이익은 손실 266억 원이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등에 의해 물값의 변동요인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위탁 운영 자체가 물값을 폭등시키거나, 이로 인해 수공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한겨레21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0일자 10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의 음성과 영업장 주변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4조 원대 다단계, 조○○의 사기수법을 해부한다』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28일 23:05)
내 용 : 〈경북 영천 ○○면〉
그 과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장님 (중략)
▷진행자 : 수소문 끝에 그의 형 집을 찾았지만, 집은 비어있는 상태. 그런데 그 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물상 전경 다 나옴)
▷PD : 안녕하세요.
▷신청인 : 예, 예, 어떻게 오셨는데요. (음성 변조 안 됨) 이 양반(형)도, 이 양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해가 크다고 하던데요.
▷PD : 이 분이요?
▷신청인 : 예, 돈을 엄청 투자한 모양이던데, 마지막에 조○○ 씨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 씨가) 저번에 술 한잔 하면서 내 앞에서 울더라고요. 나이 들어 가지고, 육십 다 되어가지고요. (중략)
▷신청인 : 이 집(조○○ 씨 집)이 지금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겨울 동안 보일러 기름 넣을 돈도 없어서 옆집에서 빌려 쓰고 했는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4월 27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의 조정대리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9년 4월 3일까지 발송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신청인 회사가 '존앤존 PC방' 가맹사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퍼스트에이앤티 (대표이사 백 ○ ○)
피신청인 : 창업경영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창업경영신문 : 『존앤존 피시방 가맹사업 끝났나』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자 종합면)

내 용 : (주)퍼스트에이앤티는 2002년부터 햇수로 9년째 존앤존 피시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존앤존 피시방은 가맹점들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이에 존앤존 피시방 신규 창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퍼스트에이앤티는 콤마치킨, 수리야, 한우동, 미아띠 등 굴지의 외식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다. 존앤존 피시방은 신개념 피시방의 선두 주자로 꼽히며, 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다 2006년 211개의 가맹점 개설을 정점으로,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피시방 프랜차이즈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전면에 내걸고, 고객들을 끌어모아 왔다. 창업자의 경우, 노동 강도가 약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시방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피시방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A/S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는 가맹점 매출향상 또는 경영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시방 가맹사업의 폐해로 사업 중인 피시방 점주에게 싼 값으로 리모델링 해줄테니 브랜드를 바꾸라는 브로커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만큼 인테리어 외에는 차별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 물론 PC의 사양도 중요하지만, PC는 주변 경쟁점포에 밀리지 않을 정도만 갖추면 된다고 지적한다.

존앤존 피시방은 현재 160여 개 정도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존앤존 피시방 관계자는 "현재 존앤존 간판을 내걸고 운영 중인 곳은 400여 곳 정도지만 본사의 관리를 받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곳은 160여 곳에 불과하다"며 "임의적으로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통제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존앤존 피시방은 2~3달에 1개꼴로 가맹점을 오픈할 만큼 가맹사업이 부진한데, 사업이 이 정도까지 안된 것은 1년도 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맹사업을 조금이나마 해오고 있다는 직원의 말과는 달리, (주)퍼스트에이앤티의 백○○ 대표는 "사실상 피시방 사업은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가맹점에 대한 관리도 A/S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존앤존 피시방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은 2007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창업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대표가 운영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맹본부에서 신규 창업자를 계속 배출한다면 창업자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존앤존 피시방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0일자에 "존앤존 피시방, 가맹사업 끝났나"라는 제목으로 존앤존이 가맹사업을 포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존앤존 PC방은 원활한 가맹점 관리와 정상적인 가맹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가. 부제목을 「사후관리 A/S에 머물 우려」라고 수정한다.

나. 본문 내용 중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를 「…않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한다.

다. 본문 내용 중 「이에 존앤존 피시방 신규 창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퍼스트에이앤티는 콤마치킨, 수리야, 한우동, 미아띠 등 굴지의 외식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을 조금이나마 해오고 있다는 직원의 말과는 달리, (주)퍼스트에이앤티의 백○○ 대표는 "사실상 피시방 사업은 포기한 거나 다름 없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조정대상 기사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창업경영신문 : 『존앤존 피시방 가맹사업 끝났나』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3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남편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살고있는 아파트를 방송에 내보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청주 KBS-1TV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청주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2009년 3월 10일 21:35)

내 용 : (전략) ▷기자 : 경기침체로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원군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46세 강모 씨가 가스배관에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정경) (후략)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 삭제〉 □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사람이 K씨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짜 미네르바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19.

처리결과 :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8 참조)

보도내용

신동아 :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호 218~237면)

내 용 : 211.178.○○○.189.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이들에게 이 12자리 숫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200여 편의 글을 올려온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그가 근래에 올린 글에 찍혀 있는 IP가 바로 이 숫자다.

정부의 정책실패,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양상, 서민들은 현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막힘 없는 탄탄한 논리와 풍부한 통계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그의 글은 건당 평균 조회수 10만을 훌쩍 넘기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특히 3월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 붙을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8월에 급격한 환율변동 사태가 오리라는 예고, 9월에 환율 1400원대 진입 예고 등은 마치 족집게처럼 그가 말한 시점에 정확히 현실화했고, 그에 대한 사이버 상의 신뢰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틀린 예측도 있었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많은 네티즌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라오는 글마다 IP를 확인하며 일희일비하고, 각종 경제미디어에서 '미네르바 신드롬'을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이 10월 무렵의 일이다.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를 재정부 장관에 앉혀야 한다'는 네티즌 글들이 경제 관련 게시판마다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략)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자 미네르바는 10월 29일 '노란 토끼가 시작됐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 채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한 차례 절필을 선언한다. 그러는 사이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11월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자, 김 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이튿날인 11월 4일 미네르바는 인터넷에 '이제 병원 간다'는 글을 남기고 또다시 절필을 선언했다. 그 사이 '정보당국'에서 그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인용해 '미네르바는 50대 중반의 증권회사 경력자'라고 보도하는 기사가 나왔다. 11월 13일과 14일, 그는 다시 글을 올렸지만 역시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글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신동아'가 미네르바와 접촉한 것이 이 무렵이다 (그 구체적인 경로는 본인의 뜻을 존중해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주변까지 압박해 들어오는 당국의 태도나 행동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심경과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생각을 일부 밝혔다. (중략)

다음은 '신동아'와의 접촉에서 미네르바가 밝힌 사항 전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0월29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제 '노란 토끼'가 시작된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는 내년 꽃 피는 봄이 되면 알 거야"라고 썼다. '노란 토끼'가 무엇을 뜻하는가.

"보낸 글에서 환율변동성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노란 토끼'란 환투기 세력을 언급한 것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끌어올렸던 바로 그 세력이다. 외양은 미국 헤지펀드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앤캐리 자본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노란' 토끼다. 이들은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인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타깃으로 삼았다. 정부에서는 국내 투신이나 기관권의 해외펀드 환매 때문에 달러를 매입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연초부터 정부의 고환율정책을 틈타 이들이 주식과 국내채권,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해서 외환시장에서 환차익을 얻어 송금했다."

▷최근 '50대 초반, 증권사 근무와 해외체류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맞는가.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내가 유명세를 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이제까지 글을 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신원이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

단한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늙은이는 (‘신동아’에) 글을 기고할 이유가 없다. 나는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완전히 절필하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네르바 K는 가짜로 판명되었다. 박○○ 씨에게 사과한다.”
• 내 용 : “본지(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에서 K모가 7인 그룹을 형성하여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8년 3월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280여 편의 경제관련 글을 2009년 1월 초순경까지 올린 사실이 있고, 그 글 중에서 2008년 9월 10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폭등 및 경기침하 예측 등의 글이 널리 알려져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크게 명성을 얻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전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신청인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8년 3월부터 211.178.로 시작되는 아이피 주소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아이디로 위 기간 중 280편의 글을 위 토론방에 올렸고, 크게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는 바로 신청인입니다.” □

신청인이 모 병원 내과 전문의와 내연관계였으며, 관계가 악화되자 병원의 비리를 폭로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영광칠산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영광칠산신문 : (1)『관내 A병원 ‘리베이트 내역’ 폭로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9일자 2면)
내 용 : 영광 A병원 내과 전문의와 부속실 여직원이 불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관계가 악화되자 제약회사에서 문제의 K모 내과 과장에게 로비를 벌여온 상황을 관내 기자들에게 팩스를 이용 폭로하는 일까지 생겼다. 하지만 내연녀가 폭로했다는 확실한 정황은 없고 병원 관계자들의 추정일 뿐이다. 일이 커지자 병원 측에선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수습에 나섰고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걸로 전했다.

이번 일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휴대폰 문자로 병원 직원들과 문제의 K모 과장 부인에게 폭로를 해오다 병원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기자들에게 팩스로 리베이트 내역 및 신용카드 내역, 세미나 접대 내역 등을 보내왔다. 현재 K모 과장 부인이 광주서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수사 중이며 부속실 여직원은 2006년 11월에 퇴직했고, K모 과장은 12월 20일자로 퇴직한다. (후략)

(2)『A병원 ‘폭로파문’ 원인규명 법정으로 가는가?』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9일자 2면)
내 용 : 〈속보〉 지난 2008년 12월 19일 본지에서 보도한 관내 A병원 ‘리베이트 내역’ 폭로 파문 사건에 내연녀로 지목된 B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열어 유포시켰다며 병원장과 전 내과 과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내과 과장과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불륜관계는 아니었다. 전 내과 과장이 또 다른 병원 간호사인 C모 씨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병원장한테 거짓으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불륜관계였다고 말한 거 같다. 정말 억울하다. 소중한 내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잠을 못자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2월 19일자 2면에 "관내 A병원 리베이트 내역 폭로 파문 유부남 내과 전문의와 부속실 여직원 '내연관계' 관계 악화되자 리베이트 내역 의도적인 폭로인 듯"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기사에서 언급한 내과 전문의와 부속실 여직원은 불륜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원의 허가장을 발부받아 통신수사를 벌인 결과 병원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리베이트 내역 및 신용카드 내역, 세미나 접대내역 등을 팩스를 이용하여 폭로한 사람은 병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부속실 여직원과는 무관한 아무개 씨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2009년 1월 9일자 2면에 돈을 자꾸 요구하다가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병원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기사를 통해 보도한 관내 A병원 리베이트 내역 폭로 파문과 관련 사실이 실제와 다르며, 병원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병원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영광칠산신문 : 『A병원 리베이트 폭로 파문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7일자 2면)
내 용 : 〈속보〉본지에서 보도한(9호 2008년 12월 19일, 12호 2009년 1월 9일) 'A병원 리베이트 폭로 파문'의 진실이 경찰 수사 결과 당초 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부속실 여직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본지 보도 후 병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병원장과 내과 과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 결과 내과 전문의와 부속실 여직원의 불륜관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법원의 허가장을 발부받아 통신 수사를 한 결과 병원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리베이트 내역 및 신용카드 내역, 세미나 접대 내역 등을 팩스를 이용해 폭로한 사람 또한 부속실 여직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병원장은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됐으며 K모 전 내과 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후략) □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주말 드라마에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1 참조)

보도내용

SBS-TV : 「사랑은 아무나 하나」 프로그램 (2009년 3월 16일 20:50)
내 용 : 〈방송내용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

치아 미백에 관한 기사에서 마치 신청인과 인터뷰한 것처럼 성명과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건강다이제스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3.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6 참조)

보도내용

건강다이제스트 : 『하얗고 튼튼한 치아로~ 치아 케어법!』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호 60, 61면)

내 용 : 보통 치아가 변색되는 가장 큰 원인은 커피나 콜라, 포도주스, 녹차 등의 색소가 강한 음료나 흡연이다. 의정부 샌프란시스코치과 김○○ 원장은 "이렇게 음식물에 의한 착색이나 나이가 들어 치아가 변색된 경우에는 치아 미백 시술이 효과가 좋지만 약물이나 외부 손상으로 인해 검거나 푸르게 변색된 경우에는 미백 시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치아를 하얗게 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 원장의 초상권 침해와 명의도용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건강다이제스트는 지난 1월호 '알아봅시다' 면에 김○○ 원장의 사진과 병원명, 성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본 월간지는 김○○ 원장에게 사전 전화나 서면 등으로 기사 인터뷰를 한 적이 없으며 상기 기사를 게재한 사실도 알린 적이 없습니다. 김○○ 원장을 인용한 기사는 김○○ 원장에게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고 건강다이제스트에서 임의로 쓴 기사로 김○○ 원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 원장을 인용한 미백 기사에서, 치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미백 케이스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백 치약, 브라이트닝 필름, 허브 테라피 등을 권장하는 내용을 실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시중 제품의 오용과 과대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내용으로 전문적인 미백은 최종적으로 치과에서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시중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신청인이 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정년퇴임 후에도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횡령한 사실이 없고 급여는 이사회 인준을 통해 받았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경북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북일보 : 『화물협회 모이기만 하면 육탄전 … 조합원 권익은 뒷전』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8일자 4면)

내 용 : 온갖 욕설, 쌍방 폭행, 기물 파손.

경북지역 관련 화물협회들의 올해 정기총회 모습들이다. 매번 되풀이 된다. 집안싸움이라고 하지만, 최근 여러 차례 난장판이 된 국회 회의장 이상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와중에 당연히 조합원들의 권익은 뒷전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다. 협회 집행부를 장악하기 위한 세력다툼이다. 또 몇 년간 이어져 온 집행부들의 독단과 비리의혹도 한몫을 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 감독해야 할 경북도가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경북일보는 화물협회들의 구조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대책을 알아본다.

ㅁ정기총회는 난장판

현재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곳은 '경북화물협회'와 '경북개별화물협회(이하 개별화물협회)'다.

경북화물협회는 25t 이하 화물차 업체 600여 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 협회에 소속된 화물차만 1만2천여 대다. (중략)

'경북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의 이사장 자리는 기초자치단체장 못지 않다. 연간 판공비는 4천~5천만 원에 달한다. 협회의 1년 간 예산도 4~5억 원대에 이른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북화물협회의 경우 공제조합의 인사권을 전국화물연합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사장이 곧바로 공제조합 자문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사장의 손에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제조합의 예치금도 이사장 입김이 들어가면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 현 이사장은 친동생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으로 변경했다가 말썽이 생기자 원상복귀 했다. 더불어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 때 억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도 있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별화물협회'는 더 복잡하다. 지금 집행부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 간부의 경우 8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은 이 간부가 정년퇴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해 월급과 각종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판공비 등의 회계처리 미흡, 정관 임의 변경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된 실정이다.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몇몇 대의원들은 불신임 서명운동에다 조만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태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북개별화물협회 2009년 3월 18일자 기사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8일자 4면 전면기사로 '화물협회 모이기만 하면 육탄전'이란 제목으로 "개별화물협회는 더 복잡하다. 지금 집행부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 간부의 경우 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은 이 간부가 정년퇴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해 월급과 각종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판공비 등의 회계처리 미흡, 정관 임의 변경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된 실정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 간부의 경우 6,000여만 원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 간부는 정년퇴임이 지났지만 협회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준을 받고 이사장이 임명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정당하게 집행되었고 정관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라 총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09년 3월 18일자 기사에 게재된 수사가 종료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도하고, 아울러 경북개별화물협회의 전무는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므로 정년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

한다.
• 기사 게재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내성 발현율이 14.7%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실제 학회장에서는 3.6%로 발표됐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광약품(주)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3.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2 참조)

보도내용

데일리팜 : (1) 『부광 '레보비르', 환자 14.7%서 내성 발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자 제약·유통면)

내 용 : 부광약품의 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를 신규 환자에 투여시 14.7%에서 내성이 발현됐다는 연구결과가 아시아·태평양 간학회(APASL)에서 발표됐다. 이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복용 중인 제픽스의 1년 내성 발현율보다 다소 낮은 수치지만 레보비르의 내성 발현율이 '0'에 육박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레보비르와 비교 임상을 진행한 바라크루드 투여군에서는 내성이 나타난 환자가 한 명도 없어 바라크루드의 장점인 낮은 내성 발현율을 재차 입증했다.

강북삼성병원 김홍주 교수 등 연구진들은 1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간학회에서 신규 B형환자를 대상으로 레보비르와 바라크루드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36주 동안 레보비르 30㎎을 투여한 75명과 바라크루드 0.5㎎을 투여한 85명의 환자를 비교 분석한 것. 연구결과 24주 후 간염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바라크루드군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보비르 log 4.25, 바라크루드 log 4.47). 간수치 정상화 비율 역시 바라크루드가 81.3%로 레보비르 69.3%보다 약간 높았다. 레보비르와 바라크루드는 내성 발현율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다.

레보비르 투여군의 경우 48주 이후 전체 대상의 14.7%인 11명에게서 내성이 나타났다. 14.7%는 최근 높은 내성 발현율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연이어 1차 약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픽스의 1년 내성 발현율 20%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높은 내성 발현율 등을 이유로 급여 판정이 좌절된 세비보의 1년 내성 발현율 4.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부광약품이 그 동안 레보비르의 내성발현율이 낮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연구결과는 다소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략)

(2)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7일자 제약·유통면)

내 용 : 최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간학회는 B형 간염치료제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중략)

실제로 학회에서도 레보비르는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발표하며 학계를 놀라게 했다. 비록 제픽스 대체 요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대를 밑돌았지만 그동안 학계가 의심을 품어왔던 내성 발현율에서는 같은 계열인 제픽스, 세비보보다 압도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광약품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강북삼성병원 김홍주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결과가 당초 초록에 실린 것과는 달리 학회 현장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발표돼 오히려 연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된 것.

사전 배포된 초록집에 따르면 김 교수팀이 75명을 대상으로 레보비르를 투여한 결과 1년 후 14.7%에서 내성이 발현됐다고 명시됐다. 기존에 부광약품이 자랑했던 낮은 내성 발현율을 단 번에 뒤집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얘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광 '레보비르' 내성 발현율 3.6%에 불과…강북 삼성팀 APASL에서 발표
•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16일자 "부광 '레보비르', 환자 14.7%서 내성 발현, 강북 삼성팀 APASL서 발표…제픽스 대체 요법 부적절"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동 보도는 당시 아시아·태평양 간학회장에 배포된 초록집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연구결과를 발표한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김홍주 교수가 실제 학회장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레보비르의 내성 발현율이 3.3%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김홍주 교수는 초록집에서는 레보비르를 복용한 환자군에서 기존에 제픽스를 복용한 환자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내성 발현율을 잘못 산출한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실제 레보비르의 내성 발현율은 약 3.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학회장에 배포된 초록집을 근거로 잘못된 연구결과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기업이 골재 채취장의 자연녹지 복구를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인광기업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일보 : 『2년 넘게 '연장-승인' 짝짜꿍』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6면)
내 용 :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한 골재 채취업체 운영과 관련, 편법 영업은 물론 당국의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오류동 1532 일원 19만7천여㎡의 I기업 골재 채취장. 절반 가량은 골재 채취 후 복구돼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나머지 절반엔 건설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가 잔뜩 쌓여 있었다. 포클레인과 대형 덤프 트럭이 바삐 골재를 실어나르고 있었다.

문제는 이 땅이 2004년까지 골재 채취를 끝내고 2006년 12월까지 자연녹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I기업은 법의 맹점과 당국의 허술한 행정을 이용해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골재 채취업체 '녹지 복구' 지연…서구청 봐주기 의혹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16일자 6면에 "골재 채취업체 '녹지복구' 지연… 서구청 봐주기 의혹, 2년 넘게 '연장-승인' 짝짜꿍"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골재 채취장에는 2008년 12월 기준 96%의 복구가 진행되었고 일부 면적에 대한 나무 식재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복구가 안된 부지에도 건설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가 쌓여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기업이 3차례나 복구기간을 연장하며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구 연장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봐주기 행정 논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

신청인 기업이 특혜를 받아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인광환경
(대표이사 이 ○ ○, 이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천일보 : 『특정 폐기물 업체 특혜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9일자 6면)

내 용 : 인천시 서구 오류동 모 폐기물 처리업체의 운영(인천일보 3월 16일자 6면)과 관련한 불법 영업 및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04년 골재 채취가 끝난 오류동 1532 일원 7만1천여 ㎡ 부지에서 영업 중인 I 환경은 최근 3년 간 비산먼지 유발, 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골재 적치 등 혐의로 고발 2차례, 과태료 부과 2차례, 행정처분 2차례의 처벌이 내려졌다.

현재 I 환경은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오류동 1536 일원 2만5천801㎡ 부지 이외에도, 모기업인 I 기업 소유 부지인 오류동 1532, 1533 일원에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를 쌓아 놓은 채 콘크리트 타설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I 환경의 현재 영업 행위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I 환경의 전신인 O 환경이 1996년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골재 채취 부지 복구를 위한 매립용 골재 생산을 조건부로 허가받았으나 복구가 끝난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업체 관계자는 "석산 복구가 끝나면 I 환경의 영업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영업하고 있어 주변 업체들이 그 배경을 의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가 최근 돌연 기존 방침을 바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현재 임야 및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로 바꿔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시는 1998년에는 I 환경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를 거부했으나 10년 후인 지난해 말 갑자기 입장을 바꿔 I 환경의 요청을 수용,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로 허가를 내주려는 땅은 현재 I환경의 영업 허가 면적(2만5천801㎡)의 무려 3배인 7만1천33㎡에 이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특정 폐기물 업체 특혜 논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19일자 6면 "불법행위, 영업의혹에 용지변경 허가까지. 특정 폐기물 업체 특혜 논란 확산" 제목의 보도 중, 현재 I환경은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오류동 1,536 일원 25,801㎡ 이외에도 모기업인 I기업 소유 부지인 오류동 1,532, 1,533 일원에 폐기물과 재활용 골재를 쌓아 놓은 채 콘크리트 타설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I 환경은 허가 받은 면적 이외의 부지에 폐기물 과 재활용 골재를 쌓아 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사업장 부지의 세륜장 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I환경의 현재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1998년 폐기물 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조건부 허가사항이 모두 없어져 영구적이고 적법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시가 최근 돌연 기존 방침을 바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현재 임야 및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로 바꿔주기로 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 확인 결과 I환경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혜논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특정 폐기물 업체 특혜 논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19일자 6면 "불법행위, 영업의혹에 용지변경 허가까지, 특정 폐기물 업체 특혜논란 확산" 제목의 보도 중, I환경이 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 골재 적치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I환경은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오류동 1536 일원 25,801㎡ 모기업인 I기업 소유 부지인 오류동 1532, 1533 일원에 폐기물 을 쌓아 놓은 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결과 I환경은 허가 받은 면적 이외의 부지에 폐기물 을 쌓아 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I환경의 현재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1998년 폐기물 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기간 허가 조건부 허가사항이 모두 없어져 영구적이고 적법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9년 4월 7일자 6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2009년 3월 16일자)의 소제목(업체 측 "적법절차 밟은 것…4월 완료) 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일보 : 『특정 폐기물 업체 특혜 논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7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워크샵 비용을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국건설기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4.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한국건설기계신문 : 『언론 테러를 한 대한건설기계협회 각성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일자 2면)
내 용 : '건설기계 검사 때 검사원들이 대한건설기계협회 회비를 징수하는 제보를 바란다'는 한국건설기계신문의 제보에 대한 내용을 빼줄 것을 요구 및 부탁하다가 뜻이 관철되지 않자, 본지 신문 발행인에게 경고를 4번 정도 한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종분과 위원 A씨와 전국 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B씨는 반성과 아울러 사과를 촉구한다.

지난 9월 30일 모 음식점에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불법으로 회비 징수에 대한 제보받는 내용을 신문에 빼줄 것을 요구 및 부탁하여 이에 대한 언론사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본지 발행인에게 경고를 수차례 하면서 막 나가자는 것이냐며 협박했다.

특히 모 검사소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비를 검사소에서 받지 않는다고 플랭카드를 부착한 검사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사원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더욱 놀랍게 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회비를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이제와서 플랭카드를 부착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경에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모 임원이 회장 특별지시로 회장이 어떤 사람이며, 회장 면담과 검사소에서 회비 징수에 대해 보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었다. (중략)

계속 불법적으로 회비를 징수하겠단 말이 아닌가. 또 전국 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B씨는 지난 9월 24일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을 제공받아 평택 볼보에서 펌프카 임대업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국 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 받은 적 없다. (또는 전국 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 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1월 1일자 제2면 사설에 "언론테러를 한 대한건설기계협회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내용 중에서 전국 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B씨는 지난 9월 24일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을 제공 받아 평택 볼보에서 펌프카 임대업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국 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앞으로 신문에 게재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실히 파악한 후 게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국건설기계신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8번지 2층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건설기계신문〉 2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사설의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게재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1일자 2면 『언론테러를 한 대한건설기계협회 각성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신청인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전국 콘크리트펌프카협회가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이하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정보도 청구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8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이 사건 사설과 동일한 사설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2008서울조정367 사건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사설의 보도사실을 안 날짜는 2008년 11월 2일인 사실이 인정되고(신청인은 제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이 2009년 3월 24일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미디어 국민위원회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과)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1)「뉴스데스크」프로그램『미디어 국민위원회 오늘 출범…출발부터 신경전』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3일 21:00)

내 용 :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논의를 위해 여야 동수,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들은 여야 추천을 받아 참여하긴 했지만 정치권의 대리전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우룡/한양대 석좌교수(여당 측 공동위원장) : "정파를 떠나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미디어법의 접점을 찾는 데 우리가 지혜와 경륜, 또는 지식을 보태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상현/연세대 교수(야당 측 공동위원장) : "아까 악수하면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단순한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국민 앞에 저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성격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반영 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서는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이헌/변호사(한나라당 추천) : "여야 합의로 자문 기구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원칙에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위원들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창현/국민대 교수(민주당 추천) : "여당과 야당이 나름대로 이제까지 조율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그 답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적극 개진해왔고, 민주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단 다음 주 초 회의 방식과 의제를 결정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모두 미뤄놓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과 마찰은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2)「뉴스데스크」프로그램『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TV 앞에선 말 못한다?』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20일 21:00)

내 용 : 미디어법 논의기구인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를 공개할지 말지 두고 입씨름만 하다 끝났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5분, 여야 추천 위원장이 회의 공개·비공개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중략)

TV 카메라가 있으면 말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이헌 위원/한나라당 추천 : "카메라가 이게 앞에 있으면요 얼굴이 굳어요. 그리고 전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반적인 회의 진행이 이렇게 보도진 놔두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야당 추천 학자들과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만큼 투명한 진행이 기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준상 위원/민주당 추천 : 공개를 통해서 많

은 국민들이 보면서 아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디어 전문가들은 회의를 미디어에 공개할 지에 대한 '미디어학 개론' 논쟁에 3시간 반을 허비하고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헌 변호사 미디어위 발언'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13일 미디어 국민위원회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이헌 변호사/미디어위원이 국민위가 자문기구라고 단정하였고, 20일 보도에서는 이변호사가 TV 앞에서는 말 못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당시 회의 발언은 미디어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안에서 자문기구로 명시한 사실을 부연 설명한 것이었고, 미디어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여부는 위원 간에 신경전을 벌일 사안이 아니며 미디어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우선적 사명이 있으므로 TV 카메라를 의식해서는 진지하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MBC 보도국장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감표명 서신(자필 서명 포함)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2009년 4월 10일까지 송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 미디어 국민위원회에 관한 보도에서 이헌 위원이 TV 앞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국민위원회의 활동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헌 위원께서 회의석상에서 공개여부를 논의했을 뿐 회의를 미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해와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작진을 대신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조정합의 이후 조정대상보도의 내용 중 신청인과 관련된 영상과 음성을 재방송하거나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노숙인 쉼터의 인문학 강좌를 수강한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생방송 투데이」 프로그램 『인문학으로 다시 찾은 희망』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6일 17:35)
내 용 : ▷진행자 :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숙인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인문학 강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에는 철학과 문학은 물론이고, 금전 관리 요령이나 창업희망자를 위한 경영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함께 보시죠.

〈신청인 나오는 장면 시작〉

▷성우 : 노숙인들과 알코올성 환자의 자활을 돕고 있는 비전 트레이닝 센터. 40살 이○○ 씨는 이곳에서 노숙인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때 조울증까지 앓았던 그는 이 곳을 통해 알게 된 휴먼 인문학 강의를 통해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가명) 40세 : 거의 매일 자살충동에 시달릴 만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는데, (휴먼 인문학) 수업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우 : 지난 해 4월, 노숙인을 비롯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자립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휴먼 인문학 강의. 철학, 문학, 글쓰기, 역사, 예술 등의 정규 5과목과 사회 저명인사들의 특강은 삶의 목표를 잃었던 이○○ 씨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가명) 40세 : 그 전까지만 해도 숨기고만 싶었던 일들이 차라리 드러나니까 (제 삶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저에겐) 글쓰기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이씨는 요즘, 공원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요. 틈틈이 책을 읽고 습작도 하며 소설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10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보험영업소 부지점장인 신청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보험설계사 가입을 권유했으며 채무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동부라이프매일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부라이프매일 : 『달콤한 보험사의 유혹-입사&퇴사 보상받을 길 없는 1년의 시간』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9일자 11면)

내 용 : A씨가 I생명 입사를 결심(1331호 보도)하자 K씨는 바빠졌다. K씨는 I생명 P지점 부지점장(SM, Senior Manager)으로 A씨를 포함한 2명과 팀을 결성했고, A씨에게 '지인 200명을 분류 요약하여 기록한 노트(Project 200)'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인맥을 동원, 노트를 작성했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합격했다. 입사가 확정된 이후 4주 간의 교육과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K씨의 팀에 합류, 본격적인 보험설계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략)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의 Life Cycle과 재정상황을 파악, 고객의 재산증식과 재정안정을 설계해 주는 재정 컨설턴트라는 21세기에 떠오르는 전문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 나

가보면 영업일선에 선 외판사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런 비애를 느낄 때쯤 실적관리를 위해 SM은 보험설계사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보험 계약을 하지 않으면, K씨는 실적확보를 위한 보충계획서를 지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마감 당일까지도 수차례 재촉전화를 넣으며 A씨를 압박했다. A씨가 "더 이상 계약 나올 때가 없다"고 하자 K씨는 "내가 지점장에게 가서 계약 때문에 언짢은 소릴 들어야 겠냐"며 "어떻게든 해 보라"고 요구한다. 급기야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친척의 보험계약을 대신 넣으며 K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K씨는 I생명 P지점에서도 재무 설계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A씨 역시 보험설계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K씨가 자신의 영업실적을 자랑하며 제2의 성공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K씨를 '역할모델'로 삼고 그와 닮기 위해 노력했다.

K씨 역시 자신의 영업수완을 자랑하며 A씨에게 영업망 확충을 요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림

• 본 문 : 본지 3월 12일, 3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달콤한 보험사 유혹' 제하의 기사에 게재된 I생명 P지점 K씨의 사생활 언급에 대해 K씨라는 부분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ING생명 포항지점 강○○씨가 기사 속의 K씨로 인지되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신청인은 이○○기자 동부라이프 매일 김○○ 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혐의 형사고소를 위 기사 보도 후 5일 내 취하한다.

• 향후 이 사건을 원인으로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부라이프 매일 8면 지역소식란에 상자 기사로 2009년 4월 9일 게재하되 제목(달콤한 보험사의 유혹)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으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부라이프매일 :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9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군 복지시설 사진업자로 선정된 신청인이 스튜디오도 없고, 입찰 부적격자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남연합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연합일보 : 『진해 해군회관 위탁운영 입찰 '의혹투성이'』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3면)

내 용 : 해군 복지시설인 진해 해군회관의 편법운영과 입찰 비리의혹을 제기한 본보(3월 17·19·20일자 1면 보도)와 같이 사진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등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턱없이 높은 입찰가로 낙찰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진해 해군회관은 식당, 예식을 제외한 사진, 꽃, 미용 등 지난 1일부터 3년 간 수탁할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온비드)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사진부문은 진해시 이동 '○영상사진관' 신 모(여) 씨가 응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신씨는 응찰금액을 높게 쓴 탓에 낙찰됐지만 고심 끝에 지난 2월 6일 포기각서를 제출, 당일 재입찰공고를 내 약 일주일 만에 ㄱ업체가 낙찰됐다.

해군회관 입찰공고 참가 자격요건 가항에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남도 내 소재한(거주하는) 업체(자)로서 당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자)'로 규정하고 나항에는 '적법한 계약상대자가 아닐 경우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응찰자들이 재입찰에 낙찰된 ㄱ업체 사업자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데다 사업장 소재지는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해군부대 내 진해시 현동 31번지에 주소를 둔 채 별도 스튜디오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입찰 부적격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해군회관 관리관은 입찰 부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군 복지지원단에 보고하고 복지단이 해군 법무실에 법무질의를 하자 지난 2월 18일 회신이 왔다고 전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입찰 참가의 개인이 입찰에 참가하고 주민등록지가 부산 광역시라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도인 이상 적법한 낙찰자가 된다함이 상당하다"며 "당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자)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는 답변이다.

ㄱ업체 김모(여) 씨는 현재 주소지는 부산시 사하구로 확인, 사업장은 진해시 현동 31번지 해군부대 내(해군복지단 사진관)에 두고 있다.

또 김씨는 24일 현재까지 사업자 신고를 부산진세무서에 신고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어 경남도에 준한 참가자격에는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ㄱ업체 김씨는 응찰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미 입찰(온비드) 공고 후인 지난 2월 2일 부랴 부랴 창원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찰공고를 한 해군 복지근무단 관계자와 결탁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낙찰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진해 해군회관 위탁운영 입찰관련 모함으로 들어남.

• 내 용 : 본 신문은 3월 25일자 종합면에 '진해 해군회관 위탁운영 입찰 의혹 투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는 위탁운영 입찰 관련하여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곡된 기사 내용을 보면 별도의 스튜디오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 것은 확인 결과 최신형 디지털 후지 인화기와 기타 최신 장비가 설치된 스튜디오였으며 국세청 확인 결과 창원세무서 관할(2007년 1월 등록)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카드단말기도 나이스 정보통신의 마창진대리점에 의해 가입(2007년 1월)된 것으로 확인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정정보도 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진해해군회관 위탁운영 입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5일자 3면 "진해 해군회관 위탁운영 입찰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에서 해군 복지시설인 진해 해군회관 사진부문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부산진세무서에 신고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후 창원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별도 스튜디오도 갖추지 않은 입찰 부적격 업체임에도 낙찰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진해 해군회관 사진부문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후가 아니라 2007년 1월 창원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카드단말기도 부산진세무서가 아닌 경남 마창진 관할 카드단말기 대리점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신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찰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1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연합일보〉 3면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2009년 3월 25일자 조정대상 기사가 게재된 같은 면의 "의령군, 농업전문 CEO 양성 앞장"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

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연합일보 : 『진해 해군회관 위탁운영 입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9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학원이 참여한 SEED(뇌기반인성교육프로그램)가 '두뇌계발을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이사장 권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3 참조)

보도내용

국민일보 : 『"SEED, 두뇌계발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30면)

내 용 : 최근 부산시 교육청이 182개 학교에 '뇌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SEED · Student Emotional Enhancement Design · 학생 감성 강화를 위한 두뇌기반 인성교육)'을 실시키로 하자 교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언론회,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등은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두뇌 계발을 빙자해 뇌체조와 명상 프로그램을 퍼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풍수지리와 무속신앙 등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단학(丹學) 및 도교의 수련법인 '기(氣)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프로그램이 추진돼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계 차원의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략)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차원을 넘어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백석대 홍병호 교수는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뇌호흡과 기체조 등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건강상 단전호흡과 명상, 요가를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관여하지 않길 바란다. 자칫 우주만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목적을 둔 범신론 사상에 빠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SEED, 두뇌계발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기독뉴스면(30면)에 "SEED, 두뇌계발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부산 교육청이 시범운영 계획인 뇌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풍수지리와 무속신앙 등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어서 두뇌계발을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이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와 국학원은 이승헌 총장이 만든 단월드와 선불교 산하 조직으로 기를 통해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이 기관들은 '일지 희망편지'를 이메일로 보내고 교회 홈페이지나 거리 등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련 서적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때는 369개의 단군상을 전국 초 · 중 · 고교와 공공장소에 설치한 적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SEED(뇌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가 연구, 개발하여 부산시 교육청에 제공한 뇌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유용성이 이미 검증되어 보편화된 체조, 웃음, 음악, 명상(즐거운 상상) 등을 활용하여 건강과 자신감 및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풍수지리와 무속신앙 등 미신적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와 국학원은 단월드와 선불교의 산하조직이 아니고 이승헌 총장이 선불교의 설립자도 아니며, 이들 기관들이 일지 희망편지

를 보내거나 교회 홈페이지나 거리 등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관련 서적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369개의 단군상을 설치한 기관도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학원이 참여한 SEED(뇌기반인성교육프로그램)가 '두뇌계발을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이사장 권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4 참조)

보도내용

쿠키뉴스 : 『부산교육청의 SEED프로그램, 교계 "미신" 반발』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9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부산시가 신청인 연구원의 연구에 의존하며 '뇌교육의 날'을 선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한국뇌과학연구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5 참조)

보도내용

쿠키뉴스 : 『바문연, "정부차원 뇌교육 검증" 촉구』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종합면)
내 용 :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은 본보 16일자 'SEED(뇌기반인성교육프로그램), 두뇌계발 빙자한 미신프로젝트' 기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보내 '뇌교육'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바문연의 보도자료 전문.

부산시가 최근 단월드(단학선원)와 선불교(단군민족종교)의 설립자인 이○○ 대선사의 영향으로 뇌교육의 날을 선포한 것과 관련,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증이 이뤄진 뇌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정부차원 뇌교육 검증 촉구 기사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SEED(뇌기반인성프로그램), 두뇌계발 빙자한 미신프로젝트' 기사 관련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의 보도자료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부산시가 단월드와 선불교(단군민족종교)의 설립자인 이○○ 대선사의 영향으로 뇌교육의 날을 선포하고 일반 사설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연구에 의존하여 뇌교육의 날을 선포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학전문가들이 뇌교육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한국뇌과학연구원 측은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사무총장 이○○은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이○○ 이사장 등을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구속되고 유죄판결 및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이사장은 종교법인인 선불교의 설립자가 아니며, 부산시는 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절차에 따라 미국 뉴욕시 '뇌교육의 날' 지정과 발맞추어 '뇌교육의 날'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뇌과학연구원은 1990년 설립되어 1999년 3월 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0년 12월 정부로부터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7월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유엔협의지위(UN 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은 국제적 연구기관이며, 뇌교육은 그 유용성이 검증되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체조, 웃음, 음악, 명상 등 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하며, 부산교육청의 SEED 프로그램 역시 미신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학교수진 및 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전문가들이 체조, 웃음, 음악, 명상 등을 활용하여 만든 교육프로그램이고, 의학전문가들이 뇌교육에 대하여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조합 임원들이 단체로 스포츠 마사지샵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농협협동조합(조합장 서 ○ ○)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1)『수원농협조합장 사전 선거운동 논란』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7일자 13면)

내 용 : 경기 수원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과 이사진·임원 등이 단체로 지난해 초 시무식을 겸해 충남 대전 모 호텔 지하(스포츠 마사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 수원농협 임원과 일부조합원들에 따르면 2008년 1월 2일 현 서○○ 조합장과 이사진·임원등 11명이 오전 8시 40분 수원 모 식당에서 조찬을 가진 뒤 오전 10시 충남 대전 모 호텔로 출발했다.

당일 일행 11명은 낮 12시 호텔에 도착, 점심 식사와 술을 마신 뒤 호텔지하로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스포츠 마사지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스포츠마사지 업소 관계자는 "1인당 17만~18만원을 내야 입장할 수 있다"며 "이곳에 들어가면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기본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다.

농협의 한 조합원은 "선거 180일 이전인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년에 조합원과 이사들을 앞세워 한 행위여서 명백한 사전 선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사전 선거운동을 문제 삼아 서면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원농협 서○○ 조합장은 "당시 호텔 지하에 있는 것이 사우나인 것으로 알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 스포츠 마사지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2)『"호텔서 부적절한 행위 죄송"』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4일자 13면)

내 용 : 〈속보〉 경기 수원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과 이사진·임원 등이 단체로 지난해 초 시무식을 겸한 충남 대전 모 호텔 지하(스포츠 마사지)에서 부적절한 관계(?) 〈본보 3월 17일자〉

맺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2일 현 서○○ 수원농협 조합장과 이사진·임원 등 11명이 충남 대전광역시 R호텔 지하 스포츠 맛사지 업소로 1인당 20만 원을 지불하고 들어간 뒤 약 2시간에 걸쳐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호텔서 부적절한 행위 죄송』 등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 3월 17일자 신문 기사 13면에 보도된 『수원농협조합장 사전 선거운동 논란』 및 3월 24일자 신문기사 13면에 보도된 『호텔서 부적절한 행위 죄송』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수원농협에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과 이사진·임원 등 11명이 단체로 지난해 초 호텔 지하(스포츠 마사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수원농협은 지난 2008년 1월 2일 전체 임직원이 참석하는 시무식이 있은 후 매년 해오던 일상적인 「사업목표 조기달성 및 임직원 화합을 위한 단배식」을 위하여 조합의 임원과 간부직원 등 20명이 유성온천으로 출발하였으며, ○○○호텔에 도착하여 연회장에서 회의 후 점심, 온천욕 등을 하였으나 4월 경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 위원회 조사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예산 집행이 투명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정관 등에 없는 위법한 활동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선거운동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에 따라 이미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보는 조합장과 임원진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는 잘못된 기사를 정확한 확인 없이 보도하였기에 본 정정 보도를 통해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재발방지를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정정보도 할 수 없다. □

신청인 조합 임원들이 단체로 스포츠 마사지샵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서 ○ ○)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닷컴 : 『수원조합장 선거앞두고 '성매매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9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정정보도 할 수 없다. □

신청인 도지사가 박연차 회장이 매입한 부지에 고도제한 완화를 허가해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경상남도 (도지사 김 태 호) 외 1인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1)『김태호 경남지사 수사』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1면)
내 용 :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박 회장이 지난 2004년 계열사인 정산개발을 통해 사들인 경남 진해의 동방유량 공장부지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과정에 김태호(47) 경남지사가 개입한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회장 게이트와 관련, 여권 현직 유력인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김 지사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4년 6월 고도제한에 묶였던 진해 동방유량 공장부지(13만㎡)를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을 통해 562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 6월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고도제한에 묶였던 이 공장부지는 매각 한 달 전 진해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함께 완화됐으며, 정산개발로부터 땅을 매입한 건설시행사인 DNS도 태광실업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과정에서 김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이전에 조사를 벌였던 창원지검 특수부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 하승철 공보관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지자체 업무가 아니며, 나머지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르면 25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 의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수차례 거액을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58) 전 행정자치부 2차관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61) 전 민정수석은 백화점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아파트 지어 총 400억 차익…홍콩서 돈세탁』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3면)
내 용 : 박연차(64·구속) 회장의 정산개발이 경남 진해 옛 동방유량 공장부지를 사들인 것은 2004년 6월. 도지사였던 김○○(70) 전 의원이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때였다. (중략)

검찰이 김 지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도장'을 찍어야만 고도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는 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 회장이 고도제한 특혜를 조건으로 보궐선거 때 김 지사에게도 선거자금을 건넸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도, 김해시 등에서 옛 동방유량 공장부지의 거래 경위와 고도제한 완화 및 아파트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압수수색했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남도와 진해시 등 관계기관은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

끈질긴 민원과 건의로 이뤄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태호 경남지사 수사, 아파트 지어 총 400억 차익…홍콩서 돈세탁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1면과 3면 종합면에 "김태호 경남지사 수사, 아파트 지어 총 400억 차익…홍콩서 돈세탁"이라는 제목으로 '04년 6월 고도제한에 묶였던 진해 동방 유량 공장부지(13만㎡)를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이 562억 원에 사들인 뒤 '05년 6월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계열사인 (주)DNS에 팔았으며, 매각 한달 전에 진해 비행장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됐으며 김 지사가 직·간접으로 개입한 일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중 ① "검찰이 김지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가 '도장'을 찍어야만 고도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는 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군용지 고도제한 완화인·허가는 당해지역은 진해 비행장 인근지역으로 비행안전 구역의 고도제한 완화 등은 경남도의 행정소관이 아닙니다. 이는 해군 진해 기지사령부의 소관사항으로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진해시장이 해군 진해 기지사령부와 협의하여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특혜 의혹이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② "경남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관계자가 아닌데도 경남도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인용 보도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경상남도의 행정소관이 아닌 비행안전 구역의 고도제한 완화 권한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임의로 보도한 내용은 법리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③ "대검이 창원지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대검 기자실을 통하여 밝힌 내용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에 자료를 넘겨받은 적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경상남도청
도지사 김 태 호 외 1인
위 신청인 들의 조정대리인
변호사 유 ○ ○, 이 ○ ○
경상남도 공보관 하 ○ ○,
송무담당 사무관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조정대리인 사회부장 주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1의 보도문을 2009년 4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면 혹은 종합면에 보도(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별다른 사법조치 없이 대검찰청의 수사가 종결된 때(대검찰청의 공식적인 수사 종결 발표 혹은 수사기획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의 중간 수사 브리핑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따른다)에는 그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2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면 혹은 종합면에 보도(토요일자, 공휴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

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1.항,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 2.항을 이행하는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 직원을 상대로 현재 진행중인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6.

〈별 지1〉

• 제 목 : 김태호 경남도지사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3월 25일자 1면 '김태호 경남지사 수사' 제목의 기사 및 3면 '아파트 지어 총 400억 차익… 홍콩서 돈세탁' 제목의 기사에서 박연차 회장의 진해 공장부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고도제한 완화과정에서 개입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협의권을 가진 해군 진해 기지사령부 측과 진해시가 협의하여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허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소환요구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별 지2〉

• 제 목 : '고도제한 완화 개입 의혹'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 내 용 : 지난 3월 25일자 1면 '김태호 경남지사 수사' 제목의 기사 및 3면 '아파트 지어 총 400억 차익… 홍콩서 돈세탁' 제목의 기사에서 박연차 회장의 진해 공장부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고도제한 완화에 개입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연차 회장의 진해 공장부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위와 같은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1의 보도문 참조〉 □

국립공원사진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신청인의 '오대산 청개구리' 사진이 연출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오대산 청개구리' 연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4일자 10면)

내 용 :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오는 공모전 우수작인 '오대산 청개구리' 사진이 다친 개구리를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대산 청개구리'는 환경부가 후원하는 2006년 제8회 국립공원사진 공모전에서 장려상(상금 50만 원)을 받은 이모 씨의 작품. 수상작 중에는 청

개구리 사진외에도 박제품 고슴도치 사진도 포함돼 수상작 선정시 생태환경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국립공원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4일 "홈페이지에 소개된 청개구리의 왼쪽 앞발이 다쳤는지 구부러진 채 발등은 공중에 떠있고, 발가락 끝만 발가락 바닥이 아닌 발가락 등으로 풀잎 위에 약간만 놓여 있다"고 연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슬 방울이 맺힌 풀잎 위에서 우는 보기드문 이 청개구리 사진은 '자연 그대로, 미래 세대로'라는 로고와 함께 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장식해왔다. 작가 이씨는 '발에 문제가 있어 개구리가 다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몰랐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서류 전문사진작가인 김○○ 씨는 "오른쪽 발목이 꺾인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면서 "청개구리는 땅위나 단단한 나뭇가지 등 평평한 곳에서 두발을 가지런히 고정시킨 채 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연약한 풀잎에서 한쪽 발목이 꺾인 채 청개구리가 우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사진 공모전 제1회 장려상 입상작인 최모 씨의 치악산 고슴도치 사진도 박제품을 사용한 연출사진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오대한 청개구리' 연출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4일자 사회면에 "'오대산 청개구리' 연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오대산 청개구리'가 다친 개구리를 이용해 연출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와 관련 작가가 '몰랐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청개구리의 울음주머니가 부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아 다친 개구리를 이용한 연출사진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작가와 본 보도와 관련된 일체의 통화 사실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

헌혈 혈액에 대해 HTLV(성인 백혈병 유발 병원균) 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본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본부장 신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HTL바이러스 감염 혈액 유통』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1면)

내 용 : 성인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체 T세포 영양성(HTL)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혈액이 언제, 누구에게 수혈됐다는 기록조차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고 정보가 없으면 감염 혈액을 수혈한 사람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 헌혈을 통해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HTL 바이러스 감염 혈액 164건 중 13건의 출고 정보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2007년 12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헌혈한 35만 3,001명을 대상으로 HTL 바이러스 검사를 시범 실시했다. 이 때 양성 반응을 보인 34명의 과거 헌혈 기록을 역추적해 적혈구와 혈소판 등 제제된 감염 혈액 164건을 찾았다. 적십자는 그 가운데

151건에 대해 출고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34명 중 4명이 헌혈한 혈액 13건은 아예 기록 없이 유통됐다. A씨의 경우 시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 전 47차례 헌혈했다. 이 혈액은 적혈구 등으로 성분 분리돼 23건이 출고됐는데 16건만 언제, 무엇을 수혈했는지 기록이 있고 7건은 출고 정보가 없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2003년 혈액정보 통합 전산망(BIMS)이 도입되기 전에는 헌혈·수혈자를 도스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HTL 바이러스 시범 검사를 실시해 위험성을 파악했지만 아직 이를 헌혈 검사 항목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이 헌혈을 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헌혈 검사 항목에 포함하려면 혈액수가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17일부터 적십자사 감사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예산 전용을 감사하면서 HTL 바이러스 검사 전면 도입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감염자 헌혈땐 '2차 감염' 뻔한데 적십자사는 "걱정없다" 수수방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3면)

내 용 : 대한적십자사는 인체 T세포 영양성(HTL) 바이러스 시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혈액 13건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아직 HTL 바이러스 검사가 정식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방을 모르는 13건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이 다시 헌혈을 했다면 제2, 제3의 감염자를 낳는 혈액 사고로 번질 수 있다. (후략)

(3)『B형 간염 검사장비 도입때도 적십자사, 이해할 수 없는 행태』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3면)

내 용 :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검사 항목에 포함된 B형 간염 검사 방식을 바꾸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적십자사는 2006년부터 B형 간염 검사를 핵산증폭검사(NAT)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006년 'B형 간염에 대한 NAT 도입 방안 및 계획'이란 보고서를 내고 "NAT가 기존 방식인 효소면역(EIA) 검사보다 바이러스 잠복 기간을 59일에서 25일로 크게 단축시켜 양성 판정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C형 간염과 에이즈의 경우 잠복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NAT 방식으로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6월 NAT 방식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프리즘 검사(CLIA) 장비를 사들였다. 적십자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장비를 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후략)

(4)『변칙적 예산 전용 집중 조사 HTLV 검사 도입 연기 이유』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3면)

내 용 : 감사원이 2006년 이후 3년 만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에 나선 것은 잇단 예산 전용이 혈액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월 25일자 "HTLV 검사" 등 4건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의 지난 2월 25일자 1면과 3면 『HTL바이러스 감염 혈액 유통』, 『HTL 바이러스 혈액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감염자 헌혈땐 '2차 감염' 뻔한데 적십자사는 '걱정없다' 수수방관』, 『B형 간염 검사장비 도입 때도 적십자사, 이해할 수 없는 행태』, 『감사원 감사 무엇을 조사하나-변칙적인 예산적용 집중조사 HTLV 검사도입 연기 이유』 등 4건의 기사 중 일부 또는 전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일반 국민들에게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및 혈액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정정 보도합니다.

• 국민일보는 2월 25일자 3면 『HTL 바이러스 혈액유통 무엇이 문제인가-감염자 헌혈땐 '2차 감염' 뻔한데 적십자사는 '걱정없다' 수수방관』제하의 기사를 통해 헌혈 혈액에 대해 HTLV 검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대한적십자사는 HTLV 검사 도입을 위해 2006년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2007~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검사 도입 필요성을 혈액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금년도 4월 15일부터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해 HTLV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B형 간염 검사장비 도입때도 적십자사,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의 기사를 통해 B형 간염 검사법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NAT 검사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검사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을 도입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과 관련 확인 결과, 적십자사가 B형간염 검사를 위해 사용 중인 화학발광면역법(CLIA법)은 2004년 9월 정부가 확정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라 검사자동화를 통한 혈액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CLIA법의 도입 결정은 2006년 8월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계, 적십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즉 CLIA법의 도입은 기존의 B형 검사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반자동으로 진행되던 혈액검사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HBV NAT 장비 도입 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CLIA 장비의 도입처럼 새로운 검사법의 도입이나 기존 검사 장비의 교체 및 대체 등 혈액사업과 관련한 중요 결정은 적십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혈액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기사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HBV 검사를 NAT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 결과 미국 적십자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혈액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설 혈액원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 또한 1면과 3면의 『HTL바이러스 감염 혈액 유통』, 『감사원 감사 무엇을 조사하나-변칙적인 예산 전용 집중조사 HTL 검사도입 연기이유』 제하의 기사를 통해 감사원이 HTL바이러스 검사 전면도입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십자사가 비난여론을 감안해 HTLV 검사 도입 지연과 출고정보 없는 혈액 유통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확인 결과 감사원 감사는 예산전용에 대해서만 진행되었으며, HTLV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적십자사도 HTLV 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본 문 : 본보 2월 25일자 1·3면 기사에 대한 대한적십자사는 2006년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2007년 12월부터 2개월간 HTLV 검사 시범실시를 하는 등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오는 15일부터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 HTLV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월 17일부터 실시한 적십자사에 대한 조사에서 HTLV 검사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와 직원 징계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17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면에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18급 신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국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HTL 바이러스' 혈액유통 무엇이 문제인가」제하의 조정대상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창업성공 사례 보도에 신청인의 실명, 운영하는 업체명, 이혼 경력 등이 적시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레이디경향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레이디경향 : 『2009 불황을 이긴다 ⑥창업의 달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호)

내 용 :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정주부,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로 지내는 젊은 층들.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소호 창업의 달인, 김영문 교수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을 컨설팅해주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김 교수에게 창업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인터뷰했다.

장애인, 신용불량자, 이혼녀 등 창업 관심 높아져 현재 대구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영문 교수(47).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창업 전도사'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지금부터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이후에 실직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실직자 교육을 실시하게 됐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좀더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거창한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어버린 실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중략)

그동안 그의 상담을 받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창업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더니, 3명 정도를 손에 꼽는다. 두 명은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고, 한 명은 실패한 경우였다.

첫 번째 사례자는 경북 김천에 사는 강모 씨다. (중략)

또 한 가지 창업 성공 사례는 모자가정 K씨로 POP, 초크아트, 폼아트 제작업을 창업해 성공한 글○○(대표 송○○, cafe.daum.net/○○○)다. K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저녁에 ○○○를 배워 혼자 창업을 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많은 빚을 안고 시작했지만 이제 거의 다 갚았고, ○○에서는 유명한 ○○○ 전문가로 성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5월 9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
• 내 용 : 본지 지난 2월호 「2009 불황을 이긴다 ⑥창업의 달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창업 준비생들의 창업을 돕고 있는 김영문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였으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 지급〉 □

딸이 신청인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일을 보도하면서 인적사항을 자세히 명기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황당한 딸, 공부하라는 어머니 접근금지 신청』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6일자 A11면)

내 용 : 졸업반 여대생이 자신의 어머니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며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어머니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엄마가 나를 때리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이모(여·23·D대 4년) 씨의 신고를 받고, 이씨의 어머니 김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녀의 말다툼은 24일 오후 7시쯤 서울 ○○동 단독주택에서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김씨가 "집에서 놀지만 말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라"고 꾸짖자, 무남독녀인 이씨가 "공무원은 답답해서 싫다"고 대들었다.

어머니는 격분해서 노란색 고무줄로 딸의 손등을 튀긴 뒤 멱살을 잡았다. 딸은 곧장 인근 지구대로 달려갔다. 경찰은 딸의 요구에 따라 어머니에게 "경찰서로 나오라"고 연락했다.

경찰 조사에서 딸 이씨는 "어머니가 평소 진로 문제로 자주 나를 혼냈고, 줄넘기와 고무 호스로 때린 적도 있다"며 "어머니가 100m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

어머니 김씨는 이에 대해 "딸이 취업 걱정은커녕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만 봐서 화가 났다"고 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인터넷 기사 삭제〉 □

신청인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반월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 30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반월신문 : 『광고물업체로부터…향응 접대 받아 파장』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5일자 1면)

내 용 :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쓰레기 봉투 납품업자들과 모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유통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돼 충격을 준 사건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들이 A옥외광고물 업체 B모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연말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들이 A옥외광고물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공단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A옥외광고물 업체로부터 식사와 술을 접대 받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단원구 초지동의 C음식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안산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광고물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받아 파장』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5일자 1면 『광고물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받아 파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A옥외광고물업체 B모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광고물업체가 아닌 사)안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한 자리로서 자원봉사단체 송년회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등의 협의를 한 후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반월신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33-5번지
한도빌딩 2층
대표이사 홍 일 호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반월신문〉 1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안산시의회)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별지] 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판(www.ebanwol.net) 메인화면에 지면 보도일로부터 7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의 본문이 뜨도록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9년 3월 5일자 1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광고물 업체로부터…향응 접대 받아 파장』 제목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A옥외광고물업체 B모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기사와 관련, A옥외광고물업체 B모 사장은 광고물업체 사장 자격이 아닌 안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자격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의 회의를 한 후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것이고, 시설공단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반월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9일자 1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았으며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6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철 국 (국회의원)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 3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7 참조)

보도내용

문화일보 : 『'소환의원' 5, 6명으로 늘어』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1면)

내 용 : 검찰이 박연차(64 · 구속)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 5, 6명에게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3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박 회장의 정 · 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검찰이 현역 의원 소환 및 사법처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소환 일정을 연기하거나 불응하는 등 차질이 빚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까지 현역 의원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의원들이 박 회장으로부터 달러화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박 회장의 환전액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박 회장의 정 · 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한나라당 허태열 · 권경석 의원, 민주당 서갑원 · 최철국 의원과 민주당 B의원, 한나라당 K의원 등을 포함해 최소한 5, 6명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까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모두 "박 회장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불법 자금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을 지낸 L씨와 J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당 최철국의원 검찰 소환의원 대상' 아닌 것으로 밝혀져(또는 '박연차 수사 소환의원 대상'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종합 1면에 "소환의원 5, 6명으로 늘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최철국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철국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천연 간수로 만든 재래식 두부가 일반 두부보다 몸에 좋다고 보도됐으나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천연 간수는 사용 금지되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경기두부류및묵류제조업협동조합
(이사장 노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수상해? 수상해-두부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7일 08:30)
내 용 : (전략)
▷아나운서 : 다음 소식입니다. 두부에 비밀이 있다고요?
▷리포터 : 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건강식이죠, 바로 두부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이 두부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얀 속살처럼 부드러운 두부는 과연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최근 인터넷에 뜬 동영상, 두 개의 두부를 물속에 넣었더니 하나는 뿌옇게 흐린 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맑은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얀 속살처럼 똑같은 두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모르고 지나쳤던 수상한 생활 속의 비밀, 두부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대한민국 대표요리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는 두부, 대표적인 웰빙음식으로 사람들에게 건강식으로 통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종류까지 다양해진 두부 가격대 또한 1,100원에서 2,900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소포제·유화제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두부까지 눈에 띄는데요, 첨가되지 않았다는 소포제·유화제는 무엇일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포장두부의 성분표시를 살펴보니 염화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이름 모를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두부제조업체 관계자 : 두유를 이렇게 두부를 만들게 되면 거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소포제나 유화제 같은 걸 넣기도 하는데…
▷리포터 : 소포제·유화제는 두부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두부를 만들 때 어떻게 사용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천연 재래식두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24시간 불린콩을 맷돌로 곱게 간 뒤…
▷안○○(재래식두부 제조업체 관계자) : 양분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두부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워 질 수 있는 그런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죠.
▷리포터 : 이 콩물을 끓는 물에 끓입니다.
▷안○○(재래식두부 제조업체 관계자) : 기름찌꺼기를 넣어서 거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리포터 : 콩이 끓기 시작하면 이때 사포닌으로 인해 거품이 끓어오르는데요, 들기름을 약간 넣어서 거품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 다음 비지와 콩으로 분리시킨 뒤에 콩물에 천연간수를 넣어 응고시키는 건데요, 조금씩 알갱이가 지면서 응고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천을 깐 틀에 부어서 꾹꾹 눌러주면 드디어 천연 재래식두부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중에서 파는 일반 포장두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불린 콩을 분쇄기에 갈아서 그 콩을 끓는 물에 넣어 끓입니다. 기본재료인 콩을 준비하는 과정은 재래식두부와 같은데요. 그 다음에 거품이 끓어오를 때 붓는 이 화학첨가물,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실리콘수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천연원료인 들기름을 넣었을 때에 비해서 거품이 확 가라앉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난 후에 천연간수 대신 황산칼륨을 넣어서 두부를 응고 시킨 뒤 유화제를 넣고 틀에 담아 눌러주면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포장두부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두부는 천연원료로 만든 재래식두부고요, 그리고 이쪽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포장두부입니다. 이 두 가지 두부의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두부의 비밀"이라며 진실을 왜곡한 방송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2009년 3월 17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MBC-TV "생방송 오늘아침 - 수상해? 수상해!"라

는 코너에서 "두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 중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지난 3월 17일 "두부의 비밀"을 방송하는 과정에 재래식 두부 만드는 방법에서 소개한 "천연간수"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때와 쌓아놓은 천일염 소금가마나 포대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폐기물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존재할 수 있는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 성분이 잔류할 수 있고 호염성 미생물의 오염 등을 이유로 1973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용을 금지시켜 현재는 두부류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두부 제조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현재 두부제조에 사용되는 응고제인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글루코노델타락톤 등은 식품첨가물로서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유럽에서도 두부응고제로 그 안전성이 인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두부제조에 사용되는 소포제(제품명:LS303)의 양은 미량(식품 1㎏당 0.167g이하)으로 안전하나, 방송 중 끓는 콩물에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넣은 소포제의 양은 거품 제거 효과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첨가허용치를 120배나 초과된 과장된 장면 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소수지는 식품 1㎏당 0.05g이내를 규정하고 있다는 김동일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자막을 0.05㎎으로 표기 하여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바로 잡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관련 방송은 업계 관계자와 관련기관 및 관련학계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검토 후 방송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4월 20일(월요일)에 MBC-TV「생방송 오늘아침」프로그램 중 〈수상해〉 코너 방송직후 스튜디오에서 진행자 2인이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아래-

지난 3월 17일 〈수상해〉 코너에서 두부에 관련된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두부제조에 첨가되는 응고제인 황산칼슘 등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안전한 제품이며 인체에 무해하니 마음놓고 드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오염된 바닷물로 만들어진 '천연간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식약청에서도 두부제조에 첨가를 금지하고 있는 유해한 물질입니다. 유념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수상해? 수상해! 비싼 몸값, 삼겹살의 정체!』 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20일 08: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가수 비가 공연 무산으로 인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제이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조 ○ ○·김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 3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뉴시스 : (1)『가수 비 항소불가·줄 소송, 지불능력도 없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2일 20:38)

내 용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2년 전 가수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480만 달러(비·JYP 각 240만 달러), 사기피해 100만 달러(약 13억 9,150만 원),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228만 6,000 달러(약 31억 8,096만 원)를 내라는 것이다.

2007년 6월 21일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는 비의 월드투어 파행 책임을 물어 비와 JYP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콘서트 불발비용 59만 5,700달러, 예상수익금 100만 달러, 잃어버린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담고 있는 결과적 보상금 500만 달러,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 3만 8,00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 달러 등 4,0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비 측은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은 쉽지 않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비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소송 절차와 판결의 공정성, 재판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승소할 확률도 없다시피 하다. 배상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걸림돌은 더 있다. 항소가 수용된다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약 210억 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 일종의 공탁금이다. 이 항소가 기각되면 1,500만 달러는 클릭이 갖게 된다.

정욱 JYP 대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지 못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비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비 측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비는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와이뿐 아니다. 로스앤젤레스(LA) 공연 무산에 따른 소송도 제기돼 있다. 당시 LA 콘서트 프로모터 앤디 김이 비와 JYP, 스타엠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당초 월드투어 예정지의 프로모터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 8일 미국 연방법원은 비의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 비의 미국 공연판권을 구입한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클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스타엠과 레볼루션은 클릭에 213만 6,700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가수 비 100억대 청담동 건물 가압류』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 11:56)
내 용 : 가수 비(정지훈)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100억 원대 건물이 가압류된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2년 전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포함하면 배상총액은 9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달한다. (후략)

(3)『가수 비 건물 가압류, 국내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4일자 10:29)
내 용 : 가수 비(정지훈·27)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23일 "비의 청담동 건물 가압류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2007년 6월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비와 비의 당시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900만 달러(약 126억 원)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클릭 엔터테인먼트는 "비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며 "특히, 비의 청담동 소재 100억 원대 건물을 가압류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비, '항소 불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2일자 연예면에 "가수 비 항소불가·줄 소송, 지불능력도 없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던 내용과 3월 23일과 24일 각각 "가수 비 100억대 청담동 건물 가압류", "가수 비

건물 가압류, 국내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던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먼저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중략〉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징벌적 손해배상 〈중략〉 내라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며, 그 중 비(본명 정지훈)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고 배상액 항목 중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기피해'에 대한 금액이 아닌 '계약위반에 따른 위자료'로서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사기죄 기타 형사적 처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라고 보도한 내용 역시, 상소는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이며, 상소의 결과는 '법률전문가'의 소견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닌,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항소가 수용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약 210억 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고 보도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며, 여기에서 '쿠폰'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의 성격으로 항소 제기를 위한 조건도 아니며, 금액이 확정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공탁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비 측은 "여러가지 방안을 〈중략〉 특히, 비는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략〉 토로했다'라고 기재한 내용은 비나 청구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죄'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3일 및 24일 보도에서는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중략〉 배상총액은 9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평결 내용에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가수 비 100억 대 청담동 건물 가압류"라는 제목으로 '가수 비(정지훈)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100억 원대 건물이 가압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지훈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진행된 바 없고, 가압류는 채권자의 의사판단, 관할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가압류가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비의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한국신용정보는 〈중략〉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피소 대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사에 전혀 관련없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이튠은 구 세이텍을 인수한 후 사업 분할매각 및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된 상태임에도 1개월 전 외부기관 언급만을 인용, 회사가치 하락을 조장하고, 투자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바로 잡으며, 가수 비와 소속사의 연예활동 및 소속사의 향후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와 소속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이 택시 기사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Y T N : 「11시 뉴스」 프로그램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 살해』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21일 11:00)

내 용 : 현직 경찰이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을 현장에서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 새벽 한 시 반 쯤이다.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경위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서 택시기사인 양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경위와 당시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경위는 양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양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이 경위는 술에 심하게 취해 있었는데 자택 근처인 비산동 근처에 도착해 요금이 비싸다며 양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 살해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1일 사회면에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 살해"라는 제목으로 현직 경찰이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목적지와 1km 이상 떨어진 엉뚱한 곳을 도착지라며 서로 다툰 사실은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또한 유가족도 당시 지병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폭행이 아닌, 심근경색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경찰 택시기사 살해 기사 정정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1일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 살해" 제하의 보도에서 현직 경찰인 이모씨가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으며, 이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9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YTN24〉 프로그램에서 5회(8시, 12시, 15시, 18시, 21시)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와이티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보도내용 중 신청인과 관련이 있는 보도(아래 보도 포함)를 삭제한다.

가.[단독] 현직 경찰관이 택시기사 살해 (입력시각 : 2009-03-21 10:59)

나.[단독]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 살해 (입력시각 : 2009-03-21 11:00)

다.[단독] 현직 경찰관이 택시기사 살해 (입력시각 : 2009-03-21 11:40)

라.현직 경찰 간부가 택시기사 시비 끝 살해 (입력시각 : 2009-03-21 12:01)

마.[단독] 현직 경찰, 시비 끝 택시기사 살해 (입력시각 : 2009-03-21 12:15)

바.[단독] 현직 경찰, 시비 끝 택시기사 살해 (입력시각 : 2009-03-21 14:00)

사.현직 경찰관, 시비 끝 택시기사 살해 (입력시각 : 2009-03-21 16:57)

• 피신청인은 신청인 관련 보도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보도삭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Y T N : 「YTN24」 프로그램 『경찰 택시기사 살해 기사 정정』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9일 8시, 12시, 15시, 18시, 21시)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생들이 뿌린 석유와 시너에 불이 붙어 경찰관들이 죽었다고 보도했으나, 시너 사전 살포는 없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의대 5·3 동지회 (회장 고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학내 문제로 경찰 희생시킨 행위가 민주화운동인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 A4면)

내 용 : 동의대사건 전말-재심추진 경위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캠퍼스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그해 4월 동의대 김창호 교수가 대학이 개입된 입시부정을 폭로하자 학생들은 "입시부정의 진상을 밝히라"며 시위에 나섰다. 이 시위는 5월 1일 노동절을 거치면서 당시 시국과 맞물려 점차 과격해졌고 학내에 화염병이 나뒹굴기 시작했다. 2일에는 학생들이 시위 도중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중앙도서관에 감금했다.

다음 날 새벽 부산시경 기동대 소속 경찰 600여 명은 전경들을 구하기 위해 도서관 7층으로 진입했다. 그 순간 계단 입구에 기름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100여 명의 학생이 경찰을 향해 석유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 계단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최동문 경장 등 7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 10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 주동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 중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이른바 '부산 동의대 사건'의 전말이다.

이후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포함해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1인당 평균 2500만 원가량의 보상금도 지급했다.

경찰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 보상을 해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판결에서 '유족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의대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5일자 정치면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을 향해 석유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당시 학생들의 시너 사전살포는 없었다는 판시가 있어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2월 25일자 A3면 「"학내 문제로 경찰 희생시킨 행위가 민주화운동인가"」 제하의 기사 및 2월 26일자 A31면 「불법 폭력 체제 부정의 '민주화 운동' 왜곡 바로잡아야」 제하의 사설기사를 통해 "동의대 사건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석유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는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의대 5·3 동지회는 "비록 법원의 판결에서는 당시 시위대들이 석유를 뿌린 것이 인정되었으나, 시너를 뿌린 사실은 없었고 특히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다.

•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9일까지 동아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반론보도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제목의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1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생들이 뿌린 석유와 시너에 불이 붙어 경찰관들이 죽었다고 보도했으나, 시너 사전 살포는 없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의대 5·3 동지회 (회장 고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불법 폭력 체제 부정의 '민주화운동' 왜곡 바로잡아야』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6일 A3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10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1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1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생들이 뿌린 석유와 시너에 불이 붙어 경찰관들이 죽었다고 보도했으나, 시너 사전 살포는 없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의대 5·3 동지회 (회장 고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89년 화염병에 경찰관 7명 순직 DJ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8일자 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10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동의대 5·3 동지회 "시너 사전 살포 안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9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10의 합의사항 참조〉 □

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생들이 뿌린 석유와 시너에 불이 붙어 경찰관들이 죽었다고 보도했으나, 시너 사전 살포는 없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의대 5·3 동지회 (회장 고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일보 : 『동의대 사태 '민주 운동' 재심해야』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5일자 27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1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3월 5일자 27면 서론(동의대 사태 '민주운동' 재심해야)에 대해, 동의대 5·3 동지회는 당시 학생들이 시너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해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이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에 의한 계획 범행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의대 5·3 동지회 (회장 고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3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욕설 퍼붓고 눈 빼버리겠다며 10분간 위협·폭행』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8일자 5면)

내 용 : 전여옥 의원이 27일 민가협 회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전 의원 측과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전의원 측, "계획된 테러" 주장

전의원 측은 이날 밤 "의원이 추진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국민연대', '민가협' 등 단체들이 전날부터 협박을 해왔다"며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된 테러"라고 주장했다.

전의원 측은 "26일 의원회관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전의원이 추진하는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의원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갔다"고 주장했다. 전의원 측은 또 "26일 회관을 찾아오고 27일 지역사무소로 찾아온 사람 중 한 명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의원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전의원 측은 "국회 본청 민원실 창구 주변에서 5~10분을 잡혀 있으면서 위협·폭행을 당했다"면서 "머리채가 잡힌 채 손과 팔꿈치 등으로 눈 주위 등 얼굴을 가격당했다. 이들은 '이 ×는 죽여야 한다', '눈알을 빼버리겠다'는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마침 국회가 쟁점 법안 충돌로 출입통제조치를 내린 때였다. 국회 경위들이 본청 반대편 중앙 현관 주변에 전부 배치돼 야당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탓에 전의원 사건이 일어난 민원인 출구 주변에는 경비가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8일자 사회면에서 "하루 전 죽이겠다 협박,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의 계획범행"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이며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가수 비가 공연 무산으로 인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정 지 훈, 2.(주)제이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조 ○ ○·김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2009서울조정10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0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뉴시스 : (1)『알려드립니다』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 14:54)
내 용 : 위 보도에서 언급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의 평결에 대해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808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중 비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치로 보아도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고 항소가 수용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비는 항소는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이고 '쿠폰' 역시 항소 제기를 위한 조건이 아니며, 보도 내용과는 달리 현재 항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임직원 중 어느 누구도 비가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비의 심경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사에서는 '사기피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평결의 내용은 '계약위반에 따른 위자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밝혀왔습니다.

(2)『알려드립니다』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 14:56)
내 용 : 위 보도에 대해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비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된 바 없고, 비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총액은 900만 달러가 아닌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며, 하와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평결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피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며, 2009년 4월 현재 엔터테인먼트사업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3)『알려드립니다』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 14:57)
내 용 : 위 보도에 대해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6월 월드투어 무산과 관련해 비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은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비 측은 이번 하와이 연방배심의 판단과는 달리, 같은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 9월 무대장치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뿐이며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학교 공금으로 개인 오피스텔을 구입했고, 전임 부학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주KBS-1TV : (1)「KBS9-전북」프로그램『K대학 이사회 파행』제하의 보도(2009년 3월

9일 21:30)

내　　용 : ▷앵커 :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온 기전대 전 학장과 현직 교수들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중략)

▷김○○ : 이사장 해임문제에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기전대학교가 또 다시 경찰수사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각종 비리의혹을 받아온 전 학장과 현직 교수들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안○○ : 전주 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모 전 학장과 부학장을 지낸 서모 교수 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전 학장은 학장으로 있던 지난 2005년 노트북 등 학교기자재 구입비로 교직원들이 낸 1,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또 학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지난 2006년 중국에 있는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학장인 것처럼 행세해 협정서에 서명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부학장을 지낸 서모 교수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부속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3백만 원씩 1억 원이 넘는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서교수는 또 학교, 기업인, 여행사 운영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탁 사업 등과 관련해 성과급으로 4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교수는 학장 결재를 받아 업무추진비 등이 지급됐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학장도 법이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관련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억대 금품수수와 학교운영자금 횡령사건으로 곤욕을 치뤘던 조 전 학장이 또 다시 비리에 연루되면서 사학비리혐의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전대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일단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형사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후략)

(2) 「TV패트롤 무허가」 프로그램 『K대학 이사회 파행 논란』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3일 19:30)

내　용 : ▷앵커 : 판공비 유용 등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전대가 이사장 해임문제로 또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윤○○ : "교육과학기술부가 명명한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한 건 당연한 거죠."

▷박○○ : 10년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겁니다.

▷앵커 : 하나 둘 드러나는 탐욕의 진실들 사립대학은 왜 비리에 온상이 됐나? (중략)

▷김○○ :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우리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 절차는 법적인 것일 수도, 나름에 규정이나 규칙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르다고 생각한다면 법과 규정을 지켰다며 결과에 대해선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정만을 앞세워 갈등을 낳고 있는 우리지역 불신의 현장을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의를 배우고 사회를 미리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정의의 상아탑이 돼야 할 대학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과 비리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PD! 요즘 전주 기전대학이 시끄럽다고요.

▷김○○ : 네, 그렇습니다. 기전대학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조금 횡령과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사건들이 크게 불거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3일 이사장을 해임시키려는 이사회가 열렸는데 일부 이사와 교직원들이 이사장 해임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이사회가 열리던 날 이사회 장소에 수십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몰려왔습니다. 이어지는 겪한 언쟁, 결국 이사회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중략)

▷김○○ : 현 학장을 허수아비로 세운 뒤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도맡아온 건 부학장이라는 것. 현 학장은 전임 학장 조씨가 부학장을 통해 학교일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강○○ : "자기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자 교수 하나를 여기 부학장으로 뒀어요. 부학장으로 두고, 학교는 부학장이 전부 관리해요. 자기가 보직 교수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세우고 전부 관리하고 나는 그저, 그것이 범법 행위만 아니면 나는 그냥 도장 찍는다." (중략)

▷김○○ : 또한 전임 학장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7년, 학내 심의기구인 대학 평의원의 의장이 됐습니다. 평의원에 의원선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로서 그는 대학에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결기관인 이사회마저 대부분 전임 학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전임 학장은 전권을 행사 했다고 합니다. (중략)

▷김○○ : 이사회 파행과 함께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학장이 학장 부속실로 지급되는 판공비를 개인용도로 사용 했다는 의혹입니다.

▷박○○ : "전임 부학장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속실 판공비예요. 부속실 판공비는 권한이 최고 권한은 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맘대로 쓰셨단 말이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김○○ : 부학장은 전임 학장이 물러난 2005년부터 지난해 8년까지 매달 3백만 원씩 총 1억 원 가량의 부속실 판공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공비 유용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략)

▷김○○ : 전임 학장 역시 재임시절 학교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대전에 오피스텔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공금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김○○ : "대전에 있는 넥스트 빌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조학장님 명의로 갤러리 빌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에 그 네 채. 갤러리 빌이 네 채. 넥스트 빌이 두 채가 있었어요. 총 여섯 채가. 여섯 채가 있었는데 나머지 네 채는 전월세를 제가 관리를 하면서 다 내줬었죠. 월세도 받고,

▷기자 : "직접 관리 하셨어요." (중략)

▷김○○ :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학장 대행으로 선임됐다는 전임 부학장이 다음주 부터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판공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 부학장 그녀가 학장대행을 맞게 된 것이 전임 학장이 학교로 돌아오기 위한 수순일 것이다는 일부에 주장은 한낮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2001년부터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기전대학의 수많은 의혹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의혹의 실체는 무엇일지. TV패트롤무허가는 끝까지 파해칠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3월 13일자 방송된 무허가 'K대학 이사회 파행논란'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달라(또는 전주 기전대학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3일 저녁 7시부터 "'K대학 이사회 파행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전주 기전대학이 학장 및 이사장 해임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전임 학장이 학교업무에 관여하는 등 기전대학이 사학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각인시켜 보도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인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파행의 원인과 시설 및 복지 등의 소홀한 점 등까지 전임 학장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부 내용은 정확한 판결이 나지 않은 분쟁 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전임 학장이 타 지역(대전)에 빌라 6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전임 학장과 전임 부학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현재 이 문제는 명예훼손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드라마 '꽃보다 남자' 23부에서 회상신이 11분이 넘는 등 지나치게 회상신이 많다고 보도하였으나 총 1분 20초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파이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파이미디어 : 『키스, 키스, 또 키스… 죽죽 늘어지는 '꽃남'』 제하의 기사(2009년 3월 25일자 종합면)

내 용 : [TV리포트] 24일 KBS '꽃보다 남자'는 시청자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준비했다. 구준표(이민호)와 금잔디(구혜선)의 키스신을, 25분 동안 무려 3번 반복한 것이다.

잔디가 준표에게 한 이별의 키스는 드라마 러닝타임 40분, 48분, 61분에 각각 방송됐다. 애잔한 느낌의 키스신은 지나친 반복으로 그 감동을 반감시켰다.

그동안 '꽃보다 남자'는 이야기보다 이미지와 OST의 연출로 '뮤직비디오'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만큼 탄탄한 스토리보다는 비주얼 위주로 드라마가 진행돼 왔다.

그런데, 24부로 기획된 '꽃보다 남자'는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1부 연장, 31일 25부로 종영한다. 연장방송을 위해 드라마는 회상 장면을 자주 등장시킴으로 드라마 러닝타임을 늘리는 것이다.

23부를 기준으로 약 68신 중 회상장면은 11신이 등장했다. 강 회장이 준표와 잔디의 놀이공원 데이트를 날씨 뉴스에서 듣게 되는 장면을 포함하면 총 12신이 반복된 것이다. 이는 드라마 전체 16.1%~17.6% 해당한다. 러닝타임으로 계산하면 총 63분 중 11분 6초가 조금 넘는 수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꽃남' 2분도 안되는 반복씬, 11분 넘는다고 오보
• 내 용 : 2009년 3월 25일자 기사 〈죽죽 늘어지는 꽃남〉 기사에서 23부 기준 회상씬은 68씬 중 12씬, 이는 전체 분량의 16.1-17.6%가 넘는 수치이고 러닝타임으로 11분 6초에 해당된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오보임을 정정보도합니다.

기자가 언급한 회상씬이라 함은 '씬'이 아니라 '플래쉬 컷'이며, 이것의 총 분량도 기사에서 언급한 11분 6초가 아닌, 총 80초 즉 1분 20초임이 확인되어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또한 기사 중 반복되지 않는 회상씬을 언급한 것은 이미 방송된 장면의 반복노출을 지적하기 위한 사안으론 적절치 않은 보도였음을 밝힙니다.

더불어 기사 중 ppl 관련, 특정 죽 브랜드가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부분 역시 KBS와 방송심의관련규정에 합당한 수준에서의 변형노출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곧 소환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학 송 (국회의원)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박연차 로비' 김학송·김혁규·배기선 곧 소환』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31일 20:00)

내 용 :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을 검찰이 곧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학규 전 경남지사와 다른 건으로 구속 중인 배기선 전 의원도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

로부터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3선인 김 의원은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중진 의원입니다. 박 회장은 "17, 18대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경남 진해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와 3선 출신인 배기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혁규 씨는 경남 도지사를 네 차례 지냈고, 17대 국회의원도 역임했으며, 배 전 의원은 14, 15, 17대 의원을 지낸 야당의 중견 정치인으로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지사와 배 전 의원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한도액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송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혁규 전 지사 측은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학송 의원, 김혁규 전 지사와 검찰출석 날짜를 조율해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구속돼 있는 수감 중인 배기선 전 의원도 불러 혐의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학송 국방위원장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3월 31일자 8시뉴스에서,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을 검찰이 곧 소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김학송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믿을만한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사실보도이다. □

경찰관인 신청인이 사기도박꾼에게 접대를 받고, 사건무마를 위해 폭력배를 동원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구MBC-TV : 「뉴스데스크 · 대구」 프로그램 『경찰관이 사기도박꾼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를 위해 폭력배까지 동원』 제하의 보도(2009년 2월 19일 21:30)

내 용 : (전략) ▷아나운서 : 경찰관이 사기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박꾼들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는가 하면, 사건 무마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 대구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관련 경찰관의 징계는커녕,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 대구에 사는 최모 씨 등 두 명은 지난

해 일명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꾼들에게 속아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사기도박 피해를 안 건 지난 해 10월 사기도박에 가담한 권모 씨가 이들에게 양심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갑자기 사기도박 피해자인 이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풀어줬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갈죄, 사기도박을 한 박모 씨의 어머니로부터 피해금액 일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기도박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모 씨(사기도박 피해자) : 공갈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고, 상대편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돌려주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안해 줍니다.

▷기자 : 취재 결과, 이들에 체포되기 20일 전 경찰이 사기도박을 한 두명과 대구에 한 룸살롱에서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대를 받은 경찰이 이들의 사기도박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먼저 수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모 경위(담당 경찰) : 사실 그날, 그날은 야들이(사기도박 피해자들)이 와가지고(와서) 사기도박 증거 없으면 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묻더라카이, 야들이. 첩보 인수단계에서는 술 먹을 수 있습니다.

▷기자 : 여기에 대해 경찰은 양심선언을 한 권씨가 룸살롱 접대 사실까지 밝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모 씨(사기도박 양심선언) : "사건을 백지화 시켜줄테니까 형사를 옷을 벗기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갈라 카는 사람 집에 못가게 하고 옷 다 잡아찌고(잡아찢고) 거기서 룸 그 안에서 진짜 많이 맞았지예. 그래가 이빨 두 개 뿌라지고(부러지고)…

▷기자 :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문책한다며 광역수사대에선 일선 경찰서로 발령했지만 감찰조사나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이 사기도박꾼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를 위해 폭력배까지 동원 했다는 의혹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19일자 9시 30분 뉴스에서 경찰관이 사기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박꾼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는가 하면, 사건무마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관이 사기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향응을 접대 받거나 사건무마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년전 사행성 실내낚시터를 운영했던 신청인이 당시 취재차 나온 기자를 공갈 협박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손해본 거 물어내, 아님 동생들 풀어서…』 제하의 기사(2009년 2월 23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2006년 하반기에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오락게임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

가 되었다.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오락실이 철퇴를 맞으면서 2007년 초에 거의 모두 사라지고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상한 실내낚시터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실내낚시터가 도심 한가운데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유가 뭘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카메라를 메고 구미 형곡동의 한 실내낚시터를 찾았다. (중략)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장막이 쳐진 실내로 들어갔다. 실내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다. 몇몇 사람이 큰 욕탕처럼 생긴 낚시터를 가운데 두고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난 그 옆으로 가서 '손맛'이 어떠냐고 물으면서, 실내낚시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묻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잃었다는 그 손님은 1시간 이용료 5만 원에 번호가 좋은 물고기를 낚으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행성 게임이라 확신을 하고 카메라를 몰래 꺼냈다. 직원에게 들킬까봐 플래시를 켜지 않고 셔터를 눌렀다. 사진이 찍힐 리가 없었다. 그런 도중에 낚시를 하던 사람이 물고기를 낚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 낚은 물고기를 찍었다. (중략)

나머지 취재를 마친 다음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법률위반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구미 경찰서의 풍속계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단속관련 취재까지 모두 마치고 기사를 송고했다.

조폭에게 협박당하다

다음날, 〈오마이뉴스〉에 '오름' 기사로 떴다. 메인기사가 되면서 〈이상한 실내 낚시터〉라는 제목으로 각 포털에도 기사가 뜨기 시작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 옆에 있던 동료직원들에게 기사가 1면에 떴다고 막 자랑을 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입을 모아 똑같은 소리로 말했다. (중략)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실내낚시터에 경찰과 시청 공무원 등이 들이닥쳤다는 것이다. 간판을 떼고, 실내에 있던 경품 등은 압수 당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떡할 거냐고. 수천 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물고기 사서 넣고, 문 연 지 이틀 만에 당신 때문에 문을 닫게 됐으니…. 빨리 다 물어내. 안 그러면 동생들 풀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숨이 턱턱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등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중략)

조폭들은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기사에 나온 사진에 낚시터의 위치가 선명하게 나오니 모자이크 처리도 해달라는 것이다. 난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 모자이크처리와 가능한 기사를 1면에서 빨리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에도 그들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오마이뉴스 기사는 내려갔지만, 인터넷에 기사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빨리 없애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경찰 공무원 등이 찾아와서 조사를 받느라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해 배상을 하라며 '애들'을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담당 기자는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유감을 구두로 표명한다.

-아 래-

오마이뉴스 2월 23일자 기사에서 지난 2007년에 작성한 기사에 따른 후일담을 보도하면서, 당시 장○○ 님이 항의 방문하고 기사삭제를 요청한 전화를 건 것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으로 '조폭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표현하여 장○○ 님에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장○○ 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게 될 경우, 관련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 및 심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4월 17일까지 금 7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 결과

〈유감표명과 손해배상금 700,000원 지급〉 □

해외연수지원자들에 대해 영국문화원이 어학 능력 부적격 판정을 내려 탈락시켰다는 신청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 없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고 ○ ○)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언론재단, "연수 지원자, 영 외무성 시험서 탈락" 거짓 해명 논란』 제하의 기사(2009년 3월 25일자 6면)

내 용 : "영국 외무성이 경제 저널리즘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분야를 지원한 두 명은 전체 지원자들 가운데 재단의 종합성적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 지원자의 소속사인 한겨레는 회사 차원에서 언론재단에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재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장기 해외연수자 선발을 둘러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문화원의 한 관계자는 "경제 저널리즘 지원자 두 명을 인터뷰한 뒤 언론재단에 결과를 보냈다"며 "문화원은 지원자에 대해 탈락 판정을 하지 않았고, 최종 합격이나 불합격 여부는 언론재단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경제 저널리즘의 경우 영국 외무성과 비용을 반씩 부담해 외무성 쪽이 선발하는 것인데, 응시한 두 명이 모두 탈락했다"는 언론재단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왜 이런 해명을 했는지 언론재단 쪽과 얘기를 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저널리즘 분야는 언론재단이 영국 외무성과 공동으로 해외연수자를 선발하며, 자유주제와는 영어 면접이나 시험 방식도 다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24일 △영국대사관·문화원에 문의한 결과 두 기관은 영어인터뷰를 통해 2명의 지원자 가운데 누구도 부적격이나 탈락 판정을 한 바가 없고 △경제 부문에 예정된 인원을 어떤 사전 공고도 없이 자유주제로 돌려 선발한 것은 위법하며 △전체 지원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재단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해외 장기연수자 선발 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원자가 영국문화원으로부터 받은 영어 인터뷰 관련 평가 공문과 재단 자체에서 평가한 전체 지원자의 채점결과표에 대한 언론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언론재단이 재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에 지원한 또 다른 소속사의 지원자도 "자유주제의 경우 영어 시험은 토익이나 토플을 보고 영어 인터뷰는 외국어대에 위탁해서 치르지만, 경제 분야는 영국식 토플과 문화원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시험 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사전 공고도 없이 경제 부문을 자유주제로 돌려 선발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연수자 선발과 관련해 그동안 영국문화원이 공문을 보내 지원자에 대한 등락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 어학능력이 합격권에 못 미친다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합격자를 취소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재심 청구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미디어오늘 3월 25일자(671호) 6면에 실린 〈언론재단, "연수지원자, 영 외무성 시험서 탈락" 거짓 해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영국외무성이 경제저널리즘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한국언론재단은 연수지원자가 영국 외무성 시험에서 탈락했다는 해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제목의 '거짓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분야를 지원한 두 명은 전체 지원자들 가운데 재단의 종합성적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내용도 사실무근으로, 해당 프로그램과정에 지원한 두 명은 전체 지원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24일 … 해외 장기연수자 선발 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영어 인터뷰 관련 평가공문과 재단 자체에서 평가한 전체 지원자의 채점 결과표에 대해 언론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무근이었습니다. 한겨레가 보낸 해당 공문은 보도 당일인 3월 25일까지 한국 언론재단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한국언론재단에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미디어오늘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자 2면)
내 용 : 미디어오늘 691호(3월25일자) 6면 〈언론재단, "연수지원자, 영 외무성 시험서 탈락" 거짓 해명 논란〉 보도와 관련해 "영국외무성이 경제저널리즘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고 공식 해명한 적이 없어 제목의 '거짓해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경제)분야를 지원한 두 명은 전체 지원자들 가운데 재단의 종합성적이 가장 높았다"는 내용과 "한겨레는 24일…언론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 회사가 폐업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을 뿐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에프아이투어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6.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40 참조)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에프아이투어의 최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일자 16면)
내 용 : 지난해 8월 액슬론을 통해 코스닥 시장 뒷문으로 입성한 에프아이투어(옛 여행박사)가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일본 '도깨비 여행'이란 상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이색 테마형 여행 돌풍을 몰고 왔던 여행박사의 기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떠안게 됐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프아이투어는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 매매에 들어간 상태다. 자본 전액 잠식과 감사 범위 제한 의견거절을 사유로 퇴출 명단에 올랐다.

정리 매매가 개시된 지난 2일 주가는 무려 90.91%나 빠져 40원대로 쪼그라들었다. 8개월전 우회상장 첫 거래일 종가는 9350원. 그 사이 주가는 100%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

에프아이투어는 트라이콤의 100% 자회사로 코스닥 상장사 액슬론을 통해 지난해 8월 우회상장했다. 설상가상 모회사 트라이콤마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거래소는 트라이콤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실질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트라이콤에 대규모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등 모회사 경영과 관련해 에프아이투어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에프아이투어(옛 여행박사)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3일자 뉴스종합 16면 하단 우측부분 증권면에 〈옛 여행박사의 '비참한 최후'〉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8월 액슬론을 통해 코스닥 시장 뒷문으로 입성한 에프아이투어(옛 여행박사)가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에프아이투어(옛 여행박사)는 코스닥 상장에서의 상장이 폐지된 것일 뿐, 회사가 폐업된 것은 아니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여행 업계의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에프아이투어가 상장폐지되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확인 결과 여행박사의 07년 및 08년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드린 데 대해 에프아이투어 및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신청인 업체가 납품한 삼겹살에 다른 부위가 섞여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업체는 도축업체일 뿐 가공과정 상의 잘못과는 무관하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팜스코 (대표이사 민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마트 삼겹살에 앞다리살 섞여"』 제하의 기사(2009년 4월 2일자 17면)
내 용 :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일부 삼겹살에 값싼 앞다리살이 섞여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달 29일까지 4일 동안 연 할인행사에서 평소의 절반이 안되는 100g당 990원에 판 일부 삼겹살에 앞다리살인 '전지'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KBS가 〈9시뉴스〉에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이마트에서 구입한 삼겹살의 분석을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앞다리살 중에 갈비를 들어낸 전지로 판단되는 부분이 섞여 있었다. 삼겹살은 보통 배부터 뒷다리 전까지의 돼지고기로 양이 많지 않아 전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신세계 홍보담당자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부위별로 한 진공포장상태로 ㅎ업체에서 납품받은 뒤 썰어서 팔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품업체도 팜스코라는 육가공 공장에서 포장 상태로 구입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자르거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돼야 이번 삼겹살에 전지가 포함됐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삼겹살에 전지가 섞여선 절대 안된다"면서도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소비자 사과나 피해보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마트 삼겹살에 앞다리살 섞어 파는 것은 팜스코와 무관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4월 2일자 사회면에 "마트 삼겹살에 앞다리살 섞어"라는 제목으로 납품업체도 팜스코라는 육가공 공장에서 포장상태로 구입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자르거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돼야 이번 삼겹살에 전지가 포함됐는지 알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팜스코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ㅎ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기획재정부가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적이 없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경제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1면)
내 용 : 기획재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에 지난 1월 확정된 정부 금액보다 3,800억 원 더 들어갈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재정부 내부 보고서대로라면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이달 말 재착공 예정인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005년 경인운하 사업이 재추진된 이후 시민단체들이 B/C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경우는 많았으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처음이다.

본보가 입수한 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보상비 조기집행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1,57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경인운하 수익 및 비용을 재검토한 뒤 거부했다.

재정부는 재검토 보고서에서 경인운하 사업이 예정대로 착공되면 공사비가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서 책정한 금액 8,330억 원보다 1,800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지난 1년 간의 물가 상승 요인과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경인운하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3,400억 원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 총비용은 1조9,330억 2,000만 원에서 5,200억 원 늘어난 2조4,530억 2,000만 원이 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KDI가 제시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예상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KDI가 운하 하역료를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만 678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고가의 하역 요금 책정으로 오히려 물동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수익면에서는 경인운하 배후단지 분양가를 10% 상향 조정할 경우 1,400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재정부는 경인운하에 당초보다 3800억 원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289억 원으로 잡혀 있

는 경인운하 국고 지원 규모를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재무 여건을 고려해 차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보상비로 3289억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재정부가 재검토한 공사비, 물동량, 배후단지 분양가 등을 근거로 B/C를 산정할 경우 사실상 1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공사비와 배후단지 분양가를 반영할 경우 B/C는 1.04로 KDI가 발표한 1.07보다 낮아진다. 여기에 재정부의 물동량 감소 우려까지 감안하면 B/C는 사실상 1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KDI의 B/C를 근거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착공하기로 했다.

(2) 『"수익보다는 비용 증가폭 커져 경제성 급락"』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3면)

내 용 : 기획재정부의 경인운하 수익·비용 재검토 문건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성격이 짙다. 3,00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이 따져본 것이다. 그 결과 KDI가 비용편익비율(B/C)을 1.07로 결론 내리며 경제성이 있음을 입증했지만 재정부 문건에 나온 수치를 대입해 B/C 값을 다시 구할 경우 1 밑으로 내려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KDI 보고서와 달라진 점=재정부는 KDI 보고서의 비용과 수익 항목을 재산정한 결과 수익보다는 비용 증가 폭이 큰 것으로 결론지었다. 우선 지난 1년 간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국민일보는 '09년 3월 23일자 1면 「경제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및 3면 「"수익보다 비용 증가폭 커져 경제성 급락"」 제하의 기사에서, "KDI 보고서와 기획재정부 재검토안 B/C 비교" 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B/C를 1.04-α로 산정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KDI의 경인운하 타당성재조사('08.12)와 별도로 동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거나 B/C를 재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오보이므로 이를 정정하며, 독자 여러분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부제목 :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 보도관련
• 내 용 : 본보 3월 23일자 1면 및 3면에서 '기획재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재검토한 내부 보고서는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1이하로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재검토한 바 없으며, 경인운하 사업은 KDI 조사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23일까지 국민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는 국민일보의 통상적인 정정 및 반론보도 형식에 따르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기획재정부가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적이 없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 재정부 내부 보거서 작성』 제하의 기사(2009년 3월 24일자 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2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12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2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기업이 국토해양부 지침을 무시하고 발파를 강행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 ○ ○)
피신청인 : 인천연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인천연수신문 : 『D건설 지침 무시하고 발파 강행해』 제하의 기사(2009년 3월 25일자 7면)
내 용 : D건설이 지침을 무시하고 화약 발파를 무자비하게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N장례식장에 이어 M오피스텔에도 심한 균열이 발생, 건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약 발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하고 진동에 따른 피해가 일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명회 개최 등 시설물 소유자,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화약 발파를 하기 전에 인근 건물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하고 각종 시설물의 균열 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 근거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특히 시험 발파 위치는 인근 건물과 근접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피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설계에 가까운 규모로 해야 하는 등 발주청, 시공회사, 감리단, 관할경찰서를 비롯해 인근 건물 소유자 및 주민들 입회하에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D건설은 이와 같은 지침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센서의 스파이크가 지반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이용, 센서를 완전히 고르게 덮어주어 하중을 가해 줌으로써 지반과 같이 움직이도록 해야 하나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D건설 지침 무시하고 발파 강행해"보

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9년 3월 25일자 사회면에 "D건설 지침 무시하고 발파 강행해"라는 제목으로 D건설이 지침을 무시하고 화약발파를 무자비하게 강행해 주민피해는 물론 주변건물에 균열을 발생케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D건설은 적법하게 관할 경찰서에서 화약사용허가를 받고 화약사용을 하였으며, 보도내용 중 근거지침이라고 보도된 내용은 민간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지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D건설의 화약발파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D건설은 화약 발파 전 발파관련 내용을 M건물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알림조치를 하였고 M건물 등 주변 민원예상 건물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담당자와 M건물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시험발파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 없이 화약사용을 개시하였으며, 인근건물에 대한 사전현황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M건물 기준으로 20M까지는 무진동 발파(화약미사용)구간으로 설계되어 시험발파를 할 필요성이 없는 구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

자수 명장인 신청인이 제자의 작품을 도용해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에 선정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작품은 제자와 함께 제작한 것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7.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위작 논란 빚은 자수 名匠 작품 유네스코 수상 취소 '국제 망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17면)

내 용 : 유네스코가 지난해 10월 우수 수공예품으로 선정한 '자수 명장(名匠)'의 작품이 위작 논란 끝에 수상 취소돼 국제 망신을 당하게 됐다.

유모(53) 씨는 지난 200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최고 기능인을 뽑아 수여하는 '명장'(자수공예 부문)에 선정됐다. 그 후 유씨는 '대한민국 자수 명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였고, 2005년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벡스코 회의장에 작품을 전시했다.

지난해 10월 유씨가 출품한 '십장생(十長生) 돌띠' 등 전통 수공예품 12점이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우수 수공예품에 선정됐다. 사라져가는 전통 공예품을 보호하고 현대에 맞는 공예품 제작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유네스코가 국가별 공예전문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몇 달 뒤 유씨의 미국인 제자 A씨가 "십장생 돌띠는 내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나왔다. 국내 홍보 및 참가 대행을 진행한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수년째 유씨로부터 자수를 배우고 있는 A씨가 '내 작품을 유씨가 자기 이름으로 냈다'고 유네스코 본부에 이의를 제기해 유네스코에서 출품 경위 등을 조사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는 "수업 중 A씨와 함께 만들었던 작품을 본인의 양해를 얻어 제출했다. 작품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디어와 도안 등은 내가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품을 출품할 때 함께 제출한 참가 신청서에도 A씨가 제작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통공예계는 "제자의 작품을 도와주고 슬쩍 자기 이름으로 출품하는 고질적 폐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통공예인은 "전통공예계는 집단창작이 특히 많아 말썽이 잦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승공예대전 같은 미술대전 출품작은 작품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모두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유네스코 동아시아 우수 수공예품 인증취소' 생산자 관련 필수정보 누락
• 내 용 : 3월 31일자 A17면 위작 빚은 유네스코 수상 취소 '국제망신' 기사의 제목에서 '유네스코 수상'이 아니라 '유네스코 동아시아 우수 수공예품 인증제'이며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참가신청서' 및 '참가관련안내' 출품서식에는 샘플입고, 북경사무소에 샘플제출로 되어있고 '홍보카탈로그 제작과 전시'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가 향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류착오 발생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하여, 서류접수 후 서류심사 통과상품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할 때, 본인의 것이 완성되지 못하여 미국인 제자 A씨의 것을 양해 하에 수업시간에 빌려 샘플로 제출하게 되었다. A씨는 혼자 '십장생 돌띠' 작품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씨의 많은 도움을 받아 공동제작 하였고 '십장생 돌띠'는 유씨가 구상한 디자인과 재료로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수업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유씨는 신청서에 작품이 아닌 샘플제출로 되어 있고, 인증 후 전자상거래 상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소비자들이 주문하게 되므로 순수 샘플접수로만 인식하였다. 향후 국내전시와 관련해서는 유씨가 제작한 작품으로 차질없이 전시를 하였다.

통상, 우수 수공예품으로 인증되어 기증하더라도 전시와 수여식이 끝난 후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심사한 북경사무소에 샘플이 기증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실을 후에 안 유씨가 미국인 제자 A씨와 상의하던 중 오해로 이하여 "스승인 유씨가 내 작품을 훔쳐서 (뺏어서) 유씨 자기이름으로 출품하였다"고 유네스코본부에 거짓으로 비난 고발을 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다.

문서착오로 인한 위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자수명장 유씨가 "제자의 작품을 슬쩍 자기이름으로 출품하고 한국 전통공예의 위신을 떨어뜨린 소동"이라고 확대하여 비방하는 기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한 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문화부 차장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다음의 보도문을 2009년 5월 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 혹은 문화면에 보도(토요일, 공휴일자 발행신문제외)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다음-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3월 31일자 17면 '위작 논란 빚은 자수 名匠 작품' 기사에 대해 유○○ 명장은 문제가 된 작품은 미국인 제자 A씨와 함께 만든 것이고, 그의 동의하에 유네스코 측에 샘플로 제출한 것이므로 A씨의 창작물을 내 것인양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7.

조정결정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6일자 A20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의 무계획적인 주식투자로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계획에 따라 엄격히 집행됐고 손실은 현 시장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 해 춘)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일요서울 :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반토막 '책임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6일자 19면)

내　　용 :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대형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박해춘 이사장에게 첫 시련이 닥친 건 작년 8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파동이 세계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즈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암흑으로 뒤덮힌 이때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국민들 귓전을 때렸다. 국민연금이 '묻지마 주식투자'에 나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은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리만 브러더스를 비롯 △메릴린치 △AIG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이다. 특히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은 현재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박해춘 이사장은 국내외 주식투자로 자그마치 19조3,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아무리 제 돈 아니라지만 국민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면초가에 빠진 불도저

박해춘 이사장에게 불어 닥친 어둠의 그림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민연금 취임 직후에는 말실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작년 9월 송희영 논설실장은 박해춘 이사장이 청와대 최고위층(이명박 대통령)과 교감한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자 그에게 융단 폭격을 가했다.

송 논설실장은 작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지면을 통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경제계에서 부각되지 않은 화제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변신"이라며 "돌연 목소리가 커지고 위세마저 당당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실장은 "역대 정권은 국민연금의 엄청난 위세를 걱정한 나머지 그동안 연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행정부문과 자금운용 부문을 분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새(박해춘) 이사장이 등장한 후 돌연 기류가 바뀌었다"며 박해춘 이사장을 정 조준했다. 박 이사장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쯤이다.

특히 같은 우리은행 출신인 박병원 전 경제수석의 경질은 박해춘 이사장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박해춘 이사장에게 박병원 전 경제수석은 '마지막 잎새'와도 같은 존재였던 탓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존재도 박해춘 이사장에겐 눈엣가시다.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장관은 연금 통합징수권을 국민연금공단 보다 정형근 전 의원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민연금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6일자(19면)에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반토막 '책임론' 대두"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본 기사는 여러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달리 잘못 보도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첫째, "작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을 사석에서 만난 사실을 자랑인 양 떠들다가 송희영 칼럼리스트에게 호되게 면박을 당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자랑인 양 떠든 적도 없고 그로 인해 호되게 면박을 당한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으로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가입자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마련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계획을 기준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중장기기금운용계획과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의 목표비중과 그 허용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을 12%~22%로 하고 해외주식 투자비중은 2.1%~5.1%로 하였으며, 공단의 실제 운용결과는 국내주식 비중은 12.0%, 해외주식은 2.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은 그 관리 운여에 관한 투자계획이 신중하게 수립되고 그 투자집행 과정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수익률 악화는 현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익률이 다소 저조하다는 결과만을 토대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국민연금이 '묻지마 주식투자'에 나서…"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은… 아무리 제돈 아니라지만 국민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라고 보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주식투자에서의 평가손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종목에서의 평가손실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이러한 평가손실은 주식외의 다른 금융자산에서의 수익이 이를 상쇄하여 결과적으로 2008년 전체 기금운용은 미세한 플러스 수익 성과임을 공표한 바 있고, 이는 대개 마이너스 10~20%대의 손실을 기록한 해외 연기금에 비해 상당히 선전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넷째, "이어 송 실장은 '역대 정권은 국민연금의 엄청난 위세를 걱정한 나머지 그동안 연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행정부문과 자금운용 부문을 분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새 이사장이 등장한 후 돌연 기류가 바뀌었다'며 박해춘 이사장을 정 조준 했다. 박 이사장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쯤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자금운용 부문을 분리하는 정책기조는 제도 시행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 공단 이사장 임명 이후 기류가 바뀐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존재도 박해춘 이사장에겐 눈엣가시다.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장관은 연금 통합징수권을 국민연금공단 보다 정형근 전의원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사회 보험료 징수 통합은 현 이사장 부임 이전부터 추진된 정부 사업이므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 각 개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밝혀졌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 해 춘
조정대리인 홍보실 부장 류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조정대리인 부장 홍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5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경제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중간제목(국내외 주식투자로 19조 3,000억 원 손실, 경영자

질 논란)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7.

〈별 지〉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777호 19면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반토막 '책임론' 대두」 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묻지마 주식투자로 2008년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 계획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주식투자부문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은 미세한 플러스 수익 성과이며, 이는 마이너스 10~20%대의 손실을 기록한 해외 연기금에 비해 상당히 선전한 결과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회 보험료 징수 통합은 현 이사장 부임 이전부터 추진된 정부 사업입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일요서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7일자 20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나주시 고위공무원인 신청인이 비행안전구역인 국도변에 건설자재 판매장을 설치해 탈·불법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시설물이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남저널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남저널 : 『나주시 정년 앞둔 공무원 철 판매장 신축 비난』 제하의 기사(2009년 3월 26일자 1면)

내 용 : 나주시청의 한 고위간부가 비상활주로 부근 비행안전 3구역인 국도 1호선 변에 10여m 높이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곳에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등 건설자재 판매장을 만들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왜 흉물스럽게 비닐하우스로 대체했는지 부터 구거의 불·탈법 점·사용, 국방부 소유의 도로 침범, 건축허가 기피, 컨테이너 형식을 빌린 신고여부, 영구고정시설물의 설치 등등 각종 의혹이 그것이다. 2개 필지의 땅에 각각 다른 소형 컨테이너식 건물 2채를 둔 것처럼 신고만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비닐하우스 형태를 빌린 철제보관 창고는 내부에 호이스트(크레인종류)를 400여㎡ 크기의 2층 높이로 설치해 두고 있는데 호이스트가 건축법상 공작물이 아니며 비닐하우스 형태여서 증설신고마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호이스트를 설치하려면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뒤 5-6m높이의 H형 철재

빔 기둥으로 고정해야 하는 일종의 영구고정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다.

2 필지의 토지를 관통하면서 한 필지의 서쪽 변을 감싸고 있는 구거를,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계획평면도에는 구거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2개의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그 구거를 자신의 소유토지로 만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의 구거 한계를 표시한 사진 물에는 철재 호이스트의 기둥 일부가 구거를 침범한 것처럼 되어 있다.

구거의 면적이 309㎡인데 그 가운데 289㎡만 사용허가를 받았으면서도 나머지 20여㎡ 모두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에 따라 구거의 일부를 불법 점·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는 것.(구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취소 요건임)

또 구거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계획평면도에 따르면 THP(D=500㎜)의 수로관로가 80여m나 매설되어 있어 별도의 관로보호 보완작업의 선행 없이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주시는 이를 허가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국방부 소유)의 측구형태로 보아 그 도로를 침범하여 호이스트 기초 옹벽이 세워져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와의 간격유지 원칙도 무시되었다며 마을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7월 15일 신고 한 12㎡규모의 건축신고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취하했다가 15일 후인 2008년 7월 30일 재신고하여 2008년 8월 24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은 건물은 없고 그곳에 400여㎡ 크기의 건축자재 보관창고가 대신 들어서 있다.

그 창고에는 14개 이상의 철재 빔 기둥을 가진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철 파이프를 이용하여 지붕과 벽체를 비닐로 덮어 놓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증설했는데 건축법상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설신고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4월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바탕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는데 그 뒤 토지소유주가 바뀌어,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신 소유주로부터의 재 징구도 기피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 때문에 나주시는 불·탈법의혹을 받고 있는 그 철강판매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면서 형평의 원칙을 잃고 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것.

이에 당사자는“ 취업마저 못하고 있는 아들이 먹고 살기위해 한 일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재하고 “건폐율 적용문제 때문에 지붕대신 비닐로 씌웠으며 구거 등 땅은 지적측량을 두세 번하면서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왔고 오히려 개인소유의 땅에 도로가 나 있을 뿐 도로부지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6일자 1면 ‘나주시, 정년 앞둔 공무원 철 판매장 신축 비난’ 제목하의 기사에서 “△나주시청의 한 고위간부가 비상활주로 부근 비행안전 3구역인 국도 1호선변에 10여m 높이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곳에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등 건설자재판매장을 만들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왜 흉물스럽게 비닐하우스로 대체했는지부터 △국방부 소유의 도로침범, △건축허가 기피 컨테이너 형식을 빌린 건축신고, △영구고정물의 설치 등등 각종 의혹이 있으며, △아들 명의를 빌려 불·탈법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나주시 행정은 보지 않아도 알 만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거를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상당부분을 침범해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점·사용하고 있고, △20㎡의 구거를 불법 점거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로보호 보완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주시가 허가해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비상활주로 부근 비행안전 3구역은 1구역 연장선에서 부지까지 164m로 7대 1의 비율로 산정할 때 약 23m 높이까지 비닐

하우스 설치가 가능하고 △국방부 소유의 도로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되레 도로를 침범해 사용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형식을 빌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신청부지의 중간에 구거가 있어 각각의 필지로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호이스트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고 △호이스트 기초옹벽과 건축법상 도로와의 간격유지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에서 가정을 꾸린 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체의 영리행위를 전체 나주시의 행정 신뢰도와 연관짓는 것은 견강부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도는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개인을 父子지간인 고위 공직자와 결부시켜 마치 직위를 이용해 불탈법을 자행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면서 개인이나 나주시에 심대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아들의 사업을 비호한 것처럼 보도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 공사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 관련 보도를 매우 소극적으로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의혹에도 뒷짐 진 KBS』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종합면)

내 용 :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의 방송을 지향하는 KBS가 여전히 김연아 후속보도에 열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진지 사흘째(30일)를 맞으며 청와대·경찰의 은폐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청와대 추문엔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부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는 이밖에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실종신고된 지적장애아를 부모에 직접 넘기지 않고 알아서 집으로 혼자 돌려보내 이틀간 노숙자 상태가 됐다"는 내용의 발굴 보도 등 KBS 단독 보도에 대해선 뉴스 끝무렵에 전해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 단신 처리했던 MBC, 집중 보도…KBS는 뉴스 뒷부분에

이에 반해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 보도를 지난 28일 단신처리했던 MBC는 30일 뉴스에서 앞머리에 배치하면서 세건의 보도를 쏟아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다뤘다. (중략)

KBS는 〈뉴스9〉에서 이 뉴스를 28분대인 19번째 리포트 '관련업체 성접대'로 처리하는 등 가장 소극적인 뉴스배치를 했다. KBS는 경찰이 지난 25일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투숙한 청와대 행정관 김(43)씨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김 행정관이 모텔에 가기 전 유흥업소 술자리에는 다른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을 접대한 사람은 한 케이블 방송업체 직원이었다"고 보도했다.

KBS는 "하지만 지난 28일 경찰은 김 행정관이 청와대 사람인지 몰랐다며 모텔이 아닌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며 "청와대에서 김 행정관 등의 성매매를 적발 당일 알았고 즉시 감찰조사에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이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오늘까지도 행정관의 신분과 술자리에 누가 동석했는지, 술값을 누가 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가성 있는 성접대를 단순 성매매로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다고 했다.

KBS, 19번째 리포트로 처리…김연아 갈라쇼는 뉴

스 앞머리에 7건 쏟아내

KBS는 청와대 행정관을 김아무개 씨로 표기했지만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해선 회사명을 쓰진 않았다.

KBS는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속보를 이렇게 뒷부분에 배치한 반면, 김연아 선수의 갈라쇼 등 김연아 속보는 7번째 리포트부터 13번째 리포트까지 뉴스 앞쪽에만 무려 7건의 보도를 쏟아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년 3월 31일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의혹에도 뒷짐 진 KBS'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당사는 2009년 3월 31일자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의혹에도 뒷짐 진 KBS'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KBS는 사건 발생 첫날부터 지금까지 관련 보도를 함에 있어 양적·질적으로 여타 뉴스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도 건수와 내용을 타 방송사들과 비교해 봐도 KBS 보도가 양적 측면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이번 기사 작성에 있어 KBS 편집진을 대상으로 제대로 확인 취재도 하지 않고 당일 다른 뉴스와의 중요도 비교평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해당기사의 편집 순서만을 놓고 주관적으로 비난 기사를 작성해 KBS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의혹에도 뒷짐 진 KBS'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보는 지난 3월 31일자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의혹에도 뒷짐 진 KBS'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사건 발생 첫날부터 지금까지 관련 보도를 함에 있어 양적·질적으로 여타 뉴스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이번 기사 작성에 있어 KBS 편집진의 확인 과정이 없었던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향후 미디어오늘은 취재 비평함에 있어 취재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 4. 20. 오전 9시부터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 초기화면의 상위 10번째 위치에 1일간 게재하고 이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각각 같게 한다.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조정대상기사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의혹에도 뒷짐 진 KBS'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0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유권자로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8.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39 참조)

보도내용

한국경제 : 『정동영 출마설 전주 민심은, 與 견제하려면 스타급 정치인 필요』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8면)

내 용 : "서울에서 달든 전주에서 달든 국회의원은 다 같은 거 아니여."

"대선후보까지 지낸 양반이 지방에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29 재보선 출마 결심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주 덕진의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덕진은 정 전 장관이 15, 16대 총선에서 연속 최다 득표를 했던 지역으로 그에겐 정치적 고향이다.

지난 4일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 전 장관이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인지 "일단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속내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 전 장관 같은 스타급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한 편이었다. (중략)

반면 민주당의 '세대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전 장관의 출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진북동 공인중개사 유○○ 씨는 "민주당도 언제까지 정동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세대교체론을 제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난 정동영 보도 관련 사과드립니다"
• 내 용 : 지난 2월 5일 저희 신문사는 "정동영 출마설 전주 민심은, 與 견제하려면 스타급 정치인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인중개사 유씨가 "민주당 언제까지나 정동영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의 세대교체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이의 발언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신 유씨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신청인이 故 김성재의 죽음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유감표명)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우먼센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우먼센스 : 『'의문사' 한 고 김성재 어머니 육○○ 씨의 가슴 아픈 사연』 제하의 기사(2009년 2월호 386~388면)

내 용 : 지난 1990년대,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닌 듀스의 김성재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5년 자신의 솔로 데뷔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다음날 숙소에서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인은 주사용 약물 중독사였다. 그의 팔에서는 무려 28군데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오른손잡이인 그가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를 놓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래서 당시 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애인 김모 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김성재의 유작이 된 '말하자면'만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안재환과 최진실 등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사건을

다루며 일부 언론에서 과거 김성재가 자살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내보냈다. 김성재의 어머니 육○○ 씨는 더 이상 죽은 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더 생생하다.

"우리 성재는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사실인데 왜 자살 연예인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살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라는 게 분명히 밝혀졌는데 '연예인 자살', '마약과다 투약' 등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성재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또 호텔에서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음에 걸려요. 그곳은 백댄서들과 합숙하던 숙소였는데 말이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시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
• 내 용 : 본지 지난 2월호 「'의문사'한 고 김성재 어머니 육○○ 씨의 가슴아픈 사연」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저희 매체에서 故 김성재씨와 신청인에 대해 취재 보도하는 경우, 사전 동의 하에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2010년 4월 말까지 신청인을 인터뷰하여 3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되, 사전의 기사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다만, 쌍방 합의 하에 위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故 김성재(가수)가 의문의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타살이 분명하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2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투데이코리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투데이코리아 : 『김성재 어머니, "아들은 자살이 아니다, 명예 되찾겠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1일자 종합면)

내 용 : 지난 1995년 인기그룹 듀스 멤버였던 故 김성재 자살에 대해 그의 어머지 육○○(63) 씨가 "내 아들은 절대로 자살이 아니다"라며 고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육○○ 씨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 성재의 죽음이 최근 잇따른 연예인 자살 사건마다 오르내려 더 가슴이 찢어진다"며 "아들의 사인이 자살로 밝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언론이 자살로 몰아가고 있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인터뷰에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아들이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했다. 성

재는 오른손잡인데 오른쪽 주사바늘이 있는 그 부분에는 스스로 주사를 할 수 없다"며 "어쩌다 간신히 한 번 정도는 잘못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28바늘을 자기가 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혀 아들의 죽음에 의혹을 증폭시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듀스 김성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월 11일자 〈김성재 어머니, "아들 죽음 자살로 볼 수 없다"〉, 〈김성재 어머니, "아들은 자살이 아니다, 명예 되찾겠다"〉제하의 기사 등 2회에 걸쳐 '김성재는 듀스 해체 후 얼마 안 지나 타이틀 곡 '말하자면'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는 의문의 자살로 목숨을 잃어 당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김성재 씨는 솔로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날인 1995년 11월 20일 새벽 숙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당시 부검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주사용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되었고, 1심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상고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문의 자살'로 보도한 것을 바로잡으며, 아울러 유족들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 삭제〉 □

신청인 단체가 단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에 출연자 섭외를 맡기고 사례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이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국립오페라단장 '도덕적 해이'』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29면)
내 용 : 국립오페라단 이○○ 단장(48)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출연자 섭외를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외주를 주는 것은 국립오페라단 내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단장은 이 과정에서 2006년 이후 없어졌던 '일비'를 부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 동생에게 '퍼주기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국립오페라단에 요청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됐다. 국립오페라단은 이 단장 취임 후 〈살로메〉 〈휘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등의 오페라를 준비하면서 기획사 'MCM유럽'에 출연자 섭외를 맡겼다. 출연자 섭외는 이 단장 취임 전까지 국립오페라단 내부의 공연기획팀에서 이뤄졌다. MCM유럽은 이 단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성악가 매니지먼트 회사다. 국립오페라단 규정 제2장 5조는 4촌 이내의 친족,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했던 회사와의 거래를 배제하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앞서 언급한 공연들을 무대에 올리면서 연출자, 디자이너, 지휘자 등에게 사례금(숙박비·항공료 별도)으로 총 4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도표 참조).

과거에 비해 액수가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일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비는 해외 아티스트가 국내에 체류하는 날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이

단장 이전에는 없었던 비용이다. 게다가 실제로 국내에서 숙박한 일수보다 2~3일씩 부풀려 지급한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 (중략)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렀던 김모 사무국장도 동생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 TV광고 제작을 맡겨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휘가로의 결혼〉과 〈마술피리〉의 광고 제작비는 이전과 비교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액수가 늘었다(도표 참조). 김 사무국장은 이 사실을 MBC 〈피디수첩〉팀이 취재해 보도하자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2009년 3월 31일자 20면 「국립오페라단장 '도덕적 해이'」제목의 기사에서, 현 국립오페라단 단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인 'MCM 유럽'에 출연자 섭외를 맡겼다고 보도했으나, 국립오페라단 단장의 동생은 'MCM Europe GmbH'의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함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2006년 이후 없어졌던 일비를 부활하는 등 단장 동생에게 퍼주기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립오페라단은 일비 지급은 사례비의 추가 지급이 아니라 출연자의 요청에 의해 동일액수를 일비와 사례비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단장(월 평균 95만 원)과 사무국장(월 평균 50만 원)이 2009년 1~2월 업무추진비 사용한도를 초과해 지출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은 단장, 사무국장의 카드사용 내역이 아니라 국립오페라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며 국립오페라단은 업무추진비가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연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많이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하게 되므로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휘가로의 결혼〉, 〈마술피리〉의 TV광고 제작비를 이전보다 3~8배 많게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립오페라단은 기존의 사진편집 수준을 넘어 작품의 개념이 전달된 동영상 광고물을 제작하게 됨에 따라 광고비가 증가했으며, 대신 옥외광고 등 여타 홍보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이 병 만
조정대리인 배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5월 13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문화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내규 내세워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강행하면서 내규 어기고 친동생 회사에 출연자 섭외 등 몰아줘")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아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1) 제 목 : 국립오페라단 관련 정정 및 반론

2) 내 용 : 본지 2009년 3월 31일자 20면 「국립오페라단장 '도덕적 해이'」 제하의 기사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이○○ 단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MCM 유럽'에 출연자 섭외를 맡겼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결과 단장의 친동생은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립오페라단은 'MCM유럽'과 계약하면서 사례금의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바가 없으며, 공연 출연자 섭외는 'MCM유럽'이 아닌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에서 담당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7.

조정결정 이행결과

경향신문 : 『국립오페라단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1일자 22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수상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사기극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중해양개발(주) (대표이사 방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지자체·투자자 농락한 유사수신』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26일 21:00)

내　　용 : 충남 당진군이 지원하고 최고급 수상관광 호텔을 만든다는 사업이 결국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투자자도, 지자체도 농락을 당했습니다.

▷기자 : 충남 당진군 삽교호 관광단지에 들어선 만 2천 톤급의 대형 크루즈선.

국내 한 업체는 이 배에 400억 원을 들여 최초의 수상 특급호텔을 만든다며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100개가 넘는 객실에 국제회의장과 스카이라운지 등을 갖춘 호화 시설로, 바로 옆 친수공간과 어울려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거 라는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당진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수가 홍보물에 출연해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민종기 당진군수 : "우리 당진군에서는 선상호텔이 당진관광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 : 군청 홈페이지에도 크루즈선이 등장하니, 말 그대로 당진군이 보증하는 사업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을 연다던 호텔은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버렸습니다.

▷당진군청 관계자 : "배만 인양해 놓고 그쪽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사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투자업체를 끌어들였지만, 투자업체 대표가 최근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인천, 오산, 대구 등지에 센터를 둔 문제의 투자업체는 분양승인도 없으면서 이 호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투자업체 전 직원 : "그게 등기분양이 아닌 데다가 사업이 중단돼 있고 그런 거를 투자하라고 하면 도둑놈이죠. 영업부 직원이 다 나왔다니까요. 관리직만 있어요, 지금."

▷기자 : 대구에서는 200명 정도의 피해자를 낸 채 사무실은 이미 폐쇄됐고, 전국에서 모두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자/중국동포 : "저희 학생(아들)이 21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거기다 부치려고 한 돈을… 지금 죽겠어요."

▷기자 : 투자자들로선 지자체가 적극 나서 보증하는 사업에 믿고 투자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만약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천억 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유치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문화관광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한 당진군수는 취재진

이 여러 차례 해명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자체·투자자 농락한 유사수신" 사실과 달라 (또는 지자체·투자자 농락한 유사수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6일 9시 뉴스데스크 현장출동이라는 코너에서 "지자체·투자자 농락한 유사수신"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당진군이 지원하고 최고급 수상관광호텔을 만든다는 사업이 결국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업시행사인 H사는 사기행위를 한 바 없고, 유사수신업체인 O사와 어떠한 불법적인 계약을 한 적도 없으며, 현재 사업이 종료된 것도 아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자료화면으로 제공된 선박 및 홍보물의 영상은 H사의 승낙 없이 O사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0원

합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해 한중해양개발(주) 대표 및 부사장 모두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 아래의 내용대로 보도하도록 한다.
• 제 목 : 충남 당진 수상관광호텔 유사수신행위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6일 「[현장출동] 지자체·투자자 농락한 유사수신」 제하의 보도에서 충남 당진군이 지원하고 있는 수상관광호텔 사업이 투자업체 대표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돼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보도했으나, 사업시행사인 H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H사는 투자업체 O사의 유사수신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신청인으로부터 2인 모두의 무혐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기상정보 전)에 보도하되, 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이 나오도록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 기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4대강 정비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과속 말라" 4대강 사업 제동 건 MB』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일자 1면)
내 용 : '토목공사론(論)'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하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애착을 갖는 임기 내 우선 사업이다. 그런 역점 사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셈인데, 토목 공사 위주의 '속도전'

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시를 들은 정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고 서둘러 추진하면 (하천 살리기라는) 원래의 취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정부소식통들이 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는 8일로 예정됐던 '4대강 살리기 관계부처 합동보고회'를 무기 연기시켰다.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을 5월 말까지 완성한다는 계획도 7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하천 생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내걸었는데, 후자(後者) 쪽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토목공사 식의 정비를 원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진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토목 공사 위주로 앞만 보고 달리는 식으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여론) 비난으로 국정(國政)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최근 여러 경로로 이 대통령에 전달됐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기 연기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는 이 대통령이 3개 위원회(국가균형발전·국가건축정책·녹색성장위원회)와 4개 부처(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첫 종합보고를 받으려는 자리였다. 한 관계자는 "좀 더 준비하고 충분히 검토한 뒤 보고를 받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과속 말라" 4대강 사업 제동 건 MB'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3일자 1면에 '"과속 말라" 4대강 사업 제동 건 MB'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하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으며, 4월 8일로 예정되었던 관계부처 합동보고회를 무기 연기시켰고, 마스터플랜도 당초 5월에서 7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부처 합동보고회는 일정조정 관계로 일시 연기되었으나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마스터플랜도 당초 일정대로 5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닷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5일 사회면)

내 용 : 위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를 개최했고, 마스터플랜도 당초 일정대로 5월 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제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삼광개발(주)
(대표이사 김○ ○, 박○ ○)
피신청인 : 제주의소리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주의소리 : 『"오리엔탈호텔, 외주 용역화 위해 15명 정리해고"』 제하의 기사(2009년 3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제주오리엔탈호텔이 시설팀 15명을 정리해고 통지한 가운데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호텔 측은 직원 15명을 해고하며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 측이 더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리엔탈호텔 노동조합(위원장 김○○)은 11일 오후 5시 제주시 삼도동 호텔 앞에서 '정리해고 분쇄! 노동조합 사수!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가 이날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호텔 측이 지난 2월 20일 시설팀 직원 15명을 4월 22일까지 정리해고 한다는 통지를 했기 때문.

시설팀에는 팀장과 차석을 제외하고 노조 조합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호텔 측이 본격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조합 죽이기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호텔이 경영상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회피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며 "노조는 경영상의 이유라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호텔 측이 용역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호텔 측은 노조를 음해하고 파괴하려고 앞잡이를 내세우고, 경영에서는 무책임과 무능력을 보이더니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리해고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투쟁 결의문에서 "시설팀 외주화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노동, 사회단체와 연대해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호텔 측은 이날 노조의 결의대회에 소음 측정기를 동원해 확성기 데시벨을 쟀고, 총무팀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채증하기도 했다. 또한 호텔 앞에서 집회를 막기 위해 위장 집회신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주오리엔탈호텔 시설팀 외주화 15명 정리해고 통보" 사실과 달라 (또는 제주오리엔탈호텔 시설팀 외주화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3월 11일자 사회면에 "오리엔탈호텔, 외주 용역화 위해 15명 정리해고"라는 제목 아래 "호텔 측이 직원 15명을 해고하며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오리엔탈호텔은 기업경영구조개선 작업 중 시설팀 외주화를 노동조합에 통보하며 성실히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양 당사자 간 의견의 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며 회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조와 성실히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의 기사내용을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제주오리엔탈호텔, 15명 '정리해고 통보' 사실과 달라

• 본 문 : 〈제주의소리〉가 지난 3월 11일 보도한 '오리엔탈호텔, 외주용역화 위해 15명 정리해고' 제하의 기사에서 "호텔 측이 직원 15명을 해고하며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오리엔탈호텔 측이 지난 2월 20일 노조 측에 통보한 내용은 해고통보가 아닌 경영난으로 인해 시설팀의 업무를 외주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문자메시지가 아닌 문서로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제주의소리 메인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상위 10번째 이내에 2009. 4. 21.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되, 제목 활자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의 제목 및 본문과 각각 같게 한다. 그 이후에는 뉴스란에 계속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관련 정정보도 사실과 신청인 호텔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내용을 담아 피신청인 대표 명의의 공문서를 2009년 4월 23일까지 발송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조정대상 기사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의소리 : 『제주오리엔탈호텔, 15명 '정리해고 통보'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1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고액 그룹과외를 권유하는 듯한 신청인의 음성과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현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추적60분」 프로그램 『대한민국 스타강사들-이래서 사교육이다』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22일 22:00)

내 용 : (전략)

▷진행자 : 지난 달 통계청은 사교육비 월평균 23만 원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치동 일반가정에서는 사교육비로 보통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 걸까?

현재 외고 3학년 자녀를 둔 최모 씨의 가계부. 수학, 영어, 국어 과목은 기본, 방학 때마다 논술과 사회탐구를 학원에서 보충하고 특히 취약한 수학은 개인과외를 시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만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일년치를 계산했을 때, 약 3천 6백만 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최씨는 수능시험 막바지에 고액 과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중략)

▷진행자 : 대치동과 함께 유명 학원이 많기로 소문난 목동. 이곳 엄마들 역시 학원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평균 서너 개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낸 엄마들 가운데는 그 경험을 이용해 사교육시장에 나와 입시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진행자 : 이곳에서는 1년 치 학업스케줄을 짜주고 학원이나 강사를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현장음 : 선생님 소개시켜 주고? 원하면요. 저흰 그걸로 인해서 커미션을 받거나 오해받는 게 싫어서.

▷진행자 : 최근에는 특목고 열풍이 몰아닥쳐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엄마들도 인깁니다. 이 학원은 외고생 아이를 둔 엄마가 상담실장으로 있습니다.

▷여 : 실장님 자녀분도 대원 갔다고요?

▷실장 : **에 갔다가 대원을 갔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최대한 따로 개인적으로 올려놓고 수학은 놓치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기본을 가져가는 거예요.

▷진행자 : 그녀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시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는 고액의 그룹과외를 추천했습니다.

▷실장 :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과목당)200, 200, 200, 600(만 원) 정도는 한 달 값(교사월급)이 된단 말이에요. 열 명씩 모아가지고 팔십만 원 백만 원 정도

▷진행자 : 특목고 열망이 강한 엄마라면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육개혁시리즈 '대한민국 스타강사들-이래서 사교육이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자 '대한민국 스타강사-이래서 사교육이다' 방송 내용 중 모 입시컨설팅학원 및 상담실장을 방송함에 있어서 몰래카메라로 학원 및 실장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하였으며, '고액 그룹과외를 추천했다'는 부분 역시 출연자의 생각이나 실제 발언과는 전혀 달리 제작진의 의도대로 방송되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에 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학원 관계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 '대한민국 스타강사-이래서 사교육이다' 제하의 보도에서 입시컨설팅학원의 모 상담실장이 고액 그룹과외를 추천하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 상담실장은 고액 그룹과외를 추천하지 않았으며, 내용 중 일부가 동의없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방송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24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추적60분〉 프로그램의 말미에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추적60분」 프로그램 (2009년 4월 24일 22: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故 장자연의 소속사 사장 비서였던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장자연과 술자리' 인터넷 언론사 대표 곧 소환』 제하의 보도(2009년 3월 26일 20:00)
내 용 : 고 장자연 씨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받으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자살경위를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연예인 등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술접대 자리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장씨의 문건이나 유족들의 고소장에 등장하진 않지만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고 장자연 씨 소속사 관계자 : (자연이와 다른 여배우) 둘이 같이 왔어요. 밤에 왔다 가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3층에 파티했던 흔적들이 있었으니까.

경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장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6건의 녹음기록을 분석한 경찰은 장씨가 소속사 대표 김씨로부터 협박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경기도경찰청 강력계장 : '죽이겠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예활동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경찰의 판단이고.

어제(26일) 10시간의 경찰조사를 받은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는 문건의 원본과 복사본을 합쳐 18장만 만들었다던 기존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초본을 7장 만들었고, 그 가운데 완성본 4장을 수차례 복사했다는 겁니다.

또 문건을 본 사람은 유씨 본인과 유가족 2명, 기자 3명, 장씨의 코디 등 7명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건 유출과정에 대한 유씨의 진술과 그동안의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09년 4월 30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사과한다.

저희 SBS-TV가 지난 3월 26일, 27일에 보도한 뉴스에서 신○○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방송함으로써 신○○ 씨에게 심적인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보도를 하게 될 경우 더욱 세심하게 주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료를 무단 도용한 것과 관련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바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 고 ○ ○)
피신청인 : 뚝배기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뚝배기 : 『잘 되는 음식점과 안 되는 음식점』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호 28~29면)

내 용 : 우리는 지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던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최근에 중소기업청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많은 음식점을 방문하여 그곳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직접 그 점포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 많은 점포에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식점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열쇠는 바로 자신이다. 정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 및 사과문

• 내 용 : 본회에서 발행하는 지난 1월호 뚝배기에 '잘 되는 음식점과 안 되는 음식점'이라는 제목의 지상강좌(필자 : 강병남 교수)를 28~29p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인 강병남 교수가 원고내용 중에 삽입한 도표이미지 두 컷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한국외식정보(주) 박형희 대표이사의 강의자료 이미지 원본을 그대로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회는 미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필자의 원고를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원작자인 박형희 대표이사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타인의 원고를 도용해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필자에 대해서는 필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원작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신청인 학교 교장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순천선혜학교 (교장 강 ○ ○)
피신청인 : 호남교육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호남교육신문 : 『"못 말리는 순천 선혜학교"』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3면)
내 용 : 특수학교인 순천 선혜학교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 수령은 물론 학생야영활동 책임자가 버젓이 음주를 하는 등 비위의혹이 제기돼 전남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순천 선혜학교에 근무했던 한 교사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6년도부터 장기결석학생 처리가 문제가 됐다"면서 "2008년도 1학기 때 장기결석한 학생들의 성적이 1학기 말에 가서야 결석 처리되기도 하는 등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장기결석 학생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유예 및 정원외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학교 교장은 지난 2008년 5월 19일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와 일괄 출장계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갑자기 치과 치료 상황(틀니훼손)이 발생해 현지에 출장을 가지 못했다"며 "당일 경황이 없어 출장 승인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3박 4일 출장에 하루에 1만 원씩을 지급받았지만 현재(2009년 3월 23일)까지 반환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못 말리는 순천 선혜학교" 보도된 내용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31일자 사회면에 "못 말리는 순천 선혜학교"라는 제목과 "출장비 부당 수령. 학생야영활동 책임자 음주…전남교육청 감사 착수"라는 부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에서 허위로 보도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가. 3박 4일 출장은 1일 출장
나. 하루에 1만 원씩은 전체 1만 원
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 해 10월 '출장비를 허위 수령' - 전임 행정실장의 출장비 허위 수령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31일자 사회면 및 인

터넷판 "못 말리는 순천 선혜학교" 제하의 기사에서 이 학교 교장은 지난 2008년 5월 19일 함평나비곤충엑스포 현장체험 학습과 관련, 3박 4일 출장에 하루 1만 원씩 출장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실제 출장일은 3박 4일이 아닌 1일이었으며, 당시 개인사정으로 현지출장을 가지 못해 1만 원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 '출장비 허위수령'(본지 2008년 10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보도는 교장이 아닌 전임 행정실장의 출장비 허위수령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장기결석한 학생들의 성적처리와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학교 측은 규정에 맞게 결석학생들을 유급처리 하였으며, 2008년 3월 학생 사망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학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호남교육신문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출장비 부당수령…)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20일까지 7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호남교육 메인화면 톱기사 중앙 하단에 다섯 번째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출장비 부당수령…)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호남교육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0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기관이 해상초계기 구매 계약을 부적격 업체와 체결했다고 보도했으나, 감사원 조사 결과 적법한 계약이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방위사업청 (청장 변 무 근)
피신청인 : 위클리경향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위클리경향 : (1) 『1300억 해상 초계기 사업 의혹 있다』 제하의 기사(2009년 1월 13일자 46면~47면)

내 용 : 방위사업청이 해양경찰청(해경)에서 위탁받아 해상초계기를 선정한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애초 해경이 요구한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뿐더러 입찰 당시 유효한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 · TC)도 제출하지 못했고, 게다가 최근 납품 실적마저 불투명한 업체의 항공기를 선정했다는 주장으로, 한마디로 무자격 항공기를 선정했다는 의혹이다.

방위사업청은 해경에서 위탁받아 추진해온 항공기 구매사업을 인도네시아 PTDi사의 CN235-110 기종으로 최종 계약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CN235-110기 4대는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조업 감시, 테러 대응, 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임무 등에 투입할 계획.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500만 달러(약 330억

원)로 탑승 인원은 8명, 항속거리는 1980㎞에 이르며 보통 8~10시간 동안 해상 초계임무를 수행한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1995년 인증서로 2009년에 납품?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지난해 7월 17일부터 해경에서 위탁받아 추진했으며, 해경의 전력화 시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추진했고, 공개 입찰 결과 5개 업체가 응찰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의 PTDi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주간의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계약한 CN235-110 기종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R/D, 열상장비 등 최신의 장비를 장착하는 등 해경이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항공기, 장비, 무기 등을 구입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현재 운용 중인 국가 현황, 최근 판매 실적, 차후 수리 부속 및 지원 장비 가능 여부, 제작사의 재정 및 신용도 등인데 이번에 선정한 CN235-110기는 이 조건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하려는 항공기의 형식은 입찰 시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럽연합안전기구(EASA)가 발행한 형식증명서(TC)가 있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PTDi사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서류 전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성적증명서도 내지 않은 사람이 최종 채용된 꼴이라는 주장이다.

해경은 2005년 해상초계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효한 항공기 형식 증명을 입찰의 필수 제출 서류로 명시해왔다. 구매 제안요청서에 나타나 있듯이 입찰 당시 유효한 TC를 보유하지 않으면 기술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CN235-110기는 조종석 계기판에 주요 계기변경 등에 대한 유효한 TC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조○○ 공보장교(소령)는 "CN235-110 기종은 1995년 EASA의 전신인 JAA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있고, 항공기의 기본 포맷이 바뀌지 않는 이상 최초 인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인도네시아 PTDi사는 1995년 당시 TC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EASA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PTDi사는 이전에 형식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던 IPTN사의 현재 이름으로, 1995년 JAA 허가 이후 유럽연합에 등록된 CN235-110 항공기는 전무하다'는 내용의 EASA 측 답변서를 제시하며, 방위사업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방사청, 선정 근거 공개 요구엔 '불가'

디지털 LCD 조종 계기판 장착 여부도 문제다. 해경이 방위사업청에 제시한 구매 제안요청서를 보면 항공기 시스템 부문에 "전자식 디지털 계기방식의 LCD Type 조종 주 전시기(PPD) 2조와 다기능 전시기(MFD) 1기 이상 장착, 항법장비와 임무장비는 연동되어 수색 임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CN235-110기는 1996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항공기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항공기에 디지털 LCD계기판을 장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CN235-110 항공기의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PTDi사가 추후에 계기판을 디지털 LCD 방식으로 개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입찰 당시 유효한 TC 보유를 요구하는 해경의 조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후략)

(2) 『해상초계기 선정 의혹 '진실게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7일자 42~43면)

내 용 : (전략)

올해 초 본지가 방위사업청(방사청)의 해상초계기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808호·1월 13일자)한 이후 방사청이 여전히 말을 바꾸는 등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해경이 구매를 위탁해 방사청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해상초계기는 인도네시아 PTDi사의 CN235-110 기종으로,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를 도입한다. 가격은 1억 달러, 약 1300억원이다. 하지만 이 기종의 국내 보유 사실과 디지털 LCD 계기판의 중요성 여부, 구매 요청자인 해경의 어정쩡한 태도 탓에 의혹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중략)

한편 이번 해상초계기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로 방사청은 내부 옴부즈맨을 신청해 진행 중

이며, 감사원 감사관실에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해상초계기 사업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는 1월 13일자(제808호) "1300억 해상 초계기 사업 의혹 있다"와 2월 17일자(제812호) "해상초계기 선정 의혹 진실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방위사업청이 해양경찰청 항공기 위탁구매 사업 추진 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해양 경찰청 항공기 위탁구매 사업 추진 간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원 위탁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 음-

• 「인도네시아 PTDi社 가 제안한 CN-235-110 항공기의 형식증명(TC)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한 위탁 조사 결과, 위 형식증명(TC)의 인증기관인 유럽연합항공안전기구(EASA)의 관련 규정 및 EASA의 공식 답변 문서를 통해 CN-235-110 항공기 형식증명(TC)의 보유 및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N-235-110 항공기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경청의 제안요청서(디지털 LCD Type)를 만족하지 못하며 개조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은 유효한 형식증명(TC)을 요구하는 제안 요청서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관련 규정(EASA규정, 국토해양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국내 항공인증절차 등)을 확인한 결과 '디지털 LCD 조종석 계기판'은 해양 경찰청의 요구대로 개조한 후에 부가형식증명(STC)을 받는 장비로 입찰시 제출하는 항공기 형식증명(TC)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방위사업청
청장 변 무 근
조정대리인 국제계약부장 윤 ○ ○
법무관 송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이 영 만
조정대리인 위클리경향 편집장 원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5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위클리경향〉 독자의 소리면 혹은 특집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위클리경향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하는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7.

〈별 지〉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1월 13일자(제808호) "1300억 해상 초계기 사업 의혹 있다"와 2월 17일자(제812호) "해상초계기 선정 의혹 진실게임" 보도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해양경찰청 위탁구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위클리경향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9일자 11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 내용 참조〉 □

전주 기전대 학장 직위해제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과반수 찬성으로 적법하게 통과되었다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윤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전주KBS-1TV : 「TV패트롤 무허가」 프로그램 『K대학 이사회 파행논란』 제하의 보도(2009년 3월 13일 19:30)
내 용 : 〈2009전북중재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3월 13일자 방송된 무허가 'K대학 이사회 파행논란'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달라(또는 전주기전대학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3일 저녁 7시부터 "'K대학 이사회 파행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전주기전대학이 학장 및 이사장 해임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박○○ 교수와 김○○ 씨가 언급한 다음의 사항을 바로잡습니다.

1. 박○○ 교수 진술부분

"이사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학장 직위해제를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학교 정관을 보면 이사 정족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가 8명인데 찬성을 하려면 그게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이사장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찬성을 않게 주셨어요. 그래서 찬성을 5표만 확보를 한 거에요."

1) 본 대학 정관 44조 ①항을 살펴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박○○ 교수가 언급한 직위해제와 해임에 대한 의결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대학 정관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장의 직위해제는 과반수의 찬성인 5인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사장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 이사장을 먼저 해임한 것으로 몰고 간 것처럼 여론을 유도한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장의 직위해제에 필요한 이사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 것이며, 해임은 이사 정족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김○○ 사회자 진술 부분

"학장을 직위해제 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이사, 즉 기전대학 8명의 이사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의결을 했으니 요건은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기전대학 총장실에서 이사들을 기다렸던 세 명의 이사들은 새로 뽑혔다는 이사장은 사실상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산에서 열린 이사회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학장이 학장 대행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전 학장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직위해제에 대한 이사 정족수 사실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직위해제를 위해서는 3분의 2인 이사 6인이 아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 5인 것입니다(사립학교법 제18조 참조).

2) 또한 일산 이사회에서 부학장이 학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사실을 마치 전 학장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설사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법과 질서에 따라 진행될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확실치 않고 예 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 뒤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의 말만 듣고 바로 뭐가 진행될 것처럼 보도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략)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윤 ○ ○
조정대리인 조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전주KBS-1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이 병 순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전주KBS-1TV, 'TV 패트롤 무허가'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하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별 지〉

• 제 목 : 전주기전대학 이사회 관련 반론
• 본 문 : 지난 3월 13일「K대학 이사회 파행논란」제목의 방송과 관련하여, 전주기독학원은 "정관에는 학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학장의 직위해제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 된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농약제조 기술을 빼돌려 검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대전중재2 참조)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근무 회사기술 빼돌린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31일 농약 생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친환경 농약제조 핵심기술을 빼돌린 B사 전직 연구원 문모 씨(37)와 생산담당자 2명을 부정경쟁 방지 등에 관한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기술을 이용,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D사 대표 박모(48) 씨와 판매담당자 2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004년 대덕특구 내 친환경 농약 제조, 생산 벤처기업인 B사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 친환경농약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알아낸 제품의 핵심 제조기술을 당시 친환경농자재 수입업자이던 박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해 B사에서 퇴사한 문씨 등과 함께 충북 충주에 동종업체인 D사를 설립,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사는 핵심기술 유출로 인해 130억여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문씨가 기술을 유출하면서 받은 댓가 등에 관해 더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근무 회사 기밀 빼돌린 일당 검거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31일자 사회면에 『근무 회사 기밀 빼돌린 일당 검거』라는 제목으로 박모 씨와 문모 씨 등이 마치 이미 무슨 불법을 저지른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였고, 그리고 이미 잘못이 있어서 검거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누구도 검거된 것이 아니고, 단지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저희는 경찰에 가서 저희가 기술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저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일당"도 아니고 "검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확인 결과, (주)두○○ 및 박모 씨는 충주에서 적법하게 비료 생산업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농약제조 기술을 빼돌려 검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TJB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TJB : 「8시뉴스」 프로그램 『회사기술 빼돌린 연구원 3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 20:30)
내 용 : 〈2009대전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포항시가 시장과 신청인 업체 대표의 친분 때문에 신청인 업체와 경로당 난방공사를 체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에셀이앤씨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경북제일신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북제일신보 : 『경로당 난방공사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6일자 11면)
내 용 : 포항시가 관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경로당 난방 시설을 설치하면서 박승호 시장과 친분 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

으로 밀어 붙이고 있어 큰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박승호 시장 선거 당시 캠프에서 일을 도왔던 S모 씨가 자신과 절친한 J모 씨를 박시장에게 소개하여 경로당 바닥 난방에 비해 비싼데다 난방능력과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찜질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를 주기위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가 노인들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근본 취지는 좋지만 추진 과정에 예산 낭비 등 실용성에 문제가 적지 않아 재검토 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당초 난방 시설을 도시가스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돌연 시설 업종을 변경해 J씨와 수의 계약을 맺어 찜질기를 설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관내 경로당 수는 모두 536여개.

난방 설비 시설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20여억 원에 달하는데 당초 노인들이 기거하는 경로당이라 바닥 난방이 뛰어나는 설비가 우선이지만 돌연 값비싼 찜질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변경을 하여 수의계약을 맺는 단계에 있다는 것.

더욱이 설비 시설을 돌연 변경한 것이나 설치하는 찜질기 성능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활용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할 수 없는 마당에 신생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시정 운영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가스업체가 바닥 난방을 위주로 시공 할 경우 30여평 당 기준으로 설비 시공비가 250여만 원(단 벽지, 오지 지역 제외)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J씨가 수의계약으로 시공하려는 찜질기는 2~9평 기준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찜질기로는 바닥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난방을 신규로 해야 할 경우 몇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전기 찜질기 업체 E사가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평~9평까지 적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포항지역의 경로당 평균 평수가 10~40여평에 달해 설비 자체가 경로당 평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전기 찜질기는 측면 난방으로 바닥 난방에 비해 난방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성인의 경우 생식장애, 뇌종양, 심장병, 신경통 등을 유발하므로 노인들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로당 난방공사 특혜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11면에 "경로당 난방공사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포항시 경로당 난방시설공사에 포항시장과 친분관계인 J모 씨 E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특혜의혹이 있으며, 바닥난방에 비해 난방능력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측면전기 찜질기로써 기준가격이 가스난방보다 두배 이상 비싸고 설비자체가 경로당 평수에 맞지 않으며,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J모 씨는 포항시장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없어 특혜가 아니며, 찜질기가 측면난방이지만 바닥난방을 겸하고 있어 난방능력이 뛰어나고 가격도 가스난방에 비해 비싸지 않고 설비가 경로당 평수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전자파 발생은 거의 없으므로 성인병 유발위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로당 난방공사 특혜관련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11면에 "경로당 난방공사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포항시 경로당 난방시설공사가 포항시장과 친분관계인 J모 씨 E사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특혜의혹이 있으며, 바닥난방에 비해 난방능력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측면전기 찜질기로써 기준가격이 가스난방보다 두배이상 비싸고 설비자체가 경로당 평수에 맞지 않으며,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포항시가 E사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E사의 찜질기의 성능에 관한 내용은 모두 정확하지 못한 기사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북제일신보 4월 20일자 11면에 상자기사로 하며 활자의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으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북제일신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0일자 1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 (국회의원)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盧 사업'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자 1면)

내 용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자금이 퇴임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관련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자금이 노 전 대통령이 구상한 퇴임 후 사업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른바 '노무현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략)

검찰은 또 김무성 의원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1일자 "'盧 사업' 수사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김 의원이 박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무성 의원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검찰 수사 내용 역시 보도된 바와 달리 김 의원의 무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무성 의원이 받은 자금에 대해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김무성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향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림〉

• 내 용 : 본지 2009년 4월 1일자 '김무성 의원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수사 결과 김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문화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 (국회의원)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제신문 : (1) 『김무성·권경석 의원도 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1면)

내 용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나라당 김무성(부산 남구을)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내역을 지역 선관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에 조카사위의 계좌로 500만 달러를 입금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뒤따르는 등 '박연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허태열 최고위원에 이어 '설'로만 떠돌던 김, 권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지역 정가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드러나면 임시국회 회기 전인 31일 중 해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 『사법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 가능성 지역 정가 여야·계파 없이 공멸 위기감』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3면)

내 용 : '박연차 리스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에 이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김무성(부산 남구을)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부산·경남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지역 정가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허, 김 의원은 한나라당 내 친박계 핵심이라는 점에서 친박 진영의 긴장감도 더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김무성 의원 무혐의
• 본 문 : 본지 2009년 3월 31일자 '박연차 회장의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 의원에 대한 후원금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사법처리를 위한 최종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후원금 내역을 살펴보았으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9년 4월 27일까지 국제신문 3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사법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 가능성")과 같은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신문 : 『김무성 의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지 '미디어워치'를 비방하는 진중권 교수의 진보신당 게시판 글을 인용·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변 희 재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진중권 "변희재 행동대장 불과, 윗선들 잡아야겠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난달 창간된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에 대해 "한 번에 몇 천 부씩 찍어 뿌려대려면 적잖은 돈이 들 텐데, 그 돈은 어디서 융통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진 교수는 10일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추부길 '아우어뉴스'"란 제목의 글에서 추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과 관련 "몇 달만에 2억 원을 생활비로 쓸 수는 없다, 내가 추 측했던 대로 그 돈의 일부는 '아우어뉴스'로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나머지는 추부길이 만든 연구소의 후원금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 연구소란 아마도 대운하 관련된 단체들일 것이다"며 "'아우어뉴스'가 진중권이 30억 횡령했다는 기사를 실었을 때, 성명서를 내며 진중권을 질타하던 두 단체는 대운하 관련 단체였고, 그 배후에는 추부길과 청와대 1기 애들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겨냥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변듣보(진 교수가 변 대표를 비하해 하는 말. '듣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변희재'란 의미=편집자주)가 만들고 있는 '미디어워치'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다"며 "한 번에 몇 천 부씩 찍어 뿌려대려면 적잖은 돈이 들 텐데, 그 돈은 어디서 융통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자금 출처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 교수는 또 "듣자 하니 창간호인가 어딘가에서는 조중동이 특별히 광고를 실어주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지, 조중동에서 이 듣보잡 매체에 매번 광고를 실어주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다"며 "발행부수 200만 부의 매체가 고작 7000부짜리 매체에 광고를 실어 자신을 홍보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아니다"고 보수 매체에서 변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진 교수는 "추부길의 경우, 몸값이 있어 정부기

관 광고들 이리저리 끌어올 수 있었지만, 변듣보가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될 텐데…"라며 "기자들 봉급은 주는지, 봉급을 준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거듭 의문점을 지적했다.

"향후 라인업이 갖춰지면 월 5000만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변 대표의 언급을 지적하며 진 교수는 "도대체 만 부 찍어서 어떻게 매출 5000만 원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매우 석연찮은 대목이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권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SF 소설이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진 교수는 한편 자신의 30억 횡령설 보도와 관련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다"며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찾다 보니, 변듣보와 추부길이 '미디어워치'를 위해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한다, 둘이 굳게 손 잡고 호기 있게 터뜨린 것이 진중권 30억 횡령설이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근데 그 야심작이 헛발질로 드러났으니, 변듣보의 앞날도 앞으로 순탄하지만은 않겠다"며 "변듣보와 추부길의 관계는 이미 드러났고, 앞으로 변듣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이것들 진하게 한 번 손을 봐줘야겠다"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의구심을 보였다.

진 교수는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 X들을 잡아야 한다"며 "당내 생태주의 동지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다, 귀찮아서 살 수가 있어야지…."라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본 문 :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지난 4월 11일 진중권 씨의 진보신당 게시판의 글을 전문 인용한 바 있으나 변희재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변희재 씨의 글을 게재합니다.

「진중권 씨의 글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미디어워치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고,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한다고 비판하였으나 저는 매체를 창간하여 망하기를 반복한 적이 없으며, 제가 창간에 참여한 매체는 인터넷신문 대자보, 웹진 서프라이즈,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 인터넷신문 빅뉴스입니다. 이들 매체에서 저는 편집장을 맡았고, 훌륭히 안착시켜 모두 현재까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대표를 맡은 인터넷신문 빅뉴스는 여전히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발행부수 200만 부의 매체가 7천 부짜리 매체에 광고를 싣는 것은 합리적 경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주간미디어워치는 전체 언론사와 기업과 관공서 홍보실에 들어가는 전문매체이며, 대중매체인 조선, 중앙, 동아와 달리 미디어와 홍보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200만 부의 매체가 7천 부의 매체에 광고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저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선, 중앙, 동아가 저희 매체에 광고한 것이 '합리적 경제행위가 아니라' 단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만 부를 찍어 매출 5천만 원을 거두겠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1년 정기독자로 저희는 5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1만부를 찍는다면 연간 5억 원이 들어오고, 이 정기구독 수익만으로도 한달에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문가들 유료독자 1만 명을 모을 수 있는 매체라면 얼마든지 월 1천만 원이 아닌 월 5천만 원어치 광고도 가능합니다.

정기구독자 계산만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음에도, '정치권과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SF소설'이라 단정지은 것은 저희 매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넷째, 30억 횡령성 유포가 저와 추부길 간의 공모로 이루어졌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결고리가 있고,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 저희는 이미 진중권 씨와 한예종의 30억대 부실사업 취재가 한예종 학생이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 제보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습

니다. 또한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이 기초 취재를 하여 이를 회원사인 아우어뉴스와 뉴데일리 측에 넘겨주어 보강취재 및 기사화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다섯째, '변듣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이것들 진하게 한 번 손을 봐줘야겠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저희는 취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고, 저는 제보를 받은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취재하여 기사화했을 뿐입니다.

또한 80년대 좌파 학생운동을 한 후 전향해서 좌파 척결 운동을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94학번으로서 80년대 좌파운동을 한 경력이 없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뉴스서비스를 재개하는 경우 위 보도문을 3일 이내에 게시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일하던 매장에서 9백여만원을 훔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분을 특정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매장 그만두던 날 970여만 원 '슬쩍'』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8일 10:01)

내 용 : 매장 그만두던 날 970여만 원 '슬쩍'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일하던 매장을 그만두면서 900여만 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울산 남구 ○○동 한 대형할인점 내 ○○매장 계산대 서랍장에서 통장을 훔쳐 90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9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5년간 이 매장에서 근무했으며 범행 당일 매장을 그만둔 뒤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

신청인이 일본에서 이건희 회장을 만나 중앙일보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홍 석 현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21 : 『이재용 · 홍석현 만난 배경 설왕설래』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6일자 95면)

내 용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잇따라 해외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굳이 해외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미국과 일본을 다녀왔다. 지난 2007년 말 '삼성특검' 이후 해외 방문을 중단하고 국내에만 머물러왔던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미국에서 이재용 전무를 만났다. 이재용 전무의 이혼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이재용 전무도 귀국(3월 17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굳이 미국에서 만날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부인 홍라희 씨도 동행했다. 일단은 이혼의 상처를 입은 큰아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추 측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후계 구도 문제와 관련한 말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회장은 3월 15일 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왔다. 홍석현 회장이 이에 맞춰 16일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건희 전 회장과 홍석현 회장의 회동은 도쿄에서 이뤄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의 판형 변경과 윤전기 도입 이후 달라진 경영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홍석현 회장이 이끌고 있는 보광그룹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일본에서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건희 전 회장 부부 3월 미 · 일 방문, 이재용 · 홍석현 만난 배경 설왕설래』 제하의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가 지난 4월 6일자에 『이건희 전 회장 부부 3월 미 · 일 방문, 이재용 · 홍석현 만난 배경 설왕설래』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일본에서 만나 중앙일보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보광그룹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일본 방문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보도를 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제754호 95쪽 "이건희 전 회장 부부 3월 미 · 일 방문, 이재용 · 홍석현 만난 배경 설왕설래"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중앙일보 쪽에서는 홍석현 회장이 일본 방문시 이건희 전 회장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 왔으며, 현재까지 취재원 이외에는 두 사람의 일본 내에서의 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한겨레21〉의 「독자와 함께」 코너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21〉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독자와 함께」 코너의 통상적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4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2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송고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1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를 받은 백두산 광천수 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상선워터스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신문 : 『200억 투입 군인공제회 '백두산 물사업' 그 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5일자 14~15면)

내 용 : 군인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 천연 광천수 사업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7년 한 개인사업자와 손잡고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서 나오는 백두산 물사업에 20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 당시 군인공제회는 '베이징올림픽에 맞춰 백두산 광천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중간에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각종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유전사업처럼 이번 물사업도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업을 제안한 S사의 김 아무개 회장과 군인공제회 조영호 전 이사장의 친분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잇따른 잡음이 일면서 결국 군인공제회는 이 사안을 포함한 몇몇 사업에 대해 3월 6일까지 약 3주 동안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에서 한 기관을 상대로 특별감사팀까지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인공제회의 백두산 물사업이 구설수에 오른 내막을 쫓아가봤다.

군인공제회의 백두산 천연 광천수 사업은 중소기업인 S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S사의 김 아무개 회장은 광천수 사업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중국 중앙정부 및 길림성 지역 정부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중략)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김 회장은 군인공제회 측에 사업을 제안했다. 군인공제회도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농심, 굿모닝신한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략)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변수가 생겼다.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철골 등 원자재 값이 크게 상승한 것. 그러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결국 애초 시판 목표시기로 잡았던 베이징올림픽에 맞출 수 없게 됐다. 결국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야 공장설립이 재개됐고 아직까지 광천수는 시판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광천수 시판과는 관계없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S사는 김회장이 오랫동안 백두산 물사업에 관심을 보여 왔고, 실제 백두산 광천수에 대한 채광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조그마한 건설사였다.

설사 군인공제회가 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연기금 특성상 사업성만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군인공제회 측은 "백두산 물이야 세계가 인정하는 물이고 중국 정부와 길림성 정부가 내준 채광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했다"고 말했다.

그렇다해도 군인공제회가 유상증자를 참여할 당시 액면가 5,000원이던 S사 주식을 70배에 이르는 가격에 사들인 것은 의문이다. S사의 2007년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돈의 흐름도 석연치 않다. S사는 2007년 11월 말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 곧바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다.

재무제표 비유동성 자산 부분을 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란에 10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그것. 군인공제회 측은 S사 해외법인에 이

돈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S사는 채광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일종의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군인공제회나 S사는 이를 '관시문화'라고 표현했다. 중국어로 '관시문화'란 '경쟁의 상황에서 남들이 쓰지 않는 반칙을 사용해 부적절하게 이권을 획득하는 관용어'를 말한다. 결국 투자금 중 일부가 어디로 샜다면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09년 4월 5일자 14면, 15면에서 "200억 투입 군인공제회 '백두산 물사업' 그 후", "공장 건립에 16개월 아직도 '샘' 파는 중?"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상선워터스(원 보도문에서 'S사'로 표현)가 군인공제회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고, 스스로 '관시문화'라는 표현을 쓰며, 주식회사 상선워터스가 중국 정부로부터 채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일종의 로비를 하고, 실제 이 사업의 실체가 없으며, 군인공제회의 조○○ 전 이사장과 주식회사 상선워터스의 김○○ 회장(원 보도문에서 '김회장'으로 표현)의 친분관계를 지적하며, 마치 군인공제회의 주식회사 상선워터스에 대한 투자가 비합법적인 것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 회장이 백두산 광천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식회사 상선워터스는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상선워터스의 중국 현지 법인에 출자하였으며, 스스로 '관시문화'라는 표현을 한 바가 없고,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전혀 로비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업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고, 조○○ 전 이사장과 김○○ 회장과는 투자자의 관계일 뿐이고, 군인공제회의 주식회사 상선워터스에 대한 투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제881호(4월 5일자) 14~15페이지 「200억 투입 군인공제회 '백두산 물사업' 그 후」 제하의 기사와 관련, S사는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S사의 중국 현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S사는 채광권취득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불법 로비를 한 바가 없고, 군인공제회의 투자결정이 S사 김 회장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며, 국내 시판계획은 전혀 없고, 현지 공장의 신축이 늦어지는 것은 오지인 관계로 공사 자재 및 장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4일 발행되는 〈일요신문〉 3면의 '목차' 바로 하단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중 [군인공제회 S사 "현지공장 완공 단계 현지서 판매 시작"]의 크기와 동일하게 하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일요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 내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고, 2009년 5월 4일 09:00부터 2009년 5월 11일 09:00까지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일요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제목을 '백두산 물사업'으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0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성폭행 민노총 간부가 소속사 노조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조합이 제명하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조선일보 : 『'性폭행' 민노총 간부, 소속사 노조 징계 안받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3일자 A10면)

내 용 : '민주노총 여조합원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김○○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구속중)이 아직 소속 회사인 기아차나 기아차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3~1995년 기아차 노조 화성공장 지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기아차의 평조합원이다.

12일 기아차 노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위원장 김종석)는 민주노총이 제명을 권고한 김씨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 집행부가 같은 파벌(국민파) 출신인 김씨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인 2월 6일 "해당 노조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계 절차를 밟아 조합원 제명 처리하도록 한다"고 지시를 내렸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2일 공개한 '성폭력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에선 "가해자(김○○)는 2009년 2월 13일 (기아차 노조에서) 제명 처리됐다"고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기아차 노조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씨는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이던 작년 12월 6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켜 준 전교조 조합원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폭행 민노총 간부 징계 안받아'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4월 13일자 사회면에 "'성폭행' 민노총 간부, 소속사 노조 징계 안받아"라는 제목으로 기아차 노조가 민주노총 성폭행 가해자를 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기아차지부가 소속되어있는 금속노조에서 2월 13일 성폭행 가해자를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기아차 노조집행부가 같은 파벌 출신인 김씨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는 기아차 노조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이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 ○
조정대리인 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14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 활자 크

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성폭행' 민노총 간부 관련 반론

2) 내 용 : 본지 2009년 4월 13일자 A10면 『'性폭행' 민노총 간부, 소속사 노조 징계 안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여조합원 성폭행 사건' 가해자 김○○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구속 중)이 소속 회사인 기아차와 기아차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기아차 지부가 사건 당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어 기아차 지부의 요청을 받아 김 전 위원장에 대해 2월 13일 제명 처리했으며 이는 소속 지부의 징계를 갈음한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7. □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부실 실태를 보도하면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신청인 센터의 간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인천시부평구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조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 끝나지 않은 보육전쟁』 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4일 23:00)

내 용 : 경기도에 사는 조규일 씨는, 30개월 된 딸을 둔 직장여성입니다.

딸 소민이를 키우는 데 가장 큰 힘이었던 친정어머니가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녀에겐 처음으로 아이 맡기는 문제가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략)

지난 해부터 질병이나 야근과 같은 긴급상황이나, 시간연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설보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저렴한 비용에, 아이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에 형진 엄마는 벌써 1년 가까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돌보미가 바뀐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옷도 하나도 안 갈아입고 어느 날 밥도 안 먹고 아기가 얼굴이 까만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발도 안 닦고. 그러니까 아기가 왜 이러고 있냐 물어보면 아기가 하기 싫어서, (아기가) 안 한다고 그랬다〉

최근에는, 이웃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도 접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요. 형진 엄마 그분 누구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기한테 너무 윽박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좀 보다가) 어머니의 동의로 지켜본 할머니의 행동은 사뭇 놀라웠습니다. 아이의 외투를 벗겨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지는가 싶더니.. 벗긴 바지로는 바닥을 대충 쓸고 또다시 던져놓습니다.

또 거실을 청소하는가 싶더니.. 한쪽 구석에 먼지를 몰아놓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아이돌보미 시설 실태 보도 중 언급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방송내용과 관련 없어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4일 11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끝나지 않은 보육전쟁' 편을 통해 아이 돌보미 지원 실태를 보도하면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료 화면을 사용했으나 해당 센터는 보도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해당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육아지원 활동은 학부모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의 내용과 관련 없는 영상을 사용해 염려를 끼친 점 센터 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본 문 : 지난 4월 4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끝나지 않은 보육전쟁' 편을 통해 아이 돌보미 지원 실태를 보도하면서 인천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료 화면을 사용했으나 해당 센터는 아이돌보미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내용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의 2009년 5월 2일에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말미에 진행자의 육성으로 보통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에는 위 보도문을 푸른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낭독 중에 계속하여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를 표명하는 내용과 신청인 기관의 자료화면과 아이 돌보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방송 후단의 내용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신청인 대표 명의의 공문을 신청인에게 2009년 4월 30일까지 발송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2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2006년 당시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학교 행정이 마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지부장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4.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대법원 판결에 힘 빠져요』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4일자 A3면)
내 용 : "학생들 취업 준비까지 막았던 노조 지도부를 다시 복직시키라는 대법원 판결에 힘이 빠집니다. 총장인 제가 재판부에 직접 탄원서까지 냈건만…."

한국외대 박철 총장은 23일 대법원 판결에 "허탈하다"고 했다. 2006년 4월부터 215일 간 파업으로 한국외대를 마비시켰던 노조 전 간부들을 복직시키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2006년 외대 노조가 학교 측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파업을 일으키면서 한국외대는 쓰레기로 뒤덮였다. 민주노총까지 가세한 파업이 이어지면서

도서관의 도서 대출·반납 업무가 마비됐다. 취업상담도 정지됐고, 1700여명의 학생은 여름방학이 한창인 8월까지도 1학기 장학금 25억 원을 못 받아 고통을 당했다. 용인캠퍼스 학생회 간부들은 그해 7월 말 용인캠퍼스 노조 사무실의 집기를 들어내고 강제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당시 박총장은 시종 '법과 원칙대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 명령서'를 발송, 결국 노조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노조와 조합원 15명이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일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한국외대 노조 전 간부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의기간 중 조합원에 대해 어떤 사유로도 징계·부서 이동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 학교의 옛 단체협약(제111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아무리 단체협약이 원칙에 어긋나도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취지였다. (후략)

(2) 『대학 무법(無法)천지 만든 노조와의 단체협약 꼭 지켜야 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A27면 사설)

내 용 : 외대 단체협약은 노조 극성 탓에 대학 측이 말썽 없게 좋게 지내자며 양보를 해 2004년 노조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협약엔 노조원 본인이 재직 중 사망하면 대학은 유족에게 2억 원의 조의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다. 외대 측은 이 조항에 합의해 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조의금을 지불하기 위한 보험까지 들어야 했다. 외대 단체협약은 대학 인사·징계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노조가 4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놓아 노조가 반대하면 대학이 인사와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외대노조 불법파업 보도 사실과 달라 (또는 외대노조 파업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뉴스초점면 [기자수첩]에 "대법원 판결에 힘 빠져요"라는 제목으로 (중략)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2006년 외대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단순히 학교 측이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고 노조가입 자격시비를 제기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종용 협박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협약체결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파업을 하였으며, 파업기간 중 노조 지도부가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막은 사실이 없고,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외대의 도서관 대출, 반납 업무는 마비되지 않았고, 취업상담이나 장학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들의 노력과 이를 존중한 당시 노조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외대노조의 파업은 이후 진행된 민,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그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더 이상 이견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합법적 파업이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단체협약이 원칙에 어긋나도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과 법규를 준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후략)

• 제 목 : 외대노조 파업 및 단체협약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또는 2006년 외대노동조합 파업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사설]에 "대학 무법(無法)천지 만든 노조와의 단체협약 꼭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중략)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06년 외대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중 불법적으로 대학업무를 마비시킨 바가 없었고, 당시 노조원 본인 사망 조의금이 2억 원이었다거나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돌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을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쓰레기장이 되거나 책 대출, 반납이 중단되어 도서관 기능이 마비된 바 없고, 기업의 취업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지부장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27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한국외대노조 파업 관련 정정 및 반론

2)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24일자 A3면 『[기자수첩] "대법원 판결에 힘빠져요"』 및 2월 25일자 A27면 『대학 無法 천지 만든 노조와의 단체협약 꼭 지켜야 하나』 제하의 각 보도에서 2006년 한국외대노조 파업 관련,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 본인 사망시 2억 원의 조의금 지급 조항이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결과 2004년 단체협약 상의 조의금 액수는 '5천만 원' 이었고, 2007년 단체협약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외대노조는, 조의금 증액은 학교 측이 먼제 제안해와 노조가 합의한 것이며, 2006년 파업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단행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합법적인 파업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8.

조정결정 이행결과

조선일보 : 『한국외대 노조파업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5일자 A14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콘돔과 수술용 장갑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사용되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유니더스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화장품 5종 판매 금지... 풍선·고무장갑·콘돔까지 '석면 공포'』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7일자 A8면)
내 용 : 지난 1일 베이비파우더에서 시작된 '석면 파동'이 갈수록 다른 제품으로 확대되며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일 "석면 함유 탈크로 만든 화장품은 ㈜로쎄앙의 화장품 5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판매 금지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개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데다 식약청의 향후 대책도 부실해 소비자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중략)

탈크는 화장품·약품 외에도 풍선·수술용 장갑·고무장갑·콘돔에까지 널리 쓰이고 있어 '석면 공포'는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콘돔 및 수술용 장갑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저희 조선일보에서는 지난 4월 7일 〈화장품 5종 판매 금지…풍선·고무장갑·콘돔까지 '석면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탈크는 화장품·약품 외에도 풍선·수술용 장갑·고무장갑·콘돔에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보도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라 바로잡습니다. 국내 콘돔 및 수술용 장갑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보도로 혼란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7일 〈화장품 5종 판매 금지…풍선·고무장갑·콘돔까지 '석면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콘돔에 탈크가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주)유니더스·(주)동국물산·한국라텍스공업(주) 등 국내 3사는 인체에 해가 없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탈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회이슈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5월 8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주)유니더스, (주)동국물산, 한국라텍스공업(주)는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4일자 A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교회가 이단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대표자 허 ○ ○) 외 4인
피신청인 : 월간 교회와 이단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교회와 이단 : 『양평 성민교회 허○○, 영생권 쥐었다며 종교 사기!』 제하의 기사 (2009년 3, 4월호 30~61면)

내　　용 : (전략)

1991년 승광교회(현, 양평 성민교회) 허○○, 여신도 간음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 끌다!

1991년 초순 경, 각종 일간지와 주간지 및 공중파 방송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 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간음하고 농락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90년 겨울부터 40여 명의 장로, 집사, 평신도들이 목사의 비행을 알고 이를 시정하려고 하자, 1991년 1월, 제직회를 열고 자신의 심복들을 내세워 무력으로 반대파를 물리치자, 쫓겨난 신도들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바로 경기도 양평 성민교회(전 승광교회) 허○○(당시 62세, 현, 83세) 씨이다. (중략)

1991년 판결문을 보면, 허○○는 1991년 4월 13일 서울 동부지청에 '보호자 간음'과 '산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됐었다. (중략)

허○○, 교회 재산 횡령 고소당해! (중략)

교회 재산 횡령 건 고소 사실을 고소인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에 고소 사실 연락을 했다.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조사관 핸드폰으로 교회　측 신도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다.

2008년 8월 검찰청에 접수해 9월 초에 담당 지역 경찰서에 이첩되었고, 12월 초순경에 검찰로 넘겼는데 12월 30일, 확인 결과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유는 고소인 5명 중 1인이 취하한 것을 두고 중요 고소인 취하가 이유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더라도 고소인　측을 불러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양평 성민교회에 관한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가 지난 3·4월호 특집 면(30쪽~61쪽)에 '양평 성민교회(전, 승광교회) 허○○, 영생권 쥐었다며 종교사기!'라는 제목으로 성민교회의 교리 및 당회장 허○○ 목사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허○○ 목사의 1991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재판 중인 횡령 건은 강동경찰서와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는 바 본지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범죄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중인 성민교회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이 기사를 제보하였음에도 공정한 절차없이 기사화하였음으로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양평 성민교회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3·4월호 특집면 '양평 성민교회(전, 승광교회) 허○○, 영생권과 종교 사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양평 성민교회와 허○○ 목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교회와 이단』은 위 잡지 2009년 3·4월호를 통하여 성민교회(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및 위 교회 담임목사 허○○ 목사에 관한 기사를 30쪽에 걸쳐 게재하였고, 위 기사로 인하여 허○○ 목사 및 성민교회 600여 성도들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다. 게재된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성민교회 교역자들의 설교의 전체 맥락과 설교의 비유적 표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석한 것이다.

『교회와 이단』은 성민교회 및 허○○ 목사에 대한 취재 기간 동안 기사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민교회　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여 진위 확인을 요구한 바가 없다. 이에 성민교회　측은 2009.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회와 이단』 2009년 3·4월호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기사에 대한 성민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와 이단』은 『양평 성민교회 허○○, 영생권 쥐었다며 종교사기!』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허○○ 목사가 사이비집단의 교주라는 특집기사를 시작하면서, 그 근거로서 1991년 성민교회 관련 형

사재판 사안에 대한 주간지의 기사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교회와 이단』 2009년 3·4월호 제31쪽 내지 제33쪽에서 언급된 1991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본건 기사 제보자들이 허○○ 목사 등을 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을 언급함에 있어, 고소인인 제보자의 주장에 불과한 자료(『교회와 이단』 2009년 3·4월호 제51쪽 '범죄일람표')를 게재함으로써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09. 12.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되었고, 제보자들이 검찰의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09. 4. 21. 항고 기각되었다.

셋째, 『교회와 이단』 2009년 3·4월호 제34쪽 사진은 다른 사람의 장례식 사진임에도, 마치 허○○ 목사 처의 장례식 사진인 것처럼 게재하였다.

넷째, 『교회와 이단』은 성민교회의 교리와 관련하여, 설교의 비유적 표현이 모두 허○○ 목사를 신격화하였다고 해석하고, 심지어 성민교회에서 만든 성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성경적 근거를 생략하거나 가사의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성가의 성경적 의미를 훼손하였다. 또한 성민교회나 허○○가 기성교회의 존재를 부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에 대한 통상의 비판이나 각성을 촉구한 내용을 성민교회나 허○○ 목사가 기성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기사화하였다. 또한 성민교회는 이미 세례 받은 교인이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지 않은 교인에게 집사 직분을 준 사례가 없다. (후략)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교회와 이단〉 2009년 6월호 특집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양평 성민교회(전, 승광교회) 허○○, 영생권 쥐었다며 종교 사기!'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과 동시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교회와 이단' 표지에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체 크기는 '교회와 이단'의 일반적인 표지 제목 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추후 신청인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 측에 대한 취재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월부터 다음 이행월까지 신청인에게 매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교회와 이단 : 『양평 성민교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호 86~8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피신청인이 방송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연예인의 것으로 잘못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SBS-TV : 「놀라운대회 스타킹」 프로그램 (2009년 4월 11일 18:30)
내　　용 :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4월 11일자 SBS 예능프로그램 놀라운대회 스타킹 방송 중 연예인 붐씨로 공개되었던 붐씨의 핸드폰번호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아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

2009 프로야구 개막전을 중계방송하던 KBS가 유인촌 장관이 시구할 때 관중들이 야유 소리를 내는 것을 감추기 위해 배경음악을 내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 ○)
피신청인 : 미디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미디어스 : 『네티즌들 유인촌 장관에 "성질 뻗쳐"』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5일자 미디어 면)

내 용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성질 뻗쳐 씨~ㅂ"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번에는 지난 4일 2009 프로야구 공식개막전 경기에서 시구를 맡은 유장관이 경기 시작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이 만든 '유인촌 시구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

지난 4일 유 장관은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한화 전에서 시구를 한 뒤 SK와 한화 쪽 덕아웃을 차례로 돌며 김성근 SK 감독, 김인식 한화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유장관의 인사(?)가 계속되자 나광남 주심은 경기 시작을 알리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약 6분이 지난 뒤인 오후 1시 46분에 시작됐다.

당시 현장을 중계하던 KBS 2TV의 해설자는 경기 지연 이유에 대해 "지금 경기 전에 덕아웃에 양쪽 팀을 정렬을 하는 유인촌 장관, 이 때문에 주심이 경기 속개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KBS, 야유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가려

또 당시 문학경기장 관중들은 유 장관이 시구를 하기 위해 등장할 때부터 '우~'라고 야유를 보냈으며, 중계방송에서는 유 장관이 마운드로 걸어가는 동안 야유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진곡 풍의 배경음악이 나와 차츰 커진 뒤 시구 직전 약 15초만에 그쳤다.

〈MLB파크〉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야유소리 안 들리게 배경음악 깔아주는 KBS 센스도 돋보인다", "우~하는 소리 정말 크게 나온다. 급하게 배경음악 바꾼다. KBS"라며 야유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덮은 KBS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 4. 5. '네티즌들 유인촌 장관에 성질뻗쳐'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당사는 2009년 4월 5일자 '네티즌들 유인촌 장관에 성질 뻗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계방송을 담당한 KBS가 유인촌 장관의 시구시 관중들의 야유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배경음악을 내보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배경음악은 KBS가 아닌 SK구단 이벤트 대행사(JR 커뮤니케이션, 대표 이○○ 010-3245-○○○○)에서 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스는 이번 기사 작성에서 KBS 측을 대상

으로 직접 확인 취재도 하지 않고 사실과 상이한 보도를 함으로써 KBS의 대외 이미지를 왜곡·훼손하고 KBS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미디어스〉는 지난 4월 5일 '네티즌들 유인촌 장관에 "성질 뻗쳐"' 기사에서 "당시 문학경기장 관중들은 유 장관이 시구를 하기 위해 등장할 때 '우~'라고 야유를 보냈으나, 이를 중계하던 KBS는 야유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배경음악을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현장 중계를 담당했던 KBS PD는 "KBS쪽에서 배경음악을 튼 게 아니라 현장(야구장)에서 음악을 틀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음향 등 이벤트를 담당한 스포츠마케팅업체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시구하러 나올 때와 시구를 마치고 들어갈 때 배경음악을 튼다"며 "유 장관이 마운드로 걸어가는 동안 야유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진곡 풍의 배경음악이 나와 차츰 커진 뒤 시구 직전 약 16초만에 그쳤다"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미디어스 초기화면에 6시간 이상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네티즌들 유인촌…)의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및 소속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8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업체명이 잘못 표기된 기사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여 손실을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7.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이데일리 : 『우리기술, 20억 하이브리드 차량용 모듈 공급계약』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3일자 종목뉴스면)
내 용 : 우리기술(032820)은 한라공조와 20억 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차량용 브라우저 모터제어 PEM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41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4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의 15
대표이사 김 봉 국
주 문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1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언론중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사회 통념상 주식 투자와 같은 문제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장래의 발전 가능성, 기타 전반적인 사정을 비롯하여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신청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오직 이 사건 보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해배상의 사상적 기초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손실전보 및 일정한 손해위험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해행위가 사회에 주는 위험성의 크기, 어떤 손해를 누구에게 분배시키는 것이 손해방지에 도움이 되며 효율적인가 등을 감안한 손해배상의 경제적 공평성이라는 이념을 함께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고, 가행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의 불 측의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1. 10. 25. 선고 2001나8495 판결 참조).

2009. 4. 24. □

신청인 단체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담양석재산업의 레미콘에 대해 불법이라며 판매를 방해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무정면쇄석기설치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 ○)
피신청인 : 담양곡성타임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담양곡성타임스 : 『'담양석재' 해법 못 찾고 갈등만 증폭』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4일자 1면)

내　　용 : 전략 없는 싸움으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현재 군청 앞 인도에서 비닐하우스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무정면쇄석기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전임 대책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마을주민 중 공동대표 5인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군청 앞 시위와 농성을 이끌며 겨울을 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시위의 실질적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모 씨, 장모 씨 부부로 전남환경운동연합과의 연계나 각종 매스컴에 대한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담양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들의 투쟁방식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처음 이정섭 군수가 마치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듯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서부터 사건은 발생했으나 법적으로 하자 없는 업체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책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체는 행정의 예 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믿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미 행정심판으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별도 사건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있는 것은 위법으로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면서 "모든 사안을 대결구도로 끌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적 사안이나 법률적 판단이 약한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시위를 지속하는 것도 문

제"이나 "현재 시위를 이끌고 있는 자들 대부분 영업방해나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으로 자신들 발등의 불도 못 끄고 있는 상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대책위의 전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씨, 이모 씨, 시위질서계도인 여모 씨, 현 위원장 이모 씨는 이미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본안판결 진행으로 재판 보류 중이다.

또 장모 씨와 김모 씨 등 4명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100만 원을, 여모 씨 등 3명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50만 원을 통지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무정면 쇄석기 설치반대 대책위, '좌충우돌'"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1면에 "'담양석재' 해법 못 찾고 갈등만 증폭"이라는 제목하에 "대책위 '좌충우돌'…"이라는 부제목으로 무정면 쇄석기 설치반대 대책위를 "법적으로 하자 없는 기업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책위", "자신들 발등의 불도 못 끄고 있는 상태", "파산직전의 사업자가 원인을 제공한 대책위와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농로 포장 현장에 찾아가 불법 생산된 레미콘을 쓴다고 시위를 해, 레미콘을 소비해줄 사업자들이 물건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정면 쇄석기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좌충우돌한 적이 없으며, 담양석재 측이 오히려 1년 동안 쇄석기를 불법가동, 무허가 영업을 하여 심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트리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 근거로 현재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2008고단4010)이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화되어 레미콘시설을 철거했다는 것은 업체 측과 군청이 모두 밝힌 바 있는데 주민들이 레미콘 판매를 방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알려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취지의 조정없이는 신청인 주장 수용불가. □

신청인이 총회 재판국의 면직, 출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북기독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북기독신문 : 『성암교회 김○○ 목사 면직 출교』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3일자 3면)
내 용 : 예장통합 전주노회 재판국(재판국장 김성철 장로)은 최근 교단과 사회법정을 오가며 교회 장로들과 담임목사 측이 교회내부 문제로 대치해 왔던 전주 성암교회 사태에 대해 담임 김○○ 목사에게 의원면직과 함께 출교 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전주노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측의 변론에서 말해 주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 이유를 밝히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총회 헌법 및 제규정 의무 위반과 ▷이단적 행위에 동조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타인에게 범죄케한 행위 등을 들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주노회 재판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총회 특별재심판 결과와 함께 전주 성암교회가 언제 정상화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3월 13일자 3면의 성암교회 김○○ 목사관련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성암교회 김○○ 목사 면직 출교"라고 하여 마치 "김목사가 최종적으로 교단에서 면직, 출교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목사는 전주노회 재판국에 의해 면직 및 출교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총회재판국에 이를 상고한 상태이며, 총회재판국에서 심리 중에 있어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함께 "면직" 판결을 받은 김○○ 집사는 총회재판국에 의해 "무죄"로 최종 판결 받았습니다. 한편, 전주노회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8인의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에서 "오○, 이○○, 곽○○, 한○○은 출교, 전○○, 오○○, 조○○, 정○○은 2년 정직"으로 판결 받은 상태이며, 이 건은 현재 총회특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 신문 2009년 3월 13일자 3면 "성암교회 김○○ 목사 면직 출교"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확인 결과 김목사는 예장통합 전주노회 재판국의 면직 및 출교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으며,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기독신문 2009년 5월 8일자 3면 좌 측 중앙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크기는 조정 대상 기사의 부제목(통합전주노회 재판국, 직권남용 등 들어 중징계)과 같게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이 건 조정대상기사를 문제 삼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기독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8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상 희 (국회의원)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0.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 폭행적 폭언'』 제하의 사설 (2009년 4월 15일자 A35면)
내 용 :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 장관에게 "지난번 성매매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김의원은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거론하면서 장관에게 "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공무원에게만 강제하고 있는데 언론사에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성부에서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정 직업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김의원이 만일 "의사들이 몇 명이나 성매매하다 걸렸는가", "소방관들을 성교육 시켜라", "택시기사들의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가정해 보라. 김의원의 전화는 항의로 마비

되고 김의원의 집 앞과 국회 사무실은 의사, 소방관, 택시기사들의 항의 시위로 넘쳐났을 것이다.

김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일 김의원에게 남편이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인가가 김의원 남편 직업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이냐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모욕을 줬다고 해보자. 김의원과 김의원의 자녀들이 그 국회의원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는가. 언론인의 배우자, 언론인의 자녀들이 김의원 발언으로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만 분의 1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언어 폭행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의원 이력서에는 여성운동 경력이 길게 나열돼 있다. 여성운동가 김상희 씨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그해 6월엔 정연주 씨가 사장으로 있던 KBS의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더니 2006년 1월엔 장관급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직(垂直) 출세를 했고,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 단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말하자면 김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무대에 떠오른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暴言)이 나온 것이다. "기자들에게 소주 사봐야 득될 게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미디어"라는 식으로 5년 내내 언론을 폭행하던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다. 김의원은 무명(無名)의 자신을 졸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김의원처럼 누가 성 상납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식의 모략성 흑색(黑色)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특권이 아니다. 김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국회 발언 진의 왜곡돼(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관련 사설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4월 15일자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언론인들에게 언어 폭행을 했다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暴言)이 나온 것이다"라는 부분은 김의원이 실제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의원은 현재 국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언론사를 포함한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장관도 동의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설에서 "김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과 "김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다", "김의원은 무명(無名)의 자신을 졸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등의 내용은 여성위원회 해당 발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김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한 점이 있기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상 희
조정대리인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5월 22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김상희 의원 관련 반론

2) 내 용 : 본지는 2009년 4월 15일자 A25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폭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김의원은 회의 당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언론사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5월 22일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

신청인이 거액의 술값을 유명 드라마 작가가 계산하도록 떠넘겨 왔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1)「뉴스9」 프로그램 『MBC 공정방송노조, 보도국 비리 폭로』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8일 21:00)

내　　용 : MBC 간부들로 구성된 MBC 공정방송노조가 자사 보도본부 내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MBC 보도국 소속 직원이 억대의 촬영장비를 빼돌렸다 적발되고 "보도국 소속 모 부장은 거액의 술값을 유명 드라마 작가가 계산하도록 떠넘겨 고발당한 일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공정방송노조는 또 "보도본부 소속 기자가 동료 직원을 성추행하려 한 사건이 일어나 피해 직원이 문제를 삼으려 하자 보도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긴급히 무마에 나섰다는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MBC 공정방송노조는 "도덕적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 위기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돼 비리 사실을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뉴스광장」 프로그램 『[주요단신] MBC 공정방송 노조, 자사비리 폭로』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9일 06:00)

내 용 : 〈위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MBC 공정방송노조, 보도국 비리 폭로"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18일 〈뉴스 9〉, 3월

19일 〈뉴스 광장〉 등의 프로그램에서 "MBC 공정방송노조, 보도국 비리 폭로"라는 제목으로 "MBC 공정방송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보도국 소속 모 부장은 거액의 술값을 유명 드라마 작가가 계산하도록 떠넘겨 고발당한 일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MBC 보도국의 해당 부장은 유명 작가와 어울려 유흥술집에 간 적이 없으며, 따라서 유명 작가에게 술값을 떠넘긴 적도 없고 MBC 측에 항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의 비방성 폭로를 인용한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MBC와 MBC 보도국 간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은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 □

신청인이 거액의 술값을 유명 드라마 작가가 계산하도록 떠넘겨왔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MBC 일부직원 高價장비 빼돌리고 보도국 간부는 작가에 술값 떠넘겨"』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9일자 A1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5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2009서울조정151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거액의 술값을 유명 드라마 작가가 계산하도록 떠넘겨왔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보도본부 도덕불감증 도 넘었다" MBC

간부노조, 비리 의혹 폭로』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9일자 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5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2009서울조정151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집회참가자를 마구잡이로 소환,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명백한 불법시위자들을 조사한 것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 ○ 외 2인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1.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 『'상습시위꾼' 색출한다며 집회참가자 마구잡이 소환』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8일자 2면)

내 용 : 대학생 하아무개(22) 씨는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두 달 전 서울 용산과 신촌에서 열린 '용산 참사' 추모제에 나간 적이 있지만 도로에 나가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한 적이 없어 의아스러웠다.

지난 9일 막상 서대문서에 나가 보니,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하씨가 인도에 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야간집회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곤 "집시법 위반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인도에 있었지만, 다른 참가자가 도로에 나갔으니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씨는 17일 "황당하고 화도 나지만, 한편으론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든다"고 말했다.

경찰이 '상습 시위꾼'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집회에 참석한 사진이 찍힌 단순 참가자까지 마구잡이로 소환해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은 폭행, 기물 파손, 도로 점거 등 세 가지 '과격 시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불려나온 시민들한테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용산 참사 이후 늘어난 '전문 시위꾼'을 발본색원 한다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동원되는 1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이 수사본부 조사를 통해 소환 대상자를 추리고 있으며, 현재 그 규모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주최한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김아무개(39·직장인) 씨는 당시 집회가 '미신고 집회'였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경찰에 불려나갔다. 김씨는 "언론노조처럼 실체가 뚜렷한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에도 '집회 신고' 여부를 물어보고 나가야 하느냐"며 "당시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까지 출석요구서가 여럿 발부됐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상습시위꾼' 색출, 집회참가자 마구잡이 소환,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8일자 종합면(2면)에 『'상습시위꾼' 색출한다며 … 집회참가자 마구잡이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에서 단순참가자까지

증거 없이 마구잡이로 소환하여 무리한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하아무개(22세) 씨는 집회에 참가하여 인도에만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김아무개(39세) 씨는 단지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김아무개(37세) 씨는 "불법집회 참가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경찰이 "그렇다"고 조서에 기재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경찰은 김아무개(37세) 씨가 3월 7일 종로6가 경찰관 폭행현장 등 9회에 걸쳐 도로점거 등의 불법시위를 벌였다는 증거 등 위 3명 모두 차도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하아무개(22세) 씨가 조서를 열람하고 문구 수정을 요구하여 이에 모두 응해주었고, 김아무개(37세) 씨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자 이를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는 등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수사가 이뤄졌다는 기사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증거 없이 집회참가자를 마구잡이로 소환하였거나 강압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본사의 보도는 사실과 달리 보도되었음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 ○ 외 2인
조정대리인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겨레신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조정대리인 사회부문 부편집장 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5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2면 혹은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신문의 통상적인 '알려왔습니다'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1.

〈별 지〉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4월 18일자 2면 『'상습시위꾼' 색출한다며 집회참가자 마구잡이 소환』 기사에서 하아무개(22세) 씨는 도로가 아닌 인도에 있었음에도 조사를 받았고 김아무개(39세) 씨는 단지 '미신고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으며, 김아무개(37세) 씨는 "불법집회 참가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경찰이 "그렇다"고 조서에 기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들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채증자료 등을 통해 야간 집회참가나 차도 점거 등 명백한 불법 시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소환한 것으로 마구잡이 소환한 사실이 없으며, 조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법인세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대표 백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1)「뉴스 9」프로그램『[집중취재] ① '첨단금융기법'으로 법인세 회피』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2일 21:00)

내 용 : 서울 우면산터널 등 민간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호주계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수익만 챙기고 법인세는 덜 내거나 안내게끔 재무구조를 짜놨습니다.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인데요, 탐사보도팀 김○○ 기자가 고발합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 우면산터널, 우면산터널은 통행량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서울시가 보조해 줍니다. 지난 2004년 개통 이후 3백억 여원의 국민 세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사업이지만 우면산터널 측은 지난해 말, 맥쿼리인프라 등 대주주로부터 후순위대출 형식으로 266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웬만한 사태에 버금가는 연이율 20% 였습니다. 문제는 맥쿼리인프라가 연 이율 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피지배회사인 우면산터널 측이 내야 할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면산터널은 수익의 22%를 법인세로 내고, 남은 돈을 맥쿼리 등 주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주가 이익 대부분을 배당이 아닌 이자로 회수하면 우면산터널 측은 이자 부담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거나 아예 적자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회계사) : "이 변칙적인 거래로 인해서 법인세로 걷어야 될 부분이 다 빠져나가죠. 그것은 이자로 외국계열 이자로 다 수입이 들어가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는 문제는 있지만, 국세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 : "그… (우면산터널) 후순위채 이자에 관해서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 : "(국세청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건가요?) 그 쪽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개별 기업에 관련돼서는 정말 송구스럽지만, 멘트를 해드리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뉴스9」프로그램『집중취재 ② 맥쿼리 법인세 회피액, 30년 간 최소 수천억』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2일 21:00)

내 용 : 현행 세법은 이처럼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에 20% 고금리로 돈 빌려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탐사보도팀,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지배 회사가 피지배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는 세법상 9%입니다. 회사 수익을 높은 이자로 회수해 피지배회사가 낼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우면산터널 말고도 마창대교 연 이율 20%, 인천대교 12%, 서울지하철 9호선 15% 등 민자사업장 11곳에 9%를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렇다보니 맥쿼리인프라가 지난해 민자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543억이 넘습니다. 반면에 투자 금액에 따른 배당수익은 4억 8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장) : "세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민자사업장 15곳은 대부분 30년에 걸쳐 최소 수조 원대 수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22%이기 때문에 맥쿼리가 회피할 수 있는 법인세는 모두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KBS탐사보도팀 방송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맥쿼리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낼 세금이 있으면 모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뉴스광장」프로그램『민자사업 투자회사, 지능적 세금 회피』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3일

06:00)
내 용 : 〈위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일자 오후 9시 뉴스 및 4월 3일자 오전 6시 뉴스광장에서 "첨단금융기법으로 법인세 회피", "맥쿼리 법인세 회피액 30년 간 최소 수천억"이라는 제목으로, 맥쿼리인프라를 법인세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인 양 보도하면서,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기업들로부터 고율의 대출이자를 받아가는 바람에 위 회사들의 수익이 줄거나 적자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맥쿼리인프라는 현행 세법상의 이자율 한도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향후 회피할 수 있는 법인세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맥쿼리인프라는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이자율 한도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인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향후 회피할 수 있는 법인세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근거가 없음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맥쿼리인프라, "법인세법 위반사실 없어"
• 내 용 : 지난 4월 2, 3일 민자사업 투자회사의 법인세 회피문제를 다룬 KBS 뉴스9와 뉴스광장 보도내용에 대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과의 대출이자율이 반드시 9%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세법 위반이 확인된 바 없어 맥쿼리인프라의 반론을 알려드립니다. 맥쿼리인프라의 민자사업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법인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뉴스광장〉 프로그램의 뉴스 말미에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되, 관련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맥쿼리인프라, "법인세법 위반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14일 06: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언론사가 타 언론사의 보도에 앙심을 품고 분풀이로 사무실 기물을 파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함안신문 (발행인 이 ○ ○)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1) 『같은 언론이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6일자 19면)
내 용 : 인구 7만도 되지 않는 함안군에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 발전에 견인차 구실을 하겠다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역 특수주간지가 다섯 개나 된다. 이러한 수치는 군 단위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수주간지로 등록된 이들 지역신문은 월 2회 이상 발행조건으로 요건을 갖춘 개인 누구나 발행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문법이 간소화되면서 특수주간신문에 대한 등록 남발로 각 지자체에는 온갖 정보가 범람해 주민들의 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함안지역은 신문이랍시고 발행되는 특수주간지가 5개나 되는 바람에 각 분야의 기관은 물론, 공사장 등 크고 작은 중소업체들에는 반갑잖은 무서운 분(?)들로 모셔지고 있다.

최근 함안지역 모 신문사에는 보도에 앙심을 품은 사업자가 분풀이로 사무실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로 툭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쳐져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싣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얼마 전 사업장에 찾아가 광고를 요구했다가 무더기로 검찰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은 일까지 벌어지는 지경이다. (후략)

(2)『함안지역 일부 특수주간지업체 대상 횡포, 피해 호소』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1일자 4면)

내 용 : 함안지역의 일부 특수주간신문이 관내 업체에 광고 강매와 공무원으로 속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함안군 칠원지역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지난 15일 함안군청 브리핑실을 찾아와 모 특수주간지의 횡포에 적지않은 시달림을 받았다며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회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수차례에 걸친 광고 요구를 받아왔으며 지급된 광고료에 대한 영수증 처리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께 이 신문사 직원이 함안군청 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이며 업체에 대한 각종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으로 심리적 부담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같은 언론이라고?, 함안지역 특수주간지 횡포 피해호소

• 내 용 : 가. 본신문은 2009년 4월 16일자 19면에 "같은 언론이라고?"라는 제목아래, 보도에 앙심을 품은 사업자가 분풀이로 사무실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다.

나. 본 신문은 4월 21일자 4면에서 지난 4월 15일 업체대표가 브리핑실을 찾아와 2006년부터 회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까지 수차례의 광고 요구를 받았으며, 지급된 광고료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가" 내용에 대해서

보도에 불만을 품은 업체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불만을 토로 하고 10여 분만에 돌아갔으며 기물을 파손한 적은 없음

"나" 내용에 대해서

2006년 9월 29일 주유소 확장이전개업(개업일 2006. 9. 15)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료(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그 이후로는 광고 강매, 요구 등 구두로나 전화로도 광고게재를 말 한 적이 없음. □

신청인 언론사가 지역의 특정 업체에 부당 압력을 행사해 광고를 요구하고, 광고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함안신문 (발행인 이 ○ ○)
피신청인 : 경남연합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연합일보 : 『안 그래도 힘든데 광고 압력까지... '속 탄다'』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1일자 5면)

내 용 : 함안지역 일부 주간지가 영세상인 및 업체에 부당광고 요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기업인 및 영세상인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줄이는 등 회사 살리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수 주간신문이 부당한 압력행사로 광고게재

를 요구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함안군 칠원면 S업체는 지난 1993년부터 가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회에 50만~100만 원까지, 수백만 원어치 부당한 광고를 게재해 주고 현금으로 광고료를 지급했지만 지금까지 영수증은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김모(47)씨는 "지난해 10월, H주간신문사 직원이 군청직원을 사칭해 카메라를 들고와 위협을 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시달림에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 그래도 힘든데 광고 압력까지…"속탄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 영세업체들이 함안지역 일부 주간지 부당요구로 물의, 광고료 현금지급 불구 영수증마저 안줘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4월 21일자 5면에 "안 그래도 힘든데 광고압력까지…'속 탄다'"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본지기자는 2008년 10월 10일경 S업체를 찾아가 사장에게 "함안신문" 취재기자의 명함을 건네고 취재를 했으며 군청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취재 이후에 갖은 협박전화로 시달림을 몇 차례 받았음. 본지는 2006년 9월 29일 주유소 확장이전 개업(개업일, 2006년 9월 15일) 광고를 한 후 광고료 50여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며, 그 이후로는 광고 강매 등, 구두로나 전화로 광고게재 요구를 절대 한 적이 없음. □

신청인 언론사가 지역의 특정 업체에 부당 압력을 행사해 광고를 요구하고, 광고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함안신문 (발행인 이 ○ ○)
피신청인 : 뉴스플러스경남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NEWS+경남 : 『함안지역 주간지 부당광고 요구』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1일자 6면)
내 용 : 〈2009경남조정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남조정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언론사가 지역의 특정 업체에 부당 압력을 행사해 광고를 요구하고, 광고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함안신문 (발행인 이 ○ ○)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일보 : 『일부 특수주간지 '위험수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3일자 19면)

내 용 : 〈2009경남조정6의 보도내용 참조〉 〈2009경남조정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환경부가 4대강에 댐을 세우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 '역류' 만난 4대강(江)사업』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A1면 및 12면)

내 용 : 4대강 정비사업에 수질(水質) 문제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伏兵)이 등장했다. 4대강을 깊게 파고 보(洑·댐)를 세우면 수량(水量)이 넉넉해지고 이것이 수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21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 15m 이하의 보를 한강에 2~3개, 낙동강 5~6개 등 4대강을 합해 총 10여 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선 그동안 "개선된다"(국토부)는 쪽과 "악화할 것"(환경단체 등)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으나 정작 수질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금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5일 이만의 장관 주재로 열린 환경부 내부회의('4대강 하천건강성 회복 대책회의')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에 보를 10여 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환경과학원의 이 시뮬레이션 분석은 국토부 의뢰로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수질예측 모델 등 일부 자료를 건네받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보를 설치하면 풍부해진 수량이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오염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이보다는 물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오염도를 높이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략)

정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더해 다시 수조 원을 투입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수질관리 장기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이 시화호, 새만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 '역류' 만난 4대江 사업 관련 정정 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22일자 제1면과 12면에서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도하였고, 정부 관계자가 "2012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대해 다시 수 조 원을 투입해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으로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발표하거나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치고 수질개선 대책까지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입장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역류' 만난 4대江 사업」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환경부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4월 22일자 1면과 12면에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 된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라고 한 보도내용과 정부 관계자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수질개선 대책 시행 후에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바로 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1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4월 22일자 1면 및 12면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 '역류' 만난 4대江 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당해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신청인은 그동안 4대강에 보(洑)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왔는데, 지난 4월 15일에 열린 내부 회의에서 '4대강에 보를 세울 경우 10여 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기사에 "4대강에 보(洑)를 설치할 경우 수질은?" 제하의 도표를 삽입하여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 신청인의 입장을 "입장 표명 없음"으로 표기한 반면, 4대강 정비사업(2008년~현재) 시점의 신청인의 입장에 대해 "유속 느려져 수질 악화"라고 표기한 것은 마치 최근 신청인이 4대강에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내용에서 신청인이 '4대강 보(洑) 설치 시 수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점, 이 사건 기사 말미에 환경부 윤승준 물환경정책국장 및 국토해양부 제해치 4대강기획본부 홍보팀장의 전언(傳言)을 게재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가 변경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실적이 나쁜 경찰관을 정신교육시키라고 구두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실적 나쁜 경찰 정신교육 시켜라" 주상용 서울청장 구두지침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3일자 9면)

내 용 :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경찰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라는 구두지침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 비리 등 내부 문제를 실적 건수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청 및 일선 경찰에 따르면 주청장은 이달 초 서울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일선서 형사과 과장 및 팀장과의 회의 때 "경찰들 중 실적이 형편없는 하위 3%를 뽑아 벽제 경찰수련원에 보내 정신교육을 시켜라."고 구두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청와대 경비근무를 담당하는 101단 소속 경찰들에 교육을 맡겨 1주일간 정신교육 등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는 한 달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적은 검찰 송치 건수로 매겨지고, 송치 이후 혐의 유무는 상관없다. 4월 실적 하위 3% 경찰은 빠르면 새달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을 받고 복귀 뒤에도 실적이 밑바닥을 맴돌면 연고지와 떨어진 지구대에 강제발령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실적나쁜 경찰 정신교육 시켜라", 주상용 서울청장 구두지침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사회면(9면)에 『'실적 나쁜 경찰 정신교육 시켜라' 주상용 서울청장 구두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주청장이 이달 초 서울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일선서 형사과 과장 및 팀장과의 회의 때 '경찰들 중 실적이 형편없는 하위 3%를 뽑아 벽제 경찰수련원에 보내 정신교육을 시켜라'고 구두지침을 내렸다. …중략… 4월 실적 하위 3% 경찰은 빠르면 새 달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경찰청이 '09. 4. 10. 10:00~11:50 간 서울지방경찰청 2층 강당에서 「정성을 다하는 수사경찰상 정립 및 민생침해범죄 소탕을 위한 '경찰서 형사팀장 워크샵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서 서울청장이 중요범인 검거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후, 약 30분간 일선 형사로서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요지로 훈시를 하고, 이어서 수사부장이 최근 개편한 경찰서 팀 직제 개선의 취지 및 수사형사 업무평가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심히 수사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①그 회의에는 경찰서 형사과 과장들은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며, ②그 회의자리에서 서울청장이 "실적이 형편없는 하위 3%를 뽑아 벽제 경찰수련원에 보내 정신교육을 시켜라"고 구두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③4월 실적 하위 3% 경찰은 빠르면 새 달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내용도 근거없는 추측 보도로 사실과 달리 보도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보는 지난 4월 23일 "주상용 서울청장이 일선서 형사과 과장 및 팀장과의 회의때 '매월 실적 나쁜 경찰 3%를 뽑아 벽제 경찰수련원에 보내 정신교육 시켜라'라고 구두지침을 내린 바 있어 4월 실적 하위 3% 경찰은 빠르면 새 달부터 교육

을 받게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성과고양 및 동기부여를 위해 올해부터는 수사경과 경찰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근무성적 하위 3%를 선정하고 소명과정을 거쳐 비수사부서에 2년간 근무토록 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일선서에 하달하였던 것으로 주 청장이 당일 별도의 구두지침을 내린 적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매달 하위 3%를 선정한다던가 벽제수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서울신문 2면에 2009년 5월 15일까지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서울신문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공사가 천신일 회장의 땅을 피해 송전탑 선로 변경을 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선로 변경된 토지 역시 천회장 소유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09. 4. 2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신동아 : 『"천신일 땅 피하려고 두 차례 송전탑 선로 변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106~115면)

내 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소개해준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3월 천 회장의 소개로 베트남 경제사절단 방한 행사에 참석, 연설을 하고 박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향신문 3월 30일자 보도)

"MB 친구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박연차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오마이뉴스 3월 30일 보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대선 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선 때든, 국세청 세무조사 때든, 검찰 조사 때든 언제든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4월 10일 보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형, 전직 국회의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청와대 수석, 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전직 단체장,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은 돈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중략)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천회장 땅을 우회하도록 송전탑 선로가 변경됐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총신대학교 측에 의해서다. 천회장이 공동 소유한 이 땅은 15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천신일 땅' 문제를 보고받은 뒤 천회장 쪽에 유리하게 선로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 실세인 이상득·정두언 의원은 이 문제로 수차례 한전과 접촉했다.

노무현 정부도 천회장의 같은 땅을 배려해 당초 예정된 송전탑 선로를 변경했다. 노 정권 시절 1차로 천회장 땅을 비켜가도록 해주었고 현 정권에 와서 2차로 또 변경해 결과적으로 송전선로가 천회장 땅을 더 멀리 우회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사

비는 크게 뛰었고 송전탑은 양지리 마을, 총신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더 근접하게 됐다고 한다. 한전 측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땅 지주의 민원을 정당하게 처리해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변경되기 전 원래 선로가 더 공익에 부합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신동아'는 실세 땅을 비켜간 두 차례 선로변경 논란의 속사정을 알아봤다.

한전 중부계통건설소는 2004년 8월부터 경기도 일원에서 '76만5000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설비 확충과 76만5000V 계통의 중부권과 영동권의 연계를 통한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이 사업목적이다.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정전사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공사 구간에는 155기의 송전탑(강관철탑)이 세워진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는 21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천회장 등 8명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임야 40만203㎡다.

"원래 설계안 멀쩡한데 바꿔"

총신대학교 정훈택 총장권한대행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확정한 원래의 설계안은 아무 문제없었다. 그대로 공사하면 됐다. 그런데 천회장 임야를 조금 물고 들어갔다. 불법 설계변경돼 대학과 마을 쪽으로 밀려 내려와 대학과 마을에 피해를 주게 됐다. '실세'에 대한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 바뀐 곳이 어디인가.

"천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지나는 송전노선이 설계 변경됐다. 원래의 설계안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천회장 소유 임야의 남쪽 하단부에 걸친다. 그런데 2007년 6월 4일 원래 설계안이 변경(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되어 천회장이 허락한 가장자리로 내려온 것이다." (중략)

"한전 측은 천회장의 의견만 들어주었다. 설계변경을 결정하기 전 다른 편 이해당사자인 우리 대학 측이나 양지마을 주민들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공사가 학교 바로 앞에서 송전탑 건설공사를 할 때 비로소 설계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일방적 설계변경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총신대 측 자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한전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로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한전의 주민설명회는 2007년 설계변경 이후인 2008년 3월 12일 열렸다. 이후 양지리 주민들은 철탑반대위원회를 조직해 5월 1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탑설치 반대집회를 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5월호 106면에서 115면에 '천신일 땅 피하려고 두 차례 송전탑 선로 변경 특혜 의혹'이란 제목으로 '청와대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천신일 땅' 문제를 보고받은 뒤 천회장 쪽에 유리하게 선로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정권 시절 1차로 천회장 땅을 비켜 가도록 해주었고 현 정권에 와서 2차로 또 변경해 송전선로가 천회장 땅을 더 멀리 우회하게 됐다', '한전의 주민설명회는 2007년 설계 변경 이후인 2008년 3월 12일 열렸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전은 2008년 4월 청와대 보고 이전인 2007년 6월에 이미 1차 위치변경을 완료하였고, 또 다른 소유주와의 협의 때문에 2차 변경을 2007년 10월에 하였으며,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총신대에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일 뿐 선로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혜를 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송전선로는 천신일 회장 땅을 비껴서 멀리 우회 한 것이 아니라 동일 토지(천회장 땅) 내에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1997년 7월에 시·군 단위로 이미 완료하였고, 철탑위치 변경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신고사항에 불과하여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2008년 3월 12일에는 공사시행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철탑위치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5월호 106~115면 「"천신일 땅 피하려고 두 차례 송전탑 선로 변경 특혜의 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청와대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천신일 땅" 문제를 보고받은 후 천회장 측에 유리하게 선로가 변경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한전에서는 청와대 보고 이전인 2007년 10월에 이미 변경신고를 했으며, 신고된대로 처리된 것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기사에 설명돼 있지만, 송전선로는 천신일 씨 등의 땅을 비껴서 멀리 우회한 것이 아니라 천신일 씨 등 소유 토지 내에서 위치가 변경된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한편, 한전이 주민설명회를 변경승인 신청 전에 하지 않았다는 기사와 관련, 주민설명회는 1997년 7월에 시·군 단위로 이미 완료하여 추가로 개최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9년 6월호 〈말길 글길〉 코너에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신동아가 통상적으로 싣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신동아〉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동아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호 59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넘기려다 고객항의로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플랜다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보험사에 개인정보 넘기려다 무산된 인터넷회사』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2일자 종합면)
내 용 : 회원수만 20만 명이 넘는 한 중견 인터넷 인맥관리 회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넘기려다 고객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랜다스는 지난 2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안내' 메일을 발송,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이 회사가 고객정보를 넘기기로 한 보험사는 교보 미래에셋 동양 신한 흥국생명 등의 생명보험사와 동부 흥국 제일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 등 10여개 사에 이른다.

특히 이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와 연결돼 있어 회원을 탈퇴하면 인터파크를 이용하며 쌓아둔 기존 적립금과 포인트마저 사라지게 돼 일부 인터파크 이용자들은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0페이지가 넘는 탈퇴 요청 글이 쇄도하고 전화로도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한 가입자는 "처음에는 만우절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입자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보험사에서 가입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요즘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짜증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회사 측은 부랴부랴 정보제공을 철회한다는 메일을 다시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회원탈퇴를 한 이용자들에게도 약관 변경 철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탈퇴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정보유출 불안감에 회원탈퇴를 한 가입자는 "탈퇴확인을 한 후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개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채 하루가 안 돼 다시 메일을 받아보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플랜다스 고객정보 무단 유출하려" 사실과 달라(또는 플랜다스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2일자 아시아투데이에 "회원수만 20만 명이 넘는 한 중견 인터넷 인맥관리 회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넘기려다 고객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플랜다스는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넘기려한 것이 아니며, 플랜다스의 고객정보가 그 어떤 3자에게도 전달, 공유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4월 30일자 '월요신문' 35면에 게재된 기사 중 신청인의 반론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반론을 원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원보도문 제목('보험사에 개인정보 넘기려다 무산된 인터넷 회사')을 2009년 5월 12일까지 '약관변경 논란 인터넷 회사'로 변경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투데이 : 『플랜다스 "고객정보 무단으로 넘긴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2일자 종합면)
내 용 : 플랜다스는 11일 최근의 약관변경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 보험사에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넘긴 적은 없다고 밝혔다. (4월 12일 '약관변경 논란 인터넷회사' 참조)

이○○ 플랜다스 대표는 "오해의 여지가 많은 일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광고대행사와 공동마케팅을 벌이며 약관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을 빨리 진행하느라 법률 검토를 받지 않았고 내부 절차 역시 생략된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의 비난대로 정말 악의를 갖고 회원정보를 몰래 팔아 넘기려고 했다면 이메일로도 고지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에라도 회원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메일을 보내고 몇 시간 만에 이를 바로 철회했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대행사와는 계약조차 맺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구리시의회 공무원인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도박 및 골프연습을 하였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폴리스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폴리스타임즈 : (1)『구리시의회 고위공무원 근무시간 중 도박』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구리시의회 고위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정수일) 토평지구대는 14일 18:00시 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한 장어요리집에서 구리시의회 L모 과장 등 4명을 도박혐의로 검거(사진)했다.

경찰조사결과 L과장은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16:00시경부터 관련인 4명과 함께 음식점 내 한 켠에 있는 창고에 딸려있는 방에서 38여만원의 판돈을 두고 도박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 시민은 어려운 국내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국에 민생업무처리에 전념해야할 의회 고위공무원이 그것도 근무시간 중 버젓이 도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한편 취재결과 L과장은 지난 08년 12월 말경에도 서울 강동 관내 하일동 소재 모식당에서 21:00경 함께 있던 5명과 도박을 벌이다 112신고에 의해 경찰에 적발됐으나 석연치 않게 훈방 처리됐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화요일. 금요일) 오늘 적발된 구리시 장어음식점에서 관련인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도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L모 과장 근무시간 중에도 버젓히 골프채 휘둘러』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자 종합면)
내 용 : 어제 (4월 14일) 근무시간 중 관내 음식점에서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된 구리시의회 L모 과장이 평소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기업체에 마련돼 있는 골프연습실에서 수시로 골프연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L모 과장은 구리시 갈매동에 소재한 K전력 내 한 켠에 마련돼 있는 야외 골프연습실에서 근무시간에도 아랑곳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연습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무려 11일간 (토·일요일 제외) 골프연습을 즐겨왔으며 시간대는 주로 14:00-17:00 경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구리시의회 L 과장 보도 관련 알림
• 내 용 : 본보는 지난 4월 14일자 및 15일자에서 "구리시의회 공무원 근무시간 중 도박", "L모 과장 근무시간 중에도 버젓히 골프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L과장의 혐의는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한 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구리시의회 L과장 보도 관련 알림
• 내 용 : 본보는 지난 4월 14일자 및 15일자에서 "구리시의회 공무원 근무시간 중 도박", "L모 과장 근무시간 중에도 버젓히 골프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 과장은 도박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며, 화투를 쳤으나 일시적인 오락을 위한 것이어서 도박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상 늦어진 점심 시간을 이용해 골프 연습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즐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11일 09:00부터 폴리스타임즈 종합면에 제목을 2일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각각 같게 한다. 그 이후에는 각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신청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된 점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폴리스타임즈 : 『구리시의회 L과장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1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기아차 노조가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의 징계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아차 지부가 속해있는 금속노조에서 이미 가해자를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외 2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기아차 노조,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 거부』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자 A12면)

내 용 : 기아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김○○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구속 중)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

기아차 직원인 김씨는 1993~1995년 기아차 노조 화성공장 지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평조합원이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노조 집행부는 김씨 징계 건을 의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성폭행으로 기아차 노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노총이 제명토록 권고한 김○○을 기아차 노조가 제명해야 한다"는 안건을 긴급 발의했다.

그러나 김○○ 기아차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제명 요구를 거부했고, 거수(擧手) 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의안 상정이 무산됐다고 기아차 조합원들이 전했다.

기아차 노조가 김씨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줄곧 "김씨를 제명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 거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4월 15일자 사회면에 "기아차 노조,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 거부"라는 제목으로 기아차 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미 가해자는 기아차 지부가 속해있는 금속노조에서 조합원 제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제명요구를 거부했고, 거수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의안상정이 무산됐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관련 안건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이는 금속노조에서 징계가 되었다고 보고해 정리되었고, 대의원들이 안건 상정을 무산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1
청 구 명 :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조정대리인 강 ○ ○
조정대리인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6월 3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회면에 2단 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제목 활자크기 및 굵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 관련 반론

2) 내 용 : 본지 2009년 4월 15일자 A12면 『기아차 노조,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의 징계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기아차 지부가 지난 4월 13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김○○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위원장(구속중)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아차 지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금속노조로부터 제명 조치를 이미 받아 기아차 지부에서 별도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고, 징계에 관한 안건상정을 거부한 것은 이와 별개의 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4월 22일자 A12면 『성폭행 사건 가해자 민노총, 거짓 제명?』 제하의 기사 관련, 김 전 위원장이 3월과 4월 조합비를 납부한 평조합원 신분이라는 보도에 대해 기아차 지부는, 김 전 위원장은 금속노조로부터 제명되어 현재 평조합원도 아니고, 3, 4월 조합비는 행정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미 환불처리됐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5.

조정결정 이행결과

조선일보 :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3일자 A12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MBC 취재진이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 이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꽃 배달원을 가장했으며 폭행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엄 기 영)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월간조선 : 『"MBC 사람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접근 가해자 善處 강요"』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138~147면)
내 용 : 오후 두 시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田麗玉(전여옥) 의원의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지금 의원님 댁 앞에 MBC 취재진이 몰려와 있어서요. 주변 커피숍 같은 데 잠깐 계시다가 제가 다시 전화하면 그 때 오시겠습니까?"

전여옥 의원은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再審(재심)이 가능하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다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청 건물 안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소속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중략)

"가해자 용서하라" 압력

—MBC 취재진은 왜 왔나요.

"제게 (법원에) 가해자들의 선처를 부탁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퇴원하는 날에도 기자들이 '선처를 부탁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분들(폭행 혐의로 구속된 민가협 회원)은 아직까지 제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밀쳤을 뿐 눈을 찌르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피해자인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강요해요. 정치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화해와 용서만 해야 하나요."

전의원의 비서관인 장환일 씨는 "MBC 아침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어제(4월 7일)는 하루 종일 집 앞에서 기다리더니, 오늘 아침엔 의원회관으로 찾아왔다가 오후에 댁으로 왔다"고 했다. 4월 10일 열린 전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

전의원은 MBC 취재진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강요했다고 했다.

"MBC는 집요하게 제게 가해자들의 선처를 강요했어요. 방금 전에는 '꽃배달 왔다'면서 집에까지 올라왔어요. MBC에서 꽃을 보냈다든가 꽃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방송 관계자가 직접 꽃을 들고 '꽃배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제게 '불쌍한 할머니들이니 봐줘라'는 식으로 선처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MBC는 이튿날인 4월 9일 오전 방송에서 전의원의 근황을 전하며 "최근 가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 국민을 위한 만큼이나 가해자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9년 5월호 138면 이하에 '퇴원한 전여옥 의원의 격정토로' "MBC 사람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접근, 가해자 선처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MBC 취재진이 국회의원 전여옥을 취재하기 위해 '꽃배달원'을 가장하여 '꽃배달 왔다'고 하면서 집에까지 들어갔고,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강요했다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MBC 취재진은 전여옥 의원의 집을 방문하면서 '꽃배달원'이나 '꽃배달'을 가장한 적이 전혀 없고,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강요한 일도 전혀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는 물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

목포수협 조합장이 직원의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목포KBS-1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목포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검찰, 목포수협 조합장뇌물 수수 의혹 수사』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30일 21:00)

내 용 : 앵커 : 이어서 전남 목포권 소식입니다. 현직 목포수협 조합장이 승진청탁과 함께 수협 직원들로부터 고액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목포수협 김모 조합장이 지난 2003년 9월 수협 직원 A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금 천만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김조합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수협 현직 간부 B씨의 비밀 서류에도 이 같은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A씨와 함께 함평읍에서 돈을 인출한 뒤 조합장의 아파트를 찾아가 돈 가방을 전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B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당시, 부하직원인 A씨가 승진 문제로 고민하자 조합장과 잘 알고 지내던 자신이 나서 돈 전달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 이야기를 해줬지요. 승진을 할라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1,000만 원 … 준비하라.

▷기자 : 예.

▷전○○ : 예.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께 지가 결정했다 하니까.

▷기자 : A씨는 돈 전달 의혹시점으로부터 2주 뒤 승진대상자로 선정돼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승진교육연수를 이수했고, 지난 2005년 과장직무대행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조합장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김조합장이 또 다른 수협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2차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목포수협 조합장 뇌물수수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30일자 9시 뉴스에서 '목포수협 조합장 뇌물수수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목포수협 조합장이 직원의 승진 대가로 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목포수협 조합장은 위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목포지청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관련된 광주지법목포지원 1심 판결선고시 판결내용을 즉시 보도하고, 한편 광주지검목포지청의 불기소처분, 특히 직원 1천 만 원 뇌물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목포지청의 결정시 결정내용을 즉시 보도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목포KBS-1TV〉 목포지역방송 시간대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화면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중앙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여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목포수협이 위판과정에 개입해 특정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어민들이 다른 지역 위판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목포수협의 위판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목포KBS-1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목포KBS-1TV : 「KBS뉴스9」 프로그램 『어민도 수협 비리 폭로』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6일 21:00)

내 용 : ▷김○○ : 목포수협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이 수협 위판권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 20년째 안강망 어선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정모 씨, 계속된 적자에 지난 12월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은 팔았고, 나머지 한 척도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와도 수협 위판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대출자금마저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 : 눈밖에 나는 배는 그냥 '어' 해놓고 딱 떨쳐버려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예. 여기서 쭉 서가지고 10만 원 낸 사람, 15만 원 낸 사람, 20만 원 낸 사람 있어도, 10만 원 낸 사람한테 떨쳐버려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버려요.

▷이○○ : 정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민들도 고기를 잡고 목포항에 도착 했는데도, 아예 운반비를 들여 영광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위판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 : 이런 지방에다 푸면 경비 절약되지, 인, 또 사람이 그만큼 고생 않지, 이런 것 저런 것 무시하고 인자, 여기다 푸면은 고기값을 안 줘버린데 여기다 풀 수가 있겠어요?

▷이○○ :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차 윤곽을 드러나면서, 급기야 어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그동안에 목포수협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조합장이 목포수협 위판장 경매에 관여해 눈밖에 난 어민들에겐 불이익을 받게 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경매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가격을 일부러 폭락 시켰다는 어민들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반발은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논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어민도 수협비리 폭로'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6일자 9시 뉴스에서, 목포수협이 위판과정에서 눈 밖에 난 배는 가격을 내리고, 조합장이 위판장 경매에 관여해 눈밖에 난 어민들에게는 불이익을 받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어민들이 다른 지역 위판장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포수협과 조합장은, '목포수협은 각 업종별 어업인 및 위판관련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한 뒤 위판장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그 위판장 운영규칙에 따라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부 어민들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또한 목포수협의 중매인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경매를 하는데 각자 자기 이윤을 추구하여 경매에 임하기 때문에 타인의 지시를 받으려 하지 않아 조합장이 경매에 관여할 수가 없고, 목포수협의 위판 실적은 2002년에 400억 원대이다가 2008년에는 86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목포KB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이 병 순
조정대리인 배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목포KBS-1TV 뉴스9〉 프로그램 시간에 보도하되, 내용은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아니한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화면

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1.

〈별 지〉 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6일 〈뉴스9〉 프로그램 '수협 문제점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수협과 조합장이 위판장 경매에 관여해 눈 밖에 난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어민들이 타 지역 위판장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과 조합장은 위판장 운영은 각 업종별 어업인 및 위판관련 단체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거친 후 '위판장 운영규칙'의 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일부 어민들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또한 목포수협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경매를 하고 있고, 중매인들은 각자 자기 이윤을 추구하여 경매에 임하기 때문에 타인의 지시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

목포수협 조합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광주KBS-1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주KBS-1TV :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목포수협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27일 19:30)
내 용 : 〈2009광주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광주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Ⅰ. 정정청구
〈2009광주조정12의 합의사항 참조〉

Ⅱ. 반론청구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27일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목포수협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라는 제목으로 목포수협이 어민들의 고기를 대가없이 가져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은 자체의 지정 중매인을 두고 직접 고기를 구입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목포수협이 필요한 고기는 자체의 지정중매인을 통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위판과정에서 잘못 보인 어민에게는 사전 협의 없이 많은 돈을 공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 어민들이 목포수협을 떠나 관외에서 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에 대해 목포수협 측은 어민들은 출어시 선수물자대금, 유류대금 등을 지원받아 출어하는데 입항하여 위판을 하면 그 위판대금에서 지원받은 유류대금을 공제토록 수협 업무규정

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업무규정에 따라 공제를 할 뿐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주KBS-1TV〉「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시간대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화면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중앙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KBS-1TV :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2009년 5월 22일 19: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목포수협 조합장이 수산인협회가 해체되면서 남은 공금 1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목포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목포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상한 돈거래』 제하의 보도 (2009년 1월 30일 21:00)

내 용 : ▷이○○ : 인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목포수협 조합장에게 어민들의 모임인 수산인협회 공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MBC가 이상한 돈거래의 흔적이 담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양○○ : 목포 수산인협회 전 회장인 정모 씨 명의로 지난 2005년 6월 개설된 수협통장 거래내역서입니다. 협회를 해체하면서 남은 공금으로 보관 중이던 1,000여만 원은 9개월 뒤 갑자기 전액 인출됐습니다. 정씨는 당초 이 돈을 수협 풍어제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수협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장은 조합장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통장은 수협신용부에서, 도장은 자신이 관리하다 2006년 3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조합장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 '풍어제 때 써버리시오.' 하고 줬는데, 안 쓰고 한 달 후에 다시 나를 불러서, 개설해 놓고 한 8개월 후에 자기가...

▷양○○ : 이 돈의 용처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조합장은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일고 있는 음해라며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합장 : 아, 이것 음해예요. 음해다. 선거 때마다 오는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해다. 꼭 이 시점에.

▷양○○ : 하지만 김조합장이 직원에게 승진인사를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의혹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목포수협 조합장에게 수산인 협회 공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30일자 9시 뉴스데스크에서, 수산인 협회가 해체되면서 남은 공금으로 보관 중이던 천여만 원이 목포수협 조합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목포수협 조합장이 풍어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목포지청의 수사 결과로도 혐의가 없는 것으

로 드러났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목포수협관련 후속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30일「9시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서 수산인협회가 해체되면서 남은 공금으로 보관 중이던 천여만 원이 목포수협 조합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항고 후 재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해 목포지청의 무혐의결정이 내려질 시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목포MBC-TV〉 목포지역방송 시간대에 즉시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화면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중앙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목포수협 조합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6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중앙통신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통신뉴스 : 『목포수협 조합장 "금품과 향응 등 부당 이득 취해"(1편)』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광주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광주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Ⅰ. 정정청구
〈2009광주조정12의 합의사항 참조〉

Ⅱ. 반론청구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30일과 2월 4일 목포수협의 위판장 이용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자신에게 협조를 하지 않은 조합원은 동부위판장에 자리가 있는데도 서부위판장으로 보내 어가를 하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은 위판장 운영은 각 업종별 어업인 및 위판 관련단체의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거쳐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조합장에 협조하지 않은 일부 어민들만을 서부위판장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특정 어민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채무를 변제 받도록 지점에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목포수협은 각 지점은 독립채산제에 입각하여 연말 결산결과에 대해 지점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지점장 판단사항이며, 조합장은 채권추심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31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중앙통신뉴스 메인화면 중앙TV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중앙TV 표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타 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통신뉴스 : 『[반론보도문] 목포수협 위판장 이용 관련』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목포수협 조합장이 위판장 이용과정에서 특정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도했으나, 위판장은 '위판장 운영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중앙통신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통신뉴스 : 『목포수협장 비리사건(2) 선주들 "배까지 팔아야만 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광주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광주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16의 반론청구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통신뉴스 : 『[반론보도문] 목포수협 위판장 이용 관련』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기아차 노조가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의 징계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아차 지부가 속해있는 금속노조에서 이미 가해자를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외 2인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m b n : 「mbn 오늘」 프로그램 『기아차 노조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거부』 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15일 06:21)

내 용 : 〈2009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mbn : 「mbn 오늘」 프로그램 『'기아차 노조 징계 거부 건'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7일 08:14)

내 용 : mbn은 지난 4월 15일 '기아차 노조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 거부'라는 제목의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과 대의원들이 성폭행 가해자의 제명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성폭행 가해자가 이미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고 보고했으며, 대의원들도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당시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광명시 공무원들이 지역 문화축제 개막식 공연기획 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효 선)
피신청인 : 광명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명일보 : 『〈오리문화제/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업체 선정 공무원 개입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3일자 1면)

내 용 :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합동으로 개최될 예정인 오리문화제·평생학습축제의 개막식 공연 기획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의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월 6일(금) 오리문화제와 평생학습축제를 담당하는 문화원, 평생학습원, 시청 문화체육과·평생학습청소년과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자 연합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 실무자 연합회의는 4월 초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4월 6일 이진호 부시장 주재로 합동 회의가 개최하고 '개막식은 평생학습원, 폐막식은 문화원이 분리 주관하는 당초 계획에 대해 개막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폐막식 예산을 개막식 행사로 몰아주어 개막식에 집중하기로 의결' 하였다.

개막식 2천 1백만 원, 폐막식 2천만 원, 무대비용 2천 8백만 원 등 총 6천 9백만 원의 예산으로 개막식 행사를 치루기로 결정되자 2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문화원 측은 4월 7일 폐막식 기획업체 및 무대업체와 계약을 전격 취소하였다.

개막식 준비 기획사 측에 무대 및 폐막식 기획 등을 통(total)으로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그 주관을 문화원에서 맡아서 진행한 결과 개폐막식 기획안(뮤지션 섭외, 무대 컨소시엄 포함)을 총 6개안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4월 14일 열린 제9차 실무자기획회의에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케이블 H방송의 개막축하행사 기획안을 제안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문화원 측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되어 광명시 측에 문화원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H방송의 기획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광명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16일 열린 부시장 주재의 축제기획회의에서 H방송 기획(안)이 재상정되었고 결국 H방송과 문화원 측이 협의를 거쳐 축제를 진행키로 세부 조율 작업을 마친 이후 지난 21일 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위 결정사항을 뒤집고 H방송의 기획(안)을 최종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원 측 일부 운영위원과 이사들이 "대안이 없다고 단체의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반발하였지만 안병식 문화원장은 "대안이 없다"며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의 과정에서 이진호 부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오리문화제/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업체선정 공무원 개입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1면에 "〈오리문화제/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업체선정 공무원 개입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축제기획 선정 과정에서 시의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부시장 주재 합동 회의에서 폐막식 예산을 개막식에 집중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과 16일 열린 부시장 주재의 축제기획 회의에서 H방송 기획(안)이 재상정되었고 … 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오리문화제 개막식 공연 기획업체 선정은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것이지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시장 주재로 열린 4월 6일 합동회의와 4월 16일 축제기획 회의는 심의 의결을 위한 공식협회가 아닌 실무협의 성격의 회의로서 의결이나 재상정 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오리문화제/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업체선정 공무원 개입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1면에 "〈오리문화제/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업체선정 공무원 개입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축제기획 선정 과정에서 시의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부시장 주재 합동 회의에서 폐막식 예산을 개막식에 집중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과 16일 열린 부시장 주재의 축제기획 회의에서 H방송 기획(안)이 재상정되었고 … 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광명시는 오리문화제 개막식 공연 기획업체 선정은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것이지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 주재로 열린 4월 6일 합동회의와 4월 16일 축제기획 회의는 심의 의결을 위한 공식협회가 아닌 실무협의 성격의 회의로서 의결이나 재상정 된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명일보 2009년 5월 11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일자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개, 폐막식 통합 제시…)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명일보 : 『〈오리문화제/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업체선정 공무원 개입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5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납골당을 다른 공동 소유자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외 1인
피신청인 : t v 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3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t v N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30세, 2,000억 대 자산가』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31

일 23:00)

내 용 : ▷김○○ : F4를 능가하는 럭셔리 엄친아, 장○○. 나이 서른에 자산이 2,000억. 2,000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2,000억.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고, 예, 얼굴도 굉장히 잘 생긴 준수한 외모. 예, 거기에다가 심지어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이 남자. 도대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에 이 잘난 남자가 왜? 왜? 왜 나왔을까요?

▷나래이터 : 대한민국을 온통 파라다이스 물결로 물들이고 있는 4명의 꽃남 배우, 이들 F4의 매력을 모두 가진 완벽한 남자가 나타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2,000억 자산가. 수입 명품 가구 CEO 장○○. (중략)

▷김○○ : 가늠을 못 하시겠죠. 그죠?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께 장○○ 씨가 갖고 있는 2,000억의 실체에 도움 될만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합부동산세로 낸 그 계산서네요?

▷김○○ : 종부세가 한 2억 3천 내셨네요.

▷장○○ : 이게 뭐냐면은 2006년도에 납골당을 경매를 제가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김○○ : 아, 납골당이 그러면 지금 본인 소유것이 있어요?

▷장○○ : 예, 예.

▷김○○ : 그게 지금 21억짜리가 지금 얼마짜리 됐어요?

▷장○○ : 기수가 3만기니까 평균 500만 잡아도 1,500억 정도.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1회 게스트 장○○ 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31일자 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제1회에서 "30세 2,000억대 재산가"라는 제목으로 게스트 장○○ 씨가 출연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납골당을 혼자서 낙찰받았는데, 해당 납골당의 가치가 그 운영 등을 통한 수입 등을 합쳐 약 1,500억 원대의 자산인 것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 씨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단독으로 납골당을 낙찰 받은 것이 아니고 납골당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 씨는 허가권이 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1/2의 지분권자로 그 재산가액이 경매 당시에 지불된 10억 5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방송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 방송에서 관련 공문서 등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 씨가 1,500억대의 남골당을 단독 낙찰 및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한 점에 대해 공동 낙찰인 및 허가권 보유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3월 31일 〈화성인바이러스〉 프로그램 「30세, 2,000억대 재산가」 제하의 방송에서 게스트인 장○○ 씨가 납골당을 낙찰받아 그 가치가 1,500억 원에 달한다고 방송하였으나, 해당 납골당의 토지와 건물은 장○○ 씨가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이 아니고 타인과 공동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1/2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납골당의 운영권을 승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19일 오후 23시에 방송하는 tvN 〈화성인바이러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메인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내보낸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tvN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19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안양시의원들이 부도덕한 언행과 처신으로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양시의회 (의장 김 국 진)
피신청인 : 내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외일보 : 『'기자수첩' 안양시의원과 진실게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4일자 수도권면)

내 용 : 지난 4월 2일 안양시의회 제159회 임시회에서 '이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질의요지는 안양시 동안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질병으로 치료받고 퇴원해 등급신청을 하면 즉시 등급판정이 가능하나, 만안구의 경우 최소 3~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안양지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노인요양보험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 질책성 발언이었다.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직접 '이모' 의원과 공단 만안구 담당자, 시청 사회복지과 등에 사실여부와 진실을 확인했으나 예상한대로 서로 얘기가 사뭇 달랐다. 한마디로 '진실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중략)

'이모' 의원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후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는 사건의 경위 파악과 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민원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모' 의원은 시청소속 공무원도 아닌 건강보험공단 만안지사장에게 시의회 보사환경위에 출석해 사건경위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 '안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스스로 위반해 안양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모' 의원의 위와 같은 사례는 시의원의 월권적한 건(件)주의, 공명심, 자기과시적인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안양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말도 많았다.

김국진 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있었던 공무국외여행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형식적인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 양 정당간 경쟁적으로 벌이는 의미없는 봉사활동, 각종 시(市)행사에 얼굴 알리고, 소개 받고, 사진찍기 위한 행사참여, 상임위에서나 있을 법한 수준 이하의 시정질문, 시민의 혈세(血稅)만 낭비하는 지방도시 방문, 지위를 이용해 사업적 이권을 챙기거나 지역선거구를 빙자한 무리한 압력성 청탁 등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언행과 처신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노력을 선도해야만 할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양시의원과 진실게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4일자 수도권면에 안양시의원과 진실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단부분에 안양시의원 전체가 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만을 하는 의원들로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떨어 뜨리고 있다고 기자수첩을 통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안양시의원들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의정활동과 정당별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또한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에

잘못된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외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2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조합으로부터 거짓 제명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외 2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6.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성폭행 사건 가해자, 민노총, 거짓 제명?』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A12면)

내　용 : 민주노총 성폭행사건의 가해자인 김○○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구속중) 제명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기아차의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제명했으니 이미 제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아차 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기아노조사수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발표, "김○○은 3월 10일, 4월 10일 조합비가 납부된 상태로 지금도 기아노조 조합원 신분"이라며 "(금속노조의) 한 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씨가 이미 제명됐다고 주장한) 금속노조의 13, 15일 성명은 또다시 전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기아차 노조가 김씨를 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본지 기사에 대해 13, 15일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가 김씨를 제명했으니 지부(기아차 노조)에서 다시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조선일보 기사는 거짓 보도"라고 주장했었다.

〈본지 13일자 A10면, 15일자 A12면 참조〉

◇"금속노조는 1차 징계권 없다"

기아노조사수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금속노조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조선일보를) 공격해 허물을 덮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금속노조는 김○○에 대한 1차 징계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상벌규정 제10조는 '조합원의 징계는 해당 지회, 해당 지부에서 의결하고 재심만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책위는 "금속노조에서 조합원 제명을 하면 지부에서 다시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금속노조 주장에 대해 "(기아차 노조의 징계 의결이 없는) 금속노조의 징계는 기아노조에 천재지변과 동일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상벌규정 10조 4항은 '징계 심의기관의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하급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금속노조는 기아차 노조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김씨를 징계한 근거로 이 규정을 들고 있다. 금속노조의 주장대로라면 기아차 노조는 '문제가 있는' 노조가 되는 것이다.

◇김씨 월급에선 조합비 나가

금속노조는 김씨를 "2월 13일 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월급통장에선 3월 10일과 4월 10일 월급날에 각각 2만748원씩 '노조회비'로 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씨는 4월에도 조합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보는 게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본지 통화에서 "조합비는 회사가 공제한 뒤 노조에 보내기 때문에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

며 "김씨가 조합비를 냈더라도 이는 행정적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본지는 21일 금속노조 측에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금속노조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폭행 사건 가해자 민노총, 거짓 제명?〉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4월 22일자 사회면에 "성폭행 사건 가해자 민노총, 거짓 제명?"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이 성폭행 가해자를 거짓 제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미 가해자는 금속노조에서 조합원 제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금속노조는 1차 징계권이 없고, 가해자가 2번의 조합비를 납부해 지금도 기아노조 조합원 신분이라는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 기아차 지부가 징계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시 기아차 지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금속노조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합비 납부는 기아차 지부의 실수로 13일 조합비공제 중지 통보를 했고, 환불조치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가해자가 '지금도 조합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161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2009서울조정161의 조정결정 이행결과 참조〉 □

인터뷰 의도와는 달리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외 2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강아지 기생충 주의보』 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25일 08:30)

내 용 : 오늘아침 브리핑 우리 집 애견, 기생충 주의보!

▷한 여자분 : 저는 시집 안가고 강아지만 데리고 살려고요.

▷정○○ : 거의 뽀뽀랑 진한 키스정도?

▷아나운서 : 우리랑 동거동락하고 지내는 사랑스러운 애견들. 그런데 이 애견이 주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데요. 애견이 건강해야 주인이 건강한 이유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중략)

▷아나운서 : 애견과 신체접촉이 잦은 만큼 그 주의가 요구되지만 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다는데.

▷정○○ :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수시로 (접촉해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29일까지 신청인 정○○에게 금원 700,000원을, 신청인 김○○ 및 신청인 최○○에게 각 금원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

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 정○○, 신청인 김○○, 신청인 최○○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700,000원 지급〉 □

울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전 이사장인 신청인들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외 2인
피신청인 : 울산제일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울산제일일보 : 『울산자동차검사 정비조합 '내홍'』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7일자 5면)
내 용 : (사)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하 정비조합)이 전 이사장들의 공금횡령 등의 문제를 두고 이를 파헤치려는 제5대 집행부 K이사장 해임시켰다며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26일 정비조합과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K이사장을 해임 이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감사와 일부 이사진들이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A씨를 해임시켰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현 이사장(직무대리) B씨, 전 이사장 등이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A씨는 문제가 없는데 조합을 비대위가 음해하고 있다고 법적 비화해 조합이 내분으로 얼룩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비조합은 현 집행부와 이를 반대하는 비대위로 나눠져 정상적인 조합원들을 위한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비방과 욕설에 가까운 단어로 흠집 내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 이사장들은 수천만 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감사에 지적돼 이사장직을 상실했고 A씨가 이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며 아직 이같은 횡령사실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회면에 울산자동차검사 정비조합 전 이사장 P씨와 U씨가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조합 직원 A씨가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소송비를 조합비로 충당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 이사장들은 공금 횡령과 관련없으며, 이는 당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는 소송비를 조합비가 아닌 개인들의 모금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본 문 : 본지는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회면에 울산자동차검사 정비조합 전 이사장들이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조합직원 최부장이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소송비를 조합비로 충당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조합 내부 감사 결과, 당시 폐기물과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전 이사장들은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또한, 최부장은 소송비를 조합비가 아닌 개인들의 모금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9년 5월 26일까지 울산제일일보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비대위, 남부서에 내사요망 의뢰… 흠집내기")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울산제일신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0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이 시위 중인 용산 참사 유가족을 넘어뜨려 밟고 지나갔다고 보도했으나, 다른 시위자들과 뒤섞여 넘어진 것일 뿐 경찰이 짓밟은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용산경찰서 (서장 조 현 배)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프레시안 : 『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유가족, 실신 뒤 병원 후송』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창졸지간에 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참사 유가족인 유○○ 씨는 시종 미동도 없이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말 그대로 '뻗어' 있었다. 뒤늦게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고 의식을 깨우려 했지만 유○○ 씨는 간헐적인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다. 결국 의식이 없는 유○○ 씨는 앰뷸런스에 실려 용산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22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였다.

이날 참사 현장에서는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2차 시국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정부 총력 투쟁을 위해 이날부터 현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용산 참사 건물 옆쪽에 천막을 설치하려던 이들을 저지하고 나섰다.

경찰이 유가족의 머리와 어깨, 배 등을 밟아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며 "용산경찰서는 물러서지 않는다"고 자진해산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범대위는 천막 설치를 강행했고 경찰이 천막을 강제로 빼앗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유○○ 씨는 결국 천막을 놓침과 동시에 길바닥에 엎어졌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천막을 압수한 경찰은 천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위를 둘러싸는 과정에서 넘어진 유○○ 씨의 머리와 어깨, 배 등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유씨는 정신을 잃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유가족, 실신 뒤 병원 후송"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집회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2일자 사회면에 "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유가족, 실신 뒤 병원 후송"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용산 화재사고 유가족 유○○ 씨의 머리와 어깨, 배 등을 밟고 지나갔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불법집회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서울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시위대 전면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천막을 압수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시위자들과 뒤섞여 넘어진 것으로, 경찰이 구둣발로 짓밟고 지나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당사는 이렇게 사실과 달리 왜곡 보도하여 용산 경찰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용산 유가족 구둣발로 짓밟은 적 없어"
• 내 용 : 프레시안은 지난 4월 22일「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유가족, 실신 뒤 병원 후송」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도로점거와 천막설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넘어졌는데도 유씨의 머리와 어깨, 배 등을 구둣발로 밟고 지나갔고 유씨는 정신을 잃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가 도로를 선점하고 천막을 설치하려는 것을 경찰이 차단하면서 서로 거친 몸싸움이 일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씨는 다른 시위자들과 뒤섞여 넘어졌던 것이고 경찰이 유씨를 구둣발로 짓밟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가 이날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인권 경찰이 아닌 학살 경찰"이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경찰은 "당시 집회는 명백히 불법이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던 것이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날 공무집행 과정에서 '학살'은 커녕 '폭력'이라고 언급될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22일까지 〈프레시안〉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 위 항을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바로 아래에 위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프레시안 : 『"용산 유가족 구둣발로 짓밟은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시위 중인 대학생들을 부당하게 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시위자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였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용산경찰서 (서장 조 현 배)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프레시안 : 『용산 참사 현장에서 대학생 십수 명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용산 참사 현장에서 10여 명이 넘는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됐다.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는 이유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30분경 용산 참사 현장으로 행진하던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 공동행동' 소속 대학생 200여 명이 경찰에 가로막힌 뒤 이중 일부가 연행됐다. 경찰은 자진 해산을 하던 대학생을 쫓아가 인도 상에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지휘한 용산경찰서는 대학생의 연행을 말리던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한 명(여성)도 연행했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숨진 고 이○○ 씨의 부인 전○○ 씨와 며느리 정○○ 씨가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이들의 연행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상복이 찢어져 속옷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

또 연행에 항의하며 호송버스 창밖으로 나오려던

전○○ 회원을 전의경과 사복형사들이 엉덩이 등을 만지며 버스 안으로 밀어 넣는 일까지 발생했다. 범대위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사건 직후 성명을 내고 "고인을 추모하려던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전○○ 회원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이 연행된 전○○ 회원을 성추행하고 유족을 폭행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30일자 사회면에 "용산 참사 현장에서 대학생 십수 명 연행(범대위 "경찰, 연행된 전○○ 회원 성추행…유족들 폭력도)라는 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전○○ 회원을 성추행 하고 유족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공동행동 대학생 200여 명은 삼각지역에서 신용산역까지 진행방향 전차선을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을 방해하여 3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소속 김○○ 씨가 경찰의 연행에 격렬히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호송차에 태웠으며, 여경 2명이 김○○ 씨를 호송버스 좌석에 앉히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며 버스 창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여 창문 밖에서 경찰병력이 김○○ 씨의 몸을 떠받치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며,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렇게 사실과 달리 왜곡 보도하여 용산경찰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연행된 전○○ 회원 성추행, 사실 아니다"

• 내 용 : 프레시안은 지난 4월 30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대학생 십수 명 연행」 제하의 기사에서 "'용산 참사 추모 시위' 진압 과정에서 호송버스로 연행된 여성 시위자가 항의하며 창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찰이 엉덩이 등을 만지며 버스 안으로 밀어 넣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규탄 성명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대학생 공동행동 200여 명은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여 이 중 38명을 연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소속 김모 씨가 경찰의 연행에 격렬히 저항하며 호송버스 창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여 창문 밖에서 경찰병력이 김씨의 몸을 떠받치며 김씨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었을 뿐 성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22일까지 〈프레시안〉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 위 항을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바로 아래에 위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프레시안 : 『"연행된 전○○ 회원 성추행,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시위 중인 대학생들을 부당하게 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시위자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였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용산경찰서 (서장 조 현 배)
피신청인 : 민중의소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민중의소리 : 『"경찰, 자진해산하는 대학생 연행하고 성추행까지"』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6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6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민중의소리 : 『[알립니다] 용산경찰서, "성추행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69의 합의사항 참조〉 □

교통사고로 입원한 신청인을 속칭 '나이롱 환자'로 묘사하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나이롱 환자 권하는 사회』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2일 23:10)
내 용 : "10대 나이롱 환자 대장"

병원 다시 가요. 그럼 병원 관할 담당이 또 바뀌는 거에요.

내가 지금 ○○보험회사인데, 여기 있는 보상직원이 짜증나게 해 120만 원을 부르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병원을 옮기려고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이 한 기업가와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성 헌 (국회의원)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이성헌, 박근혜와 만남 주선 대가 수

천만 원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일자 정치면)

내 용 :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한 기업가와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을 주선해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이의원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인 지난해 5월 LED 등을 제작하는 B기업의 김 아무개 회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게 해준 뒤 김회장의 사업파트너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프라임그룹 수사와 관련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어제(4월 30일) 이의원을 검찰로 불러 9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의원이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며 "이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와 김 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적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성헌 의원 수수의혹 사실과 달라(또는 이성헌 의원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일자 기사에 "이성헌, 박근혜와 만남 주선 대가 수천만 원 수수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성헌 의원(당시, 조직총괄단장)이 만남 주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성헌 의원은 당시 만남 주선의 대가로 어떠한 자금도 수수하지 않았으며, 수수의혹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 수용의사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이 가짜 남편을 대동하고 법원에 출석, 협의 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가로챈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Ⅰ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사기' 당한 법원』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자 11면)

내 용 : 외국에 체류 중인 회사원의 아내가 남편을 가장한 제3의 남자를 내세워 법원을 속여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3월부터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9) 씨는 지난 1월 귀국해 처가(妻家)에 들렀다가 아내 박모(35) 씨와 '협의이혼'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적도 없고, 법원에 함께 가서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협의 이혼은 이혼을 청구한 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절차가 끝나도록 돼 있다.

이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고, 사흘 뒤인 24일에 아내 박씨와 이혼이 확정됐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은 이씨가 두바이에 머물고 있던 때였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이씨의

'출입국 증명서'에는 2008년 3월 29일 두바이로 출국한 후 현지에 머물다 지난 1월 23일 처음 귀국한 것으로 돼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된 이혼서류에는 남편 이 씨가 아내 박씨에게 위자료 13억 원과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네살 난 딸의 양육은 남편 이씨가 맡도록 돼 있다. 부인 박씨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세금 1억 2,000만 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4억여 원 등 결혼 후 모은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기' 당한 법원의 정정보도입니다.
• 내 용 : 지난 2009년 2월 16일 '사기 당한 법원' 제하의 기사에서 박모 씨가 가짜 남편을 대동해 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가로채는 등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모 씨는 결혼 경력이 있는 이 씨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모 씨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에서 당사자간 이혼을 합의하고, 남편인 이모 씨가 대리인을 출석시켜 이혼하자고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박모 씨는 법원의 합의이혼 절차를 잘 몰라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박모 씨가 사기이혼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모 씨가 박모 씨가 운영하던 가게 등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박씨는 위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고, 기사가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 씨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알려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후속 보도문을 게재하며, 형식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한다.
•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 내 용 : 지난 2월 16일자 사회면 〈'사기' 당한 법원〉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신청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등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보도 이후 저희 조선일보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신청인의 지적에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 소속 직원인 정○○ 기자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직접 대면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현재 기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계약 해지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불필요한 카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발생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아이넷스쿨 (대표이사 목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계약해지 질~질, 할부수수료 '덤터기'"…"할인해준 거잖아"』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7일자 종합면)

내 용 : 온라인교육 사이트인 '아이넷스쿨'이 계약해지를 미적미적 미룬 뒤 해지지연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전가시켰다는 소비자불만이 접수됐다.

울산시 매곡동의 정모(남·47세) 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온라인교육사이트 '아이넷스쿨'에 가입했다. 정씨는 18개월 치 수강료 16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강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워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며 기다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답답해진 정씨가 재차 문의하니 "3개월분 수강료와 교재 값 33만 6,000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답했다.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말에 정씨는 다음날 바로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계약해지는 여전히 함흥차사였다. 이처럼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씨 계좌에서는 할부금이 매달 결제되고 있었다.

화가 난 정씨가 업체에 다시 전화해 "할부금 자체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4개월째 발생한 할부수수료는 누가 책임질꺼냐?"고 거세게 항의하자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수수료는 지급 못한다."며 배짱을 튕겼다.

정씨는 "업체의 늑장으로 할부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배짱을 튕기는 태도에 기가 찬다. 계속된 말 바꾸기에도 지쳤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계약해지 지연, 할부수수료 덤터기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자 종합뉴스 종합에 "계약해지 질~질, 할부수수료 덤터기", "할인해준 거잖아"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넷스쿨이 계약해지를 지연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켰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이넷스쿨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5월 4일 정상적으로 해지처리를 해줬으며 소비자(희원엄마)는 1월 말에 전화로 해지접수 하고 이후 회사에 내용증명이나 해지관련하여 문의한 적이 없어 이 점을 소비자도 인정하는 바 1월~3월 청구된 카드할부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만 카드취소가 상계처리 되기에 다소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아이넷스쿨이 1개월분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환불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 조합에 소속된 김치 업체들이 제품 생산 실적이 없는데도 군납 입찰 자격을 획득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표자 박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내일신문 : 『"군납 입찰 담합비리 더 있다"』 제하의

기사(2009년 4월 28일자 16면)

내　　용 :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김치업계의 군납 입찰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군에 납품하는 일부 물품 입찰에서도 담합이 이뤄지고 있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담합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들이 적격업체로 둔갑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정직하게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지역 김치 군납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을 한 인제식품, PFC, 봉황, 진부식품, 대봉 등 5개 업체에 대해 지난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2년간에 걸쳐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김치류의 군납 경쟁입찰 중 강원지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들러리를 동원해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인제식품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가 전체를 낙찰받아 33억 원 상당의 김치류를 납품했다. 2008년에는 PFC를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가 37억 원 상당의 김치류 군납계약을 낙찰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군납 입찰 담합비리 더 있다(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8일자 16면 산업편에 "군납 입찰 담합비리 더 있다"라는 제목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하지않고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을 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4월 24일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하면서 조합정상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내부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직접생산 확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직접생산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조합 이사장 선출은 불법(선거정족수 미달)으로 선출 된 사실로 확인되었고, 조합에 대한 외부기관의 내부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전 안건으로 고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의결처리한 불법적 의결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8일자 "군납 입찰 담합비리 더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했으며, 조합정상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내부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선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조합 이사장 선출이 연기됐으며, 내부 감사 실시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5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산업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1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미디어오늘과 정치권의 지원금을 받아 '이승복 오보 전시회'를 주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98년 언개련이 개최한 이승복 오보전 DJ 정권 실세·미디어오늘이 지원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7일자 8면)
내 용 : 지난 1998년 가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주최의 '오보(誤報) 전시회'가 언론노조 기관지인 미디어오늘과 김대중 정권 실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5년부터 99년 1월까지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 비평 주간지인 '미디어오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 씨는 6일 "1998년 가을 언개련을 지원하기 위해 손○○ 당시 언론노조연맹위원장 직무대행과 그 해 7월쯤 윤○○ 서울신문 전무를 만나, 미디어오늘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고 이 광고비 중 일부를 언개련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울신문 전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당시 의원의 처남으로 김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4월 서울신문에 입사해 부사장을 거쳐 스포츠서울21 사장을 역임했다. (후략)

(2) 『"1998년 '이승복 오보 전시회'는 DJ정권의 기획 작품"』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7일자 35면)
내 용 : 1990년대 후반 언론노조연맹 기관지 미디어오늘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김강원씨가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합(언개련)의 '이승복 오보 전시회'는 조선일보를 흠집 내기 위해 김대중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작품"이라고 증언했다. 김 씨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이 조선일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친위적 시민단체들을 동원했다"며 "그 대표적 단체로 만들어진 언개련이 맨 먼저 한 일이 '이승복 오보 전시회'를 통한 조선일보 때리기"였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언론개혁시민연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자 사회면에 "98년 언개련이 개최한 이승복 오보展 DJ정권 실세·미디어오늘이 지원했다?"라는 제목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김대중 정권 실세의 도움으로 미디어오늘로부터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보전시회'를 주최하였고, 위 지원금을 김○○ 전 미디어오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으며 위 지원금의 전달 문제 때문에 김○○이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미디어오늘을 사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미디어오늘로부터 오보전시회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가 실린 같은 날에 "1998년 '이승복 오보 전시회'는 DJ정권의 기획 작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이 조선일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친위적 시민단체들을 동원했다. 그 대표적 단체로 만들어진 언개련이…"라는 김○○의 주장만을 근거로 위 사건을 논평하면서, 이를 기정사실인양 왜곡하였고,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친위적 시민단체의 대표적 단체',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언개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민주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정권의 홍위병으로 몰락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한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이승복 오보 전시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98년 언개련이 개최한 이승복 오보전 DJ 정권 실세·미디어오늘이 지원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7일자 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7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중재17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2009서울조정176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 업체가 산업 폐기물을 신고도 하지 않고 임야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인선이엔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서울일보 : 『공무원이 폐기물 불법매립 주도』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2일자 사회면)

내 용 : 연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종중 땅인 임야에 폐기물로 분류되는 슬러지(오니)를 수만 톤 매립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서모 씨(연기군청 근무·56세)는 지난달 27일 연기군내에 소재한 E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샌드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오니)를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자체에 매립승인 허가신고도 없이 전의면 신정리 야산(4,500㎡)에 불법 매립해 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무원이 폐기물 불법매립 주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2009년 05월 12일 서울일보 기사면에 "공무원이 폐기물 불법매립 주도" 이라는 제목으로 연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종중 땅인 임야에 폐기물로 분류되는 슬러지(오니)를 수만 톤 매립 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있어 추이가 주목 되고 있다. 연기군내에 소재한 E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샌드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오니)를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자체에 매립승인허가도 없이 전의면 신정리 야산(4,500㎡)에 불법 매립해 온 사실이 밝혀

져 물의를 빚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한 기사를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E업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이 아니라, 순환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선별토사를 단순 공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측과 관련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보도하기로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손해배상 사건을 취하한다. □

신청인 업체가 발간한 리포트를 무단 게재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 (대표 금 ○ ○)
피신청인 : 월간 HRD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월간 HRD : 『임직원의 전 생애를 책임진다 아시아나항공의 생애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호 98~101면)
내 용 : 조직 내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단기간의 교육 투자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임직원들의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이 같은 물음에 'YES'라고 명쾌한 답을 내놓은 기업이 있으니, 바로 (주)아시아나항공이다. 대학생이 첫 손에 꼽는 '일하고 싶은 직장' 답게, 구성원 육성에 대한 관심을 조직 내부 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월간 HRD』는 2009년 3월호 98~101쪽에 〈임직원의 전 생애를 책임진다 아시아나 항공의 생애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 기사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2009년 1월 발간한 단행본 『작업장혁신 컨설팅 리포트』 83~87쪽에 실린 〈아시아나항공의 생애경력개발 프로그램〉 제하의 보고서를 저작권자인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재한 내용으로서 본지는 잡지 제작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월간 HRD :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호 132면)
내 용 : 〈월간 HRD〉의 3월호 CASE STUDY (98P~101P)에 게재한 '아시아나항공의 생애경력개발 프로그램' 이라는 기사 내용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발행 배포한 〈작업장혁신 컨설팅 리포트〉 평생학습 근무제도 2007~2008이라는 단행본의 내용을 제공받아 정리 수록하였음을 알립니다. 기사 자료를 제공해 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소장 금○○) 관계자 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

도박판 검거 소식을 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으나, 사건은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강원도민일보 : 『도박판 벌인 6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3일자 5면)
내 용 : 현직 경찰관과 회사원 등이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속칭 '고스톱' 도박판을 벌인 경찰관 A씨와 회사원 B씨 등 모두 6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쯤 모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판돈 400여만 원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적발 시간이 평일이었던 점을 감안해 경찰관 A씨가 근무지를 이탈해 도박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5월 13일자 5면에 『도박판 벌인 6명 입건』 제목으로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쯤 모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판돈 400여만 원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인근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실내골프연습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인선이엔티
(대표이사 오 ○ ○, 최 ○ ○)
피신청인 : 히트뉴스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히트뉴스 : 『"잘 몰라서" 폐기물 불법매립?』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7일자 경제사회면)
내 용 : 지난 4월 27일 ㅇ업체는 샌드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오니)를 해당 장소에 폐기물 매립신고 및 승인허가도 없이 전의면 신정리 야산에 불법 매립했다.

업체 관계자는 "샌드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토사와 50:50으로 혼합해서 재활용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행정도시사업지원소장의 조카인 이 업체 서과장은 "종중 선산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월 27일 하루 작업을 했다."며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것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곳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업체에서 작성한 서류상 15톤 트럭 140여대 분량으로 2200여톤에 이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는 지난 2009년 5월 7일자 메인화면 『"잘 몰라서" 폐기물 불법매립?』 제목 하의 기사와 관련해 가) "전동면 송성리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ㅇ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정매립지가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ㅇ업체는 폐기물을 불

법으로 매립한 것이 아니라, 순환골재 생산 과정중 발생된 선별토사를 단순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취재기자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오보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 "지난 4월 27일 ㅇ업체는 샌드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오니)를 해당 장소에 폐기물 매립신고 및 승인허가도 없이 전의면 신정리 야산에 불법 매립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앞서 바로 잡은 바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순환골재 생산과정 중 발생한 선별토사를 성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또한 ㅇ업체는 당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주의 요청으로 적법하게 재활용된 선별토사를 단순 공급하였고, 산지전용허가 여부는 토지 사용자인 토지주의 책임임을 확인하였기에 기사내용은 오보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78의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인 신청인들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일반인을 손목을 꺾은 채 강제 연행하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MB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2일자 20면)

내 용 :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09년 5월 서울 도심에서 발생했다. 지난 10일 일요일 밤 11시쯤 평범한 직장인인 ㅇ씨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로 끌려가 '즉결 심판' 통보를 받았다.

ㅇ씨에 따르면 이날 일행과 함께 여의도에 있는 일행 중 1명의 사무실로 가다 한나라당 당사 앞을 지나게 됐다. 이들은 넋두리삼아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들이 개고생한다"고 3~4회씩 외쳤다.

그러자 20~30명의 전경들, 경사, 경장 등으로 보이는 3~4명의 경찰들이 몰려와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ㅇ씨는 "소속, 직위, 이름 등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으나 경찰들은 제복을 가리키며 "여기 이름이 있지 않냐"고 응수했다.

ㅇ씨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라고 맞섰으나 경찰들은 아무런 고지 없이 ㅇ씨 일행을 인근 여의도 지구대로 끌고 가려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5월 11일자 "MB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5월 11일자 기사에서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제하 보도에서 2009년 5월 10일 밤 11시쯤 평범한 직장인인 ○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욕

설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로 끌려가 '즉결심판'을 통보받았다.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들이 개고생 한다"라며 서너 차례 외쳐 전경 20~30명의 전경들, 경사, 경장 등으로 보이는 서너 명의 경찰이 몰려와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씨는 "먼저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양 팔이 꺾인 채 경찰차에 태워 인근 지구대로 가게되어 약 1시간 30분쯤 대기하고 있자 즉결심판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관등성명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며, 지구대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따라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손목을 꺾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보도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물론 서울영등포 경찰서의 명예가 실추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내일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2일자 20면)

내 용 : 내일신문 지난 11일자 20면 "MB때문에 경찰이 개고생" 제하의 기사에서 '직장인 ㅇ씨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로 끌려가 '즉결 심판' 통보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ㅇ씨는 출동 경찰에게 관등성명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양 팔이 꺾인 채 경찰차에 태워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ㅇ씨의 요청으로 관등성명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ㅇ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음주소란 행위는 경범죄로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라 임의동행 대상이었기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임의동행이 이루어졌던 것인데도 마치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면서 강제로 연행했던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

경찰인 신청인들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일반인을 손목을 꺾은 채 강제 연행하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프레시안 : 『"MB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8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8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

프레시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80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대전일보 :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 '눈먼 돈'』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자 14면)
내 용 : 행정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형식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면서 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정산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마찰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중략)

실제 연기군 동면 문주리 마을회관 신축과정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지고 이 마을 이장이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장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지만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마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조모(40) 씨는 "마을기금과 노인회비, 옛 회관 매각비 등 4,000만 원을 투입했고, 시공사로부터 5,000만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는데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전모(52) 씨는 "이장이 시공사로부터 현찰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해 오다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들통나자 이를 마을기금으로 돌려놨다"면서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 회사가 같은 규모의 마을회관을 인근 마을에 신축했지만 1억 원 이상의 공사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문주리 회관은 5억 1,500여만 원, 예양리 회관은 3억 6,000여만 원에 신축됐다.

이에 대해 이모 씨는 "시공사로부터 가구 및 가전제품을 대납하고 남은 2,370만 원만 현찰로 받았다"면서 "시공사 측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검은 돈인 줄 알고 이왕 줄 거면 현찰로 달라고 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5,000만 원 발전기금 기탁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5일자 사회면에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 눈먼 돈』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 '연기군 동면 문주리 마을회관 신축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지고 이 마을 이장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주리 이장은 마을회 대표이며 동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관신축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연기군청에서 정한 보조금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책정된 보조사업비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이장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이 가짜 남편을 대동하고 법원에 출석, 협의 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가로챈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시스 : 『가짜 남편 세워 '협의이혼' 한 아내 피소』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 09:30)
내 용 : 〈2009서울조정1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7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가짜 남편을 대동하고 법원에 출석, 협의 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가로챈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Ⅲ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가짜 남편'과 이혼 후 재산뺏은 부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7일자 20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7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 업체가 친인척 공무원과 결탁하여 폐기물 수만 톤을 허가 없이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인선이엔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여성종합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여성종합뉴스 : 『연기군청4급 공무원 친인척 종중 야산에 폐기물 수 만 톤 불법 매립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5일 종합뉴스면)
내 용 :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는 연기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소 서모 소장(4급, 56세)의 친인척이 전의면 신정리에 위치한 야산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슬러지(오니)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고위공무원과의 결탁의혹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대전조정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78의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천신일 회장 토지 내 송전탑 선로 변경은 청와대의 특혜 때문'이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한전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신동아 : 『"천신일 땅 피하려고 두 차례 송전탑 선로 변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pp.106~115)
내 용 : (전략) 원래 설계안 멀쩡한데 바꿔"

총신대학교 정훈택 총장권한대행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확정한 원래의 설계안은 아무 문제없었다. 그대로 공사하면 됐다. 그런데 천회장 임야를 조금 물고 들어갔다. 불법 설계변경돼 대학과 마을 쪽으로 밀려 내려와 대학과 마을에 피해를 주게 됐다. '실세'에 대한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정 총장대행은"한전 측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설계변경에 이어 지난해 8월 22일 한 차례 더 송전선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송전탑 38기, 39기, 40기의 위치가 이때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회장 땅에 직접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송전탑의 위치변화에 따라 천회장 땅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땅 경계

지점으로 더 밀려 내려오게 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천신일 땅 관련 송전탑 특혜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5월호 특정 "정훈택 총신대 총장대행 폭로, 천신일 땅 〈150억〉 피하려고 두 차례 송전탑 선로 변경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훈택 총신대학교 총장대행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천 회장 땅을 우회하도록 송전탑 선로가 변경됐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하였고, 특히 청와대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천신일 땅' 문제를 보고받은 뒤 천회장 쪽에 유리하게 선로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 정권 실세인 이상득, 정두언 의원이 개입하였다고 폭로하며 주장한 듯이 보도하였습니다.(109면).

이에 대해 정훈택 총장대행은 "신동아에 폭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취재기자가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답하였을 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신대학교가 제기한 특혜 의혹은 한전에 대한 것일 뿐이며 이명박 정권이나 이상득, 정두언 의원과 관련해서는 총신대 측에서 전혀 언급하거나 주장한 바가 없었다"고 반론을 밝혀 왔습니다. (후략)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지난 5월호 「정훈택 총신대 총장 대행, "천신일 땅 〈150억〉 피하려고 두 차례 송전탑 선로 변경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정훈택 총장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권이나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 대한 내용은 신동아의 별도 취재 내용이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9년 7월호 〈말길 글길〉 코너에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신동아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동아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호 말길글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머리 염색약 원료의 부작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세화피앤씨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KBS-1, 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 2TV : 「뉴스9」 프로그램 『염색약 원료 부작용 심각』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13일 21:00)
내 용 : 머리 염색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인공 염색약에 들어있는 PPD라는 화학성분 때문입니다.

▷김○○기자입니다.

머리 염색약 때문에 일주일째 입원중인 환잡니다. 지금은 증세가 가라앉았지만 한때는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염색약 부작용 피해자) : "눈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안 보이고 가렵고 진물 흐르고 뻘겠으니까."

염색약에 들어있는 PPD성분 때문입니다.

PPD는 염색효과가 높은 화학물질로 아직은 이렇다할 대체재가 없어 국내 새치용 염색제 90% 이상에서 원료로 쓰입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박○○(서울 현대병원 전문의):"PPD는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급성 두드러기를 일으키는데, 심한 경우 후두 부종 같은 경우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식약청 팀장):"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현재 3%로 돼 있는 함량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부작용이 심각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사용전에 스스로 테스트를 하라고 권고할 뿐 이렇다할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PPD 성분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염색약을 골라서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을 때 사용을 중단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년 5월 13일 "염색약 원료 부작용 심각" 보도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13일자 9시 뉴스에서 "염색약 원료 부작용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특정회사의 염색약 제품 이미지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보도내용과 같이 보여드린 염색약 제품이미지는 지난 5월 13일자 본문 보도내용과 관련된 제품이 아닌 무관한 제품 이미지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시 보도된 당사의 제품 이미지와 같이 보도)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8,936,000원

신청 후 보도문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염색약 속 'PPD 성분' 알레르기 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9일 21:00)

내 용 : [알립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신청인 회사 제품 자료화면 모자이크 처리) (후략) □

신청인 단체가 난방설비공사 낙찰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연수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 ○ ○)
피신청인 : 인천연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연수신문 : 『우성2차 난방공사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1면)

내 용 : 연수2동 우성2차아파트 지역난방공사와 관련 8기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회)에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우성2차의 지역난방공사 입찰에 참여한 모 업체가 낙찰을 조건으로 500~1,500만 원씩 받고도 다른 업체를 선정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

특히 지난해 4월 전 7기 입대회와 지역난방공사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벌이며 8기 입대회가 구성된 뒤 같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연수2동 우성아파트 난방공사 입찰 의혹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9년 4월 22일자 1면에서 "우성2차 난방공사 의혹 불거져"라는 제목으로 연수2동 우성아파트 지역난방공사와 관련 8기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8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난방설비공사 낙찰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사기준 및 공사예정 금액에도 각동대표들이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동 대표 중 소수 몇 인이 타 경쟁사 보다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해당 업체와 공사예정금액을 논의하여 근접한 금액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Y업체가 입찰에 탈락한 사유는 4년전 과징금 부과내역 때문이 아니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안' 1번 (입찰가 및 시공능력 평가기준안)에 의해 입찰업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Y업체가 모 아파트와 지역난방하자와 관련해 소송 중이고 1년이 다 되도록 해결이 안 된 사유 때문에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안' 2번(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실시공 부실업체에 해당하는 감점안)에 따른 감점으로 인한 것이었고, Y업체 관계자가 제시한 입찰가는 73억6천1백만 원으로서 65억을 공사비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8기가 7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지역난방공사비의 과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배관교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공사비 부담이나 교체필요성 등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여 동의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면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업무중지가처분 소송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지식경제부 장관이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 관련, 발주회사에 두산중공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신동아 : 『"지식경제부 부적절한 개입으로 사업 1년 지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호 114~119면)

내 용 : 2조 8,000억 원대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공사 사업이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이하 지경부)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애초 2008년 6월 이 사업의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지경부의 개입으로 지난 1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 결과 공사 착수 지연으로 3,000억 원(1일 8억~9억 원)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했고, 국가적 전력수급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지경부는 올해 초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들에게 기술 수준을 갖추지 못한 두산중공업과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겉으로는 두산중공업에 입찰 참여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지만 내용상 두산이 사업권을 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한 것.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이므로 지경부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힘든 처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조 8천억 원대 당진 화력 9·10호기 표류 내막'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9년 6월호에 '2조 8,000억 원대 당진화력 9·10호기 표류 내막'이라는 제목으로 지식경제부가 당진 9·10호기 건설 관련 동서

발전에게 두산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식경제부는 동서발전에게 두산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2조 8천억 원대 당진 화력 9·10호기 표류 내막' 관련 알림

• 본 문 : 본지는 지난 6월호에 '2조8,000억 원대 당진 화력 9·10호기 표류 내막'이라는 제목으로 지식경제부가 당진 9·10호기 건설 관련 동서발전에게 두산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국내기업인 두산중공업을 입찰 대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면서 수의계약을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9년 8월호 '말길 글길' 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조8천억 원대 당진 화력 9·10호기 표류 내막)과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동아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호 말길글길면 64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대전MBC-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표절은 관행』 제하의 보도 (2008년 3월 10일 21:30)

내 용 : ▷앵커 : 지역대학에서도 교수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선 교수들은 하나같이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자 : 모 대학 스포츠산업과학부의 지난 2001년 석사논문과 2002년 대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자와 교수가 각각 쓴 논문인데 통계결과는 물론 연구목적과 방법, 결론부분까지 제자 논문과 똑같습니다. 취재결과, 이 통계자료는 지난 1994년 해당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가 쓴 것을 제자가, 그리고 다시 교수가 3번에 걸쳐 시차를 두고 똑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함께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과 교수 2명의 학술지 논문 3편도 제자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가 공저자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교수들은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제자들이 먼저 논문으로 쓴 뒤 학술지에 발표해 오해가 생겼다면서도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대전 모 대학 총장은 교내연구소에 낸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이 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 인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후략)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목원대 논문표절의혹 예비조사 돌입』 제하의 보도 (2008년 3월 15일 21:30)

내 용 : 목원대 교수와 제자 간 논문표절 의혹보도와 관련해 대학 측이 최근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연구진실성 예비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상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기된 문제를 전부 검증하기로

하고 이번 학기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목원대 교수 논문표절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3월 15일자 저녁 9시, 아침 7시뉴스 시간에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예비조사 돌입』 제하의 기사로 목원대 교수와 제자간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학 측이 최근 학내 연구윤리 위원회를 소집해 연구진실성 예비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강○○ 교수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5월 13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대전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9년 6월 3일 21:35)
내 용 : ▷앵커 : 일부 지역대 교수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일단락 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대전 모 대학에서 불거진 교수들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표절을 전제로 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신청인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이 있고, 각종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시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신문 : (1)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1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3일자 경제면)
내 용 :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엄청나 이를 둘러싼 온갖 비리가 '횡횡'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노른자위에 위치한 종로구는 재개발 사업을 수년째 진행해 오면서 온갖 비리에 연루,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종로구를 일컬어 재개발 비리의 온상지라고 칭하겠는가. 그러나 검찰은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수사를 단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다. 수사당국이 과거와 달리 사정 칼날을 높이 치켜든 것이다. 이에 세간의 이목은 검찰의 칼끝과 종로구 재개발 사업 비리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 본지가 '종로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4탄에 걸쳐 집중 취재해봤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심 내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개발 및 재건축에 비해서도 개발이익이 막대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허가권을 쥔 관할구청과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등의 로비가 구조화되어 있고, 이중 분양이나 횡령, 사기 등 온갖 비리가 '횡횡' 하고 있다. (중략)

검은 커넥션 제기된 중학동 구역

먼저 중학동 구역은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말들이 참 많았다.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온갖 불미스런 일이 연거푸 터져 나왔고 이로 인한 각종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학구역은 사업초기 당시 시행사인 인크레스코(구 KCD)와 종로구청 간에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KCD가 정비구역 지정 실효를 하루 앞둔 지난 2002년 7월 24일에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종

로구청이 접수받는가 하면, KCD가 도시재개발법이 규정한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 시행인가를 내줬다. (후략)

(2)『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2탄』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3일자 경제면)
내 용 : (전략) 최회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중학동 재개발 구역이 표류하게 된 원흉은 구 시행사이자 현 시행사의 실제 사주인 송동수 회장이 종로구청과 군인공제회, 금호건설 등과 짜고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3)『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2탄 후속편』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1일자 경제면)
내 용 : (전략) 검은 커넥션의 핵심인물 '송회장'
본지는 이들 간의 수년째 법정공방으로 만신창이가 된 중학동 재개발 구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몇 가지 발견 할 수 있었다. 종로구청과 시행사 인크레스코(구 KCD), 그리고 군인공제회와 금호건설 간에 특별한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그 중심에 현 시행사의 전신인 KCD의 송모 회장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송회장의 배후에는 인근 재개발 구역인 신문로 2-8지구의 시행사 (주)보스코산업의 최모 씨가 거론되고 있었다.
9년째 표류 중인 중학동 구역의 검은 실체 시행사 KCD 실 사주 '송회장'
본지는 이들 간에 커넥션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중학동 구역의 한 지주로부터 이들 간 얽히고 설킨 커넥션의 고리를 푸는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문건은 송 회장의 과거 전과이력과 KCD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조직도' 등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검은 커넥션의 핵심인물 '송회장'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2탄 후속편"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을 "검은 커넥션의 핵심인물 '송회장'"이라고 보도하면서 현재에도 중학동사업의 배후인물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특히 송회장이 사기를 비롯한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자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그 외에도 신문로 2-8지구 시행 최회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회장은 배후인물이 아니며, 신문로 2-8지구 최회장과 관련이 없고, 특히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음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및 5월 경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하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중학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송모 회장이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사기를 비롯한 사문서위조 등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신문로 2-8지구 시행 최 모 회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송모 회장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보도와 관련해 송모 회장은 신문로 2-8지구 최모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중학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모 회장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5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신문 3면에 2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5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사신문과 시사포커스 홈페이지 경제섹션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을 각각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전문이 보일 수 있도록 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7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신청인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이 있고, 각종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시사포커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포커스 :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3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8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8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18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포커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8일자 경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4·29 재보선을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분리기'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기계는 '투표용지 분리기'가 아닌 '전자 개표기'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조선일보 : 『투표용지 분류기 시험가동』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A8면)
내 용 : 투표용지 분류기 시험가동 4·29 재보선이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관리위원회 회원들은 마음이 급해진다. 인천 부평선관위 직원들이 21일 투표용지 분류기를 시험가동해 보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투표용지 분리기는 전자 개표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4월 22일 정치면에 '투표용지 분리기 시험가동'이라는 제목으로 인천 부평선관위 직원들의 전자 개표기 시험가동 장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투표지 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전자 개표기의 부속기기 중 하나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정치면 좌 측 상단에 상자 기사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4월 22일자 A8면 『투표용지 분류기 시험가동』 제하의 사진기사에서 4·29 재보선을 1주일 앞두고 인천 부평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분류기를 시험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보도에 등장하는 기계는 제어용 컴퓨터와 함께 작동하는 실질적인 전자개표기로서, 단순히 투표용지만을 분류하는 기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알 수 있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2009년 5월 20일자 '언론조정신청서' 및 2009년 5월 27일자 '추가자료' 등에도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2009년 5월 20일자 '언론조정신청서' 및 2009년 5월 27일자 '추가자료' 등에도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신청인이 위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 있으려면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전자개표기를 투표용지 분류기로 보도하였다는 점이 과연 신청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보도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제조업체가 자신은 투표용지 분류기와 기능이 다른 전자개표기를 제작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투표용지 분류기로 보도하였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는 진정한 의도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정정보도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전자개표기의 개표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다루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신청인의 보도는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한 투표용지 분류기의 소개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신청인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0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주)구들택 (대표이사 성 ○ ○)
피신청인 : 인터넷환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터넷환경일보 : 『폐기물 만여 톤 농경지 불법매립』 제하의 보도 (2007년 7월 30일자 종합면)

내 용 : 지난 2006년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주)구들택(대표 성○○) 공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강섬유 함유), 석면, 합성수지, 폐유가 함유된 사업장 폐기물 만여 톤 가량을 인근 사제리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이 업체 주차장 및 폐기물야적장,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 일대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하천 수질까지도 오염이 되고 있으며 불법으로 매립해 만든 주차장에 방치된 폐유가 관리 허술로 비만 오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방류돼 인근 하천 어족 멸종은 물론 자연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어 관할 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강원도 원주 소재 (주)구들택 폐기물 만여 톤 농경지 불법매립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인터넷환경일보는 지난 7월 30일 환경119 컬럼에 "폐기물 만여 톤 농경지 불법매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구들택은 1997년 12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조립식 옹벽생산시설을 위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경지에 불법매립이라 잘못 보도하였으며, 두 번째 회사 설립시 농지를 임대하여 조립식옹벽생산시설을 위한 연약지반 침하 방지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부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후 공장용지로 사용 하였고 현재는 본 공장의 야적장 부족으로 인하여 자재 야적장,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폐기물 매립 후 불법사용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였으며, 세 번째 사실 확인 없이 폐기물 매립 물량을 만여 톤으로 과장되게 기사화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추 측성 기사임을 밝히며 2007년 7월 30일 보도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2007년 7월 30일자 「환경119」컬럼 기사를 통해 '원주에 소재한 (주)구들택이 폐기물 만여 톤을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들택은, "97년 12월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조립식 옹벽생산시설을 위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기에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들택은 "연약지반 침하방지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부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과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장부지에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28일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환경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간부분에 위 항의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연결되도록 한다.
• 위 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위 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 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2009년 5월 27일까지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환경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7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경외과 의사인 신청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되고 다른 잡지에 실었던 글이 도용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건강다이제스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42 참조)

보도내용

건강다이제스트 : 『덜덜덜~ 수전증 창피하다구요?』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80~81면)

내 용 : 수전증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떨리는 경우로 누구나 한 번씩은 가벼운 수전증을 경험해볼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전신이 떨려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큰 병이 원인이 되어 생긴 수전증일 가능성도 염려해 둬야 한다. 수전증,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회사원 P씨는 최근 회식자리에서 술잔을 받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에 놀랐다. 잦은 회식과 술자리 때문에 술이 과해서 생긴 수전증이라 생각되어 술을 자제했지만 어쩐지 더욱 신경이 쓰여 이제는 메모를 할 때도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강○○ 교수는 "수전증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몸이 피곤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뇌손상, 가족력, 약물복용, 갑상선질환 여부 등 내 몸에 위험하다는 일종의 경고신호일 수도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잡지는 2009년 5월호 '이달의 질병' 코너에 강동성심병원 강○○ 교수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도움말을 허위로 인용하여 수전증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는 사전에 기사의 내용과 사진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상의와 요청 없이 본 잡지사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강○○ 교수님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기사의 일부 내용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생활 속의 예방책도 있을까?'에 해당하는 내용은 수전증과 관련된 의학적 전문 지식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금연, 금주, 매일 규칙적 1-2㎞정도 걷기운동이 수전증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는 의학적 증거는 없으며 특히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수전증의 경우 특정 질병에 의한 경우가 있어 고단백식이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전증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신청인이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상경시위를 회유와 협박으로 저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정보원 (원장 원세훈)
피신청인 : 위클리경향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위클리경향 : 『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6일자)
내 용 :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농과수 생산량 등을 요구해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농가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꾼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분통 터진다."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에 참여하는 한 농민의 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그동안 '설'로만 제기되던 4대 강 살리기 국정원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이 내려가 개입한 것은 대책위 농민들과 군 공무원 등 복수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에 내려온 국정원 직원은 이모씨와 전모씨, 2명이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정을 청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직원들은 국정원 대전지부가 아닌, 서울에서 직접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선 부여군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이들을 통해 대책위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식사자리를 함께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와 농민들이 원활하게 타협선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도면 실정이 어떤지 실사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바로 잡습니다]
본지 826호 '포커스'란 「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 제하 보도(2009.5.26)와 관련, 국정원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부여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전후 사정에 관해 알아본 바는 있지만 이것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정원이 상경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 내지 협박했다는 기사내용도 현지 농민들과 대화하고 통화했던 부분들이 일부 와전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끝.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5월 26일자 제826호 38면 「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상경시위 벌인 농민에 "밉보일 수도 있다"며 회유·협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정원은 현지 농민들과 대화하고 통화했던 부분들이 일부 와전된 것으로, 농민들이 상경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 내지 협박했거나 4대강 정비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통상적 직무활동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8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위클리경향〉 '독자의 코너' 지면에 별도의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 ("청와대에서 고충을 듣고자 한다")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위클리경향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6일자 1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공식 유기농 인증제품임에도 비인증 제품과 차별화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아벤트코리아 (대표이사 양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유기농 아기용품에 위해 우려 화학물질"』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8일 06:15)
내 용 :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아기 로션과 샴푸 등 위생용품에 파라벤류와 벤질알코올 등 가능한 피해야 할 화학물질들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기농이라고 광고하지만 유기농 인증 표시가 없어 진위를 알 수 없거나 유기농 원료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위생용품 21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 9개 중 7개에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의심되는 벤질알코올과 향료, 폴리에틸렌 글리콜(PEG)복합물질, 파라벤류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

유럽소비자연합(BEUC)의 화학물질안전사이트(che-mical-cocktail.org)나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는 파라벤류는 약간의 내분비계 교란 영향, 향료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벤질알코올은 피부자극과 신경독성 우려, PEG복합물질은 암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능한 피해야 할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별로 보령메디앙스의 '누크 내추럴 기저귀 크림'은 파라벤류와 PEG복합물질, 향료가 함유돼 있고 같은 회사의 '퓨어가닉베이비 바디&헤어 워시'에는 PEG복합물질과 향료 등이 들어 있다.

아벤트코리아의 '스킨베리 나뛰르 베이비 샴푸&바스, 베이비 크림', 보령메디앙스의 '누크 클래식 페이스크림', 로고나코리아의 '베이비플레게바트링엘블루메', 록시땅코리아의 '맘앤베이비크림'은 벤질알코올이나 향료가 포함돼 있다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아벤트코리아의 유기농 아기용품 스킨베리 나뛰르 제품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8일자 경제면에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유기농 아기용품에 위해 우려 화학물질〉라는 제목으로 유기농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 9개 중 7개에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었고, 유기농이라고 광고하지만 유기농 인증표시가 없어 진위를 알 수 없거나 유기농 원료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주)아벤트코리아의 스킨베리 나뛰르 베이비 샴푸&바스, 베이비 크림 제품에 벤질알코올이나 향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기사는 유기농 인증제품과 비인증 제품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공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이 마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주) 아벤트코리아의 스킨베리 나뛰르 베이비 샴푸&바스, 베이비 크림 제품은 프랑스 에코서트(ECOCERT) &코스메바이오(COSMEBIO) 유기농 인증 기관의 표준에 의하여 원료처방, 제조공정, 품질, 포장자재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인증을 받아 유기농 인증마크와 유기농 함량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 유기농 인증제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에코서트(ECOCERT) 기관 및 유럽연합(EU), 국내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벤질알코올 성분을 허용 기준치 내에서 적합하게 사용한 제품이고,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기사화된 향료 사용도 사실 확인 결과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귀사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본 신문의 잘못된 내용 및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한 기사로 인하여 (주)아벤트코리아에 피해를 드린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벤트코리아의 스킨베리 나뛰르 제품은 본 기사 "유기농 아기용품에 위해우

려 화학물질"이라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적합한 성분을 사용하여 유기농 인증기관의 표준에 의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연합뉴스 : 『유기농 아기용품 어떻게 골라야 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7일 14:36)

내 용 : 유기농 열풍이 식품에서부터 유아용 위생용품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별다른 표시기준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석면 탈크 파우더 파동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아용 로션이나 샴푸 등에서도 유기농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유아용 위생용품은 물론 화장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이나 기준이 없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따져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은 제품명에 그린, 천연 등의 표현을 써서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린이나 천연이라고 표시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너도 나도 앞 다퉈 내세우고 있다.

특정 원료에 대해서만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을 용기나 포장에 크게 표시해서 마치 제품 자체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유기농 인증 표시는 있지만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서 유기농 물질 비중이 1%인지 100%인지 알 수 없게 한 사례도 있다.

또, 유기농 인증이 있는 제품 중에서는 부패 방지 등을 위해 약간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을 고민하게 한다.

아벤트코리아의 스킨베리 나뛰르 베이비 샴푸&바스와 베이비크림이나 보령메디앙스의 누크 클래식 페이스 크림, 록시땅코리아의 맘앤베이비크림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벤질알코올이 들어 있다.

스킨베리 나뛰르 제품은 유기농 물질 함량이 10%가 넘고 유기농 물질을 포함한 천연 물질 비중이 99%에 육박해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인 에코서트(ECOCERT)와 코스메바이오(COSMEBIO)에서 동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후략) □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공식 유기농 인증제품임에도 비인증 제품과 차별화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아벤트코리아 (대표이사 양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YTN : 「뉴스」 프로그램 『유기농 아기제품에 화학물질』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18일 10:00)

내 용 : 〈2009서울조정1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YTN : 「뉴스」 프로그램 『아벤트코리아, "벤질알코올 허용기준치 내 사용"』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25일 10:30)

내 용 : 유기농 아기제품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아벤트 코리아는 자사의 제품은 프랑스 에코서트 기관과 유럽연합, 국내 식약

청에서 인정하는 벤질알코올 성분을 허용 기준치 내에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사 제품은 프랑스 에코서트와 코스메바이오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마크와 유기농 함량이 표시된 공식 유기농 인증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 민노총 탈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최근 전국민주노동운동총연맹(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등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연맹 소속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했다. (관련기사 3면)

현대건설 노조는 14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앞서 같은 건설연맹 소속인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진흥기업 노조도 최근 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9개 노조도 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참여함으로써 민노총은 심각한 내부 균열 위기를 맞게 됐다.

현대건설 노조 등은 "민노총이 조합원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채 투쟁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다며 상급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노조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 노조가 잇달아 민노총을 탈퇴한 것은 건설 불황이 깊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투쟁 위주로 변해가는 상급단체에 대한 불만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대건설 등 4개사 노조 민주노총 탈퇴는 거짓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09년 5월 14일에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 민노총 탈퇴"라는 제목으로 현대건설노조 등 4개사 노조가 14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대건설노조 등 4개사 노조는 이미 08년 1월 3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 연맹으로부터 징계 제명 처분을 받았음으로 탈퇴선언은 거짓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문화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30일자 7면)

내 용 : 문화일보는 2009년 5월 14일 '현대건설노조, 민노총 공식 탈퇴'라는 제목으로 현대건설노조 등 4개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 노조 등 4개사 노조는 지난 2008년 1월 31일 민노총 건설산업연맹으로부터 징계 제명 처분을 받았으므로 탈퇴 선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서울신문 : 『현대건설 등 4개 노조 민노총 공식 탈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5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민노총, 경기지역 산하 9개 노조를 본받아라』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5일자 사설)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일자 2면)
내 용 : 5월 15일자 42면 "민노총, 경기지역 산하

9개 노조를 본받아라" 제목의 사설에 대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이 아니라 2008년 1월 징계로 제명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4개 건설사 민노총탈퇴 선언』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5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Ⅴ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9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건설업체 잇단 민노총 탈퇴… 제3노조 결성』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A2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Ⅵ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현대건설 등 민노총 탈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자 1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후 보도문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7일자 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Ⅶ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산하노조 탈퇴 잇따라…민주노총 지도력 '위기'』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14일 20:00)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8시 뉴스〉 프로그램 중 「산하노조 탈퇴 잇따라…민주 노총 지도력 '위기'」 제하의 보도에서 현대건설노조 등

4개사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지난해에 결정했다가 14일 공식 선언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4개사 노조들은 이미 2008년 1월경 민주노총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되어 별개의 연맹을 조직하였고, 이번에 처음 탈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3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SBS-TV 〈8시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보도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건설노조 반론 보도문』 제하의 보도(2009년 6월 1일자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Ⅷ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현대건설 등 4개사 민노총 탈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연합뉴스 : 『건설노조 '민노총 탈퇴선언' 놓고 공방』 제하의 보도(2009년 5월 14일 13:18)

내 용 : 2007년 말 민주노총을 집단 탈퇴한 4개 건설사 노조들이 1년 6개월여만에 탈퇴를 공식 선언, 그 배경 등을 놓고 양 측 간에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건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적극적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또 "민주노총 탈퇴에 참가한 노조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진흥기업, 한신공영, 현대산업개발 등 전부 4개"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에 이견을 보이며 탈퇴하는 노조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집단 탈퇴 소식이어서 적지 않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들 노조가 실제 민주노총을 탈퇴한 시점이 2007년 말이어서 이번 '탈퇴 선언' 배경을 놓고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2007년 12월 7일 민주노총에 탈퇴서를 낸 뒤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이라는 별도의 연합체 설립을 신고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해 1월 이들 노조를 제명했다. (후략)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Ⅸ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현대건설 등 4개 회사 "민노총 싫다~싫어"…탈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현대건설등 4개사 노조 민주노총 탈퇴는 거짓』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8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후 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Ⅹ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업코리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업코리아 : 『민노총 이탈 '러시'…올 들어 벌써 10여 곳』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업코리아 : 『현대건설 등 4개사, 민주노총 노조가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5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XI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이데일리 :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 노조 민노총 탈퇴』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자 건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이데일리 : 『(프리즘)현대건설 노조 민노총 탈퇴 해프닝』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 건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02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X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이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이투데이 : 『현대건설 노조, 민노총 공식 탈퇴』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이투데이 : 『현대건설 등 4개사 노조 민주노총 탈퇴는 거짓』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2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현대건설 노조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들 4개 노조는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되었다 XI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7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 ○ ○)
피신청인 : 프라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프라임경제 : 『현대건설 노동조합, 민주노총 탈퇴』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14일자 건설업계동향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프라임경제 : 『현대건설 등 4개사 노조 민주노총 탈퇴는 거짓』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2일자 건설/교통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의 단식으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연되어 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철도시설공단이 밝힌 시공사의 손실금은 145억 원이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지율)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환경 도그마 폐해 일깨운 도롱뇽 재판 유죄 확정』 제하의 사설 (2009년 4월 24일자 31면)
내 용 : '도롱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환경 도그마의 폐해를 일깨워준 판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3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의 업무 방해로 기소됐던 지율 스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 방해가 정당 행위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이번 천성산 시위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지율 스님이 도롱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 번씩이나 단식을 되풀이

하면서 그때마다 공사를 중단시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환경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천성산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4일 사설에 언급된 천성산 관련 기사에 〈지율 스님이 도롱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 번씩이나 단식을 되풀이하면서 그때마다 공사를 중단시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환경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점이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도롱뇽을 법정에 세운 이유는 도롱뇽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습지와 산간 계곡에서 서식하며,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세계적으로 종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 지표 종이라는 점, 천성산 지역에서 가장 흔한 서식지를 가진 종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걸쳐 조사된 환경영향 평가서에 누락 된 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낭비〉 운운 역시 계약당시 2009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천성산 구간의 터널 공사가 2008년 12월 완료되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공단에서 밝힌 해당업체가 입은 직접적인 손실금은 145억 원으로 밝혀졌음으로 바로잡습니다.

지난 2008년 정정 보도를 싣고도 정황을 살피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점에 대하여 이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4월 24일자 31면 「환경 도그마 폐해 일깨운 도롱뇽 재판 유죄 확정」 제하의 사설과 관련,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율 스님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11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문화일보〉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11일까지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단식으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연되어 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철도시설공단이 밝힌 시공사의 손실금은 145억 원이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지율)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4일자 A10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08의 보도내용 참조〉

(2)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 (2009년 4월 24일자 A3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0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0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4월 24일자 A10면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은 유죄」 제하의 기사 및 A31면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과 관련,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자연습지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하수 유출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11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11일까지 〈조선닷컴〉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단식으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연되어 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철도시설공단이 밝힌 시공사의 손실금은 145억 원이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지율)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일보 : 『'도롱뇽 재판' 유죄 확정이 주는 교훈』 제하의 기사(2009년 4월 24일자 4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0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0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0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재직 당시 박연차 회장에게 거액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으나,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어 청 수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N : 「MBN 뉴스」 프로그램 『이택순 전 경찰청장 출두』 (2009년 5월 21일 15:00, 17:00)
내 용 : ▷앵커 : 천신일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택순 전 경찰청장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 천신일 회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나요?

▷기자 : 네. 천회장이 오전 10시 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회장을 상대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나섰는지 추궁하고 있는데요. (중략)

당초에는 이팔호, 어청수 전 청장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2명은 대가성을 따지기 쉽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박연차 사건 관련 이택순 전 경찰청장 검찰 출두 보도를 하면서 "당초에는 이팔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2명은 대가성을 따지기 쉽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뉴스 방송에서 천신일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택순 전 경찰청장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팔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2명은 대가성을 따지기 쉽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화면 자막으로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박연차와는 만남을 가진 적도 없고 어떠한 향응이나 단돈 1원도 박연차 또는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품을 수수했으나 대가성이 없어 수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보도 함으로 인하여 어청수 전 경찰청장 본인은 물론 가족, 15만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어청수 전 청장, 박연차 사건과 무관
• 내 용 : 그동안 박연차 씨 수사와 관련하여 어청수 전 청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입증이 쉽지 않아 소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취지의 2009년 5월 21일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 전 청장도 박연차 회장과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어떠한 향응이나 단돈 1원도 박 회장이나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5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일경제 TV의 「3시 뉴스」와 「5시 뉴스」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파란색 자막으로 하고, 내용의 낭독은 프로그램 진행자의 통상적인 낭독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 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N : 「MBN 뉴스」 프로그램 『어청수 전 청장, 박연차 사건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4일 15:00, 17:00, 2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채무자를 폭행, 감금한 사채업자라고 보도했으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을 뿐 사채업자는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2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추후)
각 하 (손배)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악덕 사채업자, "빚 갚아라" 납치』 제하의 보도 (2008년 10월 31일 21:00)

내 용 : ▷앵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납치 감금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갑까지 채우고 폭행도 가했습니다.

▷기자 : 경찰서로 들어서는 한 남자의 옷이 엉망으로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사채업자 36살 김모 씨 등에게 납치돼 수갑까지 채워진 채 5시간 동안 끌려다닌 24살 한모 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한씨는 사채업자들에게 지난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빌렸지만 사채업자들은 단 두 달만에 이자 400만 원을 붙여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을 못 갚은 한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역에서 납치 당한 뒤 서울 마포와 강남 등 시내를 5시간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김씨 등에게 끌려다니던 피해자는 자동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 씨(피해자) : "5시간 동안 계속 맞았으니까 그때 죽나싶었어요. 그냥 덜 맞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기자 : 한씨는 사채업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극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김씨는 자신이 한씨 명의 통장에 예금해놓은 돈을 한씨가 멋대로 빼내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채업자 김모 씨를 구속하고 조모 씨 등 3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악덕 사채업자'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31일 9시 뉴스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납치 감금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의자는 검찰과 법원에서 조사결과 고리 사채업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내간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도 중 사채업자로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2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사장 이 병 순
조정대리인 박 ○ ○
주 문 : 1.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손배청구는 각하한다.

2.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추후청구는 불성립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뉴스9〉 프로그램의 「악덕 사태업자, "빚 갚아라" 납치」 제하의 보도를 통해 사채업자 김모 씨가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납치·감금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채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채업자로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피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9년 5월 22일 당 위원회에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2009서울조정213 사건의 언론조정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8년 11월 1일 조정대상기사를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손해배상청구는 언론중재법 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추후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추후청구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항소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도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채무자를 폭행, 감금한 사채업자라고 보도했으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을 뿐 사채업자는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3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추후)
각 하 (손배)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사채업자, 채무자에 수갑 채우고 폭행』 제하의 보도 (2008년 10월 31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2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2009서울조정212의 결정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항소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도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채무자를 폭행, 감금한 사채업자라고 보도했으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을 뿐 사채업자는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4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돈 갚아라" 수갑 채우고 폭행…무서운 사채업자』 제하의 보도 (2008년 10월 31일 20:00)
내 용 : 〈2009서울조정2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사채업자 폭행 관련 반론
• 내 용 : SBS 〈8시 뉴스〉는 지난 해 10월 31일 「수갑 채우고 폭행」 제하의 보도에서 사채업자인 김씨가 채무자를 납치한 뒤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김씨는 사채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12일(토,일요일 제외)까지 SBS-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중 2부 말미(클로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화면을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이 나오도록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이 이뤄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사채업자 폭행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9일 07: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채무자를 폭행, 감금한 사채업자라고 보도했으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을 뿐 사채업자는 아니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5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시스 : 『경찰, 채무자 감금·폭행한 대부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1일 13:39)
내 용 : 〈2009서울조정2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14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대부업자 폭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2일 09: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2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일보 : (1)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표절 의혹을 받았던 목원대학교 교수들의 일부 논문이 '표절'로 판정됐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스포츠 산업과학부 동문회는 이번 진상조사가 '봐주기식 조사'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대학 스포츠 산업과학부 교수 3명의 논문 8편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이 결과를 동문회와 당사자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A교수의 2005년 논문 1편과 B교수의 2002-2004년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표절·자료 중복사용)'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C교수를 비롯해 나머지 논문 4편은 '검증시효 기간 경과', '연구 부정행위 불인정' 등의 판정을 받았다.

올 초부터 제기됐던 목원대 교수 논문표절 의혹이 일부 사실로 결론난 셈이다. (후략)

(2) 『지역대 논문 표절 부실 조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1일자 사회면)
내 용 :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대전권 대학들이 속속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이번에는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목원대 교수 3명 논문 표절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7월 10일 사회면에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최○○ 교수 외 2인은 위 내용에 대해 지난 5월 13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대전일보 : 『목원대 교수 논문 표절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6면)
내 용 : 본지는 지난해 7월 10일자 사회면『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제하의 기사로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이 대학 스포츠 산업과학부 교수들이 일부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해당 교수들은 표절을 전제로 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도일보 :『목원대 교수 3명 조사 결과 '표절' 결론』제하의 기사(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외 3건
내 용 :〈2009대전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중도일보 :『목원대 교수 논문 표절 관련 추후보도』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6면)
내 용 :〈2009대전조정12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경남제약 회장이 극심한 노사분규로 문닫기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지부장 박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닷컴 :『위기도 상큼하게 넘는다 '레모나' 처럼』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5일자 B8면)
내 용 : ㅁ의약품 제조 HS바이오팜

"일본 제품에 국내 시장을 뺏길 수는 없지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만난 이희철 HS바이오팜 회장은 최근 국내 태반의약품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일본 제품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HS바이오팜은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과 국내 인태반 의약품 원료의 90%를 공급하고 있는 화성바이오팜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회장은 극심한 노사 분규로 문 닫기 일보 직전이던 경남제약을 인수해 2년여 만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경남제약 정상화로 그는 매년 10%씩 커지고 있는 국내 태반의약품 시장에서 원료 생산-완제품 생산-판매에 이르는 일관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중략)
"종합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거듭날 것"

경남제약은 2년 전 인수 당시만 해도 잦은 노사분규로 연매출 180억 원에 영업적자만 3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해 이후 HS바이오팜을 통해 제품 판매가 이뤄지면서 HS바이오팜은 지난해 매출 437억 원에 영업이익만 64억 원을 올렸다.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도 같은 기간 매출 149억 원에 영업이익만 57억 원을 올릴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알짜' 기업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경남제약 노조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5월 15일자 B8면에 『위기도 상큼하게 넘는다. '레모나'처럼…』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제약이 2년 전 극심한 노사분규로 문닫기 직전이었으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HS바이오팜에 인수되기 전까지 노조 결성 이후 10여년 동안 큰 분규가 없었으며, 오히려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은 HS바이오팜 이희철 사장 취임 이후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HS바이오팜 인수 전 3년 간의 경남제약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경남제약의 재무상태는 건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경남제약 노조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보 지난 5월 15일자 B8면의 『… '레모나'처럼…』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남제약 노조는 HS바이오팜에 인수되기 전까지 노사 간에 큰 분규가 없었으며,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은 인수 이후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이 일간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후 지체없이 동아닷컴의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전재된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각 포털사이트사에 요청한다.
• 신청인은 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닷컴 : 『경남제약 노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자 경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남제약 회장이 극심한 노사분규로 문닫기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지부장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위기도 상큼하게 넘는다 '레모나' 처럼…』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5일자 B 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1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1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서울조정216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 업체가 이삿짐을 지연 배송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온누리그린해운(주)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5.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해외 이삿짐 지연 벨기에서 '노숙자' 생활』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18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해외이사 업체 잘못 고른 죄로 해외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한 것도 모자라 짐을 분실하고 현지생활을 완전 망쳤습니다"

조모(남·39세) 씨는 지난 1월 직장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벨기에로 가게 되면서 해외이사 업체를 알아보다 '골드무빙'을 알게 됐고 2월 4일에 배가 출항해 3월 초면 짐을 받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에 계약을 결심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실계약은 '온누리 해운'이라는 회사와 진행됐다.

조씨는 이삿짐을 집안까지 배송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를 신청하며 부대비용까지 지불했다. 또한 비자와 여권 사본을 맡겨 통관도 회사 측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3월 초 벨기에에 도착한 조씨는 온누리 해운 측에 배송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말만 들었다. 이 후에도 3주 간 아무 연락이 없어 조씨의 부인이 다시 연락하고 나서야 선박 경유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4월 15일에야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해외 이삿짐 지연 벨기에서 '노숙자' 생활" - 사실과 다른 점 정정 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8일자 종합뉴스면에 "해외 이삿짐 지연 벨기에서 '노숙자' 생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 원문에 거론된 업체에 공식적인 취재협조 및 기사내용에 관해서 확인 및 동의 없이 회사명을 게재했고 기사 원문에 사진을 게재하면서 특정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회사 로고를 여과 없이 게재하여 해당 업체의 명예를 실축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상기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원문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 합니다.
• 기사 원문에 거론된 업체를 "이름도 없는 회사"라는 부분은 해당 업체는 사업자를 등록한 법인회사이며, 복합운송면허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필했고, 관련 협회에도 등록된 해외이사 전문업체임이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신청인 측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게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으므로 정정을 할 수 없다. □

도박범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판돈을 낮춰 조서를 작성하는 등 축소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부천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대장 정 우 식) 외 2인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기신문 : 『도박장 덮친 경찰 판돈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22일자 8면)
내 용 : 경찰이 도박 혐의 현행범을 형사입건하는 과정에서 판돈을 당초 금액보다 낮춰서 조서를 꾸며 축소 수사했다는 목격자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부천 중부경찰서와 목격자 ○○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재개발조합 임원 C씨, D씨와 D건설사 소속 E씨 등이 도박을 하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부천 중부경찰서 소속 중앙지구대 L모 경찰관 등에게 적발됐다.

출동한 L경찰관은 이들 3명이 1점당 100원하는 고스톱을 했고 총 판돈 1만 7천 원으로 조사해 형사 입건했다.

그러나 이날 도박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지나던 길에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로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에 들어가보니 경찰이 도박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이였다"며 "현장 바닥에는 1만 원권 지폐가 손가락 중지 한 마디 정도 쌓여 있었고 경찰관이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했으니 도박자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며 현장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경찰에서 도박판돈이 1만7천원으로 조사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보았을 때 천원권이나 동전조차 보지 못했는데 이는 조사 과정에서 축소가 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현장을 목격을 했다는 이유로 D건설사 소속 E씨 등 2명이 이유 없이 찾아와 판돈이 1만 7천 원이라며 합리화 시켰고 또 며칠 후 당시 도박과 관련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해 자신들이 떳떳치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천 중부서 중앙지구대 도박사건 축소 의혹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2009년 05월 22일자 사회면에 "도박장 덮친 경찰 판돈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부천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찰관 2명이 지난 9일 16:00경 도박 사건 신고처리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도금 1만 7천 원 화투 53매를 압수하고 도박자 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 처리한 건에 대해 현장 바닥에 1만 원권 지폐가 손가락 중지 한 마디 정도 쌓여 있었고 경찰관이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축소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박 장소로 연결된 출입문이 잠겨 있어 출동 경찰관이 밖에서 유리문을 통해 도박 장면을 확인하고 문을 열게 한 다음 현장에 진입하였으나, 당시 현장에는 도박자 3명이 있었고 화투와 도금을 모두 은닉시켜 버린 후라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서 도금과 사용한 화투를 제출케 하여 현장에서 현금 1만 7천 원과 화투 53매를 압수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 적법절차에 의거 이들을 형사입건 시켰으며 경찰관이 카메라 촬영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되었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도박범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판돈을 낮춰 조서를 작성하는 등 축소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부천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대장 정 우 식) 외 2인

피신청인 : 경도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도신문 : 『도박 판돈 축소 수사 '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2일자 11면)

내 용 : 〈2009경기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도박범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판돈을 낮춰 조서를 작성하는 등 축소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부천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대장 정 우 식) 외 2인
피신청인 : 수도권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수도권일보 : 『"경찰이 도박 사건 축소"』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2일자 15면)

내 용 : 〈2009경기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도박범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판돈을 낮춰 조서를 작성하는 등 축소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부천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대장 정 우 식) 외 2인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인천일보 : 『부천 중부署 도박사건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2일자 6면)

내 용 : 〈2009경기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Ⅲ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대전중재3 참조)

대전일보 :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외 3건
내 용 : 〈2009대전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Ⅳ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5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대전중재4 참조)

중도일보 : 『목원대 교수 3명 조사 결과 '표절' 결론』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Ⅴ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옥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대전중재5 참조)

대전일보 :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Ⅵ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7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옥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대전중재6 참조)

보도내용

중도일보 : 『목원대 교수 3명 조사 결과 '표절' 결론』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외 3건
내 용 : 〈2009대전조정1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버스 난폭운전 실태를 제보한 신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1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신호위반 교육까지… '난폭운전'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15일 20:00)
내 용 : ▷앵커 : 출근 시간 많은 승객을 태우고도 과속에 신호위반까지 하는 버스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질주 뒤에는 기사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기자 : 경기도 한 도시의 아침 출근길입니다. 시내버스가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내달립니다.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아슬아슬한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규정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10km로 달리는가 하면, 정류장을 서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버스 승객 : 신호위반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불안해요.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기자 : 이 버스의 총 노선길이는 67km,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하면 3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 버스는 2시간 10분만에 주파했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한 버스기사는 식사도 제대로 못한채 다시 핸들을 잡습니다. 운행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 이 회사의 운행 시간표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 코스를 운행하는데 배정된 시간은 2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 남짓.

▷A씨/버스 기사 : (배차 간격이) 2시간 40~50분 되는데, 그 시간에 갔다와서 가스도 넣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기자 : 버스기사들은 회사 측이 신호위반 교육까지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A씨/버스 기사 : 영업소에서 자체교육을 했는데 하는 말이…신호는 알아서 요령껏 위반하고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자 : 회사 측이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행 횟수를 한 차례 늘릴 때마다 버스 한 대당 최고 1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무리한 운행을 시인하면서도

현실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 : (배차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다고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해왔던 거고…

▷기자 : 무리한 배차 간격과 난폭운전은 수도권 어느 지역을 가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행체계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6월 15일까지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단 하루라도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나 소속 임직원에 대해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4,000,000원 지급〉 □

도박범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판돈을 낮춰 조서를 작성하는 등 축소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부천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대장 정 우 식) 외 2인
피신청인 : 현대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현대일보 : 『경찰관, 도박 판돈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22일자 15면)
내 용 : 〈2009경기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기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 관청이 선박수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으나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청장 김 삼 열)
피신청인 : 인터넷전남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인터넷 전남뉴스 : (1) 『목포 앞 바다 편법·특혜 의혹 속 해상 선박수리업 허가』 제하의 기사(2009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목포 앞 바다에 대규모 선박수리 업체들이 들어섬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금속 분진과 비산먼지 등으로 해양오염은 물론 목포시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해 11월 H, B, M 등 3개 업체가 영암 대불항과 용당부두 사이 앞 바다에 이른바 선박을 바지선에 올려놓고 수리작업을 하는 구조물인 플로팅도크(선박 수리작업용 바지선) 4개를 설치한다는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해줬다.

지난 해 한꺼번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들 업체들은 목포 원도심 맞은 편 대불산단 배수장 인근 바다에 이미 플로팅도크를 접안해 놓고 본격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후략)

(2)『영암군도 오염피해 우려 '항만청에 반대의견'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목포 앞 바다에 공해배출 산업인 선박수리 작업을 하도록 허가해 준 것과 관련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영암군 등 관계기관에서는 오염을 우려해 공문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3)『선박수리 조선소 주민대책위 구성 반대운동 본격화』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목포 앞 바다에 공해산업인 선박수리조선소가 들어선 것과 관련해 감사청구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박수리 업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요구했던 목포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정식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목포 환경운동연합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영암군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선박수리 조선단지가 목포 앞 바다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목포항 선박수리시설 허가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일자 사회면「목포 앞바다 편법·특혜 의혹 속 해상 선박수리업 허가」, 4월 4일자 사회면「영암군도 오염피해 우려 '항만청에 반대의견' 밝혀져」, 5월 3일자 사회면에「선박수리 조선소 주민대책위 구성 반대운동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목포 앞 바다 해상 선박수리업 허가에 대한 해양오염 및 특혜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목포 앞바다 해상 선박수리업 허가는 관계법령은 물론 주변환경 오염 가능성 및 주변 해상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용역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통하여 허가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수리 작업의 특성상 녹과 페인트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등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환경영향 예 측 및 저감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처히 할 것이며, 목포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지난 총선 당시 신청인이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친박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한나라당에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 (국회의원)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결별 수순 밟나?』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26일자 A14면)

내 용 :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좌장인 4선의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표와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한 측근 인사에게 "(김 의원이) 친박을 하다 피해 봤다고 하면 이제 친박을 그만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박희태 대표가 당 화합책으로 추진했던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 카드'를 자신이 반대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 측근이 "김 의원이 상처를 입은 것 같다. 친박을 하다 공천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추대 무산 후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 의원도 최근 통화에서 "내가 먼저 박 전 대표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박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략)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맞지 않아 수시로 부딪친 게 불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해 총선 공천 때 김 의원이 박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친박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당시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건넨 것이 두 사람이 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주변에서는 전한다. 김 의원이 중책을 맡으면 박 전 대표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박 전 대표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원내대표 제안을 수용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을 '2인자'로 대접해 주지 않는 박 전 대표의 품을 떠나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키우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무성 의원은 공천 리스트를 건넨 적이 없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박근혜·김무성 결별 수순 밟나?" 제하의 기사에서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친박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당시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건넨 것이 두 사람이 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무성 의원은 어떠한 공천 리스트도 제공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사과드립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1
청 구 명 : 정정보도
신 청 인 : 김 무 성
조정대리인 보좌관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정치부 차장 최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동아일보 A14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친박을 하다 피해 봤다면…)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

〈별 지〉

• 제 목 : 김무성 의원, "총선에서 공천 리스트 제공한 사실 없어"

• 내 용 : 동아일보 지난 5월 26일자 A14면 「결별 수순 밟나?」 제하의 기사에서 '김무성 의원이 지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친박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에게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사무총장에게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상호간에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공천 희망자 리스트' 관련 내용이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혀왔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동아일보 : 『김무성 의원, "총선에서 공천 리스트 제공한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6일자 A14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 내용 참조〉 □

지난 총선 당시 신청인이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친박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한나라당에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 (국회의원)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동아닷컴 : 『박근혜 · 김무성, 결별 수순 밟나?』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6일자 정치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2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21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221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동아닷컴 : 『김무성 의원, "총선에서 공천 리스트 제공한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6일자 정치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박연차 회장이 검찰에서 신청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前 국정원장 김성호 · 김만복에도 돈 줬다"』 제하의 기사(2009년 4월 11일자 A1면)
내 용 :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59) 씨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63) 씨,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이○○(62)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박 회

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 세 사람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박 회장 여비서 다이어리에 적힌 약속 날짜와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후략)

(2)『정보기관 수뇌들까지 '박연차 돈맛'… 안 썩은 곳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1일자 A3면)

내 용 : (전략) 이○○ 전 2차장은 노무현 정권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희상 국회 부의장(민주당)의 매제로 2004년 12월 경찰대학장에서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됐다. 이 전 차장은 김해 출신이라는 지연(地緣)으로 박 회장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자신의 사업 근거지인 김해의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들을 돈으로 관리해 왔다는 의혹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정원 고위직 간부에 대한 박연차의 불법자금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1일자 정치면 A1에 '전 국정원장 김성호·김만복에도 돈 줬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이○○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고 보도하였고, 정치면 A3면에 '정보기관 수뇌들까지 "박연차 돈맛"… 안 썩은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국정원 2차장이 김해출신이라는 지연으로 박 회장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국정원 2차장은 김해 출신인 것은 맞지만, 박연차 회장과 친분이 전혀 없으며, 박연차 회장과 서로 만난 사실조차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예산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지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인사이드 월드, 소망교회 집중 취재』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일자 해외특집면)

내 용 : (전략) 소망교회의 이런 추잡한 상황에 대해 김지철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끝내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학주 부목사와 연결이 됐으나 "교회의 입장은 말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일이다."라면서 "임○○ 장로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 달라"고 했다. (중략)

교회의 E-mail 운영에 연간 7억 원의 예산이 든다는 사실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무척 놀라고 있다. 그래서 김지철 목사 반대파 사람들은 임씨를 "철저한 김 목사 대변인"이라고 부르면서 불신하고 있다.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받아 쓰는 사람이니 자기 이익 때문이라도 김 목사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소망교회 임○○ 장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 지난 3월 3일자 "인사이드 월드 소망교회 집중취재" 제목의 기사 중 임○○ 장로가 소망교회의 E-mail '소망사역실'을 맡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7억 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받아 쓰는 사람이니 자기 이익 때문이라도 김 목사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 모 집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데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소망교회 임○○ 장로는 아이소망 사역실의 방향 설정 및 컨설팅을 한 것 뿐이며 예산집

행과 관련하여 어떤 결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집행된 예산이 운영하는 회사와도 연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을 받아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나 자기 이익 때문에 김 목사를 지지하였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이 은 영(에클레시안뉴스 발행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6-8번지 102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의 제목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게시되는 에클레시안뉴스(www.ecclesian.com) 메인화면에 7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안뉴스(www.ecclesian.com)에 게시된 "인사이드월드, 소망교회 집중 취재" 제목의 기사를 이 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즉시 삭제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취하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4.

〈별 지〉

• 제 목 : 소망교회 임○○ 장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 지난 3월 3일자 "인사이드 월드, 소망교회 집중 취재" 제목의 기사 중 임○○ 장로가 소망교회의 E-mail '소망사역실'을 맡고 있는데, 예산이 연간 7억 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받아 쓰는 사람이니 자기 이익 때문이라도 김 목사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 모 집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데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소망교회 임○○ 장로는 아이소망사역실의 방향 설정 및 컨설팅을 한 것 뿐이며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어떤 결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집행된 예산이 운영하는 회사와도 연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을 받아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나 자기 이익 때문에 김 목사를 지지하였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들이 교회 외부를 감시하는 경비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크리스챤 유니온의 노조원일 뿐 경비업무와는 무관하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1인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교회인가, 사이비 종교집단 인가』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5일자 종합면)
내 용 : 인천 계양구에 가면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단체가 있다. 최근에 얼마 전까지는 예장통합교단의 교회간판을 내걸고 집회를 했지만 최근에는 아예 교회간판도 내걸지 않고 햇빛이 차단된 부직포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불법목사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근처 부동산 관계자와 이웃집 사람들은 부직포 천

막이 이구동성으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직원을 포함해서 이웃집 사람들은 한결같이 해당 목회자가 관청으로부터 부직포 건물을 허락을 받고 교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략)

한 경비원이 교회 외부를 돌면서 외부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 다른 경비원은 외부인들이 접근하자 사진을 찍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회인가, 사이비 종교집단인가" 보도내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 15일자 "교회인가, 사이비 종교집단인가"라는 제목의 기사 중 교회 주변의 외부인을 감시하는 두 명의 경비원들이라고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람은 경비원이 아니고 크리스챤 유니온 노동조합원으로 총무일과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교회 주변의 외부인을 감시하거나 경비 업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교회인가, 사이비 종교집단인가" 보도내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 15일자 "교회인가, 사이비 종교집단 인가"라는 제목의 기사 중 교회 주변의 외부인을 감시하는 두 명의 경비원들이라고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람은 경비원이 아니고 크리스챤 유니온 노동조합원으로 총무일과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교회 주변의 외부인을 감시하거나 경비 업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에클레시안뉴스(www.ecclesian.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2009년 6월 5일 정오부터 2009년 6월 12일 정오까지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안뉴스 : 『"교회인가, 사이비 종교집단 인가" 보도내용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의료원 원장이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료원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 ○ ○)
피신청인 : 인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천신문 : 『소통부재 · 노사갈등 해소 '시민의 병원' 거듭나야』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4일 1면)
내 용 : 지역 유일의 공공 의료원인 인천의료원의 휘청거림은 비단 병원장과 직원들만의 관심사나 문제가 아니다. (중략)

김○○ 인천의료원장은 "매년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직원들의 임금은 해마다 5%씩 인상됐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외부 용역 방안과 인사 · 경영권을 침해하면서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은 병원장에게 돌리고 있다. 진료 수준도 높아져 과거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하는 환자가 많았는데 현재는 수술환자가 많아 수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재임기간 높아진 의료수준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만큼 향후 인천대와 통합하지 않으면 의료권은 특수병원화나 민영화해야 한다.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해 나가며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결과에 따라 수익구조를 바꾸고 서비스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대안을 내놔 인천대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입장 사실과 달라(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 입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5월 14일자 1면에 "소통부재 노사갈등 해소 시민의 병원 거듭나야"라는 제목으로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이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만큼 향후 인천대와 통합하지 않으면 의료원은 특수병원이나 민영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원장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공의료의 개념이 바뀌었다. 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기관만이 공공의료를 시행한다고 보았으나,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공공의료를 생각하고 계셨다. 인천의료원은 시 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향후 1년 간 의료원에 경영개선의 기회를 주겠지만, 부실 및 적자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특수병원화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을 전한 것으로 취지와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9년 5월 14일자 1면에 "소통부재 노사갈등 해소 시민의 병원 거듭나야"라는 제목으로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이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광역시의료원 김○○ 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분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신문 2009년 6월 8일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인천신문 '바로잡습니다' 기본 틀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천신문 인터넷판에 동시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시티홀'이라는 드라마에 신청인의 증명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엄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시티홀」 프로그램 (2009년 4월 30일 21:55)
내 용 :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게임 중독의 폐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전약속과는 다르게 신청인들의 초상,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Ⅰ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 (2009년 3월 3일 23:05)
내 용 : (전략) 서○○(심리 상담 전문가) : 엄마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리는 남편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포죠. 약간의 공포죠. 어떻게 보면 내재된 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엄마의 정서상태라든지, 자기 지각이나 대인 지각이 아들하고 굉장히 나타나는 것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19일까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관련 보도에 대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에 보도삭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4,000,000원 지급〉 □

게임 중독의 폐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전약속과는 다르게 신청인들의 초상,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Ⅱ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 (2009년 3월 3일 23:05)
내 용 : 〈2009서울조정2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서울조정225의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신청인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녹차 티백에 합성수지가 첨가된 종이가 사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녹차원(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녹차 종이티백, 알고보니 '플라스틱'도 사용?』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25일자 산업면)

내 용 : (전략) 녹차 티백 원료에 폴리에틸렌 사용

일상생활에 밀접한 녹차. 이 녹차를 마시다 보면 생기는 의문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티백 녹차에 사용되는 티백의 원료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종이인 듯 보이기도 하지만 물에 장시간 담가 넣어도 찢어지거나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 일반 종이와는 다른 듯싶지만 이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별로 많지 않다.

티백은 녹차 뿐만 아니라 둥글레차, 메밀차, 허브차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보리차나 옥수수차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티백의 원료는 무엇일까. 티백을 제조하는 모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티백에는 펄프가 사용된다고 한다. 즉 종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장시간 물에 담가도 변형이 없는 걸까. 그건 바로 펄프에 폴리에틸렌(PE)이라는 합성수지를 혼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서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녹차 업체의 제품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폴리에틸렌이 사용된 펄프를 사용하고 있었다.

동서식품 '현미녹차'의 여과지 포장재질은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제라고 표기돼 있었으며 '둥글레차'는 종이제라고 표기돼 있다. 아모레퍼시픽 '한라'와 '설록 현미녹차', '메밀차'의 경우 폴리에틸렌 코팅 펄프라고 표기돼 있으며 '찬물녹차'와 '둥글레차'는 펄프라고 쓰여 있었다. 녹차원 '비타민 잎차'와 '현미녹차'는 천연펄프라고 표기돼 있었다.

업체별로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 결국 합성수지가 첨가된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녹차 종이티백, 알고보니 '플라스틱'도 사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5일자 "녹차 종이티백, 알고보니 '플라스틱'도 사용" 이라는 제목으로 '녹차원은 천연펄프의 종이재를 사용하고 있고, 업체별로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 결국 합성수지가 첨가된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녹차원은 합성수지가 첨가되지 않은 천연펄프 100%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메디컬투데이 : 『녹차 종이티백, 알고보니 '플라스틱'도 사용?』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산업면)

내 용 :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및 삭제〉 □

신청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타운 위탁자 선정과 관련, 위탁사용료 조건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진안군 (군수 송 영 순)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홍삼타운 위탁자 찾기 힘드네』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27일자 9면)
내 용 : 진안군이 추진 중인 홍삼·한방타운의 위탁자 결정과 관련해 위탁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진안군이 홍삼·한방타운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208억여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해, 위탁 사용료는 고작 연간 4억8,600여만 원을 받거나 1억5,700여만 원에 연간 매출액의 50%를 군이 부담하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건물 평가에 비해 턱없이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당초에는 사용료를 7억8,400만 원으로 결정해 놓고 하향 조정한 것은 건물 위탁이 여의치 않아 차선으로 이뤄진 행정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뜻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들여 위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지만 참여의사를 밝혀온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다급해진 행정이 짜맞추기식 위탁자 결정이라는 발상으로 상대적으로 손쉬운 사용료 인하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09년 5월 27일자 9면 홍삼 한방타운 위탁자 찾기 힘드네 제목 기사에서 진안군이 홍삼 한방타운의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 위탁사용료를 연간 4억8천6백여만 원을 받거나 1억 5천7백여만 원에 연간 매출액의 50%를 군이 부담하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위탁료 사용료 조건 중 1억5천7백여만 원에 연간 매출액의 50%를 군이 부담한다는 조건은 사실이 아니고 1억5천7백여만 원에 연간 매출액의 5%를 위탁자가 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또한 헐값 처분이라는 문구는 적절치 못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문구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새전북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9일자 4면)
내 용 : 27일자 9면 홍삼한방타운 '위탁사용료는 고작 연간 4억8,600여만 원을 받거나 1억5,700여만 원에 연간 매출액의 50%를 군이 부담하는 2가지 조건'을 '연간 매출액의 5%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2가지 조건'으로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들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유감표명)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인 ○ ○ 외 1인
피신청인 : SEOUL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EOUL : 「A Cup of Tea」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내 용 : 〈사진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
• 내 용 : 본지 지난 5월호 「A Cup of Tea」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께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있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을 취재하여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보도였으나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게재하여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기자와 통화 중 으름장을 놓는 등 저질 언행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차분한 어조의 통화였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 정 심 (구의원)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남도일보 : 『'남구 의원 저질 언행' 개탄스럽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일자 15면)
내 용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는 영결식과 노제가 있던 지난 달 29일. 기자는 숙연한 시민 분위기를 취재하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광주 남구민을 대변한다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3년 동안 의정질문 한 번 하지 않은 의원들이 절반 가량 된다'는 본보 기사(5월 28일자)에 대한 항의성 전화였다. 잇따라 그들에게서 몇 통의 전화를 더 받았다.

그들의 항의를 간추리자면 이렇다.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 구정 질문을 할 기회가 있다', '의원생활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다음 회기 때 할 구정 질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등의 변명이 그것이다.

특히 남광인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너, 기자 몇 년 차야?"라며 반말까지 해댔다. 이어 걸려온 전화에서 유정심 의원은 "언론중재위에 넘기겠다"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남구 의원 저질언행 개탄스럽다」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남도일보는 지난 6월 1일 기자현장 지면에 「남구 의원 저질언행 개탄스럽다」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유정심)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신청인이 기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자에게 으름장을 놓은 사실도 저질언행을 한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임기동안 구정 질문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구정 질문 유무가 의정활동 평가 기준의 전부는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유 정 심 (구의원)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남도일보 : 『연간 3천만 원 가까이 받으면서 남구 의원 절반가량 "뭐했나"』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8일자 1면)

내 용 : 광주 남구의회 의원 절반 가량이 회기 내 구정 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고액의 보수만 꼬박꼬박 챙겨 귀중한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나눠먹기식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지방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구정 질문 또한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식물의회'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구정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의정활동비 등을 챙긴 의원에는 전·후반기 의장들도 포함돼 구민 대의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27일 남도일보가 남구의회에 요청해 최근 3년간(2006년 7월~2009년 5월) 기초의원들의 구정 질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명 중 5명의 의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차례 구정 질문 기회 중 단 한 차례도 살리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정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C의원·L의원·J의원·Y의원·N의원 등이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이들 함량 미달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연간 2천910만 원. 1억4천550만 원의 소중한 세금이 허공에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남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8일자 정치면 1면에 「광주 남구의원 절반가량 "뭐했나"」라는 제목으로 전·후반기 의장들은 구정 질문을 하지 않아 대의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켰고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함량미달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천910만 원을 꼬박 챙기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유정심)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한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성급하고, 구정 질문이 의정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결론지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공문서 위조 등의 편법을 동원해 전원주택단지 개발승인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중부일보 : (1) 『"개발허가 신청비용 줄이려 시행업자가 도장 위조했다"』 제하의 기사 (2009

년 5월 26일자 18면)

내 용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과학고 옆 야산에 들어선 19세대의 전원주택이 2003년 개발 허가 당시 시행업자의 온갖 편법이 동원돼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이 전원주택 분양 및 입주자들에 따르면, 당시 시행업자 홍모(47) 씨는 개발 지역인 조원동 129-1번지 등 모두 4필지가 1만㎡를 넘자 양모(50), 이모(47) 씨 등 일부 수분양자들의 도장을 위조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개발 면적이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 땐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에 대해 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부담되자 이같이 편법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 양씨는 "절대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일이 전혀 없다"면서 "시행업자 홍씨는 잘 알지도 못하며 제3자를 통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엄연한 공문서 위조"라고 분개했다.

수분양자 이씨 역시 "수분양자들을 이용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몰랐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후략)

(2) 『600㎡ 도로 근저당 잡힌 채 市 기부』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7일자 22면)

내 용 : 편법 승인 의혹이 강력 제기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과학고 옆 야산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의 시행업자 홍모(47) 씨가 허가 당시 조건부로 내건 단지 내 도로 600㎡를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원 조 원동 전원주택단지 승인 편법 동원 논란 "개발허가 신청비용 줄이려 시행업자가 도장 위조했다" (2009년 05월 26일자) 및 '편법 승인 의혹' 수원 조원동 전원주택단지 시행업자 600㎡ 도로 근저당 잡힌 채 시 기부 (2009년 05월 27일자) 사실과 달라

• 내 용 : (1)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 사회 1면에서 수원 조원동 전원주택단지 승인 편법동원 논란 "개발허가 신청비용 줄이려 시행업자가 도장 위조했다"라는 제목으로 ㉠전원주택 사업자가 개발면적이 1만㎡가 넘자 일부 수분양자들의 도장을 위조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조원동 전원주택 사업지는 1만㎡가 넘는 개발면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각 수분양자들이 건축하기 용이하도록 연명으로 신청된 것으로 한 사람이 개발하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개발하거나 허가 조건이나 비용 등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개발면적이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 땐 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부담되자 이 같은 편법을 썼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조원동 전원주택 사업자는 1만㎡를 넘는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과 같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수분양자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양씨는 "절대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일이 전혀 없다", "시행업자 홍씨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3자를 통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엄연한 공문서 위조라"고 분개했다는 보도를 하였으나 확인 결과 제3자에게 분양받은 양씨는 양씨에게 매도한 전소유자가 수원시에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양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양씨는 수원시에 건축 및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자 신청인 연명부에 양씨의 인감도장을 찍어 이를 신청한 바가 있으므로 양씨의 인터뷰가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또 다른 수분양자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이씨는 "수분양자들을 이용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지 몰랐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도 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씨는 조원동 전원주택 사업자에게 분양받으면서 이씨의 명의로 허가가 신청되어도 좋다는 동의로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고, 수원시 인터넷 민원을 통해 분양받은 토지는 집을 지어 준공 받아야 대지로 전환된다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는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복합허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조원동 전원주택 사업주가 건축허가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통지

한 바도 있고 설계변경을 통한 허가가 나고 며칠 뒤인 2003년 8월 18일 내용증명을 통하여 건축허가에 대하여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통지도 받았으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부일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번지
대표이사 임 재 율

주 문 : 1.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부일보〉 사회 1면 좌 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소제목(2009년 5월 27일자 보도 : 市 공무원 알고도 묵인)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조정결정의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5.

〈별 지〉

• 제 목 : '수원 조원동 전원주택단지 편법 승인 논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26일자 사회 1면에서 『수원 조 원동 전원주택단지 승인 편법동원 논란, "개발행위 줄이려 시행업자가 도장 위조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조원동 전원주택 사업자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 개발면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각 수분양자들이 건축하기 용이하도록 연명으로 신청된 것이고 한 사람이 개발하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개발하거나 허가조건이나 비용 등에 차이가 없어 추가비용이 부담되자 편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양모 씨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가 건축 및 개발행위를 모두 양도한다는 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하였고 그 후 개발행위 관련 연명부에 양씨가 인감도장을 찍어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모 씨 또한 이씨 명의로 허가신청이 되어도 좋다는 동의로 인감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장을 위조해 개발행위를 신청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사회 1면에서 『'편법승인 의혹' 수원 조원동 전원주택단지 시행업자, 600평방미터 도로 근저당 잡힌 채 市 기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개발업자가 전원주택 내의 도로를 기부채납하기 전인 2003년 11월 18일에 대출금을 모두 완제하여 기부 채납된 도로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착오로 인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승인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

신청인 학교가 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삼산중학교(교장 정 ○ ○)
피신청인 : 부평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부평신문 : 『ㅅ중학교, 학운위 절차문제로 두 번 징계』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6일자 5면)
내 용 : 해당 중학교 "억울하다"

부평의 한 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무시하다 최근 두 번이나 적발돼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중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ㅅ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만료일인 3월 말 이전에 지역위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4월 4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위해 열린 임시회에서 선출했다. 이로 인해 이 학교는 같은 달 북부 교육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방과후 학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탁운영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사후 심의를 거쳐 문제가 됐다.

북부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4월 17일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운영기관·시간·프로그램·시설사용 등 방과후 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합의내용 도출 후 형식적으로 사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북부교육청은 운영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운영위에 사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해당 사안의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5월 21일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ㅅ중학교, 학운위 절차문제로 두 번 징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5월 26일자 5면 (교육·여성면)에 "'ㅅ'중학교, 학운위 절차문제로 두 번 징계"라는 제목으로 부평의 ㅅ중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절차와 관련하여 두 번이나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데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징계 받은 사실은 없고 1회 행정조치와 1회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북부교육청이 해당사안의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 확인 결과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린 바가 없으며 어떠한 결과도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ㅅ중학교, 학운위 절차문제로 두 번 징계"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이 293호(2009년 5월 26일자) 5면에 "'ㅅ'중학교, 학운위 절차문제로 두 번 징계"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ㅅ중학교는 학운위 절차상의 문제로 두 번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북부교육청이 해당 사안의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부평신문 2009년 6월 9일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해당 중학교 "억울하다")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부평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2일 간 게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평신문 : 『'ㅅ중학교, 학운위 절차 문제로 두 번 징계'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가 안산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회
(지회장 손 ○ ○)
피신청인 : 반월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반월신문 : 『안전도 검사 통과해야…간판허가증 교부』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8일 1면)
내 용 : 안산시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현재 맡고 있는 단체에 재위탁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안산시와 광고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21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위탁관리 업체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운영계약서 작성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안산시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적게는 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수익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용히 재위탁을 추진하려다 문제가 불거지자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발행되는 옥외광고 전문 종합신문 'SP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안전도 검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5월과 6월에 걸쳐 각 지자체별로 위탁사 선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지역 광고업계에 막강파워를 형성하므로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은 안전도 검사가 이권사업임을 다시한번 증명하면서 안산시가 공개입찰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는 안산시 게시대를 독점으로 15년 간 운영하면서 안산시 세수입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안산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이 단체에 재위탁하려고 했다는 것은 평소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였느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5월 28일자 1면 "위탁업체 선정시 …안산 광고업계 막강파워 형성" 제목으로 안산시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를 현재 맡고 있는 단체에 재위탁하려다 논란이 일자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적게는 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대의 수익사업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또한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안산시 세수입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안산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는 기존에도 공개입찰에 입찰하여 안전도 검사 업체로 지정되었으므로 논란이 일자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전도 검사 수익은 최근 3년간 1억1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져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익사업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안산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세수입을 횡령하여 안산시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회
지회장 손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반월신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33-5번지
한도빌딩 2층
대표이사 홍 일 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반월신문〉 1면 우 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위탁업체 선정시… 안산 광고업계 막강파워 형성)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판(www.ebanwol.net) 메인화면에 지면 보도일로부터 7일 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의 본문이 뜨도록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8.

〈별 지〉

• 제 목 :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회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5월 28일자 1면 "위탁업체 선정시 …안산 광고업계 막강파워 형성" 제목으로 안산시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를 현재 맡고 있는 단체에 재위탁하려다 논란이 일자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적게는 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수익사업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또한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안산시 세수입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안산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는 기존에도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안전도 검사 업체로 지정되었고, 논란이 일자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결과 안전도 검사 수익은 최근 3년간 1억1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져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익사업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지회가 안산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세수입을 횡령하여 안산시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업체가 휴대폰 할인 혜택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2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케이지홀딩스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달콤한 공짜…으악~ '날강도'"』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무료통화권으로 보상해 준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6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했지만, 발행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무료통화권은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벤트 경품이나 판촉용 사은품으로 많이 쓰이는 무료통화권이 무용지물이어서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중략)

#사례3 = 부천시의 조모(남·27) 씨는 지난해 2월 KG홀딩스로부터 1000분의 무료통화 혜택과 함께 가족 휴대폰 요금까지 60%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를 받았다.

파격적인 서비스 내용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매달 2~3만 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직원의 끈질긴 설득에 조씨는 결국 49만4,000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1000분의 무료통화를 다 썼음에도 요금할인 혜택은 없었고, 직원은 대뜸 "휴대폰 요금을 최소로 바꿔야 한다"고 가입 당시 설명했다고 우겼다.

또 무료통화 시 '몇 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안내가 없어 KG홀딩스 측에 문의하자 그제야 "전화번호 앞에 080을 눌러 사용해야 한다"며 "가족할인 또한 080으로 1000분의 무료통화를 소진하고 나면 6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1000분을 다 사용한 조씨가 다시 한 번 문의하자 이번엔 "IC칩을 달아야 한다"며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IC칩을 받고 설치했지만 칩은 작동되지 않았다. 화난 조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고객 변심으로는 환불 불가"란 얼토당토않은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조씨는 "고발하겠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KG홀딩스는 그제서야 "환불해 주겠다. 하지만 무료통화 2000분을 모두 소진했고 3개월 간 사용했기 때문에 49만4,000원 중 5만 원만 환불된다"고 안내했다.

그는 "두 번째 받은 1000분은 안내멘트조차 없어 모두 사용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허술한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19일까지 조정대상기사 중 '사례3'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이행이 이뤄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

신청인 지구대가 관외에서 범인을 검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으나,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경기지방경찰청 용인경찰서 상현지구대 (대장 장 재 완)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경찰, 법까지 어겨가며 실적 뻥튀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일자 11면)

내 용 : 경찰의 '민생침해 사범 검거 60일(4월 1일~5월 30일) 작전'으로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의 과열 실적 경쟁이 부작용을 낳는 가운데 일부 경찰관들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수배자 단속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문화일보 5월 20일자 11면 참조)

주로 관할지역을 벗어나 수배자를 긴급 체포해 오는 이 같은 행위는 피의자 인권침해 뿐 아니라 관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경찰서 산하 상현지구대는 지난 4월 26일 서울 노원구에서 자동차 내비게이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남성 청소년 2명을 검거했다. 사건 발생과 검거 모두 상

현지구대의 관할구역 밖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지구대는 4월 30일에는 인천 남구에서 발생한 내비게이터 도난 사건 피의자를 인천 중구에서 검거했고, 5월 4일에는 대전 대덕구, 5월 10일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상현지구대로 연행돼 용인경찰서에 넘겨졌다. 이 같은 검거 실적으로 상현지구대는 이번 '60일 작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B지구대와 M지구대도 상현지구대처럼 관할구역 밖에서 벌어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구대의 이 같은 행위는 그러나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6월 1일자 11면에 "경찰, 법까지 어겨가며 실적 뻥튀기" 제목으로 용인경찰서 상현지구대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범인들을 검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 지구대 경찰관들은 관외를 벗어나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관련법규 위반과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 사실과 다른 죄명으로 실적을 뻥튀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6월 1일자 11면 "경찰, 법까지 어겨가며 실적 뻥튀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용인경찰서 상현지구대 경찰관들은 관내를 벗어나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고,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20일까지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문화일보〉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30일까지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한 신청인이 노인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프리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프리존뉴스 : 『친노세력 '노인 학대' 동영상 급속 확산』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30일자)

내 용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 끝난 후에도 추모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일부 인터넷 신문과 친노성향 네티즌들은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인 표정을 '미소'라고 규정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자살 정국 와중에 과거 '자살세' 발언이 들통나 곤욕을 겪은 좌익 논객 진중권씨도 29일 '칼을 뽑겠다'는 글을 남기는 등 정국은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 와중에 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친노세력에 의해 자행된 '노인 학대' 행위가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린 서울광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계속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과 장례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 의견을 내비치면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은 욕설과 폭력으로 인민재판을 가했다.

이 동영상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디시인사이드, 노노데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상당수 네티즌들은 노인에 대한 친노세력의 '인민재판' 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도청 별관을 철거하는 것은 5월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설계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며 역사적 공간은 대부분 보존하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피신청인 : 광주KBS-1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5.
처리결과 : 취　　하 (정정)
　　조정성립 (반론)

보도내용

광주KBS-1TV :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기억의 증거, 5월의 도청』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15일 19:30)

내　　용 : ▷리포터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터치 오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곳은 옛 전남도청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일부에 검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 곳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서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입니다. 건물 외벽에는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플랭카드가 걸려 있고, 건물 앞으로는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 현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80년 5월의 도청은 광주의 상징이자,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서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후 이 곳 도청은 민주주의 상징이 됐고, 불의에 맞서는 이들에게는 힘의 원천이 되고 광주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200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그 의미를 김○○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철거를 앞둔 도청 별관. 80년 5월처럼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결연한 표정의 유족들‥

▷신경진 회장 - 5.18 부상자회 : "만약에 집달관이 와가지고 여기 건물에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까지만 허용합시다"

▷유족들 :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지난 4월, 집행관이 옛 도청을 찾은 날‥법원은 5월 단체를 철거 방해꾼이라 했고, 옛 도청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5월 단체는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아들과도 같은 별관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 故 문재학 씨 부모님 : "여기서 만났지?" "그 때는 원래 여기가 다 철망으로 쳐졌어요. 우리 아들은 밖에 가 있고, 저는 여기서 나오고.."

이 철문만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故 문재학 씨 부모님. 철문을 사이에 두고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마지막이 되리라고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 김○○ 여사 - 故 문재학 씨 어머니 : "가자

고 해도 안가요. 걱정 말라고.. 아버지가 계엄군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안하냐. 집에 가야지. 계엄군이 오면 손들고 저희가 쏘겠냐고 그래요. 저가 차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게, 엄마 아버지 먼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저 공간 어디에선가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이 도청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살아있는 기억의 공간이 됐습니다. 아들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도청 별관. 하지만 그 기억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하나뿐인 기억의 공간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게 될 위기. 파헤쳐진 흙더미를 볼 때면 두 분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故 문재학 씨 등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도청 별관에서 사망한 것처럼 구성한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의 〈기억의 증거, 5월 도청〉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내용 : 본 KBS 광주방송 총국은 지난 5월 15일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기억의 증거, 5월 도청〉 편에서 "아들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도청 별관", "바로 이 별관 건물에서 말입니다. 이 방, 혹은 저 문…어디에나 아들의 흔적이 있기에, 별관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故 문재학 씨를 비롯한 시민군들이 도청 별관에서 사망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근거 없는 역사적 사실을 잘못 전달한 점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5월 15일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기억의 증거, 5월 도청' 편 중 도청 별관 철거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 단계에서부터 5·18의 가치와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역 내 각계 각층의 협의과정을 거쳐 설계지침을 작성하였으며, 설계 당선작인 '빛의 숲'(건축가 우규승)은 5·18의 역사성을 기념비화 하는 설계 컨셉으로 5·18의 역사적 공간을 대부분 보존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선작 선정 및 전당 기공식 이후에도 5·18 단체들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26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주 KBS-1TV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 시간대에 보도하되, 제목과 내용은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KBS-1TV : 「시사터치 오늘」 프로그램(2009년 6월 26일 19: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환경부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건설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으나, 인천터미널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한겨레 : (1) 『환경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재검토해야"』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21일자 1면)
내 용 :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거점인 인천터미널 건설계획과 관련해, 해양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갯벌 보호를 내세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포터미널 건설도 법정 보호조류의 서식환경 훼손과 한강 하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경인운하(터미널 및 항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인천터미널 및 부두시설이 해양 생태계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유수면(해면) 매립에 대해서는 "갯벌 보호와 해양 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천터미널과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컨테이너 부두의 인천신항 설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컨테이너 부두를 인천 송도에 짓는 신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경인운하 인천항 대체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후략)

(2) 『'운하 경제성 과포장' 환경부도 수긍한 셈』 제하의 기사(2009년 5월 21일자 5면)
내 용 : 환경부의 경인운하사업(김포·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인천터미널에 들어설 예정인 항만 규모(12개 선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인운하의 물동량, 인천항 분담량 등을 고려할 때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곳의 컨테이너 부두를 송도의 인천 신항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운하의 예상 물동량에 비해 항만 규모가 크고 컨테이너 항만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운하 터미널 사전환경성 검토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언론사는 2009년 5월 21일자 제1면에서 "환경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재검토해야"라는 제목 하에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거점인 인천터미널 건설 계획과 관련해,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갯벌 보호를 내세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같은 날짜 제5면에서는 "운하 경제성 과포장 환경부도 수긍한 셈"이라는 제목 하에 "환경부의 경인운하 사업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가 인천터미널에 들어설 예정인 항만 규모의 적정성에 의문제기, 경인운하의 예상 물동량에 비해 항만규모가 크고 컨테이너 항만 위치도 적절치 않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경인운하(터미널 및 항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천터미널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총면적(2,178㎡)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해면(104천㎡, 약 4.8%)의 매립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고, 환경부가 운하 경제성 과포장을 수긍한 셈이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2
청 구 명 : 정정보도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조정대리인 국토환경평가과장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조정대리인 환경부 차장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겨레신문 2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피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할 경우 사용하는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5.

〈별 지〉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5월 21일자에서 '환경부가 〈경인운하사업(터미널 및 항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해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건설계획 재검토 의견을 내어 경인운하 경제성 과포장을 수긍한 셈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고서는 인천터미널 건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면적의 약 4.8%에 해당하는 공유수면(해면)의 매립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고, 운하사업의 경제성은 검토대상이 아니어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에 운하의 경제성 과포장을 수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외부 좌파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1)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1면)
내 용 : 쌍용자동차가 노조의 '옥쇄 파업'의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3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극단적인 파업 프로그램을 수립한 세력은 당사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 노동세력"이라며 "이들이 쌍용차 상황을 사회적 투쟁의 도화선으로 삼고 대 정부 투쟁의 거점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공장의 출입을 완전 통제하는 '옥쇄 파업'에 들어갔고 사 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관리인은 "노조가 도장공장 변전실 유류고 가스저장소 등 핵심 시설 및 위험시설을 불법 점거한 채 쇠파이프 갈고리 시너 죽창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외부 세력의 종용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폭발 또는 방화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단체와 용산참사대책위원회 등 외부세력 10여 명이 잠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략)

(2) 『외부세력에 발목잡힌 쌍용차 최악 상황 땐 '파국' 부를 수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 A3면)
내 용 : 쌍용자동차가 오는 8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사 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강경 대응을 다짐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후략)

(3) 『'XX눈깔' 표적에 볼트 투척 훈련… 쌍용차 이렇게까지』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A2면)
내 용 : 사 측은 이날 호소문에서 "공동투쟁본부 등 외부 단체가 직원들을 투쟁 열사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보장이 아니라 투쟁을 계속 지연시켜 대 정부 투쟁을 위한 동력으로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쌍용차 파업 배후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4일 1면과 3면에서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 있다", "외부세력에 발목잡힌 쌍용차 최악 상황 땐 '파국' 부를 수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쌍용차의 극단적인 파업 프로그램을 수립한 세력이 외부 좌파 노동세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5일 2면에서 공동투쟁본부 등 외부 단체가 직원들을 투쟁열사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주장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의 지도부는 쌍용차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대의원 대표들이었고, 공투본에 참가한 단체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지지와 사회여론화 활동을 하는 한시적 연대기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쌍용차 노동자, 공투본 소속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한국경제신문 6월 4일자 1면, 3면, 5일자 2면에 보도된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 있다" 등 3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금속노조는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가는 주체는 쌍용차 지부이고, 쌍용차 지부의 지도부는 외부의 종용에 의하여 극단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회사 측 호소문에서 '외부세력'으로 표현된 공투본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지지 활동 등을 벌이는 한시적 연대기구라고 알려왔습니다. 용산참사대책위는 공투본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3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경제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을 중국 동포로 구성된 폭력조직과 연관된 사채업자로 묘사했으나, 신청인은 도박장 운영혐의로 단속되었을 뿐 폭력조직이나 사채업과는 무관하다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도박장 운영 등 중국 동포 폭력조직 적발』 제하의 보도 (2009

년 6월 4일 21:00)

내　　용 : ▷앵커 : 중국 동포로 구성된 폭력조직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동포 상대로 도박장 영업을 해왔고 사채놀이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녹취 :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중국 동포들이 실내를 가득 메우고 마작을 즐기던 불법 지하 도박장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역시 중국 동포인 도박장 업주의 손가방에서는 돈뭉치와 게임용 칩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도박장은 보통 '동포 휴게실'이나 '쉼터'같은 간판을 달고 은밀히 영업했습니다. 서울 대림동 일대에만 마작을 즐기는 불법 도박장이 40군데가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사람에게는 같은 중국 동포 폭력 조직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릴 때 10%를 떼고도 일주일에 10%씩 이자가 불어나는 구조, 갚을 시기를 한 번 놓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46살 이모 씨는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 "못 갚고 그러니까, 도박 자금도 마련해야 하니까 보이스 피싱에도 많이 관여돼 있다고 봐야 돼요."

경찰은 속칭 '흑룡강파'를 결성해 이 같은 방식으로 30여 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중국 동포 43살 남모 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업주와 조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 폭력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국 동포 폭력조직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4일 9시 뉴스(뉴스라인)에서 도박장 영업을 하던 중국 동포로 구성된 폭력조직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나온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는 폭력 조직과 사채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도박장 개설 운영 혐의로만 단속되었음이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 방송 지난 6월 4일「도박장 운영 등 중국 동포 폭력조직 적발」제하의 보도에서 언급된 도박장 운영 업주는 단순 도박장 개설 혐의로 조사 중이며, 폭력조직 또는 사채업과의 연관성 여부는 확인된 바 없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6월 30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후 9시에 방송하는 KBS-1TV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7월 10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본 방송 지난 6월 4일「도박장 운영 등 중국 동포 폭력조직 적발」제하의 기사와 관련, 마치 신청인이 폭력조직 또는 사채업과 연관된 것처럼 단정 보도하여 신청인 측에 심적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신청인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VOD(다시보기) 및 스크립트를 삭제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9」 프로그램『알려드립니다』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30일 2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 현황을 보도하면서 서울역 자판기 관리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먼지, 때 잔뜩 낀 식품 자판기‥ 위생 '엉망'』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3일 21:00)

내 용 : ▷앵커 : 한 두 번 꼬집은 얘기도 아니지만, 커피 자판기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속을 들여다 봤더니 먼지와 때가 잔뜩 낀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기자 : 기차역 대합실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열어봤습니다. 먼지와 때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재료를 혼합하는 용기에는 찌든 때가 엉겨붙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판기 관리 책임자 : "(이 물질이 음료에 섞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대학교 도서관 앞 자판기에는 점검 확인증 조차 적혀있지 않습니다.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돼야 할 재료들은 자판기 안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유○○(식약청 중앙기독단속반장) : "해충이라든가 개미라든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 안에 혼입될 수도 있고…"

식약청이 올해 들어 전국의 음료 자판기 만여 대를 점검한 결과, 4백50여 대가 관리 부실로 적발됐습니다.

▷장○○(서울시 삼성동) : "청소하는 것도 잘 못 봤고 별로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 귀찮고 그래서 그냥 먹는 거죠."

식중독을 막기 위해선 내부를 매일 청소하고 물기가 없게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판기에 부착된 일일 점검표를 꼼꼼이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에 설치된 자판기를 이용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500,000원 □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 현황을 보도하면서 서울역 자판기 관리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Ⅱ (유감표명 및 보도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자판기 위생관리 엉망…식약청, 500여 대 행정처분』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3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2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유감을 구두로 표명한다.

-아래-

〈뉴스데스크〉 2009년 6월 3일 자동판매기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취지의 보도에서 지하철 역에서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는 구○○ 님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그대로 방송하여 구○○ 님에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구○○ 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게 될 경우, 관련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 및 심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피신청인 담당 기자는 조정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직접 진정성있는 유감을 표명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의 동영상 중 신청인 관련 화면을 삭제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대체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 현황을 보도하면서 서울역 자판기 관리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Ⅲ (유감표명 및 보도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커피 찌꺼기 '덕지덕지'…자판기 위생불량 여전』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3일 20:00)

내 용 : 〈2009서울조정2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3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 현황을 보도하면서 서울역 자판기 관리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Ⅳ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Y T N : 「뉴스Q」 프로그램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불량』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3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2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6월 30일까지 금 7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700,000원 지급〉 □

차기 충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출마 보도자료까지 낸 신청인을 거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충주MBC-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충주MBC-TV :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미리보는 지방선거-충주시장』 제하의 보도(2009년 6월 4일 21:30)
내 용 : ▷앵커 : 지난 선거는 한나라당 주도 양상이었지만, 이번엔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자 : 지난 2006년 두 차례의 충주시장 선거는 모두 한나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2006년 5월에는 한창희 후보가, 2006년 10월 재선거에서는 김호복 후보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충주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당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3년여 전 충주시장 재선거 때에는 김호복 현 충주시장을 비롯해 4~5명이 한나라당 공천 경쟁을 벌였습니다. 내년 선거는, 김호복 충주시장의 출마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심흥섭, 이언구 도의원 등의 가세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 경쟁 구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선거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한창희 전 충주시장에 대한 사면복권 성사 여부는, 내년 충주시장 선거판도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리보는 지방선거-충주시장, ○○○신문 정○○ 대표 출마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4일자 9시 뉴스에 "미리보는 지방선거-충주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충주시장 편입니다'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난 충주시장 선거에 3번 출마했던 ○○○신문 정○○ 대표가 충주시장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법인이 복지시설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기존 입소자를 재입소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푸르뫼 Mom&Kids (대표 이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융신모자원 가 이주 가정' 지자체는 뒷짐』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4면)
내 용 : 인천시 연수구 모자복지시설인 융신모자원(이하 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들이 시설 재건축으로 인근 임대아파트로 가 이주되면서 재입소 문제와 아파트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4월 3일자 4면)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

3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해 4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모자가정 9가구를 인근 임대아파트로 가이주시켰으며, 시설 측은 재건축 공사 이후 지난 1일 시설 명칭을 '푸르뫼 Mom-&Kids'로 바꾸고 신축 개관식을 가졌다.

그러나 인근 임대아파트로 임시로 옮긴 모자가정 9가구 가운데 입소기간이 남은 3가구는 시설에 재입소하지 못했으며 아파트 관리비조차 1년이 지나도록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융신모자원 모자가정 가 이주"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 내 용 : 경기일보가 지난 6월 5일자 4면 "'융신모자원 가 이주 가정' 지자체는 뒷짐" 제하의 기사와 관련, 융신모자원 측은 가 이주 세대는 9세대가 아닌 8세대로써 이주 시 관리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주가정이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하여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것이고, 이사 5일 전인 서약서를 받은 2008년 5월 8일에도 관리비의 불만 사항이나 다른 항의도 없었는데 모자가정 모씨의 말을 인용하여 시설에서 관리비 부담을 강요한 듯 한 내용으로 보도한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 통합관리운영비로 1인당 54만 9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단순히 보도하였으나, 이는 1인당 1년치의 보조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경기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09년 6월 12일자 5면)
내 용 : 본보 4월 3일자 4면 '모자가정 대책도 없이 이주 내몰려' 및 6월 5일자 '융신모자원 가이주 가정 지자체는 뒷짐' 제하의 기사와 관련, 푸르뫼 Mom&Kids(옛 융신모자원) 측은 모자가정 8세대가 인근 아파트로 가이주하면서 관리비의 불만사항이나 그 어떠한 항의도 없었고(이사 전날이 아닌) 지난 2008년 5월 8일 자발적으로 계약서를 썼음에도 보도내용이 특정한 한 세대의 주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전체 세대의 불만인 것처럼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울진 원전 취수구 그물망 관리 용역사업을 하는 신청인 업체가 지역주민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전복 등을 불법으로 채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웅진기업 (대표이사 배 ○ ○)
피신청인 : 일간 대구경북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일간 대구경북 : 『원전 취수구 그물망 관리용역 입찰 취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자 19면)

내 용 :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가 취수구 그물망 관리 용역 사업에 대해 공개 입찰공고까지 해 놓고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 공급을 위해 방파제를 쌓아 바닷물을 유입시키는데, 이 때 새우떼와 해파리 등이 함께 들어와 취수구가 막힘으로써 냉각수 공급이 제대로 안돼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취수구 그물망 관리용역은 해양생물 유입에 대비해 평소 이 생물들의 유입을 막는 작업 등을 2년 간 약 40억 원(그물 제작 및 설치비 등 포함)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관리용역 사업이다.

그동안 해양생물 유입방지용 어망 특허권을 가진, 지난 시절 정치세력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Y업체가 지난 14년 간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해왔으나, 최근 실용신안권을 가진 S업체가 생겨나면서 올 해 처음으로 지명경쟁 입찰에 부쳐진 것. (중략)

하지만 외지 업체인 Y업체는 그동안 단독으로 사업을 하면서 숱한 말썽과 함께 지역주민 고용배제 등 안하무인 격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울진원자력 발전소 취수구 관리용역 사업체인 Y기업이 지역주민 고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32명을 채용한 바 있으나 채용 후 대부분 장기간 근무를 원하지 않아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전복과 조개를 채취한 것이 아니고 취수구를 관리하는 업체로써 채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물과 로프 등을 몰래 반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울진원자력 발전소에 지입한 그물망 외에는 모든 재료가 웅진기업 자산이므로 그물망 원단과 로프 등을 타 사업소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증을 끊어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지 몰래 반출한 것이 아니다.

야간 비상수당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00% 지급하였고 산재처리도 그동안 4건의 경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체 4건을 산재처리한 바 있으며 역대 울진원자력 본부장 접대 및 행사비 지원을 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숱한 문제점과 공신력이 이미 도출된 업체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번도 Y기업은 울진원자력 본부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며 오히려 한국 수력 원자력(주)사장, 울진원자력본부장 감사패를 8회에 걸쳐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웅진기업이 소유한 특허 그물망이 1990년 이전의 어구도감에 기재된 내용이라 하는데 어구도감에 기재된 내용과는 기술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며 웅진기업 특허 그물망은 우리나라에서 울진원자력발전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양생물(새우, 해파리) 해초, 잡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고 수거하는데 용이하여 울진원자력 발전소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그물망으로 기술 평가를 받고 있다. □

신청인 업체가 제작한 원전 취수구 그물망이 남해안에서 젓새우를 잡는 그물망일 뿐이라고 보도했으나, 의장 · 특허 ·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웅진기업 (대표이사 배 ○ ○)
피신청인 : 경북도민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북도민일보 : 『울진원전, 공개 입찰 돌연 취소… 공기업 불신 증폭』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내 용 : 울진원자력본부가 새우와 해파리 등이 취수구를 막는 바람에 원자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새우 퇴치조'를 구성하는 등 새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취수구 그물망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공개입찰 공고까지 하고서도 돌연 입찰을 취소해 말썽이 일고 있다.

울진원전은 원전 1·2호기의 취수구에 새우떼를 막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Y어망(전남 부안군 업체)이 실용신안을 낸 취수구 유입 그물망을 이용, 새우떼를 막고 있다.

이에 지난 2007년 울진지역업체인 (주)S업체가 취수구 그물을 실용신안을 득하고 2008년 한수원으로부터 검증과정을 거쳐 울진원자력본부에 취수구 그물망 용역업체 선정, 공개입찰을 주장, 울진원전 측은 지난 3월 9일 입찰공고를 전자입찰로 공고했다. (중략)

(주)S업체 측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남해안에서 젓새우를 잡는 그물망을 실용신안이라고 등록해 원전 취수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Y어망의 그물망 실용신안 등록취소를 신청한 상태이다"며 "어구도감에 나와 있는 그물망을 실용신안이란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지역 어민들의 항의도 있는 만큼 당당히 공개입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취수구 그물망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죽변어촌계 Y모(59) 씨는 "Y어망 측은 지금까지 직원 채용과 관련, 지역어민들을 배제, 새우떼가 유입구를 막는 사태가 발생 시 타 지역에서 비상인력을 데려 와 새우떼 제거에 나서는 등 원전가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S업체의 경우 지역어민들로 채용, 하루만에 어민 50명이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울진원자력 발전소 취수구 관리용역을 담당한 Y업체는 1999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해양생물과 해초, 잡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고 수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울진지역 업체라고 하는 (주)S업체가 실용신안 등록을 했으나 그 실용신안에 등록된 그물은 이용 검증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며 엉뚱한 그물망(Y업체의 특허 그물망과 유사)으로 검증받은 것을 Y업체가 문제삼아 한수원 감사실로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또한 Y업체의 그물망이 젓새우를 잡는 그물망과 어구도감에 나와 있다고 하나 Y업체의 주장은 젓새우 잡는 그물과 어구도감에 나와 있는 그물과는 기술력이 판이하게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지역어민을 배제한다고 보도되었으나 Y업체에서는 지역어민 채용을 우선하고 있으나 지역인원이 채용 후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며 2000년부터 지역인원 채용은 32명이며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청인이 전라도 사투리로 부른 판소리 '홍보가'가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신문 : 『호남 판소리가 웬 대구문화재?』 제하의 기사(2009년 6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육자배기조(調) 음악에 전라도 사투리와 억양으로 부르는 판소리가 어떻게 대구시 지정 문화재입니까?"

대구시 죽곡초등학교(달서구 다사읍) 극음악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제기한 의문이다. 담임 교사인 김신표 씨는 "판소리 태생 자체가 전라도 것이어서 그쪽 사설로 한다. 경상도 사설로 된 판소리도 있지만…."이라고 말 끝을 흐렸다. 김 교사는 자신의 대학교 스승인 대구교대 이인수 교수에게 학생들의 질문을 그대로 전했다. 스승의 답 역시 궁색했다.

"전라도 판소리를 경상도에서 부른다고 해서 경상도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학생들의 의문과 궁색한 답변은 1992년 대구시 지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지정과 그 보유자로 인정된 이○○ 씨의 '홍보가'가 전라도 억양으로 불리는 데서 비롯한다. 이 씨의 판소리 '홍보가' CD 해설에도 '전라도 스승 김소희한테 전라도와 서울에서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는 홍보가를 보존하기 위해 보유자에게 매달 보조금 명목으로 약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략)

2000년부터 대구시 무형문화재 민속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성병희 위원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에는 역사성, 학술성, 정통성, 향토성이 중요한 요소다. 당시 법으로 미뤄 판소리 '홍보가'가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지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이○○ 씨는 "판소리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구분이 있느냐. 어느 쪽에서라도 판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라도 판소리를 잇지 않았으면 계보가 끊어졌을 것이다"고 답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판소리 관련보도 정정 및 사과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9일자 사회면에 "전라도 사투리 판소리가 왜 대구무형문화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가 문화재보호법 71조 1항 및 대구시 문화재 보호조례 등에 비춰 향토성이 없는데도 지정이 되어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판소리와 그 보유자인 이○○ 명창이 무형문화재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 및 대구시가 전라도 사투리로 된 판소리의 보존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상도 판소리 연구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문화재보호법 제 71조에는 중요무형문화재라도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경우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판소리의 경우 그 예술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 대구와 서울시에서도 지방문화재를 배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호남지역에서 생겨난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경우 경남, 경북, 부산 등에서 지방문화재를 배출하고, 서울에서 발생한 가곡의 경우 대구, 경남, 대전 등에서 그 보유자를 배출하는 등 예술성이 뛰어난 종목의 경우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파생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창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판소리의 경우 향토성보다도 그 탁월한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임에도 매일신문이 사설이 전라도 사설로 되어 있다는 지엽말단적인 내용으로 보유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정정하며 또한 보유자 이○○ 명창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2009년 6월 9일자 매일신문 사회면 "호남 판소리가 웬 대구문화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매일신문 인터넷판에서 6월 19일까지 삭제한다.

• 피신청인 측은 위 항의 기사가 이○○ 명창의 대

구지역에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폄하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밝힌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 삭제〉 □

신청인 업체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하다 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옥당산업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정부청사 석면 철거도 '규정 위반'』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0일자 12면)
내 용 : 환경단체 "음압기 가동 안해 외부유출 가능성"

폐기물 일반처리장서 처리 '작업중지 명령'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채 석면 제거 작업이 이뤄지다 정부청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중략)

정부중앙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석면 철거 업체는, 석면 노출로 논란을 빚은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석면 제거를 맡은 바로 그 업체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정부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2~3층에서 진행 중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부청사 석면 규정위반'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9일자 12면 보도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발표자료를 인용해 석면 철거업체가 폐기물 관리법을 어겼다면서 해당 업체가 석면 노출로 논란을 빚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공사를 맡았던 업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삼성본관 공사를 맡았던 석면전문 폐기물업체인 O산업은 정부청사 공사 시 하청업체로 참여하였으며, 원청업체와 석면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해당 공사의 석면 철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보도와 관련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6월 10일자 12면 『정부청사 석면 철거도 '규정 위반'』 기사와 관련해 O산업은 지난 4월 이후 세종로 청사 석면 철거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한겨레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한겨레신문이 통상적으로 정정이나 반론보도 시 사용하는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과 함께 인터넷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옛 삼성본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석면 제거를 맡은 바로 그 업체')을 2009년 6월 18일까지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하다 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옥당산업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정부청사 공무원도 석면 위험 영향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3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는 지난 6월 9일 『정부청사 공무원도 석면위험 영향권』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청사 내 소방시설과 천정 교체공사 담당회사 ㅇ산업은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음압기(실내 공기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해 미세먼지 등 분진의 유출을 막는 장치) 설치는 커녕 석면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막도 찢어져 있었고, 석면 뿜칠 재를 안전하게 처리하지도 않았다"고 시민환경연구소 등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석면전문 폐기물업체인 ㅇ산업이 시공사로부터 해당 공사의 석면 철거해체작업을 하청 받았으나 노동부로부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작업수칙 준수 및 비산 방지조치 철저 안내'라는 공문을 받은 후 시공사와 석면처리 방식에 대해 조율하던 중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ㅇ산업은 해당 공사의 석면 철거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시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ㅇ산업은 정부중앙청사 석면 철거와 무관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머니투데이〉 경제섹션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 위 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바로 아래에 위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되,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ㅇ산업')을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고침] 정부청사 공무원도 석면위험 영향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7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하다 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옥당산업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닷컴 : 『"정부중앙청사는 석면 위험 노출"』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3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4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경제닷컴 : 『[바로잡습니다] 정부중앙청사는 석면 위험 노출』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요양원이 수용자들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마치 '감옥'과 같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시스 : 『'감옥같은 시설 벗어나기 위한 노숙투쟁'… 중증 장애인들 탈 시설 선언』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 19:36)
내 용 :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시설 중증 장애인'들이 '탈 시설'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의 S요양원에서 지내던 장애인 8명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시설을 나와 정부와 지자체에 '자립주택'을 요구하는 노숙 투쟁을 선언했다. (중략)

정부와 서울시에 '자립주택'을 요구하며 서랍과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갖고 나와 노숙에 나선 이들은 적게는 6년, 많게는 28년까지의 시설생활에 대해 한결 같이 "감옥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감옥같은 시설 벗어나기 위한 노숙투쟁" 현재의 해당 시설 모습과는 차이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4일 19시 뉴스에서 "감옥같은 시설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시설에서 퇴소하고 투쟁을 하는 이들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설이 거주장애인들을 억압하고 고립과 타율이 강요당하는 시설인양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포시에 위치한 이 시설은 자유로운 외출-투쟁하는 이들도 지난 1년 간 적게는 95회 많게는 316회 외출한 기록이 있음-이 허용되는 개방된 시설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설의 신임원장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거주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 이 장애인들이 퇴소 시에 이미 시설 거주예정 주소를 시설에 통보하고 충분한 의사표현능력이 있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정식퇴소(퇴소신청서)를 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노숙투쟁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행동양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투쟁하는 이들 중에 병환이 중한 분들이 있다며, 탈 시설공투단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게 건강을 위해 이 분들은 속히 거취 예정지로 입주하도록 촉구해 왔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김포 S요양원의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6월 4일자 『'감옥같은 시설 벗어나기 위한 노숙투쟁' …중증 장애인들 탈 시설 선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김포 S요양원 측은 과거 부정을 저질렀던 원장 등은 형사 처벌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운영진은 과거와는 달리 거주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요양원이 '감옥과 같다' 거나, '고립' 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임 원장 취임 이후에는 거주 생활인의 자치회의와, 거주 대표자들과 원장과의 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뉴시스의 사회면 '주요뉴스' 란에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김포 S요양원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9일 17:24)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특이한 외형으로 화제가 된 '연희동 프로젝트' 건물의 설계 아이디어를 건축주가 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 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Ⅰ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
(대표 홍 ○) 외 2인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연희동 주택가 흰색 외벽 독특한 전시공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0일자 10면)
내 용 : 서울 연희동 주택가에 흰색 외벽의 독특한 전시공간이 등장했다. 지난 달 26일 개관한 갤러리 '연희동 프로젝트' 건물(사진)이다.

국내 미술 작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벌여온 배윤성(39) 대표가 단독 주택 건물 부지에 새로 지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로 구성됐다. 배 대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렌티큘러 작품으로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작가 배준성(42)의 동생이다.

전시공간만 490여㎡ 규모인 이 건물은 외벽이 냉장고처럼 미끈한 흰색의 마감재로 처리돼 있고 출입문도 외진 곳에 숨겨져 있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정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연희동 주택가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물로 자리잡았다.

배 대표는 "2004년부터 형의 해외 진출을 돕다가 다른 작가들로부터도 요구가 있어 ㈜연희동 프로젝트라는 법인을 만들어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벌여왔다"면서 "별도의 전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개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년 4월 10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연희동 주택가 흰색 외벽 독특한 전시공간' 기사내용 중 '건물의 설계 및 디자인이 일반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 뒤 작가 배준성과 그의 동생인 배윤성 대표의 아이디어로 건물을 완공했다는 기사에 대해 '연희동 프로젝트' 갤러리를 설계한 시스템랩 측은 기사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설계가 이루어졌고 디자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의 대부분이 마치 건축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연희동 프로젝트' 갤러리를 설계한 시스템랩은 초기 디자인과 기획, 그리고 건물의 준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세계일보 : 『"따분한 서울을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일자 22면)

내 용 : "새로운 건축은 단조롭고 따분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건축설계사무소인 시스템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홍택(42)·김찬중(40) 공동대표는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도시를 꿈꾼다. 건축계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그룹인 이들은 고려대 건축공학과 선후배 사이. 각자 따로 일을 해오다 2005년 의기투합해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개인의 주거공간부터 기업의 지점이나 사무실, 카페, 공공건물 등 갖가지 건물을 설계했다. 최근에는 공공사업인 한강 나들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중략)

올해 초 연희동 골목 가에 들어선 전시공간인 연희동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연희동에 뜬 독특한 흰색 코팅 외벽의 건물로 관심을 모은 이 건물은 '냉장고 같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휴대전화기에서 착안했다. "오늘날 미술은 완전한 순수 영역이라기보다는 거래가 되는 일종의 상품이잖아요. '상품'(product)이라는 키워드에서 착안해,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휴대전화기를 본떴어요. 휴대전화기의 매끈한 외벽과 둥그스름한 모서리 등도 건축에 그대로 가져왔어요." (후략) □

특이한 외형으로 화제가 된 '연희동 프로젝트' 건물의 설계 아이디어를 건축주가 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 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Ⅱ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
(대표 홍 ○) 외 2인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연희동 주택가, 저 '냉장고'는 뭐지?』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3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4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건물이 이야기를 입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일자 36면)

내 용 : 〈2009서울중재243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과거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신청인 재단 운영진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5.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44 참조)

보도내용

노컷뉴스 : 『복지시설 탈출한 장애인들의 '표류기' 복지금 횡령 김포 석암재단 수용 장애인 오늘부터 천막농성』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내용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호재성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회사 차원의 차익거래는 없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디브이에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이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5.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이투데이 : (1) 『디브이에스 황우석 테마로 차익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종합면)
내 용 : 잠잠하던 황우석 테마가 다시 코스닥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연구 성과 흘리기와 함께 최근에는 우회상장 소문 역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한번 황우석 위력을 실감케 하는 종목이 있었다. 디브이에스는 이날 장 시작 전에 조○○ 대표이사가 황우석 박사를 지원하는 수암연구재단의 이사에 선임됐다고 공시했다.

황우석 기대감으로 장 개시와 동시에 매수잔량 100만 주를 넘기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디브이에스는 불과 4분만에 300만 주에 육박하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하면서 -8.68%까지 급락했다. (후략)

(2) 『디브이에스 호재성 공시에 급락.. 투자 유의해야』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종합면)
내 용 : 디브이에스가 기존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했다. 이후 단순히 수암연구재단의 이사에 선임됐다는 뉴스가 나온 후 급락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디브이에스 차익거래 의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 내 용 : 1) 본지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44분 보도한 "디브이에스 차익거래 의혹"이라는 제목

의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공시시점과 내용 등 내부 고급정보를 통한 선취매 이후 주가 급등에 맞춰 대량 매도한 의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디브이에스 측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테마와 비슷한 호재성 뉴스를 통한 대규모 매매 의혹은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고, 2009년 6월 9일 오전 11:07 다시 익명의 증시 전문가를 인용하여 "공시시점과 내용 등 내부 고급정보를 통한 선취매 이후 주가 급등에 맞춰 대량 매도한 의심이 있다, 전형적인 재료에 의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수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회사의 내부거래나 차익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지는 의욕에 앞선 기자가 취재 도중 실수로 인해 디브이에스 및 조○○ 대표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황우석 박사가 일각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황우석 박사께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37,278,925원

피신청인 주장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조정에 응할 의사 없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와 관련해 진중권 교수와 논쟁 중인 신청인에 관해 인신공격적 기사를 써서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변 희 재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프레시안 : 『"변희재 씨, 수습기자부터 시작하는게 어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보수 언론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좌충우돌해 온 변희재 씨가 〈프레시안〉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8일 진중권 교수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게재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관련 기사 : "진중권, 또 다시 한예종 학칙 조작, 상습범")

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빅뉴스〉에 이날 오전 10시 49분 '빅뉴스'라는 정체불명의 기자 이름으로 게재한 머리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변 씨가 기사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기사 중에 맞춤법 오류가 많아서 〈프레시안〉 독자를 위해서 약간의 교정을 거쳤다. 일단 변 씨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진중권 씨가 또 다시 학칙을 날조하며 여론조작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진씨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중략)

변씨는 언론사 대표 행세하며 마타도어를 하기 전에 당장 수습기자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기자의 자세와 기사 쓰기의 A, B, C부터 배우기를 권한다.

아직 나이도 젊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 이제 4년도 채 안 남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진중권 씨가 지난 6월 8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예종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가 소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학칙이 아니라 '학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중 객원교수 채용규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본지의 강양구 기자가 '변희재 씨, 수습기자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여전히 학칙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변희재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진중권 씨가 지난 6월 8일 프레시안이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예종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가 소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학칙이 아니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객원교수 채용규정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09년 6월 27일 오전 9시까지 1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레시안〉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프레시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주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입상한 지자체들이 상을 타기 위해 수억 원의 돈을 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 종 승)
피신청인 : J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5.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JTV : 「7시 아침뉴스」 프로그램 『수억 원 들여 받은 상』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4일 07:00)
내 용 : 도내 자치단체들이 각종 상을 받는데 3억 원이 넘는 홍보비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방송의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많은 혈세를 들여 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자 : 전주시는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중앙의 한 일간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의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하고 부대시설 등을 만드는데 9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전주시 전통문화국장 :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주시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전주방송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지난 2년 동안 도내 자치단체가 홍보비 등을 건네고 받은 상은 30개 가까이 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상을 받기 위해 들어간 돈은 도내에서만 무려 3억 원이 넘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방자치 경영대전 '돈 주고 받은 상' 보도, 사실과 무관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4일 7시 아침뉴스에서 '돈 주고 받은 상'이라는 제목으로 도내 자치단체들이 중앙의 한 일간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상을 받기 위해 수억 원의 비용을 들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상을 받기 위해 수억 원의 비용을 들였다', '돈만 내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상이라 상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홍보효과도 크지 않다', '정말 사람이 없어요 전시하는 사람들 관계자들 밖에 없어요'라고 보도한 내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랑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랑을 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이를 체험, 관람하는 전시 위주의 행사이고, 개막식 일부 행사로 진행되는 시상식은 타 시상행사와는 달리 참가 자치단체의 심사 참가비 등을 일체 받고 있지 않으며, 정부관계자와 학계 전문교수진으로 심사원을 구성, 심사원들이 기준한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공적조서에 기술 이를 정부부처가 최종 승인하여 정부각 부처가 상장을 수여하고 있어 지난 6월 4일 7시 아침뉴스에서 보도한 '돈 주고 받은 상'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일정한도 내에서 반론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정이나 정정성 내용이 담긴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 □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신청인이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소환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학 송 (국회의원)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검찰, 최철국 소환 … 정관계 인사 줄소환』 제하의 보도 (2009년 5월 22일 22:10)
내 용 : ▷앵커 : 박연차 리스트 막바지 수사가 경남지역 정계 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철국 의원이 소환됐는데 김학송 의원, 김태호 경남지사도 조만간 소환됩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11시간 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박연차 회장에게서 5천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과의 금전 거래는 4년 전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빌렸다 갚은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르면 내일,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다음달 초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박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태호 지사는 동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다음달 초에 소환할 방침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김학송 국방위원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2일 9시 뉴스 이후 총 15회에 걸쳐,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김학송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청인 단체가 회원들에게 특정 매체의 구독을 독려하고 구독료 중 일부를 갖는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매체와 정식 후원 계약을 맺고 후원료를 받은 것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한겨레-경향 영업사원이냐" 내부서도 불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1일자 4면)
내 용 : 언소주의 메이저신문 광고주 압박운동과 관련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마이너 신문들이 이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자사 이익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략)
또 언소주와 일부 매체가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언소주는 한겨레, 경향신문 등을 '정론지'로 분류하고 구독 권유 운동을 하고 있다. 언소주는 홈페이지에 '4대 정론 주간지 구독하고 언소주 후원하기' 게시판을 마련하고 시사IN, 한겨레21, 위클리경향, 미디어오늘 등의 구독 후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이 이들 매체를 구독하면서 '언소주를 통해 구독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정기구독료의 일정액이 언소주에 돌아간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언소주의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6월 11일 『"한겨레-경향 영업사원이냐" 내부서도 불만』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언소주에서는 해당 기사에서 말한 구독 후원은 신문사와의 후원 계약을 거쳐 합법적으로 받는 후원금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대표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출시킨 점에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6월 11일자 "한겨레-경향 영업사원이냐 내부서도 불만" 제목의 기사와 관련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김○○ 대표의 부인이 경향신문 기자인 것과 언소주의 동아일보 등 신문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는 무관하고,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이미 사면되어 실효가 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 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박연차 회장이 검찰에서 신청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신청인의 무관함이 밝혀졌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양 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2009서울조정2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서초아크빌 201호
조정대리인 변호사 송 평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7월 15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종합면(A3면 이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박연차 게이트 관련 정정보도

2) 내 용 : 본지 2009년 4월 11일자 A1면 『"前 국정원장 김성호·김만복에도 돈줬다"』, A3면 『정보기관 수뇌들까지 '박연차 돈맛'…안 썩은 곳이 없다』 제하의 각 기사에서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이○○ 前 국정원 2차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이 前 차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박 회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 □

신청인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시설은 수용자들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투쟁 장애인들은 자발적으로 퇴소한 것이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에이블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에이블뉴스 : 『복지시설 탈출한 장애인들의 '표류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자립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4일자 『복지시설 탈출한 장애인들의 표류기』 제하의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2009서울중재44(석암베데스다요양원:주식회사 노컷뉴스) 사건의 중재화해결정 보도문을 2009년 7월 6. 09:00부터 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제1보도문을 2009년 6월 5일자 『"수급권 신청도 못하고, 활동보조도 안되고"』 제하의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2009년 7월 6일 09:00부터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제2보도문을 2009년 6월 5일자 『"자식들과 모질게 인연 끊고 20년 살아왔어요"』 제하의 조정대상기사, 2009년 6월 12일자 『시설생활 21년만에 퇴소한 주기옥(60) 씨』 제하의 조정대상기사, 2009년 6일 15일자 『"무겁기만 했던 삶의 무게, 그리고 아직도 두려운 삶"』 제하의 조정대상기사의 각 하단에 2009년 7월 6일 09:00부터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제3보도문을 2009년 6월 18일자 『"장애인을 위해 계속 투쟁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하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2009년 7월 6일 09:00부터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 지〉

1. 제1보도문
• 제 목 :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반론보도문
• 본 문 : 위 보도와 관련하여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측은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던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지난해 자립 홈으로 나간 장애인들이 있고, 청약저축도 가능하며 이미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도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2. 제2보도문
• 제 목 : 김포 석암요양원의 반론 및 정정보도문
• 내 용 : 위 보도와 관련하여 김포 석암요양원 측은 과거 부정을 저질렀던 원장 등은 형사 처벌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운영진은 과거와는 달리 거주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임 원장 취임 이후에는 거주 생활인의 자치회의와, 거주 대표자들과 원장과의 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3. 제3보도문

• 제 목 : 김포 석암요양원의 반론보도문
• 본 문 : 위 보도와 관련하여 김포 석암요양원 측은 과거 부정을 저질렀던 원장 등은 형사 처벌을 받고 있으며, 여러 차례 부정에 대한 조사감찰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이블뉴스 :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자립생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공금으로 원-달러 환투자를 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했으나, 회사 승낙 하에 공적으로 운용한 것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기자협회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7.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기자협회보 : 『CBS 경남본부장, 공금으로 환투자 '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0일자 5면)
내 용 : CBS 김 모 경남취재본부장이 회사 공금 1억여 원으로 원-달러 환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CBS 감사실 등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 2월께 회사 돈으로 1억여 원어치 달러를 매입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천4백 원대로 이후 환율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본부장은 최근 CBS 감사에서 "손실분은 개인 돈으로 전액 보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감사실 등에 따르면 김 본부장의 경우 사장의 인가 없이 공금을 투자했으며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오보를 바로 잡고 사과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0일자 5면에 "CBS 경남본부장, 공금으로 환투자 '물의'"라는 제목으로 CBS 경남본부장이 공금으로 환투기를 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 달러 운용자는 자연인 CBS 경남본부장이 아니라 법인인 CBS 경남본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달러 운용도 공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고 피해 당사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3층
회장 김 경 호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기자협회보 5면 좌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2. 기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보도면에도 이

에 상당한 만큼의 정정보도문을 일정기간 게재한 후 해당 발생기사의 영구삭제를 요청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최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CBS 경남본부장 재직시 외국 통화를 보유할 경우 사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규를 위반하고 공금으로 환투자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환투자의 운용주체는 신청인 본인이 아닌 CBS 경남본부였고 재정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본인이 회사 공금을 유용해 환투자를 한 것처럼 보도하여 이로 인해 징계성 인사를 당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사 사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CBS 경남본부의 외환투자가 사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CBS 경남본부의 본부장이던 신청인은 내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리부서를 통해 달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을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CBS 경남본부장이었던 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외환 투자를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신청인 개인을 비방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사규를 위반한 환투자에 대한 비판이 그 주된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의 인격을 훼손할 만큼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사규 위반 사실도 인정되므로 보도의 진실성 또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4. □

신청인이 제작하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시사만평이 자사의 논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삽화로 전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문만평 풍자와 해학은 사라지고』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5일 23:30)

내 용 : ▷앵커 : 고바우 영감, 두꺼비, 까투리 여사 등으로 불린 신문 만화 기억하십니까? 서슬

파랗던 독재시절에 날카로운 풍자와 비유로 국민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줬던 만화들인데요, 지난 2일은 이 시사만화가 국내에 뿌리를 내린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네 컷짜리 신문만화는 지면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한 컷짜리 만평에는 풍자와 해학 대신 언론사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듯 대통령이 만평의 주요 소재가 된 것은 한겨레도 비슷했습니다. 미디어비평 제작진이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간의 한겨레 만평 쉰 세 건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25차례 등장했고 모두 부정적 이미지였습니다. 이대통령의 외모 역시 독재자를 표현한다는 뜻에서 대머리로 그려졌습니다. (조선과 한겨레 만평 여러 개를 예로 보여주며 동일 선상에서 분석) (중략)

▷기자 : 사회현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나 비판에 대한 요소는 줄어들고, 자사의 논조를 뒷받침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인물중심의 정치 삽화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인터넷에 길들여진 독자들을 위해 비유 대신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조선, 중앙, 한겨레 만평을 화면에 보여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신문만평 풍자와 해학은 사라지고"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5일자 미디어 비평에서 "조선, 중앙일보와 더불어 한겨레 등 여타 한 컷 만평이 풍자와 해학은 사라지고 신문의 논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삽화로 전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만평 또한 "풍자와 해학이 없고 신문의 논조를 정당화하는 삽화"라는 근거도 취재된 바 없이 권력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했다는 측면만을 가지고 양비론적 비판을 하는 것은 극히 자의적인 꿰맞추기 보도입니다.

미디어비평의 양비론적 보도와는 다르게 인터뷰에 등장한 4인 모두는 인터뷰 내용이 왜곡됐거나 주로 조선과 중앙 만평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

신청인 요양원이 수용자들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마치 '감옥'과 같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중증 장애인들 "인간답게 살고싶다" 절규』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5일자 14면)

내 용 : "더 이상 시설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노숙을 하는 한이 있어도 시설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8명의 중증 장애인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탈 시설'과 '자립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벌써 12일째다. (중략)

농성 중인 8명은 김포시 석암요양원이 무단외출로 간주하고, 퇴소 조치를 하면서 현재 주소가 없다. 노숙기간 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임 간사는 "장애인이라고 집단으로 가둬놓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3일까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2009년 6월 16일자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 요양원이 수용자들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마치 '감옥'과 같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NGO 칼럼' 대통령의 눈물과 장애인의 노숙』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2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요양원이 수용자들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마치 '감옥'과 같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시설은 창살없는 감옥… 자유를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세계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9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요양원이 수용자들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마치 '감옥'과 같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장애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장애인신문 :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시설 장애인들의 역습』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1일자 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5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장애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위원회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취소 처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정비구역지정이 취소된 것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홍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승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 21:00)
내 용 : 한국에 사는 한 미국인이 자신이 사는 지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 재개발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숲 아래로 일제시대에 지은 한옥 서른네 채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 씨도 이 한옥에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피터 씨는 젊은 시절 봉사 활동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머물게 된 한옥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자연과 멋, 그리고 여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승소'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4일 뉴스데스크에서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승소"라는 제목으로 한옥이 지켜지고, 재개발이 취소 처분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승소 원인은 한옥

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재개발 취소 처분이 아닌 정비구역지정 취소 처분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부제목 : "동선3구역 재개발 계속 추진"
• 내 용 :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옥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의 재개발사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취소 처분이 아니라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취소 처분이었고 현재는 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며 이 재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MBC-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부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관련내용을 게시하고 위 보도문을 프로그램 진행자의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단신] "동선 3구역 재개발 추진"』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30일 07:3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서울예고 재단 이사 해임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해임이었을 뿐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5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시 교육청, 서울예고 이사 전원 해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3일자 11면)
내 용 :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년여 동안 '개방형 이사'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어 온 서울예술고의 재단 이사들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서울예술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이화예술학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시 교육청은 지난 9일 손아무개 이사 등 이 학교 재단 이사회 임원 3명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화예술학원 이사회는 애초 11명의 이사로 구성됐으나, 지난 2년 동안 개방형 이사 선임을 둘러싼 다툼으로 임기가 끝난 이사 8명의 후임을 정하지 못해 3명의 이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해 3월부터 이화예술학원 쪽에 임기가 끝난 임원을 새로 뽑아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몇 차례 보냈지만 분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이사 정원 11명 가운데 8명이 결원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재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남은 임원들에 대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학교 재단 이사들 사이의 내분이 길어진 데에는 서○○ 서울예고 교장의 개방형 이사 선임 문제가 불 씨로 작용했다. 이 학교 교사 16명이 구성한 '서울예고 공정인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는 “서 교장이 자신의 교장 연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무리하게 이사가 되려고 한 것이 파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장이 이사로 선임되면,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계속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단의 한 이사도 “서 교장의 개방형 이사 선임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장이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서 교장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서울예술고 교장의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보 지난 4월 23일자 11면 『시 교육청, 서울예고 이사 전원 해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예술고 서○○ 교장은 서울예술고 이사가 시 교육청에 의해 전원 해임된 원인은 이사회의 내분으로 인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교장이 이사가 되기 위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예고는 관례적으로 학교장이 당연직 이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본 문 : 본보 지난 4월 23일자 11면 『시 교육청, 서울예고 이사 전원 해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예술고 서○○ 교장은 서울예술고 이사가 시 교육청에 의해 전원 해임된 원인은 이사회의 내분으로 인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교장이 이사가 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예고는 관례적으로 학교장이 당연직 이사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9년 7월 13일자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공정인사 비대위…)과, 본문 활자 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각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신임 원장 취임 후 기존 문화강좌 폐지, 사무국장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안팎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포문화원 (원장 강 ○ ○)
피신청인 : 김포저널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김포저널 : 『現 문화원장 취임 후 문화원 안팎 갈등의 골 깊어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3일자 2면)
내 용 : 지난해 10월 제9대 김포문화원장 체제가 시작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정보다는 갈등요소가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김포문화원은 강○○ 원장의 운영방침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비춰졌으나 최근 사무국장과의 마찰이 표면화 되면서 우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

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갈등은 오는 6월 신임 사무국장을 공채하면서 일단락되겠지만 남은 문제는 여전히 시민사회에 전파되면서 화해보다는 갈등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시작은 7·8대 원장 시절 해오던 문화강좌의 폐지에 있다. 7·8대 원장 시절 사물놀이, 서예강좌, 문화대학을 운영했으나 사물놀이는 폐지되고 서예강좌는 문화원 밖으로 옮겨져 수강료를 내고 수업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수요일 운영되던 문화대학만 남아 있다.

특히 5천만 원 문화원 기금 마련을 위해 시작한 평생회원 45명의 사진은 문화원장실에서 내려져 앨범으로 처리되면서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의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전임 조한승원장은 5천만 원 기금조성을 위해 1백만 원의 평생회원 43명을 확보해 문화원에 기부하고 사진을 문화원장실에 부착해 퇴임시까지 5천만 원 조성의지를 표현했다. 반면 강○○ 원장이 취임한 후 지난 3월 평생회원 사진은 내려졌다. (중략)

한편 사무국장과의 멱살잡이 등 불화설에 대해서는 "국장의 업무처리가 원장을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러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반면 현재 사무국장은 "'축사의 작문실력이 떨어진다' '조한승 원장 쪽 사람이다'는 등의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사무국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 문화원장 취임 후 문화원 안팎 갈등의 골 깊어져"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23일자 2면 "현 문화원장 취임 후 문화원 안팎 갈등의 골 깊어져"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2009년 문화원 사업안이 김포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문화강좌가 폐지된 것으로써 신임 원장이 폐지시킨 사실이나 서예강좌를 문화원 밖에서 수강료를 받고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임 원장이 평생회원을 통해 기부 받은 돈의 4천만 원 이상을 후임 원장에게 물려줬다는 내용도 3천1백4십만 원의 잔액이 있는 통장을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현 문화원장 취임 후 문화원 안팎 갈등의 골 깊어져"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23일자 2면 "현 문화원장 취임 후 문화원 안팎 갈등의 골 깊어져"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전임 원장이 평생회원을 통해 기부받은 돈의 4천만 원 이상을 후임 원장에게 물려줬다는 내용은 3천1백4십만 원의 잔액이 있는 통장을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현 문화원장은 사무국장과 멱살잡이를 한 사실이 없고, 문화원이 서예강좌를 밖에서 수강료를 받고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김포저널 2009년 7월 6일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문화원, '예산삭감·직원 업무능력 문제가 원인' 주장)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김포저널 인터넷판(www.gimpojn.com) 메인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7일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신청 건 중 손배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김포저널 : 『"現 문화원장 취임 후 문화원 안팎 갈등의 골 깊어져"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채용 지침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채용을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포문화원 (원장 강 ○ ○)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우리일보 : (1) 『김포문화원, 사무국장도 모르는 국장 채용공고』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8일 19면)

내 용 : 김포문화원이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안내'(일명 공채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포문화원 및 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공개채용은 전국적으로 '연합회의 공채지침서'에 의거하여 통상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공채공고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김포문화원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21일 김포문화원 홈페이지와 관내 2개 지역신문에 공채모집 광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김포문화원 S모 국장은 "나중에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사무국장도 모르는 채용공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S모 국장은 "사무행정이라는 게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국장이 사인을 하고 문화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되는데 이번에는 원장과 부원장의 결재가 먼저 나고 나중에 간사가 사무국장 사인을 받으러 온 형국이다"며 "부원장은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은데 사인을 했다. 이런 행정절차가 어디에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문화원장은 "사무국장이 몰랐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4월 초순경 이사회 안건심의에서 이 부분이 거론됐으며 회의도 사무국장이 진행했다"고 반박해 귀추가 주목된다.

(2) 『김포문화원, 회비미납으로 부실운영 예상』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일자 18면)

내 용 : 김포문화원 부원장 및 이사들 대부분이 문화원에 납부해야 될 회비를 제대로(혹 제 때) 내지 않아 문화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포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강○○ 김포문화원장이 취임하면서 부원장 3명과 이사 30명으로 운영진이 구성됐으나, 지금까지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구모 이사 단 1명으로, 나머지는 한 명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포문화원, 사무국장도 모르는 국장 채용공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28일자 19면 및 5월 1일자 18면 "김포문화원, 사무국장도 모르는 국장 채용공고", "김포문화원, 회비미납으로 부실운영 예상" 이라는 각각 제목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김포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공고는 현 사무국장이 올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올 4월 3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된 사항이고, 4월 13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공고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보고에 따라 공고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사무국장도 모르고 국장 채용공고가 나갔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올 4월 3일 이사회 진행 전 전국문화원연합회에 3차례에 걸친 상담 후 연합회 차원의 〈2009년도 사무국장

채용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2006년도 사무국장 채용지침〉과 〈김포문화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4월 24일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메일로 전달한 〈2009년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채용방안〉의 지침내용도 '지방문화원 자율로 사무국장 채용을 추진하라' 고 되어있어 김포문화원이 연합회 지침을 무시하고 국장 채용공고를 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김포문화원, 사무국장도 모르는 국장 채용공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28일자 19면 및 5월 1일자 18면 "김포문화원, 사무국장도 모르는 국장 채용공고", "김포문화원, 회비미납으로 부실운영 예상"이라는 각각 제목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사실확인 결과 김포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공고는 올 4월 3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된 사항이고, 사무국장과 공고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보고에 따라 공고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2009년도 사무국장 채용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화연합회의 답변을 듣고 〈2006년도 사무국장 채용지침〉과 〈김포문화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김포문화원이 연합회 지침을 무시하고 국장 채용공고를 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부원장은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은데 사인을 했다' 는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김포문화원 사업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임원진이 공유할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행한 사항으로 부원장이 결재라인에 있지 않다는 모 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김포문화원 회비납부가 연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연회비 납부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회비미납' 이 아니며, 1명만 회비를 납부하였다는 내용도 4월 말 현재 원장을 비롯하여 9명의 이사가 회비 분납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김포문화원장이 사무국장과 멱살잡이 등을 했다는 내용이나 해명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9년 7월 3일자 19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5월 1일자-부원장 미납에 이사들은...)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우리일보 인터넷판(www.wooriilbo.com) 메인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7일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우리일보 : 『"김포문화원, 사무국장도 모르는 국장 채용공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6·10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 의원·경찰 몸 싸움… 행사 뒤 도로 점거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1일자 8면)

내 용 : 〈사진설명〉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주최 측과 광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수시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무대장비 반입사고 野 의원-경찰 몸싸움…행사 뒤 도로 점거도"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종합 A8면에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 의원-경찰 몸싸움…행사뒤 도로 점거도"라는 제목으로 주먹을 쥐고 경찰을 폭행하려 하는 신청인의 전면 사진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진에서처럼 신청인이 경찰을 폭행하려거나 폭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0

청 구 명 :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사진부 부장 박 ○ ○,
사회부 차장 김 ○ ○
주식회사 동아닷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대표이사 김 일 흥
조정대리인 경영기획실 실장 최 ○ ○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09년 7월 17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9. □

신청인이 6·10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닷컴 :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 의원·경찰 몸싸움… 행사 뒤 도로 점거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60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60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9서울조정260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260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요양원이 입소한 장애인의 식사량을 통제하는 등 수용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프레시안 : 『오세훈 시장님, 배고파서 개밥-벽지 먹어봤나요?』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프레시안 : 『석암베데스나 요양원 "성인만 입소하는 시설이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프레시안〉은 6월 18일 "오세훈 시장님, 배고파서 개밥-벽지 먹어봤나요?"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하는 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을 언급하였고 방상연이라는 장애인이 석암재단 베데스다요양원에 어린이 시절에 입소하여, 인권 침해를 받아왔고 배가 고파서 개밥, 나무, 벽지, 비닐도 먹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측에서 밝혀온 바에 의하면 석암요양원은 성인들만 입소하는 시설이어서, 방상연씨도 성인이 되어서야 본 시설에 입소하였고, 석암요양원이 아닌 시립아동병원인 것으로 이미 타 신문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석암요양원은 본 기사에 보도된 인권 유린의 내용과 무관하기에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동학혁명 계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조 ○ ○)
피신청인 : 정읍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정읍신문 : (1) 『전봉준 생가 터 일부 학자와 모씨에 의해 조작됐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0일자 1면)
내 용 : 향토사를 50여년 간 연구했다는 은관동씨가 지난 주 본보 동학과 관련한 기사 (2009년 5월 13일자 926호 1면과 8면)를 읽고서 기자에게 충

격적인 얘기를 전해 주었다.

전직 공무원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 "고증은 아니더라도 지나간 이야기만이라도 정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읍시가 고창군의 로비와 물량공세에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무력해졌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 씨도 돈으로 매수 당한 사람이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당사자라고 지적하며, 정읍시청 문화담당부서도 모두가 돈과 관련한 로비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창이 하자는 대로 방관 내지는 묵인이 공공연하게 자행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자에게 병원서 퇴원하는 대로 모든 자료를 건네주겠다고 말했다. 그 중 한 부는 꼭 강광 정읍시장에게 전해 역사를 바로 잡고 사실을 규명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가 주장하는 전봉준 생가와 관련한 것에서는 당시 급조한 이평면 조소리 전봉준 생가 터, 지금은 고택으로 명칭된 그곳의 터는 가짜라고 말했다. 전봉준의 고택도 생가 터도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고창의 생가로 주장하는 것 역시 전봉준의 부모가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서 낳은 연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략)

(2) 『2007년 부터 동학혁명 축제사업비 5억 원으로 증액해 운영 자존심을 되찾는 해법은 기득권 포기와 외부인사 적극 영입』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0일자 3면)

내 용 : 2009년도 올해는 지난 해와는 달리 특별하게 구분되는 황토현 축제장의 행사는 더욱더 빈약했다. 오히려 지난 해 보다 축소된 분야가 많아 아쉬움이 더 많았다. (중략)

왜정시대 동양사 동양교과서에도 동학 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은관동 씨의 주장 외에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한 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학 난을 혁명으로 미화했다는 것이다.

또 은관동 씨는 동학혁명위원회로 발족 출발했는데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명칭이 오락가락 함으로써 동학과 관련한 기득권을 잃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동학혁명의 발원지(發源地)와 발상지(發祥地)는 개념부터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말은 지조도 없이 몇 사람의 이해관련 인들의 말만 믿고 또는 관이 앞장서온 대로 꼭두각시 마냥 고부에 발원지라고 비석을 세운 것 등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 ①〉

• 제 목 : 모 씨와 정읍시청 문화담당부서 돈으로 매수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 (돈 매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0일자 1면에 "그는 모 씨도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이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당사자라고 지적하며, 정읍시청 문화담당부서도 모두가 돈과 관련한 로비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창이 하자는 대로 방관 내지는 묵인이 공공연하게 자행됐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모 씨와 정읍시청 문화담당부서는 돈으로 매수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문 - ②〉

• 제 목 : 동학혁명위원회로 발족 출발했다는 보도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로 정정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0일자 3면에 "또 은관동 씨는 동학혁명위원회로 발족 출발했는데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명칭이 오락가락 함으로써 동학과 관련한 기득권을 잃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기록전'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68년 4월에 열린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의 주최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로 명시되어 있기에 '동학혁명위원회'를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 통한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5월 20일자 1면『전봉준 생가 터 일부 학자와 모씨에 의해 조작됐다 주장』제목의 기사 중 "모씨와 정읍시청 담당부서가 고창군에 매수당했다는 은모 씨의 주장"과 관련, 정읍시청 담당자와 모씨는 "자신은 고창군에 의해 매수된 사실이 없으며, 은씨는 매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정읍신문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면『망부상』의 기사 중 "계승사업회 이사장에 학자 또는 교수 등 말발이 서는 외부 인사로 영입해 맞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읍동학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조○○)는 "학자나 교수가 계승사업을 잘 한다거나 말발이 선다는 보장이 없으며, 진정으로 동학혁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발이 서는 것이 아니라 동학혁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및 동학혁명에 대한 깊은 식견이 있어야 하는 바, 현재의 이사장은 역사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로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동학을 연구하고, 연구 서적을 발간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는 등 계승사업회의 대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승사업회도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계승사업회가 42년 동안 온갖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온 순수 민간단체로서 지역주민과 각 기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의 기득권을 의미한다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기사에서 의미하는 기득권이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며 그 안에 안주하여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기득권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정읍신문 2009년 7월 15일자 제2면 상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중 1면 부제목(병원서 퇴원하는 대로 관련자료 넘겨주겠다고 약속…)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정읍신문 :『언론중재위 조정 통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병원이 전북대병원보다 66.5% 비싼 비용을 받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병원장 임 ○ ○)
피신청인 : 주간소통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주간소통신문 :『서민 등골 빼는 원광대학교병원』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2일자 1면)
내 용 : 원광대학교병원의 보험회사 신규 가입용 의사소견서가 1차 진료기관보다 무려 7배나 비싸고, 동급 진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 보다 66.5%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한 익산시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근지역 대학병원을 찾는 원인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의사소견서는 2만2,570원이다. 익산시 관내 1차 진료기관인 L의원과 C의원의 경우 3천 원 내지 무상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7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인근의 다른 2차 진료기관인 L병원은 1만 원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고, 동급 3차진료기관인 전북대학교가 1만5천 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원광대학교병원이 2차 진료기관보다는 2배 이상, 동급 진료기관보다 66.5%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태다. 특

히, 원광대학교병원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면서 '진찰료'와 '기타 진료료' 항목으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어, "비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트릭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원광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 전북대병원보다 비싸지 않다.
• 본 문 : 본 신문 2009년 6월 22일자 1면 우측상단에 게재된 "서민등골 빼는 원광대학교병원이 의사소견서 제증명 수수료가 전북대병원보다 66.5%가 비싼 것으로 드러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확인 결과 원광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 제증명 수수료를 1만 원을 받고 있어 전북대 병원이 1만5천 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오히려 33.3%가 싼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소견서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의정 65517-84호(1995. 1. 25)의해 수납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서 발급에 따른 접수비는 전북대병원(3차 의료기관 포함)과 원광대학교 병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함에 따라 원광대학병원 측에 명예훼손을 끼친 점에 대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6월 22일자 1면 "서민 등골 빼는 원광대학교병원" 제목의 보도와 관련, 원광대학교병원은 "대부분의 국내 대형병원들 역시 소견서 발급시 진찰료와 소견서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주간소통신문 2009년 7월 13일자 제1면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소통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의 연좌농성 장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신청인 등 3인이 연행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조선일보 : 『'용산추모' 150여 명 한강대로 점거… 3명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2일자 A10면)

내 용 : 용산 철거민 참사 발생 150일(6월 18일)을 맞아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200여 명은 2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사고 현장인 서울 한강로 2가 남일당 빌딩 앞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가졌다.

이 가운데 150여 명이 집회를 마친 뒤인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용산역 방향 한강대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가두행진에 이어 남일당 빌딩 앞 차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범대위 소속 진모(30) 씨 등 3명을 중랑경찰서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범대위 소속 진모(30) 씨 등 3명을 중랑경찰서로 연행…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6월 22일 A10면 사회면에 "[브리핑] '용산추모' 150여 명 한강대로 점거…3명 연행"이라는 제목으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범대위 소속 진모(30) 씨 등 3명을 중랑경찰서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유족과 추모제 참가시민들이 불법주차 이동과 파손된 영정사진에 대하여 사과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도로점거를 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터무니 없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불법체포를 하려던 경찰과 불법체포를 저지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한 상황이 발생했고 우발적으로 경찰 측에 고립된 나머지 빠져나오지 못한 범대위 소속이 아닌 단순 참가한 일반시민을 연행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 등 불법행위는 없었으니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3
청 구 명 : 정정·손배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22일자 A10면 『'용산추모' 150여 명 한강대로 점거…3명 연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6월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 발생 150일을 맞은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의 범국민 추모대회와 관련,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범대위 소속 진모(30) 씨 등 3명을 연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도로점거가 이루어진 곳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불법시위와 무관한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법 체포되었던 것이고, 경찰과 불법체포를 저지하려는 시민들 사이에 혼란한 상황이 발행하기는 했으나 몸싸움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범대위 소속이 아닌 단순참가자로 집회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금 5,000,000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불법시위와 무관한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을 뿐이고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진 적은 없었으며 집회참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 중재부가 서울중랑경찰서에 사실 조회한 결과 신청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 방해,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총 4건에 대한 경합범으로 피의자 신분에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불법시위와 무관하고 몸싸움은 없었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한편, 신청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후보도 게재

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서는 신청인의 범죄혐의의 적용이 합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단순참가자로 집회에 참여하였을 뿐 범대위 소속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에 나타난 범대위란 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기구나 단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한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은 자발적 의사로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였던 것이 명백한 만큼 범대위 소속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조정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의 연좌농성 장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신청인 등 3인이 연행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KBS-2TV : 「일요뉴스타임」 프로그램 『용산 참사 다섯 달 추모집회… 3명 연행』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21일 07:00)

내 용 : 〈2009서울조정26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6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2009서울조정263의 결정문 참조〉 □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의 연좌농성 장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신청인 등 3인이 연행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SBS-TV : 「선데이뉴스플러스」 프로그램 『용산참사 규탄시위… 유족 도로 점거 3명 연행』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21일 07:25)
내 용 : 〈2009서울조정26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6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2009서울조정263의 결정문 참조〉 □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의 연좌농성 장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신청인 등 3인이 연행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연합뉴스 : 『용산범대위 도로점거 시위... 3명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6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6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2009서울조정263의 결정문 참조〉 □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의 연좌농성 장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신청인 등 3인이 연행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뉴시스 : 『경찰, 연좌농성 범국민대책위 강제해산… 3명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 21:34)
내 용 : 〈2009서울조정26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6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2009서울조정263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선 순위 대기자들보다 먼저 병실을 지정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광 선 (도의원)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부일보 : 『파주병원, 도의원 1인실 특혜 시비』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1일자 6면)
내 용 :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이 레지던트 숙직실까지 옮겨가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1인 입원실을 마련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 제기.

20일 파주병원에 따르면 김모 도의원은 지난 13일 교통사고를 당해 1인실을 요구했고, 15일 병원장의 결정 하에 3층 레지던트 숙직실을 2층 임종실과 창고로 사용하던 방으로 옮기고 도의원에게 1인실을 상납(?).

도의원의 1인실로 원무과장의 냉장고와 경비실의 TV도 긴급 제공.

그러나 당시 1인실 대기환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병원 측은 대기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병원 내부에서는 특혜 시비로 들썩.

병원 관계자는 "2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

파주병원 김모 과장은 "레지던트가 사용하던 방은 1인실 병상으로 어차피 100병상을 채운다는 계획이 있어 본래 용도로 바꾼 것일 뿐"이라고 해명.

김모 도의원은 "차가 반파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압력을 넣을 정신이 있었겠느냐"며 "이틀을 기다린 후 병실이 마련됐다고 해서 입원했을 뿐 전후 사정은 전혀 몰랐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파주병원, 도의원 1인실 특혜 시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1일자 6면에 "파주병원, 도의원 1인실 특혜 시비"라는 제목으로 김모 도의원이 지난 13일 교통사고를 당해 1인실을 요구했고, 이틀 후 병원장의 결정 하에 레지던트 숙직실을 창고로 옮기고 도의원에게 1인실을 상납했으며, 도의원의 1인실로 원무과의 냉장고와 경비실의 TV도 긴급 제공하였고, 이 당시 1인실 대기환자가 2명이 있었는 데도 병원 측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모 도의원이 교통사고

를 당해 파주병원에 입원실을 요청하였으나 입원실이 없고 대기환자가 2명이나 있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듣고 개인 응급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와 대기하던 중 다음날 오후 입원실이 마련되었다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모 도의원은 병원의 입원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보험사의 지불로 1인실에 입원했으나 입원실에 TV나 냉장고도 사용하기에 불편한 구형이었고 1인실이라고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느껴졌으며 당직실이 입원실로 급조된 것은 나중에 들어 알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선 순위 대기자들이 이미 입원한 후 김모 의원에게 방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져 입원과정에서 김모 도의원이 병원 측에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병원 측이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한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21일자 6면의 '파주병원 특혜시비'와 관련하여 김모 도의원은 병원 측에 무리하게 1인실을 요구하거나 특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9년 7월 1일자 '중계탑' 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도의원 "압력 넣을 정신 없었다")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부일보 인터넷판(www.jungbu.com) 메인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3일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기신문 : 『본사 사령』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일자 2면)
내 용 : 편집국 정치2부 부장 김○○ 〈해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 정치2부장에 대한 본사 사령을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9년 5월 1일자 2면 우측 하단 '본사 사령'란에 편집국 정치2부 부장 김○○ 〈해고〉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김○○ 부장은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해고〉라는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김○○ 부장께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불가 □

현직 경찰인 신청인이 가명으로 학원 강사로 활동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나, 사표는 취재 전에 이미 제출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스타 강사로 '변장' 한 현직 경찰』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13면)

내 용 : 공무 이외의 영리활동이 금지된 경찰 간부가 경찰공무원 입시 학원가에서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리기는커녕 관련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24일 경찰과 학원가 등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신모 경정(40)이 서울 노량진 일대 경찰공무원 시험준비 학원가에서 수사학 분야의 '1타 강사(최고 인기와 대우를 받는 강사)'로 활동 중이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간부다.

경찰종합학교에서 수사학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을 지내기도 한 신씨는 2005년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듬해 신씨는 사법연수원 입교를 위해 2년 간 '연수 휴직'을 했고 휴직 기간인 2007년부터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중략)

경찰에서는 신씨가 휴직 중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당연히 신 씨는 그동안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신씨는 12일 경찰에 사표를 냈고 현재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스타 강사로 변장한 학원강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사회면에 "스타 강사로 변장한 현직경찰"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경찰이 경찰신분을 숨긴 채 매니저를 두고 연봉이 2억에서 3억 원을 받으며 불법으로 학원강의를 하다가 본 신문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당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편법으로 학원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 중 상태에서 아버지가 투병 중이어서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학원강의를 한 것이고, 학원강의를 하면서도 자신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강의를 하였으며, 또한 매니저를 두고 있거나 2억이나 3억에 해당하는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본 신문기자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당사자는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미 사표를 경찰에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본 신문기자가 취재를 시작할 때에도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본 신문기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신문기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불법강의를 하다가 본 신문기자의 취재에 의해 불법사실이 밝혀져서 사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보도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고 신청인의 반론을 이미 방영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인천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차례 부당 압력을 행사하고, 또한 보복성 감사를 실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일보 : 『인천 감사관실 직원 부당압력 행사 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3일자 19면)
내 용 : 공무원의 부당행위와 부조리에 대해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할 인천시 감사관실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당압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22일 종합건설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9월경 감사관실 직원인 안모 씨는 건설본부에 전화를 걸어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S산업의 영업(폐업)보상금 42억 원을 보상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절 시 "다음 감사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압력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중략)

더욱이 안 씨는 몇 건의 보상요구가 거절당하자 작년 6월 말부터 감사에 착수, 올 1월까지 조직적인 기획감사 및 수시감사와 개인(비정기)감사를 벌여와 주위에선 요구거절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천 감사관실 직원 부당압력 행사 물의' 사실과 달라
• 부제목 : '종건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요구 거절당하자 보복성 전방위 감사' 사실무근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6월 23일자 사회면(19면)에 "인천 감사관실 직원 부당압력 행사 물의, 종건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요구 거절당하자 보복성 전방위 감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7년 9월경 감사관실 직원인 안모 씨는 건설본부에 전화를 걸어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S산업의 영업(폐업)보상금 42억 원을 보상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절시 '다음 감사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압력성 발언을 했고, 2008년 6월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기간 중에 인천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된 중구 유동 24-1 H상가 재평가와 관련해 건물 소유자 최모 씨의 아들이 요구하는 통일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감사기간 중 '당하지구-346지방도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토지인 서구 마전동 328외 2필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 당시 검단신도시로 인한 보상 등 일체행위가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분을 지급하라고 했고, 더욱이 안 씨는 몇 건의 보상요구가 거절당하자 작년 6월 말부터 감사에 착수, 올 1월까지 조직적인 기획감사 및 수시감사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공무원의 부당행위와 부조리에 대해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할 인천시 감사관실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당압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신청인이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서 약 4년 가량 근무하였고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보상분야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제보자가 S산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자문 전화를 한 차례 하여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준 사실이 있고, 장기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던 중구 유동 24-1 H상가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건물소유자 최모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감사관실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신청인이 원만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킨바 있으며,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협의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2,900여만 원의 보상금 전액을 지급치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감사관실에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감사활동을 통하여 잔액을 지급하게 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6월 23일자 19면 『인천 감사관실 직원 부당압력 행사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감사관실 안모 씨가 S산업에 42억 원을 보상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S산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신청인에게 자문전화를 한 차례 하여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었을 뿐인 것으로 밝혀졌고, 중구 유동 24-1 H상가 재평가와 관련, 소유주의 아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건물소유자 최모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감사관실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신청인이 원만히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해,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협의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2,900여만 원의 보상금 잔액을 지급치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감사관실에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감사활동을 통하여 잔액을 지급하게 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데 대하여 안모 씨와 인천시 감사관실 측에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6일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일보〉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6일까지 〈서울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보험사에 재직할 당시 작성한 글이 퇴사 후 무단으로 타 직원의 명의로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한국보험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보험신문 : 『왜 뛰느냐 묻거든 "기분 짱!"』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7일 보험세상 섹션)
내 용 : 제일화재 마라톤 동호회 이름은 '건달〈사진 아래〉'이다. 즐겁고 건강하게 달리는 것이 제일이라는 취지에서 지은 이름이다.

건달은 몇몇의 뛰어난 회원들을 자랑하고 있다. 박희숙 설계사는 제일화재 대표적인 여성 마라토너로 울트라 마라톤 완주는 물론 일반 대회 레이 스 페트롤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병익 교차 영업팀장은 3시간 20분대의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건달의 활동에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지원금 외에 각종 행사에 회사 버스를 제공해 준다.

해마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은 동호회만의 행

사가 아닌 동호회 가족 행사가 됐다. 행사 당일 아침에 가족 전체가 회사가 제공해 준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한다.

도착한 회원들은 가족의 응원을 받아 힘찬 출발을 하고 가족들은 그 사이 소양강댐과 청평사의 단풍과 경치를 구경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

신청인 경찰서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해양경찰 간부를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연수경찰서 (서장 김 영 열)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일보 : 『인천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2일자 7면)

내 용 : 인천 경찰이 음주 운전 후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해양경찰 간부를 단순 음주운전 처리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혈중 알콜 농도 0.016%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천해양경찰청 신모(54・경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9일 오전 12시 15분 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연수고가 위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돌리려다 옆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신 씨가 사고 후 도주하긴 했지만, 인적 피해가 없어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간주해 단순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도 '차량 손괴만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리해 주기로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신 씨가 택시 운전사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100여m나 도주하다 순찰차에 의해 붙잡혔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천경찰 해경간부 교통사고 처리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2일자 사회면에 "인천경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인천경찰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해양경찰 간부를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할 연수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까지 적정하게 입건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법규 상 교통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하는 등 경찰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수사를 담당한 연수경찰서는 해양경찰과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인천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5일자 2면)
내 용 : 인천일보 6월 22일(월)자 7면 '인천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제하 기사 내용과 관련, 관할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양경찰은 인천경찰과 소속이 다른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제 식구'가 아니며, 피의자 검거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적정하게 입건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수산업체가 고성군의 탁상행정으로 방류시기를 놓쳐 치어들이 대량 폐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성군 (군수 황 종 국)
피신청인 :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강원도민일보 : 『수산업체가 치어 30만 마리 무상 방류』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18면)
내 용 : 수산종묘 방류 사업이 늦어지며 수온 상승으로 치어들이 대량 폐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수산업체가 살아남은 치어를 무상 방류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고성 동호리 우주수산(대표 이상철)은 최근 지역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거진항 앞바다에서 도루묵 치어 30만 마리를 무상 방류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루묵과 대구, 뚝지(도치) 등의 인공종묘를 대량생산하며 유망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자로 어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뚝지와 대구 등은 4월까지 방류해야 함에도 지난 3일 도루묵 25만 마리를 방류하는데 그치며 지지부진한 군의 방류 사업 추진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120만 마리의 종묘가 수온 상승 등으로 폐사했다.

특히 군 지휘부와 군의회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담당과는 현장방문조차 없이 탁상행정을 펼치다 방류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산업체가 치어 30만 마리 무상 방류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9년 6월 9일 18면(속초, 인제, 고성, 양양)면 좌측 상단에 헤드라인은 "수산업체가 치어 30만 마리 무상 방류", 부제목은 "고성 우주수산, 군 탁상행정으로 120만 마리 집단폐사"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20만 마리 집단폐사는 업체에서 사육 도중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폐사되었으며 종묘생산업체서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수산종묘 매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판매할 계획은 세우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고성군에서 적기에 매입하지 아니하여 폐사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의회가 작성한 의정보고서가 시장을 흠집내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구리시의회 (의장 최 고 병)
피신청인 : 구리소식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구리소식 : 『시의원 의정보고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5일자 1면)

내 용 : 시의원 의정보고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라기 보다는 현 시장 흠집 내는 내용으로 가득 차…

가선거구 ○○○ 시의원과 나선거구 ○○○ 시의원이 며칠 전 구리시 전역에 의정보고서를 동시에 대량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이 두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이름과 사진만 다를 뿐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동구동 골프연습장 관련 민사 소송은 현재 2심(고등법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배상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상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2심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원고와 피고 간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상금액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재판에서 승소할 궁리를 해야 할 때이지 이렇게 시를 공격하여 내부 분란에 빠뜨리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못됨.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년 5월 25일자 구리소식지 게재 『시의원 의정보고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소식지는 2009년 5월 25일자 1면에 『시의원 의정보고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A교회 도시관리계획, B교회 건축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의정보고 내용에 대한 시의 입장을 게재하면서, "의정활동 보고라기 보다는 현 시장 흠집 내는 내용으로 가득 차…", "같은 당 소속의 이 두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이름과 사진만 다를 뿐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시를 공격하여 내부 분란에 빠뜨리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못됨", "…시의회는 불법적인 특혜 시비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시를 공격하는 의정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삼가야…", "앞으로 구리시의 분열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의정보고서를 더 이상 배포하지 말고…"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의원 개인의 시간과 비용으로 제작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아 의정보고서를 비하하고 시의회를 무시·모욕하는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식 홍보지는 비정치적이며 공공성을 갖도록 편집·배포하여야 함에도 구리소식지(반 회보)에 당 소속 등의 내용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으면서 시민여러분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노원구의 각종 사업들이 구청장과 서울시의 마찰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구청장과의 마찰 때문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노원구 (구청장 이 노 근)
피신청인 : 주간노원우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주간노원우리신문 : 『노원구의 언론플레이(여론몰이)에 각종 특혜(?)사업 제동 걸고 나선 서울시』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0일자 3면)

내 용 :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이노

근 구청장의 취임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노원구.

전국 최초 갤러리 테마청사 건립,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등 이 구청장은 노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서울을 디자인하라'라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문화코드가 맞아 노원역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 교육과학문화센터 개관, 서울시립미술관 강북 분관 건립 등 서울시의 굵직한 사업을 노원에 유치했다.

그렇지만 노원구의 이러한 발전이 이노근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오세훈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실제로 노원구의 올해 예산은 3894억 원(일반·특별 회계를 포함)이지만 자체수입은 1137억 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 구청장의 노력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의 공동재산세 재분배를 통해 서울시로부터의 예산규모가 늘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이다. 즉 1300여 구청 직원들의 월급에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2009년 4월 30일자 3면 '발행인 칼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지난 2009년 4월 30일자(제193호) 『민선 4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노원구, 노원구의 언론플레이(여론몰이)에 각종 특혜(?)사업 제동 걸고 나선 서울시』라는 발행인 칼럼을 통해 그 간 노원구의 눈부신 발전은 이노근 구청장 개인의 능력보다는 서울시나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최근 이 구청장의 정치력 부재로 서울시와 잦은 마찰, 갈등, 파열음을 내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서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이 구청장에 대해 서울시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말 안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동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도 금속노조 조합원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금속노조 지도부만 참여한 '그들만의 집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자 5면)

내 용 : 금속노조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찰 추산 4200여 명(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성 도심 시위에 나서 경찰과 충돌했다. 금속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도심 집회를 마치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철야농성을 벌였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원

금속노조의 이날 상경 투쟁은 올 들어 노동계가 주도한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다. 약화된 파업 동력을 회복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화물차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조기 종료되고, 최대 지부인 현대자동차 지부가 총파업에 불참하는 등 노동계의 투쟁 동력은 계속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 총대를 멘 셈이다. 정○○ 금속노조 위원장은 "7월 초가 되면 금속노조 10만 명이 투쟁 준비를 마친다"며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 과시를 위해 참여를 독촉하다 보니 개개인의 참여 열기는 떨어졌다. 집회 초반부터 상당수 참여자들은 장소를 이탈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했으며 연설자의 구호 선창에는 절반가량만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참가해 마구잡이 참석을 독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은 물러가라", "반민주 악법 철회하라" 등 각종 정치적 구호들이 쏟아져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9일 금속노조 집회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0일 5면에서 "금속노조 지도부만 참여한 '그들만의 집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19일 금속노조 집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한 이 보도에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 말 안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원했다"는 소제목과 "세 과시를 위한 참여 독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까지 마구잡이 참석을 독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19일 금속노조 집회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0일 5면에서 "금속노조 지도부만 참여한 '그들만의 집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19일 금속노조 집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인원 채우기에 급급, 말 안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원"이라는 소제목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1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7월 17일까지 한국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금속노조 집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5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철도기술공사 내 철도관련 비리의 핵심 인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6.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46 참조)

보도내용

일요서울 : 『심층취재 3탄 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1일자 12면)
내 용 :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철도기술공사(이하 KRTC)는 철도용역 관련 독점적 지위

를 활용해 궤도용품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업체가 가진 특허나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공여받아 제품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계용역 입찰 시 특허의 보유로 인한 PQ(입찰자격사전심사) 점수를 가산받아 낙찰률을 높이고 이면 계약한 궤도용품 업체로부터 설계 금액의 2~5% 리베이트를 공공연히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철도기술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 유착 의혹 3탄으로 궤도설계업무 관련 의혹들을 알아봤다.

㈜KRTC가 궤도건설에 주로 리베이트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LVT(Low Vibration Track, 저진동 궤도시스템) 궤도공법이다. LVT 궤도는 콘크리트 도상구조로서 도상콘크리트 내 단독으로 콘크리트 침목을 삽입해 철도 레일을 지지하는 저진동 궤도이다. (중략)

최소 9억~20억 리베이트…발주처 로비자금?

실제로 워싱턴 메트로지에 의하면 미국에선 더 이상 'LVT 궤도 구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수서-선릉 구간인 '분당선'에 시공된 LVT 궤도 구조도 심각한 설계 하자로 열차의 주행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설계사인 (주)KRTC에 책임도 묻지 못하고 국가예산으로 보수하고 있다고 이 문건은 밝혔다.

LVT 궤도가 시공이 완료된 철도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 대구지하철 1호선, 부산지하철 3호선, 전라선, 분당선(연장),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약 150km 정도 부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설계에 반영된 것이 약 56km가 있어서 여기에서만 최소 9억~최대 20억 정도가 리베이트로 (주)KRTC로 전달되었고 상당부분이 발주처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1,000,000원 □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이 성인 인증절차 없이 청소년들을 가입시켰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홈페이지를 내보냈으나 신청인 업체는 성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아이템베이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게임 아이템, 여전히 불법거래』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17일 21:00)

내 용 :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 속 아이템을 거래하느라 너무 큰 돈이 오가자 정부는 이런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무기입니다. 이 게임 속 장비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군가 현금 1,400만 원을 주고 사갔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 씩. 게임 속 아이템을 실제 돈을 주고 사고파는 이런 아이템 거래는 인터넷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지난 3월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해 미성년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성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성인 인증 화면에서 청소년의 인적사항으로도 인증되게 하거나 특정 주소로 접속하면 인증절차 없이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19곳에 현재 가입된 청소년은 1백1십만 명. 지난 3월 이후 3만4천 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청소년이 아이템 거래에 쓴 돈은 88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아이템베이 성인 인증절차 준수하는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7일 9시 뉴스에서 "게임 아이템, 여전히 불법거래"라는 제목으로 일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정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증절차 없이 청소년을 가입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아이템베이 홈페이지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아이템베이는 성인 인증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없게 조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주)아이템베이 성인 인증절차 준수하는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6월 17일 9시 뉴스 "게임 아이템, 여전히 불법거래"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정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증절차 없이 청소년을 가입시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아이템베이 홈페이지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아이템베이에서는 성인 인증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청소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없게 조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20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6시에 방송하는 MBC-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주)아이템베이 성인 인증절차 준수하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17일 06: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초등학생 딸이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북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북매일신문 : 『11살 여제자 성추행 교사 구속』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6일자 5면)
내 용 :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사 이모(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북구 한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11)의 몸을 강제로 더듬은 혐의다.

또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말을 듣지 않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지 않겠다"며 강제로 A양의 입을 맞추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A양에게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삭제〉 □

이명박 대통령이 산청지역에 호국원 건립 계획을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유감표명)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청공원묘지설치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박 ○ ○)
피신청인 : 산청시대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산청시대 : 『이명박 대통령 산청호국원 건립시사』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9일자 1면)
내 용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 있은 제5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위와 같이 전국에 '두 곳의 호국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산청호국원 건립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호국원이 건립될 두 곳은 국가보훈처의 올해 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다.

〈산청시대〉가 최근 입수한 국가보훈처 사업계획에는 '6만여 기에 불과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을 감안해 경남 산청군 지역에 (남부권) 국립호국원을 건립하고 지역별 공설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2011년까지 기존의 이천호국원과 영천호국원에 각각 4만 기와 2만5천 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으로 볼 때 산청호국원 건립은 사전에 기정 사실화하고 밀어붙이기 식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하고 있어, 반대 주민들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명박 대통령 산청호국원 건립 언급한 적 없어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9일자 1면에 '이명박 대통령 산청호국원 건립 시사'라는 제목으로 현충일 추념사에서 전국에 '두 곳의 호국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산청 호국원 건립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산청호국원을 건립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추진한 산청호국원 조성 사업은 대상 부지의 불법 매입,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양호 인근으로 환경오염 가능성 등이 국회에서 밝혀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국가보훈처의 예산에 산청호국원 예산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06년 5월 산청군청은 납골시설사업의 경우 주민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측에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 더 이상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은 향후 산청호국원 건립과 관련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산청호국원 건립 반대 측과 찬성측의 입장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이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기고할 시,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기사화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궤도용품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한국철도기술공사 (대표이사 김 대 영)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6.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46 참조)

보도내용

일요서울 : 『[심층취재 3탄] 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1일자 1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심층취재 3탄 [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일요서울(홍○○ 기자)은 2009년 6월 17일 일요서울 홈페이지(인터넷) 및 주간 시사지인 일요신문을 통하여 "심층취재 3탄 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면계약한 궤도용품 업체서 '리베이트 받았나?' 라는 소제목의 기사내용에 - 철도기술공사(이하 KRTC)는 철도용역 관련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궤도용품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 업체의 특허와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공여받아 제품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설계용역 입찰시 특허보유로 인한 PQ(입찰자격사전심사) 가산점수로 낙찰율을 높이고 - 이면 계약한 궤도용품 업체로부터 설계금액의 2~5% 리베이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LVT(Low Vibration Track) 궤도공법의 경우 독점 대리점(Y사)에서 (주)KRTC에 설계금액의 2-5%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최소 9억~12억 리베이트... 발주처 로비자금?' 의 소제목의 기사내용에 - LVT 궤도를 부설, 설계반영된 대가로 최소 9억~12억 정도가 (주)KRTC에 리베이트로 전달, 상당부분이 발주처 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 N사, Y산업 보유 특허지분을 (주)KRTC에 양도하여 제품설계 반영시 약정된 리베이트를 지급설을 제기하였으며 - 발주처의 묵인으로 불필요한 침목제작감리를 수행, 수십억 원의 폭리를 취한 사실이 2007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으며, 이 중 상당액을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및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소지가 높다는 괴문서 주장 문건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하였으며 - 2006년 시공사들로부터 침목제작검정용역의 폐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감독자를 운영하며 2년 간 이중감리에 따른 이득금 20여억 원을 수령했으며,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KRTC의 감리비 이중산정 관행 용인설을 게재 - (주)KRTC의 법인전환 과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설계과정의 불법, 탈법을 자행하거나 관련기관이 방조한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검·경 기술공사 - 철도공단 관계자 '무더기' 입건의 소제목 기사내용에 - 경찰과 검찰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공사와 관련 회사공금을 횡령한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을 무더기 입건, 수사중이며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주)KRTC는 어떤 궤도용품 업체와도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과 특허나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공여받아 이를 설계반영하여 PQ 가산점 특혜를 부여받은 사실은 물론, LVT공법 적용에 따른 리베이트설은 전혀 근거없는 특정 제보자의 음해성 주장으로 밝혀졌으며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리베이트로 발주처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내용 또한 근거없는 제보로 밝혀졌습

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관련법(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참여한 일반업체끼리 공정한 입찰경쟁을 통하여 수주,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설계수주 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설계반영한 내용은 없으며 모든 과업이 발주처 주관의 자문회의 검증과 발주처 기술진의 적법한 설계심사과정을 거쳐 설계준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침목제작감리를 이중감리로 수십억 원의 부당수익금 수령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발주처에서 선정한 책임 감리업체와는 별도로 공사 시방규정에 명시된 침목 품질확보 차원에서 시공업체 또는 침목제조사와 계약하여 침목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발행하는 사급자재 수급에 관한 고유업무로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의 묵인 및 방조행위 주장, 이를 위한 로비자금 제공설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경 기술공사-철도공사 관계자 무더기 입건" 기사는 기술공사인 (주)KRTC와는 전혀 관계없는 타 분야 업체의 기사내용을 오보한 사항으로 명백하게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병원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때문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병원협회 (회장 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하의 보도 (2009년 4월 14일 23:05)

내 용 : ▷진행자 : 혹 여러분은 병원에 갔다가 병원비가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총 89억여 원의 진료비가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포함된 전국 47군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곳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략)

병원의 진료비 과다 허위 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3월 심평원 민원 처리결과 발표 지난 해 접수된 총 21,000여 건 민원 가운데 12,600여 건 89억 원이 허위 과다 청구된 것으로 판명돼 환불결정이 났다. 환불사유를 보면 건강보험상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물린 경우가 가장 많았다(환불사유의 50% 넘어).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모두 47군데, 그런데 그 모두가 지난해 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14일 PD수첩에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한 해에만 총 89억여 원의 진료비가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되었으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포함된 전국 47군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곳도 빠짐없이 진료비 허위·과다청구를 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들의 부당청구 사례는 대부분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현재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지난 4월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방송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들의 부당청구 사례 중 일정 부분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21일 이내에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말미에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9년 7월 7일 11:1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초등학생 딸이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노컷뉴스 : 『11살 여제자 성추행 교사 구속』 제하의 기사(2009년 6월 26일자 포항면)
내 용 : 〈2009대구조정1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삭제〉 □

신청인 제품 '레모나'가 합성비타민 범벅이라서 섭취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경남제약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상큼한 '레모나', 알고 보니 합성비타민 범벅』 제하의 기사(2009년 6월 25일자 산업면)
내 용 : 비타민C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비타민 제품이 주목되고 있으나 정작 '레모나' 등에 사용된 합성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합성비타민은 곡물, 채소, 과일 등의 천연 원재료가 아닌 정해진 화학식에 따라 여러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으로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200억 원의 판매를 꾸준히 유지하며 비타민 의약품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경남제약

의 '레모나' 또한 마찬가지다.

합성비타민과 천연비타민은 성분과 효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내 흡수율에선 천연비타민이 앞선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가정의학 최종순 교수는 "합성이냐 천연이냐, 분말이냐 알약이냐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천연비타민의 경우 천연에 존재하는 형태 그대로 합성하므로 생체이용효율이 좋고 체내 흡수율도 합성비타민에 비해 10%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중략)

업체 측도 합성비타민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레모나를 판매하는 경남제약 관계자는 "레모나의 경우 화학적 작용으로 체내흡수율을 도와주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레모나가 노란색인 이유는 리보플라빈(비타민 B2)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상큼한 '레모나', 알고보니 합성비타민 범벅"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5일자에 "상큼한 '레모나' 알고보니 합성비타민 범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제목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레모나를 마치 단순 화학물 덩어리인 것처럼 묘사하여 (주)경남제약 레모나의 제품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에 (주)경남제약의 레모나 제품 이미지를 크게 삽입하여 제목과 연동하여 마치 문제가 많은 제품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제목과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의 음식을 통한 자연비타민 섭취와 산화되지 않은 비타민 섭취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레모나를 복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순비교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과의 만남에서 광고 게재를 요청한 뒤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원래의 제목으로 바꾸어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메디컬투데이는 사과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주)경남제약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6월 25일자 「상큼한 '레모나', 알고보니 합성비타민 범벅」 제하의 기사에서 (주)경남제약 레모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실제 위 제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2009년 7월 17일 오전 9시까지 7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메디컬투데이〉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메디컬투데이 : 『(주)경남제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09년 7월 9일자 산업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신종 플루 백신에 대한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논문은 단순 학술대회 발표 자료였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신종플루 백신' 논문도 복제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7일자 8면)

내 용 : 지난 달 19일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충남대 서○○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학계에 따르면 서 교수가 2004년 국제 학술지 '바이러스 리서치'에 발표한 논문이 2002년 '네이처 메디신'에 기고한 서 교수 본인의 논문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NS 단백질'의 변이를 유도해 사람이나 돼지의 면역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높은 병원성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루엔자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논문을 비교해본 결과 나중에 출판된 논문에 돼지그림이 들어간 것을 빼고는 2년 전 서 교수가 작성한 논문과 100% 같은 내용"이라면서 "이 정도면 표절이 아닌 완벽한 카피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 교수의 논문에 등장하는 교신 저자(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 저자)는 유수한 학술지들이 이름만 갖고도 신뢰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인플루엔자 전문가"라면서 "이 때문에 학술지 측이 표절을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종플루 백신' 논문도 복제 의혹"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6월 27일자 사회면에 "'신종플루 백신' 논문도 복제 의혹"라는 제목으로 서○○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고,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유럽 독감바이러스학회의 발표 자료를 바이러스 리서치 誌에서 전재한 것으로 정식 논문이 아니므로 논문 표절과 관련이 없어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로 피해 입으신 서 교수님께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보는 6월 27일자 사회면에 "'신종플루 백신' 논문도 복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서○○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제된 글은 유럽 독감바이러스학회의 발표 자료를 바이러스 리서치 誌에서 전재한 것으로 정식 논문이 아니므로 논문 표절과는 관련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은 신종플루가 아닌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009년 8월 3일자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피신청인 서울신문의 통상의 정정보도문의 제목 크기와,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각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인터넷 서울신문에도 게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게재하도록 각 포털사이트 사에 요청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쓴다며 시장상인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제주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아름다운제주만들기도민회
(회장 홍 ○ ○)
피신청인 : 제주MBC-TV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 사칭 돈 요구해』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27일 21:00)
내 용 : 최근 한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을 요구해 서귀포지역 중소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서귀포 아케이드상가 조합원들에 따르면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도민회'란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인 50여 명으로부터 5천 원에서 5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해당 단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단체라 하더라도 함부로 돈을 걷을 수 없다며 속지말도록 상인 계도에 나섰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역경제 활성화 사칭 돈 요구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9년 3월 27일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도민회'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칭으로 중소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도민회'는 대형 할인마트, TV홈쇼핑, 인터넷몰, 전자상거래 이용을 자제하고 제주도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시장상인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상가조합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도민회, "후원금 지역상가 살리기 사용"
• 내 용 : 지난 3월 27일 본 방송이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도민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을 요구해 중소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도민회 측은 지역상가 살리기 행사 경비를 후원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10일까지 제주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자의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아름다운… 도민회, 후원금 지역상가 살리기 사용』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7일 21:2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쓴다며 시장상인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제주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아름다운제주만들기도민회
(회장 홍 ○ ○)
피신청인 : JIBS-TV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JIBS-TV : 「JIBS 저녁뉴스」 프로그램 『후원금 강요』 제하의 보도(2009년 3월 27일 17:10)
내 용 : 〈2009제주조정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제주조정4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제주조정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JIBS-TV : 『반론보도문 / 필요경비만 후원받아』 제하의 보도(2009년 7월 10일 17: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타 방송사 라디오 공개방송을 방청하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촬영 및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M.Net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3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47 참조)

보도내용

M.Net : 「스캔들」 프로그램(2009년 6월 17일 23:00)
내 용 :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서울시가 동선3구역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1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홍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3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겨레 :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6일자 12면)
내 용 : 서울시가 성북구 동소문동6가 재개발구역에 대한 법원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25일 "동선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승소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선3구역은 2007년 8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곳 주민인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1)

등 주민 20여 명은 그해 12월 "40여 채에 달하는 한옥을 보존하자"며 서울시를 상대로 재개발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년 넘은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동선3구역의 한옥마을과 서울시 재개발 포기 사실과 달라(또는 동선3구역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6일자 12면에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라는 제목으로 40여 채에 달하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송을 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선3구역은 현재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2009년 7월 24일자 2면)
내 용 : 6월26일치 12면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 기사의 제목에서 '서울시 재개발 포기'라고 했으나, '서울시 한옥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취소 판결 항소 포기'가 정확한 표현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이색적인 갤러리 '연희동 프로젝트' 건물의 설계 아이디어를 해외사례에서 착안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손 ○ ○ 외 2인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저 허~연 '냉장고'는 뭘까』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10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4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2009년 3월 31일 「저 허~연 냉장고는 뭘까?」기사 중 '연희동 프로젝트 갤러리'의 절단된 모서리 부분 중 계단실 상부의 삼각형 천창이 해외사례에서 착안되었으며 상판을 두껍게 해 기둥을 없앴다는 내용에 대해 갤러리 설계자 시스템랩은 건물의 삼각형 천창은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설계되었으며, 상판이 아닌 벽체를 두껍게 해 건물의 기둥을 없앤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7월 24일까지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2009년 7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이미 삭제된 '위치변경' 조항을 적용받아 어업 위치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위치변경 허가가 아닌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것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광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남일보 : 『벌교 승망어업권 연장 놓고 분쟁』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일자 17면)

내 용 : 광양~목포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보성군 벌교읍 장양어촌계가 보상과 직결된 어업권 허가 연장을 둘러싸고 주민간 분쟁을 빚고 있다.

고속도로 다리 교각이 이 어촌계의 공동어업구역을 지나면서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 데다 어촌계장의 승망어업권 연장 등이 맞물려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중략)

문제는 승망어업권 연장 여부. 승망어업권 허가가 연장될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돼 보상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승망어업이란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얕은 바다에 그물을 설치해 썰물 때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업을 말한다.

현 어촌계장인 박모 씨는 2004년 회천면에 설치된 승망어업권을 매입했고, 보성군은 같은 해 4월 승망의 수면 위치변경 허가를 내줬다.

2002년 위치변경 조항이 관련법에서 삭제돼 제한을 받아 왔는데도 박씨는 허가를 받아냈고, 당시 어촌계장의 동의만 얻은 채 어촌계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조업을 해 왔다.

당시 보성군 허가담당 공무원 이모(현 벌교읍 근무) 씨는 "전남도에 구두로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으나 "당시 전남도 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망의 위치변경 허가는 사실상 묶인 상태여서 특혜 의혹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어촌계원 김모 씨는 "당시 허가과정에서 어촌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어촌계장 단독으로 동의해 준 점, 마을 공동작업장의 한 가운데에 허가해준 점, 또 산란지역인데 그물코가 7~8㎜에 불과해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는 점 등 허가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벌교 승망 허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일자 '전남면'에 "벌교 승망어업권 연장 놓고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승망어업 허가와 관련하여 2002년 위치변경조항이 관련법에서 삭제돼 제한을 받아왔는데도 2004년 4월 박모 씨에게 승망의 위치변경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위치변경 허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승망어구를 매수하여 매도자가 어업폐지 신고를 하고 매수자인 박모 씨가 주소지 인접 수면을 조업구역으로 한 새로운 어업허가 신청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일자 지역면 "벌교 승

망어업권 연장 놓고 분쟁"제하의 기사에서 승망어업권 허가와 관련해 2002년 위치변경 조항이 삭제돼 제한을 받아 왔는데도 2004년 4월 현 어촌계장인 박모 씨가 보성군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특혜의 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박모 씨의 승망어업권 허가는 위치변경 허가가 아니고, 타 지역 승망어구를 매입한 뒤 자신의 주소지 인접수면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신규 어업허가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남일보 지역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004년 허가과정…)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남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2일자 1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금품 향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이며, 선정과정에서 배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실역 청아람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최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신문 : 『대구도시공사, 아파트 위탁관리 무자격 업체 선정』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4일자 10면)

내 용 : 달성군 다사읍 청아람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대구도시공사가 자격없는 업체를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가 최근 청아람2단지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한 K사는 회사 관계자가 대구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입주자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법처리된 적이 있어 '입주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가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대구도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도시공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공사 사무실에서 K사와 위탁관리 업체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달성군 다사읍 청아람2단지 아파트에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는 위탁관리 선정작업에서 최종확정된 K사가 자격없는 위탁업체라는 주장을 하여 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K사의 명확한 해명과 아파트 공고를 통하여 잠깐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가 청아람2단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K사가 공개입찰 자격요건 중 '입주자 등에게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로 내몰았으나, K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이 사장 이하 임원등의 해명으로 밝혀졌으며, 사실 확인서가 아파트 공고에도 올랐으며, 또한 대구도시공사가 K사를 선정했다는 말도 완전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주택법 상 위탁관리 선정작업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업체간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청아람 지킴이'라는 인터넷 사설카페의 회원으로 구성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아파트 입

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정식 회의석상에서, 1명을 제외한 모든 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이루어진 계약체결을 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체결했다고 주민들에게 오해를 사게 해 마치 입주자 대표회의가 도시공사와 결탁했다는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위탁관리업체 선정방식으로 택해진 채점표의 터무니없는 오류를 트집잡아 동대표 불신임안을 불법으로 자행, 기존 입주자 대표회의의 붕괴를 획책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내의 채점단은 기존 채점표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밝혀 내었고 이 또한 공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 상태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1,000,000원

합의사항

• 내 용 : 피신청인은 향후 대실역 청아람2단지 아파트 관련기사를 작성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기사를 작성하기로 약속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신청인 회사가 부산고법의 회생절차 인가 불가 결정에 따라 최종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보도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이며 대법원에 재항고 중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국제종합토건 (공동관리인 김 ○ ○, 이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제신문 : 『국제종합토건 파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5일자 1면)
내 용 : 향토 건설업체인 (주)국제종합토건이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 불가 결정에 따라 최종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한범수 부장판사)는 24일 채권단인 A저축은행이 국제종합토건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회생절차 인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국제종합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일 만에 앞서 결정 당시 제출한 근거 자료가 잘못됐다며 다시 회생절차 인가 신청을 한 것은 종전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회생절차 인가 신청이 재산보전 등 부수적 효과만을 노린 것으로 추정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종합토건의 부채가 750억여 원으로 자산보다 553억여 원이나 많아 회생절차를 인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3년 창업한 국제종합토건은 1998년 첫 부도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지역 10위권 건설사로 성장하기도 했으나 2006년 4월 두 번째 부도를 맞았다. 이후 2007년 5월 회생절차 인가 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으나 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회생절차 인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부제목 : 부산고법 회생인가 불가 판결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5일자 국제신문 1면에 부제목으로 "부산고법 회생인가 불가 판결" 내용으로 "향토 건설업체인 (주)국제종합토건이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 불가 결정에 따라 최종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한범수 부장판사)는 24일 채권단인 A저축은행이 국제종합토건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회생절차 인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문 내용 중 인가결정 취소가 아니고 회생개시결정 취소이며,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은 회생개시결정 취소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중이므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처리를 한 A저축은행은 우리상호저축은행으로서 실명이 보도된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과 형평성이 문제되어 실명을 게재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국제종합토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5일자 1면 "국제종합토건 파산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국제종합토건이 부산고법의 회생절차 인가 불가 결정에 따라 최종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회생절차 인가 불가 결정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 중입니다. 회생인가는 취소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9년 7월 20일까지 국제신문 2면 중단의 위치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산고법 회생인가 불가 판결")과 같은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신문 : 『국제종합토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깡패까지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원환경(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울산노동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울산노동뉴스 : 『연대노조 탄압분쇄 민주노총 울산 중구청 앞 결의대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8일자 노동면)
내 용 : 18일 오후 4시 중구청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하는 '연대노조 탄압분쇄와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울산지역 구·군 청소대행업체의 편법운영과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울산시와 구·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연대집회로 마련됐다.

울산지역 연대노조, 금속, 화섬, 공공, 화물연대, 민노당 울산시당 등이 함께한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은 "연대노조가 힘들었을텐데 이제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며 "중구청을 시작으로 북구청과 남구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노조 이용국 대원환경지부장은 "대원환경이 이제는 깡패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중구청을 거세게 규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원환경(주)는 깡패를 동원해 노조 원을 탄압한 사실이 없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자 노동면에 〈연대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울산 중구청 앞 결의대회〉라는 제목으로 "대원환경이 이제는 깡패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중구청을 거세게 규탄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확인 결과 대원환경은 깡패를 동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적법한 절차와 회사 사규에 의해 회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실을 수 있으나, 신청인의 정정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의 밀양시장 출마예상자 관련 기사를 사이비 기자와 언론이 작성한 것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경남신문사 (대표이사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밀양뉴스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밀양뉴스 : 『"'기자도 기자같지 않은 자'들이 밀양을 먹칠해"』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9일자 시사평론면)

내 용 : 기자도 기자같지 않은 지역신문의 일부 조잡한 기자들이 밀양을 먹칠하고 망치고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의 지방신문과 밀양의 지역신문이 내년 밀양시장 출마자들을 놓고 최근 기사를 써 놓았다.

그것을 보면 어떤 정보에 무지하고 게으른 기자가 탁자에서 수판알 튕겨 입맛나는 대로, ○ 뒹굴려서 쓴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한심함을 금치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밀양의 지식시민들이 "어떤 ○이 그런 썩을 짓을 했나"하고 비하하게 한다.

얼마전 경남신문에 보면, 고 무슨 기자는 밀양시장 출마자들이라면서 이름과 사진을 올려놓았고, 그 조금 뒤 지역신문 미리벌신문은 장 무슨 기자라고 하면서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실어 소개를 해 놓았다. "속보이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들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사평론 '기자도 기자같지 않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밀양뉴스는 지난 6월 29일 초기화면 우 측 상단에 박한용 씨의 시사평론 '기자도 기자같지 않은 자들이 밀양을 먹칠해-밀양시장 출마자 놓고 마음대로 짓고 까불어'를 게재하면서, '경남신문 고 무슨 기자 기사에서 속보이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신문에 내논 것을 보면 활동은커녕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을 올려놓는가 하면…알 만한 사람은 빼놓고 만만한 사람들 상대로 입맛대로 써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남신문 고 무슨 기자는 지역 내외에서 시장 출마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취재해 기사화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측에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

하였다.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밀양뉴스는 지난 6월 29일 "'기자도 기자같지 않은 자'들이 밀양을 먹칠해"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신문과 미리벌신문이 내년 밀양시장 출마예상자들을 다룬 기사에 대해 활동은커녕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을 거론하면서도 알 만한 사람은 빼놓고 입맛대로 쓴 기사라고 폄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신문 기사는 지역 내외에서 시장 출마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으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으로 두 신문과 취재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17일 09:00부터 7월 31일 09:00까지 조정대상보도가 위치했던 밀양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 측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 제목과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17일까지 원 조정대상 기사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밀양뉴스(www.imiryang.com)'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밀양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7일 시사평론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등 전직 보험설계사 130여 명이 선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선지급 수수료와 관계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설계사 先지급 수수료 너무 많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11면)

내 용 : 보험사 간 경쟁 때문에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선(先)지급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지급 수수료만 따먹으려는 '철새' 설계사 때문에 불완전 판매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서대교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선지급 수수료 운영상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선지급 수수료가 과다해지는 바람에 보험사들은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ING생명이 처음 시행했다. 그 뒤 외국계 생보사들이 한국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단기 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한탕주의' 영업이 문제로 지적됐다. 상품을 판매해 선지급금을 챙긴 뒤 다른 회사로 옮겨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나타났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이 문제 때문에 전직 설계사 130여 명과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또는 방송)은 지난 7월 6일자

경제면 "설계사 先지급 수수료 너무 많다"라는 제목으로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이 문제 때문에 전직 설계사 130여 명과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기사에 기재된 문제점으로 "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이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해당기사의 문제점과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설계사 집단소송"의 청구원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6일자 경제면 "설계사 先지급 수수료 너무 많다"라는 제목으로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이 문제 때문에 전직 설계사 130여 명과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집단소송의 대표자는 해당 기사의 문제점과 미래에셋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설계사 집단소송의 청구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1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7일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밀양시장 출마예상자 관련 기사를 사이비 기자와 언론이 작성한 것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미리벌신문사
(대표이사 박 ○ ○) 외 1인
피신청인 : 밀양뉴스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밀양뉴스 : 『"'기자도 기자같지 않은 자'들이 밀양을 먹칠해"』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9일자 시사평론면)
내 용 : 〈2009경남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남조정1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2009경남조정1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경남조정10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기업후원 중단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정보원 (원장 원 세 훈)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1)『진보단체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 뉴라이트는 공익사업 대거 선정』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4일자 1면)
내 용 :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잇따른다. 또 공익사업을 맡아서 해온 진보 성향 단체들이 사업자 선정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그 빈자리를 갓 설립됐거나 사업 경험이 없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중략)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과정에 국정원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환경영화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된 데 대해 "서울시 간부를 만나 예산 지원을 채근했더니, 이 간부가 '우리도 힘들다. 국정원 조정관이 상급자에게 매일 전화한다. 상황이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총장 발언에 언급된 본부장급 서울시 고위간부는 "국정원 조정관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민간 기업과의 소기업 후원 사업이 갑작스레 중단된 데 대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략)

(2)『환경영화제 지원 중단 '이상한 이유'』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4일자 4면)
내 용 :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환경영화제는 '진보단체 옥죄기'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사례다. (후략)

(3)『'후원내역 수집' 국정원법 위반…조직적 외압 흔적』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4일자 5면)
내 용 : (전략)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또다른 사건은, 정부 또는 기업의 후원이 갑자기 끊기는 일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하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주에 '국정원 개입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좀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고위 간부에게 국정원 조정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를 직접 서울시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이 총장은 밝혔다. 박 변호사와 이 총장의 발언은,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략)

(4)『'시민사회 고사 공작' 당장 중단하라』제하의 사설 (2009년 6월 24일자 27면)
내 용 : 시민·사회단체를 말려 죽이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비판 발언을 한 단체들에 보조금 지급이 끊기더니, 이제는 각종 공익사업과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까지 줄줄이 봉쇄되고 있다. 그 자리는 뉴라이트 계열의 급조된 친정부 단체들이 차지한다. 국가정보원이 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도 한둘이 아니다. 정권 차원의 정치적 공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바로잡습니다]

한겨레신문 6월 24일자 1·4·5·27면에 보도된 "진보단체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 제하의 관련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 거론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가 교육사

업' 지원대상 선정,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각각 자체 심사위원 회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환경부와 서울시의 환경영화제 지원보류도 국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해당기관의 자체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내용을 기초로 '시민·사회단체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광범위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해설기사(5면)와 '시민사회 고사 공작' 등으로 묘사한 사설(27면)도 근거 없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확대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6월24일자 「진보단체 지원 중단 "국정원 개입", 뉴라이트는 공익사업 대거 선정」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기사에 거론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가 교육사업'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각각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환경영화제 지원보류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는 등,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 사업 전반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7월 24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알려왔습니다' 제목양식대로 하되, 위 보도문 내용 중 조정대상기사 제목 활자는 굵게 처리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에서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할 때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연구원이 발표한 미디어법 관련 국책보고서의 내용이 엉터리 통계에 기반해 작성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방 석 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2일 21:00)

내 용 : 정부,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필요성 논거로 내세웠던 국책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엉터리 통계에 기반해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은 요즘 각 도시를 순회하는 국정보고와 신문광고를 통해, 미디어법이 통과돼야 방송규모가 커지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지난달 29일, 국정보고대회) : "방송국과 관련된 일자리만 2만5천 개. 연관된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논리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거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6년 전 미디어 규제를 완화했더니 방송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산업에 활력이 생겼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수치를 영국의 방통위, OFCOM에서 직접 확인했더니 방송시장은 규제완화 이후에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 수치는 아예 누락한 겁니다. 우리나라 부분은 완전히 엉뚱한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렸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방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현재 0.68%로, 선진국 수준인 0.7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문제는 이 계산에 대입된 2006년 GDP 수치 약 1조3천억 달러가 출처 불명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인 9,511억을 대입하면 비중은 0.98%로, 이미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포화상태임이 드러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9년 7월 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리포트 통계조작"이란 제목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슈리포트(이하 '리포트'라고 함)를 화면에 제시하면서 "영국에서 6년 전 미디어 규제를 완화했더니 방송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산업에 활력이 생겼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방송 시장은 규제완화 이후에도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 수치는 아예 누락한 겁니다."라는 보도를 하고, 리포트 제21면의 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부분은 완전히 엉뚱한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렸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에 대입된 2006년 GDP 수치 약 1조3천억 달러가 출처불명입니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리포트에서는 "96, 03년 방송법 개정은 침체된 영국 방송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라고 기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방송의 보도내용 중 "영국에서 6년 전에 미디어 규제를 완화했더니" 부분은 리포트 통계 자료의 일부만을 인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 리포트 상의 통계 자료를 왜곡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 수치는 아예 누락한 겁니다."라는 부분은 KISDI에서 고의로 왜곡한 것이 아니며 누락된 부분은 OFCOM이 2006년과 2007년도 수치에 대하여 "BBC 수신료 통계처리방식이 2005년까지와 달라 자료의 일관성 등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우리나라 GDP 데이터는 UN 산하 기구인 ITU로부터 유료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GDP 수치가 출처불명이라는 본 방송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리포트에서 우리나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는데 있어서는 ITU데이터가 아닌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분은 완전히 엉뚱한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렸습니다 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는 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정정보도 내용은 단순한 주장일 뿐이며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청인 측의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단체가 게재한 '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광고가 허위라는 법원판결을 보도하였으나, 판결과 달리 광고내용이 사실이다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이 ○ ○, 정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국제신문 : 『'盧는 가짜 대통령' 광고 배상판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 8면)
내 용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 원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전자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직원과 개표 담당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에서 해당 단체는 선관위 직원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盧는 가짜 대통령' 광고 배상판결 기사에 대한 반론
• 내 용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도입과정에서 조달청을 통해서는 투표지 분류기만 도입하고 제어용 컴퓨터는 각 시, 군, 구 선관위를 통하여 구입하는 등 도입과정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임이 감사원 감사(1999년 6월 15일 ~ 6월 30일) 결과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19일 개표방송 시 전자개표기로 개표해 개표가 빨리 끝났다"고 홍보하여 각 방송사가 전자개표기로 방송하여 전 국민이 전자개표기로 알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신청인 등 시민단체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투표지 분류기로 왜곡하면서 2006년 3월 13일 주요 일간지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라는 -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속이는 광고를 내어 세금을 낭비하였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이 ○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
부산 연제구 거제1동 76-2 국제신문빌딩
대표이사 이 정 섭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국제신문 8면 조정대상기사가 실린 위치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며 기사 크기와 글자 수는 반론보도 대상기사와 거의 비슷하게 한다.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3.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대학이 코레일과 전철역명 병기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장 현 ○ ○)
피신청인 : 천안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천안일보 : 『나사렛대, 쌍용(나사렛대)역 병기 미 계약 사용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5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해 12월 5일 수도권 전철이 천안-아산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천안지역엔 봉명역사와 쌍용(나사렛대학)역이 새로 신설됐다.

나사렛 대학교(총장 임승안)는 쌍용역에 나사렛대역을 병기해 사용하기 위해선 코레일 측과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나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계약도 임대료도 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나대 측에서 약 6개월여 동안 계약도 하지 않고, 임대료도 지불치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관계자는 "쌍용(나사렛대학)역 병기 사용을 두고 코레일 측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 사정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관계자 회의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나사렛대역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6월 5일자 사회면 『나사렛대, 쌍용(나사렛대)역 병기, 미 계약 사용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나사렛대 측이 전철역명을 병기하면서 코레일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역명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나사렛대학과 코레일 측은 쌍용(나사렛대)역 병기 역명 사용에 따른 잠정적인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천안일보 인터넷판 사회면에 2009년 7월 18일 12:00까지 24시간 동안 보도하되, 제목 활자 크기(나사렛대 관련 정정보도문)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나사렛대, 쌍용‥)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며, 24시간 이후에는 기사하단에 배치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천안일보 : 『나사렛대역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빈번한 크레인 사고의 원인에 대해 크레인이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크레인 사고 되풀이… '안전 불감증'이 문제』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6일 21:00)

내 용 : 언제든 '도심의 흉기'로 돌변하는 타워크레인, 전국에 3천여 대가 넘는데,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9시뉴스(지난 5월 24일) :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구로동의 한 종교 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40여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친 이

날 사고. 타워크레인이 작업무게를 못 이긴 게 원인이었습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이런 크레인 사고의 원인으론 우선 소홀한 안전점검이 꼽힙니다.

전국의 타워크레인은 최소 3천 대 이상, 이 가운데 70% 이상이 만든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철골구조물'로 분류되면서 정기 안전점검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습니다.

지난 해부터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수백여 크레인 업체들은 비용 등을 이유로 정식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업체에서 업체로 헐값에 일감이 넘어가는 하도급 관행은 비용을 줄이려고 수리나 부품교체를 등한시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안전을 살피는 전문가 없이 운전사에게만 운행을 의존하는 등의 주먹구구식 운영도 문제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6일 9시 뉴스(http://news.kbs.co.kr)에서 "크레인 사고 되풀이…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크레인 사고의 원인으론 우선 소홀한 안전점검이 꼽힙니다.", "30년 넘게 단순 '철골구조물'로 분류되면서 정기 안전점검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수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해 검사를 득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왜곡된 보도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략)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7월 6일자 〈뉴스9〉「크레인 사고 되풀이… '안전 불감증'이 문제」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최근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설치 및 가동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개정된 등록제도는 안전검사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5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6시에 방송하는 KBS-1TV 〈뉴스광장〉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2009년 8월 4일자 06: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판매하는 '마시는 태반약'의 효능을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경남제약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시판 '마시는 태반약' 효능 "뻥튀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5일자 종합면)
내 용 :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명 '마시는 태반약'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다.

'마시는 태반약'은 사람의 태반(이하 인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하므로 기력을 보충하고 임신, 수유기에 영양을 보충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효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액상 형태의 '마시는 태반약'이 자양강장제로 허가된 이후 5개 제약회사가 줄지어 제품을 선보였지만, 정작 의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약으로 허가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 의사 등 마시는 태반약 효능 논란

이처럼 마시는 태반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시판 '마시는 태반약' 효능 뻥튀기"에 대한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7월 8일자에 『시판 '마시는 태반약' 효능 "뻥튀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 경남제약은 경남제약이 판매하는 태반약 '자하생력액'이 효능을 뻥튀기하여 고가에 판매한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으며, 마시는 태반제재의 유용성 검사 결과에 대한 식약청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경남제약의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7월 8일자에 『시판 '마시는 태반약' 효능 "뻥튀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 경남제약은 경남제약이 판매하는 '자하생력액' 등의 태반약의 효능을 과장하여 고가에 판매된다는 취지의 보도는 근거가 없으며, 마시는 태반제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곧 있을 식약청의 발표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 10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시판 '마시는 태반약'…)과 같은 크기로 하여 2009년 8월 3일 09:00부터 2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로 표시되게 한다.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메디컬투데이 : 『경남제약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학교가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군사관학교 (교장 최 ○ ○)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해군 잇따른 인명사고 '쉬쉬'』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9일자 7면)

내 용 : 해군이 최근 발생한 '해군 반잠수정 기관실 폭발사고'에 이어 제 1연평해전 승전기념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공식 해명하기보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군은 지난 12일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반잠수정에서 원인모를 폭발사고가 발생, 기관실 점검 중이던 황모(41) 상사가 부상을 입고 마산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이다.

이어 3일 후인 15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소속 김모(35) 대위가 제 1연평해전 승전기념행사의 목적으로 열린 6.15㎞ 단축 마라톤 중 호흡곤란

을 일으키며 쓰러져 마산삼성병원 내과중환자실로 후송했으나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그러나 해군은 2건의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해명은 물론 사고원인과 사후처방 등도 제시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은폐에만 급급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6월 19일자 7면에 실린 "해군, 잇따른 인명사고 '쉬쉬'"기사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6월 15일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신속히 가족에게 알렸고, 신속한 응급조치 후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공개된 행사 중 일어난 사고로 기자단의 질의가 있을 때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해군사관학교는 이번 사고를 전혀 은폐할 이유와 의도,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본지는 "인명사고 쉬쉬", "은폐 물의", "사고 은폐에만 급급"등으로 잘못 표현함으로 해군사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이 건 보도는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음 □

구한말 한의사들이 간단한 외과수술도 시행하지 못하는 등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해 열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3.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프레시안 : 『"조선에 장금이는 없었다…알렌에게 무릎 꿇은 한의학"』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0일자 문화면)

내 용 : 조선시대 진료 기관은 한의학에 기반을 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의 삼의사가 근간을 이루고, 구휼 기관으로 활인서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882년 조선 정부가 대민 의료 기구인 혜민서를 혁파한 것은 국가 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매우 곤란한 일이었다. (중략)

▷칼에 찔린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한의사

알렌은 당시 미국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춘 의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갖지 못한 서양 의술, 특히 외과 의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큰 이점이었다. 알렌이 도착하기 전 모여 있던 열네 명의 한의사들은 민영익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지만 자신들의 의술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알렌은 한의사들이 시커먼 송진 꿀(혹은 일종의 고약)을 민영익의 상처에 집어넣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놀랐다. 알렌이 치료를 시작하자, 한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알렌은 결국 스물일곱 군데의 상처를 꿰매는 등 치료를 통해서 민영익의 생명을 구했다. 서양 의학의 완승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의학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외과 분야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당시의 한의학 체계는 큰 공백이 있었다. 민영익의 치료는 그 단적인 증거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조선에 장금이는 없었다…알렌에게 무릎 꿇은 한의학은 선정적이며 부적절한 표현이다. 또한 수술로 민영익이 산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식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 또한 알렌이 도착하기 전 모여 있던 열네 명의 한의사들은 민영익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지만 자신들의 의술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술보다는 내복약과 외과

치료를 위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조선에 장금이는 없었다…알렌에게 무릎 꿇은 한의학은 선정적이며 잘못된 표현이며 이땅의 한국사람들은 반만년동안 한의학에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공헌을 받았다. 한의학은 내과, 만성질환등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외과적 처지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신체발부 수지부모란 내용 때문에 외과치료가 쇠퇴한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홍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프레시안
서울 종로구 옥인동 19-29 옥인빌딩 3층
대표이사 박 인 규
피신청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원한다.

조선에 장금이는 없었다…알렌에게 무릎 꿇은 한의학은 선정적이며 부적절한 표현이다. 또한 수술로 민영익이 산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식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 또한 알렌이 도착하기 전 모여 있던 열네 명의 한의사들은 민영익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지만 자신들의 의술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술보다는 내복약과 외과치료를 위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원한다.

조선에 장금이는 없었다…알렌에게 무릎 꿇은 한의학은 선정적이며 잘못된 표현이며 이 땅의 한국사람들은 반만년 동안 한의학에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공헌을 받았다. 한의학은 내과, 만성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외과적 처지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신체발부 수지부모란 내용 때문에 외과치료가 쇠퇴한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7월 10일자 「"조선에 장금이는 없었다…알렌에게 무릎 꿇은 한의학"」 제하의 기사에서 한의학이 갖지 못한 서양 외과 의술로 갑신정변 당시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한의학은 조선시대 유교사상으로 인해 외과수술이 쇠퇴했을 뿐 예로부터 외과수술을 해왔다며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알 수 있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2009년 7월 13일 '언론조정신청서'에도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직업이 한의사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위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 있으려면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구한말 당시 한의학으로 불가능했던 치료를 서양 의술로써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국내 최초의 서양 병원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보도내용이 과연 신청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7. □

신청인이 나비축제 먹거리 장터에서 상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으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바도 없다 Ⅰ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광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광남일보 : 『'나비축제' 먹거리 장터서 수백만 원 갈취』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19면)
내 용 : 전남 함평 나비축제 때 먹거리 장터 상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함평경찰은 3일 "'먹거리 장터를 시끄럽게 한다'며 공용터미널 인근 풍물시장 상인 5명에게서 45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61·무직·함평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피해 상인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나비축제 때 박모(47) 씨 등을 협박해 350만 원을 뜯어낸 데 이어 올해도 1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모자라 "1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나비축제 먹거리 장터 풍물시장서 수백만 원 갈취 사실과 달라. (또는 나비대축제 풍물시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4일자 사회면(19면)에 "나비대축제 풍물시장서 수백만 원 갈취"라는 제목으로 함평 나비축제 때 먹거리 장터 상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60대 남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 바로 옆에서 하루 종일 밤늦은 시간까지 풍물패들의 고성방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함평군에 민원 제기를 하였을 뿐 상인들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고 최모 씨가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며 축제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달라며 자진해서 피해보상으로 준 것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나비축제 먹거리 장터에서 상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으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바도 없다 Ⅱ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함평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함평신문 : 『'나비대축제 풍물시장'서 수백만 원 갈취』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0일자 4면)
내 용 : 〈2009광주조정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2009광주조정23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재래시장 위기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차 명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뷰스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뷰스앤뉴스 :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자 정치섹션)
내 용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대다수 재래시장 가게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 상인들의 '경영혼'이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아 논란을 자초했다. 상인들이나 전문가들은 벼랑 끝 위기의 원인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 진출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차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불티나는 야채가게〉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잘 아는 야채가게가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되고 있음을 거론한 뒤, "왜 그럴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손님과 맨투맨으로 붙어서 흥정한다. 물건이 아주 싱싱하다. 새벽 장에 가서 직접 떼어온다고 한다. 시간대별로 물건 값도 다르다. 저녁이면 대부분의 물건이 바닥 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다른 가게를 지목한 뒤, "사장님, 손님이 와도 관심없다. 허구헌 날 친구 몇 사람들과 아랫목에 앉아서 친목 도모 하느라고 바쁘다. 벽면엔 한겨울에도 여름용 원피스가 즐비하게 걸려 있고 먼지가 뽀얗다"며 "하루는 내가 그랬다. '동대문에 가면 만 원짜리 예쁜 티셔츠 많은데 그거 좀 떼어다 파시죠', 사장님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고개를 돌린다. 그 가게 결국 문 닫았다"고 폐업을 상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래시장이 어렵긴 하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문제는 경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재래시장에 경영혼을 혹 불어 넣을 방법은 없을까?"라며 재래시장 위기 원인을 거듭 상인에게서 찾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경영혼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사실과 달라(또는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매체는 7월 13일자 기사에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라는 제목으로 마치 차명진 의원이 재래시장 위기 원인이 전적으로 상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명진 의원이 의도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영업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여, 최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경영혼을 불어넣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사 내용이 차명진 의원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뷰스앤뉴스 : 『차명진 의원의 반론입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1일자 정치 섹션)
내 용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본보 지난 13일자 기사 〈차명진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라는 기사에 대해 21일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반론 보도문 전문.〈편집자 주〉

위 보도(차명진 관련보도)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불티 나는 야채가게'라는 글은 재래시장 위기의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며, 최근 여러 이유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적극적이고 신바람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경영혼'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의 결혼식 장면을 부정적인 기사의 자료컷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3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웨딩컨설팅 업체들이 '패키지로 끼워 팔기' 부추겨』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7일자 A8면)
내 용 : 〈사진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인터넷 조선일보(http://www1.chosun.com)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들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단, PDF 서비스는 제외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해당 사진이 포함된 조정대상기사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기사로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과를 표시한다.(비보도 유감표시)
• 저희 조선일보는 지난 5월 7일자 A8면 『모두가 피곤한 '고비용' 결혼식 [2] 바가지 상술』 제하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강○○, 송○○, 김○○ 등 4인에게 '고비용 결혼식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데 필요한 사진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초상을 촬영·게재한 데 깊이 사과를 드리며, 향후 관련보도를 할 경우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판 조정대상기사 및 포털 상에서 관련 초상이 나오는 사진을 모두 삭제〉 □

해군이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네는 등 비리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서울 : 『해군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리베이트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2, 3면)

내 용 : 해군의 무인항공기 도입 프로젝트인 '신천옹' 사업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의혹들이 최근 들어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군은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육군, 공군과 더불어 무인항공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해군은 신천옹 사업단을 꾸려 무인항공기 도입을 추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미국의 AAI(에이아이사)와 오스트리아의 SCHIEBEL(쉬벨)사가 입찰 경합을 벌였다. 해군은 최종적으로 쉬벨사를 선택했다. 이유는 성능도 좋은데다 가격까지 저렴했기 때문이다. 에이아이사가 제시한 가격은 쉬벨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무려 380억 원이나 비쌌다. 해군은 성능 면에서 별 차이 없지만 가격조건이 월등히 좋은 쉬벨사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점에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구입과정에서 옵션추가 명목으로 가격이 대폭 비싸진 것도 모자라 구입비용 일부가 착복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방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리 1번지로 통했다. 신천옹 사업으로 인해 이번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조짐이다. 만약 이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예산 뿐 아니라 군사력도 큰 손실을 입은 셈이다. 국력강화를 위해선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군사력 강화가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사업은 한 점 티끌이 없어야 한다. 이에 신천옹 사업 비리 의혹, 그 진위 여부를 추적해 봤다.

해군의 신천옹 사업은 해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0%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군함에서 정찰기를 띄워 군함 주변 200㎞ 이내를 정찰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 선정은 입찰 형태로 진행됐다. 입찰에서 최종 경합을 벌인 에이아이사와 쉬벨사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기도 전에 희비가 갈렸다. 무인항공기는 조종기인 랩탑과 4미터 무인항공기 4대가 한 세트다. 한 세트에 대해 에이아이사가 제시한 금액은 500억 원, 쉬벨사는 120억 원이다.

거액 리베이트 실제 있었나

입찰에 개입한 이들이 실제 가격인 120억 원보다 많은 280억 원을 주고 다시 차액 160억 원을 중개수수료 등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여권의 고위인사, 해군 장성, A사 대표 등이다. 이들은 쉬벨사의 기종이 군사용 무인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고 해상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군 내부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쉬벨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표지 부분〉
• 제 목 : 해군 차세대 무인항공기 도입사업 비리 의혹 보도 정정
• 제목하단 : 160억 리베이트 설은 허위사실로서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근거없는 음해성 루머였다.
〈정치면 좌 측 상단〉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6일자 정치면에 "[단독입수] 해군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리베이트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해군과 정치인, 중개업자 등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비리 루머가 읽는 이로 하여금 실제 사실인 것처럼 표지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사 대표 K 씨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비리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으며, 대상기종 선정 과정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해군 무인항공기 도입사업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6일자 정치면에 "해군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리베이트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쉬벨사에 120억 원에 낙찰되었으나 해군은 28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어, 그 차액인 160억 원을 해군과 정치인,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로 챙겼다는 비리 루머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제 계약은 입찰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고, A사 대표 K 씨는 따라서 160억 원이 리베이트로 제공될 수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1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정치면 좌 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중간제목('해군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리베이트 비리 의혹')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본 건 조정대상기사를 2009년 8월 5일까지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들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서울 : 『〈바로잡습니다〉 해군 무인항공기 도입사업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6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제주 도지사가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식당 여종업원인 신청인에게 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제주조정6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엄 ○ ○
피신청인 : 제주프레스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주프레스 : 『도지사 강정서 부적절한 술자리 행동 사회적 파장』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6일자 1면)
내 용 : "여성 민원인, 도청 게시판에 여성으로서 비참했던 당시 술자리 심정 토로"

도지사, 소환정국 진정한 주민과 소통위해 강정마을 거처한 명분 '무색'

소환정국을 맞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강정마을에 입성한 김태환 도지사가 지난 달 하순께, 강정마을 내에 있는 P식당에서 부하 공직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 식당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가 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20여 명 모두에게도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 '러브 샷'을 즐겨 소환정국에 처한 도지사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당시 술을 따랐던 이 식당 종업원 U모 여성이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공무원들의 술 문화가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술자리 상황에 처했던, 여성으로서의 비참했던 자신의 입지를 감정으로 호소하면서 도지사 등 공무원들의 술자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잘못된 술 문화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민원으로 게재, 세상에 공개 되게 되었다.

당시 도청 게시판에서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무려 330여 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청 게시판의 이 글은 행정이 나서 피해자 U모 여인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일단 삭제되었지만, 이 삭

제된 민원 내용은 이미 많은 도민들이 읽은 상태이고 게시판 민원내용도 도민 몇몇이 복사로 취득한 상태여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 증폭되는 상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지사 강정서 부적절한 술자리 행동 사회적 파장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6일자 1면에 "도지사 강정서 부적절한 술자리 행동 사회적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 '러브 샷'을 즐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U모 여성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술자리가 아니라 대천동사무소 직원들의 격려 자리였고, '러브 샷'을 즐겼다는 내용은 글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사실무근의 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24일 09:00까지 본 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정마을 P식당 내 술자리와 관련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추가적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청구 및 반론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광명시가 여권을 발급하면서 민원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등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효 선) 외 1인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시민일보 : 『여권 발급업무 까다로워 짜증』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7일자 16면)
내 용 : 광명시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탄생된 여권업무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가 하면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어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관계인에 따르면 광명시가 여권업무를 하면서 사진이 잘못됐다는 등 민원인과 옥신각신 하는 사례가 잦아 민원인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가 하면 불친절하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모씨는 여권업무를 보기 위해 광명시청 민원실 여권계를 찾아 여권신청을 했으나 사진에 귀가 나와야 된다며 다시 사진을 찍어 올 것을 요구해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4개월 전에 촬영한 사진으로 대치했으나 이번엔 옷이 흰색이라 안된다는 등의 시비로 불쾌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머리가 눈썹을 가려 안된다며 민원인 대리인으로 여권업무를 보낸 사람에게 눈썹이 가려있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라고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과 짜증스러움을 당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 이를 전화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권담당자가 대뜸 사진을 포토샵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등의 어이 없는 질문을 하는 등 민원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원과 말다툼을 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여권 발급업무 까다로워 '짜증'"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7월 7일자 16면에 "여권 발급업무 까다로워 짜증" 이라는 제목으로, 광명시가 여권업무 처리과정에서 여권신청을 하러 온 민원인에게 옷이 흰색이라 안 된다는 등의 시비를 하였고 민원인 대리인으로 여권업무를 보낸 사람에게 눈썹을 가려 안 된다며 눈썹이 가려져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했으며 사진을 포토샵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등의 어이없는 질문을 하여 민원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원과 말다툼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사진 속 옷이 흰색인 경우는 여권법 시행령 상의 여권용 사진규정에 결격인 사항이었으므로 이를 안내한 것이지 시비한 것이 아니었으며, 여권사진 상에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린 사실로 인해 외국입국 시 신원확인에 문제가 생겨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고지한 바 있고 민원인에게 구두로 고지한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차후 임의로 수정하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이 신청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한 적당한 절차였으므로 각서까지 쓰라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이 일반 여권용 사진과 달리 선명도가 낮고 표면이 뿌연 상태여서 여권용 사진 규정상의 금지 사진 사항인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으로 의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아 '제출된 사진이 혹시 포토샵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한 바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시민일보 : 『"여권용 사진 적법하게 처리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수도권면)
내 용 : 〈시민일보〉 7월 7일자 16면에 게재된 '여권 발급업무 까다로워 짜증' 이라는 제하 기사와 관련해 광명시는 여권업무 처리과정에서 규정된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밟았을 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자체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업무처리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여권업무 처리과정에서 여권신청을 하러 온 민원인에게 옷이 흰색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여권법 시행령 상 여권용 사진 규정에 결격 사항으로 문제 시 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권사진 상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린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입국 시 신원확인 절차에서 향후 불편이 생길 것을 구두 고지한 것에 대한 절차 상 확인서를 받은 것은 담당 공무원 향후 임의 수정하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

신청인 회사가 노조설립 주동자를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보람상조프라임(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상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상조뉴스 : (1) 『보람, 장례지도사 업계 최초 노조결성?』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4일자 기자수첩면)
내 용 : 보람상조 업계 최초 장례지도사들 노동

조합 설립되나?

보람상조(대표:최○○)가 상조업계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고 있다. 상조업계 최초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46명의 장례지도사와 보람상조 간의 힘겨루기가 7월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두고 상조업계 호사가들은 역시 보람상조 라며 아는 듯 모르는 듯 미소(?)를 지었다. 먼저 46명의 '장례지도사'들은 그동안 회사의 현장 인력들에 대한 회사의 처우 임금 등 기타 여러 가지 노동조건에서 '불이익'과 '불공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고 주장,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 상당 부분 그 결실을 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략)

1박 2일 교육에서 최○○ 회장은 만일 장례지도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그 즉시 이들을 '해고 할 것'이며 그 자리엔 지금의 전국 '지점장'들이 직접 장례 행사장에 출동, 모든 행사를 '진두지휘'해야 하며 고인의 '입관(염)'부분은 '아웃소싱(외주)'을 주어 행사를 차질 없게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교육 내용이었다. 또한 최○○ 회장이 직접 강사로 출연,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보람, 노조설립 주동자 전원 전격 해고』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9일자 주요포커스면)

내 용 : 보람상조, 드디어 '노동조합설립' 주동자 전격 '해고'

보람상조(대표:최○○)가 드디어 칼을 빼들어 자사 장례지도사들을 전격적으로 해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3)『보람, 노조관련 이중적 태도 당근 채칙』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1일자 주요포커스면)

내 용 : (전략) 보람 측의 철저한 통제와 보안 때문에 취재원에게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취재팀은 계속해서 취재원과 연락을 취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략)

결국 이날 6명 승무원 해고, 1명의 장례지도사(일명 주동자) 8월 몇 일(날짜미상)자로 해고통지서(1차 구두경고, 2차 경고, 3차 해고통지 등의 전형적 노조탄압 방법으로 해고) 발송 등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전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7월 4일자 보도문

• 제 목 : '보람, 장례지도사 업계 최초 노조결성?' 관련 정정보도문

• 본 상조뉴스는 지난 7월 4일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우 측 중단 기자수첩 란에 "보람, 장례지도사 업계 최초 노조결성?"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회사의 회장이 만일 장례지도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그 즉시 이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청인 회사의 회장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7월 9일자 보도문

• 제 목 : '보람상조 노조설립 주동자 전원 전격 해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상조뉴스는 지난 7월 9일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최상단에 "보람, 노조설립 주동자 전격 해고"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회사가 자사의 노조설립에 주동이 되었던 장례지도사 20여 명을 전격적으로 해고하고 결원으로 인한 장례행사 차질을 우려하여 이들을 해고한 직후 새로운 장례지도사 20여 명을 채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청인 회사는 노조설립을 주동한 장례지도사를 포함하여 무단 해고한 장례지도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3) 7월 11일자 보도문

• 제 목 : '보람, 노조관련 이중적 태도 당근 채찍'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상조뉴스는 7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최상단에 "보람, 노조관련 이중적 태도 당근 채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9일자 보도에서 언급했던 '장례지도사 20여 명 해고 직후 20여 명 신규 채용'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아울러 신청인 회사가 6명의 승무원을 해고 했으며 노조 주동자인 장례지도사 1명을 8월중으로 해고하는 내용을 담은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6명의 승무원 중 5명은

현재 근무 중이며 나머지 1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현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실상 재계약을 대기 중에 있으며, 해당 장례지도사는 회사의 전보발령에 계속해서 불응한 이유로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보람상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4일자 「보람, 장례지도사 업계 최초 노조결성?」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 회사의 회장이 '장례지도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즉시 해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보람상조프라임(주) 측에서는 실제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9일자 「보람상조 노조설립 주동자 전원 전격 해고」 제하의 기사와 관련, 노조설립의 주동자 20여 명을 전격 해고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11일자 「보람, 노조관련 이중적 태도 당근 채찍」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보람상조 측에서는 계약을 해지한 직원이 전보명령에 불응한 1명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3일부터 2009년 8월 10일까지 7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상조뉴스〉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2009년 7월 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상조뉴스 : 『보람상조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주요포커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하는 은나노 모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어린이공원에 은나노 모래 독? 약?』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시가 동네 어린이 놀이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은나노 모래'가 인체 유해성 논란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어린이를 위해 값이 비싸지만 항균효과를 지닌 은(銀)모래를 도입한 점은 이해하지만, 극소립자가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過猶不及).'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중략)

▷美, TF팀 꾸려 위해성 여부 연구 진행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나노 입자가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에 침투할 경우 나타날 신체적 반응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흔히 바람을 타고 흩날리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유아들은 입으로 삼키는 일도 다반사여서 나노 물질의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어린이 공원에 은나노 모래 독? 약?" 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1일자 사회면에 "어린이공원에 은나노 모래 독? 약?" 이라는 제목으로 '극소립자가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도하였으나, 기술적으로 은나노 향균 모래에 코팅된 은나노 극소립자는 모래로부터 피탈되지 아니하여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5월 11일자 사회면 「어린이 공원에 은나노 모래 독? 약?」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은나노 모래 납품 업체인 미지나노텍서비스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실험을 통해 은나노 모래에 코팅된 은나노 극소립자가 모래로부터 피탈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일보〉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5일까지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전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이 전주시 공무원과 결탁하여 자부담 확보 없이 상가 리모델링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전주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정 ○ ○)
피신청인 : 시사전북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전북 : 『자부담 확보 없이 국가보조금 교부 시 공무원과 결탁 보조금 횡령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호 44면~47면)

내 용 : 전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이하 중앙상가조합)이 교육장 시설공사와 에어컨, 리모델링 사업 등의 국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리 혐의로 조합 이사장이 사직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주 중앙상가는 지난 1988년 1월, 대주건설(대표 정용균)이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현 중앙시장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5층(1, 2층 상가. 3, 4, 5층 주택)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완공 분양했다.

그러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중앙상가는 개점 초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나 입주한 상인들의 노력으로 한때는 전주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 되기도 했다. 상인들은 지난 IMF 이전까지는 나름대로의 호황을 누렸다.

현재는 지하와 지상 1, 2층에서 700여 개의 점포

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중앙상가조합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상인교육장 매입 및 설치공사, 상가 내 에어컨 교체공사, 상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정부 보조금 사업계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외에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자부담)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와 함께 국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결과를 감독하는 전주시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이 결국 조합의 각종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눈감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사직당국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주 중앙상가조합 무슨 일 있었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지 2009년 7월호 표지 및 44~47면 "자부담 확보 없이 국가 보조금 교부 시 공무원과 결탁 보조금 횡령의혹" 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① "전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자부담 확보 없이 국가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보도 하였으나, "중소기업청과 전주시가 조합이 상인교육장 부지 매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 대금을 자부담으로 인정한 것을 전주지방경찰청이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보조금 사업에 이상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② "현 이사장이 시 공무원과 결탁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현 이사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8천만 원을 차용했다"고 보도했으나 "특정 조합원이 8천만 원을 조합에 빌려준 후 특혜를 요구했으나 조합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조합원이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에 납부할 관리비에 채권추심을 하여 현재 거의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④ 현 이사장이 사직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고 보도하여 보도 당시 이사장이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나, 시사전북 기자가 취재 당시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⑤ 현 이사장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공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조합명의로 계약한 후 대금지급을 완결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분양하여 2억3천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⑥ 박창윤 전 이사장의 주장을 인용하여 "현 이사장이 경찰 대질조사 때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결산서류를 작성해 전주시에 제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현 이사장이 이를 시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⑦ "현 이사장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으나, "현 이사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박창윤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전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전주 중앙상가조합 무슨 일 있었나" 보도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및 반론

• 내 용 : 본 지는 2009년 7월호 표지 및 44~47면 "자부담 확보 없이 국가 보조금 교부 시 공무원과 결탁 보조금 횡령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① 전주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자부담 확보 없이 국가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② 현 이사장이 시 공무원과 결탁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이 있다.", "③ 현 이사장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공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조합명의로 계약한 후 대금지급을 완결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분양하여 2억3천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은 위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정 및 고발 건에 대해 "조합이 공사로부터 공매를 통해 매입한 중앙상가 2층 부동산을 전주시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조합이 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중앙상가 교육장 시설을 위한 자부담으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고, 조합이 중앙상가를 매입하지 못하자 분양대금을 상가 냉난방공사 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 금전이 애초의 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조합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현 이사장이 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또한, 현 이사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박창윤 전 조합 이사장은 위 건과 관련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보도내용 중 "현 이사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8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것과 관련 "특정 조합원이 8천만 원을 조합에 빌려준 후 특혜를 요구했으나 조합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조합원이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에 납부할 관리비에 채권추심을 하여 현재 거의 상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현 이사장은 박창윤 전 조합 이사장과의 경찰 대질조사 때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결산서류를 작성해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직원이 징계를 당한 이유는 조합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과는 무관한 사유였고, 전주시가 중앙상가 내 2층 공사 소유 건물을 매입한 사유는,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육성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시군에 실제 필요한 사업수요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전부터 조합이 전주시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반영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고를 지원 받아 정부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지,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시사전북 2009년 9월호 40면에서 50면 사이에 위 보도본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표지면 하단과 보도문 상단에 게재하고,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중 44면 제목 가운데 『박창윤 전 이사장 "현 이사장 본인 입맛대로 조합 운영"…』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전북 : 『〈반론보도문〉 "전주 중앙상가조합 무슨 일 있었나"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호 4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으로부터 고액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감정평가 및 대출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 Ⅰ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부동산 감정평가액 변칙조정 후 고액 대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5일자

9면)

내　　용 : 현직 조합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고액의 담보대출을 받는가 하면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고양시 소재 고급 룸싸롱 및 비즈니스클럽에서 술 접대를 받는 등 파행과 부정행위를 일삼아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북파주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S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 및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 자신 및 부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감정가액을 상향해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액대출을 받았다.

조합원 등 감정평가사에 의하면 "문산읍 내포리 산43-1의 임야는 盲地(맹지)로써 담보물로는 환가성이 전혀 없는 부동산이며, 고압선 철탑이 설치되어 있고 토지 이용가능성도 40% 이내의 부동산을 최초 담보 감정가격을 받을 당시(2004년 4월) 적정시세는 15억 수준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장은 지난 2004년 4월 20일 북파주 농협으로부터 14억의 고액대출을 받았으며, 2008년 3월 7억2천8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에게는 "북파주 농협에서 발생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 건을 앞으로 모두 밀어 주겠다"는 회유를 하면서 "만약에 원하는 대출을 못 받을 시 다시는 감정 평가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감정가격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동산 감정평가액 변칙 조정 후 고액대출(현직 조합장 직위 남용 회유 협박해 대출 접대 물의) 사실과 달라

• 본 신문은 지난 7월 15일 사회면에 "농협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보직변경·압력행사 의혹(부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감정평가사 등 접대 향응 받아)" 이라는 제목으로 북파주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 및 감정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 및 부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감정금액을 상향하여 부당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고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월 접대성 향응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북파주농협의 조합장 관련 대출은 농협규정 등에 의해 적법하게 대출 받은 것이며 직원 및 감정평가사 등에게 회유 및 압력 등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월 접대성 향응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북파주농협 조합장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 2009년 7월 15일자 19면「부동산 감정평가액 변칙조정 후 고액 대출」제하의 기사에서 북파주농협 조합장 S씨가 2004년 당시 감정평가액 15억 원인 토지에 대해 14억 원의 고액대출을 받고, 2008년에도 7억여 원의 추가대출을 받았으며,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내포리 산 43-1 토지에 대해 2004년 당시 감정평가액 19억4천6백만 원 중 10억 원을 대출받아 2008년에 모두 상환했고, 동일 토지에 대해 다시 감정평가가 이뤄진 2008년에는 감정평가액 22억5천6백만 원 중 14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현재 총 대출잔액은 14억2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S조합장은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회유·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7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현직 농협 조합장, 직위남용 회유 협박해 대출 접대 '물의'")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북파주농협 조합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5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으로부터 고액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감정평가 및 대출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 Ⅱ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파주인터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주인터넷뉴스 : 『농협 대출담당 직원 등에게 보직 변경·압력행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9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주인터넷뉴스 : 『북파주농협 S조합장 관련 정정 및 반론-농협 대출담당 직원 등에게 보직변경·압력행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1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관청이 특정업체의 화물용 선박을 여객선으로 허가한 것이 특혜라고 보도했으나, 필요에 따른 면허발급이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김 영 석)
피신청인 : 경남연합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연합일보 : 『항만청, 부정기 여객선 허가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9일자 2면)
내 용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 허가한 부정기 여객선 운항을 놓고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여객선은 이미 약 두 달 전에 타 건설업체에 임대하는 등 황당한 일로 30여 척 통선업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한림해운 소속 '한림 페리 7호' 선명의 이 여객선은 지난달 29일 항만청으로부터 부산시 가덕도 천성과 무인도인 중죽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저도, 진해시 안골동 등 4개소를 운항지로 하는 면허조건으로 부정기 여객선 허가를 받았다.

또 여객선 면허를 취득하기 약 두 달 전인 5월 1일 신항만건설업체인 성보개발에 3500만 원 계약금을 받고 이미 용선한 상태여서 부정기 여객선·차도선으로 면허를 취득했지만 이 업체는 사실 화물선이나 다름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골↔저도 여객선 면허관련 보도내용 사

실과 달라

• 내 용

-본 신문은 지난 7월 9일자 사회면에 〈항만청, 부정기 여객선 허가 특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부산해양항만청에서 진해 안골↔저도 간 내항 부정기 여객선 면허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본 여객선 면허는 현재 공사중인 거가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된 건설인력 및 자재차량을 공사현장인 저도와 중죽도에 수송할 목적으로 면허한 사항으로,

-본 신문의 주장과는 달리 (주)한림해운이 면허를 받기 전에 성보개발과 체결한 계약은 선박의 임대(용선)계약이 아니라 (주)한림해운이 선박의 운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직접 선박을 운항하면서 성보개발이 요구한 건설인력과 자재차량을 수송하는 수송계약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여객선 취항 허가 특혜의혹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9일자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무인도를 오가는 여객선 허가를 내주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해양항만청은 여객선 면허는 현재 공사 중인 거가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된 건설 인력 및 자재 차량을 공사현장인 저도와 중죽도에 수송할 목적으로 면허한 사항이며, (주)한림해운이 면허를 받기 전에 성보개발과 체결한 계약은 선박의 임대(용선) 계약이 아니라 (주)한림해운이 선박운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직접 선박을 운항하면서 성보개발이 요구한 건설인력과 자재차량을 수송하는 수송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허와 관련하여 필요한 선박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등은 관련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기조성해 놓은 물량장과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한림해운과 시공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시설과 관련한 면허요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4년 12월 20일 한 해운업체가 부산항만청에 접수한 면허는 진해 안골과 부산 가덕 간에 주민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였으며, 당시 면허가 반려된 직접적인 사유는 해당 선사가 접안시설, 여객을 위한 안전시설 및 편의 시설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3일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연합일보〉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 기사 부제목 "부산 가덕도·진해 안골동 운항 '한림페리 7호'"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연합일보 : 『여객선 취항 허가 특혜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관청이 특정업체의 화물용 선박을 여객선으로 허가한 것이 특혜라고 보도했으나, 필요에 따른 면허발급이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김 영 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일보 : 『여객선 취항 허가 특혜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9일자 5면)

내 용 : 〈2009경남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남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경남일보 : 『"여객선 취항 허가 특혜의혹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9일자 5면)
내 용 : 〈2009경남조정13의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관청이 특정업체의 화물용 선박을 여객선으로 허가한 것이 특혜라고 보도했으나, 필요에 따른 면허발급이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김 영 석)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무인도에 여객선 허가 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9일자 5면)
내 용 : 〈2009경남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남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경남조정1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여객선 취항 허가 특혜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한강 및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3.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49 참조)

보도내용

한겨레 :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 악화'』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일자 1면)
내 용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낙동강 상당 구간의 수질이 사업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홍희덕 민주노동당·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낙동강 수계(상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보·댐 등의 시설물, 강 준설에 따른 하상·유량 변화, 주변 오염원, 수질개선 대책 등의 자료를 3차원 수리·수질모델에 입력해 분석한 낙동강 22개 중권역 중 12개 중권역의 2012년 수질 예측 결과를 담고 있다. 2012년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2등급' 수질 목표를 달성한 10개 지점은 수질 예측에서 제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예측 결과를 보면, 12개 지

점의 2012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의 예상 수치는 2006년에 견줘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수질 예측 치를,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최근(2007·2008년) 연평균 수질 측정 자료와 비교해 보니, 12개 지점 가운데 수질이 개선되는 곳은 절반 뿐이었다. 2007년과 견주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안동댐 하류인 경북 예천-1 지점이 0.9ppm에서 1.1ppm으로 나빠지는 등 6개 지점에서 오히려 악화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총인은 경북 상주의 상주2 지점이 0.021ppm에서 0.049ppm으로 나빠지는 등 절반이 넘는 7개 지점에서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06년을 비교 시점으로 잡은 데 대해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모델링에 투입할 오염원 조사 자료가 2006년 이뤄진 것이 최신 자료여서 2006년을 비교 연도로 삼았다"고 말했다.

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은, 환경부가 2012년까지 4대강에 모두 6조 원을 투입해 수질오염 개선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5,000억 원을 투입해 하·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현재보다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것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낙동강 수질 예측 지점의 절반 이상에서 수질이 오히려 악화하거나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 설치에 따른 물 흐름 정체의 악영향이 훨씬 심각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섭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공동집행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수질 개선을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말고 여론을 수용해 4대강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 악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일자 제1면에서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 악화'」라는 제목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와 2007년·2008년 수질측정 자료를 단순 비교하여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예측 지점의 절반 이상에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정체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는 2006년 수질과 강수량 등 수질여건을 전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을 예측한 것으로, 2007년·2008년 실제 측정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2007년·200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질이 훨씬 더 개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환경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보도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한강 및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3.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0 참조)

보도내용

한겨레 : 『4대강 사업 뒤 '한강도 수질 악화'』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9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9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마시는 태반약이 비싼 가격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9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경남제약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35만 원짜리 '마시는 태반약' 효과는 박카스급?』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0일자 산업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8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8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8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서울조정287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고창 청보리밭축제의 효과가 미미하고, 고창군이 자격 없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고창군 (군수 이 강 수)
피신청인 : 해피데이고창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해피데이고창 : (1) 『청보리밭축제 지역경제 효과 미미』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5일자 1면)

내 용 : "축제기간에는 나아지겠지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더라"

고창읍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달 17일 막을 내린 '제6회 고창 청보리밭축제'로 인한 고창군 내에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지난 해만 하더라도 축제 기간에 약 20%의 매출상승의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년도 축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후략)

(2) 『기준없는 사회단체 보조금 '눈먼 돈'』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1면)

내 용 :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고창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이 불투명한 집행과 정산으로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을 취재한 100일 간의 흔적.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안을 찾아본다. (중략)

△동호회에 보조금(수시) 최고액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의 경우 사진동호회인 포토

클럽이 보조금 수시분의 1/4이 넘는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는 고창농악보존회 '고창 고깔소고춤 서울공연' 1,000만 원 보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수시분을 지원받은 35개 단체 중 19개 단체의 지원금을 합친 금액보다 크다.

포토클럽은 대부분의 회원이 전·현직 군청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진동호회로 총 16명 회원 중, 현직 군청 공무원이 11명, 현직 군의원, 전직 군청공무원 2명, 기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이 동호회에서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주최, 주관, 후원 등 사업수행단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사업수행단체에 속하지도 않은 동호회가 보조금 신청을 해 받은 격이다. (후략)

(3)『'가재는 게편, 짜고치는 고스톱'』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2면)

내 용 : 회원의 대부분이 군청 공무원인 포토클럽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업수행단체인 (사)한국사진협회관계자는 포토클럽에서 2회째 거듭해온 '선운산 단풍 전국사진촬영대회'에 대해 "사진동호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회원들의 열정과 노고가 대단하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규모가 작은 동호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원활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역량 면이나 모양새에서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후략)

(4)『사업 효과는 뒷전 '관행적 묻지마 식' 특정단체 집중지원 '편향적 퍼주기 식'』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자 1면)

내 용 :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4년 기존의 '묻지마 식'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기존의 13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고창군에서 집행한 사회단체보조금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침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고 있다. (후략)

(5)『취재수첩 - 군청(군수 이강수)은 법이라도 지켜라』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 2면)

내 용 : 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2007~2008년 업무추진비를 출력물이 아닌 열람형식으로 공개하겠다"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다. 업무추진비 열람을 위해 찾아간 5월 26일에는 2007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었지만 사용금액과 정산금액이 맞지 않고 누락이 심한 상태에서 공개가 이루어졌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잘못된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청보리밭축제 및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에 대한 고창군 반론)

• 본 문 : 본 해피데이 고창(일반주간신문) 신문이 보도한 6월 15일자 1면『청보리밭축제 지역경제 효과 미미』제목, 7월 6일자 1면『기준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 눈먼 돈』, 2면 취재수첩『가재는 게편, 짜고치는 고스톱』제목, 7월 13일 1면『사업효과는 뒷전 관행적 묻지마 식, 특정단체 집중지원 편향적 퍼주기 식』제목, 7월 13일자 2면 취재수첩『군청(이강수 군수)은 법이라도 지켜라』제목의 각 보도에 대해 고창군은, ①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모범축제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며, 몇 억에서 몇 십억 원까지 지원하는 타 자치단체의 축제와 달리 5천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직접적인 효과도 크지만, 고창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높아져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 또한 큰 축제이며, ② 포토클럽이 주최하는 '선운산 단풍 전국촬영대회'에 수시분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비록 사업주체인 포토클럽이 회원 수는 적지만 대회를 계기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들을 초청하여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

리는 선운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촬영·홍보함으로써 고창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대내외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본 대회에 1,300여 명의 작가들과 가족들이 고창군을 방문하여 머무르는 동안 식비·숙박비·유류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성과가 있었고, 대회가 관광객들을 찾아가는 관광마케팅으로서 지속적으로 고창군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본예산에 해당 금액을 편성한 것이고, ③ 투명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운영비와 인건비 지급은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정기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후 예측되지 않은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 수시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고창군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해피데이 고창의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대응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청보리밭 축제 및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에 대한 고창군 반론

• 본 문 : 본 해피데이 고창이 보도한 6월 15일자 1면『청보리밭축제 지역경제 효과 미미』제목, 7월 6일자 1면『기준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 눈먼 돈』, 2면 취재수첩『가재는 게편, 짜고치는 고스톱』제목, 7월 13일 1면『사업효과는 뒷전 관행적 묻지마 식, 특정단체 집중지원 편향적 퍼주기식』제목, 7월 13일자 2면 취재수첩『군청(이강수 군수)은 법이라도 지켜라』제목의 각 보도에 대해 고창군은 ①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모범축제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며, 5천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직접적인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창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높아져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 또한 큰 축제이고,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2008년도에 포토클럽이 주최하는 '선운산 단풍 전국촬영대회'에 수시분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들을 초청하여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촬영·홍보함으로써 고창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본 대회에 1,300여 명의 작가들과 가족들이 고창군을 방문하여 머무르는 동안 식비·숙박비·유류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성과가 있었고, 대회가 관광객들을 찾아가는 관광마케팅으로서 지속적으로 고창군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정기분 지원대상 사회단체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것으로, 위 조례에 의해 동 단체는 정기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후 예측되지 않은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 수시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 고창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해피데이 고창의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대응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해피데이 고창 2009년 8월 17일자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해피데이고창 : 『청보리밭 축제 및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에 대한 고창군 반론』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조합 대의원에게 공개를 거부하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도했으나, 자료 공개를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사소한 몸싸움이었을 뿐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광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광주일보 : 『설계도면 공개 싸고 감사·대의원 주먹질』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7일자 7면)
내 용 : 광주북부경찰은 16일 광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신사옥 건축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개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끝에 서로 폭력을 휘두른 감사 Y(60)씨와 대의원 L(53)씨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본촌동 광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 신사옥 앞에서 설계 도면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 여부를 감정하러 온 대의원 L씨와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신사옥이 설계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며 감사인 Y씨에게 "건축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공개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사장 동의서를 받은 뒤 광주 모 감정 회사 직원과 함께 감정을 하던 중 Y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한 차례 얼굴을 때리자 맞서 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건축설계도면 공개 관련 폭행사건 기사정정(기자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편파적 보도확인) 또는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대의원 폭행사건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자 사회면에 "설계도면 공개 싸고 감사·대의원 주먹질"이라는 제목으로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설계도면 공개여부를 놓고 감사와 대의원 사이에 폭력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된 기사내용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6월 17일자 사회면 "설계도면 공개 싸고 감사·대의원 주먹질" 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광주개인택시운송조합 Y감사는 "L씨가 신사옥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얼굴을 때린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1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주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설계도면 공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8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오지마을의 교통편익을 돕는다며 보조금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광주권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으나, 지자체와의 협약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화순교통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호남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호남매일 : (1) 『지자체 무관심 줄줄 새는 보조금』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자 1면)

내 용 : 전남지역 한 여객운수업체가 농촌 오지마을의 교통편익을 돕는다며 무려 10년 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서도 실제 운행노선은 대도시인 광주권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해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략)

12일 전남도와 화순군 등에 따르면 화순지역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H교통은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산간·오지 교통지원금, 버스 재정지원 등의 명분으로 매년 수억 원의 지원금을 도와 군으로부터 받고 있다.

H교통이 이처럼 막대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마다 농촌 인구가 줄고 승용차와 트럭 등 대체 교통수단이 증가하면서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급감해 업체가 버스 운영에 따른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H교통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거나 배차시간을 어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점도 한 몫을 했다. (후략)

(2) 『'막가는 공영버스' 방조하는 화순군』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7일자 1면)

내 용 : 화순군으로부터 공영(公營)버스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화순교통이 당초 목적과 달리 수익에만 급급해 편법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화순군은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화순교통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와 7월 17일자, 7월 28일자 전면에 "지자체 무관심 줄줄 새는 보조금", "위탁업체 10년째 편법운영 불구 '문제없다'", "광주 시내버스 재정적자 눈덩이, 화순 공영버스 부당영업 등 간접누수 심각, 수익저해요인 척결 등 합리적 경영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화순교통이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서도 화순지역을 운행하지 않고 광주권을 중심으로 운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첫째, 화순교통은 여객운수사업법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광주광역시의 외곽지역 일부를 경유하여 화순 전역을 빠짐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전남지역서비스도 인가사항에 따라 광주시와 별도의 협의 없이도 광주권을 상시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화순교통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넷째, 벽지 노선의 손실보상금은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섯째, 준공영제 이후 동일한 신설노선(지원25번)과 광주시내승강장 번호표기의 탈착 등으로 오히려 화순교통이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적자의 가중은 수입감소가 아닌 인건비 상승, 연료비 상승 등 지출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취재 시 파악하지 못하였던 이상의 여섯 가지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3일자 1면 "지자체 무관심 줄줄 새는 보조금", 7월 17일자 1면 "'막가는 공영버스' 방조하는 화순군", 7월 28일자 "광주 시내버스 재정적자 눈덩이, 화순 공영버스 부당영업 등 간접누수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화순교통이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서도 실제 운행노선은 대도시인 광주권을 중심으로 편성 운영해 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화순교통은 여객운수사업법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광주광역시 일부를 경유하여 화순군 전역을 빠짐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화순교통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동일한 신설노선과 광주시내 승강장 번호표기의 탈착 등으로 인해 버스 3대를 감차했으며,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광주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화순교통이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호남매일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위탁업체 …)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호남매일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4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오산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혜택을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오산시 (시장 이 기 하)
피신청인 : 오산시민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오산시민신문 : (1) 『오산시장 인척 등에 수의계약 혜택』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2일자 1면)
내 용 : 오산시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기하 시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 담당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까지 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는 등 법적인 자격시비를 비껴갔는지는 몰라도 행정책임자 및 실무자의 재량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드세다.

이번 오산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관의 특정업체에 대한 '뒤 봐주기' 행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중략)

또한 계약체결 대상을 보면 이 시장의 인척인 N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조경)가 그동안 4건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또 다른 인척인 A모 씨는 수의계약으로 오산시에 사무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2) 『'오산시 알리기'인가, '오산시장 알리기'인가』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9일자 2면)
내 용 : 오산시 인지도 제고사업이란? 오산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반 국민들에게 오산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 오산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비 총 12억4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브랜드

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사업, 그 중 8억9천만 원이 TV CF 홍보에 사용됐다. (후략)

(3)『오산시 교육경비 지원현황 경기도 바닥권』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5일자 2면)
내 용 : 2008년도 경기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오산시가 31개 시·군 가운데 밑에서 6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오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83억여 원이며 이중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활용된 금액은 24억여 원으로 비율로는 1.1%에 불과하다. 이는 도농복합도시인 연천군(0.5%), 포천시(0.8%), 파주시(0.8%)를 제외하면 거의 경기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오산시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지가 지난 6월 12일자 1면에 "오산시장 인척 등에 수의계약 혜택"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장의 인척인 N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조경)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4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혜택을 입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산시는, 오산시 관내에 7개의 조경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다른 네 곳의 업체에 네 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N모 씨의 업체에만 혜택을 준 것처럼 보도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자 2면에 "'오산시 알리기'인가, '오산시장 알리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오산시 인지도 제고사업을 위해 총 예산액 12억4천여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산시는, 오산시장이 나오는 장면은 홍보 CF 20 ″중 2 ″에 불과 하며,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을 알리기 위한 순수한 홍보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오산시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며, 오산시 인지도 제고 사업에 총 996백만 원을 편성·집행한 바 있어 보도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에 "오산시 교육경비 지원현황 경기도 바닥권"이라는 제목으로 오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6번째로 낮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오산시는 2008년도 교육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최종예산액 228,378백만 원 대비 1.25%인 2,856백만 원을 지원하여 31개 시·군 순위 중 17위로써 오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인 것처럼 보도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오산시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지가 지난 6월 12일자 1면에 "'오산시 수의계약 일부 업체에 편중', '오산시장 인척 등에 수의계약 혜택'"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장의 인척인 N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조경)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4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혜택을 입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산시는, 오산시 관내에 7개의 조경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다른 네 곳의 업체에 네 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N모 씨의 업체에만 혜택을 준 것처럼 보도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자 2면에 "'오산시 알리기'인가, '오산시장 알리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오산시 인지도 제고사업을 위해 총 예산액 12억4천여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산시는, 오산시장이 나오는 장면은 홍보 CF 20 ″중 2 ″에 불과 하며,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을 알리기 위한 순수한 홍보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오산시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며, 오산시 인지도 제고 사업에 총 9억9천6백만 원을 편성·집행한 바 있어 보도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에 "오산시 교육경비 지원현황 경기도 바닥권"이라는 제목으로 오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6번째로 낮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오산시는 2008년도 회계연도 기준 2009년 2월 28일 현재 교육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최종예산액 228,378백만 원 대비 1.25%인 2,856백만 원을 지원하여 31개 시·군 순위 중 17

위여서 위 보도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13일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크기(2009년 6월 29일자 2면 - '오산시 알리기'인가, '오산시장 알리기'인가)로,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산시민신문 인터넷판(www.osannews.net) 메인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009년 8월 13일부터 5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뜨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산시민신문 : 『오산시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과천시 도시경관계획상 통경축이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 조성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으며 향후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Ⅰ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과천시 (시장 여 인 국)
피신청인 : 과천문화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과천문화신문 : 『경관계획 최종보고 9단지 '경악'』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1면)
내 용 : 지난 6월 24일 과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가 발표되자 일부 시민들은 환영을, 대다수 시민들은 불쾌함을, 9단지 주민들은 분노를 나타냈다. 9단지 주민들은 과천시의 통경축 지정으로 단지의 30% 이상(추정)이 아파트에서 건축제한구역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통경축으로 단지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정상적인 재건축이 어려워진다며 9단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관계획 수립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관계획 최종보고 9단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지가 지난 2009년 7월 6일자 1면에 걸쳐 "경관계획 최종보고 9단지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과천시의 경관계획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침해, 통경축의 면적, 경관계획 수립절차 문제, 통경축 도로화의 사전포석 등의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심의위원회를 넘어 경기도의 승인이 나게 되면 과천시민으로서는 더 이상 경관계획에 대해 손쓸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유재산의 침해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야만 수정 가능하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경관계획수립지침 제1장 제2절 7항에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다른 법률에 의한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 시 참조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 경관계획 자체로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여도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경축의 폭이 용역에 따라 50M로 9단지에서 약 3,000평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경관계획 최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통경축의 폭이나 면적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통경축은 과천시 전체의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권장하는 성격이며 통경축의 폭 등 재

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과천시가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도 경관법 제6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경축이 도로화의 사전포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결과, 9단지 통경축은 과천시 경관관리 기본계획(2003.10) 및 과천도시기본계획(2008.10)에 기설정된 것으로써 최근에 추진되는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연결한다는 의혹은 물론, 관문삼거리를 사거리로 확대, 최종적으로 양재동까지 도로를 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민의견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통경구간은 단지 소유자의 고유지분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

과천시 도시경관계획상 통경축이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 조성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으며 향후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Ⅱ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과천시 (시장 여 인 국)
피신청인 : 과천시대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과천시대신문 : 『9단지 통경축 '대지지분 30% 점유'』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9일자 1면)
내 용 : 〈2009경기조정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기조정3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으로부터 고액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감정평가 및 대출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일간경기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간경기 : 『농협조합장 부정 감정평가로 '고액대출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5일자 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29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경기 : 『바로잡습니다 - 북파주농협 조합장 관련 기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야구장에서 부상을 당한 신청인이 술기운에 치료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노 ○ ○
피신청인 : 조이뉴스24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이뉴스24 : 『문학구장 경기 후 귀가하던 女팬, 날아온 의자맞고 응급실 행』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9일자 문화・연예・스포츠 섹션)

내 용 : 인천 문학구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한 30대 여성 팬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야구장 위에서 날아온 의자에 머리를 맞고 응급실로 후송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19일 문학 SK-롯데 전이 끝난 후 사건이 터졌다. 경기를 보고 구장 밖으로 빠져나가던 중 위에서 불시에 떨어진 플라스틱 일체형 의자를 맞은 것. 부상을 입은 여성 팬은 술에 취해 치료를 거부 했지만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후송됐고, 경찰까지 동원돼 사건 조사에 나섰지만 경기 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범인을 색출하기는 힘들었다.

이날 문학구장은 올 시즌 두 번째로 만원 관중을 기록해 상당한 혼잡을 빚었다. 때문에 당시 피해자 측은 이미 구단 밖을 빠져나가던 앰뷸란스가 다시 돌아오느라 시간이 걸리는 통에 발을 동동 굴러 더욱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난 7월 19일 문학야구장의 의자사건 사과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9일 스포츠 〉 국내야구면에 "문학야구장 경기 후 귀가하던 女팬, 날아온 의자 맞고 응급실 행"이라는 제목으로 '부상을 입은 여성 팬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술 기운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해 구단관계자가 진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지 하지 않은 채, SK구단 측을 통한 간접 취재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하루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 구단의 팬들에게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 중인 신청인과 그 보호자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닥터스」 프로그램 『'응급실24' 첫 번째 이야기(터널 내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들』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6일 19:00)

내 용 : ▷내레이션 : "여름비가 내리던 밤, 30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왔다."

▷구급대원 : "오토바이를 탔거던요. ○○터널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머리 한 쪽이 지금 나갔거든요."

(신청인 노출 화면)

▷내레이션 : "지난 밤 바람을 가르며 즐겼던 짜릿한 속도감, 이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느리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들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8월 17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의 조정대리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8월 17일까지 본 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신청인이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을 취재, 보도한 학보사 기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뉴스앤조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스앤조이 : 『학보사 기자, 총장 비판해 무기정학?』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일자 교계면)

내 용 : 부산장신대학교 장○○ 총장서리가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몇몇 학생들을 중징계했다. 장 총장서리는 "그간 학교사태에 엄연한 위반 행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피나는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9조에 의거 승인되지 않은 기구 비대위 등 어떤 위반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 바 있다"고

다시 확인했다. (중략)

학보사 기자에 무기정학, 사실상 퇴학조치

그런데 이번 징계명단에 학보사 황진철 기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그는 무기정학에 처해졌는데, 이는 사실상의 퇴학조치에 해당한다. 총장서리가 학보사 기자를 징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총장서리의 논문표절과 거짓경력에 대한 보도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학보사 기자, 총장 비판해 무기정학?"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일자 부산장신대학교 홈페이지 첫면 기사란과 귀 신문 교계면에 "학보사 기자, 총장 비판해 무기정학?"이라는 제목의 편파적인 기사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① 학보사 기자의 무기정학에 대해서 뉴스앤조이 신문은 본인에 대한 사실 보도를 했다 해서 보복성으로 취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누차에 걸친 학생 상벌에 대한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사를 자유게시판에 올림으로써 학교 그리고 총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켜 총장 고유권한으로 징계를 하였을 뿐입니다.

② 학보사 기자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뉴스앤조이 신문은 본인에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올림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뉴스앤조이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징계는 기자로서 취재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아닐 때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는 바 명예훼손이란 사실이 아닌 것도 해당되지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접하게 되었다면 이도 역시 명예훼손이라 하겠습니다. □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중인 신청인과 그 보호자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외 2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닥터스」 프로그램 『응급실 24』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6일 19:00)
내 용 : 〈2009서울중재3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9월 4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본 건 조정대상방송의 외주 제작사인 (주)○○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 지급〉 □

안양시가 시 금고를 맡은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줘 수억 원의 이자 수입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으나 약정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필 운 (안양시장) 외 1인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안양시, 금리 이자수익 포기 왜?』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9일 19:00)

내 용 : ▷앵커 : 예금을 들 당시 약속받은 금리를 은행이 뒤늦게 낮춰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경기도 안양시는 수억 원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 금고를 맡긴 은행의 이런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올해부터 3년동안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에게 각각 일반과 특별회계 시 금고를 맡겼습니다.

처음 6달 동안은 고정금리, 그 이후에 맡긴 돈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락하자 다급해진 은행들의 요구에 안양시는 석달여 만에 처음 약정 금리보다 1/4 남짓 낮게 새 금리를 적용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한달여 만에 금리를 30% 가까이 낮춰 주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양시 금리이자수익 포기, 적법
• 내 용 : 저희 방송은 지난 7월 10일자 뉴스광장에서 '안양시, 금리 이자수익 포기 왜?' 라는 제목으로 안양시가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의 요구를 들어줘 수억 원의 이자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안양시는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시중금리 폭락으로 약정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안양시, "금리 인하는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것"
• 내 용 : 안양시는 시의회가 감사 청구한 '시 금고 금리인하 수익 포기' 논란과 관련해, 안양시는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 측은 한은의 기준금리도 절반 이상 인하됐고, 안양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5.7%에서 2.98%로 인하하였으며, 인하된 금리도 평균 시 금고 금리를 웃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12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6시에 방송하는 KBS-1TV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에 보도하되, 원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안양시, "금리 인하는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것"』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7일 0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미디어법 찬반 투표 시 대리투표를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제 원 (국회의원)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허 찔린 민주 허탈·분노 "초 강경 대여 투쟁"』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3일자 4면)
내 용 : 민주당에선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에 허탈함과 울분이 교차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소수 야당의 힘을 실감해서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 결행"이라는 배수진 속에 전열을 가다듬어 초 강경 대여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 의원들이 보좌진과 합심해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7시간의 사투'를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60~70%의 '미디어법 개정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몸을 날리며 격렬히 저항했지만, 84석의 소수 야당이 169석 한나라당을 막아내기에는 힘이 부쳤다.

민주당은 '상황 종료' 뒤 본회의장 중앙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격하게 성토했다. (중략)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법률 투쟁'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재투표로 처리된 방송법과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등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가 신지호·장제원·임해규 의원 등 부대표단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미디어법 대리투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7월 23일자 4면 "허 찔린 민주 허탈·분노 초 강경 대여 투쟁" 제하의 기사 중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가 장제원 의원 등 부대표단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미디어법 표결 시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더불어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마치 대리투표를 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장제원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5일자 2면)
내 용 : 경향신문 7월 23일자 4면 '허 찔린 민주 허탈·분노, 초 강경 대여 투쟁' 제하의 기사 중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가 장제원 의원 등 부대표단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장 의원은 "대리투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언론노조 위원장을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 정 지 효)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부인·딸 보는 앞에서 수갑 채우고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8일자 3면)
내 용 :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은 27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체포에 대해 "미디어법 저지투쟁 무력화를 노린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지 5일 만에 언론노조위원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습 체포하는 패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고교생 딸을 차로 등교시켜주고 귀가하다 잠복 중인 경찰과 만나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 위원장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부인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팔목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

민주당 송영길·추미애 의원 등은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최 위원장 체포는 '언론자유 수호' 활동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인·딸 보는 앞에서 수갑 채우고 연행」 보도와 관련하여
• 내 용 : 본 경향신문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28일자 3면에 「부인·딸 보는 앞에서 수갑 채우고 연행」이라는 제목 하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습 체포하는 패륜적인 만행을 경찰이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일 뿐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부인과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두 팔목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며 전후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은 정당한 법 집행임을 고지한 후 경찰서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동행에 거부하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해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현장에서 부득이 연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었음에도 경찰관의 얼굴을 어떠한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을 침해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잘못된 보도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리며, 이로 인해 경찰 전체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7월 28일자 3면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체포 기사에서 "경찰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습 체포하는 패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언론노조 성명을 전한 데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해당 경찰관들은 체포영장에 따른 적법한 공무수행이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31일까지 〈경향신문〉 2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언론노조 위원장을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외 2인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부인·딸 보는 앞에서 수갑 채우고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8일자 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0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경향신문 :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7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06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경찰청장이 헬멧을 쓰지 않은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주행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강 희 락) 외 1인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1 참조)

보도내용

문화일보 : 『안전 불감 '자전거 사고 특별시' 창원』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7일자 11면)

내 용 : '자전거 특별시' 경남 창원에서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박완수 시장조차 헬멧을 쓰지 않는다. 16일 창원을 방문한 강희락 경찰청장도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자전거 순찰대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고 도로를 누볐다.

시민들이 안전장구 착용없이 자전거를 타다보니 창원에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창원지역 자전거 사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L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에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시민은 40명으로 총 22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121건이 발생, 7,660만 원이 지급됐다.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회원은 2008년 10월 개통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 15일 현재 2만2,365명이다. 1일 이용 회수는 지난 1일 9179회에서 10일 1만237회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누비자 이용률은 하루하루 크게 증가하고 있다. 회원이면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101개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해 자전거 1230대를 비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인프라 구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안전대책은 뒷전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7월 17일자 경찰청장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17일자 11면에서 『안전불감 '자전거 사고 특별시' 창원』이라는 제목 및 『안전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까지…』라는 사진 제목으로 강희락 경찰청장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이번 경찰청장의 자전거 순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주행 시 헬멧 착용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적법한 행위였으며, 치안현장 방문 중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이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욕설을 한 모습을 동의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유감표명)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MBC-ESP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ESPN : 「2009프로야구-SK:두산」 제하의 방송 (2009년 8월 22일 16:50)
내 용 : 〈생 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소속 담당PD는 신청인에게 2009년 8월 14일까지 진정 어린 자필 유감서면과 MBC-ESPN 제작 기념품을 발송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양 당사자 모두 본 건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건의 결과가 외부에 공개됐을 시 공개한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공개 1건 당 5,000,000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담양교육청 새 청사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인접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담양군이 먼저 신청인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담양주간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담양주간신문 : 『교육청 진입로 언제 포장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9일자 1면)

내 용 : 담양교육청이 새 청사를 지어 옮겨간 지 7년째 되고 있는 가운데 청사 입구 진입로가 여전히 비포장 도로여서 담양교육의 산실인 교육청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담양군과 교육청은 하루빨리 진입로를 포장, 길 하나 때문에 실추된 교육 담양의 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2003년 담양읍 지침리 성림장목욕탕 앞 구 교육청을 매각하고 담양읍 강쟁리 담양공고 앞 현재의 자리로 신 청사를 지어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말끔히 단장된 새 청사와는 달리 청사 입구 진입로(도시계획도로)는 7년이 넘도록 비포장 도로여서 교육청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략)

이같은 상황이 몇 년째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길 옆 대나무밭을 소유한 땅 주인의 '강짜'와 '비협조' 등으로 지금껏 포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길을 따라 약간의 면적만 확보하면 진입로를 말끔히 포장할 수 있어 땅 주인에게 여러차례 협조를 구했으나 지금까지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 며 "이로 인해 별 수 없이 여지껏 이런 비포장 흙먼지 길을 청사 진입로로 사용중이다"고 하소연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육청 진입로 언제 포장되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6월 29일자 (월요일) 1면에 "교육청 진입로 언제 포장 되나?"라는 제목과 [땅 소유자의 비협조로 토지편입 '난항' 7년째 표류, 郡 "포장공사 곧 시행하겠다"]라는 부제목 하에 현재 담양교육청 입구도로는 날씨에 따라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큰 도로(담양-광주 간 국도)에서 청사까지 약 80M에 이르는 진입도로는 바람 부는 날이면 흙먼지 때문에, 비 오는 날이면 진흙탕으로 범벅이 되는 최악의 길로 변해 먼지와 흙탕물 때문에 마을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 "이 같은 상황이 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길 옆 대나무밭을 소유한 땅 주인의 '강짜'와 '비협조' 등으로 지금껏 포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나무밭의 소유자와 담양군 담당공무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 담양군에서 그 합의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나무밭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포장을 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진입로 포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9일자 1면 "교육청 진입로 언제 포장되나?" 제목 및 "땅 소유자 비협조로 토지편입 '난항'" 부제목의 기사에서 담양-광주 간 국도에서 담양교육청 입구까지 약 80m에 이르는 청사 진입로가 비포장도로인 관계로 비오는 날이면 진흙탕으로 범벅이 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길 옆 대나무밭을 소유한 땅 주인의 '강짜'와 '비협조' 등으로 포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포장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나무밭의 소유자와 담양군 간의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나무밭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세석을 까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진입로 포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담양주간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땅 소유자…)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

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담양주간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4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가보조금을 받아 요양원을 증축공사하면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백련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이 ○ ○)
피신청인 : 광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남일보 : 『무안 백련노인요양원 '뒷돈' 얼룩』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19면)

내　용 :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과정에서 복지 재단 측이 업자와 짜고 인세를 빼돌리는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전남도와 무안군. '백련노인전문요양원' 및 공사업자 등에 따르면 무안군 현경면 응갱리에 위치한 백련노인전문요양원은 사업비 8억2040만 원(국비40%·도비20%·군비20%·자부담10%)을 들여 지난해 10월 증축공사를 시작,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A 종합건설 B 대표는 "백련재단 측이 자기부담금이 없다"며 "공사계약을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해 현찰로 지불했고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연결통로를 만들어주기로 하는 등 이면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B 대표는 이어 "백련재단은 A 종합건설과의 구두 상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서류 상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 2-3차례에 걸쳐 사설 입찰사이트에 공사 사실을 게재하고 신문공고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 대표는 또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백련재단에 이같은 사실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무안군에 진정하게 됐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련재단 측 H 원장은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자금만 집행하면 되지만 이처럼 적법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백련재단과 A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적법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백련요양원 증축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8억2,040만 원이 아닌, 일금 팔억이천이백사만 원정이고, 혈세(국세와 지방세)가 아닌 증축공사에 있어 자부담부분 10%인, 일금 팔천만 원정이며, 현 시점에서는 전남도청과 군청의 지시하에 자부담부분 전액 (유)태진종합건설 측으로 송금한 바, 상황종료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연장을 두 차례 우리 군에 협조부탁하여 2009년 5월 10일까지 준공일을 잡았으나, 폭우로 건물 전체 내에 방수 및 결로현상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태진종합건설 시공처 측에서는 전혀 시공조차 하지 않는 실태입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백련요양원은 증축공사에 있어 5차례 건설업체 신용등급 수정·조치하에 신문, 우리카페, 경쟁입찰사이트에 공개입찰을 하였고, 4차례 유찰결과가 있으며, 마지막 (유)태진종합건설과 상호계약을 맺은 바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7월 29일자 및 30일자 보도내용 가운데 첫째, 신청인의 자기부담금이 없다며 공사계약을 조건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해 현찰로 지불했고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는 등 이면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부분, 둘째, 신청인이 구두계약을 한 상태에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부분, 셋째, 신청인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2번의 공사기간을 넘겼다는 부분과 관련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경우, 무혐의 내지 유죄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되, 피신청인은 무혐의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광남일보 사회면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남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재단측…)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전직 경찰관이었던 신청인이 수사자료 유출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사건에 개입한 바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남도일보 : 『경찰 고소사건 수사서류 유출 '말썽'』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8일자 9면)

내 용 : 경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고소인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목포경찰서와 서류유출 피해자 박모(46) 씨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자신과 채무관계가 있는 정모(62) 씨로부터 사기·횡령·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정씨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항변서류를 담당경찰관인 목포경찰서 수사과 S(55) 경위에게 제출했는데 S경위가 지난 5월 서류 일부를 복사해 정씨에게 전달하는 등 파행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박씨는 "내가 혼자 작성해 나만이 알고 있는 경찰 제출 서류를 상대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황당했으며 사실 확인 결과 담당경찰이 서류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략) 이에 대해 S경위는 "서류를 건네준 것은 잘못됐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실상 동의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전직 경찰관 관련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경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수사관을 교체했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8일자 사회면 "경찰 고소사건 수사서류 유출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목포경찰서 특정 고소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가 서류를 유출한 담당경찰과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친분을 통해 사건배당과 서류유출에 연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담당경찰관과는 한번도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없는 등 해당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남도일보 : 『'목포署 수사서류 유출 말썽'』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3일자 9면)

내 용 : 본지는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고소인 측에 유출시킨 사건(본보 7월 28일자 9면)과 관련, 서류유출 피해자 박모 씨가 "고소인 정씨의 회사 임원으로 있는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가 서류를 유출한 담당 경찰과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건 배당과 서류유출 등이 이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경찰관 김씨는 12일 "고소인 정씨와는 아는 사이일 뿐이며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다"며 "박씨가 고소를 당한 불리한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음해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업체가 여행비를 선 결제하면 통신요금으로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가입을 종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업체와 무관한 사례이다 (정정 및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지음커뮤니케이션(여행클럽)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컨슈머타임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컨슈머타임스 : 『여행클럽 '고객 무료평가단' 유혹의 덫』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0일자 관광・운송면)

내 용 : "고객 무료평가단으로 활동하시면 무료 여행도 보내드리고 휴대폰 사용요금도 제공해드립니다."

여행 체험 무료 평가단에 가입한 뒤 13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무료 회원권 및 무료 통화권을 제공한다. 이같은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기존에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 뒤 소비자에게 카드로 가입비를 내라는 식의 콘도회원권 피해 사례와 유사하며, 무료 회원권과 여행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당해 가입한다.

또 소비자는 업체 측에서 130여만 원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무심코 응한다. 그런 뒤 나중에야 당했다며 '비용을 돌려받을 길이 없느냐'며 잇달아 본보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례1= 직장인 소비자 최모 씨는 지난 2일 퇴근길에 '여행클럽'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행클럽 직원은 "독도지킴이 앙케이트에 참여해 주셔서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무료 회원권과 제주도 무료여행권을 드리는데, 무료로 드리면 불법이다. 때문에 1년에 12만 원, 10년에 138만 원인데 비용을 나중에 핸드폰 요금 비용으로 다시 넣어드린다"며 최씨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날짜, 생일 등을 물어보며 먼저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다. (중략)

#사례2= 소비자 강모 씨는 지난 4월 여행클럽에서 무료평가단을 모집하니 무료 여행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4만 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하면 매월 핸드폰 요금 5만 원을 결제해 주겠으니 가입하라는 홍보전화를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여행클럽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피신청인은 인터넷 관련기사를 통해 여행클럽의 피해사례로 다른 콘도회사와 결부시켜 보도하며, 독도지킴이 앙케이트에 참여하여 당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사례1의 고객의 취소를 신청인이 철회 및 환급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무관한 사례2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청인은 여행사로 등록

된 법인기업이며, 추첨을 통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닌 순수 회원제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사례1의 내용은 기사보도 전 이미 고객의 요청으로 환불 및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2는 피신청인에 확인 결과 신청인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위 보도의 내용 중 사례1의 내용에서 언급된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는 보도 전 환불 및 취소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례2에서 언급된 사례는 가입된 가입자 본인의 사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8월 13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컨슈머타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컨슈머타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내용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행클럽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컨슈머타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내용 중 '여행클럽'을 'A사'로 바꾸어 표기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컨슈머타임스 : 『'고객 무료평가단' 유혹의 덫』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0일자 관광・운송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고리원전 건설로 인한 신청인 마을의 어장소멸 피해보상과 관련된 합의를 대표권이 없는 주민들이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리마을회 (이장 손 ○ ○)
피신청인 : 광역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광역일보 : 『주민들 모르게 합의서 체결』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8일자 1면)
내　　용 : 한국수력발전소가 고리원전건설로 인한 어장소멸피해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도 모르게 어장피해와 관련된 합의서를 대표권이 없는 사람들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한수원은 특히 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차원의 일환으로 수억 원의 주민소득증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특정사업을 이들에다 일임해 대가성 특혜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총 7천278억 원을 들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부지에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10% 내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완공된다.

한수원은 그러나 고리원전과 인접한 신리마을과 피해보상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자 사실상 편법을 동원해 주민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수원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대표권이 없는 사람들과 지난 4월 5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수원은 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총 5억 원의 주민소득사업비를 지원해 이 지역에다 숙소와 식당 등을 건립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합의서 작성에 함

께한 이들 측근에 일임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돼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수원, 고리원전건설 어장소멸 피해조사 주민들 모르게 합의서 체결 소득증대사업 특혜성 시비 논란 사실과 달라(또는 신리마을과 고리본부간 합의서 및 소득증대사업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7월 28일자 1면에 ① "한국수력발전소가 고리원전건설로 인한 어장소멸 피해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도 모르게 어장피해와 관련된 합의서를 대표권이 없는 사람들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수원 고리본부는 원전과 가장 가까운 신리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자지원금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대표들과 지난 4월 6일 합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고리원자력 본부에서는 사업자 지원금을 신리마을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였으며, 신리마을에서도 주민회의를 거쳐 합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마을대표가 설명을 하고 15인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을대표단과 고리본부와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신청 후 보도문

광역일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2면)
내 용 : 광역일보 7월 28일자 1면 머리기사 '한수원, 고리원전건설 어장소멸 피해조사'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보도합니다.

본보는 이 기사에서 신리마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신리마을 주민대표를 비롯해 당시 합의서 체결에 참여했던 신리 어촌계장 등은 모두 마을 정관에 따라 이 마을 대표임이 확인됐고, 이들은 또 그동안 마을 총회와 반상회 등을 통해 합의서 계약체결 내용을 이미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략) □

국가정보원이 원장의 지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 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정보원 (원장 원 세 훈)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국정원, 현 정부 인사실태 내사』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1, 3면)
내 용 : 산하 단체·공공기관 임원 등 4000명 자료 수집

元 원장 지시…S라인·선진연대 출신 분포 조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방위 내사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현 정부의 인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근원적 처방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내사는 청

와대가 임명한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보다 각종 정부 산하 단체, 정부 직속 위원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들은 권력 주변부의 노른자위 자리로,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그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등 여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도 스크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내사 대상자들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주요 경력, 대선 당시 역할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사는 지난 6월 초부터 본격화됐으며 대상자는 300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번 내사 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를 꾸렸다. 국정원은 내사 자료를 현 정부의 인사 실태를 판단하는 주요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2)『요직 독식·편중 시비 가릴 데이터 확보』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3면)

내 용 : 국정원, 현 정부 인사 실태 내사 배경

끊임없는 잡음 차단… MB 국정운영에 힘 보태기

파워게임·조사주체 논란… 물갈이 활용 가능성도

국가정보원이 인사 전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7월 30일자 1·3면에 '국정원, 현 정부 인사실태 내사' 제목으로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진 인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은 현 정부의 산하단체, 정부직속 위원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 전반에 대한 내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같은 내사를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국정원 내에 내사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의 '현 정부 인사실태 내사' 관련 기사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국정원, 인사실태 내사관련 보도 부인

• 내 용 : 본보는 7월 30일자 1, 3면에 게재된 '국정원 현 정부 인사 실태 내사' 제하의 기사에서 익명의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산하단체, 정부 직속위원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 전반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이 없고, 원세훈 국정원장도 이같은 내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내에 내사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1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국민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1일까지 〈국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국정원, 인사 실태 내사 관련 보도 부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는 신청인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하 ○ ○ 외 3인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내일신문 : (1)『돈의문 뉴타운사업 종로구청 감독 소홀』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1면)
내 용 :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뉴타운 지역 내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돈의문 뉴타운 1구역에서는 종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관한 지 4년 밖에 안 된 경찰박물관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일방적 구역 지정과 함께 경찰 측과 협의없이 철거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돈의문 뉴타운 1구역 한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조합장에게 '무자격 조합원 자격 취소와 해를 끼친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조합 관련자 징계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조합원은 "조합 임원 중 한 사람이 3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물주(종로구 교북동) 4명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법과 조합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여러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사람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 건물 조합원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4명 모두 조합원으로 돼 있다"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이 조합원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후략)

(2)『종로 돈의문 '조합원 자격시비' 진흙탕』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4면)
내 용 :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는 관할 종로구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략)

(3)『뉴타운 조합원 자격시비 끊이지 않는 이유 관련 법·시행령·조례 달라』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0일자 4면)
내 용 : 해마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는 조합원 자격 시비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종로 돈의문 조합원 자격시비 진흙탕'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3일자 종합면에 "특히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는 관할 종로구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 임원 중 한 사람이 3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물(종로구 교북동)에 대해 4명 모두 조합원 자격이 있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3일자 "돈의문 뉴타운 사업 종로구청 감독소홀" 제하의 기사에서 돈의문 뉴타운 1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건물주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이 위법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확인 결과, 돈의문 뉴타운(종로구 교북동 50-3)에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4인은 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4인의 조합원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의거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4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9월 4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내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돈의문 뉴타운 사업 종로구청 감독소홀" 및 "종로 돈의문 '조합원 자격시비' 진흙탕")의 하단에 각각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조합원 자격여부가 재판결과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될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추후보도하기로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사전에 보도내용을 협의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일신문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초등학교장인 신청인이 만점을 받은 성적우수자들에게 포상으로 현금을 지급해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액에 불과하여 '현금포상'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되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7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인천경향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인천경향신문 : 『교장이 시험 만점자에 현금 포상』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4일자 1면)
내 용 :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적우수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데다 성적만을 기준으로 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인천 서구 경서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방학식에서 이 학교 조○○ 교장은 중간·기말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 일으켜 세운 뒤 전교생들에게 손뼉을 치게 했다.

조 교장의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학식을 마친 뒤 '만점 아이들'을 교장실로 따로 불러 상장이 아닌 현금을 포상했다.

중간·기말 고사 중 하나라도 만점을 받은 학생에겐 현금 3000원, 둘 다 만점을 받은 학생에겐 5000원을 건넸다. 이날 조 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학생은 2학년 10명, 6학년 1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중간·기말고사 모두 만점을 받아 5000원씩 받았다.

이 같은 '시험 만점 시 현금지급'은 최근 학업 성취도평가를 두고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력우수상'을 주면서 불거진 위화감 조성·차별논란에 이은 것이어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교장이 시험 만점자에 현금 포상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4일자 사회면에 "교장이 시험 만점자에 현금 포상" 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서구 경서초등학교 교장이 성적 우수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어린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적만을 기준으로 차별을 했으며 더 나아가 성적 만점 아이들을 교장실로 따로 불러 현금 포상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성적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 사설학원보다 더 심한 것이라는 등의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등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서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취지는 만점을 받은 측면보다 실수 하나 하지 않고 백점을 받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자 한 것이며 아이들에게 준 금액도 교장의 사비로 3천 원과 5천 원에 불과하여 다른 어린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했다는 내용과 현금 포상이라는 표현은 왜곡, 과장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교장이 시험 만점자에 현금 포상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7월 24일자 사회면에 "교장이 시험 만점자에 현금 포상"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서구 경서초등학교 교장이 성적 우수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어린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적만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경서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취지는 만점을 받은 측면보다 실수 하나 하지 않고 백점을 받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자 한 것이며 아이들에게 준 금액도 교장의 사비로 지급하였고, 다른 어린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19일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인성교육 도외시' 위화감 등 조성으로 물의)로,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향닷컴(www.kyunghyang.com) 메인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3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신청인 학교 직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학교명을 적시하여 관련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학교와는 무관하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 구로중학교 (교장 최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신의 직장인데… 비정규직은 신이 버린 떨거지』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3일자)

내　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한양대 경영학과 임상훈 교수 사회로 2시간 동안 좌담회를 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겪은 어려움과 해고의 두려움을 토로했다. (중략)

▷사회 : 그래도 비공공부문의 비정규직보다는 낫지 않으냐는 말이 있습니다.

▷김○○(인천공항) :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정규직인지 간접고용인지 개념도 없고 그냥 공항에서 일한다고들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공항을 벗어나면 써 먹을 데가 없어요. 공항공사와 아웃소싱 회사 간 계약이 3년마다 갱신되는데 그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죠. 임금수준이나 생활여건도 열악한 편입니다. 민간기관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의 질 면에서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김○○(중학교 행정보조) : "과거에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계약서를 쓰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 오면 교감이나 행정담당자가 은근히 압박해요. 전 교장 시절에는 '커피가 먹고 싶다, 담배 사오라, 가까이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하는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중략)

▷김○○(중학교 행정보조) :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면 나오긴 하지만 책임성 있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 하면 받아 적어만 갑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사 측 이야기만 듣지 말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의 직장인데…비정규직은 신이 버린 떨거지"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에 "신의 직장인데…비정규직은 신이 버린 떨거지"란 제목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고 인격적인 부분을 훼손시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의 중학교 행정보조의 김○○ 언급 내용은 대다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보편적인 현실에 대한 발언을 요약한 것이며, 기사에 실린 특정 소속 기관과는 무관함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하고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경향신문(www.khan.co.kr)에서 김○○의 발언 내용 중 '전직 교장시절에는'이라는 언급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밝혀져 이를 정정하고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5월 13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한 좌담회 기사에서 서울 지역 ㄱ중학교 행정보조원 김○○ 씨의 언급은 일반적인 비정규직 현실에 대한 포괄적 발언이며, 소속 학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7일까지 〈경향신문〉 2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경향닷컴에 게재된 본 건 조정대상기사 중 '서울 구로중학교'로 게재된 참석자 김○○의 소속을 '서울 ○○중학교'로 변경하고, 위 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KBS-1, 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2 참조)

보도내용

KBS-1TV : (1) 「뉴스라인」 프로그램 『페놀박피의사 2명, 과실치상 혐의 기소』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3일 23:00)
내 용 : ▷앵커 :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기처럼 뽀얀 피부를 갖기를 원하실텐데요,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페놀이 들어간 약물로 피부박피술을 시술했다가 환자들에게 화상을 입힌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의 의학 정보 프로그램. 모든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준다며 특정 병원의 시술법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 멘트 : "심부피부재생술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 기미와 잡티는 싹 사라지고 주름은 놀라울 정도로 팽팽하게 펴진다."
평소 눈밑 기미 때문에 고민하던 송모 씨도 3년 전 이 광고를 보고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송모 씨 (피해자) : "비싸지만 단 한번 시술로 기미가 백 프로 없어지고 리프팅 효과도 있고 아기 피부처럼 되고 십 년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후략)

KBS-2TV : (2) 「8뉴스타임」 프로그램 『[취재현장] 페놀 박피 시술로 얼굴에 화상』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3일 20:00, 24:00)
내 용 : 〈위 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3 참조)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페놀성분' 박피술 피해실태…"피부 녹았다"』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3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314의 보도내용 참조〉

(2) 「뉴스24」 프로그램 『아기 피부처럼 된다는 말에 '페놀 박피술'』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4일 00:00)
내 용 : 〈2009서울조정3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4 참조)

보도내용

ｍｂｎ : 「뉴스」 프로그램 『아기 피부 되려다… '페놀 박피' 의사 2명 기소』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3일 08:00)
내 용 : 〈2009서울조정3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5 참조)

보도내용

ＹＴＮ : 「5시뉴스」 프로그램 『'페놀 박피성형' 부작용…전문의 2명 기소』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3일 17:00)
내 용 : 〈2009서울조정3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광명시 뉴타운사업계획상 광명재래시장이 존치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장조합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조합장 안 ○ ○)
피신청인 : 오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오늘신문 : 『하계 WORK-SHOP개최 광명뉴타운연합회·위원장 등 200여명 참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0일자 11면)
내 용 : 광명시 (가칭)광명뉴타운연합위원회는 지난 6일 '2009년도 광명지구 뉴타운연합회 하계WORK-SHOP' 행사를 2박 3일 간 동해시 묵호 바닷가에서 성황리 가졌다. (중략)

최연합위원장은 또한 "뉴타운사업은 지역민들의 수익사업으로 지역민이 소유한 재산가치 비율로 주민들에게 환원,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돼야한다"며 "시가 이주대책과 기반시설, 사업설명회 등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명재래시장은 존치지구로 돼있는데도 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지 의문점이 너무 많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시의원은 의회에서,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몇몇 정치인들이 정치적 야욕에 사로잡혀 시장상인들을 선동하는 풍토는 사라져야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명재래시장 존치 발언"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2009년 8월 10일자 11면 『하계 WORK-SHOP개최, 광명뉴타운연합회・위원장 등 200여명 참여』제하의 기사에서 광명뉴타운연합회가 하계WORK-SHOP을 개최하면서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광명재래시장이 존치지구로 돼 있는데도 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지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명시가 광명재래시장을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광명재래시장이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되어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 광명뉴타운연합회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광명재래시장 존치 발언"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5일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하계WORK-SHOP개최, 광명뉴타운연합회・위원장 등 200여명 참여)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늘신문 인터넷판(www.tonews.or.kr) 종합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7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정정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늘신문 : 『정정보도문 "광명재래시장 존치 발언"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광명시 뉴타운사업계획상 광명재래시장이 존치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장조합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조합장 안 ○ ○)
피신청인 : 인터넷 오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터넷 오늘신문 : 『하계 WORK-SHOP개최 광명뉴타운 연합회・위원장 등 200여명 참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0일자 인천면)
내 용 : 〈2009경기조정3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기조정3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경기조정3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오늘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4일자 인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백화점 직원인 신청인들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Ⅰ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포경"과 수술한 "물건" 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사진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9월 4일까지 각 2백만 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4,000,000원 지급〉 □

백화점 직원인 신청인들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다 음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다 음 : 『"포경"과 수술한 "물건" 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사진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백화점 직원인 신청인들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Ⅲ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드림위즈 : 『"포경"과 수술한 "물건" 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사진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백화점 직원인 신청인들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Ⅳ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야 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야 후 : 『"포경"과 수술한 "물건" 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사진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백화점 직원인 신청인들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Ⅴ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파 란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파 란 : 『"포경"과 수술한 "물건" 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뉴스면)
내 용 : 〈사진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신청인이 동료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투표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자신의 의석이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 상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민주 공세 강화…한나라 비켜가기』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2면)
내 용 : 지지율 격차감소 반영 … 동영상·문건 공개하며 상대 압박

지난달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시작된 여야 대치정국이 열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면공세를, 한나라당은 비켜가기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상승, 한나라당은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손익계산 결과로 해석된다.

◇전병헌 "공개한 동영상은 빙산의 일각" = 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2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담긴 동영상 7건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의원은 대표적인 경우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동영상을 내놨다. 당시 시계는 오후 3시5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전자투표시스템에 재석버튼을 누른 것으로 기록된 시간인 오후 3시49분57초와 동일한 시간대다. 의장석에 있던 시간 누르는 동영상과 한 여성의원이 나경원 의원석에서 전자투표 단말기를 만지거나 한 남성의원이 자기 앞과 뒷좌석의 단말기를 건드리는 장면 등도 함께 공개했다. 전의원은 "오늘 공개한 동영상에 나타난 대리투표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신문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나라당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공개 사진 설명'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3일자 정치면(2면)에 "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전병원 의원 등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증거라면서 신상진 의원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는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신상진 의원이 있던 자리는 본인의 의석이고,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4면)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일자 정치면(2면)에 '민주 공세 강화…한나라 비켜가기'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증거라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공개된 동영상에 있던 자리가 본인의 의석이고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신청인이 동료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투표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자신의 의석이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 상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미디어법 대치… 野 "또 증거" vs 與 "선거용"』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2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3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신청인이 동료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투표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자신의 의석이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 상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기일보 : 『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공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공개' 관련 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8월 3일자 3면에 "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본인이 있던 자리는 자신의 의석이고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종합면(3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사진 설명 기사 본문(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채증반…)과 같게 하고, 내용은 통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의 대리투표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결과로써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추후에 보도하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백화점 직원인 신청인들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Ⅵ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외 1인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탐스런 햇고구마‥"미녀들이 손에 쥐고 물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종합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목사를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목양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7.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목양신문 : 『젊은 기자 모욕에 권면 위해 찾아갔으나 실랑이 중 전치 3주 상해입어』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8일자 11면)
내 용 : 사실상 한 교단의 테두리 안에서 윗사람이자 주의 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너진 현실이 개탄스럽고 서글펐지만 본인의 부덕한 탓으로 돌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국민일보의 백기자가 오히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목사도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국민일보의 백기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31일자 국민일보 사회면에 "왜 우리 기사는 안쓰나, 목사가 본보 기자 폭행"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 본 교단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정읍S교회 정모 목사가 국민일보 보도에 불만을 품고 백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교단 기사는 신문에 쓰지 않느냐?"며 폭언을 퍼붓고, 국민일보 사무실로 찾아가 백기자를 회사 옆 건물로 유인해 때린 후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젊은 기자 모욕에 권면 위해 찾아 갔으나 실랑이 중 전치 3주 상해입어' 바로잡습니다 (또는 국민일보 백기자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8일자 오피니언면에 "젊은 기자 모욕에 권면 위해 찾아 갔으나 실랑이 중 전치 3주 상해입어"라는 제목으로 초점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백기자가 정기조 목사에게 반말과 "목사면 다야 이 개새~"라는 욕설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목사가 백기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백기자는 정목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목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2009서울조정3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목양신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89-1
발행인 박 한 근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목양신문〉 오피니언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가장 상단의 "사실상 한 교단의 테두리 안에서…중략…고소하였습니다" 부분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5일까지 〈목양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7.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9년 8월 8일자 11면 「젊은 기자 모욕에 권면 위해 찾아갔으나 실랑이 중 전치 3주 상해입어」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민일보 백기자는 정기조 목사에게 욕설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정목사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목양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5일자 오피니언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국정원장이 주재하여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출석하는 4대 기관장 회의가 존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정보원 (원장 원 세 훈)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저널 : 『'무소불위' 권력 국정원의 '컴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12~19면)

내 용 : '권력기관'은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해방 직후 혼란기인 이승만 정권에서는 경찰의 기세가 등등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군과 함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이 쇠퇴해지고 그 공백을 검찰이 메웠다. 국가외환위기(IMF) 이후에는 국세청의 위력이 대단해졌다. 흔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이라 부른다. '권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은 의도적으로 권력기관 힘 빼기에 나섰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세월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기관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를 떠받치며 '충성경쟁'을 불사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8월 11일자(1033호) 「'무소불위' 권력 국정원의 '컴백'」제목의 커버 스토리 기사로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이 출석하는 4대 기관장

회의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4개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장이 별도로 만난 일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 박멸을 위한 총체적 지휘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관련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8월 11일자 〈'무소불위' 권력 국정원의 '컴백'〉 제목의 기사로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은 이와 같은 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취재원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본지는 현재 이에 관한 그밖에 근거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데 대하여 관계기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시사저널〉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일보 : 『"왜 우리 기사는 안쓰나" 목사가 본보 기자 폭행』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1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국민일보 종교국 백○○(33) 기자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정읍 S교회 정모(51)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목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보도에 불만을 품고 백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교단 기사는 신문에 쓰지 않느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사무실에 찾아갈 테니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라"며 "회장과 사장에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목사는 1시간 후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 찾아가 조용하게 대화를 하자며 백기자를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 자신의 차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백기자의 얼굴과 배를 10여차례 때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왜 우리 기사는 안쓰나 목사가 본보

기자 폭행"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자 사회면에 "왜 우리 기사는 안쓰나 목사가 본보 기자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정읍 S교회 정모(51)목사가 자신이 속한 교단 기사에 불만을 갖고 백○○ 기자(33)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본보 기사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또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것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7월 31일자 6면 「"왜 우리 기사는 안쓰나" 목사가 본보 기자 폭행」, 8월 1일자 6면 「기협 "국민일보 기자 폭행은 중대 범죄"」, 8월 7일자 26면 「한기총 엄신형 대표회장 '목사의 폭력' 피해 본보 백상현 기자 격려」제하의 각 기사를 통해 정읍 S교회 정모 목사가 교단 관련 보도에 불만을 갖고 국민일보 기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목사는 "국민일보의 보도 방향에 불만이 있었던 때문은 아니고 취재기자와의 개인적 의견차이로 분쟁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2일까지 국민일보 6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국민일보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 및 소속임직원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쿠키뉴스 : 『본보 기자 목사에 폭행 당해』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 00:01)

내 용 : 〈2009서울조정3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2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쿠키뉴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 15: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뉴스천지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스천지 : 『현직 목사, 국민일보 종교국 기자 폭행』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일자 기획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2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천지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8일자 종교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뉴스캔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스캔 : 『기하성 양평동측 정모 목사 기자 폭행 충격』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프리뉴스뱅크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2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캔 : 『정목사, "국민일보 기자 폭행한 적 없어"주장』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8일자 종교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뉴스파워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뉴스파워 : 『목사가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뉴스파워 : 『국민일보 기자 폭행 목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7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국민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현직 목사, 국민일보 기자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1일자 신문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2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국민일보 기자 폭행 목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8일자 미디어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뷰스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뷰스앤뉴스 : 『개신교 목사, 〈국민일보〉기자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2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뷰스앤뉴스 : 『〈반론보도문〉국민일보 기자 폭행 목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8일자 종교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공사 감리단장인 신청인이 언론의 취재를 거부해 부실공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남도일보 : 『'화순 하니움 체육관' 부실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4일자 1면)
내 용 :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최첨단 시공 공법으로 건립 중인 전남 화순군 복합실내문화체육관(하니움 체육관) 공사가 부실 의혹을 낳고 있다.

372억 원대의 공사 중 현재 90%이상 진행 중인 '세계에서 하나 뿐'이라는 하니움 체육관 지하층에 물이 들어차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남도일보가 13일 오전 추가 취재를 위해 하니움 체육관을 방문, 취재요청을 하자 체육관 감리단 관계자 3명은 갑자기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감리단장은 "지하 현장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굳이 취재를 원하면 정식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의 허가를 얻어와야 취재에 응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현장에 책임자로 파견 중인 군청 정모 담당 역시 "현장은 감리단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해 줄 수가 없다"고 공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화순하니움체육관' 부실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보도면에 "'화순하니움체육관' 부실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지하기계실바닥에 물차고 벽면에 물기 및 감리

단·군, 사실 확인 취재 원천봉쇄 의구심 더 키워라는 부활자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하기계실은 물이 차 있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시운전 중에 있었음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이 취재를 원천 봉쇄하며 국무총리 허가를 얻어와야 취재에 응할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보도는 국가기관, 지자체등이 발주하는 공사로 계약금 10억 원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은 부패방지종합대책 시달(국무총리지시 제1999-19호)에 의한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 3항 사전통보에 의한 현장 방문일시, 방문근거 및 목적, 방문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점검할 사항 등을 방문 3일전에 통보하고 방문요청할 것을 요구함으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4일자 1면 "'화순 하니움 체육관' 부실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전남 화순군 복합실내문화체육관(하니움 체육관)의 지하층 기계실 바닥에 물이 차 있는 등 체육관 공사 과정에 부실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물이 차 있었다고 지적한 장소는 지하2층 기계실이 아니라 집수정이 있는 지하층 '피트층'이었던 것이었으며, 물이 꽉 들어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약간 고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감리단…)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공사 감리단장인 신청인이 언론의 취재를 거부해 부실공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화순미래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화순미래뉴스 : 『화순 하니움체육관, 부실공사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3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3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화순미래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나로호에 장착된 로켓 엔진이 당초 러시아가 연소 시험한 엔진과 다른 것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으나 같은 엔진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 주 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나로호, 엔진이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1면)

내 용 : 정부는 러시아가 나로호와 동일한 로켓을 이용, 최종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나로호 개발 참여자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로호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핵심 관계자 A씨는 10일 "러시아가 현지에서 시험하고 있는 로켓 엔진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개발한 RD191 엔진"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로호의 엔진을 제작하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 등의 발표 자료에 나로호 RD151엔진의 시험 일정은 아예 없다는 점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발표 자료에는 오로지 R191엔진 일정만 나와 있을 뿐이다. RD191은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차세대 위성 발사체로 개발 중인 앙가라 로켓 1단(하단)의 엔진이다.

러시아의 차세대 우주발사체인 앙가라(Angara)호에 탑재되는 엔진이 RD191이다. 앙가라는 2011년 발사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최신형 엔진 RD191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RD151을 나로호 하단(1단)의 엔진으로 탑재해 우리에게 넘겨줬다. RD151은 RD191에 비해 추진력이 20% 정도 떨어진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1일 "나로호, 엔진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러시아가 연소 시험한 엔진은 RD151이 아닌 RD191로 보이며, 러시아가 RD191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인 RD151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라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 사실 확인 결과, 7월 30일 러 측에서 수행한 연소시험은 RD151 엔진을 장착한 발사체 1단에 대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인도된 나로호 1단과 동일한 것이며, RD151은 나로호 비행 프로파일에 맞도록 튜닝된 RD191의 파생형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항우연은 나로호와 관련한 거짓발표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노조가 사측 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대자보를 통해 비방해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경 신)
피신청인 : 쉬핑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쉬핑투데이 : 『KMI, 국민과 고통분담 차원서 개선과 개혁해야』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0일자 8면)

내 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금년 5월 12일 노조에 대해 2009년 11월 11일자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통보한다는 극약처방에 나서, 관련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사측 "기존 단체협약 해지통보", 노조 "원장 퇴진 성명서 발표"

이에 대해 KMI 노동조합지부(지부장 김경신)는 지난 5월 14일 상급 노조인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KMI 강종희 원장은 노사관계를 악용하지 말고 자진 퇴진하라! 무능, 독선, 무책임,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원장이 노사관계 정상화의 약속을 저버리고 파행으로 몰아간 데 강력히 항의하며, 퇴진을 촉구한다. 강종희 원장은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독선적이고 비윤리적인 연구원 운영으로 KMI 구성원의 원성을 사왔다. 이제 본인의 독선경영과 자질미달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것을 감추고 최후의 버티기 위한 방법으로 "단체협약 해지"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KMI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할 연구원장이 오히려 개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말로 비난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중략)

신임 강종희 원장에 대해 폭언과 욕설, 원장 비하로 발단

문제의 발단은 2008년 12월 1일 노사 상견례 및 제1차 대각선 교섭시 일부 조합 교섭위원이 강종희 원장에 대해 상식 밖의 폭언을 자행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원장을 비하하면서 부터이다. 노조의 요구에 대한 사측의 이의 제기를 권위주의, 강압, 무능으로 매도하는 등 교섭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유도했고, 그 것이 KMI 원장이 단체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년 6월 10일자 특집/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勞使문제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 기사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9일자 기획특집란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勞使 문제 더 이상 이래선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노사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노조는 2008년 9월 2일 강종희 원장 취임사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 연구원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비방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비방 내지 음해 행위를 계속해왔으며, 특히 2009년 1월 13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청사 각층에 대자보를 게재, 원장에 대한 허위 과장된 비방과 음해를 해 왔다는 것이다."는 내용과 관련해 노조에서 비방과 음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건전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반면에 공문서에서 조차 욕설과 폭언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노조는 지난 5월 21일에도 노조게시판에 인사 총무팀장을 '주구'라고 비하하는 등 막가파식 극단적 폭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노조는 공문서에 욕설과 폭언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실 확인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실례로 지난 2002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기본급 누진제가 2007년 임금협상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당시 노조 간부진 대부분이 기본급 및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렸고, 2008년 상해물류연구센터 근무자 선발 및 2008년 해외업무연수자 선발에 노조의 운영을 책임진 전 현직 노조 간부진이 대거 지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노조 간부진 일부와 다수의 비조합원이 기본급 및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사실 확인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6,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동조합
대표자 김 경 신
피신청인 : 사 영 진 (쉬핑투데이 발행인)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1-3
YMCA 본관 4층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쉬핑투데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은 1.항과 같이 〈별지〉 보도문을 게재하게 되면 곧바로 24시간 동안 〈별지〉 보도문 제목을 쉬핑투데이 홈페이지 기획특집란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쉬핑투데이〉 8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勞使 문제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4. 피신청인은 위 1.항 내지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 내지 3.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별 지〉

• 제 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노동조합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특집/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勞使 문제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KMI 노조가 공문서에서 욕설과 폭언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KMI 노조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KMI 노조원 중 연간 연봉(작년기준) 1억 원 이상 직원이 상당수이고 비노조원을 포함하면 약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1억 원 이상 직원은 총 22명에 불과하다. 강종희 원장 취임사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원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조합원 개인의견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었고, 2009년 1월, 5월자 대자보의 내용 역시 원장에 대한 허위 과장된 비방과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었다. 그리고 기본급 누진제의 폐지, 인센티브 지급 방법 변경의 요구, 성과급 차등 폭 축소 요구 등의 노조활동은 노조 간부진의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다. 노조가 2009년 5월 6일자 교섭에 불참한 것은 강원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제3자인 노무사는 교섭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한 애초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직원의 봉급이 원장보다 많아지는 이유는 원장은 능률성 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KMI 4대 창의혁신과제 및 5대 경영목표 실천 TFT 결과 중 단체교섭 논의사항인 임금 등의 부분을 사측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나, 사측은 제도개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쉬핑투데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노동조합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불법성형의 부작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얼굴이 사라진 여인들』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8일자 23:15)
내 용 : 〈생 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9월 30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
• 내 용 : 본방송 지난 2009년 7월 8일자 「뉴스추적」프로그램 중 "얼굴이 사라진 여인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보도는 불법성형수술의 폐해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의 보도였으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방영되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사진이 향후 재방송되거나 일반에 판매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신청인이 발행하는 장애인 대상 신문이 금산군으로부터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금산장애인복지신문 (대표 최 ○ ○)
피신청인 : 금산저널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금산저널 : 『장애인 이름 빌려 예산 편법 운영, 이래

도 되나』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5일자 1면)

내 용 : 장애인을 위한 소식지 명목 예산이 지역신문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어 이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 복지신문에게 금산군은 2009년 년간 2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2009년 2월 30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월 20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중략)

장애인 소식지가 보도 내용도 수요 대상도 아닌 대중들을 위해 금산읍 상가, 가판 대에 배포되고 특히 읍·면사무소 민원청구에 버젓이 쌓아놓아 취지 정체성 조차도 불분명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애인 이름 빌려 예산 편법 운영 이래도 되나"(관련기사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5일자 금산저널 1면에, 장애인 이름 빌려 예산 편법 운영 이래도 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신문을 장애인을 위한 소식지가 지역신문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소식지가 보도내용도 수요대상도 아닌 대중을 위해 일반인에게 배포 되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를 하였으며 광고도 일반광고는 할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장애인 복지신문은 금산군 조례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교부받아 신문제작비로 매월 편집, 출력, 인쇄비로 사용하였고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보고하였음으로 예산집행을 편법으로 운영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신문은 소식지가 아니고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지역주간신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신문 배포 및 일반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한 바 특수주간신문이라도 일반광고 게재가 가능하며 일반을 대상으로 배포 할 수 있으므로 금산저널에 보도된 사실이 잘못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이 다단계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변경하였고, 과거에도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자본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여 논란이 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9.
처리결과 : 조정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공정위 간부, 피라미드육성안 멋대로 법 고쳐』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3일 21:00)

내 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간부가 방문 판매법을 개정하면서 다단계 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 보고도 없이 끼워 넣었습니다. 이 간부는 전에도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입니다. 중개 다단계를 통해 줄 수 있는 후원수당 한도를 수수료의 3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수수료'란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단계 회사가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판매원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사도록 중개만 하더라도 판매액의 35%, 말하자면 백만 원어치를 사면 35만 원 한도에서 수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거액의 후원수당을 내건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

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조항은 다단계 업체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공청회나 부처 협의는 물론 상부보고도 없이 공정위 이모 국장이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최고위간부 :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 안 했다는 건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업자들끼리 얽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 공론화시켜서…"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입니다.

문제의 이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공정위 간부, 피라미드육성안 멋대로 법 고쳐"라는 제목으로 ① 공정위 이모 국장이 상부보고도 없이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내용을 변경하고 ② 위 공정위 간부는 과거에도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으며 ③ 방문판매법의 개정시 중개 다단계로 회사가 많은 수당을 줄 수 있어 거액의 후원수당을 내건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④ 이 조항은 다단계업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이며 ⑤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⑥ 공정위 이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은 보고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관계 국장의 개인적인 지시에 의해 변경된 것이 아니고 ② 공정위 간부의 과거 전력에 관해서도 일부 언론에 유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모두 정정보도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밝혀졌으며 ③ 다단계 업체들이 중개판매 관련하여 규정 변경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④ 법무부의 지적 이전에도 공정위에서는 내부결제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으며 ⑤ 또한 당시 공정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으로 이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발생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상품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 되고, 다단계를 통한 고가의 물품 판매도 제한되는 등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나 후원수당에 대한 과장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미 별도의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후원수당지급한도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다단계판매가 불법 피라미드화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홍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MBC-TV 〈뉴스데스크〉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2. 피신청인은 MBC 홈페이지(www.mbc.co.kr)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VOD(다시보기) 및

스크립트를 삭제하고,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도문을 MBC 홈페이지(www.mbc.co.kr)에 게시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7.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8월 3일자 「뉴스데스크」 "멋대로 법 고쳐" 제하의 보도에서 이모 국장이 상부보고도 없이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변경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내부보고와 사무처의 결재 및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이루어졌고, 이 간부가 2003년 당시 공제조합 자본금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다는 보도는 혐의가 없어 해당 언론사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인천 문화예술관의 기술 스태프들이 공연대관자들에게 찬조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6인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인일보 : 『인천 종합문예회관 공연대관자들은 봉』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2일자 19면)

내 용 : 인천에서 활동중인 무용수 A씨는 지난 7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틀간 공연을 했다. 당시 그는 공연을 위해 소공연장 대관료와 물품 사용료 외에 인천종합문화예술관 기술스태프에게 400만 원을 줘야 했다.

A씨는 조명과 무대 세팅을 위한 하루와 이틀간의 공연 등 모두 3일간의 대관료와 물품 사용료 250만 원을 회관측에 냈으며, 이와 별도로 조명 기술 스태프에게 수 백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대 공연은 의상비가 가장 많이 든다. 출연자가 많으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팸플릿 제작 등 소소하게 쓰이는 돈도 많다. (중략)

공연에 참여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일부 기술 스태프는 노골적으로 찬조금을 요구한다고 한다. 1회 공연시 회관의 조명스태프에게 150만~200만 원의 찬조금을 내는 것이 관례라고 할 정도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술스태프가 노골적으로 찬조금요구, 울며겨자먹기 수 백만 원 상납은 잘못된 기사로'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2일자 19면에 "인천종합문예회관… 공연 대관자들은 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술스태프에게 400만 원을 줘야 했다' 하였고, '1회 공연시 회관의 조명스태프에게 150~200만 원의 찬조금 지급이 관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일 공연 대관자였던 (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으로부터 보도내용과 달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술스태프들이 찬조금 4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찬조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공연시마다 조명스태프에게 150~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8일자 21면)
내 용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경인일보 2009년 8월 12일자 19면 '인천 종합문예회관… 공연대관자들은 봉' 기사 중 "A씨가 공연을 위해 소공연장 대관료와 물품 사용료 외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술 스태프에게 400만 원을 줘야 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기사 하단의 "1회 공연시 회관의 조명 스태프에게 150만~200만 원의 찬조금을 내는 것이 관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당시 공연을 한 A씨는 회관의 기술 스태프가 아닌 외부 스태프에게 400만 원을 줬으며,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50만~200만 원의 경우도 회관 기술 스태프에게 지급해야 할 규정은 없으며, 외부 스태프에게 들어간 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이 신축중인 아파트를 흉가로 묘사해 분양 또는 매매를 앞두고 무섭고 음침한 이미지가 조성되어 피해를 입었다 (유감표명)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태성개발건설 (대표이사 전 ○ ○)
피신청인 : 대구KBS-1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구KBS-1TV : 「행복발견 오늘」 프로그램 『흉가체험』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20일 17:40)
내 용 : 〈내용요약〉
- 아파트공사현장 전경
- 건물주인 제보
- 공사현장 소장 2명 사망, 실종 1명
- 공사현장입구의 철문 공개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2009년 7월 20일자 17시 40분 생방송 「행복발견 오늘」 흉가체험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위 프로그램을 방송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기로 한다.
• 신청인은 앞으로 민·형사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관사진입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장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매일 : 『공무원노조, 청주 이미지 또 먹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3면)
내 용 : 공무원노조가 또 한 번 청주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2004년 이른바 '개 파문'으로 청주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더니 이번엔, '청주시장 관사 습격사건'을 벌여 또 한 번 '전국 뉴스'에 올랐다.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청정의 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공무원노조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조합원 10여명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남상우 청주시장 관사를 항의 방문,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관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이들을 막던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였으며 관사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불상사가 벌어졌다.

청주시는 이들 노조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공공기물 파손 및 야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지 8월 17일 기사 '공무원노조, 청주 이미지 또 먹칠' 기사를 정정보도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7일자 3면에 '공무원노조, 청주 이미지 또 먹칠'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의 8월 13일 청주시장 관사 방문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당사자인 전구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취재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관사습격사건' '전국적 망신'등의 표현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의 사회정치적 위상에 심대한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 바 지면을 통해 사과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조합원이 시장 관사 방문에 이르기까지는 청주시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7월 29일 본교섭을 앞두고 노조측 교섭대표의 출장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로 교섭결렬에 따른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사정에 대한 소개 없이 조합원의 관사방문만을 청주시측의 취재 내용만으로 다룬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략)

합의사항

• 제 목 :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7일자 3면 『공무원노조, 청주 이미지 또 먹칠』 제하의 기사에서 전공노 충북본부가 청주시와의 단체교섭 6차 실무교섭이 결렬되자 남상우 청주시장 관사를 찾아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관사진입을 시도하는 등 '관사습격' 사건을 벌여 전국적 망신을 당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본부는 청주시장 관사를 찾은 것은 남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관사앞 1인 시위를 위한 사전답사 차원이었으며, 관사를 습격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관사진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본지는 이건과 관련해 사전에 공무원 노조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매일 2009년 9월 5일까지 2면 우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관련….)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2004년 …)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매일 :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관사진입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장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전공노 '막가파' 닮아가나』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1면)
내 용 : 〈2009충북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2009충북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과를 비롯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수용 불가 □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4대 기관장 회의에 법무부장관이 참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처 인 :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저널 : 『'무소불위' 권력 국정원의 '컴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1일자 12~1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시사저널 8월 11일자(1033호) 12~19쪽 「'무소불위' 권력 국정원의 '컴백'」 제하 커버스토리 기사 중 '4대 기관장 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는…공석중인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김경한 장관은 이런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라거나, "김경한 장관과 원세훈 원장이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시사저널은 관련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잘못된 주장 및 보도를 인용, 기사화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8월 11일자 〈'무소불위' 권력 국

정원의 '컴백'〉 제목의 기사로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정원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은 이와 같은 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취재원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본지는 현재 이에 관한 그밖에 근거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기사라 보도된 데 대하여 관계기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시사저널〉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목욕탕을 개조한 '감금방'에 시설장애인들을 감금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평화의 집 (대표 서 ○ ○)
피신청인 : 함께걸음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함께걸음 : 『장애인 가두고, 수급비 횡령해 땅 사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인천 강화군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각종 인권침해와 횡령으로 인한 파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서 실시한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중략)

이중 ㅍ시설은 시설장애인을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방과 베란다 등에서 재우고 있었으며, 생활인들끼리 '싸운다'는 이유로 지하실 방에 가둬놓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애인 가두고, 수급비 횡령해 땅 사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7일자 뉴스면 초기화면에 "장애인 가두고, 수급비 횡령해 땅 사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라는 제목으로 평화의 집이 시설장애인을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방과 베란다 등에서 재우고 있었으며, 생활인들끼리 '싸운다'는 이유로 지하실 방에 가둬놓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시설은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베란다 등에서 시설장애인을 재우지 않

았으며, 생활인들끼리 '싸운다'는 이유로 지하실 방에 가둬놓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그 어떤 이유로도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함께걸음 : 『장애인 가두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 기사에 대한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본지 7월 27일자 '장애인 가두고, 수급비 횡령해 땅 사고...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 기사와 관련해 ㅍ 시설 측에서 반론문을 보내왔습니다. 〈함께걸음〉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ㅍ시설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반론문 전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편집자〉

본지는 지난 7월 27일자로 게재한 "장애인 가두고, 수급비 횡령해 땅 사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 의혹 또 터져"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시 연수구 ㅍ 시설은 장애인들을 '감금방'으로 의심되는 방과 베란다 등에서 재우고, '싸운다'는 이유로 지하실 방에 가둬놓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ㅍ 시설은 시설장의 조카이자 지적장애 1급인 이모 씨가 가출벽이 심하고, 동숙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때문에 낮에는 시설장이 직접 돌봤으나 밤에는 부득이하게 지하 1층을 개조하여 숙박하도록 한 것이지 가둬둔 것이 아니며, 외부에서 문을 열수 있도록 문고리를 돌려놓아 '감금방' 의심된다는 곳은 샤워실로 시설장이 1살 때 입양한 아들이자 뇌병변 1급인 이모 군이 자주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해를 해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해 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ㅍ 시설은 인권침해와 감금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으며, 해당 보도로 인해 장애인들을 위탁한 보호자들이 시설 폐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나 보호자들의 신뢰와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보살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

화순 하니움 체육관의 기계실에 물이 차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화순군 (군수 전 완 준)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남도일보 : 『'화순 하니움 체육관' 부실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4일자 1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화순 하니움체육관' 부실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남도일보는 지난 8월 14일자 보도 1면에 톱기사로 "'화순 하니움체육관' 부실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지하 기계실 바닥에 물차고 벽면에 물기 및 감리단·군, 사실 확인 취재 원천봉쇄 의구심 더 키워 라는 부활자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하2층 기계실은 물이 차 있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시운전 중에 있었음으로 보도내용이 잘못되었음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화순군이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오인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음으로 바로잡습니다. □

화순 하니움 체육관의 기계실에 물이 차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화순군 (군수 전 완 준)
피신청인 : 화순미래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화순미래뉴스 : 『화순 하니움체육관 부실공사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3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3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화순미래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약회사 직원인 신청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데일리팜 :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법 더 지능화』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9일자 뉴스면)
내 용 :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 20여일을 맞고 있지만 이를 피해가기 위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은 더욱 음성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A제약사의 경우, 회사 내 컴퓨터나 장부상 리베이트 지급 내역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존 이중장부를 넘어 '삼중장부'까지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A제약사가 K병원 의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병원의 EDI 청구 데이터를 전달받아 이중장부 기록 후 리베이트가 지급됐지만, 지금은 영업사원이 기존 월별 처방 데이터로 평균 리베이트 지급 장부를 작성·보관 후 재무팀과 분기별로 삼중장부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전에 미리 6개월~1년 분량의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제약사들이 비일비재한 시점에 당장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자체가 어려워져 이 같은 현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토로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원 □

신청인이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리투표를 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화 수 (국회의원)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미디어법 대치… 野 "또 증거" VS 與 "선거용"』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2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32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나라당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일 저녁 9시와 8월 3일 아침 뉴스프로그램에서 "미디어법 대치… 野 '또 증거' vs 與 '선거용'"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이화수 의원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화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화수 의원이 대리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신청인이 선거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철새'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영 상 (선거입후보자)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정 대표 불출마 '무주공산'』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4일자 3면)

내 용 :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불출마 선언 이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떠오른 무주·진안·장수·임실을 누가 차지할 지 관심이다. 그동안 이곳은 정대표의 아성이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정도가 거론됐지만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공백 상태가 됐다. 슬슬 고개를 드는 현지 분위기를 취재했다. (중략)

△누가 나서나=박영은 (주)성해자원대표(57), 양영두 민주당 중앙위원(62), 황영상 (주)스파이로 대표(59)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략)

현대건설에서 퇴사한 뒤 미국 펀드매니저 활동에 이어 최근에는 영화제작투자사인 (주)스파이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평가는 곱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철새'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황영상 씨 기사 관련' 바로잡습니다. (또는 '무진장임실 차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4일자 화요일 정치면에 '무주공산' 무진장임실 차기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청인을 "지역평가는 곱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철새'라는 꼬

리표가 붙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황영상 씨는 2003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현지에 살면서 사무소를 2년간 운영하며 활동했고 전북도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을 위해 일했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미리 보는 지선·총선' 보도 관련 황영상 씨 반론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14일자 정치면 『정대표 불출마 '무주공산'』 제목의 기사에서, 무주·진안·장수·임실의 차기 국회의원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황영상 (주)스파이로 대표에 대해 "지역평가는 곱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철새'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황 대표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한 후 2년간 현지에 거주하면서, 장수읍과 무주읍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며 활동했고, 민주당 전북도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였으며, 민주당 이외의 정당에 공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바, 본인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철새'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지역평가 역시 나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새전북신문 2009년 8월 31일자 2면 좌측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신청인의 사진을 보도내용과 함께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의 일부 조합원이 노조원 자격이 없는데도 사무실을 무단사용하고 있으며 노조를 원격조종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장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봉사·일탈…공무원 노조의 두 모습』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1면)
내　　용 : (전략)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본분을 잊은 듯 단체교섭에 불만을 갖고 야간에 시장관사에 난입을 시도하는 등 상식에 어긋난 일탈행동을 서슴지 않아 비난을 자처했다.

또 일부 노조원은 공무원 근무규칙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직, 노조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조를 원격조정하거나 사무실을 무단사용해도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좋은 게 좋다'며 묵인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지 8월 20일자 1면에 보도된 '봉사·일탈…공무원 노조의 두모습'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0일자 1면에 "봉

사·일탈…공무원 노조의 두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비교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일부 조합원의 청주시장 관사방문에 대해 '일탈행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조직 전체의 사회정치적 위상과 명예를 심대하게 폄하하고 훼손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 등 충북 내 10개 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조합원 5천여명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각 자치단체 지부별로 최근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등 시민, 군민의 민생을 위한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 수용 불가 □

신청인이 유사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와 관련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관련이 없다 Ⅰ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인 규 (시의원)
피신청인 : 나주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나주신문 : 『N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적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7면)

내 용 : 기존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해 왔던 나주시내 한 주유소가 불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통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략)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N주유소는 시내권에서 다른 주유소보다 L당 30~40원 정도 기름값이 저렴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가짜석유 판매 소문이 퍼지자 운전자들이 항의성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나주시의회 강인규 의장이 이 주유소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주유소보다 높은 신뢰를 갖고 이용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N주유소를 자주 이용했던 정모 씨는 "다른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싸서 많이 이용했다"면서 "강의장이 운전자들을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췄구나 생각했는데 속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 씨는 "강의장을 주유소에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강의장이 직접 판매하는 줄 알았고, 의장이 하는 주유소라 더욱 믿고 기름을 넣었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강의장은 "정씨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없었다"면서 "전세 계약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정씨가 운영해야 되지만 이후로는 직접 양질의 휘발유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N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적발'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자 사회면에 '나주N주유소 가짜석유 판매적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가짜석유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현 건물주인 강인규 나주시의회의장의 실명을 5차례나 기재해 독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강의장은 유사석유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유사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와 관련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관련이 없다 Ⅱ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인 규 (시의원)
피신청인 : 나주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나주투데이 : 『나주 N주유소 유사석유 적발, 고발 조치』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자 7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3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서원학원 인수의사를 철회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하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양일보 : 『서원학원 인수 '철회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9일자 2면)

내 용 : 현대백화점 그룹이 70여억 원의 채권까지 확보한 서원학원의 인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원학원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8일 서원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백화점 그룹은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 측에 대해 학원 정상화 방안 등을 주제로 TV공개토론을 제의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6월 29일자 2면 '현대백, 서원학원 인수 철회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백화점 측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서원학원 인수 계획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박인목 이사장이 현대백화점의 학원정상화 방안 등에 관한 TV토론 제의를 거부한 배경과 입장, 그리고 경영권 협상제의 과정과 의미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러나 ▶ 재단 측의 현대백화점 측의 인수에 대한 강한 거부 사유 ▶ TV토론 불발에 대한 의미 부여 등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학내외의 대체적인 시각임을 들어 '재단 측의 입장'만을 강조했습니다.

즉 박 전 이사장의 경영부실과 도덕성 문제 등을 부각시킨 것은 학내 구성원임에도 마치 현대백화점이 이를 부각시켰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측 인수를 거부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고, TV공개토론이 불발됨으로써 서원학원 인수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대세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런 공개토론 제의가 마치 인수 포기를 위한 명분찾기 수순이며 무산될 것을 알고도 제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매우 우세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 측은 인수의사 철회에 관한 동양일보의 어떤 취재에도 응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사 내용 중 '인수 철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이에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9일자 2면『서원학원 인수 '철회하나'』제하의 기사에서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이 현대백화점의 학원정상화 방안 등에 관한 TV토론 제의를 거부한 배경과 입장, 그리고 경영권 협상제의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7월 6일자 2면『서원학원 사태 이달 결판』제하의 기사에서 서원학원의 최대채권자인 현대백화점 그룹은 어떤 식으로든 서원학원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시도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재단 측의 현대백화점 측 인수에 대한 강한 거부 사유, TV토론 불발에 대한 의미 부여 등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재단 측의 주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7월 6일자 보도에 대해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 보도가 모호한 표현으로 지역사회에 그룹의 인수 의지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인수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도 인수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추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9년 9월 5일까지 종합면 하단에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정정보도문)는 동양일보 종합면에 게재되는 통상적인 제목의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서원학원 인수의사를 철회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하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양일보 :『서원학원 사태 이달 결판』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2면)

내 용 : 〈2009충북조정16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충북조정16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충북조정1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기적의 도서관 前 관장인 신청인이 순천시의회 주관 토론회를 방해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허 ○ ○
피신청인 : 순천시민의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순천시민의신문 : (1) 『기적의 도서관 前 관장 의문의 행보』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2일자 4면)

내 용 : 오는 21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허○○ 전 기적의도서관 관장이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을 임의로 소집해 그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기적의 도서관장을 지냈던 허○○ 씨는 지난 7일 조곡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작은도서관 협의회장을 통해 순천시 작은 도서관 운영자 36명을 소집 요청했다. 그러나 허○○ 전 관장이 이날 자리에서 토론회 자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사실상 토론회를 방해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참석한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순천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은 현 국회의원과 너무 친하고 토론회 발제자로 나오는 본지 대표는 현 시장과 너무 상극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토론회 자체가 가지는 의미 보다는 스스로 정치적 해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후략)

(2) 『노 시장 공공증에 시달리나?』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2일자 2면)

내 용 : 공한증(恐韓症)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증(恐公症)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공청회를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나도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선4기 노관규 순천시장이 공청회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적의도서관 前 관장 의문의 행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2일자 종합면에 "기적의 도서관 前 관장 의문의 행보"라는 제목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임의소집, 토론회 방해성 정치 발언 파문" 이란 부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허○○ 기적의도서관 前 관장은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오해의 여지는 있으나 토론회를 방해하기 위한 임의소집 아니었고 토론회 방해성 정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허○○ 기적의도서관 前 관장은 8월 7일 오전에 진행된 간담회는 20년 이상 독서 및 도서관 운동

을 한 선배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작은도서관 및 운영자의 역할' 등에 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몇몇 운영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해 보라고 하여 준비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후략)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2일자 종합면 "기적의 도서관 前 관장 의문의 행보" 제목의 기사에서 전 기적의 도서관장 허○○ 씨가 순천시의회 주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을 임의로 소집해 그 배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씨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을 임의소집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작은 도서관 및 운영자 역할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몇몇 운영자들이 요청함에 따라 준비된 자리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5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순천 시민의신문 종합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작은도서관…)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민의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보건복지부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방침을 언급하면서 쌀떡볶이가 대표적인 고열량 식품이라고 보도했으나 쌀떡볶이는 광고제한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이사장 신 ○ ○)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세계화 떡볶이의 '굴욕'』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0일자 2면)
내 용 :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오후 5~8시)방침이 굳혀짐에 따라 한식 세계화 대표 식품인 '떡볶이'에 비상이 걸렸다.

떡볶이는 쌀떡으로 만들어 대표적인 고열량식품이므로 한국의 비만 식품 퇴출 정책에 따르면 퇴출되어야 하는 식품인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이미 '떡볶이 세계인 보급'을 추진 중에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떡볶이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0일 종합면(2면)에 "세계화 떡볶이의 '굴욕' 고열량·저영양 비만식품 인식 … 퇴출위기"라는 제목으로 쌀로 만든 떡볶이를 고열량식품, 비만식품으로 낙인 찍어 퇴출1호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쌀 떡볶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5호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떡볶이 연구소가 제시한 떡볶이 제조업체들의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1회 제공량에 대한 고열량 기준에 떡볶이는 고열량 식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를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만식품 퇴출방침

에 떡볶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2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20일 2면에 "세계화 떡볶이의 '굴욕'" 제목의 기사에서 쌀 떡볶이가 고열량, 비만식품으로 낙인찍혀 퇴출1호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쌀 떡볶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5호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고열량, 비만식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방침을 언급하면서 쌀떡볶이가 대표적인 고열량 식품이라고 보도했으나 쌀떡볶이는 광고제한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이사장 신 ○ ○)
피신청인 :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 『세계화 떡볶이의 '굴욕'?… 비만식품광고 제한으로』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0일자 생활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 『떡볶이는 고열량·비만식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2일자 생활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42의 신청후 보도문 참조〉 □

서울경찰청이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 통제와 관련, '경찰 버스로 분향소를 둘러싸 아늑하다는 분도 있다'는 등 막말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의 판단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을 발언한 것 뿐이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아늑한 분향소'라는 서울경찰청장의 강변』 제하의 사설 (2009년 5월 27일자 31

면)

내 용 : "경찰 버스가 분향소 주변을 막아주니까 오히려 아늑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경찰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통제하고 있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나. 겉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말하나 실제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열기에 놀라 이를 어떻게든 식혀 보겠다는 이 정권의 내심이 묻어난다. 전 국민적 분노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이 연출하는 또 한편의 소극(笑劇)이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지난 23일 시민들이 맨처음 설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만든 공식분향소와는 달리 서울에서는 지금도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다. 그런데 경찰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첫날부터 수십대의 경찰 버스를 동원해 겹겹이 인공 장벽을 쌓는 식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5월 27일자 『'아늑한 분향소'라는 서울경찰청장의 강변』 정정보도

• 내 용 : 본 경향신문은, 지난 5월 27일 31면에 '아늑한 분향소'라는 서울경찰청장의 강변 이라는 제목으로 망발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09년 5월 25일 11:00경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청장의 주관적 판단을 담은 사견이 아닌 관할경찰서로부터 전해들은 "차벽 설치로 분향소 분위기가 아늑하다는 분도 있다"라는 내용을 기자간담회에서 전언한 것으로 본사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5월 27일자 31면 『'아늑한 분향소'라는 서울경찰청장의 강변』 제하의 사설에서 "경찰 버스가 분향소 주변을 막아주니까 오히려 아늑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발언이 서울청장의 주관적 판단을 담은 사견이 아니라 관할경찰서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전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9일까지 〈경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경찰청이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 통제와 관련, '경찰 버스로 분향소를 둘러싸 아늑하다는 분도 있다'는 등 막말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의 판단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을 발언한 것 뿐이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프레시안 : 『광장을 틀어막는 게 '화합'인가?』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4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5년 26일자 『광장을 틀어막는 게 '화합'인가?』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프레시안은, 지난 5년 26월 사회면에 광장을 틀어막는 게 '화합'인가? 라는 제목으로 서울경찰청장이 막말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09년 5월 25일 11:00경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장의 주관적 판단을 담은 사견이 아닌 관할경찰서로부터 전해들은 "차벽 설치로 분향소 분위기가 아늑하다는 분도 있다"라는 내용을 기자간담회에서 전언한 것으로 본사에서 보도한 '막말까지 했다' 등과 같은 내용은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보도로 서울경찰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친 점과 서울경찰 이미지가 훼손된 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이 교회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을 절감해주겠다며 부당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 승 덕 (국회의원)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신문 : 『고승덕 의원 교회부지 송사 휘말린 내막』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스타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한 교회의 부지 매각과 관련된 송사에 휘말려 주목받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인 화광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장문의 진정서를 통해 고의원이 송사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비도덕적인 처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회부지 송사에 고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화광교회 측은 고의원이 교회부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 절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임료를 받았으며, 자신들을 속이고 교회에서 설립한 재단 대표이사가 된 후 이사진까지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의원 측은 "문제의 부동산은 재단 소유임이 분명하고 이사진 교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화광교회 측의 악질적인 음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체 이들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얽히고 설킨 송사와 고의원이 여기에 휘말린 내막에 대해 알아봤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승덕 의원 교회 부지 송사 관련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8월 30일자 사회면에 "고승덕 의원 교회 부지 송사 휘말린 내막"이란 제목으로 화광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고승덕 의원이 불법행위와 비도덕적인 처신을 했다고 주

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화광교회 C목사는 원래 복지재단 소유인 문제의 부동산을 횡령하여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있고, C목사가 기소된 것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C목사 부부 및 공범 K목사를 복지재단 부동산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복지재단 측은 횡령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략)

또한 고의원은 교회 측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C목사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현금보관증은 고의원 측에 확인한 결과 사건 부동산에 실버타운을 건립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가 사업이 무산되어 무효가 된 문서임이 밝혀졌고, C목사가 지급했다는 1억 원은 복지재단 통장에 정식 입금되어 고의원이 교회 사건을 맡았다거나 수임료를 받았다는 C목사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일요신문은 2009년 8월 30일자(제902호) '고승덕 의원 교회부지 송사에 휘말린 내막' 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K목사가 '복지재단이 아닌 화광교회의 명의를 빌려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K목사는 명의신탁 당시 "사건 부동산이 복지재단 소유이고 언제라도 복지재단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복지재단 측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의원 측에 확인한 결과, 수임료논란의 근거가 된 현금보관증은 사건 부동산에 신탁등기를 하고 실버타운을 건립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무효가 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화광교회 C목사는 복지재단 소유 부동산을 횡령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고발에 따라 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범 K장로는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복지재단 측은 화광교회를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9년 9월 27일자(906호) 〈일요신문〉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및 크기는 15포인트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7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2일자 13면)
내 용 :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황영희(가명·41세)씨는 이달 초 아이를 서울 목동의 국제중 대비 전문학원인 ㅅ학원에 등록시키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학원 쪽에서 '학원 실적 활용 동의서'라는 서류를 주며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정정보도문 (또는 학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국제중 전문 학원에서 학생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에 관한 2명의 학부모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수강중인 모든 학부모님의 의사를 대변하는 보도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학원은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라는 문서도 없을뿐더러 동의서에 확인하지 않으면 수강이 안된다는 사항이 없음을 정정보도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8월 22일치 13면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사와 관련해, ㅅ학원은 입학원서 작성 당시 개인 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등록 필수 조건은 아니며 학원비가 오른 것은 지난 해 수업시간이 주당 1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1일까지 (토, 일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제목은 통상적인 '알려왔습니다' 제목 양식의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인터넷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터넷 한겨레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4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구 글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구 글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구 글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버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4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버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트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5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다 음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다 음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5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다 음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드림위즈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5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드림위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야 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야 후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야 후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가 학원 등록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Ⅸ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국제학원 (대표 박 ○ ○)
피신청인 : 파 란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 란 :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3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5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 란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위원회 소속 간부가 성추행을 했으며, 소속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8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홍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양일보 : 『서원학원 청문, 임원승인 취소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2면)

내 용 : 학교법인 서원학원 임원들의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교육과학기술부 청문이 17일 실시되면서 학내 · 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범대위 소속 간부 남학생의 '강제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해 교과부 청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략)

교과부의 서원학원 청문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서원대 학내에서는 재단 퇴출 운동을 주도한 범대위 소속 학생 간부의 '성추행 의혹' 뒷소문이 잇따르며 어수선한 상태다. 서원대 홈페이지에는 '범대위 교수들이 중심이 돼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 '전 총학생회 출신의 이 간부 남학생이 현재의 총학생회를 조종한다' 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서원학원 구성원들은 이번 간부학생 파문이 교과부 청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원학원 청문, 임원승인 취소되나'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8월 17일자 종합면에 "서원학원 청문, 임원승인 취소되나"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에서 "특히 최근 범대위 소속 간부 남학생의 '강제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해 교과부 청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나아가 "서원대 홈페이지에는 '범대위 교수들이 중심이 돼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 '전 총학생회 출신의 이 간부 남학생이 현재의 총학생회를 조종한다' 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여 강제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 사건이 확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산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그렇지 않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손해배상을 취하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요구 수용 불가 □

신청인 위원회 관계자가 서원학원사태가 재단의 경영문제 때문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홍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양일보 : 『서원학원 '청문 남발' 불만 고조』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2면)
내 용 : 재단 임원들의 승인취소 여부를 놓고 교과부가 서원학원에 실시하는 청문이 '반복과 연기'를 거듭하고 있어 재단 측은 물론 구성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중략)

이날 범대위 한 관계자도 "재단의 경영문제와 학원불안 지속 등으로 구성원들이 법인 퇴출 운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청문은 임원취임 승인취소라는 중대사안이 직결된 행정절차다. 교과부가 유사한 사안을 놓고 한두 번도 아니고 잇따라 청문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원학원 '청문 남발' 불만 고조 - 9개월 동안 4차례 단행, 선규명 후처분 절차 필요"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8월 21일자 종합면에 "서원학원 '청문 남발' 불만 고조 - 9개월 동안 4차례 단행, 선규명 후처분 절차 필요"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에서 "재단 임원들의 승인취소 여부를 놓고 교과부가 서원학원에 실시하는 청문이 '반복과 연기'를 거듭하고 있어 재단 측은 물론 구성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하여 재단 측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도 교과부의 청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왜곡보도하였고, 나아가 『이날 범대위 한 관계자도 "재단의 경영문제와 학원불안 지속 등으로 구성원들이 법인 퇴출 운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청문은 임원취임 승인취소라는 중대사안이 직결된 행정절차다. 교과부가 유사한 사안을 놓고 한두 번도 아니고 잇따라 청문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범대위 관계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하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손배사건과 연계해 과도한 요구를 하므로 수용 불가 □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에 교사로 지원한 신청인의 면접과정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부산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도심 첫 영어마을』 제하의 보도 (2009년 6월 1일 06:00)
내 용 : 영남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어마을, '부산 글로벌빌리지'가 4년여의 공사를 끝내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는 영어마을, 부산 글로벌빌리집니다. 만 8천여 제곱미터의 터에 건축비만 320억 원이 들어간 4층, 5층짜리 건물이 모두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체험 학습동입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와 항공기, 그리고 쇼핑센터와 버스정류장... 모두 50가지가 넘는 영어 체험시설이 들어서

고 있습니다.

▷김○○/부산글로벌빌리지 본부장 : "학교에서 배운 학습을 다시 한 번 여기서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영어로 할 수 있게끔 만든것"

교사 채용도 한창입니다. 앞으로 글로벌빌리지에는 내국인과 원어민 교사 50여 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교사 지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신청인 위원회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는 후원자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홍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양일보 : 『"범대위 업무방해 중단 요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6일자 2면)

내 용 : 서원대 안교모(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 소속 교수들이 25일 재단 반대세력인 범대위 측에 대해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략)

범대위의 운영재원 문제와 관련 "고액 변호사로 소송걸기, 중앙 일간지 거액광고, 대기업과 합의서 작성,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 등 귀족적 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대주는 후원자가 과연 누군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범대위 업무방해 중단 촉구-서원대 안교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8월 26일자 종합면에 "범대위 업무방해 중단 촉구-서원대 안교모"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에서 "범대위의 운영재원 문제와 관련 "고액 변호사로 소송걸기, 중앙 일간지 거액광고, 대기업과 합의서 작성,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 등 귀족적 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대주는 후원자가 과연 누군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라고 하여 안교모의 성명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성명서 내용을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보도하였으나 그렇지 않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2009충북조정19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8일자 A13면)
내 용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국민의례 거부가 발단이 돼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례를 거부한 연구원에 대한 계약 해지가 최근 결성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노조와 경영진 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입사한 지 2년된 H박사가 국민의례와 박기성 원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국내 최초로 결성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노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략)

H박사는 경영진의 강요와 설득으로 지난 3일 처음으로 경영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국민의례는 거부했다. 다른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때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할 때 H박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것. 이날 경영설명회에서는 다른 박사노조원 10여명도 H박사를 지지하는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노동연구원 노사갈등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9년 8월 18일자 A13면에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례 거부가 노동연구원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고, "다른 박사노조원 10여명도 H박사를 지지하는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라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조가 조직적으로 국민의례를 거부하였으며, "좌파적 시각", "이념적 갈등", "밥그릇 싸움", "균형잡힌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등 한국노동연구원이 편향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갈등은 연구 자율성과 중립성 보장에 관한 갈등이며, 연구위원 노조가 조직적으로 국민의례를 거부한 바 없고,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 2007년 연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식 평가에서 1, 2위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양산하여 포상을 받는 등 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달 18일 A13면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기사 관련, 'H박사는 경영진의 강요와 설득으로 8월부터 경영설명회에 참석했고, H박사의 국민의례 거부에 대해 다른 박사 노조원 10여명도 이를 지지하는 표시로 국민의례 거부에 동참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지난 2월부터 경영설명회에 참석해왔으며 국민의례에 참여하지 않은 박사 노조원은 3~4명인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조는 "연구원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은 국민의례 거부가 아니라 연구의 중립성 보장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한국경제 A13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한국경제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전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2일자 A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경닷컴 :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5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경닷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구 글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구 글 :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7
대표 이 원 진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를 제공한 언론사(2009서울조정357 피신청인 한경닷컴)가 〈별지〉 기재 보도문을 웹상에 전송한 시점부터 구글코리아(http://www.google.co.kr/)의 뉴스페이지에서 〈별지〉 기재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 갈등'

• 내 용 : 본지 8월 18일자 A13면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 갈등' 제하 기사와 관련, 'H박사는 경영진의 강요와 설득으로 8월부터 경영설명회에 참석했고 H박사의 국민의례 거부에 대해 다른 박사노조원 10여명도 이를 지지하는 표시로 국민의례 거부에 동참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지난 2월부터 경영설명회에 참석해 왔으며 국민의례에 참여하지 않은 박사노조원은 3~4명'으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조는 "연구원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은 국민의례 거부가 아니라 연구원 중립성 보장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구 글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 … 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7 참조)

보도내용

네이버 : 『'국민의례 거부' …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 17:50)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네이트 :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 17:50)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58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네이트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취하(중재신청-2009서울중재58 참조)

보도내용

드림위즈 :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 17:50)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야 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조정결정(동의)

보도내용

야 후 :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 17:50)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58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야 후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 …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속보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덕 순)
피신청인 : 파 란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9 참조)

보도내용

파 란 : 『'국민의례 거부' …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 17:50)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의 철거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인 제1기동단장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상 용 외 4인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盧분향소 철거,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2일자 10면)
내 용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다음날인 지난 5월 30일 경찰의 서울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의 강제철거를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한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당시 분향소 철거는 '현장 지휘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21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당시 '지휘통신 무선망 교신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보고를 받고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략)

경찰청은 이날 강제철거가 문제가 되자 지난달 4일 자체 감사를 통해 "서울청 황덕규 1기동단장의 독자적인 현장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발표했지만, 이날 공개된 교신내용에 따르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많다. 철거가 끝날 즈음인 5시 34분

무전기록에는 황단장이 "알겠습니다. 대한문 쪽에 텐트 전부 점거한 상황이에요. 텐트 전부 다 걷어내고 대한문쪽 완전 확보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황단장이 '윗선'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신내용에는 "전화좀 해봐요" "경비부장이 전화할게요" 등 유선을 통한 의사소통의 흔적도 나타난다. 유의원은 "용산 참사 때 무선 내용이 공개돼서 그런지 경찰이 예민한 지시 내용은 무선이 아닌 유선전화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분향소 철거는 지난 감사 결과 발표대로 서울청 1기동단장의 독자적인 현장판단에 따른 것이 맞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盧 분향소 철거,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했다』 제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2일자 사회면(10면)에 『盧 분향소 철거,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했다』 제목으로 '서울경찰청장이 폐쇄회로 CCTV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 보고받고 지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자체감사를 통해 "서울청 황덕규 1기동단장의 독자적인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발표했지만 이날 공개된 교신내용에 따르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旣 언론에 '당시 상황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1기동단장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주상용 서울청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9년 7월 22일자 10면 보도를 통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시민분향소 철거를 지휘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25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양식대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경향닷컴(www.khan.co.kr)〉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지난 대선 당시 MB캠프에 수억 원을 지원하였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불명예 사퇴 배후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기사화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서울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간다" 발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0일자 8,9면)

내 용 : 청와대 8월말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에 입성하기위한 대선 공신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MB 캠프와 인수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뉴라이트 전국연합 출신의 K씨의 경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행'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담당 사정팀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뉴라이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인사는 지난 대선 당시 'MB 캠프에 수 억 원의 돈을 지원했다', '내가 아는 A씨가 정부 고위직에 갈 예정이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다'는 각종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상한 채권·채무관계에 그가 소유한 빌딩관련 구설수까지 얽혀 해당단체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K씨는 "나를 모함하려는 세력의 근거 없는 악소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략)

뉴라이트 일각에서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P씨의 '불명예' 사퇴 배경에 K씨가 배후로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K씨에 대해 관련 사정기관들이 예의주시하게 만들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간다 발언, 청와대 발칵 뒤집은 K씨 구설수'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0일자 정치면 8면 내지 9면에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간다, 청와대 발칵 뒤집은 K씨 구설수"라는 제목으로, '전 뉴라이트연합인사의 말에 따르면, 전국연합 출신의 K씨가 지난 대선 당시 MB캠프에 수 억 원의 돈을 지원하고 국민성공센터의 자문위원으로 2개월 상근한 공로로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가게 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런데 K씨는 수상한 채권 채무관계, 소유 호텔의 부도, 뉴라이트 전국연합출신 전 행정관 P씨의 불명예 사퇴 배후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며 심지어 K씨 언행이 문제되어 뉴라이트 전국연합 측에서 그 사람을 제명시키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전국연합의 8월 13일자 논평에 다르면 'K씨가 뉴라이트안보연합 창립 당시 적극적을 활동하고 안보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낸 것과 정권교체를 위해 부단히 애써 온 인사로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러한 자를 제명할 이유도 없는데다가, K씨는 안보연합의 공동대표로(별개의 단체이므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그를 제명할만한 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K씨 본인 및 당초 제보자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K씨와 관련한 'MB 캠프에 수 억 원의 돈을 지원했다', '수상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청와대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뉴라이트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 P씨의 불명예 사퇴 배후이다'라는 본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K씨 스스로 '내가 아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아니면 국정원장으로 간다', '난 청와대 모 수석으로 간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K씨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청와대가 발칵 뒤집히고, 청와대 담당 사정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K씨의 청와대 비서관 행 소문은 자가발전 아닌가 싶다'는 취지의 본지 기사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간다 발언, 청와대 발칵 뒤집은 K씨 구설수'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정치면에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청와대 발칵 뒤집은 K씨 구설수)과 동일한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일요서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서울 : 『바로잡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간다 발언, 청와대 발칵 뒤집은 K씨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정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주민의 재산권을 존중해 재건축사업을 승인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신청인 지자체는 재개발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과천시 (시장 여 인 국)
피신청인 : 과천문화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과천문화신문 : (1) 『단독주택 재건축 '서울은 OK'』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6일자 2면)

내 용 : (전략) 서울 단독주택은 재건축으로... 과천은?

올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된 재건축 사업지 총 17곳 중 90%에 달하는 15곳이 단독주택 지역이다. 오히려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2개 단지에 불과하다. 단독주택지역 재건축의 기세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내 단독주택지역 소유자들은 서울시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과천시가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렬히 저항하고 있다. 별양·부림·문원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추진연합회 강은주 연합회장은 "서울시나 강남구도 주민의 재산권을 존중하여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과천시도 강남구와 비견되는 높은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 왜 과천시는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가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과천시의 단독주택지역 재개발 추진을 맹렬히 비난했다. (후략)

(2) 『과천시 재개발 주장근거 '도로율 20%'는 효력無』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1일자 1면)

내 용 :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이후 별양·부림·문원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추진연합회(회장 서영석, 이하 연합회)는 과천시가 관련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해 재건축을 원하는 단독주택소유자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려 한다며 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과천시 재개발 주장근거 '도로율 20%'는 효력無"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9년 8월 6일자 2면 "단독주택 재건축 서울은 OK", 2009년 8월 21일자 1면 "과천시 재개발 주장근거 '도로율 20%'는 효력無" 각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도 순수한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과 다세대, 연립 등 혼재지역을 재건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기준이 도로율 20% 이상 만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도한 사항은 확인 결과 부지면적, 노후도, 호수규모, 도로율 등 종합적 판단하에 분류됨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도로율 20% 이상 확보 기준은 근거법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0조 1항 별표1 규정이 2005년 5월 18일 폐지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과천시는 별양, 부

림, 문원2단지를 주택재개발로 계획하고 있어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과천시가 법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보도한 사실은 확인 결과, 도로율 20% 확보 기준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2009년 8월 13일 개정되었으나, 개정전인 2009년 8월 12일 까지는 유효한 것이며, 아울러 개정지침의 적용은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부칙에 근거하여 보면 기 공람공고('09. 3. 31~'09. 4. 27)를 완료한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도로율 20%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기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8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청인 노조가 노조원들의 동의없이 부가세 감면분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사유착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0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정 ○ ○)
피신청인 : 대전MBC-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전MBC-TV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택시업계의 눈 먼 돈, 1조원의 행방은?』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31일자 22:50)

내 용 :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입니다. 정치권에서 쓰이는 은어 중에 배달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부정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자가 중간에서 일부 빼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택시업계에도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택시기사들에게 나눠주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택시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택시기사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나래이터 : 택시기사 명○○씨에 출근길…. 그의 발걸음이 무겁다. 명씨는 요즘 회사에 가도 할 일이 없다. 회사로부터 승무대기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사에 출근은 하되 택시영업은 막아놓은것이다. 징계기간은 한 달 기본급 6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출근은 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명령서, 그러나 명씨는 징계사유를 알고 있다.

▷명○○ : 경감 받은 세액이 세부서에서 그 내역하고 쓴 돈 내역하고 그게 맞아야 되는데 쓴거하고 받은 것하고 맞아서 시청에 보고해야 돼요. 딱 맞아야하는데 그 부분이 거의 한 1,000만 원가량이 누락 돼 있어요. 분기마다.

▷나래이터 : 명씨는 최근 노조위원장선거에서 사 측에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문제를 거론했다.

▷명○○ : 선거 공약에 네가 말했습니다. 누락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하면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래이터 : 택시부가세 경감제도란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사가 내야할 부가세 50%를 깎아주는 대신 그 돈을 기사에게 돌려주게 한 것이다. 그러나 명씨는 회사가 그 돈을 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8년도 1,2분기만 2,000만 원이 넘는 돈이다. 그러나 사 측은 명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돌아온 건 승무대기발령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택시업계의 눈먼 돈, 1조원의 행방은?]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31일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에서 "택시업계의 눈먼 돈, 1조원의 행방은?" 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천안, 아산지역의 택시업계 및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택시부가세 경감세, 일명 부가세 환급분에 대하여 취재를 통해 문제점 등을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영의 내용 중 회사로부터 승무정지의 징계를 당한 근로자와 당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와의 인터뷰내용에서 회사의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마치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회사의 징계사실을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뷰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배제되었음을 밝혀드리고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는 회사의 징계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택시부가세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프로그램 지난 7월 31일자 "택시업계의 눈먼돈, 1조원의 행방은?" 보도와 관련해 전국택시노조 충남지부는 택시노조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부가세 감면금 지급이 상향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대전MBC「시사플러스」프로그램 말미에 2009년 9월 25일까지 보도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택시부가세 감면제도 관련 반론보도)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MBC-TV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택시부가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25일자 23: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폭행사건 경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Ⅰ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경기방송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방송 : 「경기방송 뉴스」 프로그램 『'연인' 사이 20대 여성 2명 서로 주먹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20일 07:38)

내 용 : 과거 애인사이였던 20대 여성 2명이 말다툼 끝에 주먹까지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5살 서모 여성과 23살 임모 여성은 어제 저녁 8시쯤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임씨의 집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서씨와 임씨는 과거 연인사이로 임씨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끝에 서로 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폭행사건 경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1.
처리결과 : 취 하

네이트 : 『'연인' 사이 20대 여성 2명 서로 주먹 휘둘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경기조정4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10,000,000원 □

폭행사건 경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Ⅲ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다 음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1.
처리결과 : 취 하

다 음 : 『'연인' 사이 20대 여성 2명 서로 주먹 휘둘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경기조정4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10,000,000원 □

폭행사건 경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Ⅳ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1.
처리결과 : 취 하

드림위즈 : 『'연인' 사이 20대 여성 2명 서로 주먹 휘둘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경기조정4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10,000,000원 □

폭행사건 경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Ⅴ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파 란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31.
처리결과 : 취 하

파 란 : 『'연인' 사이 20대 여성 2명 서로 주먹 휘둘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경기조정44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이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중부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부매일 : 『택시공제조합 간부 공금 '내 맘대로'』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개인택시공제조합 자금 13억 5천만 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무이자로 대출해줘 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간부 최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일자 사회면에 "택시공제조합 간부 공금 '내 맘대로'" 이라는 제목으로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충북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 최모 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개인택시공제조합 충북지부장 최모 씨는 위 보도 및 게시내용 전부 2009년 7월 13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2일자 사회면 『택시공제조합 간부 공금 '내맘대로'』 제하의 기사에서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충북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 최모 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최모 씨는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일체의 혐의에 대해 7월 13일자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 보도와 관련해 최 지부장은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마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보도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적절치 못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9년 9월 10일까지 2면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정정보도문)는 중부매일 2면에 게재되는 통상적인 정정보도문(또는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2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충북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북일보 : 『공제조합비 횡령 지부장 영장』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충북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충북조정2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북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충청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충청일보 : 『충북 개인택시운송조합 공금횡령 이사장 구속영장』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충북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충청일보 :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공금횡령 혐의 이사장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7일자 사회면)
내 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무단으로 개인택시공제조합이 필요 자금을 대출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사를 받아 온 충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최모

씨(57)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본보 4월 2일자 4면 보도〉

청주지검은 이밖에 최 씨에 대해 조사 중이던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과 운송조합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지난 2006년 12월쯤 현 우암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청주시 장성동 3600여㎡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다음해 6월 11일 4억 원, 지난해 2~5월 5차례에 걸쳐 9억5,000만 원 등 모두 13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줘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

신청인이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충청매일 : 『13억 비리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 영장』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충북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충청매일 :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 업무상 배임·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23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특진을 보장하는 등 실적 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서울경찰 교통단속 실적경쟁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7일자 10면)
내 용 : 서울지방경찰청이 가벼운 신호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특진을 보장하는 등 실적 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초 강희락 경찰청장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라고 지시하는 등 실적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한 것과 배치돼 일선 경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범칙금이 남발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략)

특히 주상용 서울청장은 정체가 심한 사거리에서 주로 활동하는 '교통도보팀 특별단속'의 경우 1위 실적자에 대해 연말 1계급 특진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특별단속도 매달 서별로 평가를 해 상위 3개 서에는 성과급 등 포상이, 하위 3개 서에는 개선방안 마련 조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서울지역 경찰관들은 사정이 다르다. 특진까지 걸려 있다 보니 하루에 100여 건의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진통이 시작된 임산부를 태운 차량을 과속으로 적발하는 무리한 단속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8월 27일자 『서울경찰 교통단속 실적경쟁 논란』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7일자 사회면에 "서울경찰 교통단속 실적경쟁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경찰이 교통단속을 실적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적위주 교통단속 및 진통이 시작된 임산부를 태운 차량을 과속으로 적발하는 무리한 단속 등과 같은 내용은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7일자 사회면 "서울경찰 교통단속 실적경쟁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경찰청이 진통이 시작된 임산부를 태운 차량도 과속으로 적발하는 등 실적위주로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과속은 무인카메라가 기계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경찰관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임산부 병원 후송과 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시 면제조치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 '안전과 소통'을 목표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 이외에는 현장계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6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화순 하니움체육관 부실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자신분증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화순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화순뉴스 : (1) 『'하니움체육관 감리단' 언론사 2개사에 각 5억 원 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8일자 종합면)
내 용 :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출입통제를 한 경비에게 공무원 사칭까지 시공사를 향해 협박 수

준의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나…

세계 최초로 수직화 건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과 관련하여, "부실의혹, 적절성 논란"을 제기했던 ○○일보와 화순 ○○뉴스를 상대로 종합건설사업관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한편 기업이미지와 CM감리단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개 언론사를 상대로 각 5억 원씩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갔다. (후략)

(2) 『"군민복합실내체육관"공사 관련, 남도일보 상대 소송 들어갈 듯』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5일자 종합면)

내 용 : 지역 내 ○○뉴스와 광주, 전남 지방 일간지인 남도일보의 화순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동떨어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략)

그리고 야간에 화순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며 야간경비를 속이고 제지하는 시공사 직원에게는 대우건설을 가만히 둘 줄 아느냐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은 행태는 기자의 신분을 망각한 또 다른 사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사가 막바지임으로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해 통제를 하는 정당한 사유를 기자라는 신분으로 묵살하고자 하는 언론인의 자세도 모르는 무식한 상식 밖의 일로 생각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하니움체육관, 언론사 2개 사에 각 5억 원 소송제기'라는 제목으로 부제 '공무원 사칭까지' 정정보도문

• 내 용 : 화순뉴스는 2009년 8월 18일 21시 03분에 '하니움체육관 감리단, 언론사 2개 사에 각 5억 원 소송제기'라는 제목으로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출입통제를 한 경비에게 공무원 사칭까지'와 '시공사를 향해 협박 수준의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나'라는 부제를 달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을 속이고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것은 기자신분증을 제시했으며 공무원 사칭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시공사를 향해 협박과 폭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8일자 초기화면 "'하니움체육관 감리단' 언론사 2개 사에 각 5억 원 소송제기" 제목 및 "광주·전남 일간 ○○일보와 화순지역 ○○뉴스 기사 관련 5억씩 물어낼 판"이라는 부제목의 기사에서 취재기자가 경비에게 공무원 사칭을 하고 시공사를 향해 협박 수준의 폭언을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주재기자는 공무원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군청출입 기자신분증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시공사를 향해 협박 수준의 폭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남도일보의 8월 14일자 1면 "'화순 하니움 체육관' 부실 의혹" 제목의 기사가 오보가 아닌 의도적 하니움 폄하보도 성격이 짙고, ○○일보와 ○○뉴스 연합전선 펴며, 화순군과 하니움 복합시설을 융단폭격 하고 있으며, 의혹보도로 화순군청에 대한 군민들의 반감조성이 근본목적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도일보가 감리단 측에 5억 원을 물어낼 판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뉴스와 연합전선을 펴며 화순군과 하니움 복합시설을 융단폭격하고 있고, 의혹보도를 통해 화순군청에 대한 군민들의 반감조성이 근본목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확인 결과 그러한 의도로 작성된 보도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4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화순뉴스 메인화면 톱기사 중앙에 다섯 번째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하니움체육관 감리단…)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9월 28일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9광주조정39사건과 관련해 신청인 김○○의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이 내려질 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도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해당 보도내용의 이행방법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화순뉴스 메인화면 톱기사 중앙에 다섯 번째 기사로 2주일 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하니움체육관 감리단…)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화순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해 온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유)대신종합개발
(대표이사 김 ○ ○, 곽 ○ ○)

피신청인 : 목포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목포MBC-TV : 「뉴스데스크-목포・전남」 프로그램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지도감독 강화해야』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14일 21:30)

내 용 : 목포 시민연대가 목포시 상동 주공2차 아파트 관리업체인 D개발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연대는 "상동 주공 2차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해 온 D개발이 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입주민의 주거권이 침해됐다"며 목포시에 위탁관리 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경찰에 D개발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의 횡령사실 등의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7월 14일에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 지도 감독 강화해야"라는 자막 하에, 목포 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목포시 상동 주공2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개발의 횡령사실 등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D개발 측은 "D개발의 이사 겸 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행세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횡취한 사실이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민사판결에서 조차 D개발의 횡령사실은 밝혀진 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D개발이 고의로 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을 보도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목포MBC-TV〉 목포지역 방송 시간대에 2009년 9월 14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도하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목포MBC-TV : 「MBC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아파트 주거권 침해 논란 확산…맞고소로 번져』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24일 21:30)

내 용 : 아파트 관리업체의 주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목포 시민연대와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개발이 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주거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D개발은 "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등 시민연대와 입주자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아파트 관리소의 책임을 업체로 떠밀어 업체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입주자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주민과 업체의 상반된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지리산 용궁가족휴양촌을 임대 운영하는 신청인이 관광객들로부터 주차료, 평상 및 파라솔 대여료를 받았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간 남원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주간 남원신문 : 『보조사업 사후관리 "엉망"』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7일자 2면)

내 용 : 남원시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에 임대 운영되고 임대자는 이를 이용 부당한 상행위를 일삼는 등 보조금 사후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남원시가 지난 2000년 주천면 용궁리에 용궁산촌마을 조성을 위해 국비 포함 12억 7,700만 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 명목으로 지원 조성해 지리산 용궁가족휴양촌운영회가 이를 운영해 왔었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마을에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오다 운영 주최인 지리산 용궁가족휴양촌운영회가 지난해 문모씨에게 3천여만 원을 받고 10년 간 위탁 임대키로 했다.

그 결과 임대를 받은 임대업자는 이곳에 컨테이너 2개와 평상 36개를 설치하고 여름철 휴양촌을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임대업자는 용궁휴양촌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 명목으로 대당 1만 원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방문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실제 이곳을 본 기자가 가족들과 함께 이용해 본 결과 계곡에 설치된 평상은 2만 원, 파라솔 1만 원, 주차료 1만 원을 지급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7일자에 "보조사업 사후관리 엉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천면 지리산 용궁가족휴양촌을 10년 간 위탁, 임대한 사업자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주차료 및 평상, 파라솔 대여료를 받는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휴양촌 인근 계곡의 소유주가 계곡의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 및 평상, 파라솔을 설치하고 관광객으로부터 평상 및 파라솔 대여료는 받았으나, 주차료는 받지 않았으며 이는 지리산 용궁가족휴양촌 임대 사업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8월 27일자 2면 "보조사업 사후관리 엉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천면 지리산 용궁가족휴양촌을 10년 간 위탁, 임대한 사업자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주차료 및 평상, 파라솔 대여료를 받는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휴양촌 및 주변 토지의 소유주가 컨테이너 및 평상, 파라솔을 설치하고 관광객으로부터 평상 및 파라솔 대여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리산 용궁가족휴양촌 임대사업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토지소유주는 주차료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남원신문 2009년 9월 24일자 2면 우 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용궁산촌마을사업 개인에 불법 임대, 시 알면서도 묵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남원신문 홈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 남원신문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구청이 양재천 산책로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강남구 (구청장 맹 정 주)
피신청인 : 투데이코리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투데이코리아 : 『맹정주 구청장 안전 뒷전, 선거 우선』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시민들 휴식공간인 양재천 산책로의 관리소홀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양재천 산책로는 관악산, 청계산에서 발원해 과천을 거쳐 서울 강남을 흐르는 15.6km에 달하는 한강 지류로 이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다. 이곳은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장소임에도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은 야간에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양재천에는 "야간에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구청장의 경고 간판이 있다. 그럼에도 구청은 경고 간판만 세우고, 이를 단속하거나 계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야간에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는 마구달리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은 충돌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략)

사태가 이런 데도 해당 구청인 강남구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경고 간판 하나만 세워두고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식으로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맹정주 구청장에게 수 없이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한 번도 단속을 한 적이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계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과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맹정주 구청장 안전 뒷전, 선거 우선"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www.todaykorea.co.kr)은 지난 2009년 8월 25일자 초기화면에 '맹정주 구청장 안전 뒷전, 선거우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저녁 9시경에는 고속으로 달리던 자전거가 50대 주부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쏜살같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김모 학생(15)은 자전거와 충돌하여 무릎관절을 다쳐 병원에서 5주의 진단을 받았으며」라고 하고, 이를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2009년 8월 26일자 초기화면에는 '강남구청, 변명만 급급-시민안전 여전히 뒷전'이라는 제목하에 사진을 게재하였으나, 2009년 8월 25일자 게재된 것과 같은 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고, 8월 25일자 기사와 같이 보도된 사진은 강남구 관할 사진이 아니고 서초구 관할지역 사진이며, 8월 26일자 기사와 같이 보도된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된 양재천 둔치상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아닌 제방 중간 산책로의 사진으로 본 인터넷 신문이 지적한 산책로와는 관계가 없음으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청이 관리하는 양재천구간은 전 구간 15.6km 중 3.75km이나, 환경관리를 타 구간에 비하여 월등히 좋게 하고 있으며, 양재천 둔치상 산책로에 자전거가 다니고 있어 사람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으로 자전거 통행을 막을 수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시 서행합시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프랭카드를 4곳에 붙이고 주·야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맹정주 구청장은 '안전 뒷전', '선거 우선', '변명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양재천 산책로 관리와 구민들의 안전에 계속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맹정주 구청장 안전 뒷전, 선거 우선"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공익뉴스(http://www.todaykorea.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9월 21일부터 1주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맹정주 구청장 안전 뒷전, 선거우선")의 기사 본문 및 추가로 보도된 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투데이코리아 : 『"맹정주 구청장 안전 뒷전, 선거 우선"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0일자 사회일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물류단지 신축공사와 관련, 신청인의 터무니없는 보상가 요구와 행정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유감표명)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경북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북매일신문 : 『제발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12면)
내 용 : "대구 소방본부장님 제발 좀 먹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성주군 상언리 산 52-9 성주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장비 기사로 일하는 정모(38) 씨는 최근 대구 소방본부장에게 탄원서를 냈다.

사연은 성주군 용암면 물류단지 신축공사가 대구 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공무원의 토지보상 합의 거부와 행정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 (중략)

물류단지 공사장의 장비 팀장 윤모 씨는 "S씨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여동생을 통해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해 급기야 공사를 중단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갤로퍼 차량을 이용 공사장 입구를 막고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공사 중단을 막고자 S씨에게 적절한 보상 금액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다른 지주들과 적정한 합의가 이뤄져 공사가 시작됐는데 S씨 혼자만 시세의 2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주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9년 8월 25일자 사회면에 "제발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제하의 기사에서 성주군 상언리 산 52-9번지 성주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 장비기사인 정모 씨는 소방공무원 S씨가 시세의 20배가 넘는 보상가를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 진입로를 갤로퍼 차량으로 막아 공사차량 운행을 막고, 여동생을 통해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대구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한 탄원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S씨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 이주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며, 공사 중단은 레미콘타설 후 양생기간과 현장 팬스설치와 진흙길 포장을 위한 공사 현장사정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 측의 2009년 8월 25일 12면의 기사 『제발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성주물류단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인 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에게 위 기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박피수술 부작용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Ⅰ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페놀 박피

성형 시술 부작용』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4일 08:20)

내 용 : (전략)

▷리포터 : 예, 김○○의 현장입니다. 자, 이처럼 휴가철 이용을 해서 간단한 성형시술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피시술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을 안면장애까지 이르게 한 의사 2명이 기소가 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략)

▷김모 (51세 박피수술 피해자) : "예, 화상이에요… 3개월 입원해서 많이 나은 상태라 이 정도에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250,000원 지급〉 □

박피수술 부작용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S B S i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 B S i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페놀 박피 성형 시술 부작용』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4일 08:20)

내 용 : 〈2009서울조정36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인 신청인이 업무상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Ⅴ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0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시스 : 『공제조합에 손해 입힌 지부장 영장』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 10:26)

내 용 : 〈2009충북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충북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뉴시스 : 『개인택시공제조합 충북지부장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4일 17:15)

내 용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

혹을 받아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던 개인택시공제조합 충북지부장 최모 씨(57)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최이사장이 2006년 12월께 현 우암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청주시 장성동 3,600여㎡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개인택시조합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충북도 내 각 지부장들에게 공제사고 처리비용 명목으로 준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7일 공제조합 업무위탁 수수료 4,200여만 원 가운데 2,100여만 원을 마치 활동비인 것처럼 12개 시군 지부장에게 송금하고 공제조합의 장점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300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북지부가 각 시, 군 지부장 12명에게 100만~600만 원씩 총 2,100여만 원을 기존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이사장은 "현 조합 청사가 낡고 노후해 조합원들이 경정비를 받을 수 없는 등 어려움이 많아 후생복지 차원에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 무혐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업계가 발전하고 조합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인 신청인이 업무상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Ⅵ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13억 비리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 영장』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 10:18)
내 용 : 〈2009충북조정2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충북조정21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연합뉴스 : 『충북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7일 10:13)
내 용 : 〈2009서울조정370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재건축 관련업자와 결탁해 재개발 사업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 충 재 (도의원)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기신문 : 『도의원 문원2단지 이권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1면)
내 용 : 주택 재개발·재건축 결정의 주요한 경계지침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을 놓고 도의원과 업체 관계자 간 이권개입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과천 문원2단지 주택재개발추진준비위 등에 따르면 과천 별양·부림·문원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추진위원장인 K씨는 지난달 27일 과천시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자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해 해당지역에서 재건축사업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며 조례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그동안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조례 개정을 청원한 데 대해 별양동, 부림동, 문원2단지의 노후불량율 66.7%과 도로율 20%이상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재건축' 대신 '재개발'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문원2단지 주민들도 시의 이같은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K씨와 청원서 소개 의원으로 나온 건설교통위 한충재(한·과천2) 도의원 등이 3곳의 재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청원을 도의회에 제시하는 통에 주민들의 공람공고까지 끝낸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이 6개월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의원 문원2단지 이권개입 의혹"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지가 지난 2009년 8월 31일자 1면 "도의원 문원2단지 이권개입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한충재 도의원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상임위원회에 청원을 소개한 것에 대해 개발업자 등과의 이권개입 의혹이 있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 수혜지역이며, 자신이 현재 과천시내에서 부동산 관련업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재개발 요건을 강화 하는 청원을 도에 제출하여 시의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한충재 도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과천 시내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의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 청원 소개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타운하우스 개발 등과 관련한 이권 개입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도의원 문원2단지 이권개입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9년 8월 31일자 1면 "도의원 문원2단지 이권개입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한충재 도의원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상임위원회에 청원을 소개한 것에 대해 개발업자 등과의 이권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한충재 도의원은 소관 상임위에 조례를 소개한 것은 단지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타운하우스 개발과 어떠한 관련이나 이권 개입이 없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9년 9월 14일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한충재, 재개발 요건 강화 조례개정 추진)로,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신문 : 『반론보도문 〈도의원 문원2단지 이권개입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사고/알림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마을로 35사단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신청인들이 토지보상가를 현실화하면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3인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1)『35사단 소송 '패자만 있는 싸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1면)
내 용 :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까.

정답은 누구에게도 득은 없고 실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를 제기한 임실군민이 승소하더라도 사업자체가 무효로 되기 어렵고 반대로 전주시가 승소하더라도 공사 중단에 다른 행·재정적 피해가 막대하다. (중략)

임실군민이 주장하는 보상은 그간 35사단 이전 반대 집회를 벌이며 소요된 집회비용 등 7억 원과 토지보상가의 현실화, 보상가를 높일 수 없다면 661㎡(200평) 대지에 99㎡(30평) 규모의 건물을 자부담 25%, 임실군 25%, 전주시 25%, 도비 25%를 들여 이주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

이에 전주시는 주민 생계 지원 및 이주대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지원법상 한계로 마땅한 타협점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35사단 소송대표 재판개입 불가 명령』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자 1면)
내 용 : "앞으로 35사단 이전 관련 재판에 개입하지 마세요."

35사단 이전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임실군민 42명의 대표자로 알려진 A씨가 재판부로부터 '재판 개입 불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실상 35사단이 이전할 임실 대곡리 등 부지에 살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소송 당사자인 42명에 끼어 있지도 않아 재판 개입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중략)

이날 법정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사는 곳은 어디며, 재판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A씨는 사는 곳은 임실 삼계면이며,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표 성격으로 재판장에 온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뭘(재판) 원하냐"고 질문했고 A씨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공사의 원천 무효를 원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를 원하냐. 아니면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이주대책)을 원하냐?"고 질문하자 주민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앞으로 재판에 개입하지 마라"고 명령했고 주민들에게는 "A씨와 휩쓸리면 재판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35사단이 이전할 부지에 살고 있지도 않고 또 소송당사자가 아니면서 군민들을 부추기지 말라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35사단 소송 패자만 있는 싸움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임실군민은 35사단 무효를 주장하지 보상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4일자 사회면에 "임실군민이 35사단 이전 반대집회에 소용된 비용 7억 원과 토지보상가의 현실화, 보상가를 높일 수 없다면 661㎡(200평) 대지에 99㎡(30평) 규모의 건물을 자부담 25프로, 임실군 25프로, 전주시 35프로, 도비 25프로를 들여 이주기반을 마련해 달라"

라는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임실군 대곡리 주민일동은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신청인들에게 "공사중지를 원하냐 아니면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이주대책)을 원하냐" 질문하여 주민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보도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들은 "무효를 주장하지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새전북신문 : (1)『사업 중단-지리한 법정공방 예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1면)

내 용 : 법원이 임실군민 42명이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임실군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리한 법정공방과 함께 예산낭비와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의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35사단 일련의 행정 절차에 대해 '현행법을 무시한 절차없는 엉터리 행정'을 지적하고 나서 사업 추진 당시 어떤 연유로 무리한 행정절차를 통한 공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한 뒷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략)

(2) 『35사단 행정절차 '엉터리'』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2면)

내 용 : 국방부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35사단 이전사업의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향후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성을 가진 국방 사업 등 그 어떤 사업일지라도 환경 및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다면 '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취지다. (후략)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정정보도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화순미래뉴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화순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화순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하니움' 관련 허위보도 철퇴』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종합면)

내 용 :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인 '하니움'과 관련하여 "화순 하니움체육관, 부실공사 의혹 밝혀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하기계실에 물이 꽉 차 있는 등 체육관 공사과정에서 부실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화순지역 언론사인 미래뉴스와 광주 일간지 방지인 남도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난 28일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 명령을 받았다.

28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남도일보와 화순미래뉴스가 보도한 기계실에 물이 꽉 차있다고 지적한 장소는 지하 기계실이 아니라 집수정이 있는 지하층 '피트층'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로 남도일보는 오는 9월 1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하니움 체육관, 부실의혹"은 잘못 되었기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역 내 화순미래뉴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화순미래뉴스 메인화면 톱기사 중앙 하단에 다섯 번째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9월 15일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하라는 조정을 받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던, CM감리단측은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후 양 언론사의 정정보도 과정을 지켜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

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문제는 남도일보와 화순미래뉴스가 지역민을 상대로 대량의 지면신문을 살포하면서 허위보도 자체를 사실로 믿어버린 지역여론의 심각성이다. 마치 화순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하니움 체육관'이 부실과 의혹투성이의 건축물로 낙인찍혀 버린 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허위보도 철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문'
• 내 용 : 화순뉴스는 2009년 8월 31일 14시 16분에 '언론중재위원회, 하니움 관련 허위보도 철퇴라는 제목으로 화순군, 흠집내기 위한 의도적 보도 행위라는 시각도 있어'라는 부제를 달아 보도했고, 화순미래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니움 체육관과 관련 허위보도 철퇴 제목은 양 당사자 간의 조정합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잘못 게재했으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 명령을 받았다'는 '양 측이 원만한 조정합의를 이뤘다'로,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도 조정합의를 하는 것을 대신해 향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부제 '화순군, 흠집내기 위한 의도적 보도행위라는 시각도 있어'라는 내용도 정정보도와 본질이 전혀 다르기에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31일자 초기화면 "'언론중재위원회, 하니움 관련 허위보도 철퇴' 제목의 기사에서 남도일보와 화순미래뉴스가 화순 하니움 체육관 공사과정에 부실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난 28일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도일보와 화순미래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의 합의권고를 통해 화순뉴스와 합의한 사안이므로 허위보도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거나 조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들이 화순군에 대해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적 보도행위였다거나 양 언론사가 지역민을 상대로 대량의 지면신문을 살포했다는 등의 내용 또한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화순뉴스 메인화면 톱기사 중앙에 여섯 번째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언론중재위원회…)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9월 30일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업체 '뉴스웨이브'에 게재되어 있는 피신청인의 원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통해 삭제토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화순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정정보도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화순미래뉴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파인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인뉴스 : 『두 언론사 허위기사 정정보도 명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3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인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정정보도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남도일보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화순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화순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하니움' 관련 허위보도 철퇴』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3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광주조정39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정정보도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남도일보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파인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인뉴스 : 『두 언론사 허위기사 정정보도 명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3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광주조정39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정정보도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Ⅴ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남도일보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화순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화순뉴스 : 『'하니움체육관 감리단' 언론사 2개 사에 각 5억 원 소송제기』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8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하니움체육관 감리단, 언론사에 각 5억 원 소송제기'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18일자 초기화면에 '하니움체육관 감리단, 언론사에 각 5억 원 소송제기'라는 제목으로 광주전남일간 ○○일보 기사관련 5억씩 물어낼 판이라는 부제를 실었습니다.

이어 오보가 아닌 의도적 하니움 폄하 보도 성격 짙어, ○○일보와 ○○뉴스 연합전선 펴며 화순군과 하니움 복합시설 융단폭격!!, 의혹보도로, 화순군청에 대한 군민들의 반감조성이 근본 목적이라는 여론도 일…,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출입통제를 한 경비에게 공무원 사칭까지, 시공사를 향해 협박수준의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8월 18일자 보도와 달리 남도일보가 5억 물어낼 판이라는 부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도일보는 의도적으로 하니움을 폄하 보도하거나 ○○뉴스와 연합전선을 펴며 화순과 하니움 복합시설을 융단폭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밖에 의혹 보도로, 화순군청에 대한 군민들의 반감조성이 근본 목적이라는 여론도 일어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3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화순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이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깔아뭉개고 탄압했다고 보도했으나 불법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절차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남대문경찰서 (서장 현 재 섭)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4.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56 참조)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경찰이 깔아뭉갰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29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하려던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당했다. 이 과정에 한 유가족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고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연행됐다.

당초 유가족들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들은 29일을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로 정하고 서울광장에서 기독교 추모예배·추모 대회·분향소 설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서울광장에 들어서는 것을 막았고, 유가족들과 대책위 회원 30여 명은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독교 추모예배를 시작으로 이날 행사를 시작했다.

이 또한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 진행됐다. 나머지 대책위·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대한문 앞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인근 차도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덕수궁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일부는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봉쇄 속에서 발길을 돌렸다.

"어떻게 경찰이 유가족들을 개처럼 끌어낼 수 있느냐?"

유가족들과 대책위 회원들이 예배를 끝내고 그 자리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나가자, 오후 6시 15분께 경찰은 유가족들과 대책위 회원, 자리를 함께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을 강제로 대한문 앞에서 인근 차도로 쫓아냈다.

유가족들이 경찰의 진압에 강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넘어져 다쳤다. 고 한대성 씨의 부인 신숙자 씨는 경찰에 밀려 넘어져 실신한 후 병원으로 후송됐다. 고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 씨도 경찰과 뒤엉켜 넘어지면서 목 주위가 벌겋게 부어올랐다. 대책위는 "유가족들이 끌려 나가는 것을 막던 대책위·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고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는 "지금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추모제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경찰은 우리를 물고 뜯고 할퀴면서 깔아뭉개고 탄압했다"며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8월 29일자 용산참사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언론은 지난 8월 29일자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갰다"』 제하 보도에서 "어떻게 경찰이 유가족들을 개처럼 끌어낼 수 있느냐?", "경찰은 우리를 물고 뜯고 할퀴면서 깔아뭉개고 탄압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는 경찰이 3차 해산명령 후 수차례에 걸친 해산설득에도 해산치 않아 여경기동대로하여금 유가족들을 이동조치 한 것이고 09. 8. 29. 15:25~17:20간 추모예배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날 17:20경부터 구호제창 등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17:35경부터 18:05경까지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해산치않아 불가피하게 같은 날 18:20경부터 검거 및 이동조치 한 것으로 합법적인 경찰의 법집행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OBS-TV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경기중재1 참조)　　내　용 : 〈2009서울조정368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OBS-TV : 「뉴스 755」 프로그램 『얼굴 박피시술 부작용』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3일 19:55)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신청인이 이력서에 허위학력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한국기독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국기독신문 : 『부산장신대 장○○ 총장서리 총회 인준 청원 보류』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7면)

내　　용 :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서리 장○○ 목사를 향한 과녁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지난 8월 17일 부산장신대 회의실에서 열렸던 학원이사회(이사장 이성만 장로)는 장 총장 서리에 대한 총회인준 청원을 보류키로 결의했다. 조사위원회(위원장 이만규 목사) 보고에 의하면 카무카스대학교 총장 역임과 장신대(광나루)대학원 교수 역임이라고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은 조작이며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하면서 카무카스신학교에 총장 역임이지 대학총장은 아니라고 보고했고, 장신대학원의 경우도 강의한 경력을 가지고 교수 역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허위 경력 표기라고 규정지었다. 과거 장산 국무총리서리가 청문회에서 지적당한 그리스도대학교 총장 역임을 이력서에 쓴 것은 사실 그리스도신학교 총장 역임 표기를 잘못 쓴 것이 탄로나, 총리직에서 중도 낙마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부분도 있다. 신청인이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해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시의 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 대표가 중국 시찰 중인 춘천시의원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호반 춘천장례식장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강원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강원일보 :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12면)

내 용 : 춘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중국 옌지 공무 국외여행을 떠났으나 목적이 모호하고 민간 사업자와 연관성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내무위원회 소속 박모 의원과 산업위 소속 유모·이모 의원은 지난 27일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옌지에서 열리는 국제투자박람회 등에 참석, 우수한 사례와 특성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춘천시에 장기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출국했다.

중국 옌지에서 열리는 투자박람회에는 박의원이 이사로 몸담고 있는 지역의 한 장례업체 대표가 부스를 설치했으며 현지에서 의원들은 해당 대표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 장례업체 인근에 위치한 춘천시립화장장이 최근 동산면 군자리로 이전이 확정되며 이 업체는 장례식장 부지 등을 시가 매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춘천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9일자 12면에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제목으로 「춘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중국 옌지 공무 국외여행을 떠났으나 뚜렷한 여행 목적 없고 현안 연관된 업체대표 만나」 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례업체 대표는 중국 연변 조선자치정부 서울 대표처 김인석 대표가 초청하여 마련한 자리에 초대받아 참석한 것으로 춘천시의원들과 사업적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장례업체는 춘천시에 부지매입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강원일보 : 『"시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사업 연관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2일자 12면)

내 용 : 춘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중국 옌지 공무 국외여행 목적 등을 둘러싼 논란(본보 8월 29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현지에서 의원들을 만난 지역 내 한 장례업체 대표는 시의원들과 사업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대표는 "중국 옌지에서 열린 투자박람회에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춘천시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11일 말했다. 이어 "춘천시의원들은 중국 옌지 조선족자치주의 초청으로 제5회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와 제4회 중국 옌지 국제투자박람회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시에 장례업체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희망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춘천시가 도시계획상 필요할 경우 부지매입을 먼저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며 "현재 위치에서 장례식장을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고, 다른 지역의 부지매입도 어려워 쉽게 자리를 뜰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시의 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 대표가 중국 시찰 중인 춘천시의원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호반 춘천장례식장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구글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구 글 :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구 글 : 『"시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사업 연관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2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시의 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 대표가 중국 시찰 중인 춘천시의원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호반 춘천장례식장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네이버 : 『"시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사업 연관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2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시의 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 대표가 중국 시찰 중인 춘천시의원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호반 춘천장례식장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트 :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네이트 : 『"시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사업 연관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2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시의 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 대표가 중국 시찰 중인 춘천시의원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호반 춘천장례식장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드림위즈 :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드림위즈 : 『"시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사업 연관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2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취하후 보도문 참조〉 □

시의 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 대표가 중국 시찰 중인 춘천시의원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호반 춘천장례식장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파란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파 란 : 『시의원 3명 공무 해외여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파 란 : 『"시의원 공무국외여행과 사업 연관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2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강원조정7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내용을 의결한 적이 없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전교조 "내년 지방선거 개입"』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2면)
내 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2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를 하반기 과제로 확정하기로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교조 "내년 지방선거 개입"』 정정보도문 (또는 『전교조 "내년 지방선거 개입"』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동아일보는 지난 8월 29일자 사회-교육면 초기화면에 『전교조 "내년에 지방선거 개입"』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2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를 하반기 과제로 확정하기로 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에 확인한 결과, 전교조는 58차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 2012년 총선 및 대선에 개입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과 관련된 어떤 논의나 사업계획을 의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 단체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내용을 의결한 적이 없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동아닷컴 : 『전교조 "내년 지방선거 개입"』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자 사회교육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 단체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내용을 의결한 적이 없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신문 : 『전교조 "교원평가 독자대안 제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내용을 의결한 적이 없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인터넷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터넷 서울신문 : 『전교조 "교원평가 독자대안 제시"』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사회)
내 용 : 〈2009서울조정3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내용을 의결한 적이 없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전교조, 교원평가제 받아들이나』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3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8월 31일자 31면에 "전교조 제58차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하는 사업계획도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전교조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내용을 의결한 적이 없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조인스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인스닷컴 : 『전교조, 교원평가제 받아들이나』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조인스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7의 취하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0년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내용을 의결한 적이 없다 Ⅶ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전교조 '교원평가제 논의 불가' 입장 급선회』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0일 10:34)
내 용 : 〈2009서울조정3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체인약국에 불리한 이면계약서를 유지하고 있고, 약국들이 면허대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면계약서는 없으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위드팜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데일리팜 : 『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 계약서 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4일자 뉴스면 외 다수)

내 용 : 개설약사(을)의 약국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체인업체(갑)가 관여할 수 있고, 개설약사가 약국 신용을 이용한 개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인업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가맹 계약서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계약서는 통상의 가맹 계약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이면 계약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문건 상단에 "아래 내용은 대외비이며 비밀유지를 부탁드리며 용도 후 파기하라"는 내용이 있어 의문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최근 약국체인 가맹에 관심을 갖고 W업체와 접촉했다. 계약까지 생각했던 A약사는, 그러나 W업체가 요구하는 뜻밖의 이면계약을 보고 곧바로 가맹 계획을 접어야 했다. (중략)

약사회 "이면 계약서만 봐도 정서적 면대" 불쾌감

제보된 계약서에 대해 약사회는 "계약서 상 '용도 후 파기'가 명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이면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파기'가 명기된 것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주식회사 위드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2009년 7월 14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계약서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 "W체인"이라는 표현으로, 위드팜의 회원약국 가맹계약서 외에 또 다른 이면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위드팜 회원약국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여 게재 보도를 하였으며, 위드팜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면허대여'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 특정단체의 명의를 빌어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필두로 2009년 8월 21일까지 40일 간에 걸쳐 총 14건의 위드팜 관련기사를 게재하면서 위드팜을 면허대여 및 법인약국을 운영하는 업체로 표현하고, 위드팜 회원약국 약사에게 불리한 이면계약서가 있어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위드팜 회원약국에 대해 면허대여 혐의가 밝혀졌다고 보도하면서 위드팜의 회원약국 중 16개 처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 기사부터는 위드팜의 회사명이나 위드팜 대표이사의 본명을 그대로 기사에 내보내면서, 위드팜 대표이사의 약국개설 일지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드팜은 회원약국과의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다른 이면계약서는 없으며 회원약국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면허대여행위와 법인약국이라는 형태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과, 면허대여 혐의가 밝혀졌다고 보도된 회원약국은 경찰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과 16개 위드팜 회원약국이 면허대여 혐의로 검찰에 조사가 넘어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으로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위드팜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데일리팜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7-1
대표이사 민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10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데일리팜」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각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3.

〈별 지〉

가.『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계약서 물의』(2009. 7. 14.)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보도된 계약서는 투자약국 유치를 위한 계약서로서 회원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는 어떤 이면계약서도 없으며 면대행위와도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나.『W체인 "약국담보 불가피"… 약사회 "문제많다"』(2009. 7. 15.)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계약서 문구에 담보 성격의 문구가 포함된 것은 계약 당사자인 약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내용일 뿐이며, 약국의 경영에 관여할 의도나 면허대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약사회, 약국체인 '불공정 계약서' 손 본다』(2009. 7. 28.)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회원약국과의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는 어떠한 이면계약서도 없으며, 계약 당사자인 약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문구가 포함되었을 뿐 약국경영에 부도덕하게 관여하거나 불공정계약을 강요하지 않았고 회원약국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라.『약국체인 대표 입건…가맹약국 16곳 연루』(2009. 8. 5.)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회원약국 중 S약국은 물론 16개 회원약국에 대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거나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위드팜 대표 역시 면허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마.『기업형 면대혐의 약국 30곳 불법여부 가린다』(2009. 8. 6.)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회원약국 중 S약국은 물론 16개 회원약국에 대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거나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위드팜 대표 역시 면허대여 행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바.『"기업형 면대 잡아라"…근무약사도 처벌위기』(2009. 8. 10.)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경찰조사에서 S약국을 비롯한 16개의 가맹약국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위드팜 대표가 면허대여 행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위드팜의 운영 방식은 기업형 면대약국과 관계가 없고, S약국의 경우 EDI 통장주가 체인대표가 아닌 약국 개설자인 박○○ 약사 통장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면대의혹 입건 위드팜, 데일리팜 보도 고소』(2009. 8. 11.)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 대표가 면대혐의로 입건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위드팜 해명 오류 투성…"데일리팜 오보" 생떼』(2009. 8. 11.)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기사에서 언급된 S약국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없고, 위드팜 대

표 역시 면허대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자.『"박정관 대표, W약국체인은 '위드팜'" 자인』(2009. 8. 11.)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약사회 조사내용을 부정한 사실이 없으며, 위드팜 대표이사는 면허대여행위 혐의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차.『면대약사 찾아 떠도는 거대자본』(2009. 8. 12.)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불법 법인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드팜 회원약국은 면대약국과 무관하며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카.『"면대혐의 S약국 EDI 통장주 위드팜 박○○"』(2009. 8. 12.)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박○○ 대표이사가 체인대표가 아닌 약사로서 S약국을 개설했기 때문에 EDI 계좌를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고, EDI 통장주 명의로 인해 면대약국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면대약국의 증거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가맹약국인 S약국이 면대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타.『약사회 면대 TF, 재가동...고발약국 경과 점검』(2009. 8. 13.)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S약국을 포함한 16개 회원약국은 면허대여로 검찰에 송치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파.『"체인대표가 본인명의로 5차례나 약국개설"』(2009. 8. 17.)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의 약국체인 운영과 관련해 위드팜 대표가 약사의 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해 양도했을 뿐, 면대행위와 같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운영 방식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약사회 "위드팜 S약국, 실 소유주 의심돼 고발』(2009. 8. 21.) 기사 하단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위 기사에 대해 위드팜은 기업형 면대와 무관하며, 회원인 S약국도 면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병원장인 신청인이 성형수술 환자들에게 사채를 알선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tvN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tvN : 「리얼스토리 묘」 프로그램『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의 덫 성형 사채』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2일 22:00)

내 용 : (전략) ▷실장 :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싸게 해주신거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 정도 부르셨으면 진짜 잘 해주신 거. 비용은 어디가서 이렇게 못 할 거 같다. 사실은. 한다면.

▷연기자 : 다른 데서는 2,000까지 불렀어요. (중략)

▷실장 : 급한 거 부터 하는 거야. 우선은. 해서 케어가 되는 거부터 하는 거야. 케어가 되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을 맞추면 안해도 상관 없잖아. 그렇게 해도 되잖아.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사실은 무리지. (중략)

▷실장 : 그렇지 이걸 다 빌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형 비용을 깎으면서 수술을 하는데 또 가서 이자를 또 물어야되는

게 그러는 거지. 사실 내가 만약 이렇게 되면 나도 급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빌리겠지만 처음에 너무 그런 쪽에다 하지 말고 친구나 가족한테 얼마만 있으면 되잖아. 500 다 빌릴 거 아니니까. 잠깐만 융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성형사채를 알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취재 시에 사채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알선행위를 함. 신청인이 최소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3천만 원을 수용할 수 없는 금액임. □

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신청인 단체를 좌파단체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대표 원 ○ ○)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월간조선 : 『8,000억 원 규모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親盧·左派 인사가 핵심 관계자로 참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호 84~99면)

내 용 : 李健熙(이건희) 前(전) 삼성그룹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문제와 안기부 도청사건-이른바 'X파일'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6년 2월 8,000억 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이 헌납하기로 한 8000억 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低(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出捐(출연)한 8,000억 원은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에 이전됐다가 그해 10월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이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에 이전됐다. 기존의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면,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희망대로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중략)

좌파 성향의 배움터에도 수천만 원 지원

재단이 운영하는 배움터장학사업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단은 지난해 재단이사인 이학영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에 청소년 정서적·경제적 자립 지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원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 이씨는 대표적인 좌파 인사다.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민노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노동실업광주센터에도 저소득층 아동 대상학습·정서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7,5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진보신당 창당발기인 중 한 명인 오재진씨가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지난해 6,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000만 원을 지원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교육으로 지원받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는 정치적 성향 갖고 있지 않은 복지사업 실천하는 단체, 좌파단체 보도는 허위·과장 보도임을 인정
• 내 용 : 본 신문은 8월호에 "8,000억 원 규모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親盧·左派 인사가 핵심 관계자로 참여" 이라는 제목으로 저소득층 교육 명

목으로 좌파단체에 매년 수억 원씩 자금지원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진보신당 창당발기인이 활동하는 청소년자활지원협의회가 2년 간 1억3천만 원을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좌파단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는 좌파단체가 이념적 활동을 위해 저소득층 교육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전용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를 좌파단체로 보도하는 것은 과장, 허위 보도에 해당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2009년 8월호 「8,000억 원 규모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親盧·左派 인사가 핵심 관계자로 참여」 제하의 기사에서 저소득층 교육 명목으로 좌파단체에 매년 수억 원씩 자금 지원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좌파성향의 배움터에도 수천만 원 지원」 이라는 소제목 하에 진보신당 창당발기인이 활동하는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가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에서 2년 간 1억3,0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는 구시대적 이념사상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13년 간 지역사회에서 설립목적에 맞게 복지실천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고, 또한 보도에 언급된 진보신당 창당발기인 1명은 전체 28개 기관 중 1개 기관의 실무자 1인일 뿐이며 아울러 재단지원금 전액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1월호 월간조선 100페이지 이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할 뿐 이념·정치적 성향과는 무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30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월간조선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호 9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복지법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충북사회복지개발회 (회장 조 ○ ○)
피신청인 : 충북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북일보 : 『복지시설-도 공무원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3면)
내 용 :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 보조금을 주유비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도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이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물의를 빚은 A 사회복지시설을 수년 전부터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중략) 기관운영 판공비라는 항목을 책정, 도청 공무원들에게 매년 300~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해온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과의 유착이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복지시설-도 공무원 유착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복지시설-도 공무원 유착의혹" - '모 법인, 금품 제공…방만운영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A 사회복지시설을 수년전 부터 충청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이 불법적인 기관운영 판공비를 책정하여 도 공무원에게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방대한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불법적인 인사관리와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해 근무자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중간정산 시킨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법인, 충청북도, 퇴직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돼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 『복지시설-도 공무원 유착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수년 전부터 모 사회복지시설을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 법인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모 법인이 불법적인 기관운영 판공비를 책정하여 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적인 인사관리와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해 근무자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중간정산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북일보 2009년 9월 20일까지 2면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바로잡습니다)는 충북일보 2면에 게재되는 통상적인 정정보도문(또는 반론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학교가 광주·전남 지역 17개 전문대 가운데 정규직 취업률 1위 대학인데도 다른 대학을 1위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선간호대학 (총장 김 창 숙)
피신청인 : 전남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남매일 : 『지역 국립대 정규직 취업률 '꼴찌'』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7면)
내 용 :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4년제 대학보다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 국립대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중략)

광주·전남 17개 전문대 가운데 정규직 취업률은 조선이공대학이 9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독간호대학(86%), 전남과학대학(75.1%), 광양보건대학(74.6%), 목포과학대학(68.7%) 순으로 조사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역 국립대 정규직 취업률 꼴찌'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9월 8일자 사회면에 "지역 국립대 정규직 취업률 꼴찌"라는 제목으로 광주·전남 17개 전문대 가운데 정규직 취업률은 조선이공대학이 9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독간호대학(86%), 전남과학대학(75.1%), 광양보건대학(74.6%), 목포과학대학(68.7%)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조선이공대학이 아니라 조선간호대학"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전남매일 : 『조선간호대학 실질 취업률 100%』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10면)
내 용 : 40여 년 전통의 조선간호대학이 전국 최상위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간호대학은 22일 "한국대학신문이 올해 초 전국 150여 개 국·공·사립 전문대학 정규직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조선간호대학은 정규직 취업률 92.9%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원 취업을 하고 있어 실제 취업률은 100%이다"고 밝혔다. (후략) □

신청인의 누드사진이 유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합성된 것이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스포츠조선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스포츠조선 : 『인기 연예인 A양 누드사진 유출』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4일자 21면)
내 용 : 인기 연예인 A양의 누드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주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A양의 사진들은 '실제냐, 합성이냐'를 두고 네티즌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A양의 사진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모텔로 보이는 장소에서 A양이 벌거벗은 채로 한 남성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혼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기 연예인 A양 누드사진 합성으로 밝혀져 (또는 A양 누드사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4일자 뉴스&이슈면에 "인기 연예인 A양 누드사진 유출" 이라는 제목으로 A양의 소속사 컴퓨터가 도난당해 유출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양의 사진은 네티즌이 합성을 하여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스포츠조선 : 『'미남이시네요' 오늘 첫 등장/유·이 3연타석 홈런 쏠 거예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5일자 27면)
내 용 : "안방극장도 '꿀벅지'가 접수한다!" '꿀벅지' 유이가 15일 전파를 타는 수목극 '미남이시네요' (SBS)의 4회에 등장하며 현대물 연기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녀는 현재 방송 중인 '선덕여왕' (MBC)에도 출연했지만, 이번엔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현대물일 뿐더러, 두 번째 안방 출연작이라 연기력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그룹 애프터스쿨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유이가 가요, 예능 분야에 이어 드라마까지 석권할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략) □

성형외과 과대광고에 대한 실태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병원의 잡지광고를 보도하였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4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후」 프로그램 『못 믿을 성형해결사』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3일 23:05)
내 용 : ▷나레이션 : 한번 심의한 광고의 내용이 바뀔 경우도 속수무책입니다.

▷김○○/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 달에 400~500건 정도인데, 이 의료광고 심의가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한번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몇 년이고 쓸 수 있습니다.

▷나레이션 : 최근 잡지에 나온 어느 성형외과의 광고 문구입니다. 한 성형외과의 특별한 코 성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할 당시 원래의 문구는 특별한 모양의 코 성형이었습니다. 특별한 모양이 특별한 기술로 둔갑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사를 과장한 광고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된다 해도 기자가 직접 취재한 거라고 해당 병원과 입만 맞추면 그 뿐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못 믿을 '성형해결사'」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3일 〈뉴스 후〉 프로그램에 「못 믿을 '성형해결사'」라는 제목으로 성형부작용 및 성형외과의 과대광고 실태를 보도하던 중 도○○ 기자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전공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또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모두 성형수술을 하고 있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병원이나 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광고로 내보내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또 그런 경우가 적발되면 나중에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멘트를 할 때와, 성우가 "최근 실을 이용한 얼굴 주름 성형술이 수술 뒤 곧바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최신치료법이라고 여러 잡지에 광고로 소개되고 있다.~~~그러나 신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부분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나레이션을 할 때, 여성조선 2009년 9월호 잡지에 소개된 성형외과 광고를 클로즈업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의원은 여성조선 2009년 9월호 잡지에 게재된 미래의원 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인증필 제7026-중-2159호로 인증받은 광고로서, ① 원장인 김○○ 박사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임을 밝히고 있고, ②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아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또는 "최신치료법"이라는 문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③ 경력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못 믿을 '성형해결사'」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3일 「못 믿을 '성형해결사'」 제하의 보도에서 성형외과의 과대광고 실태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모 잡지에 게재된 미래의원의 광고를 클로즈업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의원은 해당 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광고로서, 원장인 김○○ 박사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임을 밝히

고 있고 새로운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아 시술을 하고 있으며, 경력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8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뉴스후〉 프로그램의 말미에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 후」 프로그램 『못 믿을 '성형해결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24일 11:0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및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전일보 :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 '눈먼 돈'』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5일자 14면)

내 용 : 〈2009대전조정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15일자 사회면에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 눈먼 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 '연기군 동면 문주리 마을회관 신축과정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지고 이 문주리 마을 이장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문주리 이장은 마을회 대표이며 동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관 신축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연기군청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책정된 보조사업비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이장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문주리 마을 이장 이모 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09년 8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 대전일보는 문주리 이장님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사업비 유용의혹 문주리 이장 무혐의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5일자 지방면 『행정도시 지원 사업비 눈먼 돈』 제하의 기사에서 연기군 동면 문주리 마을회관 신축과정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지고 문주리 마을 이장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문주리 마을 이장 이모 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모 씨가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마을회관 건립의 경우 이장 이모 씨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관 신축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연기군청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기책정된 보조사업비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나치게 신원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피해를 입은 문주리 마을 이장께 심심한 유감

의 뜻을 표합니다.

한편 이장 이모 씨는 "몇몇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 마을이장이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취지로 상습적으로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9년 9월 29일까지 지방면 우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사업비 유용의혹…)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주민들직접…)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일보 : 『사업비 유용의혹 문주리 이장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5일자 지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파업이 다른 공공노조와 함께 벌일 연대 파업의 전초전 성격으로 '힘 과시용'이라고 보도했으나, 사 측의 교섭해태 중지와 단협갱신을 위한 것이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철도파업 주동자 중징계 피할 수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31면)
내 용 : 철도노조가 어제 기관사 등 운전분야를 중심으로 하루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가 비상운송체제에 들어갔지만 퇴근시간쯤엔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화물운행은 큰 차질을 빚었다. 잊을 만하면 국민을 볼모 삼는 철도노조의 집단이기적 행동에 분통이 터진다.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철도공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다. 지난해 시작한 단체협약이 1년 넘게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 표시다. 철도공사의 설명은 다르다. 5월 이후 49회나 교섭을 가졌는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 이면에는 발전산업노조, 가스노조와 함께 벌일 예정인 '공공부분 사유화 저지 공동파업'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힘 과시용'인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 신문 9일자 '철도파업 주동자 중징계 피할 수 없다'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정정 1 : 8일 철도노조의 시한부 경고파업은 철도공사의 교섭해태 중지와 단협갱신을 위한 것으로 발전산업노조와 가스노조와 함께 벌일 공동파업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정 2 : 철도노조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 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24시간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실을 누차 밝혔으며 그 전제로 성실교섭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4시간 경고파업에 들어가선 필수유지 인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도 전 조합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인원만 참여했습니다.
- 정정 3 : 철도공사가 방만한 조직과 운영을 했고 인건비가 매출액의 반이 훌쩍 넘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07년도 철도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36.8%로 나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

신청인의 파업이 다른 공공노조와 함께 벌일 연대 파업의 전초전 성격으로 '힘 과시용'이라고 보도했으나, 사 측의 교섭해태 중지와 단협갱신을 위한 것이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인터넷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인터넷세계일보 : 『철도파업 주동자 중징계 피할 수 없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오피니언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8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8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

신청인이 연례행사처럼 2005년부터 매년 파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연례행사 철도파업』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25면)
내 용 : 철도노조가 '또' 파업을 벌였다. 다행히 파업은 하루에 그쳤다. 큰 혼잡과 피해는 없었지만 철도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철도파업이 지겹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다.

철도 파업은 2005년, 2006년, 2007년, 지난 해에도 일어났다. 한 해도 쉰 적이 없다. 파업까진 아니었지만 올 들어 지난 5월과 6월에도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이 벌어졌다.

철도파업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단체협상 교섭이 잘 안 될 때다. 파업은 원론적으로 노동3권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은 그 명분과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철도파업은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잃었다. 걸핏하면 '파업'이란 최후 수단을 꺼내들어서다. 주장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라기보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더 크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민에게 외면 받는 이유는 철도노조가 가장 자주, 쉽게 벌이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방식에 그대로 나타난다.

작업규정을 지키자는 투쟁은 사실 너무나 옳은

애기다.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정한 작업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노조 역시 시민 안전의 전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작업규정을 정말로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저 교섭의 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면 분명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웠어야 옳다. 그랬다면 철도파업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지금과는 같지 않았을 것이다.

철도노조가 이렇게 신뢰를 잃다간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불법파업'이란 원색적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철도노조는 연례행사로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부제목 : 본 신문 9일자 '철도파업 연례 행사 돼서야'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9일 철도노조의 경고파업을 보도하면서 철도파업이 연례행사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파업이 2005년부터 해마다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2005년, 2007년, 2008년에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중행사로 파업을 했다는 본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8일자 25면)
내 용 : 본지 9월 9일자에 실린 '철도파업 연례행사 돼서야' 기사와 관련, '철도노조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속적으로 파업을 벌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철도파업은 2002년, 2003년, 2006년 벌어졌으며 2007년과 2008년엔 파업 선언뒤 철회됐습니다. □

신청인이 연례행사처럼 2005년부터 매년 파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닷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닷컴 : 『연례행사 철도파업』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8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8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경제닷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8일자 2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87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의 공장이전이 관계기관과 결탁하여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6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궁전콘크리트 (대표이사 전 ○ ○)
피신청인 : 경남연합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신청-2009경남중재1 참조)

보도내용

경남연합일보 : (1) 『창녕, "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1면)
내 용 : 창녕군이 양산시로부터 일부 공장폐쇄 명령을 받은 콘크리트 제품공장을 창녕읍 용석리 일대에 공장설립을 허가해줘 인근 주민들이 "공해업체 이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창녕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창녕읍 용석리 590번지외 10필지 2만4679㎡ 중 궁전콘크리트(주)가 9547㎡, 지엠씨콘크리트(주)가 1만5132㎡ 부지에 공장신축승인을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중략)

더구나 시는 공장등록 조건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공장이전과 관련, 지난 5월 말까지 연장해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결탁 의혹까지 사고 있다. (후략)

(2) 『궁전콘크리트 행정처분 받고도 가동』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9일자 1면)
내 용 : 창녕 "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와 관련, 궁전콘크리트(주)가 양산 소재 기존 공장가동 시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상급기관의 강력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8월 31일 1면 보도)

이 업체는 양산시로부터 '2007년 6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과 양산시 도시과-9976호(2007.10.31)와 관련 불법건축물인 사이로 3동(시멘트 저장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 시설은 제품생산과 관련, 폐쇄명령과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라 사실상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업체는 그동안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의해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창녕 공해 업체 웬 말인가'와 '궁전콘크리트 행정처분 받고도 가동'과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경남연합일보는 지난 09년 8월 31일과 9월 9일 1면에 "창녕 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와 "궁전콘크리트 행정 처분 받고도 가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창녕 군청과 양산 시청에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행정 처분 이후 공장 가동 역시 사실과 달라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경남연합일보의 착오로 사실 관계의 명확한 확인 없이 보도 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

조정심리가 열리기 전이었는데도,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Ⅵ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화순미래뉴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화순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화순뉴스 : 『'하니움체육관 감리단' 언론사 2개 사에 각 5억 원 소송제기』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8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광주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2009광주조정37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법관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기사에 언급된 일부 판사는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8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소송 당하는 판사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법관 및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지원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올라 왔다. 최근 정당한 업무수행을 했음에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원행정처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후략)

• 민원인 승소 한 건도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A씨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상대로 700만 원을 물어 내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이 특별기일로 월요일에만 기일을 진행해 심리 불안을 조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B씨는 재판부가 자신이 원하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 불리해졌다고 재판장을 상대로 50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C씨는 변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재판장이 심리를 더 해 소송이 지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허위보도사실 "소송 당하는 판사들"
• 내 용 : 법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한 대한민국 사법부 도둑 법관들의 위법행위를 사실대로 보도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법관들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엉터리 보도를 하여 법조계에 당한 피해에 설상가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언론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 주장

법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한 사실보도이며, 법관에 대한 소송 남발로 판결이 위축될 수 있다는 공익적 보도이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과 관련해 7억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Ⅰ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0
청 구 명 :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총풍 주역' 한○○ 씨 공갈혐의 또 구속』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20일자 10면)
내 용 :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총풍' 사건의 3인방 가운데 한명인 한○○(46) 씨를 공갈 등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건설업체 대표 윤아무개 씨한테서 "케이티엔지 소유의 연초제조창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 받게 해주겠다"며 7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윤씨에게 "언론사에 회사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1999년 '총풍'이라 불리는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신청인 한○○는 윤기영 외 4명을 2006년 11월 20일자로 특가법상 무고죄 및 모해 위증죄로 고소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사건을 각하를 하였으나 결국 2008년 5월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사건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전에는 수사를 하지 않았음.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내 용 : 〈한겨레〉는 지난 2005년 12월 20일자 10면 '총풍 주역 한○○ 씨 또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씨가 "케이티앤지 소유의 연초제조창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 윤아무개 씨한테서 7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한씨가 받은 돈은 개인 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윤씨가 한전검침 사업본부장이 되도록 도와준 대가였음이 인정되어 부지 매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한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1일까지 한겨레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총풍 주역' 한○○ 씨…)의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별도의 배상이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과 관련해 7억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Ⅱ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1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총풍 주역' 한○○ 씨 사기혐의 구속』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5일 20:13)
내 용 : 〈2009서울조정39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390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9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총풍' 한○○ 씨 사기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0일 09: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과 관련해 7억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Ⅲ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2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닷컴 : 『'총풍 주역' 한○○ 씨 사기혐의 구속』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5일자 정치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390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39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닷컴 : 『'총풍' 한○○ 씨 사기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지부가 지부 차원의 총파업을 벌인 이유를 노조간부에 대한 고발 때문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산별 교섭 때문에…"』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7일자 12면)
내 용 : 노조 간부의 고발문제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9개 사 노조가 26일 오후 4시간 동안 지부 총파업을 벌였다. 대구지부는 24일에도 4시간 파업을 벌였고, 28일에도 4시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금속노조 대구지부 간부 고소고발 철회 전제 파업'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8월 27일자 사회면에 〈"산별교섭 때문에…" 고발된 노조간부 구하려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 사 노조가 연대 총파업〉이라는 제목으로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간부 고소고발 철회를 전제로 파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 사업장은 간부고소고발 철회를 파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가 없으며, 8월 24일, 26일, 28일 파업은 임단협 진행과정에 지부 집단교섭 쟁취를 위한 파업이었습니다. 이에 기사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 "대구지부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인 한국델파이는 지난 4월 이광우 대구지부장 등 노조간부 6명을 쌍용차 연대파업을 주도한 혐의로(업무방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또한 사실 확인 결과,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 사업장은 지난 4월 쌍용차 연대파업을 진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사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구지부는 작년에도 15일 간 지부차원의 파업을 벌였으며"라는 것도 사실 확인 결과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08년 지부차원의 파업을 2차례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이광우 대구지부장 등 노조간부 6명"이라고 직접 실명을 거론하여 일방적으로 당사자들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어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27일자 A12면 〈"산별교섭 때문에…"〉제목의 기사에 대해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간부에 대한 고발철회를 파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지부 차원의 파업 기간은 15일이 아닌 2일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9월 3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1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6일자 A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시스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 12:13)

내 용 :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지자체 간 유기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위해 구축한 'HAPPY24U'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구매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입찰제안서에 명문화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도와 업계에 따르면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이중 6,000만 원은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2억4,000만 원은 솔루션과 서버 구매, 포탈서비스 구축에 각각 사용했다.

이에 따라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해 7월 솔루션 구매를 위해 1억6,000만 원에 일반 경쟁 형태로 공고했다.

하지만 정작 입찰제안서에는 A업체가 특허 보유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특정했다. 이는 사실상의 수의 계약 형태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솔루션 구매 입찰 공고 시 수십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정업체를 특정한 것은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업체 측이 유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정정보도문(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뉴시스는 지난 9월 11일자 홈페이지/뉴스화면에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HAPPY24U'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A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 및 여러 객관적 사실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 및 업무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수행된 사업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2009년 9월 11일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HAPPY24U'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제안서에 A업체가 명문화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입찰제안서에는 업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A업체가 특허 보유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특정해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라는 것은 일부 업체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서버구매 입찰과정에서도 입찰항목이 모호해 참가하는 업체가 없었고, 결국 A업체가 낙찰돼 노골적인 밀어주기 의혹이 있으며, 서버구매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입찰항목은 조달청에서 비중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구매한 7대의 서버는 해피투포유 시스템을 포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품목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 대응투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군 개별홈페이지 구축사업 부분도 일부 업체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6일 09:00부터 10월 7일 18:00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시스〉 전국/강원 섹션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한다. 또한,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10월 30일까지

금 3백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 09:04)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동의)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네이버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12:13)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엔에이치엔(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분당벤처타운A동 9층
대표이사 김 상 헌
조정대리인 오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사제공 언론사(2009서울조정394 피신청인 뉴시스)가 전송해오는 〈별지〉 기재 보도문을 〈네이버〉의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네이버〉 뉴스 홈의 〈e옴부즈맨〉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 코너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1.

조정결정 이행결과

네이버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동의)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네이트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95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네이트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다 음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동의)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다 음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95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다 음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Ⅴ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동의)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드림위즈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95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드림위즈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 뉴스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Ⅵ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9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야 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동의)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야 후 : 『도사회복지협 'HAPPY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95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야 후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Ⅶ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천리안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동의)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천리안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95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천리안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Ⅷ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동의)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파 란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95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파 란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 09:08)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서해대학 이사회가 현 총장의 재임용에만 몰두하고 있고, 학교 정상화는 뒷전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학)군산기독학원 (이사장 문 ○ ○)
피신청인 : 전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라일보 : 『정상화보다 총장선임이 우선인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7일자 15면)
내 용 : 우리속담에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뒷전인 채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총장의 재임용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서해대학 임시 이사회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사실 군산노회와 익산노회의 갈등으로 불거진 서해대학의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마도 십수년 전부터 계속돼 온 문제기에 도내 교육계의 안타까운 문제로 항상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상화보다 총장선임이 우선인가"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7일자 기자수첩란(15면)에 "정상화보다 총장선임이 우선인가"라는 제목으로 (1)"우리속담에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뒷전인 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총장의 재임용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서해대학 임시 이사회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라고 보도하였으며, (2)"하지만 지난 달 말 수익용 재산 확보와 정관개정, 양 노회의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는 제3자로 분류돼 있는 Y모 총장이 이사회에 나서 30여분 간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정상화보다는 현재의 사태에 책임이 큰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3)"특히 15명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임시이사 가운데 상당수가 Y모 총장과 같은 고교 출신이거나 학연, 지연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금년 11

월 2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총장을 선출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인수인계토록 하여 대학운영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학 정상화의 선결 문제이며 이사회 본연의 임무이기에 최소 2개월 전에 총장 선출을 추진하였으며, (2) 지난달 말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Y모 총장이 출석하여 약10여분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의 분규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서해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례적으로 보고한 자리였지 총장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더더욱 현재의 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아시회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특히 임시이사회 구성은 교육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 분야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이사들을 추천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련의 공정하고 타당한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특정후보와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연관될 수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서해대학 이사회가 현 총장의 재임용에만 몰두하고 있고, 학교 정상화는 뒷전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학)군산기독학원 (이사장 문 ○ ○)
피신청인 : 전북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대학 정상화보단 총장선출이 먼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일자 4면)
내 용 : 〈2009전북조정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전북조정1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신청인이 진중권 씨를 근거 없이 비난했다고 보도했으나, 2004년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비판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변 희 재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시사저널 : 『"계산된 막말로 이목 끌려는 사람들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고,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죄로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받기 직전에 재판장의 입을 예의 주시했다고 한다. 재판장의 입 모양새가 앞으로 둥글게 내밀어지면 '무기징역', 반대로 입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 한 마디

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주류 사회에서는 '독설'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저급한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상대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날카로운 경구로 상대편의 급소를 찌르는 '촌철살인'이 아쉬운 때이다.

〈시사저널〉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들을 통해 막말이 판치는 사회 현상을 진단할 계획이다. 그 첫 주자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를 만나보았다. (중략)

소모전이 맞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변희재'에 관심이 없다. 그와 엮이는 것도 기분 나쁘다. 그런데도 변희재는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진다. 빅뉴스에서 '진중권'을 검색하면 100개가 넘는 글이 검색된다. 나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나를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모양이다. 예를 들어, 사이트(빅뉴스)에서 나를 씹으면 페이지뷰가 엄청 늘어난다. 소통에는 건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장사를 하려는 속셈이다. 변희재가 먹고사는 방법이 그것이어서 소모전이 끝나지가 않는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변희재에게 일방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시사저널은 진중권 씨와의 인터뷰 기사 "계산된 막말로 이목 끌려는 사람들 있다"에서 진중권씨의 자살세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게재했다.

"그 때는 일개 네티즌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내가 공식적으로 쓴 칼럼이나 기고 글도 아니다. 그런데도 수년 전의 극히 개인적인 글을 마치 공식적인 발언인 것처럼 다시 끄집어냈다. 나를 흠집내기 위해 들먹인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곧바로 사과도 했다."

이러한 진중권 씨의 해명과는 달리 진중권 씨의 자살세 발언은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의 인터뷰 전문가 지승호 씨와의 인터뷰 전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인터뷰는 웹진 서프라이즈 '지승호의 인터뷰 정치'란에 2004년 5월 19일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진중권 씨의 자살세 인터뷰 내용은 인터넷신문 빅뉴스에서 2009년 5월 25일 첫 보도를 했는데, 진중권 씨는 "극히 개인적인 글을 마치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처럼 다시 끄집어냈다. 나를 흠집내기 위해 들먹인 것이다"라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인한 빅뉴스 측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신청인 회사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한 솔루션 제공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았다 Ⅸ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진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허 ○ ○)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6.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도 사회복지협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1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394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아시아일보 : 『'HAPPY24U'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자 15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노조가 불법폭력파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사설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노조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Ⅰ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파업하는 코레일 노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7일자 35면)

내 용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는 7월부터 노조원을 상대로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투쟁채권'을 팔고 있다. 노조원 2만4000여 명 중 2만여 명이 35억여 원어치를 샀다고 한다. 연간 조합비가 110억여 원에 이르는 코레일 노조가 상환기일도 정하지 않고 이자도 안 주는 채권을 찍어 파는 신세가 됐다. (중략)

코레일 노조는 불법파업에 따른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비를 뭉텅이로 지출하고 있다. 사 측에 따르면 노조는 해고자 50명의 구호비로 작년에만 27억 원을 썼다. 노조가 해고자를 평균 연봉 5400만 원씩에 고용해 시위 등에 참가시키는 셈이니 이런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코레일 노조가 손해배상, 해고자 지원, 조합비 부족, 채권 발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불법 폭력 파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 신문 17일자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파업하는 코레일 노조'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철도노조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철도노조는 불법 폭력 파업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을 한 적은 있지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위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30일까지 동아닷컴(www.donga.com) 9월 17일자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 파업하는 코레일 노조」 제하의 사설과 "불법 폭력파업"이라는 표현을 "불법파업"으로 수정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닷컴 : 『[사설]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 파업하는 코레일 노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불법 폭력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사설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노조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Ⅱ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동아닷컴 :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파업하는 코레일 노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7일자 오피니언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0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0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동아닷컴 : 『[사설] 조합원 돈 끌어다 불법 파업하는 코레일 노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04의 합의사항 참조〉 □

경찰관인 신청인이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6번이나 돌려보내는 등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나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민생치안의 현주소/경찰, 소액 사기사건 '소극적'』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26일 21:42)
내 용 : ▷앵커 : 피해 금액이 천만 원이 안 되면, 경찰에 고소해도 잘 안 받아주고, 또 받아준다 해도 수사 진행이 더딥니다.

소액 사건엔 소극적인 경찰들의 실태를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여행사에 항공기 예약을 맡겼던 천여 명이 단체로 돈을 떼였습니다. 한 명에 수십만 원 씩 모두 4억 원. 이들은 여행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개별처리는 어려우니 피해 내역을 정리해 와라, 피해 액수를 통일 시켜라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를 6번이나 돌려 보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 소액 사건엔 소극적〉 제하의 보도
• 내 용 : KBS 방송국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26일 21:42경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한 여행사 사건의 항공기 예약을 맡겼던 1,000여 명이 단체로 돈

을 떼였다. 한 명에 수십만 원씩 모두 4억 원, 이들은 여행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개별처리는 어려우니 피해내역을 정리해 와라, 피해액수를 통일시켜라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를 6번이나 돌려보냈다""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8달이 훌쩍 지나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6번이나 돌려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늘어난 상태로 (고소장 접수 09. 1. 16~6. 3까지 고소장 접수가 됨) 피의자들이 항공권을 20억 원 상당을 발권 중 최종으로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이라는 변소에 대하여 수사 중 피의자 ○○○가 중간에서 '업무상 횡령' 약 2억3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밝혀내고 검사 수사지휘 3회(1차 09. 7.1/ 2차 7.30/ 3차 8.20자)에 걸쳐 받는 등 수사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정정보도가 필요하며, KBS 방송국의 잘못된 보도로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리며, 이로 인해 경찰 전체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14일까지 KBS 보도국장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서울지방경찰청장(참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영등포경찰서장,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내 용 : 뉴스9는 지난 8월 26일 민생치안의 현주소를 진단한 연속기획 코너를 통해 소액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방송은 경찰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여 수사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일부 내용이 오해의 여지가 있게끔 보도되었고,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나○○ 경위께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방송에 포함되었던 점에 대해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대표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직업소개소들이 소개요금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는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Ⅰ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일용직 근로자에 '소개 수수료' 까지 떠넘겨』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14일 21:00)

내 용 : ▷앵커 :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하는 직업

소개소들의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업소개소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의 일당은 7~8만 원선, 여기에서 직업소개소 수수료 명목으로 10% 정도를 떼이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일용직 근로자에 '소개 수수료'까지 떠넘겨"의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4일 〈KBS 뉴스9〉 프로그램에 "일용직 근로자에 '소개 수수료'까지 떠넘겨"라는 제목으로 "직업소개소들은 일감을 많이 따오기 위해 수수료 부담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하여 마치 전국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구직근로자에게 소개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 협회인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발표에 다르면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에 근로자의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직업소개소들이 소개요금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는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KBS인터넷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인터넷 : 「뉴스9」 프로그램 『일용직 근로자에 '소개 수수료'까지 떠넘겨』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0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직업소개소들이 소개요금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는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Ⅲ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0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네이트 : 『일용직 근로자에 '소개 수수료'까지 떠넘겨』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0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직업소개소들이 소개요금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는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Ⅳ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다 음 : 『일용직 근로자에 '소개 수수료'까지 떠넘겨』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0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직업소개소들이 소개요금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는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Ⅴ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드림위즈 : 『일용직 근로자에 '소개 수수료'까지 떠넘겨』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1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0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0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호객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2.
처리결과 : 취하

보도내용

KBS-2TV : 「무한지대」 프로그램 『대한민국 피서 1번지 - 해운대 속으로 Go Go』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20일 19:10)
내 용 : (전략)
▷신청인 : 백사장에 모래 다~닦아 놓았습니다.
▷나레이션 : 피서객 끌기 위한 파라솔 맨들의 치열한 백사장 자리 전쟁이 시작됐고, 짐 들어주기 애교작전은 기본이요. 자기 구역 물관리를 위한 특별 서비스까지.
▷신청인 : 동방신기도 있고 젝스키스도 있어요. 동방신기나 젝스키스 멤버들이랑 비슷한 피서객들 근처에 앉히려고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신청인을 비방하는 진중권 씨의 인터뷰를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변 희 재
피신청인 : 야 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3.
처리결과 : 각 각하

보도내용

야 후 : 『송지헌의 사람IN』 프로그램 (2009년 8월 20일)
내 용 : (전략)
▷송지헌 : 섭외과정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진중권 : 섭외과정이요?
▷송 : 저희가 변희재 씨와 마주앉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진 : 예,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송 : 같이 앉을 사람이 있고 같이 못 앉을 사람이 있고 그러십니까?
▷진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논쟁이

지만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저에 대해 스토킹을 거의 하다 싶고, 예를 들어 허경영 씨와 박근혜 씨 같이 나오라 하면 박근혜 씨가 거부하겠지요. 당연히, 그 정도의 권리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진 : 저는 87년 이후 단 한 표도 민주당한테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살아 생전에 강하게 비판했고, 아마 변희재 씨도 그것 때문에 저와 첫 인연을 맺었고, 내가 김대중 정권 옹호하는 사람들 비판했고 그 쪽 편에서 서서 저와 싸운 것으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중략)

▷송 : 변희재 대표에게 망언으로 유명세를 타려 한다고 비판하셨는데요. 그건 진중권 씨 한테도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진 :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나 (중략)

▷송 : 진 전 교수가 확실한 건 변 대표에게 변 대표는 망언을 해야 유명세를 탈 수 있다 비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야후코리아는 지난 8월 20일 야후 Live 독점 방송 송지헌의 사람IN에서 진중권 씨를 초청하여 1시간 분의 방송분을 내보냈으나,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되어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반론문을 게재합니다.

첫째, 야후코리아의 송지헌 사회자가 변희재 씨와 공동 출연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진중권 씨는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앉을 이유가 없다"며 "예를 들어 허경영 씨 하고 박근혜 씨 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면 박근혜 씨가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변희재 씨를 스토커로 비유하며 명예훼손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야후코리아 측은 변희재 씨에게 출연요청을 하지 않았고, 변희재 씨는 그 이후에 "진중권 씨와 나는 법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서 애초에 공동출연하는 것은 부적합한 관계"라 주장했습니다. 야후코리아는 당사자에 요청도 하지 않은 채, 그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한 데 대해 변희재 씨에게 사과드립니다.(중략)

이외에도 야후코리아의 1시간 가량의 인터뷰는 절반 이상이 변희재 씨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채워져 있기에, 야후코리아는 변희재 씨가 보내온 반론문을 게재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변 희 재
피신청인 :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야후코리아 독점 Live 방송 시작 전에 사회자 송지헌 씨의 멘트로 [별지1]의 반론문을 읽도록 하고, 야후코리아 뉴스면 메인화면에 위 반론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송지헌의 사람IN」 코너에 게재된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동영상 중 일부 신청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급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별지1]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영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우선 피신청인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의미하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 우선 피신청인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중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하여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며,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라 함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고(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등은 제외),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조 제20호 및 제2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 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등이 있다.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인터넷 관련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하여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신청인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 대상은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영상이라는 점에서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반론보도 등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신청인 주장과 같이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대한 필요성만으로는

언론중재법의 관계조항을 신청인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조항에서도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이 언론보도의 제공 또는 매개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등 관계규정에 정해진 반론보도 등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09. 10. 29.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권한을 악용해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대한의사협회 (경 ○ ○)
피신청인 : EBS-R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EBS-R : 「직장인의 성공시대」 프로그램 (2009년 8월 28일 13:00)

내 용 : 요즘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권한을 악용해서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수량의 물건을 사서 보관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①

① 사재기 ② 초재기 ③ 키재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타미플루 사재기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8일 '직장인의 성공시대' 프로그램에서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권한을 악용해서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며, 전국 10만 의사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사명감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임시상담소 운영 및 대국민 손씻기 운동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번 방송으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국가적 재난 방지를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와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 ○ ○

피신청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도곡2동 463
사장 구 관 서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EBS 라디오방송 직장인의 성공시대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 방송과 동일한 방송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반론보도문 내용을 EBS 라디오방송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가. 제 목 : 타미플루 사재기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8일 '직장인의 성공시대' 프로그램에서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권한을 악용해서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며, 전국 10만 의사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임시상담소 운영 및 대국민 손씻기 운동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번 방송으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국가적 재난 방지를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와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8월 28일 13:00 〈직장인의 성공시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부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권한을 악용해서 신종플루 치료제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퀴즈를 방송한 데 대해, 신종플루 및 치료제 수급대책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신종플루 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 전국 10만 명의 의사들은 신종플루의 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치료제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방송되어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알 수 있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신청인이 반론을 구하고 있는 대상 방송이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가 전혀 없고, 또한 방송 내용 중 '일부 의사들'이라는 표현만으로 신청인 협회의 구성원인 전체 의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라는 집단표시로 인해 회원수가 10만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을 가진 신청인 협회 소속 의사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신청인이 언론중재법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1. □

등록금 횡령 등의 사립대학 비리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대학의 명칭과 영상을 보도하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대학교 (총장 박 ○ ○) 외 1인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 『사학재단, 비리는 선택과목』 제하의 보도 (2009년 8월 11일 22:00)
내 용 : (전략) ▷나레이터 : 학생들이 학교 대신 서울의 한 호텔에 몰려왔습니다.
▷이시행/세종대 총학생회장 :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희생돼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학재단, 비리는 선택과목'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11일 "사학재단, 비리는 선택과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책임을 물어 임시이사를 파견한 곳 중에 세종대가 포함되고, 세종대 재단 이사회 개최 장면을 보도하면서 학교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로 퇴출된 전 재단의 복귀 수순'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대학교 및 위 세종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세종대학교는 등록금 관련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학교운영의 비리문제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실도 없으며,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2009년 7월 20일 정관 등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세종대학교 총장을 선출한 것이고,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 주○○은 이사로 재직 중이던 세종투자개발주식회사의 회계부정사건(횡령)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각종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학교법인 대양학원에는 학교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소위 사학비리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 □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2층을 민박으로 사용하는 등 직위를 남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PR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강원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강원일보 : (1)『행정사각지대 오지마을 이장 횡포?』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자 12면)
내 용 : 춘천의 오지마을 주민들이 수년에 걸친 이장의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다.
20일 춘천의 모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은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농산물 저장 창고는 물론 마을회관마저도 없다. 1998년 주민들이 모은 마을자금 1,000만 원과 시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하기로 한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이장 소유의 부지에 조성됐다. 현재 이장은 저온저장고 2층에 가정집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는 민박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후략)

(2) 『행정당국 오지마을 이장 횡포 방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2일자 5면)
내 용 : 수 년간 이장의 횡포에 시달린 춘천 오지마을(본보 21일자 5면 보도)에 대해 행정당국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와 해당 면사무소는 1998년 저온저장고가 건립된 이후 이장이 민박 시설로 활용, 영업을 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3)『경찰, 춘천 오지마을 이장 횡포 '본격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5면)
내 용 : 춘천 오지마을 주민들이 이장의 횡포에 피해(본보 21·22일자 5면 보도)를 입은 것에 대해 22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중략)
경찰은 이번 주 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마을회관 매매 경위와 저온저장고 시설 마을 주민들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9월 21일자 12면(사회면)에 『행정사각지대 오지마을 이장 횡포』와 9월 22일자 5면(사회면)에 『행정당국, 오지마을 이장 횡포 방치』, 9월 23일자 5면(사회면)『경찰, 춘천 오지마을 이장 횡포 '본격 수사'』 제목으로 「춘천시 오지마을 이장이 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2층을 민박으로 사용하며, 주민을 속여 이장의 동생이 마을회관을 계약금만 지불 후 몇 년째 거주한다며 결국 이장의 횡포에 대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사망한 원주민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2m석축과 수십년 된 소나무를 마구잡이 벌목하여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장이 동생의 주소지를 옮겨 마을 희망근로 임금을 타내는 등 20년 간 이장으로 근무하며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려 마을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시 주민들이 모은 자금은 일체 없었으며 시 보조금으로 1,500백만 원 지원받아 건립한 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표고작목반의 것으로 건립 시 땅 기부자가 없었기에 1998년도에 이장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할 개인소유의 부지에 먼저 저온저장고를 조성했으며, 2층에 사비를 들여 민박을 지어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표고작목반과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저온저장고 사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에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 태풍으로 반 붕괴된 마을회관을 시에서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위해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사용이 어려워 1년여 정도를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회관 신축을 시와 면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약간의 보수만 가능할 뿐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주민동의만 이뤄지면 매매, 명의변경을 하면 신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신축 시에는 시 보조금 외에 많은 자부담 충당금이 필요한 사안으로 주민들과 여러차례 총회를 걸친 결과 매매를 하여 자부담 충당금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귀향하여 살던 이장의 동생이 매입을 희망하기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부지의 명의자가 수자원공사와 타 지역거주 주민 등 2~3명으로 이뤄져 복잡하여 쉽게 명의변경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신축 시 명의변경 시 자부담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불하기로 주민들과 여러차례 총회를 걸쳐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강원일보 : 『수몰 오지마을 '청정 친환경마을' 되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5일자 16면)
내 용 : 1973년 10월 소양강댐 준공 후 수몰된 춘천의 수몰지역이 새 농어촌 건설운동으로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춘천시 북산면 조교2리는 댐 조성 후 주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고 마을도 오지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이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수몰지역에 산간 오지가

바위산과 매봉 등의 준봉을 뒤로 하고 소양호를 바라보는 명당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다.

농토가 적어 농산물 소득이 적었지만 기온이 낮아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져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표지역이 됐고 장뇌삼의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높아지고 있다. (후략) □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2층을 민박으로 사용하는 등 직위를 남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PR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인터넷 강원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인터넷 강원일보 : (1) 『이장이 완장 찼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자)
내 용 : 〈2009강원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2층을 민박으로 사용하는 등 직위를 남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PR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구 글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구 글 : 『이장이 완장 찼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자)
내 용 : 〈2009강원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2층을 민박으로 사용하는 등 직위를 남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PR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네이버 : 『이장이 완장 찼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자)
내 용 : 〈2009강원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2층을 민박으로 사용하는 등 직위를 남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PR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트 : 『이장이 완장 찼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자)
내 용 : 〈2009강원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2009강원조정13의 신청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매입한 주민 복지센터 건립 부지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3배 이상 비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감정평가를 거친 적절한 매입이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동곡동주민복지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아침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침신문 : 『광산구 동곡복지센터 건립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6일자 5면)
내 용 : 광주 광산구 동곡동 주민복지센터(이하 동곡 복지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동곡 복지센터 부지가 공시지가보다 세 배나 비싼 값에 팔려 온갖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주민복지회는 A농협 부지인 광산구 하산동 139-25번지의 1,413㎡(427평)를 동곡 복지센터 부지로 결정하고 지난 4월 토지 9억여 원과 건물 1억 500여만 원 등 모두 10억 500여만 원을 들여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 매입가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다는 반응이다. A농협 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79만 원인데 매입가는 평당 210만 원으로 약 세 배나 비싸다는 것.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공시지가는 실제 매매가의 70~75% 수준.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고 해도 매입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물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동곡 복지센터 부지에는 건축한 지 15년이 넘은 창고와 애호박선별장이 들어서 있는데, 주민들은 이들 건물이 1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동곡동주민복지회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6일자 사회면에 "동곡동주민센터 건립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동곡동주민복지회에서 추진중인 동곡동주민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곡동주민복지회에서는

• 토지 매입 비용이 턱없이 비싸다는 내용

1) 부지 매입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주민복지회와 동곡농협측에서 감정평가법인에 각 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계약했으므로 농협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2) 매입한 부지 주변에 거래된 부동산매매 사실로 보더라도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고

• 건물 매입 비용이 비싸다는 내용

이 부분 역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한 부분이며

• 입지 타당성이 결여 되었다는 내용

매입한 부지는 동곡동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으로 보나 주변 공공시설이나 상가 배치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6일자 사회면 "광산구 동곡동주민센터 건립 특혜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 광산구 동곡동 주민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동곡복지센터 부지가 지나치게 고가로 매입되었고, 입지 타당성도 결여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곡복지센터측은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20여개 마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부지선정을 하였고, 매입가격 또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건립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1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침의 신문 5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지가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침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원어민 강사인 신청인이 캐나다에 근무할 당시 여자 아이를 성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 웨인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각 각하

보도내용

조선닷컴 : 『[엉터리 원어민강사들] "한국 유부녀들은 남편 대신에…"일부 원어민 강사들 비하발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저질 외국어 강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알려온 '불법 외국어 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의 이○○(39) 씨는 "정부는 많은 외국인 강사들을 수급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 성범죄자 등 교육적 자질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이 최근 부산에서 적발한 원어민 강사 J(43)씨는 본국인 캐나다에서 교사 일을 하다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수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을 일삼아 직무가 정지된 후 한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엉터리원어민 강사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7월 1일 디지털뉴스의 사회면에 [엉터리원어민 강사들]"한국유부녀들은 남편 대신에…"이라는 제목으로 「신문기사내용 중 이들이 최근 부산에서 적발한 원어민 강사 J(43)씨는 본국인 캐나다에서 교사 일을 하다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을 일삼아 직무가 정지된 후 한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도 부산의 모 군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는 이전에 몸담고 있던 모 어학원에서 수업 중 아이들을 핀으로 찌르고, 걸핏하면 무단결근하여 수업에 불성실해 해고 당한 바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원어민 강사 J씨(43)는 본국인 캐나다에서 교사일을 하다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 폭행 협박을 일삼은 사실도 없으며, 부산의 모어학원에서 수업 중 아이들을 핀으로 찌르고, 걸핏하면 무단 결근하면서 수업에 불성실해 해고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 웨인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부산분사무소 변호사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2-4
대표이사 김 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의 디지털뉴스(http://news.chosun.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주일 동안 게재하되, 제

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 7. 1.자 「[엉터리 원어민강사들] "한국 유부녀들은 남편 대신에…" 일부 원어민 강사들 비하발언 파문」제하의 기사를 통해 허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형태의 인터넷신문은 2009. 8. 7.부터 개정·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비로소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언론"에 포함되었으나(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제10호),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이 조정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신청인이 조정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정대상기사는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인 2009. 7. 1.에 보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30. □

광명시장이 시의원 의견과는 달리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을 반대했다고 보도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효 선)
피신청인 : 광명지역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명지역신문 : 『"김동철, 시장 맘대로 지하철 반대 마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지방자치면)

내 용 : 김동철 광명시의원이 1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토해양부가 광명시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조건으로 하안동에 2개의 지하철역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이효선 시장이 거절한 것에 대해 재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9년 9월 11일자 "시장 맘대로 지하철 반대 마라" 보도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에 대해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09년 9월 11일자에 "시장 맘대로 지하철 반대 마라"라고 보도가 된 기사제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효선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명시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국토해양부에 600만 평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이에 따른 연계교통망으로 지하철을 제의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져 『이 시장,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600만평 건설과 대중교통대책으로 지하철 제의』라는 제목으로 바로 잡습니다. (후략)

합의사항

• 제 목 : “시장 맘대로 지하철 반대 마라” 보도한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 지난 2009년 9월 11일자 “시장 맘대로 지하철 반대 마라”라는 제목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이효선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국토해양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 있느냐”는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 없으나, 다만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의 면담자리에서 600만 평의 신도시 건설을 요청하고 신도시 수용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에 따른 대중교통대책으로 학온동까지 지하철을 연결해 달라고 제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고위층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사실에 대해 취지가 다르게 보도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동철 의원이 지하철역사 6개의 신설을 제안한 요구에 대해서 이효선 시장은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부족으로 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효선 시장이 문현수 시의원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행태를 보였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효선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문현수 의원이 의원석에서 비아냥거린 발언을 한데 대해 대응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광명지역신문 인터넷판(www.joygm.com) 메인화면 중간에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009년 10월 6일 09:00시부터 10월 20일 24시까지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뜨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명지역신문 : 『“시장 맘대로 지하철 반대 마라”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6일자 오피니언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보도했으나, 상황실 근무를 마친 후 운영규정에 근거해 휴식을 취했을 뿐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연수송도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수송도신문 : 『연수署 형사과장 당직 ‘근무이탈’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7면)
내 용 :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이 당직을 서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과장은 지난 19일 오전 12시까지 2층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휴식차원에서 1층 자신의 방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이후 수 시간 동안 전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본지 기자가 2시부터 3시30분 사이 형사과장실 방문을 수차례 노크를 했지만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이후 본지 기자는 상황실을 비롯해 형사계 사무실을 찾아 나섰지만 K과장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형사3팀 한 직원에게 K과장의 출처를 묻자 ‘방에서 휴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또다

시 방을 찾았지만 방문이 잠궈진 상태로 오후 3시 30분까지 K과장은 보이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연수署 형사과장 당직 '근무지 이탈' 의혹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3일자 사회면에 "연수署 형사과장 당직 '근무지 이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K과장, 상황실 최고 책임자 불구하고 '한숨자고 일어났다' 안일한 답변, 오전 발생 절도사건 체크 못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할 일' 무책임 일관"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연수서 형사과장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당직 상황실장으로 오전 09:00~13:00까지는 상황실 정착근무, 오후 13:00~18:00까지는 상황부실장이 정착근무를 하는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의하여 오후 13:00~18:00까지 과장 휴게실에서 휴무를 취하였으며, 평소,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절도사건과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도가 없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형사팀장의 책임 하에 조사되어 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서 형사과 주무과장을 비롯해 상황실장으로 업무를 방조한 부분이 농후하다며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연수署 형사과장 당직 '근무지이탈' 의혹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9월 23일자 7면에 "연수署 형사과장 당직 '근무지이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연수서 형사과장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당직 상황실장으로 오전 09:00~13:00까지는 상황실 정착근무, 오후13:00~18:00까지는 상황부실장이 정착근무를 하는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의하여 오후 13:00~18:00까지 과장 휴게실에서 휴무를 취하였으며, 평소,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절도사건과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도가 없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형사팀장의 책임 하에 조사되어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서 형사과 주무과장을 비롯해 상황실장으로 업무를 방조한 부분이 농후하다며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14일 7면에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K과장, 상황실 최고 책임자 불구하고…)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수송도신문 : 『연수署 과장 '당직 근무지 이탈'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4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의혹 기사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시의회 광고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시사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일보 : 『폭로기사 입막음, 홍보예산 풀어 봉합』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1면)
내 용 : 본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편·불법허가 '논란'〈8월 31일자 1면 보도〉, '광주시, 편법 동원 의혹 "개선의지 있나"〈9월 7일자 1면 보도〉

와 관련, 이같은 사실을 주민의 제보로 인지한 모 지방지 기자의 폭로기사를 틀어 막기 위해 의장 독단으로 의회 홍보예산을 풀어 봉합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009년 홍보예산으로 2,200만 원을 책정해 지난 7월 3일 의회 3주년기념 홍보를 목적으로 광주시청 출입 중앙언론사와 지역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34개 지방지 중 17개 매체에만 지난 7월 7일자로 게재, 지난 7월 16일 의사과 과장전결로 H사는 220만 원 나머지 16개사는 110만 원씩 총 1,98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예산편성 당시 지출계획은 물론 의원들도 모르게 의회 의사과장이 임의 결성한 '광주시 출입기자 협의회' 자칭 간사와 협의해 입맛대로 17개사를 제외하고 광고비 집행을 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임의단체의 간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홍보예산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시의회를 상대로 혈세를 갈취한 것과 다름없다."는 최근의 지역정서와 맞물려 문제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데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폭로기사 입막음, 홍보예산 풀어 봉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1면에 "폭로기사 입막음, 홍보예산 풀어 봉합"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 본 신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편·불법 허가 논란"〈8월 31일자 1면 보도〉, "광주시, 편법동원 의혹 개선의지 있나"〈9월 7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이같은 사실을 주민의 제보로 인지한 모 지방지 기자의 폭로기사를 틀어 막기 위해 의장 독단으로 2009년도 홍보예산 2,200만 원을 풀어 봉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또한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일(7월 3일)이 끝난 7월 7일자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예산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집행된 2009년도 홍보예산 2,200만 원은 이상택 광주시의회 의장이 의장 건축물과 관련된 폭로기사를 틀어 막기 위해 집행한 것이 아니며, 신문에 광고가 게재된 날도 7월 7일이 아닌 7월 3일임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9년 9월 8일자 1면 「폭로기사 입막음, 홍보예산 풀어 봉합」제하의 기사에서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모 기자의 폭로기사를 막기 위해 광주시 의장이 독단으로 홍보예산을 풀어 봉합했으며, 의회 개원 3주년 기념 광고를 기념일이 지난 7월 7일 신문에 게재하고 예산이 불편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보도했으나 신문에 광고가 게재된 날은 7월 7일이 아닌 기념일 당일인 7월 3일이었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홍보예산 2,200만 원은 폭로기사를 막기 위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광주시의회 의장의 입장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일보〉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주민, "철저한 조사 통해 주민의 혈세 회수해야")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시사일보〉 지면 보도 이후 3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프랑스 모기업의 재정난과 최대 주주의 압력 등으로 인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대표이사 강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발레오 전장시스템 매물로 나올 듯』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8일자 투자뉴스면)

내 용 :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발레오 전장시스템 코리아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母) 기업 발레오의 재정난이 심각해진데다 발레오 전장마저 지난해 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데 따른 구조조정 예상이다.

일부 투자은행(IB)들은 발레오 전장 이전에 한라공조 매각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한라공조 대주주인 미국 비스테온(Visteon)이 최근 파산보호 신청(Chapter 11)을 하자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비스테온이 청산보단 존속되는 게 유리하다는 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장 우량한 계열사인 한라공조의 매각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발레오 전장시스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18일자 stock 투자뉴스면에서 '발레오 전장시스템 매물로 나올 듯' 이라는 제목으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이하 VESK)의 대주주인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의 재정난과 발레오 지분 18% 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 파더스 캐피탈의 태도 변화에 따라 VESK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VESK는, VESK 내외부적으로 회사 매각에 대한 그 어떠한 신호도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다, VESK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발레오 그룹의 부회장 뤽 블라리오가 VESK 대표이사 강○○ 사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발레오 그룹의 입장은 'VESK의 매각계획이 없으며 발레오 그룹의 대주주인 Pardus로부터도 VESK 매각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없다' 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발레오 전장시스템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2009년 8월 18일자 「발레오 전장시스템 매물로 나올 듯」제하의 기사에서 발레오 전장시스템 코리아(주)(이하 'VESK')가 모(母)기업 발레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발레오의 최대주주인 파더스(Pardus) 캐피탈이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VESK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VESK는 회사 내외부적으로 회사 매각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VESK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발레오 그룹의 부회장 뤽 블라리오가 VESK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VESK의 매각 계획이 없으며 파더스로부터도 VESK 매각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2009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머니투데이〉 'stock 투자뉴스' 면 주요뉴스 목록 상위 15번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활자크

기 및 줄간격으로 이어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발레오 전장시스템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투자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기존도로를 불법으로 패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정정 및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3
청 구 명 : 정정·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제니스건설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부일보 : 『아파트 승인하며 기존진입로 폐쇄』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23면)

내　　용 :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 일원의 제니스건설(주)이 낸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부지 내 현황도로인 진입도로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폐쇄해 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도로는 시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포장한 도로인데도, 이같이 대체도로 없이 기존 도로 폐쇄를 허가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추후보도문

• 제 목 :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기존 통행로 폐쇄 관련 정정 및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9월 23일자 사회면에 "용인시, 아파트 승인하여 기존도로 폐쇄"라는 제목과 "수천만 원 들인 포장도로… 우회로 없이 150m 구간 파손"이라는 부제목으로, 제니스건설(주)가 불법적으로 주변토지의 유일한 통행로를 폐쇄하여 주변 토지 이용을 막았고 용인시는 현장조사 등 없이 그 폐쇄를 허가하였는 바, 이를 보면 용인시와 신청인이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도로폐쇄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니스건설(주)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제니스건설(주)가 사유지에 산책로통행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써 법률상 도로가 아닌 통행로로, 거주민이 없어 도로개설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지역으로 용인시 사업승인 이후 펜스를 설치한 지 상당기간 경과하여 기존 통행로 폐쇄는 이미 예정되어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었고, 공사전까지 주민편의를 위해 산책로로 활용하도록 개방하였던 것입니다. 제니스건설(주)는 위 기사에 언급된 도로를 독자적으로 적법하게 폐쇄할 수 있어 용인시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용인시와 유착의혹을 산다는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법원이 기존 통행로를 대신할 충분한 대체통행로가 존재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도 있으며, 위와 같은 폐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도 없고, 기존 통행로 역시 150m가 아니라 109m이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이 나와 수사가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확인된 사실과 다른 해당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기존 통행로 폐쇄 관련 정정 및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9월 23일자 사회면에

"용인시, 아파트 승인하며 기존도로 폐쇄"라는 제목으로 제니스건설(주)가 불법적으로 주변토지의 유일한 통행로를 폐쇄하여 주변 토지 이용을 막았고 용인시는 현장조사 등 없이 그 폐쇄를 허가하였는바, 이를 보면 용인시와 신청인이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도로폐쇄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니스건설(주)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제니스건설(주)는 위 기사에 언급된 통행로를 독자적으로 폐쇄할 수 있어 용인시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용인시와 유착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울러 법원이 기존 통행로를 대신할 대체통행로가 존재하여 우헌묘원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도 있고, 위와 같은 폐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이 없으며, 기존 통행로 역시 150m가 아니라 109m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도 이미 검찰에서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이 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에 사실과 다른 위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9년 10월 12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소제목 활자 크기(인근 토지주들 반발에 市 "문제없다"… 검찰 수사중)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부일보 인터넷판(www.joongboo.com)에 게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기존 통행로 폐쇄 관련 정정 및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기존도로를 불법으로 패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정정 및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4
청 구 명 : 정정·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제니스건설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다 음 : 뉴스검색란 『용인시, 아파트 승인하며 기존 진입로 폐쇄』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21:09)

내 용 : 〈2009경기조정5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추후보도문

〈2009경기조정5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합의사항

〈2009경기조정5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다 음 :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기존 통행로 폐쇄 관련 정정 및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반기독교적인 교리를 설파하는 등 이단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1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교회와이단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교회와이단 :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특집면)

내 용 : 신오순절주의(Neo Pentecostailsm)자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거듭난 후에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며,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막16:17)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신오순절주의자들은 현대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주장하므로 일명 은사주의자들이라고도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강○○ 목사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교회와 이단』은 2009년 8월호 특집3면에 PBM 성령치유 훈련원 강○○ 목사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17쪽에 걸쳐 기사를 게재하였고, 위 기사로 인하여 강○○ 목사와 성서중앙교회 300여 성도 및 초교파적으로 PBM 성령치유 사역을 같이 해온 전국 2000여명 목회자 및 동역자에 대한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다. 게재된 기사 내용 대부분이 강○○ 목사의 강의 맥락이나 설교 의도와는 빗나가 있으며, 취재기간동안 강○○ 목사와 사실 확인 하나 없이 부분 발췌와 짜 맞추기식의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김기동 베뢰아 귀신론으로 몰아세워 이단 취급하므로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올바른 성령사역을 위해 노력해온 강○○ 목사와 교회와 선교단체에 큰 손해를 입혔으며 한국 교계의 건전한 교단의 교회와 선교회 대표 강○○ 목사의 개인적 인격모독(명예훼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강○○ 목사 이단으로 규정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 명확히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 (후략)

합의사항

• 제 목 : 강○○ 목사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피신청인은 교회와 이단 2009년 8월호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중 62쪽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김기동 베뢰아 귀신론 주장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강○○ 목사는 베뢰아 귀신론을 따르지 않는 입장으로 그 근거로 본인의 저서 [성령과 치유] 111쪽에서 '질병의 원인'을 '12가지'로 정리해 놓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교회와 이단〉 2009년 11월호 특집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과 동시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교회와 이단' 표지에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는 '교회와 이단'의 일반적인 표지 제목 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추후 신청인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경우, 신청인과 충분히 업무협조를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

월부터 다음 이행월까지 신청인에게 매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교회와이단 : 『강○○ 목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호 7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교수인 신청인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도일보 : 『목원대 논문 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목원대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A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인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장은 해당 교수들의 징계 의결 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A교수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이 기간 중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수업 등 직무를 할 수 없고 임금의 3분의 2를 감하게 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중도일보는 2009년 6월 29일자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A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인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장은 해당교수들의 징계의결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A교수 등은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이 기간 중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수업 등 직무를 할 수 없고 임금의 3분의 2를 감하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제 11민사부 소송결과 A교수 등 2명은 위 내용에 대해 9월 16일 "정직 3월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목원대 정직처분 교수 무효판결 받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9일자 사회면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A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9월 16일자로 A교수 등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바 없어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목원대학교 학교법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행한 것으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에 2009년 10월 13일까지 사회면 우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목원대

정직처분…)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목원대 논문…)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목원대 정직처분 교수 무효판결 받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교수인 신청인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옥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도일보 : 『목원대 논문 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2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대전조정22의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대전조정22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목원대 정직처분 교수 무효판결 받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연구소가 실시한 여수시정 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남해안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남해안신문 : 『이상율의 세상보기-여수 시정수행 평가 토론회를 보고』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8일자 7면)
내 용 : 지난 16일 오후 6시 진남종합경기장 내 평생학습센터 대강의실에서 여수시 민선 4기, 3년 시정 평가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중략)
오현섭 시장의 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정수행 평가에서 응답자 517명은 매우 잘함 35명 6.8%, 잘함 200명 38.7%, 보통 212명 41.0%, 잘못함 45명 8.7%, 매우 잘못함 8명 1.5%, 무응답 17%로 긍정적 답변이 우위를 차지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대체로 부정적 반응이 높을 것으로 보였던 일반적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인 듯하다.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했던 패널들로써는 긍정적 반응이 높은 것이 맘에 걸렸다. 장내의 분위기가 시장

에 대한 우호적 입장으로 바뀌는 것에도 짐이 됐다. 패널들은 적잖이 당혹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남해안 신문 이상율 주필 겸 대표의 '여수 시정수행 평가 토론회를 보고'를 읽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귀신문 199호(2009년 7월 28일 발간)7면 '이상율의 세상읽기-여수시정토론평가회를 보고'의 해당기사에서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난 후 토론회의 패널들이 '적잖이 당혹했다', '패닉상태에 이른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참석했던 패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실제로 토론회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분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패널들이 당혹해하거나 패닉상태에 이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시민의 쟁점이 됐던 이순신 광장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이 예상돼 작위적으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 연구소가 시행한 여론조사가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듯이 여론조사 항목의 포함/불 포함 여부를 심판하려는 듯이 표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왔던 연구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특히 시정수행 평가시 긍정적인 대답이 45.5%(매우 잘함 6.8%, 잘함 38.7%)나온 것에 대하여 본 연구소 내에서 재조사까지 주장하였다는 언급은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높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NGO 성격의 연구기관인 본 연구소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였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심한 불신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여 본 연구소는 이에 대해 반론을 한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28일자 7면 〈이상율의 세상보기〉 "여수 시정수행 평가 토론회를 보고" 제목의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시정 만족도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연구소 측은 여수시정에 관해 "내부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주장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는 칼럼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해안신문 7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이상율의…)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남해안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8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시설이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서 현재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Ⅰ (보도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여천노인장기요양센터 (대표 오 ○ ○) 외 1인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라인」 프로그램 『탈법 노인 요양센터 명의만 바꾸면 '논란'』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22일 23:00)
내 용 : 서비스 시간 등을 부풀린다는 KBS의 보도로 영업정지를 받은 강원도 춘천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명의를 바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중략)
전남 여수의 한 노인요양시설도 자격이 없는 요양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정취소 4개월의 행

정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대표 명의로 된 같은 장소의 다른 노인요양시설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개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행정 처분까지는 승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탈법 노인 요양 센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또는 탈법 노인 요양 센터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2일 뉴스프로그램에서 "탈법 노인요양센터"이라는 제목으로 전남 여수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자격 없는 요양사를 고용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으며,

본 방송이 "연수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행정처분이 시설에만 내려졌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는 이 시설 대표의 다른 노인요양시설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방송하여 마치 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오인케 만들어 '편법운영'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례로 보도하였으나, 해당시설에 확인한 결과, 소개 된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모시고 와서 살피는 요양 사업만 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시설은 방송에 소개 된 장소가 사업의 주소지와 연락처로만 사용되고 이 시설의 요양사업은 100% 가정 방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방송이 보도한 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착오로 잘못 내린 처분이며 현재 법원에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KBS보도본부장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2009년 10월 13일까지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여천노인장기요양센터에 내려진 행정처분명령서의 행정처분내용 위반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거짓자료의 제출로 인한 것이고, '무자격 요양사 고용' 사유는 기재된 바가 없다.

• 피신청인은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에 게재된 각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을 2009년 10월 13일까지 삭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 기재 삭제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2009서울조정421(피신청인 KBSi) 사건을 취하한다.

• 신청인은 위 항 기재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194호) 및 그에 부수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자료로 위 항 기재 공문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보도삭제〉 □

신청인 시설이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서 현재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Ⅱ (보도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여천노인장기요양센터 (대표 오 ○ ○) 외 1인
피신청인 : KBS i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2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i : 「네트워크」 프로그램 『'탈법' 노인요양센터』 제하의 보도 (2009년 9월 22일 23:28)
내 용 : 〈2009서울조정4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2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처리결과

〈보도삭제〉 □

방통위가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성 백신을 우수백신으로 선정했다고 잘못 보도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피신청인 : 지디넷코리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지디넷코리아 : 『방통위 우수백신 선정 "엉터리"』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최신 뉴스 섹션)
내 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우수 백신 선정이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백신들도 포함시켰다는 누리꾼 비판이 거세다.

19일 방통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 134종 중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체 선정한 15종을 발표했다. 안철수연구소(안랩) V3와 이스트소프트 알약 등 유명 백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이 명단에 도대체 왜 끼었는지 이해가 힘든 제품들도 있다는 것. 제작 회사가 관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백신들도 당당히 들어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통위 우수백신 선정 '엉터리'"정정보도문(또는 우수백신 선정 '엉터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20일자 홈페이지 뉴스 초기화면에 "방통위 우수백신 선정 '엉터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신업체가 백신관리를 중단한 제품도 방통위의 선택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한 누리꾼의 이야기를 빌어 방통위의 실태조사 자체가 크게 잘못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실태조사 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백신은 주기적으로 엔진을 업데이트하여 서비스 중이었고, ′06년부터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합리적으로 조사되어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해당기사를 통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신력과 명예에 손상을 끼친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8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지디넷코리아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서강대학교가 연구실적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실질적 교수연봉제'를 도입하고, 강의평가 점수를 공개해 점수가 낮은 교수에게 별도로 강의교육을 하기로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서강대도 교수 연봉제』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일자 10면)
내 용 : 서강대가 내년 3월 임용되는 신임 교원부터 연구성과로만 급여를 지급하는 교수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강대는 또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수강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책자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도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후략)

(2)『서강대 교수평가 점수 학생들에 공개』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8일자 A10면)
서강대가 내년 3월부터 교수 전원의 강의평가 점수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점수가 낮은 교수들에게 별도의 강의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 동안 1500여 개 강의를 맡을 교수 800여 명의 강의평가 점수가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실명으로 공개된다. 서강대는 강의평가 점수를 교수들의 승진·재임용과 연봉에 반영할 방침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1)

• 제 목 : '서강대도 교수 연봉제'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일자 사회면에 "서강대도 교수 연봉제"라는 제목으로 "서강대학교가 내년(2010년) 3월 임용되는 신임교원부터 연구성과로만 급여를 지급하는 교수연봉제를 도입하고", "학생들이 수강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책자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강대학교에 다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2)

• 제 목 : '서강대, 교수평가 점수 학생들에 공개'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서강대, 교수평가 점수 학생들에 공개"라는 제목으로 "서강대가 내년 3월부터 교수 전원의 강의평가 점수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점수가 낮은 교수들에게 별도의 강의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강대학교에 다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서강대학교가 연구실적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실질적 교수연봉제'를 도입하고, 강의평가 점수를 공개해 점수가 낮은 교수에게 별도로 강의교육을 하기로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이 ○ ○)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9서울조정423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조선닷컴 : 『서강대도 교수 연봉제』 제하의 기사(2009년 9월 1일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2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학교가 불법찬조금을 모금하고 촌지를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종과학고등학교 (교장 신 ○ ○)
피신청인 : 구로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구로타임즈 : 『불법찬조금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8일자 1면)

내 용 : 지역내에 소재한 모 고등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둘러싸고 학교와 한 학부모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를 비롯한 같은 계열의 일부 특정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일괄적으로 반비를 거둬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촌지를 줬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현장의 촌지 악습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학부모의 민원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교 불법찬조금 모집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학교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 신분상 처분'을 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지만 시교육청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불법찬조금 언제까지…'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8일자 319호에 "불법찬조금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지역내에 소재한 모 고등학교에 대해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이에 대해 감사를 받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주체가 되어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으며, 스승의 날이나 명절 등에 담임과 부담임에게 20~50만 원을 건네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제319호(2009년 9월 28일자) 〈불법찬조금 언제까지…〉제하 기사로 지역내 모 고교에서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을 모금하고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촌지를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반비명목으로 모금한 것이고, 명절 등에 교사들에게 촌지로서 전해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구로타임즈' 2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구로타임즈가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인터넷 '구로타임즈'(http://www.kurotimes.com/)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구로타임즈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8일 08: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82cook'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기사화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새벽1시 택배 배송? '타박보다 격려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사회 섹션)

내 용 : 9월 28일 새벽 1시경. 주부 ○씨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택배아저씨의 벨 소리에 잠을 깨 시계를 보니 밤 12시 45분. ○씨는 얼마 전만 해도 저녁 10시 넘어 택배가 오면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냐고 타박했었지만, 이날은 택배아저씨에 대한 안쓰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추석명절을 맞아 뉴스와 신문에서 연중 최고 택배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999,999원 □

신청인이 '82cook'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기사화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새벽1시 택배 배송? '타박보다 격려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4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999,999원 □

신청인이 '82cook'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기사화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트 : 『새벽1시 택배 배송? '타박보다 격려를' 』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4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999,999원 □

신청인이 '82cook'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기사화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2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다 음 : 『새벽1시 택배 배송? '타박보다 격려를' 』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4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9,999,999원 □

신청인이 '82cook'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기사화했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드림위즈 : 『새벽1시 택배 배송? '타박보다 격려를' 』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4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9,999,999원 □

신청인이 '82cook'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기사화했다 Ⅵ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야 후 : 『새벽1시 택배 배송? '타박보다 격려를' 』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4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9,999,999원 □

신청인이 '82cook'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기사화했다 Ⅷ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파 란 : 『새벽1시 택배 배송? '타박보다 격려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4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9,999,999원 □

신청인이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용돈을 준 기업인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뷰스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3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뷰스앤뉴스 : (1) 『백○○ "정운찬에 용돈 준 기업인들 더 있어"』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2일자 정치면)
내 용 :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1천만 원의 용돈을 준 백○○ 영안모자 회장이 "나와 몇몇 기업인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몇 차례 줬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백회장은 정 내정자에게 자신이 용돈을 주었다는 〈신동아〉 최신호 보도 직후 〈신동아〉에 전화를 걸어 "'때 묻지 말고 살라, 연구비로 쓰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략)

(2) 『정운찬 "다른 기업인들의 도움 받은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2일자 정치면)
내 용 :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22일 다른 기업인들도 자신에 돈을 줬다는 백○○ 영안모자 회장 주장에 대해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회장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백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백회장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백○○ "정운찬에 용돈 준 기업인들 있어"」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9년 9월 22일 3차례에 걸쳐 「백○○ "정운찬에 용돈 준 기업인들 있어"」, 「정운찬 "다른 기업인들의 도움 받은 적 없어"」라는 기사 제목 아래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 1천만 원의 용돈을 준 백○○ 영안모자 회장이 "나와 몇몇 기업인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몇 차례 줬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백○○ 영안모자 회장은 "나와 몇몇 기업인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몇 차례 줬다"고 말하거나 "다른 기업인들도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바가 없으며

〈신동아〉에 전화를 걸어 "때묻지 말고 살라, 연구비로 쓰라는 취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 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회원수 부풀리기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전국자두연합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김천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김천신문 : 『멍든자두』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일자 2면)
내 용 : 자두와 관련한 3개 단체 임원진들 사이에 자두특화사업의 이권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자두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9년 9월 3일자 제2면에 "멍든 자두" 제하의 기사에서 김천시 자두연합회에서는 전회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두물류 발전연구회에 가입시켜 회원수를 부풀리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의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있으며, 양각리의 미생물 발효시설 건립부지를 이사회의 동의없이 자두연합회 직인을 사용해 계약한 사실이 있고, 또한 토지소유자를 통해 피해보상금 900여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의혹이 있으며, 지난 7월 4일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초청해 전통 과일 자두 알리기 체험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두연합회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자두물류발전연구회원과 작목반연합회원들이 참석해 기존 자두연합회를 제외시키는 한편 김천시청에는 이 행사에 따른 통보를 2일전에 해서 시 관계자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자두물류 발전연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두농업인들이 자두 물류발전에 뜻을 모아 설립한 김천지역의 여러 영농법인중 하나이며, 양각리의 미생물 발효시설 건립부지를 이사회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자두연합회 직인을 사용해서 계약했다는 사실은 (사)김천자두연합회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이었으며, 당시 (영)자두발전연합회의 회장인 이○○ 회장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또한 아직도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에게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허위청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국자두연합회가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를 초청해서 자체예산으로 전통과일 자두알리기 체험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사)김천자두연합회라는 단체에 통보할 의무도 없으며, 또한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김천시에는 적극 환영하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까지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지난 2009년 9월 3일자 제2면 「멍든 자두」 제하의 기사에서 피신청인은 김천자두협회 주장을 더 많이 수렴해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측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보도시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듣고 보도하기로 약속한다.
•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신청인의 전·현직 임원들이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전직 임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중일 뿐이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예술의전당(사장 신 홍 순)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예술의전당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21일 예술의전당 전·현직 간부들이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예술의전당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최근 수 년간 회계 관련 서류와 제출 내역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신홍순 사장 등 예술의전당 전·현직 임원들이 연간 110억 원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중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고 회계처리도 불투명하게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檢 공금횡령 의혹 예술의전당 압수수색'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2일자 사회면에 "신홍순 사장 등 예술의전당 전·현직 임직원들이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아닌 전직 임원의 후원금 횡령에서 비롯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현직 임원과 사장은 사실과 무관하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예술의전당과 관련해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7월 22일자 사회면 「예술의전당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예술의전당 전·현직 간부들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등 유용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전직 사장의 '후원금' 횡령 혐의에 관한 수사였고 현직 임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16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경제〉 사회면에 제목은 조정대사기사 부제목("檢, 간부 공금횡령 혐의"),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2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전·현직 임원들이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전직 임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중일 뿐이다 Ⅱ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예술의전당(사장 신 홍 순)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경제 :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예술의전당』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예술의전당'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2일자 사회면에 "예술의전당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단서가 나와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검찰 압수수색 영장 및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국고보조금과 관계없이 전직 임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예술의전당과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 2009년 7월 22일자 A31면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예술의전당」, 9월 11일자 A22면 「문화부 고의 누락 의혹」 기사에서 검찰이 예술의전당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2007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복구공사 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국고보조금'이 아닌 전직 사장의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은 화재복구공사 업체선정에 대해 자문회의 및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적절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16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문화면에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2009년 7월 22일자 "수당 1억 원 부당 지급·하청업체서 향응성 출장 접대"),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할 때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예술의전당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5일자 3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화재복구공사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이 불법행위라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예술의전당(사장 신 흥 순)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경제 : 『문화부 고의 누락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예술의전당 화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본지가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가 지난 2~3월 작성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에서 지적했던 오페라극장 화재복구공사 계약상의 문제점이 1개월 반 뒤 작성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 수사의뢰도 이뤄지지 않아 문화부가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예술의전당 화재복구공사 위법행위'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1일자 사회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의전당이 화재복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여 예술의전당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예술의전당과 관계처에 사실확인을 하여본 결과 보도된 것과 같은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43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서울조정435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의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Health Town면)
내 용 : 지난달 3일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심층 보도가 방송됐다.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자신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병원 간판을 달거나 과대, 과장광고로 환자를 현혹시키는 실태를 고발한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중략)
[21년 경력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본 성형이란?]
① 미인은 정해져 있다?
② 성형수술은 모든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일까?
일반인들은 심장수술, 척추수술, 암 수술 등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은 반드시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이왕이면 전문의에게'라고 할 정도로 전문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국내에서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3개 과목을 선택해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성형수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으로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비교하면 수술 결과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가급적 성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할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대한미용외과학회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Health Town 6면에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는 미용수술 분

야는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미용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성형외과 전문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전문의보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9월 14일자 Health Town 6면에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성형외과 원장의 말을 인용,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는 "미용수술 분야는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미용수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성형외과 전문의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전문의보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9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 Health Town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박스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병원 광고와 연예인 사진에 현혹되지 말아야…')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9일자 Health Town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의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Ⅱ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회장 정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닷컴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Health Town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3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동아닷컴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5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전략) 21년 경력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본 성형이란?
① 미인은 정해져 있다.
② 신뢰받는 성형외과의사의 조건은 '기술력'이다.
박원장은 "성형외과 의사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특히 성형외과는 소신과 원칙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후략) □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의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Ⅲ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3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구글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구 글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3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구 글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5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8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의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Ⅳ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1만여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3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네이버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5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8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의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Ⅴ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트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3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네이트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5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8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는 전문의에 비해 성형수술의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Ⅵ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야 후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6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3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야 후 : 『1만여 명의 얼굴을 만진 의사가 말하는 성형의 5가지 비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문화생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38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구의회 청사에서 주먹다짐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재 호 (구의원)
피신청인 : 연수송도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5.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연수송도신문 : 『황우여 국회의원 '인재 육성' 실패』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1면)
내 용 : 황우여 국회의원이 연수지역에서 4선 의원을 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이룩해 놓은 성과가 없어 주민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본지 44호 1면)이후 후배 양성 및 인재 발굴을 하는 데도 실패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략)

이어서 L씨는 "신성한 구의회 청사에서 주먹싸움을 벌이고 법적 다툼을 벌인 현직 시의원이 구청장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며 "주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많은 문제나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면 무조건 당선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9월 23일자 제1면에 「황우여 국회의원 '인재육성' 실패」라는 제목과 함께 "구청장 출마 예정 '이재호 시의원' 구의회 청사 주먹싸움 최대 걸림돌"이라는 부제목으로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하여 '신성한 구의회 청사에서 주먹싸움을 벌이고 법적 다툼을 벌인 현직 시의원이 구청장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재호 시의원은 주먹싸움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2008년 대법원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마치 구의회 청사에서 주먹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과, 구청장 출마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장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재 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수송도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연수2동 593-8
대표이사 이 광 주
대리인 임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수송도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구청장 출마 예정 '이재호 시의원' 구의회 청사 주먹싸움 최대 걸림돌)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조정결정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8.

〈별 지〉 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9월 23일자 제1면에 「황우여 국회의원 '인재육성' 실패」라는 제목과 함께 "구청장 출마 예정 '이재호 시의원' 구의회 청사 주먹싸움 최대 걸림돌"이라는 부제목으로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하여 '신성한 구의회 청사에서 주먹싸움을 벌이고 법적 다툼을 벌인 현직 시의원이 구청장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재호 시의원은 주먹싸움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2008년 대법원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마치 구의회 청사에서 주먹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과, 구청장 출마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장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소속 기사들에게 소송 취하 종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등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성우운수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전국버스노동자소식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국버스노동자소식 : 『사측 협박성 발언, 지부장은 욕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4일자 2면)

내 용 : 시내버스회사인 성우운수는 근속수당, 성실수당(카메라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 산정해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에게 진취적 발상으로 협상하려 하기는커녕, 지난 6월 25일 접수한 소송의 취하 종용과 함께 온갖 협박성 발언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2천만 원 까지도 변상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 조합원이 알려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원 성우운수 통상임금소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소식지는 2009년 9월 24일자 2면에서 "수원 성우운수 통상임금소송 진행하자 사측 협박성 발언, 지부장은 욕설"이라는 기사에서 온갖 협박성 발언, 노조지부장은 해당조합원을 마주치면 욕설, 어느 회사보다 타의 모범이 되야 하는데도 온갖 위법행위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 909번 노선 40분 시간연장, 301번 무리한 운행횟수로 시간촉박,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연장을 꺼려하는 운수회사, S화재에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사고율 할증으로 엄청난 돈을 퍼다가 주면서 등의 기사는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사측의 협박성 발언, 노조지부장의 욕설, 위법행위로 노동자 탄압 등은 사실무근이었으며,

909번 노선은 40분이 아니라 20분의 시간을 연장하였으나 이는 유사노선을 운행하는 타 운수회사(T상운, K여객)와의 영업경쟁차원에서 노사합의하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하였던 것이며,

301번의 운행횟수는 노사합의하에 2회를 감회 운행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운행으로는 볼 수 없었고 버스공제에서 탈퇴하여 S화재에 가입한 것은 보험료 부담이 1/2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경영관리차원에서 선택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임이 판명되었으므로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전국버스노동자소식〉 제79호(2009년 9월 24일) 2면 '사측 협박성 발언, 지부장은 욕설' 제하의 글을 통해 성우운수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소속 기사들에게 소송 취하 종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등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909번 노선의 40분 연장 운행 및 301번의 무리한 운행횟수로 시간이 촉박하여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 없고, 사고율이 높아 버스공제조합이 연장계약을 꺼려하여 S화재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성우운수는 909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40분 연장한 것이 아니라 20분 연장한 것으로 이는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성우운수측은 "301번의 운행횟수는 노사합의를 통해 종전에 비해 2회를 감하여 운행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S화재에 보험을 가입한 것은 비용이 공제조합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험사를 변경했던 것 뿐이다"고 밝혀왔다.
2.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22일까지 전국버스노동자소식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수원 성우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의 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국버스노동자소식 : 『바로잡습니다 - 성우운수 정정보도 요청』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방송횟수를 누락시켜 저작권료 분배 과정에서 특정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협회와는 무관하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장 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KOMCA 저작권료 의혹 경찰 전면 수사』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5일 21:00)
내 용 : ▷앵커 : 경찰이 음악 저작권협회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악저작권료 분배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한 음악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이 노래, 방송사에선 이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작곡가가 받은 저작권료지급내역서엔 이 곡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가 음악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면 협회는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곡의 방송횟수가 누락된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협회의 방송 횟수 누락 건수는 최근 3년간 수만여 건. 협회도 누락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2009년 10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련하여 방송된 "저작권료 의혹 경찰 전면 수사" 보도에서, "협회가 방송횟수 수 만여 건을 누락했고, 특정 작곡가 측에 저작권료를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으며, 조직적인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 대상에 오른 저작권료가 한 해에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고 경찰이 확인해 준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경찰이 확인해 준 사실도 아니며, 시청자 제보과정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된 것으로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으므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협회 유○○ 법무실장이 최근 3년간 협회의 방송횟수 누락 건수가 수만여 건에 이른다는 저희 KBS 보도를 인정한 것처럼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된 것은 방송편집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로 이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수사계류중인 사안이므로 조정 시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불가하여 정정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홍 건 표
피신청인 : 새부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새부천신문 : 『부천시장을 향해 뛴다-한나라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일 정치면)
내 용 : 2010년 6·2 지방선거가 8개월 남았지만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데에는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천시장 후보군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현 홍건표 부천시장의 출마여부다. 홍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경우는 상황이 복잡하지는 않는다. 한나라당 후보군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홍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홍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부천시장을 향해 뛴다-한나라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이 지난 2009년 10월 1일에 "부천시장을 향해 뛴다- 한나라당, 유력후보군 7명… 홍건표 시장 공천여부 최대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의 부천시장 후보자가 될 만한 인물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홍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홍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시장은 무조건 출마한다. 한나라당 후보냐 아니면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무소속 후보이다.' '홍시장은 2004년 보궐선거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가 교체되어 어부지리로 시장에 당선되는 등 행운을 얻게 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건표 시장은 어느 당으로부터도 공천을 약속받은 바가 없고 현재 한나라당 소속으로써 다른 당의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지 당원들에게 부천시장 출마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할 수도 있는 신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2004년 경선 당시 모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표차로 승리한 것을 근거로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경선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 드립니다. □

신청인 협회가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중소업체들 '부담'』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0일자 A21면)

내 용 : 작년부터 kg당 15원씩 부과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대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기업들의 원성이 높다. 산업용 플라스틱은 전량 재활용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행정편의적으로 사전부담금을 물리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7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 상·하수도배수관과 건축자재 등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kg당(출하량 기준) 15원씩의 폐기물부담금을 내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2만t인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부담금은 3억원. 연간 매출 500억여원을 올리는 이 회사는 순이익(15억 원)의 25%를 폐기물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이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업계는 환경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부담금 폐지를 촉구해 왔다. 올초에는 외부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산업용 플라스틱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실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만들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00% 재활용 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30일자 중기과학면에 "100% 재활용 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중소업체들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의 내용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제보를 받거나 취재를 한 것처럼 2차례에 걸쳐 단체명을 사용하고 또한,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조합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본 신문에 어떠한 제보를 하거나 취재에 응한 사실이 없고, 기사의 내용도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아니며, 또한 진정서 제출 등 일부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A20면)

내 용 : 본보 9월 30일자 A21면에 게재된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기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환경부 등에 제출한 업계 진정서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아니라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협동조합 명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

신청인 협회가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 ○ ○)
피신청인 :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경닷컴 :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중소업체들 '부담'』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한경닷컴 : 『[바로잡습니다]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협회가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중소업체들 '부담'』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네이버 : 『[바로잡습니다]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1일자 속보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협회가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트 : 『폐기물 부담금에 중소업체들 '부담'』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네이트 : 『[바로잡습니다]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협회가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Ⅴ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4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 ○ ○)
피신청인 : 야 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야 후 : 『폐기물 부담금에 중소업체들 '부담'』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 IT/과학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야 후 : 『[바로잡습니다] '100% 재활용되는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해군이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에이전트인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신문 : 『'반쪽 개발품'에 사업비 절반 선뜻』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1일자 16~17면)

내 용 :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정보함'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예산 23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아 선박 제작 업체 선정부터 작전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도입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국정원과 해군이 '대외비'로까지 분류하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정보함에 탑재해 운영하는 무인정찰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오며 수면위로 부상했다. 특혜 의혹은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중략)

S사의 에이전트인 M 사의 P 대표가 어떻게 해군 사업에 뛰어들어 거액의 계약을 따냈는지도 의문이다. 무기중개상들 사이에서는 육군 준사관 출신인 P 대표가 해군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P 대표가 무인항공기와 관련해 연결고리가 있다면 모 대학에서 무인항공기 조종 기술을 한 차례 배웠다는 것뿐이다. (중략)

해군 무인 정찰기 사업과 관련해 S사의 에이전트십을 가지고 있는 M사는 지난 6월 C사에 합병됐고 이 C사는 다시 M사와 비슷한 이름의 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이 회사는 현재 방사청에 용역업체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무기중개업 허가가 나지 않았다. 또한 삼자간에 재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에이전트십이 없는 회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단 사업을 하는 세 주체 간의 법인 폐쇄, 합병 등에 대한 주지의 사실들과 관련해 일종의 '커넥션'이 형성되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표지 부분〉

• 제 목 : 해군 무인정찰기 사업 미스터리 추적 의혹 보도 정정

• 제목하단 : 상기 제목의 기사는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를 바탕으로한 추측성 기사였으며, 해군정찰기 도입사업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기사에 관련업체 및 대표자에게 사과합니다.

〈사회면 좌측 상단〉

• 제 목 : 해군 무인정찰기 사업 미스터리 추적 의혹 보도 정정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908호) 사회면에 "'반쪽 개발품'에 사업지 절반 선뜻"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 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 해군과 정치인, 중계업자 등이 결탁하여, 개발되지 않은 장비를 해군에서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개발된 장비로서 적법한 성능검증 실험단계를 거쳐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진행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여러 언론사들로부터 의혹성 보도가 나간 바 있으나, 〈일요서울〉의 리베이트설 기사가 언론중재위에의 확인 판결로 정정기사를 내보내므로 의혹이 단순 루머임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 또한, 관련업체 대표인 P씨가 육군준사관출신으로 겨우 모 대학에서 무인항공기 조종 기술을 한차례 배웠을 뿐이라는 자질없다는 식의 보도로 명예

를 훼손한 것에 대해, 관련 대표자 P씨는 많은 경력을 소유한 국내 무인항공기 최고 전문가 중에 한사람임이 밝혀진 바, 이를 바로잡고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부제목 : 해군 무인정찰기 선정 비리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제908호(2009년 10월 11일자 16면) 〈'반쪽 개발품'에 사업비 절반 선뜻〉제하 기사에서 '해군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 무인정찰기(UAV) 납품업체인 오스트리아 S사는 아직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지도 못했는데 해군은 계약금액의 50%를 선뜻 내줬으며, S사가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함께 'M사는 무기중개업 허가가 나지도 않았다'면서 S사와의 계약과정에 특혜의혹이 있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입찰당시 S사가 제시했던 금액과 계약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고, 해군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장비의 경우 대금지급은 적법하게 집행됐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해군은 "S사와 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캠콥터 S-100으로 이미 2006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S사가 캠콥터의 기존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던 것이고, M사는 방위사업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일요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활자 크기는 일요신문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시 통상적인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일요신문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를 2009년 10월 25일까지 삭제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별도의 배상이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주최한 한우축제에 포항시가 2천만원을 지원했다가 행사취소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보도했으나,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였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일간 대구경북신문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경북제일신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경북제일신보 : 『'난장판 한우축제' 혈세만 날렸다』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8일자 1면)
내 용 : 포항시가 포항지역에 본사를 둔 일간 D.K신문사가 주최하는 한우축제 행사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축산기업중앙회 회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행사가 취소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D.K신문사는 시 예산 2천만 원을 지원 받아 1천만 원은, 행사 취소로 먹거리 장터 상인들에게 발생한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되고 500만 원은 광고비로 지출됐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D.K 신문사는 재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돼 있는 먹거리 장터 72개소 업자들을 불러 들였으나, 행사 취소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자진 철거에 반대하자 포항시가 뒤늦게 진화에 나서는 소동을 벌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DK신문사 주최, 영일촌 한우축제 예산낭비 없었다'
• 부제목 : '행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과장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5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2009년 영일촌 한우축제 관련기사(제목 "난장판 한우축제 혈세만 날렸다")는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음을 알립니다. DK신문사와 포항축협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본보 보도와는 달리 시민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DK신문사가 포항시의 행사위탁금으로 행사취소 먹거리장터 상인에게 지불한 1천만 원과 방송광고비 5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DK신문사는 포항시의 행사위탁금 2천만 원을 행사취소 즉시 전액 반환했으며 상인 합의금 1천만 원과 방송광고비 500만 원은 DK신문사가 손실을 보고 자체 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DK신문사가 손실을 보고 자체 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DK신문사가 행사를 위해 불러들인 상인은 72명이 아닌 절반정도인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영일촌 한우 축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사로서 유통마진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촉진을 유발하여 한우농가를 돕는 취지에서 계획됐으며 할인판매를 목적하여 중간유통업자인 식육 및 정육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K신문사가 먹거리 장터를 유치한 목적은 본 신문이 보도한 것과 같이 먹거리 장터상인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축제의 성격상 단조로운 것을 재미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사실관계가 왜곡된 종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DK 신문사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8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일간 대구경북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북제일신보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58번지 3층
대표이사 강 국 원
조정대리인 편집부국장 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신문의 1면에 아래의 기사를 2009년 11월 16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가. 제목 : DK신문사 주최, 영일촌 한우축제에 포항시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
나. 본문 내용
본 신문이 지난 9월 28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2009년 영일촌 한우축제 관련기사 (제목 : 난장판 한우축제 혈세만 날렸다)의 보도 이후 본보가 위 축제에 포항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한 결과 DK신문사와 포항축협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 포항시 예산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DK신문사는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행사위탁금 2천만 원을 행사취소 즉시 전액 포항시에 반환하였고, 먹거리장터 상인들에 대한 합의금 1천만 원과 방송광고비 500만 원은 DK신문사가 손실을 보고 자체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 행사에 포항시의 예산이 낭비되지는 아니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인 신문사를 존중하지 아니한 표현을 하여 신청인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인 신문사의 입장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고, 앞으로 위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4. □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착오적이며, 신청인이 반정부조직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성 규)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1)『민노총 전위대 노릇하는 게 21세기 공무원인가』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2일자 35면)

내 용 :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와 이념투쟁이 대세를 이뤄온 노동현장에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LG전자 노조는 최근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새 목표로 채택했다. 기업과 지역사회에 득이 되는 쪽으로 노동운동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20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한 것은 민노총의 정치 일변도 투쟁이나 단위노조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염증을 느낀 탓이 크다. 현대중공업 코오롱 GS칼텍스 노조는 민노총 탈퇴 이후 모범적인 노사 상생(相生)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다. (후략)

(2)『국민과 정부가 '민노총 공무원노조' 방임 말아야』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35면)

내 용 :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조합원 11만 5,000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68%의 찬성률로 강성 노동운동과 정치투쟁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국민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해 위법성 논란도 예상된다. (후략)

(3)『공무원 11만 명의 비극적 선택』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4일자 34면)

내 용 : (전략)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반(反)이명박, 나아가 정권 타도의 이슈와 행동력을 제공한 반정부조직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략)

(4)『공무원노조 불법 탈법에 정부는 뭐 했나』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5일자 35면)

내 용 : 정부는 그제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3개 통합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돌아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들의 불법 탈법 사례가 한둘이 아닌 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반정부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 밑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정부를 만만하게 본 증거다. (후략)

(5)『현대차 '이경훈 노조', 민노총과의 관계 수정하길』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6일 31면)

내 용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중도실용 개혁'을 내건 이경훈 후보가 52.5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중략)

현대차 노조는 시대착오적인 투쟁을 강요한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9월 22일 사설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전위대' 주장 사설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9월 22일자 사설에서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의 전위대"로 묘사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돈으로 민주노총을 돕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 집회 참여율이 0.3%로 전체평균 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 전위대라 칭할 근거가 없는 바, 관련 주장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합비는 조합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월급이라고 봐야하므로 국민 돈으로 민주노총을 돕는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과도함을 인정합니다.

9월 25일 사설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무원노조 불법 탈법에 정부는 뭐했나' 사설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9월 25일 사설에서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총의 하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자발적 의사로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가지며, 민주노총 규약상 조직지침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규정 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바, 주중관계라 할 수 있는 '하수인' 주장은 적절치 않음을 알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9월 22일 사설 〈반론보도문〉

• 제 목 : '민노총 전위대 노릇하는 게 21세기 공무원인가' 사설에 대한 반론

• 본지는 22일 사설에서 올해 들어 20여 개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으나, 공무원노조는 이와 달리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시대역행을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올해 가입 노조가 44개 7만여 명에 달하는 바, 탈퇴 노조 수에 근거한 본지의 시대역행 주장은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9월 23일 사설

• 제 목 : 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선언과 노동부문에 의한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한 반론

• 본지는 9월 23일 사설에서 공무원노조 가입을 앞둔 민주노총이 9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제2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고 적고 노동부문의 저조한 성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제2정치세력화를 선언한 바 없으며, '노사협력'의 낮은 순위는 노사부문이지 노동부문만의 책임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9월 24일 칼럼

• 제 목 : '민주노총, 민주당에 정권타도 이슈와 행동력 제공'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 24일 칼럼은 민주노총이 지난 대선에 패한 민주당에 정권타도의 이슈와 행동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어떠한 공식조직 관계로 연관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의 정치행위에 따라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9월 26일 사설

• 제 목 : '정치단체 민주노총' 주장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는 26일 사설에서 민주노총을 노조 상급단체의 본분을 저버린 정치단체로 굳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조합원 등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권익에 충실한 활동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한 것으로 이를 두고 노조 상급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 2면)

내 용 : 본지는 최근 사설 등에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우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합법적 영역에서 조직사회 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착오적이며, 신청인이 반정부조직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성 규)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는 시대역행』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4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5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5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8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51의 신청후 보도문참조〉□

신청인 노조가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주, 청원 통합의 문제점만을 부각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본부청원군지부
(지부장 지 ○ ○)
피신청인 : CJB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C J B : 「CJB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통합반대' 특강이 소양 교육?』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 07:10)
내 용 : 청주 청원 통합과 관련해 단체장과 공무원의 개입없이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특강을 빙자해 공무원들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원군 노인복지회관.

청원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하지만 주내용은 청주 청원 통합 반대에 맞춰졌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던 강사는 시/군 통합은 식민지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통합반대 특강이" 소양교육?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방송은 2009년 9월 21일~9월 22일 CJB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통합반대 특강이" 소양교육? 라는 제목으로 각종특강을 빙자해 공무원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반대 교육을 청원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인 오전과 오후에 두차례 진행했다, 일방적인 통합의 문제만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관권개입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청원군 지부에서 주관한 교육은 지방행정구역개편 지방자치와 분권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주요내용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올바른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규모를 작게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선진국과 같이 규모를 크게 해야 한다는 지방행정구역개편관련 정책교육과 대안제시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이번특강은 2009년 8월 20일 공무원노조청원군지부와 청원군수가 맺은 단체교섭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관권개입과는 관계없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정확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한 교육으로 확인돼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하여 심려와 명예를 실추시킨 점 공무원노조 청원군 지부 조합원과 강의를 하신 교수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4,18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음. □

해군이 정보함에 탑재할 무인정찰기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납품업체가 입찰 당시 제기했던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돼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해군본부(참모총장 정 옥 근)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신문 : 『'반쪽 개발품'에 사업비 절반 선뜻』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1일 16~17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반쪽 개발품'에 사업비 절반 선뜻」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5일자(908호) 사회면에 「'반쪽 개발품'에 사업비 절반 선뜻」이라는 제목으로 "해군은 계약과정에서 S사가 입찰당시 제기했던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 "해군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아직 개발을 장담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 사업금액의 50%를 선뜻 내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해군은 지난 8월초 하기로 했던 시험비행을 무기한 연기", "해군이 테스트한 기종은 육군용이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군은 S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낮게 계약하였고, 또한 동 사항은 '09년 7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09년 8월 11일해당 언론사에서 정정보도한 사항이며, 해군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08년중 독일, 프랑스, 파키스탄 및 스페인 등에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금지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음. 또한 해군의 시험비행 계획은 현재 협의중

에 있어 무기한 연기한 적은 없으며, 해군이 테스트한 기종은 육·해군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적법하게 시험평가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45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9서울조정450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시공능력 하위인 신청인 업체가 4대강 사업에 상당 지분 참여한 것은 지역 언론사 사주라는 뒷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표명)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동양종합건설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매일신문 : 『4대강 사업 특정업체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일자 1면)
내 용 : 총 3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자가 최종 선정됐지만 지역 업체 참여를 두고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경북의 경우 ▷22공구에 동양종합건설, 삼진건설 등이 ▷24공구에 유성건설, 진영종합건설, 동일건설, 세원건설 등이 각각 5%의 지분율로 참여가 확정됐다. ▷30공구에는 유성건설, 진영종합건설, 동대건설, 동양종합건설, 명보산업개발이 ▷32공구에는 갑을건설, 노경종합건설, 우석종합건설이 ▷33공구에는 유성건설, 대흥종합건설, 동양종합건설, 백송건설, 정안건설 등이 각 5%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동양종합건설과 유성건설이 대구경북의 5개 공구 중 3개 공구에 참여함에 따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의 한 중견건설업체 대표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오바마(미국 대통령)에게 선을 달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특정 업체가 3개 공구 모두 참여한 것은 '언론사 사주'란 배경이 작용한 특혜란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9년 10월 1일자 1면 우측 상단에 「4대강 사업 특정업체 특혜논란」제하에 지역도급 8위 건설사, 3개공구나 선정… "뒷배경 작용의혹"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치 동양종합건설이 지역언론사 관계사의 영향력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과 달리 동양종합건설은 4대강 사업의 주간사업자가 아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른 컨소시엄 참여 업체이므로 발주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지역언론사 관계사가 뒷배경으로 작용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에게 정중한 사과를 드리며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오 ○ ○, 김 ○ ○
조정대리인 부사장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신문
대구시 계산동 2가 71번지
대표이사 이 창 영
조정대리인 정경부장 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4대 강 사업 특정업체 특혜논란)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

2. 피신청인은 앞으로 신청인 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기사를 작성할 것을 약속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4. □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착오적이며, 신청인이 반정부조직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4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성 규)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反정부' 민노총에 정부 공무원 11만 명 들어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5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51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9월 23일자 등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통합공무원노조는 합법적 영역에서 공직사회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며, 민주노총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민주노총 파업 현장에서 늘 국보법 철폐 등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1월 4일까지 〈조선일보〉 사회3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한 정정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나머지 반론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30일자 1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51의 신청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한 후 되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승 덕 (국회의원)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저널 : 『그들은 왜, 무슨 돈으로 해외 호화 주택 사들였나』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14~18면)

내 용 :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 유명 인사들의 미국 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밝힌 이른바 '안○○ 리스트'가 정·관계를 떨게 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안씨가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유명 인사들의 해외 부동산소유 내역을 집중 추적했다. (중략)

이밖에도 정·재계의 인사들 중 상당수가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중의 한 명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승덕 의원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였다거나 매도하여 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시사저널은 2009. 9. 29.자(1040호) 제14 - 18면에 "그들은 왜, 무슨 돈으로 해외 호화 주택 사들였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재계의 인사들 중 상당수가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중의 한명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다. 고의원은 지난 1992년 10월19일 뉴저지의 콘도를 부인 이름으로 13만 달러에 구입했다. 당시 고의원은 유학을 할 때여서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13만 달러라는 거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고의원은 1999년 4월 12일에는 뉴저지의 콘도를 45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리고 2004년 5월 11일 이 콘도를 매입가의 두 배인 97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2건의 부동산은 고 의원이나 고 의원의 현재 부인이 구입하거나 매도한 것이 아니고, 고 의원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없음에도 시사저널은 7년 전에 이혼한 고 의원이 전처 명의로 문제의 부동산이 거래된 자료만을 근거로 마치 고의원이 직접 또는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는 "고의원의 한 측근은 '처음 콘도를 구입할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수입이 없었다. (고의원 부인의) 친정에서 딸이 결혼하면서 살 집 마련을 위해 챙겨주었을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고 의원 측근이 그와 같이 해명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고 의원이 판사시절인 1984년 전처와 결혼하여 2년간 국내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유학 가서 전처 친정에서 결혼 당시 살 집을 사 준 적이 없고, 고 의원은 유학생활을 마치고 1991년 영구귀국한 후 처음 콘도를 구입했다는 1992년이나 그 이후 문제의 콘도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밝혀져 고의원 측근의 해명이라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부제목 : 9월 29일자 고승덕 의원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 본 문 : 본지는 2009년 9월 29일(제1040호) "그들은 왜, 무슨 돈으로 해외 호화 주택을 사들였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고승덕 의원이 1992년 및 1999년에 부인 이름으로 뉴저지 콘도 2채를 매입해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위 2건의 부동산은 고승덕 의원이 구입하거나 매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 아닌 것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고승덕 의원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9년 11월 23일자(49호) 〈시사저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및 크기는 15포인트로 하고,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는 13포인트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시사저널 홈페이지 종합면 중앙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며,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그들은 왜, 무슨 돈으로 해외 호화 주택 사들였나)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안산시장 재임중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진 섭 (전 안산시장)
피신청인 : 시사I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시사IN : 『"억대 뇌물 줬다" "참담한 음해다" 진실은 무엇?』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7일 40~42면)

내 용 : 10월 28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송진섭 전 안산시장(56)이 측근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임 아무개씨(44)는 2003년부터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해 송진섭 전 시장의 측근 김 아무개씨(56)를 통해 송 전 시장에게 수 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10월 6일 청와대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송진섭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체불명 세력의 각종 음해성 흑색선전 유인물 살포를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해 배후를 발본색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송진섭 전 안산시장, 뇌물의혹 '진실게임' 사실과 달라

• 내 용 : 시사인은 10월 17일 109호 게재에서 송진섭 전 안산시장이 마치 김○○로부터 시장 재임중에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임○○ 씨의 얘기만을 그대로 기재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금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10월 28일 국회의원 상록을 재선거에 공직후보자로 등록한 송진섭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당락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므로 이는 심히 유감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유무를 떠나 돈을 줬다고 하는 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한참 민감한 선거시기에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송진섭후보가 부도덕한 후보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방해로 볼 수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보도 내용에 대해 선관위 및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여신도 성폭행 미수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강간치상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정 및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7
청 구 명 : 정정·추후청구
신 청 인 : 소 ○ ○
피신청인 : 시티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티뉴스 : 『검찰, 소 목사 감금죄 위반 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5일 사회면)

내 용 : 여신도 성폭행 미수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소목사에 대해 검찰이 25일 감금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소목사에 대해 형법상 감금죄를 적용했다.

이에따라 올해 2월13일 소목사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이후 장장 6개월 만에 소목사 사건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추후보도문

• 제 목 : 소○○ 목사 피고소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2009년 2월 13일부터 태전동교회 소양호 목사 강간치상 혐의 피 고소사건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2009년 8월 25일자에 "검찰, 소목사 감금죄 위반혐의 기소" 제목으로 '목사에 대해 검찰이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는 내용과, 8월 26일자에 "사회정의 구현 위해 소 목사 엄정심판" 제목으로 '광주 여성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며 걸은 '소○○ 목사 성폭행 기소 환영'이라는 피켓내용을 그대로 사진 보도하였고, 2009년 9월 24일자에 "소목사 사건, 내달 22일 고소인·증인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이 성남지원 앞에서 '파렴치한 성폭력범죄자 소○○ 목사'라고 쓰여진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소○○ 목사는 '감금 등'이 아닌 '감금'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고, 성폭행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으며 성폭력 범죄가 확정된 바도 없어 여성단체들의 피켓 내용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8월 25일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소○○ 목사 피고소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2009년 2월 13일부터 ○○○교회 소○○ 목사 강간치상 혐의 피 고소사건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2009년 8월 25일자에 "검찰, 소목사 감금죄 위반혐의 기

소" 제목으로 "소목사에 대해 검찰이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는 내용과, 8월 26일자에 "사회정의 구현 위해 소목사 엄정심판" 제목으로 '광주 여성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며 걸은 '소○○ 목사 성폭행 기소 환영'이라는 피켓내용을 그대로 사진 보도하였고, 2009년 9월 24일자에 "소목사 사건, 내달 22일 고소인·증인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이 성남지원 앞에서 '파렴치한 성폭력범죄자 소○○ 목사'라고 쓰여진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소○○ 목사는 '감금 등'이 아닌 '감금'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고, 성폭행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으며 성폭력 범죄가 확정된 바도 없어 여성단체들의 피켓 내용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8월 25일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티뉴스(www.ctnews.co.kr) 종합면 우측 상단에 위 정정 및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2009년 10월 20일 09:00부터 11월 19일 24시까지(1개월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2009년 9월 24일자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한다.

아울러 2009년 8월 26일자 및 9월 24일자의 보도와 함께 게시한 광주 여성인권연대의 피켓시위 장면을 보도한 사진을 2009년 10월 20일 오전 09:00부터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티뉴스 : 『S목사 피고소 사건보도에 대한 정정 및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연간 교육비가 933만 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대학생 등록비 맞먹는 유치원 교육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1면)

내 용 : 전주의 한 유치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교육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국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대구북구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중노송동에 위치한 ○○유치원의 연간 교육비는 933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청강유치원, 서상기 의원 국감자료 사실과 달라(혹은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1면 『대학생 등록비 맞먹는 유치원 교육비』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소제목을 "전주 ○○유치원이 연 933만 원", 국감 자료…전국에서 2번째, 원장 "더 받는 유치원 있다"라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청강유치원은 중간식비 등을 포함해 연간 686만 원과 698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 서상기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교재비 항목이 별도로 있어 교육비에 포함된 교재비 월18만 원을 중복 기재하여 220여만 원의 착오가 발생한 것이며, ○○유치원은 교육비 이외의 실습비, 특

활비 등 비용은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유치원 교육비 관련 정정보도문
• 부제목 : 국감자료 933만 원 실제 내용과 달라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1면 『대학생 등록비 맞먹는 유치원 교육비』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소제목을 "전주 청강유치원 연 933만 원", "국감 자료…전국에서 2번째"라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은 입학금을 제외한 연간 685만 원~698만 원의 납입금을 받고 있으며, 국감자료에 착오가 발생한 이유는 수업료에 포함된 교재비 월18만 원이 중복 계산되었기 때문이며, ○○유치원 수업료에는 교재비, 실습비, 특별활동비 등의 일체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새전북신문 2009년 10월 26일자 2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대학생 등록비 맞먹는 유치원 교육비) 활자 크기로 하고, 부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전주○○유치원 연 933만 원)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유치원 교육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마을이장인 신청인이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의 사용대가로 주민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거두고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으나,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부산조정11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UBC-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UBC-TV :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제하의 보도 (2009년 7월 24일 20:15)
내 용 :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썼는데요, 울주군의 한 마을에서는 이장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주민들을 상대로 엉뚱한 물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군청 지원금으로 설치한 간이 상수도, 이 마을 2백 가구, 400여명의 주민들은 유일한 식수원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짜로 쓸 수 있는 물이겠지만 주민들은 꼬박꼬박 물 값을 내야 했습니다. 마을이장이 기본요금 2천원에, 톤 당 3백원 그리고 전기료 명목으로 매달 고지서 없는 수도요금을 받아갑니다. 심지어 새로 이사 온 집에는 유지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원 씩 걷어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현대판 봉이 김선달, 공금횡령등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4일자 8시 프라임뉴스와 7월 29일 프라임뉴스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제목으로 마을이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물장사를 하여 마치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마을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비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상수도 관리는 마을 자체 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횡령등 비리는 없는 것

으로 9월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현대판 봉이 김선달,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지난 7월 24일과 7월 29일에 울주군의 한 마을이장이 울주군으로부터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주민들을 상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물장사를 하여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마을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수도 관리는 마을 자체 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횡령 등의 비리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9월 16일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3일까지 UBC-TV〈프라임뉴스〉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위 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11월 10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UBC-TV :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현대판 봉이 김선달,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31일 20:1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모 상조업체가 경쟁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신청인들을 빼돌린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청인들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차 ○ ○ 외 1인
피신청인 : 상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상조뉴스 : 『모던종합상조 '상습 불법'에 염증』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5일자 상조종합면)
내 용 : 다인상조 전주지사 송 모 지사장 모던종합상조로 빼돌려

모던종합상조(대표:남○○)의 기업 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파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모던종합상조는 최근 전북 전주에서 타 상조회사가 수 개월간 투자해 조직을 만들어 놓자 자사의 장례지도사 자리를 빌미로 타 상조회사의 지사를 뺏어 가는 뻔뻔함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는 모던종합상조의 캐치플레이인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인상조(대표:최순삼)전주지사가 2009년 5월 개설 지사장인 송 모 씨를 영입 매월 수 백 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및 기타, 모든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4일 『모던종합상조 '상습 불법'에 염증』이라는 제목으로 "모던종합상조가 최근 다인상조가 매월 수 백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및 기타, 모든 것을 지원한 전주지사의 송모 지사장 남편인 차모 씨를 의전팀에 영입하면서 송모 지사장을 다인상조 전주지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① 송모 지사장의 남편인 차모 씨는 장례지도사로 다인상조와는 외주계약을 통해 장례건별로 발생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관계로 모던상조에 입사하는 것에 법적,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② 송지사장은 다인상조 전주지사를 개설할 당시 다인상조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만 원과, 책상 6개, 의자 10여개 및 간판을 계약 해지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 받고, 이와는 별도로 월 25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바는 있으나 다인상조로부터 월 수 백만 원의 운영비와 사무실 및 기타 모든 것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③ 송지사장의 경우도 다인상조로부터 월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받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었으며, ④ 송지사장은 남편의 취업 등과 관련해 모던종합상조와 사전 어떠한 약정 없었으며, 남편 차씨의 입사는 순수한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5일 『모던종합상조 '상습 불법'에 염증』이라는 제목으로 "모던종합상조가 최근 다인상조가 매월 수 백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및 기타, 모든 것을 지원한 전주지사의 송모 지사장 남편인 차모 씨를 의전팀에 영입하면서 송모 지사장을 다인상조 전주지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에에 대해, 송지사장 및 그 남편은 "① 송 모 지사장의 남편인 차모 씨는 장례지도사로 다인상조와는 외주계약을 통해 장례건별로 발생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관계로 모던상조에 입사하는 것에 법적,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② 송지사장은 다인상조 전주지사를 개설할 당시 다인상조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만 원과, 책상 6개, 의자 10여개 및 간판을 계약 해지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 받고, 이와는 별도로 월 25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바는 있으나 다인상조로부터 월 수 백 만 원의 운영비와 사무실 및 기타 모든 것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③ 송지사장의 경우도 다인상조로부터 월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받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었으며, ④ 송지사장은 남편의 취업 등과 관련해 모던종합상조와 사전 어떠한 약정 없었으며, 남편 차씨의 입사는 순수한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11월 8일까지 10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상조뉴스〉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상조뉴스〉 2009년 12월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상조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30일자 상조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통합 공무원노조의 신청인 단체 가입을 아동성폭행 '조두순 사건'에 비유, 야만적이고 반이성 행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8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인간과 짐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30면)
내 용 : 사람에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비난과 욕도 없을 것이다. 50대 남자가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신체 일부의 영구 장애까지 초래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에 대해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비근한 예다. 패역무도(悖逆無道)함을 짐승에 비유하는 것조차 오히려 과분해 보인다는 의미다. (중략)
이성과 양심 등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조차 반역을 서슴지 않는 집단적 야만은 공직 사회 일각도 다르지 않다. 심지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본연의 임무인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직원의 68%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소속으로 민주노동당을 모체로 삼다시피 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11월 가입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반이성 등 외에 달리 배경을 찾기 어려운 행태는 통합공무원노조도 다르지 않다. 그렇잖다면 민주노총 가입은 그 강령이 적시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헌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보다 더 큰 가치로 떠받들겠다는 것으로 비친다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에 귀를 닫을 리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시론 '인간과 짐승'에 대한 민주노총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논설위원 김종호는 10월9일 시론을 통해 아동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 보여주는 패역무도함과 짐승만도 못한 반이성 작태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본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패역무도함과 짐승만도 못한 반이성 집단의 예로 들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조두순 사건'과 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의 상관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인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연결시켜 서술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시정을 요청해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신청인 단체가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5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새 노사정 6자회담 추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8일자 10면)

내 용 :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불참하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새로운 노사정 6자회담 결성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이 8일 이 같은 내용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중략)

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모두를 반대하고 있으며 한노총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는 거부하면서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복수노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보도 정정합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8일 "새 노사정 6자회담 추진"기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하며,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있다고 썼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임을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사실 적시로 노동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 독자 여러분과 민주노총 측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파이낸셜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5일자 9면)

내 용 :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0월 8일자 10면 '새 노사정 6자회담 추진' 제하 기사에서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연맹이 11개 소속노조를 제명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부 노조의 명칭을 거론했으나 이중 3개사 노조는 제명된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 사실상 정치파업 사라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자 3면)

내 용 : 올해 초 한화석유화학 대림산업 한국바스프 LG석유화학 LG화학 삼남석유화학 금호P&B 등 화섬업계 11개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화섬연맹으로부터 대거 제명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화섬연맹에 조합비를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게 제명 이유다. 이들 노조가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것은 화섬연맹이 일반적인 노동운동의 틀을 벗어나 정치적 성향을 띠는 데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 사실상 정치파업 사라져'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1일자 A03면에 "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사실상 정치파업 사라져"라는 제목으로 '올해 초 한화석

유화학 대림산업 한국바스프 LG석유화학 LG화학 삼남석유화학 금호P&B등 화섬업계 11개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화섬연맹으로부터 대거 제명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화학섬유연맹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실명으로 거론된 한국바스프, LG석유화학, LG화학노조는 화학섬유연맹으로부터 제명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사의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한국바스프, LG석유화학, LG화학노조 관계자분들게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9월 21일자 A3면 "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사실상 정치파업 사라져" 제하의 기사에서 11개 노조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으로부터 제명당한 바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중 한국바스프, LG석유화학, LG화학 노조는 제명당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0월 28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A3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경제〉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 내 용 : 본지 2009년 9월 21일자 A3면 「민노총 파업지침 내려도 현장선 냉담…사실상 정치파업 사라져」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바스프, LG석유화학, LG화학 노조가 제명되었다고 잘못 보도되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및 위 3개사 노조 측에 심적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및 3개사 노조에게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8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지역신문과의 불화를 이유로 의정광고비를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 상 원 (군의원)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함안군의회의 언론관』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7일자 19면)

내 용 : 요즘 함안군의회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 어째 좀 어색해 보일 정도다. 사실 지난달 9일자에 실렸던 "군의회의장 여동생에 특혜 줬다"'라는 기사 보도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함안군의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광고예산 항목을 추경에서 반영토록 한 것이다. 내년 당초 예산에서 광고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광고 예산은 도내 일간지를 비롯해 특수주간신문 등에 함안군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실상은 지난 2006년 제5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안상원 의원이 지금은 폐간되고 없는 지역 특수주간지와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빚자 광고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는 보복성 예산삭감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함안군의회 의정광고료 삭감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8월 7일자 제19면 취재 노트란의 『함안군의회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 지난 2006년 제5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안상원 의원이 지금은 폐간되고 없는 지역 특수주간지와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빚자 광고예산을 싹둑 잘라버리는 보복성 예산 삭감을 하여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함안군의회 의정광고료는 편성된 예산에서 변경 없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단지 비목을 삭제한 것으로 의정광고료는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2009년에도 예산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가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상가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모스퍼실리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주식면)
내 용 : 선우중공업 (245원 ▽15 -3.1%)은 29일 서울시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인근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우중공업에서 설치하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5대의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500대의 자전거 및 600대의 자전거 거치대를 포함하고 있다. 계약금액은 10억 원 규모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정정보도문(또는 선우 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29일자 주식면에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라는 제목으로 롯데캐슬베네치아 상가 관계자들이 공공 자전거 사업을 계약하고 운영 효과가 좋을 경우 500대를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롯데캐슬 베네치아 상가 관리 회사인 (주)모스퍼실리티는 보도에서와 같이 계약한 사실도 없고 공공자전거 500대를 증설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머니투데이 : 『(반론보도문)선우중공업 10억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2일자 주식면)
내 용 : 머니투데이는 지난 9월 29일자 뉴스사이트에서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라는 제목으로 "선우중공업 (480원 0 0.0%)은 29일 서울시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인근에 10억 원규모의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상가측이 운용효과가 좋을 경우 공공자전거 500대를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선우중공업은 건우베네치아와 10억 원 규

모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설치 및 운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동 29일자에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및 롯데캐슬 베네치아 상가 관리 회사인 (주)모스퍼실리티는 "롯데캐슬 베네치아 상가의 모든 소유권, 점유권, 관리운영권은 지분을 갖고 있는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그와 계약된 관리회사 (주)모스퍼실리티, 그리고 개별구분 소유권자에 있다"며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및 롯데캐슬 베네치아 상가 관리 회사인 (주)모스퍼실리티는 선우중공업과 계약한 사실도 없고 공공자전거 500대를 증설할 계획도 없다"고 알려와 보도합니다.

모스퍼실리티는 또 "롯데캐슬 베네치아 상가의 공용부분 및 점유부분에 어떤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계약하고자 한다면 시행사인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회사 (주)모스퍼실리티와 승인 및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상가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상가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모스퍼실리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스포츠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스포츠투데이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공급』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재테크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스포츠투데이 : 『[고침]선우重,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공급』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재테크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상가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상가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모스퍼실리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닷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닷컴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공급』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증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경제닷컴 : 『[증권][고침]선우重, 10억 규모 공자전거 시스템 공급』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증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상가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상가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모스퍼실리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공급』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네이버 : 『[고침]선우重,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공급』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상가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상가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모스퍼실리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트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네이트 : 『(반론보도문)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상가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상가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모스퍼실리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다 음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수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다 음 : 『[고침]선우重,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공급』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상가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상가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설치, 운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모스퍼실리티 (대표이사 오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야 후 : 『선우중공업 10억 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야 후 : 『(반론보도문)선우중공업 10억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 수주』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속보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학교가 수년간 수십억 원의 예치금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8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경기대학교 (총장 최 호 준)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1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중부일보 : (1)『경기대 비리척결 도약 첫걸음』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8일자 19면)
내 용 : 경기대학교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소수의 교수들이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대학 측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벌써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측과 이태일 전 총장의 '후안무치'에 대해 소수의 교수들이 오랜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것이다. (중략)

앞서 이 전 총장 재임 당시 입학처장의 입시수당 수천만 원 불법 수령 의혹 건에 대해 이들 교수는 자료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총장을 비롯한 실·처장의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공개도 촉구했었다. 이들 교수는 "규정에도 없는 교수나 직원의 연봉만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엄청난 횡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후략)

(2)『경기대 수십억 비자금 조성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8일자 22면)
내 용 : 경기대학교가 수년간 대학 명의의 예금통장 예치금 중 수십억 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발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경기대학교 회계감사보고서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05년도 5월 회계 감사에서 2004년 당시 대학 명의의 예금통장 금액 중 45억2천만 원이 회계장부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9월 28일자 사회면에 "경기대 수십억 회계장부 누락 비자금 조성의혹" 제목으로 경기대의 2005, 2006, 2007년도 회계내역 중 수십억 원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아 비자금 조성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경기대가 3년간 모두 51억여 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고 이를 교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차량 리스비용 등 6천912만 원을 법인의 일반회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학교비로 불법 지출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차량리스비용 443만 원이 학원측과 이중으로 지출된 사실도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경기대가 감사지적 후 계좌의 잔액을 전액 인출하여 교비회계 등으로 편성하고 지출용도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하고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교육과학부 및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되어 비자금조성 의혹이나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경기대학교
총장 최 호 준
대리인 박 ○ ○
조정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 재 철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부일보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부일보〉 2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소제목(이사장

차량 리스비용도 수천만 원 불법 지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부일보 인터넷판(www.joongboo.com) 메인화면 우측하단에 7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뜨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에게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6.

〈별 지〉 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9월2 8일자 22면에 "경기대 수십억 회계장부 누락 비자금 조성의혹" 제목으로 경기대의 2005, 2006, 2007년도 회계내역 중 수십억 원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아 비자금 조성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경기대가 3년간 모두 51억여 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고 이를 교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차량 리스비용 등 6천912만 원을 법인의 일반회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학교비로 불법 지출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차량리스비용 443만 원이 학원측과 이중으로 지출된 사실도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경기대가 감사지적 후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교비 회계등으로 편성하고 지출용도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하고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교육과학부 및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되어 비자금조성 의혹이나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업무 및 각종 행사관계로 의전용 차량이 필요하게 되어 교비로 체어맨 차량을 리스계약 체결하여 교내행사시 의전용으로 활용하였고, 법인의 재정이 없어 보수를 받지 못하고 77세로 고령인 조순승 전 이사장이 자택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하고 20여년 지속된 학교의 파행운영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이사장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학의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법인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사장 출퇴근 차량지원을 위한 업무용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수원지검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어 이는 불법지출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경기학원에서 차량 리스료로 지급한 443만 원도 위 체어맨 차량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경기학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리스한 다이너스티 차량에 대한 지출경비를 지급한 것이어서 중복하여 지급했다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

신청인 단체가 개최한 한가위 평북 대잔치가 체육대회 준비금으로 치러졌다고 보도되었으나 신청인 단체의 순수 기금이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평안북도중앙도민회 (회장 오 영 찬)
피신청인 : 오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오도신문 : 『제주도에서 '한가위 평북 대잔치' 개최
키로 누가 어떤 비용으로 전세 비행기 대

절까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3면)

내 용 : 평북도민회(회장 오영찬)는 금년 '이북도민 체육대회'의 취소에 따른 아쉬움을 달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한가위 평북 대잔치'를 오는 10월 12~1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평북도민회는 지난 22일 한일장에서 대의원 24명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한가위 평북 대잔치'를 개최키로 의결하였다. 일부 대의원을 포함한 150여 명에게만 초청장이 발송된 금번 행사는 전세비행기까지 대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용조달 출처여부와 그 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주도에서 한가위 평북대잔치 개최키로' 바로잡습니다 (또는 제주도에서 한가위 평북대잔치 개최키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9일자 종합면 3면에 "제주도에서 한가위 평북 대잔치 개최키로"라는 제목으로 관례상 국고보조금으로 이북5도위원회에서 행사 이후 지급되는 체육대회준비금을 통해 150여 명에게만 전세비행기를 이용 행사를 치르고, 비용조달 출처여부와 그 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북5도위원회와 평안북도중앙도민회에 확인한 결과, 관례상 국고보조금인 체육대회 준비금은 이북5도위원회에서 지급된 사실이 없고, 도민회의 순수기금으로 행사를 거행했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평안북도중앙도민회
회장 오 영 찬

피신청인 : 이북오도신문사(주)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3-130
대표이사 이 애 주
조정대리인 편집국장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오도신문〉 종합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일부 대의원 문제제기에도 개최키로 의결]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4.

〈별 지〉

• 제 목 : 평북도민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본 문 : 본 신문은 9월 29일자 종합면 『제주도에서 '한가위 평북 대잔치' 개최키로』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 도민회(회장 오영찬)가 체육대회 준비금 등으로 일부 대의원을 포함한 150여 명만 전세비행기를 이용해 제주도에서 행사를 치르기로 해 많은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안북도 도민회는 체육대회 준비금은 제주도에서 개최된 행사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 해당 행사에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체육대회 준비금은 제주도에서 개최된 행사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오도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한국철도공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대전지검 조직 연락망을 입수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 준 영)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일보 : 『코레일의 우산』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3일자 22면)

내 용 : "날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들 하는데 이젠 '우산 인사'로 해달라. '우산'이 되어 직원들의 비바람을 막아주겠다."

지난달 19일 철도노조의 취임저지로 겨우 취임식을 마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전(前) 경찰청장 출신으로 'MB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그가 비판여론에 대해 당차게 반응한 것이다. (중략)

하지만 한달여 간 코레일은 안정화 대신 칼바람이 불었다. 공사 출범이래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했던 직원들도 있었고, 대대적 교체에 내부는 술렁였다. 보도자료대로라면 학연·지연을 배제한 허 사장의 인사혁신이라는 데 이해되진 않지만 넘어갈 순 있다.

하지만 취임 나흘 뒤 취임을 저지했던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은 실망 그 자체다. 코레일 본사는 "고발인은 허사장이 아닌 코레일 대전지사"라고 하지만 수장의 입김 없이 지사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접수했을까?

경찰의 협조도 전폭적이다. 취임 때 수많은 경찰의 비호를 받더니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다. 그 뿐인가. 취임 다음날 형사들이 언론사를 통해 취임저지 사진을 확보하려 했던 점, 본사에서 대전지검 조직 연락망을 입수하려 했던 정황들을 보면 사측과 경찰의 사전 협조가 있었던 것 같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코레일의 우산'(기자수첩)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오피니언 지면 '기자수첩'에 "코레일의 우산"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두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뜻하는 '칼바람',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했던 직원들도 있었고'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협조도 전폭적이다', '대전지검 조직 연락망을 입수하려 했던 정황을 보면 경찰의 사전 협조가 있었던 것 같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 확인한 결과, 철도공사는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단 한명도 구조조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대전지검 조직 연락망을 입수하려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과 사전 협조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추측·허위 기사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대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1일자 2면)

내 용 : 지난 4월 23일자 22면에 보도된 기자수첩 '코레일의 우산' 기사 중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했던 직원'은 '짐을 싸야했던 직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대전지검 조직연락망을 입수하려 했던 정황들을 보면 사측과 경찰의 사전 협조가 있었던 것 같다'는 표현은 코레일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

코레일 허준영 사장이 반발 직원을 고소·고발한 채 본교섭에 나서지 않아 코레일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 준 영)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일보 : 『노사소통과 리더쉽』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5일자 22면)
내 용 : 지난 주 대전 철도기관 공동사옥에서 열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현장. 많은 의원들이 허준영 코레일 사장의 강경한 노조 대응을 질타했다.

취임 후 6개월간 322명(중복 포함)의 직원을 잇따라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의원들은 고압적으로 직원들을 길들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전(前) 경찰청장 출신 이미지를 벗고 대표로서 본교섭에 충실하게 나서는 등 직원들과 소통하라고 충고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노사소통과 리더십'(기자수첩)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5일자 오피니언 지면 '기자수첩'에 『노사소통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을 언급하며 "직원들을 잇따라 고소해 질타를 받았던 그는 의원들의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고소하겠다는 말을 연발, 보는 이를 답답하게 했다"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가 잇따라 반발 직원을 고소·고발하고 본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으니 철도노조는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한 결과 국정감사 당시, 할인권 불법유통과 관련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허준영 사장이 "제가 자체 조사를 해서 고발해야 할 일입니다"고 답변한 것을 노조 문제와 연결, 전혀 다른 내용을 엮어 침소봉대, 선정성만을 강조한 허위·과장보도이며, 또한 허준영 사장이 고소·고발을 하고 본교섭에 나서지 않아 현재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대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1일자 2면)
내 용 : 본보 10월 15일자 22면에 보도된 기자수첩 '노사소통과 리더십' 기사중 '대표가 잇따라 반발 직원을 고소·고발하고 본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으니'라는 표현과 관련 코레일측이 '대표가 취임 이후 최근까지 3차례 본교섭에 참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 내용은 '고소·고발로 갈등이 깊어지고 원활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않자 철도노조는 성실교섭을 요구하며'로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반정부·반 헌법적인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는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으나,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활동이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1.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동아일보 : 『이상한 '참교육'』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5일자 30면 「횡설수설」란)
내 용 : (전 략)
▷어떤 교육이 참교육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철학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당국, 정부의 교육방침 및 정책에 무조건 반대,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게 참교육일 수도 없다. '참학'은 전교조의 反(반)정부 노선 및 친북(親北)좌파라는 反(반)헌법적 행태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다. (중략)
▷'참학'은 이제 전교조의 단골 투쟁 메뉴였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를 직접 떠맡겠다고 나섰다. 이달 13, 1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집단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문화예술제 형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를 당하자 대응책으로 '참학'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는 건 결코 참교육이 아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6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회장 장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10월 5일자 「이상한 '참교육'」 제하의 보도에서 참학이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으며,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회의 활동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의 들러리'라고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졌음에도 참학이 전면에 나서 학생들을 '전교조의 도구'로 내주었다고 폄하하여 신청인회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자'라 함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가치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비평 등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활동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평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해당 보도내용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상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9. □

신청인 단체가 반정부·반 헌법적인 전교조의 들러리나 다름없는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으나,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활동이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1.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동아닷컴 : 『이상한 '참교육'』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5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46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결 정 문

〈2009서울조정469의 결정문 참조〉 □

경찰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이 비리문제로 조사중인 사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포항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포항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눈먼 경찰 이유 있었네』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14일 21:00)
내 용 :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관할경찰서가 아닌 해양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 경북 포항시 연일읍에 한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대형장비를 갖추고 한 달 동안 시가 5억 원어치를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를 적발한 수사기관은 뜻밖에도 포항해양경찰서, 이 제조공장은 관할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불과 1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아 경찰이 뒤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담당자인 포항남부경찰서 이모 경사가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포항지청은 포항남부경찰서 이모 경사가 유사석유휘발유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경사의 소속부서 책임자까지 조사했다는 사실은 오보이며, 내사중인 사건에 대해 뒤를 봐주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사과하며, 포항남부경찰서는 이경사의 의혹에 대해 즉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코앞에서 벌어진 불법을 몰랐다는 눈먼 경찰, 알고 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며 경찰관 및 경찰조직을 비하한 명예훼손적인 자극적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측의 2009. 10. 14. 뉴스데스크와 10. 15 뉴스투데이 보도에서 신청인의 원음을 그대로 방송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한다.
• 피신청인은 위 방송 내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눈먼 경찰, 알고보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격이었습니다.)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을 비롯한 주변 경찰관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자 A12면)
내 용 : 네팔 출신 노동자 A씨(31)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서 6년 동안 소 창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다 보면 냄새에 머리가 지끈지끈했다. 처음에 110만 원이던 A씨의 월급은 6년 동안 10만 원이 올랐다. A씨는 8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퇴직금은 그동안 준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주노조 노동상담소 윤○○ 노무사는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장님 나빠요" 기사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6일자 사회면에 "사장님 나빠요"라는 제목과 "강제출국당한 네팔 노동자 퇴직금 안주려고 불법체류 신고" 라는 부제목을 사용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U산업은 네팔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단지 강제출국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서 내용일 뿐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U산업의 이사와 대리가 강제출국당한 불법체류 네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수령 문서'에 강제로 사인을 하라고 했다는 보도내용 역시 문서를 확인한 결과 '퇴직금 수령 문서'가 아닌 '급여 및 퇴직금 계약서' 였으며, 강제 사인요구가 아닌 노동자의 확인 판단 후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인 기사가 아닌 네팔 노동자 진술서에만 의존한 주관적인 기사와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보도되어 U산업에 피해를 주었음을 심심한 사과와 함께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사회부 차장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동아일보 A2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강제 출국당한 네팔 노동자 7명…)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

〈별 지〉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지난달 16일자 A12면 〈"사장님 나빠요"〉 기사와 관련해 U산업은 회사의 신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출국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A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동아닷컴 :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471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사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60 참조)

보도내용

네이버 :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61 참조)

보도내용

네이트 :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62 참조)

보도내용

야 후 :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하며, 비전문의의 시술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보도했으나, 성형수술(미용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높은 코가 무조건 예쁘다? 턱, 이마, 입술과의 비율이 중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3일자 행복플러스 8면)

내 용 : 높고 오뚝한 콧날은 매력적인 얼굴의 화룡점정이다. 때문에 코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이도 많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잦은 것 또한 사실. '내 것' 같지 않은 어색한 모양새나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안전하게 예쁜 코를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만나 코 성형의 이모저모를 짚어봤다. (중략)

-최근 성형을 위한 의료관광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의 경제력이 급등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더욱이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의학수준이 알려지면서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성형기술을 배우려는 중국 의사도 많다. 문제는 한국의 비전문의에게 교육을 받거나 어깨 너머로 배운 무분별한 시술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대한미용외과학회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3일자 Well life 8면에 '높은 코가 무조건 예쁘다? 턱, 이마, 입술과의 비율이 중요'라는 제목으로 김○○ 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전체적인 (얼굴) 균형은 물론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조직과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안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코 성형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중국인 환자들을 보면 한국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는 미용수술 분야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전유물이 아니며 성형외과 비전문의도 의료법상 미용수술을 할 수 있고, 안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 성형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중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10월 13일자 행복플러스 8면 '높은 코가 무조건 예쁘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는 "미용수술 분야는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니므로 성형외과 비전문의도 의료법상 미용수술을 할 수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9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 행복플러스 8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박스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전문의 인터뷰-아름다움의 중심 코 성형 A to Z')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일자 행복플러스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야하며, 비전문의의 시술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보도했으나, 성형수술(미용수술)은 성형외과전문의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닷컴 : 『높은 코가 무조건 예쁘다? 턱, 이마, 입술과의 비율이 중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패션/뷰티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76의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47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닷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일자 패션/뷰티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2.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윤 승 준)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됐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1일자 12면)
내 용 : 정부가 지난 8월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에서 밝힌 '4대강 수질 예측 결과'의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예측을 담당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의 수질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과거의 수질 실측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없는 데이터를 가공(架空)해서 2012년 수질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조작'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엔 정식 착공(着工)에 들어갈 예정이나 4대강 사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수질 문제가 막판에 불거지면서 향후 사업 일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생겼다.

◇54%의 데이터가 왜곡·조작

20일 본지가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8월 24일 발표)'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질 측정망' 데이터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4대강의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가운데 21개 지점(54%)의 2006년 수질 데이터가 왜곡 혹은 가공된 상태로 2012년 수질 예측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엔 4대강 대부분 구간의 수질이 '수영하기 좋은 물'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 역시 공신력이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됐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21일자 제12면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 8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기본계획)'에서 밝힌 4대강 수질예측 결과의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수질 예측 39개 지점 중 5개 지점은 2006년 수질측정치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됐고 16개 지점은 수실측정망이 없어 수질 측정치 자체를 구할 수 없는데도 마치 측정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연구관이 "수질예측 모델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실제 수질 측정치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이와 같은 데이터 조작을 미리 알고도 함구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에서 2012년 수질예측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2006년 수질 발표자료는 측정지점의 실측값을 토대로 수질 모델링 보정과정을 통해 실측값에 유사하게 재현한 모의치로서 수질예측 모델링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실측치와 부분적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질 비교를 위해 기준년도로 제시하는 수질측정값은 실제 측정치가 아닌 모델 보정과정을 거친 모의치라는 점에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2006년도 수질 발표자료 중 일부 지점(5개 지점)의 수질값이 실측치와 다르기 때문에 수질예측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략)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조정대리인 물환경정책과장 김 ○ ○
2.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윤 승 준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사회정책부 차장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조선일보 A12면에 〈별지〉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012년 '수영하기 좋은 물'…)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6.

〈별 지〉

• 제 목 :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조선일보 지난달 21일자 A12면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4대강 수질예측 결과가 왜곡·조작된 자료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수질예측 모델링에서는 실측값을 토대로 하여 보정한 모의값이 사용되며, 실측값이 없

을 때는 인접지점의 측정값을 차용하거나 통계적 추론기법으로 그 모의값을 산출하는 것이 보편적 연구방법이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과학원은 '정부가 데이터 조작을 미리 알고도 함구해 왔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모델링을 위해 모의 산출된 2006년 수질자료를 공개했을 뿐 아니라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을 통해 지점별 실측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4일자 A1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조선닷컴 :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됐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1일자 1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7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478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조선닷컴 : 『[알려왔습니다] 본지 10월 21일자 A12면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됐다'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4일자 사고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윤 승 준)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2009서울조정4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7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478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결정조서 참조〉 □

정부의 4대강 수질 예측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윤 승 준)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2009서울조정4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7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478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법인설립인증이 없고 그 대표의 밀렵행위가 의심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진도군지회 (지회장 김 ○ ○)
피신청인 : 예향진도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예향진도신문 : 『도로 표지판이 '영점 사격장'?』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3일자 2면)
내 용 : 진도대교를 지나면 밀엽꾼들이 해안도로를 다라 총포활극이 밤마다 펼쳐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진도군 군내면 해안도로의 도로 표지판은 말 그대로 숭숭 뚫린 벌집이 다 되어 있었다.

(사)유해조수관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군내 세등리) 씨는 "진도군(환경녹지과)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법인체 단체의 인준을 해 주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우리가 제대로 활동하게 되면 불법 밀렵 단속은 물론 공식적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진도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런 상황을 어이없어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진도예향신문은 지난 2009년 9월 23일자 2면 하

단우측면에 "도로표지판이 영점사격장"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진도지회(회장 김태환)가 법인설립 인증도 없는 단체이며 단체의 대표로 밀렵행위가 의심되는 자이며 과거의 밀렵위반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전남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진도지회 (회장 김○○)은 적법하게 법인설립 등록과 인증이 되어 있으며, 현재나 과거에도 밀렵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 수용 불가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과실로 여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피켓시위 현장을 보도하면서 병원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Ⅰ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5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중부일보 : 『여성병원서 4세兒 장염치료 중 사망』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2일자 18면)
내 용 : 수원의 한 병원에서 장염 치료를 받던 3세 아동이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김모(3)양은 지난 7월 24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S병원에서 장염과 중이염 진단을 받고 영양제와 항생제를 투여 받던 중 경련을 일으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28일 숨졌다.

유족들은 숨진 김양이 4차 투여 당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을 때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다른 약품이 잘못 투여돼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수용 불가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과실로 여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피켓시위 현장을 보도하면서 병원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다 음 : 『여성병원서 4세兒 장염치료 중 사망』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2일자 뉴스검색란)
내 용 : 〈2009경기조정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피신청인 주장	
50,000,000원	사실보도이므로 수용 불가	□

신종플루로 사망한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신청인 학교가 같은 반에 다른 확진환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선단초등학교 (교장 박 광 범)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6.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A1~A2면)

내 용 : 16일 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곱 살짜리 소년이 사망했다. 폐렴 증세로 지난달 28일 입원한 지 19일 만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 플루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사망 당일 아침만 해도 '닌텐도'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나뿐인 자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중략)

A군의 병세는 16일 오후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 다급해진 부모는 A군을 119구급차에 태워 서울 시내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도착 후 한 시간 넘게 이뤄진 심폐소생술에도 아이는 이날 밤 결국 숨졌다. 아이의 거짓말 같은 죽음 후 부모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A군이 신종 플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같은 반 친구가 신종 플루에 걸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23일자 1면에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신종플루 사망 어린이가 9월 28일 학교에 등교하였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9월 25일 오전 10시경에 발열로 인하여 귀가 조치 후 9월 28일 이후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9월 24일 같은 반 어린이가 신종플루에 걸렸고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같은 반 어린이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은 9/28 오후에 학부모로부터 학교 측에 통보 받았고, 사망 어린이 학부모는 이미 2회의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폐렴 치료를 받는다고 통보를 하여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와 병원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선단초등학교
교장 박 광 범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대표이사 김 재 호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11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4.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3일자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제하의 기사에서 A군이 신종플루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 학교에 등교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는 9월 25일 발열 확인 후 A군을 귀가 조치시켰으며 그 이후 A군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같은 반 친구가 양성반응을 보인 것은 정밀검사가 아닌 간이검사 결과였기 때문에 확진 검사결과를 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7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신종플루로 사망한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신청인 학교가 같은 반에 다른 확진환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선단초등학교 (교장 박 광 범)

피신청인 :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6.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동아닷컴 :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3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8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8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482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동아닷컴 : 『[바로잡습니다]10월 23일자 A1면 '방역 시스템 믿어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7일자 종합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수의사인 신청인이 엉터리 진료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인터넷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인터넷한국일보 : 『요즘 반려동물의 코드는 '교감'』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9일자 M주간한국면)

내 용 :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녀 없이 애완동물과 사는 부부를 일컫는 '딩크펫(DINK+pet) 가족'도 증가 추세다. 이러한 인식은 단어의 변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지금은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쓰이고 있다. (중략)

애완동물에 엉터리 진료·바가지 진료비 도마에

그러나 화려한 애완용품과 이들의 편의를 돕는 정교한 서비스의 발달은 반려동물 시대의 변화 가운데 일부분이다.

한국펫산업협회 박용희 차장은 "애완동물 붐이 일었던 초기에 비해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고, 지금은 호화스러운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동물권익 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최근 일부 동물병원의 엉터리 진료와 바가지 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 정릉동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A씨는 산책 도중 강아지가 다리를 크게 다쳐 급히 인근 'ㅂ 동물병원'으로 갔다.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한 수의사는 슬관절 탈구라고 했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릉동 ㅂ 동물병원에서 세구에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 내 용 : 편파적인 내용으로 일선에서 말못하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누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이 아플 때 가장 신경쓰는 사람은 주인과 동시에 수의사입니다. 아픈동물이 오게되면 그에 대한 주변환경과 음식섭취, 운동, 예방접종과 관리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 환축(이름:세구)의 경우는 피부질병과 귀질병, 털이 지저분하였으며, 치석이 심해서 구강에서 구취가 심하고, 잇몸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구는 그날 미용예약이 되있던 환축입니다. 병원으로 방문하여 세구가 다리를 절고 아파한다고 하였습니다. 촉진과 함께 방사선 촬영후에 세구는 슬개골 탈구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인터넷한국일보 : 『요즘 반려동물의 코드는 '교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2일자 M주간한국면)

내 용 :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녀 없이 애완동물과 사는 부부를 일컫는 '딩크펫(DINK+pet) 가족'도 증가 추세다. 이러한 인식은 단어의 변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지금은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쓰이고 있다. (중략)

최근 3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양이를 기르는 인구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족의 일원으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애완동물들. 이들은 사회·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후략) - 해당부분 기사삭제 □

신청인 국토해양부가 당초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로 산정한 1조 5천억 원이 실사결과 큰 오차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4대강 보상비 산정 엉터리』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1면)
내 용 : 1조 5,000억 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당초 계획된 보상 대상과 실제 측정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지난달 21일부터 보상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5월 25일~8월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 5,686만㎡, 836만㎡로 잡고 1조 5,00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는 1만 8,100동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실사에서는 2만 1,000동으로 오히려 15%정도 늘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차이로 보상 대상이 과다 혹은 과소 계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터플랜에 나타난 보상 대상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경작지 면적 2333만㎡ 등에 5,8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 실사 결과(2489만㎡)에 대입하면 전체 보상 대상 경작지 면적의 93.7%이다. (후략)

(2) 『문서마다 들쭉날쭉…실무자도 왜 그런지 몰라』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3면)
내 용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비 내역은 문서마다 제각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졸속으로 만든 보상 마스터플랜=4대강 사업 보상비 내역의 최초 버전은 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상의 숫자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1조 5,000억 원을 들여 4대강 주변 땅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땅은 하천부지 내 경작지 1억 5,686만㎡, 사유지 836만㎡, 신규 편입 1228만㎡ 등 총 1억 7,750만㎡, 비닐하우스는 1만 8,100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완료된 실제 측정 결과는 당시 추정치와 크게 다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4대강 보상비 산정 엉터리"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1면과 3면에 "4대강 보상비 산정 엉터리", "문서마다 들쭉날쭉…실무자도 왜 그런지 몰라" 라는 제목으로 '국토부 예상면적, 실사결과와 5~6배 편차 발생 보고받고도 책정된 1조 5,000억 원 보상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보상면적 비교를 위해 보도에 인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사결과(8월초) 자료는 '09년 6월 30일까지의 당시 기본조사 실적을 집계한 비공식 내부자료로서 정부발표 마스터플랜상의 전체 보상면적과 비교할 수 없는 자료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보도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사결과(8월초)를 인용한 2,489만㎡는 4대강 사업구간 전체면적이 아닌 일부구간(하천부지내 경작지 등)의 부분조사 면적임을 밝힙니다.

지난 10월 7일자 보도가 실시설계 이후 확정되는 사업범위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인 보상대상 면적 및 보상비 규모를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31일자 2면)
내 용 : 국민일보 10월 7일자 1·3면 '4대강 보상비 산정 엉터리' 기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기사에 인용된 보상 면적 자료는 기본 조사가 부분 진행 중인 상황에서 4대강 사업 구간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구간에 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최종 보상대상 면적과 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당초 예산 규모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

신청인이 MBC 재직시절 방송 직전에 정부에 유리하도록 뉴스 큐시트를 마음대로 뒤집었고, 동료 기자를 용공분자로 몰아붙이고 법정에서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증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MBC 단협, 친권력방송 저지 목적"』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0일 방송면)
내 용 : 다수의 뉴라이트·친여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가 엄기영 MBC 사장 사퇴 압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사 단체협약의 인사·경영·편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 MBC 경영진들의 정권 부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보도본부장했던 이○○ 공언련 대표, 80년 광주 취재 후배 '무정부 아니다' 보고하자 용공몰아" vs "빨갱이로 몬 적 없어... 나역시 끌려갔던 사람"

여기서 MBC본부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자 현재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전 이사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MBC본부는 "이○○ 당시 보도본부장(이사)에 대해 당시 노보는 방송 직전 정부에 유리하도록 뉴스 큐시트를 마음대로 뒤집어 '청탁의 화신, ○○○'로 소개하고 있다"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 전 본부장의 일화를 소개했다. (중략)

법정에서 오 기자의 사상이 의심된다는 진술을 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당시 (검사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맞냐고 해서 맞다고 했다. 보도국에서 오 기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었다"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진술했는지에 대해선 "일일이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시 사회부 전체가 끌려갔는데 왜 나만 그런 것처럼 하느냐"며 자신과 오 기자에 대한 상황이 신군부에서 다 만들어낸 것을 우리한테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이 대표의 말처럼 80년 5월 자신도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MBC에서 편집부장·문화과학부장(82년)·사회부장(87년)·외신부장(89년)·주말앵커·부국장·보도국장·베이징지사장·보도본부장 등 방송기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 올랐다. 이 대표가 승진을 거듭하던 시기 MBC는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한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았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147호(2009년 9월 10일자)에서 "본부장제도의 탄생 배경"이라는 기사에서 전 MBC보도본부장 이○○ 씨에 대하여 "방송직전 정부에 유리하도록 뉴스큐시트를 마음대로 뒤집는다, 청탁의 화신이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오○○ 기자를 용공분자로 몰아붙이고 법정에서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증언했다, 동료들의 해직을 이용하여 보도본부장에 이르렀다, 본부장 시절 9룡으로 불리는 여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특혜를 받았다, 친정부-보수세력과 궤를 같이하는 '공정언론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MBC에 대한 흑색선전에 나섰다"는 취지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

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전 보도본부장은 MBC에 근무하면서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을 하였을 뿐 방송직전 정부에 유리하도록 뉴스큐시트를 마음대로 뒤집은 일이 없고, 청탁의 화신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오○○ 기자를 용공분자로 몰아붙이거나 법정에서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증언한 사실이 없고, 동료들의 해직을 이용하여 보도본부장에 이르렀던 적이 없으며, 본부장 시절 9룡으로 불리는 여당 대통령후보 토론회를 생중계한 것은 MBC가 심혈을 기울여 따낸 성과였고, '공정언론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서 MBC에 대하여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흑색선전에 나선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고, 피신청인이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조정대상기사의 삭제를 요청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보은군 회남면 시민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이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회남면농업경영인회 (회장 김 ○ ○) 외 9인
피신청인 : 보은사람들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보은사람들 : 『현수막과 아이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8일자 4면)

내 용 : 한 아이가 학교를 가다말고 엄마에게 울면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뭘 얼마나 잘못 했길래, 사람들이 아빠 욕을 심하게 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이에게 감정을 자제하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아빠는 욕먹을 짓 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중략)

이상의 내용은 추석 전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원과 자녀사이에서 일었던 일로, 지난 9월23일 회남면 사회단체들이 '정당에는 충견, 군민에게는 미친개', '농업발전 저해하는 군의원은 자결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이 발단이 됐다.

설령 박의원이 미친개 소리를 듣고 자결해야 할 만큼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중학생 아이가 학교가다 말고 울도록 현수막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는지 회남면 사회단체에 묻고 싶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수막과 아이의 눈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8일자 4면에 『현수막과 아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은군 의회에 대해 비판하는 현수막을 만들었으나 보은군의회

의원인 박범출 의원으로 국한시켜 지역민과 특정 인간의 대립, 갈등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내용이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적법한 절차와 게시기준을 준수하여 게시한 현수막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현수막과 아이의 눈물'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8일자 4면『현수막과 아이의 눈물』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회남면농업경영인회 등 회남면내 시민단체들은 특정의원을 비판한 현수막을 내건 것이 아니라 보은군 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특정인을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보은사람들 2009년 11월 5일자 4면 우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현수막과 아이의…)는 통상적인 기사의 중간제목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보은사람들 :『'현수막과 아이의 눈물'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5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수의사인 신청인이 엉터리 진료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주간한국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주간한국 :『요즘 반려동물의 코드는 '교감'』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30일자 22~2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 48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 48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제2293호(2009.9 . 30.~10. 13.)「요즘 반려동물의 코드는 '교감'」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정릉동 'ㅂ 동물병원'은 다리를 크게 다친 강아지에게 미용부터 시키고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야기하는 등 엉터리 진료와 바가지 진료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ㅂ 동물병원에서는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 강아지는 애초 미용을 하기로 예약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다리를 치료하기 전 감염 등의 방지를 위해 미용이 선행되어야 했으며, 미용시에는 이발기에 의해 약간의 긁힘이 있을 수 있고 강아지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병원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룬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1월 25일까지 〈주간한국〉 'Special' 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일반적인 주간한국의 반론보도 제목 활자체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 및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에 게재된 관련 기사 중 신청인 병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 및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에 게재된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한국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3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안전 기준을 어기고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휴대용 안마기를 화면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서흥메가택 (대표이사 권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못 믿을 전기제품 인증제"』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16일 21:00)
내 용 : KS 마크처럼 정부가 인증을 해놓은 제품은 믿고 쓰게 되죠. 그런데 안전 기준을 어겼는데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수두룩합니다.

휴대용 안마기입니다. 플라스틱 손잡이에 전류가 흘러 사용 시 감전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등받이용 안마기입니다.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지퍼만 열면 전선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센터장/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손쉽게 열어서 내부에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가정용 장판.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55도가 넘습니다.

▷이○○ 주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표면 온도를 50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표면 온도가 50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안전 인증을 받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전기 제품 504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KS인증 제품을 포함해 22%인 11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중 27개는 제품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전기용품에 안전 인증을 해주는 정부출연 시험기관은 모두 3곳인데, 인증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센터장/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일부 제조업체에서 원가절감이나 소비자 취향 등을 고려해 구조 변경 및 안전에 부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나..."

하지만 조사 결과 시험기관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하고 인증해 준 사례가 61건 적발됐습니다. 시험항목을 누락시키거나 아예 부적합 제품을 적합 처리해주고 안전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못 믿을 전기제품 인증제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16일자 9시 뉴스에 "못 믿을 전기제품 인증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기안전인증 부적합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마치 제품에 전류가 흘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안전상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방송에서 보여진 제품은 안전과 관련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외식 물가 10년 간 계속 올라 外』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9일자 07:00)

내 용 : 웰빙 바람을 타고 가정에서 직접 건강을 챙기는 '홈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건강보조 기구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안마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안마기부터 저주파 안마기, 또 한방의 부황과 양방의 저주파를 결합한 저주파 부황기까지.

이들 상품은 3, 4만 원 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웰빙 상품이 부담스러운 실속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의 국감 당시 발언은 민주당의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었음에도 '사과'라고 잘못 보도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제 원 (국회의원)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재보선 앞둔 정치싸움에 국감정책은 없고 정쟁만』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2일자 정치면)

내 용 : 단 20일간 정부기관 478곳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장이다. 하지만 올 국감 역시 성적표가 부진하다. 대부분 국정감사장이 정치공방으로 달아오르고 피감기관들은 '소나기' 피하는 심경으로 임한다. 22년째인 국감을 두고 개선론이 거세지는 이유다.

"이거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야."

지난 9일 오후 3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 회의장 주변에서 서성대는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표정엔 불만이 가득했다. 원래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야 할 국감이 여야의 충돌 때문에 계속 늦춰진 탓이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 국감 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유력 정치인(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흠집 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결국 장 의원이 사과를 하고 회의가 시작된 시점이 오후 3시45분. 이 바람에 이날 오후 중앙119 구조대를 방문키로 한 현장 시찰은 취소되고 말았다. 소방방재청은 국회의원들의 소방헬기 시승 행사를 며칠 전부터 준비해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 10월 12일자 "재보선 앞둔 정치싸움에 국감정책은 없고 정쟁만" 제하의 기사 중 "장제원의원이 사과를 하고"를 "장제원의원이 해명을 하고"로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주관한 한자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공주대 학군단 후보생들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자교육진흥회 (회장 성 ○ ○)
피신청인 : 대전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전투데이 : 『'한자공인시험' 부정행위 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9일자 1면)
내 용 : 한자 국가공인자격시험장의 시험감독이 엉망인채 시험감독관으로 들어온 학군단 행정관과 공주대학 학군단학생들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시험이 치러져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또한 공주대학교에서 치러진 시험장에서는 한자 국가공인시험을 보면서 수험생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및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들과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채 시험에 임했으며, 시험장 좌석도 수험번호 순서대로가 아닌 아무자리에서 앉아 수험표와 본인대조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시험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험이 치루어졌다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9일자 종합 1면에, 『한자공인시험 부정행위 물의로 '한자 국가공인자격시험장의 시험감독이 엉망인 채 공주대 학군단 행정관이 ROTC학생들에게 한자국가공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 10여분을 남겨놓고 다른 감독관을 퇴실시킨 뒤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수험표와 본인대조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치르게 하였고 학군단 ROTC학생들의 사이에 시험보기 전에 이미 답안지가 미리 나돌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관계관(시험감독관) 및 응시생의 확인에 의하면 각 고사실 마다 2명의 감독관이 정상적으로 감독을 하였고 시험 종료 10여분을 남겨놓고 공주대 행정관이 감독한 고사실의 다른 감독관은 퇴실한 것이 아니고 고사실 뒤쪽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예의 감시하였으며, 정·부 감독관이 시험 중에 수험표와 신분증에 의거 본인 대조를 실시하였고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여 가방 등 소지품과 함께 응시생 각자의 옆 빈 자리에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시험문제는 시험 시작 전 응시생이 문제지 봉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뒤 개봉하였으므로 답안지가 사전에 나돌 수 없었던 것으로 이상과 같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공주대 학군단 한자공인시험 부정행위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19일자 1면 『'한자공인시험' 부정행위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시험주관기관인 한자교육진흥회와 학생중앙군사학교는 다음과 같이 반론해왔습니다.

첫째, 감독관이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휴대폰을 회수하지 않고, 시험장 좌석도 수험번호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았으며, 수험생 본인 확인 여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내부 진흥회 지침상 휴대폰 등 개인소지품은 회수하지 않고 대신 전원을 끄게 하고 있으며, 좌석배치 문제는 감독관 회의시 결정된 사항으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랜덤방식으로 좌석을 조정한 것이며, 수험생 본인확인여부도 신분증과 수험표를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둘째, ROTC학생들 사이에 사전에 답안지가 나돌고, 페이퍼를 이용해 컨닝하는 학생들에 대해 퇴실조치를 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험문제지는 한자교육진흥회에서 봉인하여 시험당일 고사장에 직접 전달되므로 사전 유출이 있을 수 없으며,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던 컨닝 페이퍼는 인터넷상에 올려져있는 기출문제 답안이며, 진흥회 내부지침상 1차 커닝페이퍼를 이용해 커닝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페이퍼만 회수하고 재차 부정행위를 할시 무효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투데이에 2009년 11월 12일까지 사회면 우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공주대 학군단 한자공인시험 부정행위..)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공주대 학군단...)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투데이 : 『공주대 학군단 한자공인시험 부정행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의 모 지부장이 국가보조금 횡령혐의로 검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대전MBC-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0.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9년 10월 27일 07:33)
내 용 : ▷아나운서 :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국가보조금 수 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동물관련 모협회 대전지부장 예순살 최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환경부로부터 밀렵단속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5,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7일 MBC 07:33 뉴스에 "국고보조금 횡령한 밀렵사기단 검거"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과 달리 모협회 대전지부장 예순살 최모 씨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가공의 인물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의 사무실 운영비를 (주)리스나가 대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으나,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공 성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시사저널 : 『공성진 의원 포럼 사무실 월세 벤처기업이 대납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60~67면)
내 용 : 한 기업체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사무실의 월세와 운영비, 여직원 월급 등을 대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바이오 벤처기업인 ㈜리스나는 이런 명목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만 약 6천 7백여만 원의 돈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

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왜 ㈜리스나는 돈을 대신 대준 것일까. 단순한 후원일까, 아니면 무언가 대가를 받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공최고위원과 ㈜리스나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이상한 사무실이 하나 있다. 렉싱턴호텔 바로 뒤에 있는 맨하탄 21 오피스텔 621호(약 60.03㎡)가 그곳이다. 입구에는 현판이 아래위에 두 개가 걸려 있다. 위에는 '국회 위기관리포럼' 간판이, 아래에는 '리스나 기업 부설 연구소 서울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국회 위기관리포럼은 공성진 최고위원(56·서울 강남 을)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이다. 공의원은 지난해 6월17일 국회 연구단체인 이 포럼을 창립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 관리를 법적·제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리스나는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업체이다.

지난 5월 말까지 이 사무실 입구에는 '국회 위기관리포럼' 현판만 걸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스나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현판이 추가로 내걸렸다.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을 전후해 공최고위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측근과 국회 위기관리포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직원이 공의원의 곁을 떠난 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성진의원 포럼 사무실 월세 벤처기업 대납의혹' 바로잡습니다(또는 공성진의원 포럼 사무실 월세 대납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시사저널은 지난 10월 26일자(1045호, 60~67면) 추적취재에서 "공성진 의원 포럼 사무실 월세, 벤처기업이 대납했다"라는 제목으로 벤처기업 리스나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사무실의 월세와 운영비, 여직원 월급 등을 대납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보도임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벤처기업 리스나는 발전연과 사무실 공동사용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사무실 공동사용계약서 작성후 계약내용에 따라 벤처기업 리스나는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발전연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계약상 적법한 관계였음

둘째, 사무실 여직원은 벤처기업 리스나 소속직원으로서 당해 사무실에서 벤처기업 리스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리스나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함

셋째, 벤처기업 리스나는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주최의 「돼지 인플루엔자」관련 토론회에 과거 조류독감 백신개발 성과와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음

따라서 공성진의원과 벤처기업 리스나와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한 시사저널은 해당기사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기사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0
청 구 명 : 정정·손배
신 청 인 : 공 성 진
조정대리인 보좌관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2번지
대표이사 신 상 철
조정대리인 편집장 소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시사저널' 7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과 부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2009서울조정490)의 부제목((주)리스나가 국회 연구단체인…)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2009서울조정490)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도문 제목과 부제목을 '인터넷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종합면에 24시간 동안 게시하고, 제목과 부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2009서울조정491)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2009서울조정491) 바로 아래에 이어서 〈별지〉 기재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한다.

5. 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사저널 1045호와 2009년 10월 27일자 인터넷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에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사실로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6.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이 제5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0.

〈별 지〉

보도문

• 제 목 : 밝힙니다

• 부제목 : "'벤처기업, 공성진 의원 포럼 사무실 월세 대납' 사실과 달라"

• 본 문 : 본지가 지난 1045호의 '추적취재' 「공성진 의원 포럼 사무실 월세 벤처기업이 대납했다」 제하 보도와 관련, 공 의원측은 "벤처기업 (주)리스나가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대신 국가발전전략연구회가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맺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여직원은 리스나에 채용되어 사무실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리스나가 급여를 지급했던 것뿐인데 이런 보도가 나가게 돼 유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가 주최한 〈돼지인플루엔자〉 관련 토론회에 리스나가 패널로 참여한 것은 과거의 조류독감 백신개발 성과와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의 사무실 운영비를 (주)리스나가 대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으나,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공 성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인터넷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인터넷 시사저널 : 『공성진 의원 포럼 사무실 월세 벤처기업이 대납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

내 용 : 〈2009서울조정49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9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490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이 주관한 한국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공주대 학군단 후보생들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장 이 ○ ○)
피신청인 : 대전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전투데이 : 『'한자공인시험' 부정행위 물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9일자 1면)
내 용 : 〈2009대전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대전중재2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대전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2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63 참조)

보도내용

ＹＴＮ : 「뉴스Q」 프로그램 『가치 포획 부풀려 보조금 챙겨』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0일 16:25)
내 용 : 까치 등이 일으키는 정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포획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포획 숫자를 부풀린 야생동물협회 임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54살 김모 씨 등 임직원 네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보조금을 받은 까치에 표시한 락카를 지운 뒤 새로 잡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와 협회 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 등 임직원 무혐의 밝혀져"
• 내 용 : 본 YTN-TV는 지난 3월 10일자 뉴스Q 1,2부 프로그램에서 "까치 포획 부풀려 보조금 챙겨"라는 제목으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 등 임직원 네 명을 보조금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 등은 위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64 참조)

보도내용

뉴시스 : 『국고보조 횡령・포획실적 과정…수렵단체 임직원 덜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 14:17)
내 용 : 인천공항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유해동물 구제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포획실적을 부풀린 수렵단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참여하는 엽사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54)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참여할 엽사 추천의 대가로 회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재한 이 협회 수렵관리팀장 문모 씨(50)를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이 지급한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 보조비 4600만 원을 빼돌리고,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회 운영비 등 정부에서 보조받은 법인 자금 8,2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억 2,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모 씨는 엽사들이 마음 놓고 수렵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점을 악용해 인천공항에 구제활동 엽사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회원 이모 씨(45)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공항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공항 주변 2~3km 이내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구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엽사 추천과 사업 위탁은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맡겨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국고 보조금 횡령 등 관련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임직원 무혐의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0일자 사회면에 "국고보조 횡령 포획실적 과장…수렵단체 임직원 덜미"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는 활동비와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 협회 수렵관리팀장 문모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와 수렵관리팀장 문모 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65 참조)

보도내용

연합뉴스 : 『검찰, 동물보호협회 부회장 영장 보완 지시』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19:38)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Ⅳ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5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노컷뉴스 : 『억대 '까치 포획금' 횡령한 동물단체 간부 구속』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노컷뉴스 : 『〈추후보도문〉"억대 '까치 포획금' 횡령…"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1일자 사회면에

'까치 포획비 불법 수령한 야생동물단체 부회장 구속(부제 : 환경부 및 공기업 보조금 등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를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또, 이 협회 수렵관리팀장 문모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음을 기사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와 수렵관리팀장 문모 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뉴스웨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스웨이 : 『까치 포획비 불법 수령한 야생동물단체 부회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뉴스웨이 :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받던 야생동물단체 임직원 무혐의 3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2의 신청후 보도문 참조〉□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Ⅵ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7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야생동물보호협회, 까치 포획비 부당 수령』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투데이 : 『〈추후보도문〉"야생동물보호협회, 가치 포획비..."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Ⅶ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8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환경법률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환경법률신문 : 『야생동물보호협회, 까치 포획비 부당 수령』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환경법률신문 : 『국고 보조금 횡령 등 관련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임직원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1일자 사회/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Ⅷ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499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비행장 까치 잡으라고 준 보조금 꿀꺽』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2일자 A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소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인터넷식품신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터넷식품신문 :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 내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30일자 뉴스면)

내 용 : 최근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D여대 K교수가 소금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 식품업계 및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D여대 K교수는 이달 중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여러 종류의 소금을 사용해 김치와 젓갈을 제조하여 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정제염을 사용했을 때 국산 천일염 등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기호도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목포대 함경식 교수 등의 소금관련 논문에서는 "새우젓 제조시 여러 종류의 소금을 사용했을 때 정제염보다 국산 천일염이 관능검사 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료간 유의차가 뚜렷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D여대 K교수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 정정합니다.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09년 10월 30일자 초기화면에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내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D여대 K교수가 소금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 발표를 발표해 식품업계 및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결과 K교수의 연구내용은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반된 연구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D여대 K교수 연구결과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9년 10월 30일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내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D여대 K교수가 소금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 식품업계 및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K교수는 연구내용이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2009년 11월 29일까지 7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식품신문〉 종합면 중앙 목록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식품신문 : 『D여대 K교수 연구결과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1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Ⅸ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경기방송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방송 : 「뉴스」 프로그램 『야생동물 구제협회, 정부보조금 가로채, 특혜를 악용해 개인적으로 사용』 제하의 보도 (2009년 3월 11일 06:36:28)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경기방송 : 「뉴스」 프로그램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보조금 횡령 등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11일 07:00)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Ⅹ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2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야생동물 구제 보조비 '꿀꺽'』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4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경기일보 : 『야생동물 구제 보조비 횡령 등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X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인일보 : 『보조금 빼먹다 올가미에 덜컥』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1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경인일보 : 『'국고보조금 횡령'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1일자 1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X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부일보 : 『돈에 눈 먼 야생동식물협 임원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1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중부일보 : 『"국고보조금 횡령 등 관련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임직원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4일자 14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들이 유해동물 구제사업비와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천공항 야생동물 구제사업에 회원을 추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XI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5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기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기호일보 : 『까치 포획 한다더니 거액 보조금만 꿀꺽』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자 1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기호일보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입직원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3일자 1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 제품인 "헤어가드"가 큰 발모효과가 없다고 보도되었으나, 임상시험을 거쳐 탈모치료효과를 입증받았다 Ⅰ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오스틴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닷컴 : 『두피마사지로 탈모 치료, 모발상태 따라 역효과 볼 수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8일자 헬스뉴스면)
내 용 : 탈모는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보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지난 7월 국내 탈모클리닉 54곳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의사의 말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다. 여성 탈모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7가지를 뽑아 전문의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들었다. (중략)

두피관리실 등에서 보조적인 관리를 받거나 탈모방지샴푸 등을 사용하면 두피 상태가 일부 좋아지는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모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바르지 않으면 직접적인 발모 효과는 없다. 두피관리실에서 하는 마사지는 모발과 두피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최근 유행하는 헤어가드도 큰 효과가 없다. 점을 빼는데 사용하는 레이저 중 특정 파장의 레이저가 모낭 세포를 활성화시켜 발모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에서 밝혀졌지만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다. 이런 특정 파장이 아닌 일반 레이저를 이용하는 헤어가드는 큰 발모 효과가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헤어가드는 다른 레이저치료와 달리 탈모 치료 효과 탁월(또는 헤어가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16일자 건강면에 "두피마사지로 탈모치료, 모발상태에 따라 역효과 볼 수도"이라는 제목으로 (주)오스틴의 "헤어가드는 큰 효과없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헤어가드는 임상시험을 거쳐 탈모 치료 효과를 입증받았으며 또한 타 레

이저 치료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가드를 보통명사처럼 사용한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헬스조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내용 중 "최근 유행하는 헤어가드도 큰 효과가 없다."를 "최근 유행하는 일반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기도 큰 효과가 없다."로 수정하고, "이런 특정 파장이 아닌 일반 레이저를 이용하는 헤어가드는 큰 발모 효과가 없다."는 문구는 삭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닷컴 : 『두피마사지로 탈모치료, 모발상태 따라 역효과 볼 수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9일자 헬스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 제품인 "헤어가드"가 큰 발모효과가 없다고 보도되었으나, 임상시험을 거쳐 탈모치료효과를 입증받았다 Ⅱ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오스틴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두피마사지로 탈모 치료, 모발상태 따라 역효과 볼 수도』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네이버 : 『두피마사지로 탈모치료, 모발상태 따라 역효과 볼 수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1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1인 촛불문화제를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시위'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피신청인 : 인터넷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인터넷한국일보 : 『판·검사 실명 사진 들고 대법 앞 시위…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대법원 앞에서 판·검사의 실명과 사진, 허위 비방 내용 등이 게시된 현수막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판·검사 등을 비방하며 시위를 벌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0m 이내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법관을 정화하라'는 문구와 판·검사의 실명·사진, 사건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0여 차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사법부가 자의적인 재판을 했다는 내용을 현수막과 피켓에 적어, 관련 경찰과 법관, 검사 등 30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판,검사 실명 사진 들고 대법 앞 시위…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일자 초기화면에 "판,검사 실명 사진 들고 대법 앞 시위…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라는 제목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판,검사 등을 비방하며 시위를 벌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보도된 시위는, 악의적인 비난의 글이 아니며 사실에 입각한 사법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1인 촛불문화재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이므로 정정이나 반론 게재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1인 촛불문화제를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시위'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YTN : 「9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대법원 앞 불법시위자에 실형선고』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1일 21:00)

내 용 : 〈2009서울조정50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이므로 정정이나 반론 게재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1인 촛불문화제를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시위'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뉴시스 : 『'판사 사진' 실린 현수막 시위 60대 男 '실형'』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일 20:59)
내 용 : 〈2009서울조정50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조정대리인 황 보 ○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1-1
대표이사 배 기 철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종결될 경우 그 판결 내용을 보도하되, 2항에서 기술하는 요령으로 보도한다.
2. 신청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며, 피신청인은 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도해야 한다.
3.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0. □

신청인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1인 촛불문화제를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시위'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시위금지구역' 대법원 앞 불법시위자에 실형』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일 20:21)
내 용 : 〈2009서울조정50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505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1인 촛불문화제를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시위'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판사 사진' 실린 현수막 시위자 실형』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월 25일까지 후속기사로 보도하되, "신청인이 비방·명예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판사사진 현수막' 시위자 항소』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뉴스면)
내 용 : 판사의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가 실형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법원에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법원 앞에서 전·현직 판사 등 30여 명의 실명과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어모(61)씨는 "피켓과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어씨는 항소장에서 "당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있었으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피켓을 들고 1인 촛불문화제를 했으므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방이나 명예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

신청인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1인 촛불문화제를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시위'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대법원 앞 불법시위자에 실형』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50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경제 : 『[사회]대법원앞 시위로 실형 선고받은 A씨 항소』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4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7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1인 촛불문화제를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시위'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Ⅷ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어 ○ ○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법원, 대법원 앞 불법시위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일자 초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50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이낸셜뉴스 : 『대법원 앞 시위 혐의 유죄 "1인 촛불문화제".. 항소』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7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추진한 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운동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를 준 꼴이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전라북도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이사장 백 ○ ○)
피신청인 : 데일리전북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데일리전북 : 『재래시장상품권애용운동 알고 보니 종교단체 좋은 일만』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상품권애용운동을 위한 전통시장 자매결연사업이 종교단체의 잇속만 차리게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지난달 30일 김완주 전북지사와 강광 정읍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래시장활성화본부 정읍지회 주관으로 정읍 관내 13개 교회와 전통시장간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는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회원들이 재래시장공동상품권을 구입, 전통시장을 이용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회원은 다름아닌 교회 신도들로, 이들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3%를 교회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교회 지도자들은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면 3%를 헌금하는 결과를 가져옴'이란 내용의 별도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해 실제로 판매금액의 일부가 교회로 유입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A교회 모 목사는 "적립된 금액은 각 교회 여전도회에서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헌금으로 충당된다는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재래시장상품권 애용운동 관련 정정보도(혹은 정정보도문)

• 내　용 : 데일리전북은 지난 10월 19일 『재래시장상품권애용운동 알고 보니 종교단체 좋은일만』 제목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본부 회원들이 재래시장공동상품권을 구입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의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교인들이 전통시장상품권을 애용하고 전라북도로부터 받는 수수료 3%는 재래시장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사)전라북도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본부로 들어가며 수수료는 대부분 운동본부가 은행으로부터 상품권을 외상 공급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로 지출되며, 재래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사유는 상품권 관련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으로 운동본부가 수수료를 활용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재래시장상품권 애용운동'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9일 "뉴시스"에서 기사를 제공받아 "재래시장상품권애용운동"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사)전라북도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교인들의 상품권 구매로 발생한 수수료는 운동본부 계좌로 입금되어 운동본부가 상품권을 외상으로 공급 받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로 지출되었을 뿐, 재래시장과 결연을 맺은 교회에는 전혀 유입되지 않았으며, 전라북도가 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사유는 재래시장공동상품권 운용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운동본부는 "재래시장과 교회가 결연을 맺어 교인들이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형 할인매장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진출 및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더욱 어려워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편

이라고 판단하여 전주와 정읍에서 전통시장상품권 애용운동을 우선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교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나 이는 전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향후 이 운동을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전통시장과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데일리전북〉 사이트의 종합면 중앙상단에 2009년 11월 18일 18시부터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재래시장상품권 애용운동' 관련 반론보도문〉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뉴시스를 상대로 조정신청한 사건이 정정보도로 종결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은 뉴시스가 게재한 보도문을 전재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전북 : 『'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운동'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작업장이 장애인 근로자를 일일 평균 5~7시간씩 근무시키고도 매달 3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지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회복지법인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원장 한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기일보 : 『수원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 월 10만~30만 원 저임금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5일자 4면)

내 용 : 수원의 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화장지 등을 생산하면서 매달 10만~30만 원의 임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력 착취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지난 2006년 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인가 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낮은 임금체계를 고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원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저임금 논란 보도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9년 11월 5일자 4면에 "월10만~30만 원 저임금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수원의 구세군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보호작업장)을 개설, 정신지체 장애인을 고용해 화장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원시 등으로부터 매년 2억 4천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화장지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 등 1억여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주5일제로 하루 평균 5~7시간 씩의 근무를 시키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40~80%나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노동력 착취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줄었다 늘었다는 반복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수원 소재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부보조금도 2007년 1억 2천7백여만 원(기계구입비 4천5백만 원 포함), 2008년도 9천6백여만 원, 2009년도에 2억 2천여만 원(기계지원비로 1억3천8백만 원 포함)을 지원 받았으므로 매년 2

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화장지 매출액과 후원금에서 광고비와 원단 구입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전부를 장애인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근로자들은 주5일제로 하루 평균 2~3시간 작업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과 재활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수원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9년 11월5일자 4면에 "월 10만~30만 원 저임금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수원 소재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아니므로 근로임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부보조금도 1억에서 2억가량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져 매년 2억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들은 주5일제로 하루 평균 2~3시간 작업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과 재활치료를 받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시간 변동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의 장애인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일정한 기준 없이 임금 지급을 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이나 저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1월 17일 5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소제목 활자크기(작업장 "수익금 모두 장애인에 지급")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가 2009년 11월 17일자부터 경기일보 인터넷판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일보 인터넷(www.ekgib.com, 사회면)판 종합면 하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11월 17일에(24시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뜨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수원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7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작곡가 겸 가수 심○○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스포츠월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스포츠월드 : 『○○·심○○ 스타커플 탄생 "열애중이에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7일자 1면)

내 용 : 장동건-고소영이라는 세기의 커플 탄생이 확인된 가운데 S라인의 대표주자 MC 겸 연기자 ○○(본명 유○○·34)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MBC 라디오 FM4U '○○의 뮤직파티'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인 작곡가 겸 가수 심○○(38)와 3개월째 목하 열애중이다.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은 자신이 진행을 맡기 전부터 청취자의 편지를 읽어주는 프로그램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인 심○○와 지난 4월부터 가까워졌

다. 이 관계자는 "○○이 지난 4월 봄개편에 맞춰 김효진의 뒤를 이어 '○○의 뮤직파티' DJ가 됐을 때만 해도 심○○와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자주 만나고 술자리를 갖다보니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지 않던 심○○가 ○○의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열창을 하는가 하면, 지난 7월 홍대앞 롤링홀에서 열린 심○○의 콘서트에 ○○이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심○○와 함께 '웨이 백 인투 러브(Way Back into Love)'란 팝송을 다정하게 부르기도 했다.

또 게스트임에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심○○ 스타커플 탄생 "열애중이에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6일자 「○○·심○○ 스타커플 탄생 "열애중이에요"」 제하의 제목으로 열애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열애설이 사실무근임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심○○ 스타커플 탄생 "열애중이에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1월 7일자 1면 『○○·심○○ 스타커플 탄생 "열애중이에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열애설은 단순한 헤프닝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1월 23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월드〉 1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스포츠월드〉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2009년 11월 29일까지 7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월드〉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월드아이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월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추진한 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운동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를 준 꼴이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전라북도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이사장 백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66 참조)

보도내용

뉴시스 : 『"재래시장상품권애용운동 알고보니 종교단체 좋은일만"』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8일 11:00)
내 용 : 〈2009전북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전북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전북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0원 □

전여옥 의원이 세종시 문제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의원에게 독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했으나, 정치적인 의견표명이었을 뿐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여옥을지지하는모임 (회장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한겨레닷컴 : 『전여옥, 박근혜에게 또 독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여옥 의원은 9일 "신뢰가 누구를 위한 신뢰인가. 박근혜 전 대표가 늘 이야기 했던 국익을 위한 신뢰 아니겠느냐"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제가 박 전 대표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본인이 계보정치를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또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이) 나라를 위해 옳지 않은 것이지만 이 법에 반대할 경우 충청권 의원들이 다 탈당하겠다고 하는 등 위기의식을 느껴 일단은 합의를 해주고 정권을 잡으면 되돌리자고 아주 쓰라린 선택을 했다고 본다"며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의 판단이 정치적이었다고 해석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여옥, 박근혜에 또 독설'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9일자 초기화면에 "전여옥, 박근혜에 또 독설"라는 제목으로 전여옥 의원이 박근혜 의원에 대하여 한 의견표명을 '독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는 독설이 아닌 단순한 전여옥 의원의 의견 표명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
회장 최 ○ ○
피신청인 : 한겨레엔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16-25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이 근 영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

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전여옥, 박근혜에 또 '독설')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9일자 사회면 『전여옥, 박근혜에 또 '독설'』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계보정치를 비판하는 등 독설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여옥 의원이 단순히 박근혜 의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인데 독설이라고 표현하여 전여옥 의원 및 전여옥 의원을 지지하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언급되거나 거명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전여옥 의원의 발언을 '독설'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의견 제시로써 신청인의 명예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전직 조직폭력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SBS-TV : 「큐브」 프로그램 『조폭에서 래퍼로, 악은 어떻게 변하는가?』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30일 21:00)

내 용 : ▷나래이션 : 오늘 그를 만납니다. 그는 한 때 조직 폭력배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에서 떠난 지금 음악을 한다고 하네요. 담담하려고 애쓰지만 어째 좀 긴장이 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조폭에서 래퍼로, 악은 어떻게 변하는가?' 정정 방송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30일 SBS-TV에 '조폭에서 래퍼로, 악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전직 조폭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동생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한 바 신청인은 전직 조직폭력배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

프로그램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4, 521, 523~531, 534~588, 591~597, 610~687, 702~731, 733~743, 750~793, 796~799, 807, 808, 819~821, 823~825, 829~832, 838, 85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외 254인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1~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1~12. 8.
처리결과 : 각 기각/취하

보도내용

KBS-2TV :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편 (2009년 11월 9일 23:15)
내 용 : (전략)
▷출연자 :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키 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서 키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MC :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키는... 이 정도 이상 돼야 한다?
▷출연자 : 제가 일단 키가 170cm다 보니까 최소한 180정도는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

주 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신청인들은 키다 180cm 이하인 남성들인데, 2009년 11월 9일 방영된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미녀, 여대생을 만나다’ 편에서 특정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생각합니다”)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 즉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이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 제14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신청인의 위 보도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송출연자의 개인적인 취향 내지는 의견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또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남성들 중 키가 180cm 이하인 남성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의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프로그램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89, 590, 598, 732, 82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금 ○ ○ 외 4인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2009서울조정5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1. 피신청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지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향후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제목 및 내용에서 ‘미녀’ 등 신체적 표현이나 요소를 배제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집에 관여한 PD, 작가 등 실무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모 초등학교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전교조 기자회견 중 자료로 제시된 신청인 초등학생의 글이 대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외 1인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시스 : 『〈클릭〉너무 잘 써 대필 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11:45)

내 용 :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게 전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전교조가 공개한 초등학생의 글이 ‘대필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측은 회견 당시 ‘제천 A초 학생의 글’이란 제목의 A4용지 한 장짜리 자료를 제시했다. 이 글엔 모의고사를 본 학생이 교장실로 불려가게된 사연부터 교장으로부터 질책받는 상황까지를 자세히 묘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는 이 문건에 적시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초등학생이 썼다고 믿기 힘든 ‘작문실력’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얼마전 나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다’로 시작되는 이 글 곳곳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이 즐겨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들이 등장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천 A초등학생 글 대필의혹 관련 기사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뉴시스는 9월 16일 학교(장)문제를 고발한 제천 A초등학생의 글을 주관적인 근거로 대필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9월 19일에 다시 [전교조 충북지부는 19일 "기자회견 당시엔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수소문 끝에 글을 쓴 학생의 부모로부터 모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9월 16일자 보도에 대해 뉴시스는 당일 오후 전교조충북지부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연락처를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오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본 뉴시스는 3일이 지난 19일(토)에 이르러 전교조충북지부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건을 기자회견에서 제공하고 대필의혹이 일자 "수소문 끝에…모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전교조충북지부가 대필의혹을 만들고 스스로 해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16일자 오보의 책임을 전교조충북지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으며, 뉴시스는 추후 언론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제천 A초등학생 글 대필의혹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 본 문 : 본사는 9월 19일자 '제천A초교 초등학생 글 "대필 아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뒤늦게 위 사실을 확인하여 밝힌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본사 기자가 기자회견 다음날인 9월 16일 오후 전교조충북지부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학부모 연락처 등을 제공받아 17일 이후 19일 오전까지 확인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27일까지 뉴시스(http://www.newsis.com/) 홈페이지 종합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며,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클릭〉너무잘써 대필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2009-09-16 11:45]")과 ("제천A초교 초등학생 글 "대필 아니다" [2009-09-19 10:38]")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제천 A초등학교 글 대필의혹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 14:09)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모 초등학교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전교조 기자회견 중 자료로 제시된 신청인 초등학생의 글이 대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외 1인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버 : 『〈클릭〉너무 잘 써 대필 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51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버 : 『제천 A초등학교 글 대필의혹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모 초등학교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전교조 기자회견 중 자료로 제시된 신청인 초등학생의 글이 대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외 1인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트 : 『〈클릭〉너무 잘 써 대필 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51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트 : 『제천 A초등학교 글 대필의혹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모 초등학교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전교조 기자회견 중 자료로 제시된 신청인 초등학생의 글이 대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외 1인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다 음 : 『〈클릭〉너무 잘 써 대필 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51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다 음 : 『제천 A초등학교 글 대필의혹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모 초등학교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전교조 기자회견 중 자료로 제시된 신청인 초등학생의 글이 대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 ○ ○) 외 1인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야 후 : 『〈클릭〉너무 잘 써 대필 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야 후 : 『제천 A초등학교 글 대필의혹 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속보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15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시위 도중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2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대구경찰, 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2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9일자 10:28)
내 용 : 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시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 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운전자 이모(33.여)씨와 함께 타고 있던 최모(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전 11시께 중구 문화동 대구시청 앞에서 복지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인도에 주차를 했으나 경찰이 견인하려 하자 이에 반발, 2m 정도 차량을 운행해 남부경찰서 소속 정모(54) 경위의 다리를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방범순찰대원 4명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앞 인도에 차량을 주차해 옮길 것을 요구했으나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계속 반발해 견인하려 했는데 피의자들이 차량을 운행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대구경찰, 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2명 검거에 대한 반론
• 내 용 : 대구연합뉴스에서는 2009년 09월 19일자로 "대구경찰, 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2009년 9월 18일 대구시청앞에서 복지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장애인일행이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으며 체포과정에서 방범순찰대원 4명을 발로 차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최씨일행등은 복지예산 동결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한 사실이 없고(증거로 08월 20일경 이명박대통령이 복지예산 늘인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당일날 경찰이 불법미행하는 것에 사과받기 위해 대구시청 앞에 갔었고 중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돌아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남부경찰서 지역형사5팀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고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했음. 최씨와 최씨의 활동보조인은 고의로 경찰관을 차로 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차에 치었다고 주장하는 지역형사5팀장이 발을 차범퍼에 고의로 넣어 받쳤을 뿐이며, 또한 방법순찰대원4명을 발로 찬 사실도 없고 오히려 남부경찰 지역형사5팀 정○○ 팀장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2주진단을 끊고 시위하지 않았는데도 시위했다라고 거짓수사보고하여 최씨의 활동보조인을 구속하고 체포과정에서도 여성을 미란다원칙 고지않고 여경도 한 명없이 강제연행한 것은 수사권 남용 및 성추행에다가 명백한 인권침해이기에 남부경찰의 이번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연합뉴스 : 『대구 장애인단체, 경찰 규탄 집회』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15:46)
내 용 :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1일 오후 대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경찰에 항의했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대구시청을 방문한 지난 9월 18일 경찰은 불법미행과 차량파손을 당한 데 대해 사과받으려고 대구시청 앞으로 간 장애인 활동보조인인 이모씨를 미란다원칙 없이 강제 연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같은 날 이씨가 복지예산 동결에 대한 시위를 했다거나 차로 돌진해 경찰에 상해를 가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이씨를 구속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대구 남부경찰서장과 사건 담당 팀장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에도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경찰에 관련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

전교조 충북지부가 공개한 초등생의 문건이 대필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조정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 정 진 후) 외 1인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전교조 공개 제천 초등생 글 대필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7일자 교육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515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제천초등생 글 "대필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교육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부친이 손녀에 대한 육아스트레스로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대구KBS-1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구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조부모 육아 "스트레스 심각"』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6일자 21:30)
내 용 : ▷앵커 : 이른바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사례가 늘면서, 노인들의 스트레스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70살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18개월짜리 손녀가 경련을 일으켜 지난달 입원한 것에 크게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부부는 맞벌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손녀를 키워 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KBS는 2009년 11월 6일자 「조부모 육아 "스트레스 심각"」 제하의 보도를 취소, 삭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측의 2009년 11월 6일 '조부모 육아 스트레스 심각' 제하의 방송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 피신청인측의 취재담당기자와 보도국장은 2009년 11월 22일 오전10시에 대구 동구 서변동 대각사에서 거행되는 신청인의 부의 49제에 참석하여 조의를 표하기로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위암 장지연 선생이 매일신보에 친일통치를 미화하는 한시 700편을 실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700여편의 대부분이 국학 관련 내용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생생이슈 친일인명사전 발간 논란』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10일 23:15)

내 용 : 사전에 수록된 인물가운데는 지금까지 친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암장지연선생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을 규탄하는 항일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그는 독립유공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매일신보에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한시 700여편을 실은 것을 이유로 그 역시 사전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동쪽 바다 일본에서 해가 떠오르니 태양이 빛나는구나. 무지개와 북두성이 정기를 길러 우리 천황께서 나셨다. 보위에 오르신지 44년동안 성수무강하셨네."

유족들과 기념사업회는 무리한 선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지연 선생 관련 정정보도문 (또는 장지연선생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11월 10일 11:15pm에 방영된 PD수첩 「생생이슈 친일인명사전발간논란」 중 "장지연이 친일통치를 미화하는 한시 700여편을 실은" 이라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장지연이 매일신보에 게재한 글이 모두 700여편이며 그중 대부분이 국학관련 글들입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에서 친일관련 글이라 주장한 것은 10수편에 불과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9년 11월 17일 23:15)

내 용 : 지난 주 방송된 친일인명사전논란과 관련해 위암 장지연 선생의 유족과 기념사업회에서는 위암 선생이 매일신보에 게재한 700여편의 글의 대부분은 국학에 관련한 것이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에서 친일 관련글이라 주장하는 것은 10여 편에 불과하다고 알려왔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모 목사의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비윤리성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판결문에는 신청인의 비윤리성에 대해 언급된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3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당당뉴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당당뉴스 : 『황○○ 목사, 항소심 무죄!, 법원, 이○○ 목사의 비윤리성 인정』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4일자 교계면)

내 용 : 필자는 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이○○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09년 8월 13일 동부지법 2심(2008고정2051, 2009노428)에서는 이○○ 기독노조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공익성과 사실성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법원, 이○○ 목사 비윤리성 인정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종합면 상단에 "황○○ 목사, 항소심서 무죄! 법원, 이○○ 목사의 비윤리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이 이○○ 목사의 비윤리성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황○○ 목사의 항소심 법원이 무죄판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목사의 비윤리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황○○ 목사, 항소심서 무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종합면 상단에 "황○○ 목사, 항소심서 무죄"라는 제목으로 항소심 판결을 보도한 바 있으나, 검찰에서 항고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진술서 및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4일자 『황○○ 목사, 항소심 무죄!, 법원, 이○○ 목사의 비윤리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이 이○○ 목사의 비윤리성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황○○ 목사의 항소심 법원이 무죄판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제목 중 『법원, 이○○ 목사의 비윤리성 인정』 부분은 사실과 달리 법원이 이○○ 목사의 비윤리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4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당당뉴스〉 종합면 중앙 목록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

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당당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6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 참가자들을 과잉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한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했을 뿐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6.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각 하 (손배)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0일 23:15)
내 용 : ▷진행 :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만일 투명인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엄연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무국적자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 시위진압 당시 무전기를 통해 내린 명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PD수첩〉은 무전내용 전문을 입수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아나운서 : 이것은 2009년 상반기 주요 시위진압과 관련한 무전녹취록입니다. 진압작전에 대해 무전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과잉진압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노동자행사와 촛불 1주년 기념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도심 집회는 한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법집회였습니다. 이틀간 동원된 경찰병력은 연인원 총 2만 6천여 명, 시위대 17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주상용 서울청장의 무전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 시위자들을 무차별 검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10월 21일 방영한 〈PD수첩〉 "서울경찰청장의 무전"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참가자들을 무차별 검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면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의 과잉진압 조장발언을 소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검거지시를 자막과 성우의 목소리로 처리하며 지난 5월 2일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무대를 점거한 것이 경찰의 집회공세 때문이라고 단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공세 때문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보러 온 시민들과 섞여 아무런 제지 없이 바로 행사장에 들어간 후 깃발을 흔들며 무대를 점거한 것이고,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법행위자를 검거하라는 지시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본 방송은 또한 자막과 성우의 목소리로 기동단장과 남대문 서장의 "해산절차를 다 거칠 필요 있어요?"라는 무전대화 내용을 재연하며 경찰지휘부가 해산절차를 무시하는 듯 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단장과 남대문 서장의 무전대화 내용은 서울광장에서 명동 이동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빈병, 오물, 보도블럭 등을 투척하는 등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여 별도의 해산절차가 필요치 아니한 현행범체포에 관

한 협의를 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해산절차와 관계없으며, 더군다나 경찰은 이러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당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해산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후략)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조정대리인 경비1과장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시사교양국 차장 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의 반론 및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 중 1인으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

〈별 지〉 반론 및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0일 '서울경찰청장의 무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올해 5월 주요 시위진압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면서 과잉진압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5월 2일 밤 명동에서의 미신고 집회 당시, 시위대가 차로를 점거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음에도 수차례 해산명령을 하였고, 연행된 여고생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채증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시민분향소 철거를 지휘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5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자 청장 주 상 용
조정대리인 경비1과장 이○○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시사교양국 차장 강 ○ ○
주 문 :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언론중재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면, 민·상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자연인·법인은 물론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및 재단,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기만 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 □

신청인 복지시설이 원생들을 동원해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복직자의 출근을 저지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은광원 (원장 이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천일보 : 『2년여 만에 복직… 힘겨운 첫 출근』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4일자 10면)
내 용 :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을 상대로 복직 투쟁을 벌인 생활재활교사 전○○(45)씨의 첫 출근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인천 부평구 Y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직 통보를 받고 출근한 지난 2일 오전, 2년 여 만에 시설에 들어선 그를 기다린 것은 전동 휠체어를 탄 원생 7명이었다. 이들은 입구를 막아서며 그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했다. 몸싸움 끝에 전씨는 결국 경찰을 대동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년여 만의 복직…힘겨운 첫 출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인천메트로면(10면) "2년여 만의 복직…힘겨운 첫 출근"제하의 기사에서 '대법원 해고무효판결 불구 시설측 출입 저지'라는 부제목과 '몸싸움 끝에 전씨는 결국 경찰을 대동해 건물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내용과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을 시설에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원생들을 동원해 출근을 저지하려는 것 같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시설측은 생활인들이 출입구를 막고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출근 후 상황을 알게 되었고, 복직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사실이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간 후 시설직원이 출근저지를 한 장애인들을 설득하여 복직자를 보호하며 안내한 것으로써 원생들을 동원해 출근을 저지하려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2년여 만의 복직…, '시설 측 출입저지'"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10면에 "2년여 만의 복직…힘겨운 첫 출근" 제하의 기사에서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불구 시설측 출입 저지'라는 부제목과 함께 '몸싸움 끝에 전씨는 결국 경찰을 대동해 건물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내용과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을 시설에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원생들을 동원해 출근을 저지하려는 것 같다'는 전씨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전씨가 첫 출근한 지난 2일 생활인들이 출입구를 막고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한 것을 시설직원이 출근 후 상황을 알게 되었고, 전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논의 후 시설직원이 2층 사무실로 인도한 것으로 밝혀져, 시설측이 원생들을 동원해 출근을 저지하려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1월 27일 10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대법원 해고무효판결 불구 시설측 출입 저지)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천일보 인터넷(www.itime.co.kr)판에 위 보도문이 게시 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일보 : 『"2년여 만에 복직…, '시설측 출입 저지'"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천만 원대의 돈세탁 혐의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9인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세계일보 :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2면)

내 용 :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지난 4일 구속한 해군 법무장교 A대령이 L서기관(4급 군무원·구속)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해군 K상사로부터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해군 법무장교 돈세탁 정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 11. 6.자 2면에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라는 제목으로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군 법무 장교들이 함께 장기간에 걸쳐 음성적인 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조단 관계자는 '돈세탁 액수가 수천만 원이 넘는다'면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교로서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단에 확인한 결과, 특조단은 해군 법무장교들의 돈세탁 정황을 파악하거나 사실 확인작업을 벌인 적이 없다고 밝혀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6일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제하의 기사에서 근지단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해군 법무장교인 A대령이 법무장교들과 함께 장기간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 법무장교단은 현재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A대령 뿐이며,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계근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의혹 중간 조사결과' 보도문에서는 해군 법무장교들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언급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계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12월 2일까지 세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천만 원대의 돈세탁 혐의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9인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버 : 『[단독] 국방부 검찰단,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0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0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버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천만 원대의 돈세탁 혐의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9인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트 : 『[단독] 국방부 검찰단,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정치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6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0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0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트 : 『[반론보도문] 11월 6일자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정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천만 원대의 돈세탁 혐의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9인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다 음 : 『[단독] 국방부 검찰단, 계룡대 근지단 납품 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0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다 음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01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천만 원대의 돈세탁 혐의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9인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드림위즈 : 『[단독] 국방부 검찰단,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뉴스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6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0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0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드림위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천만 원대의 돈세탁 혐의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9인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야 후 : 『[단독] 국방부 검찰단,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뉴스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6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0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0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야 후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에 걸친 수천만 원대의 돈세탁 혐의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49인
피신청인 :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 란 : 『[단독] 국방부 검찰단,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미디어 섹션)
내 용 : 〈2009서울조정6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0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0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파 란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미디어 섹션)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요양원 건립을 위해 지원받은 공적자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2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경북제일신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북제일신보 : (1)『노인 요양시설 관리 허술』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포항시가 노인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허가해 준 노인요양시설을 점검 및 관리하는데 소홀해 업자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에 준공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소재 B요양원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는 한 명도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업자를 고의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후략)

(2)『시청 복지과 간부 "왜 사표 내나"』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포항시청 사회복지과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잇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각종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본보에서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초곡리 B요양원 공적자금 11억 원 지원과 남구 송도동 사랑의 집짓기 부지매입과정 등에서 사업자와 결탁돼 예산을 크게 낭비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를 했다. (후략)

(3)『경찰 수사에 의혹 제기돼 검찰이 재수사해야』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4일자 데스크칼럼면)
내 용 :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자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요양원을 건립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요양원 원장이 포항시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불·탈법을 저질렀다는 본보의 의혹제기 보도가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붓다요양원 비자금조성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4월 29일자, 5월 9일자, 5월 23일자, 7월 4일자, 7월 11일자, 7월 25일자, 8월 22일자, 9월 26일자, 10월 31일자 사회면에 그리고 11월 14일자에는 데스크칼럼면에 "경찰 수사에 의혹 제기돼 검찰이 재수사해야"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자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요양원을 건립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요양원 원장이 포항시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불·탈법을 저질렀다는 본보의 의혹제기 보도가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붓다요양원은 "요양원 건립 인·허가 과정의 편법과 불법,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대가성 뇌물수수, 비자금조성 등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다만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과잉증폭, 와전된 것인 만큼 경찰조사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아울러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여야 할 언론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문을 빙자하여 그를 근거로 삼은 기자의 주관을 마치 명확한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은 신문사로서의 기본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신청인이 시위 도중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닷컴 : 『대구경찰, 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2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52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닷컴〉에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시위 도중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0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스포츠조선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스포츠조선 : 『대구경찰, 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2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9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52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0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시위 도중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2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경북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북일보 : 『대구경찰, 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2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52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조합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류 ○ ○)
피신청인 : 전북매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매일신문 : 『익산군산축협 방만경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6일자 1면)
내 용 : 익산군산축협(이하 축협)이 부실과 방만경영을 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 개인이 법인 카드로 수십회에 걸쳐 접대성 골프를 치는 가하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도사업비로 조합원 수십명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니는 등 조합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11월 16일자 1면 「익산군산축협 방만경영 논란」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1. 기사 : 익산군산축협이 부실과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 : 익산군산축협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2008년말 종합업적평가에서 전북축협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의 경영실태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2. 기사 : 조합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사실 : 모든 사업과 예산집행은 농협법과 정관, 그리고 재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사유화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3. 기사 :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관광이라 하며 이사 등이 항의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 : 제주도 선진지 견학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된 200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세워진 행사임. 선진지 견학을 하기 전에 이사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선발된 조합원은 조합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합원들이며, 선진지 견학처로 제주양돈조합 공동자원화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후략) □

신청인 조합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류 ○ ○)
피신청인 : 전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주일보 : (1)『익산군산축협 사전선거 논란』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7일자 7면)
내 용 : 〈2009전북조정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전북조정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태양광 발전소의 소음과 빛으로 인근 가축들이 죽는다고 방송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 『태양광 발전소 옆 소들이 죽어요』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5일 18:55)

내 용 : ▷구○○씨(전남 영암군 송평리) : 안녕하십니까? 25년 동안 소를 키우고 있는 구○○입니다. 2년 전 축사 바로 앞에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반사되는 열과 소음 때문인지 소들의 체중이 현저하게 줄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녹색에너지도 좋지만 계속 이런 피해가 생긴다면 이건 누가 보상해 주실 겁니까?

▷제작진 : 전남 영암군에서 소 18마리를 키우고 있는 구○○ 씨! 구씨는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축사 앞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부터 소들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씨 : 이상하게 소가 자꾸 이렇게 밥도 잘 안 먹고 여름이 되며는 더 밥을 안 먹고 막 안절부절 하고 그냥…

▷제작진 : 수정이 안 되거나 어렵게 임신하더라도 유산이 잦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이를 잘 먹지 못하면서 체중이 떨어지고…. 젖이 부족한 엄마 소는 송아지에게 젖도 잘 먹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엔 갑자기 소들이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태양광 발전소 옆 소들이 죽어요"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5일자 "태양광 발전소 옆 소들이 죽어요"라는 제목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소음과 빛으로 인하여 소들이 죽는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태양광 발전소의 소음과 빛으로 인하여 가축이 죽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아직 태양광 선진국에서도 보고된 사례도 없

을 뿐만 아니라 심정적 추측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한국방송공사는 향후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서○○ 씨가 30년 경력의 간장게장 명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2TV : 「8시뉴스타임」 프로그램 『'살 통통' 제철 해산물 별미장』 제하의 보도 (2009년 10월 22일 20:00)

내 용 : 〈앵커〉 : 가을 되면 여기 꼭 한 번 가야지 벼르던 곳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다녀왔네요. 어디 좋은 데 구경하고 왔나 봐요?

▷리포트 : 옛날 어시장의 정겨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인천의 소래포구에 다녀왔습니다.입구부터 북적북적. 꽃게며 산낙지, 물이 오르기 시작한 꼬막, 홍합에 대하까지 가을의 진미란 진미가 넘쳐납니다. 싱싱할 때 한 마리라도 더 팔려는 상인과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손님 사이에 가벼운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덤으로 마무리. 돗자리 깔고 즉석에서 먹는 생선회는 시중보다 저렴해 더욱 좋습니다. (중략)

30년 경력의 명인이 어떻게 게장을 만드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시마, 북어 머리에 말린 밴댕이로 육수를 내면 비린 맛이 줄고 감칠맛은 더해집니다.

시원한 맛과 단맛을 살리려면 배와 사과를 넣어 줍니다.

▷서○○(간장게장 명인) : "주부님들이 짠 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달콤한 맛은 바로 무, 양파, 과일을 이렇게 해서 냈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0월 22일 기사인 '살 통통' 제철 해산물 별미장. 기사에 나온 명인 서○○ 씨에 대한 제보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기사는 지난 10월22일 KBS 8뉴스타임 방송된 '살통통' 제철 해산물 별미장이란 코너에 간장게장의 명인을 통한 해산물의 별미장에 대한 방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코너에 명인으로 등장한 서○○ 씨는 30년 동안의 간장게장의 맛을 이어온 경력을 자랑한 명인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확인한 결과 서○○ 씨가 간장게장으로 매장을 오픈한 것은 3년 전이었고, 수 년전 동종업계에서 일을 했던 것은 확인했으나 게장을 담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간장게장의 명인이 아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서○○ 씨가 30년 경력의 간장게장 명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취 하

월 22일자 08:00)
내 용 : 〈2009서울조정689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KBS-2TV :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밥 도둑 '별미장'의 유혹』 제하의 보도 (2009년 10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8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IS일간스포츠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IS일간스포츠 : 『몸값 10배 차이 꽃게·돌게 그 맛은 둘 다 '밥도둑' 일세』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34~35면)

내 용 : 한국 식탁의 주인은 밥이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인은 누천년 밥을 주식 삼아 살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밥이 식탁에서 밀려나는 느낌이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밥상 앞에 앉는다'고 한다. (중략)

프로간장게장(서울 서초구 잠원동)

2마리에 7만 원…알꽉 찬 국산 봄게만 사용

1981년 개업, 28년째 간장게장을 고집하는 곳.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면 먼저 가격에 놀라게 된다. 벽에 붙은 메뉴판에 '간장게장 70,000원'이란 글씨가 큼지막하게 써 있어서다. 간장게장 한 접시에 두 마리의 꽃게가 담긴다. 30년 가까이 사용하는 '접장'의 효과다. 접장이란 개업 초기 큰 항아리에 담겼던 조선간장으로 게장을 담근 후 비는 만큼 다시 채워 넣어 보관한 장이다.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맛의 비결이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0월 07일 기사인 〈백년명가 1〉 6천원대 3만 5천원, 간장게장 '몸값'과 〈백년명가2〉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 기사에 나온 명인 서○○ 씨에 대한 제보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기사는 지난 10월 7일 일간스포츠 기사 최신뉴스 〈백년명가〉 코너에 간장게장의 명인을 통한 게장에 대한 기사를 기재한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본 코너에 명인으로 등장한 서○○ 씨는 30년 동안의 간장게장 맛을 이어온 경력을 자랑한 명인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확인한 결과 서○○의 프로간장게장으로 매장을 오픈한 것은 3년 전이었고, 수년전 현재 (주)프로간장게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것은 확인했으나 게장을 담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간장게장의 명인이 아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1. 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7일자 35면 〈100년명가, 간장게장〉 기사 중 서○○ 씨의 프로간장게장이 "1981년 개업, 28년째 간장게장을 고집하는 곳", "30년 가까이 사용하는 '접장'의 효과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리, 서백자 씨는 4년 전에 '서○○의 프로간장게장' 매장을 오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9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SI일간스포츠〉의 〈백년명가〉 코너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IS일간스포츠〉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IS일간스포츠 : 『[바로잡습니다] 백년명가-간장게장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9일자 3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ISPLUS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ISPLUS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91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ISPLUS : 『[바로잡습니다] 백년명가-간장게장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서울중재67 참조)

보도내용

네이버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다 음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서울중재68 참조)

보도내용

다 음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야 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9.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서울중재69 참조)

보도내용

야 후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웨딩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Ⅰ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피신청인 : 이코노미세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이코노미세계 : 『웨딩 업체 횡포에 예비부부 '눈물'』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6일자 경제면)
내 용 : 〈사진생략〉 #1 김 모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 사진과 앨범, 메이

크업 등을 계약했다. 웨딩 사진촬영 당일 계약금액 220만 원을 완납하고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된 웨딩앨범 3개 중 1개만 받고 남은 2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앨범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현재까지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12월 30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연도 및 월에 신청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하도록 하고, 기사의 분량은 약 원고지 9매로 하되, 기사의 내용 및 게재위치 등은 향후 협의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웨딩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버 : 『웨딩 업체 횡포에 예비부부 '눈물'』 제하의 기사 (이코노미세계 2009년 11월 16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기사제공언론서(이코노미세계)가 2009서울조정696 손배청구 사건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메인화면(www.naver.com)에 '뉴스캐스트' 세계일보란에 6시간 이상 이를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웨딩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트 : 『웨딩 업체 횡포에 예비부부 '눈물'』 제하의 기사 (이코노미세계 2009년 11월 16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97의 합의사항 참조〉 □

웨딩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9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다 음 : 『웨딩 업체 횡포에 예비부부 '눈물'』 제하의 기사 (이코노미세계 2009년 11월 16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가 종합면에 실렸으므로 이코노미세계(기사제공 언론사)가 전송하는 PR기사를 동일하게 종합면에 게재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면에 게재할 수 없다. □

웨딩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0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야 후 : 『웨딩 업체 횡포에 예비부부 '눈물'』 제하의 기사 (이코노미세계 2009년 11월 16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97의 합의사항 참조〉 □

웨딩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Ⅵ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0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피신청인 :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 란 : 『웨딩 업체 횡포에 예비부부 '눈물'』 제하의 기사 (이코노미세계 2009년 11월 16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697의 합의사항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Ⅵ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0.
처리결과 : 취 하 (중재신청-2009서울중재70 참조)

보도내용

네이트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디지털씨씨엠 김회장 집행유예'라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언급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판결과에 항소한 상태이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4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네트워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트워크신문 : 『디지털씨씨엠 김회장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업계 동정면)
내 용 : 법원은 9일 디지털씨씨엠 김모 회장과 임원진, 대표사업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들이 방판법상 부담을 지우는 행위,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판매사업자 유인행위등 방판법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디지털 씨씨엠 회장 항소
• 내 용 : 본지가 지난 10월 09일자 지면에 "디지털씨씨엠 김회장 집행유예"라는 제목으로 보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김○○ 회장은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하고 본인은 디지털씨씨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네트워크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0일자 경제면)
내 용 : 네트워크신문에서 2009년 10월 9일 보도한 기사제목 디지털씨씨엠 김회장 집행유예 기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2009년 11월 19일 접수되어 이에 바로잡습니다.

디지텔씨씨엠 김회장이 마치 유죄인양 기사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혹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씨씨엠 김회장은 현재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실제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던 상위 직급자 수명의 징계로 인해 앙심을 품고 법원에 김회장을 고소한 것이 발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건은 확정 판결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항소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에 정정 보도를 합니다. □

'디지털씨씨엠 김회장 집행유예'라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언급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판결과에 항소한 상태이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4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유통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유통데일리 : 『법원, 디지털씨씨엠 김회장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745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유통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0일자 경제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4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단체는 지속적으로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이행을 정부 등에 촉구해 왔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노조 자주성 위해서도 유급전임제 폐지돼야』 제하의 사설기사 (2009년 10월 28일자 46면)

내 용 : 노동계 내부에서 유급 전임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현대중공업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그제 "노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에 전임자 임금을 의존해온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을 뒤집어 보면 유급전임제가 그동안 노조의 자주성을 망쳐 왔다는 뜻이다. 그는 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만 보완된다면 복수노조 시행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양대 노총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정부의 강행 방침에 맞서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굴지 대기업 노조의 이런 반대 입장 표명은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복수노조에 대한 ILO의 권유, 민주노총 입장과 다르지 않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8일 사설에서 복수노조 시행을 권유한 ILO의 입장에 민주노총이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달리 교섭창구 제한 없는 복수노조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노청 입장과 ILO의 권유가 다르지 않은 바, 관련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조인스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본지(중앙SUNDAY) 136호 사설 복수노조, OECD와의 13년 전 약속과 관련, 민주노총은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OECD의 권고 기준에 따른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단체는 지속적으로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이행을 정부 등에 촉구해 왔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피신청인 : 조인스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인스닷컴 : 『[사설]복수노조, OECD와의 13년 전 약속』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8일자 사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7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중앙선데이 제136호 사설 「복수노조, OECD와의 13년 전 약속」과 관련, 민주노총은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OECD의 권고 기준에 따른 '복수노

조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조인스닷컴〉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별도의 배상이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인스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 06:59)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현대차 노조 전임자들이 개인용 차량지원 등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제공된 차량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지원된 것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노조전임자, 지나친 특혜가 불법파업 부른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자 14면)

내 용 : 현대차 노조 전임자들이 작년 7월 초 자동차 생산라인을 막고 부분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파업은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쇠고기 재협상과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실시한 불법 파업이다.

"현대차 137억 원, 기아차 87억 원.'

현대·기아차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다. 두 회사 합쳐 224억 원에 달한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액수다.

현대차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상 90명으로 돼 있다. 하지만 급여가 나가는 전임자 대상은 그 2배가 넘는 217명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 내부 전임자는 82명이지만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파견된 16명과 임시 상근자 119명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중략)

노조 전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급여만이 아니다.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게는 그랜저, 아산·울산·전주·남양 등 6개 지회장과 노조 상무집행 임원 5명에게는 쏘나타 등 간부 개인을 위해 차량 12대가 지원된다. 노조 업무용 지원 차량은 별도다. 여기에 월 300~600 *l* 씩 유류비가 제공되고 전임자 특별수당도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현자노조 전임자 차량제공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일 기사를 통해 현자노조의 간부 개인에 대해 12대 차량이 제공되는 등 노조 전임자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차량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게 지급된 엄연한 노조업무용차량이며 개인에 대한 특혜성 지급이 아닌 바,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 노조전임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와 불법파업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알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교역자공제회 이사인 신청인이 과거 공제회에 3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전력이 있어 자격 미달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94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도 ○ ○
피신청인 : 성결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성결인신문 : (1)『공제회 3억 원 손해 끼친 인물 이사로 선출』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3면)

내 용 : 과거 교역자공제회에 큰 손실을 입혔던 인물이 신임 이사로 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장단은 지난 7월 23일, 천안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교역자공제회 이사를 보선했다. 그러나 이날 결의로 인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A모 장로는 교역자공제회의 이름으로 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제회에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2)『D장로, 공제회 이사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영업 손실·자본 잠식·세금 문제 전력있어』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2면)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조○○ 목사)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안건으로 다뤄질 D장로에 대해 공제회 이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그 이유는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공제회이기에 자금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장로는 공제회에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후략)

(3)『공제회 이사선임 안건 미뤄져』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8일자 2면)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조○○ 목사)는 지난 17일, 총회본부에서 이사회를 갖고, D장로를 교역자 공제회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정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결의했다. 또한 총회의 공천을 받은 D장로를 교역자 공제회 이사 선임하는 건에 대해 이사들의 치열한 찬반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져 계속 교단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교역자 공제회 이사보선 논란' 바로잡습니다 (또는 교역자공제회 이사 보선 논란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7일자 3면에 "공제회 3억 원 손해 끼친 인물 이사로 선출"이라는 제목으로 교역자공제회 이사로 공천된 도○○ 장로가 공제회에 3억 원을 손해 끼치고, 교회에서 재정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교역자 공제회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교단의 유명인사의 영향으로 공천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교역자공제회와 횡성교회 등 해당 당국에 확인한 결과, 총회 공천부에서 적법하게 공천을 받았으며, 교회재정을 횡령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교역자공제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부제목 : '도회관 장로, 교회 재정 횡령으로 형사처벌'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8월 17일자 3면 '공제회 3억 원 손해 끼친 인물 이사로 선출', 9월 14일자 2면 'D 장로, 공제회 이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9월 28일자 2면 '공제회 이사선임 안건 미뤄져' 제하의 각 보도를 통해 '교역자공제회 이사로 공천된 도 ○○ 장로가 공제회가 출자한 회사를 운영하며 3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1980년도에는 교회재정 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도장로는 공제회가 출자한 (주)샘원을 운영하며 8천만 원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 횡령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었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교회 당회장 강영구 목사는 "도 장로의 교역자공제회 이사 공천은 총회 공천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에도 악의적 제보자의 주장으로 인해 도 장로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성결인신문' 3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공제회 3억 원 손해…)의 제목 및 본문활자 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성결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vanholy.com/)에 24시간 이상 위 보도문의 제목과 부제목을 게시하고, 제목 또는 부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부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성결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상적으로 실리는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성결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7일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통신사 해외로밍 요금에 관한 신청인의 인터뷰 취지를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79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KBS-1, 2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9년 11월 18일자 21:00)
내 용 : ▷앵 : 요즘 휴대전화는 해외에 그냥 갖고 나가도 전화를 걸수 있고 받을 수 있게 자동로밍 설정이 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문제는 요금입니다. 평소 습관대로 쓰다가는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여름, 보름 간의 이탈리아 여행 뒤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루 한두 통씩 집에 안부전화를 잠깐 했을 뿐인데 무려 30만 원 가까운 요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모 씨 : "1분에 비싸도 5백원 정도 하지 않겠나, 천원까지도 이해하겠는데…2천 9백 원이라는 요금을 알고도 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이 들고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보조금횡령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등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 08:15)

내 용 : 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동식물 보호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수 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최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7년 2월 환경부로부터 대전·충남 지역의 밀렵단속, 유해동물구제활동지원을 위해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5천 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밀렵단속 비용을 허위로 작성해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밀렵단속하는 데 돈을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국고보조금 횡령'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27일자 사회면 종합면에 "보조금횡령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등 2명 입건" 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방경찰청은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등 2명이 환경부로부터 밀렵단속 및 유해동물구제 활동지원을 위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5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지부장이 불구속 입건 40일 전에 사망하여 실존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왔으며, 사망을 전후하여 경찰로부터 횡령 등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나 출석 요구서를 발부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신청 전 보도문

연합뉴스 : 『대전경찰 사망자 불구속 입건 유족 반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일 22:47)

내 용 : 최근 대전경찰이 40여 일전 숨진 사람을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동식물 보호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최모(60)씨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지난 9월 중순 숨진 상태라는 것.

A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이미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횡령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경찰조사도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어차피 검찰에 기소할 것도 아니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고려해 검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서류를 송치했지만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예를 들어 살인범이 자살을 한 채 발견됐더라도 경찰은 검거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통상적으로 검찰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송치한다"며 "보조금 횡령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 환경부로부터 대전·충남 지역의 밀렵단속, 유해동물구제활동지원을 위해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5천 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최씨는 경찰에서 "밀렵단속 하는 데 돈을 사용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매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경닷컴 : 『보조금횡령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등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 08:15)
내 용 : 〈2009서울조정8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0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인터넷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터넷아시아경제 : 『국고보조금 가로챈 밀렵감시단 '쇠고랑'』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0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경제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8일 사회면)
내 용 : 본보 인터넷판 10월 27일자 "국가보조금 가로채 밀렵감시단 '쇠고랑'" 제하의 기사와 관련, 유가족은 지부장이 불구속 입건 보도 40여 일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사망을 전후해 경찰로부터 횡령 등 혐의 사실과 관련해 조사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조인스닷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인스닷컴 : 『보조금횡령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등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0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쿠키뉴스 : 『보조금횡령 환경보호단체 지부장 등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0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쿠키뉴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02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환경단체 지부장이 보조금 횡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7일자 2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0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헤럴드경제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3일자 10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02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부평 5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부평5구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 ○ ○)
피신청인 : 도시재생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도시재생신문 : 『부평5구역 500억 PF조달, 이주비 지급 속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4일자 3면)

내　　용 : 이주비 문제로 온갖 의혹이 난무하며 사업장이 혼란스러웠던 부평5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 측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청산금 징수 및 지급 금지'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주 및 철거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된 것이다.

또 부평5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그동안 비대위 측이 주장한 의혹들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 "비대위가 소송다툼을 이끌어 논란거리를 양산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가결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과 주민감사요청이 각하된 만큼 비대위가 명분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주비 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중 80%가 이주비를 신청했고 전체 583세대 중 330세대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부평5구역 재개발 관련 잘못된 기사' 바로잡습니다(또는 부평5구역 재개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3면에 "부평5구역 500억 PF조달, 이주비 지급 속개"라는 제목으로,

1)비대위 측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 결정되어 이주 및 철거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본계약 및 공사도급금액결의가 무효되어 이주 및 철거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2)부평 5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그동안 비대위 측이 주장한 의혹들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되어 감사 진행중에 있어 비대위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3)권리가액이 1억 미만인 세대는 300세대 중 100여 세대이기 때문에 비대위 측이 조합이 제 2금융권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이주비를 주고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없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권리가액이 1억 미만인 세대는 조합원 592명 중 275세대(46.34%)이어서 비대위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4)총 2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사업이 1년 지연되면 125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2008년까지 108억 원이 투자되어 이자 손실액은 약 5억 원 정도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부평5구역 재개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3면에 "부평5구역 500억 PF조달, 이주비 지급 속개"라는 제목으로 삼성물산이 대출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약정하고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차주와 함께 의무를 부담할 예정이어서 이주비 지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부평 5구역의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이후에 삼성물산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11월 4일자 3면 「부평5구역 500억 PF조달, 이주비 지급 속개」 제하의 기사와 관련,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청산금 징수 및 지급 금지'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결정은 행정소송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 또한 이주 및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시공사 본계약 및 공사도급금액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어 조합원들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재개발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500억 원이 아니라 약 125억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2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도시재생신문〉 3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분란, PF조달로 일단락")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2일까지 〈도시재생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도시재생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2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단체는 지속적으로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이행을 정부 등에 촉구해 왔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0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 ○ ○)
피신청인 : 중앙SUNDAY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SUNDAY : 『복수노조, OECD와의 13년 전 약속』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8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7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74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SUNDAY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고흥IC 설치를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홍보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4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목포-광양간고속도로 고흥IC 범군민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신 ○ ○, 정 ○ ○)
피신청인 : 광주일등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주일등뉴스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고흥 나들목 확정』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5일자 뉴스면)
내 용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고흥 나들목(IC)이 최종 확정되었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고흥 나들목(IC)이 기획재정부의 총액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중략)
고흥군이 IC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노력이 있었지만 공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IC추진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는 고흥IC를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고흥 나들목 확정" 정정 및 반론보도
• 정정보도 내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5일자 전라도지역 소식란에 고흥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범추위(고흥나들목(IC)설치범군민추진위원회)를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면 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잡기식 행정이라며 군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그간의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으나
범추위는 발목잡기식 행정이라며 군을 헐뜯고 비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흥군이 보도자료와 회의자료를 통하여 IC추진위의 활동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5일자 전라도 소식 고흥군 소식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고흥 나들목 확정" 제목의 기사에서 IC 추진에 참여했던 한 단체는 고흥IC를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가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잡기식 행정이라며 군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고흥나들목설치범군민추진위원회는 군을 헐뜯고 비난하거나,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고 홍보한 사실은 없었으며, 전남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자문위원과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한 정치인 그리고 공정보도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해준 언론 등의 각계 역할의 공에 대해 보고자료를 발간한 사실만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고흥IC 추진과정에서 용역이 착수되었음에도 낙관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해 "범추위에서 보성군 영등교 지점에 IC설치를 주장하였고"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범추위는 영등교 지점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4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광주일등뉴스 메인화면 전라도 소식 고흥군소식란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제목(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12월 2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일등뉴스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고흥 나들목 확정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7일 뉴스면)

내 용 : 당사는 지난 11월 25일 고흥 IC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신○○, 정○○ 씨의 신청에 의거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부의 중재의 결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 합니다.

이하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생리대에서 철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Ⅰ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체내 삽입 생리대 속에 2cm 길이 철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뉴스면)

내 용 : 체내 삽입형 생리대에서 철사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조업체인 동아제약은 "공정상 철 종류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소비자가 아직 이물질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고양시 행신동의 최모(여.25세) 씨는 지난 9월 동아제약의 '템포 레귤라'(10개 입)를 약 3천 원에 구매했다. 지난 15일 샤워를 하며 제품을 교체하려던 최 씨는 체내에서 방금 빼낸 삽입형 생리대 안쪽에서 구불거리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물질을 살펴본 최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아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조정대리인 황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4
영동테크노타워 706호
대표이사 유 태 현
조정대리인 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12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건 기사를 삭제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생리대에서 철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버 : 『"체내 삽입 생리대 속에 2cm 길이 철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5일까지 조정대상기사를 검색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생리대에서 철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Ⅲ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트 : 『"체내 삽입 생리대 속에 2cm 길이 철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생리대에서 철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Ⅳ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다 음 : 『"체내 삽입 생리대 속에 2cm 길이 철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생리대에서 철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Ⅴ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야 후 : 『"체내 삽입 생리대 속에 2cm 길이 철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5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이 학교 급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청 감사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푸드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푸드투데이 : 『학교 영양사가 식재료 상습 절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30일자 뉴스면)
내 용 : 한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식재료량을 부풀려 주문하거나 급식 양을 줄여 남긴 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A중학교의 B조리사는 지난 27일 본지를 포함한 언론기관에 영양사의 식재료 횡령에 대한 실태를 고발했다.

B조리사의 주장에 의하면 A중학교 소속 영양사 C모 씨가 수년 간 임의로 식재료 주문량을 늘려 남는 식재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학교 영양사가 식재료 상습 절도'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남양주 A중학교에 재직하는 B영양사가 학교 급식 재료를 마음대로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영양사는 학교 급식 재료를 마음대로 빼돌린 사실이 없으며, 교육청 감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밝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이 학교 급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청 감사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인터넷선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터넷선경일보 : 『영양사가 학생 급식물품 빼돌렸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신청인 지자체가 목감천 정화사업 과정에서 폐 콘크리트를 불법처리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효 선)
피신청인 : 대한매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한매일신문 : 『친환경 하천 '빛좋은 개살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9일자 15면)
내 용 : 광명시 옥길천 합류점에서 안양천과 합류하는 목감천이 지난 1월 29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4.5km)을 하는 과정에서 준설토와 폐 콘크리트의 불법 처리과정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목감천 내 주택가와 운동을 나온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의 소리가 쌓여 공사현장에 매서운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친환경 하천 '빛좋은 개살구' 안양, 목감천 공사현장 폐 콘크리트 불법처리. 먼지발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9일(친환경 하천 '빛좋은 개살구' 안양, 목감천 공사현장 폐 콘크리트 불법처리. 먼지발생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까지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 준설토는 단 한번도 처리한 적이 없거니와 폐 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23일자 신고 수리되어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인선ENT(주)〉가 법에 따라 적법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2009년 2월 17일 신고 수리 되었고,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된 사항이며, 현재 호안공 시공을 위한 기초 터파기 및 가물막이 뚝쌓기 작업 중이었으며 당 현장에서 터파기 및 뚝쌓기 등 발생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토사로 현장 내 유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하상의 퇴적된 토사는 실시 설계시 토양분석을 통하여 설계시에 반영 결정된 사항임.

공사구간 내 흙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취재 당시는 영하의 날씨로 빙판으로 인한 사고우려 등으로 살수차를 운행하지 않았음.

목감천 현장에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전면통제 후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제한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현장에서도 힘쓰고 있음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9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문〉 사회면에 제목은 대한매일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양식대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할 때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 제 목 : 목감천 공사현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9일(친환경 하천 '빛좋은 개살구' 안양, 목감천 공사현장 폐 콘크리트 불법처리. 먼지발생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까지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 준설토는 단 한번도 처리한 적이 없거니와 폐 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23일자 신고 수리되어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인선ENT(주)〉가 법에 따라 적법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한매일신문 : 『목감천 공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9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2008년 방송된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 관련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신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각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라인」 프로그램 『고객 돈으로 비자금』 제하의 보도 (2008년 1월 24일 21:00)
내 용 : 삼성의 한 금융 계열사에서 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수 년 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KBS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하기 힘든 소액의 돈만 골라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네, 삼성그룹 계열사에 은행은 없지만, 은행으로 쉽게 예를 들어보면 고객들의 휴면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과 같다고 제보자는 밝혔습니다.

제보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전 삼성 계열사 직원) : "고객들에게 줘야할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남은 비용이라든지 또는 렌터카 특약에 의해서 입고날 만큼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 그걸 지급하는 보험사가 거의 없고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2,583,333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김 인 규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583,333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는 2008년 1월 24일 21:00경 KBS-1TV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고객 돈으로 비자금'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진행 와중에 삼성의 한 금융계열사에서 고객들의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있다고 진술한 후 '김○○ 前 삼성 계열사 직원(음성변조)' 이라는 자막 하에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기자에게 위 보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신원이 노출되어 근무 중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1년 간 실업상태로 지냄으로써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내부 고발자로 밝혀짐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3항, 제14조 제1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로서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은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 상의 신청기간을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 □

춘천시 청소행정의 불법사례를 고발해온 춘천시민이 춘천시로부터 보복성 소송을 당해 재산상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강원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춘천시 (시장 이 광 준)
피신청인 : 춘천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춘천MBC-TV : 「뉴스데스크-강원」 프로그램 『공익 제보자 수난시대』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17일 21:30)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의 잘못을 지적해온 공익 제보자들이 요즘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화천 상징탑과 퇴역군함, 군수 업무추진비 등 화천군의 예산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온 도류 스님 안정호 씨.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촌지를 뿌려온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실태를 폭로한 지난 7월 이후 안씨는 각종 비방과 고소 고발, 경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씨는 이미 2년 전에 없어진 토종닭 농장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그동안 예산 감시 활동을 해온 자신에 대한 보복성 행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씨는 각종 회유와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만, 국민으로서의 행정 감시자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익 제보자 수난시대'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7일 뉴스프로그램에서 '공익 제보자 수난시대'라는 제목으로 춘천시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춘천시민이 춘천시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산상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춘천시가 관련법과 주민합의에 의한 지원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소송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환수한 것으로 보복행정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드립니다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7일 춘천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익 제보자 수난시대 라는 제목으로 춘천시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춘천시민이 춘천시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산상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주민지원금을 법정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11일까지 위 보도문을 춘천mbc 뉴스데스크(21:30)에 보도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노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춘천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10년 12월 8일 21: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Ⅶ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2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환경보호단체 간부 2명 보조금 5천여만 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8일자 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0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보 10월 28일자 5면 『환경보호단체 간부 2명 보조금 5천여만 원 횡령』 제하의 기사와 관련, 유가족은 지부장이 불구속 입건 보도 40여일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사망을 전후해 경찰로부터 횡령 등 혐의사실과 관련해 조사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에 2009년 12월 9일까지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알려왔습니다)는 충청투데이에 2009년 12월 9일까지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알려왔습니다)는 충청투데이가 통상적으로 싣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부친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Ⅷ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3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구 ○ ○
피신청인 : 대전KBS-1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전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9년 10월 27일자 07:37)
내 용 : 〈2009서울조정80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00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대전조정2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9년 12월 8일자 07:4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이 학교 급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청 감사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Ⅲ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중부일보 : 『남양주 모 중학교 조리사 '급식비리 폭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일자 2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이 학교 급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청 감사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Ⅳ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6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네이트 : 『남양주 모 중학교 조리사 '급식비리 폭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이 학교 급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청 감사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V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7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다 음 : 『남양주 모 중학교 조리사 '급식비리 폭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3일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신청인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문 수 (경기도지사)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경제 :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0일자 A38면)
내 용 : (전략) 이를 보고 있자니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관계가 안타깝다. 둘은 죽마고우는 아니지만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로 재학중 '후진국사회연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던 '수어지교'였다.

시간이 흐른 뒤 김 지사는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당원으로 노선을 바꿨고, 김 교육감은 소속 당은 없지만 진보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묘하게도 이 두 사람은 올해 경기도 교육과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다시 만났다. 세월이 갈라놓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 그러나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한울타리는 레위스런의 두 죽마고우를 닮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론은 다르게 흐른다.

요즘 두 기관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다름없

다.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반대 속에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김 지사는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 조례를 만들어 도 교육청으로부터 기관소송을 당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
• 내 용 : 매일경제는 지난 11월 10일자 오피니언면에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반대 속에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반대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11월 10일자 38면 '기자24시' 란 『거버넌스 정신 잃은 경기도』 제하의 기사에서 "김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반대 속에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라고 보도한 데 대해 김 지사는, 예산삭감 결정은 경기도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도지사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며, 실제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삭감 결정은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15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38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매일경제〉의 통상적인 〈알려왔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5일자 A3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를 친 정부 성향 매체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고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1) 『한국언론재단 독점의 그늘, 3만 공공기관 광고 독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9일자 1면)
내 용 : 언론지원기구 통합기관인 언론진흥재단 출범을 앞두고 정부광고 대행 독점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정부광고에 민간회사가 끼어들 틈이 없는 독점 구조로 인해 취약한 지방광고 대행시장이 치명상을 입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략)

(2) 『지방시장까지 독식, 예산낭비 우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9일자 17면)
내 용 : (전략) ◇친정부 성향 매체로 중심이동 =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를 친 성향 매체에 편중해 대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매년 받아왔다. 이는 매체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적돼 온 것이다. 광고주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체로 광고 대상 매체를 결정해 왔지만, 언론재단이 광고료

조정 등을 통해 매체별 광고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면서 매체별로 광고료가 중심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 정부성향이냐에 따라 광고료와 점유율에서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후략)

(3)『언론지원 '뒷전' 언론통제 '앞장'』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0일자 17면)

내 용 : (전략) 언론재단은 또 언론시민단체나 기자협회 등의 지원을 무기로 특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은 언론재단으로부터 심사비와 시상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언론재단은 기자상 심사위원 선임에 관여하면서 매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9일자 1면과 17면, 11월 10일자 17면에 실린 '한국언론재단 독점의 그늘'이라는 연재기사에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가 "친 정부 성향 매체로 중심 이동"했으며 "친 정부 성향 언론"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11월 10일자 기사는 "언론지원 '뒷전' 언론통제 '앞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재단이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 기자상 심사위원 선임에 관여하면서 매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광고 무기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친 정부 성향 매체'에 편중하거나 "몰아주기식"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있지 않으며 광고 금액도 신문의 성향에 따라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선정은 한국기자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한국언론재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지원 '뒷전' 언론통제 '앞장'"이라는 기사 제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국언론재단의 공익적 언론진흥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내일신문 : 『'한국언론재단 독점의 그늘'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4일자 18면)

내 용 : 한국언론재단은 미디어진흥사업, 언론인 연수, 언론 관련 조사·연구, 기획취재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진흥기관이다. 사업의 주요 재원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이다.

지난달 9일과 10일, 내일신문은 '한국언론재단 독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기사를 내보냈다. 세 꼭지에 이르는 기사에서 내일신문은 한국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친 정부 성향 언론'에 몰아주기식으로 집행하고 있고 기자상 심사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인 연수 대상자 선정도 특정매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지원 '뒷전' 언론통제 '앞장'"이라는 제목으로 압축됐다.

한국언론재단은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근본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정당한 비판에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 열려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한국언론재단이 '언론통제'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일신문의 비판은 인정하기 힘들다.

한국언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광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문·방송매체 등에 내는 광고를 말한다. 정부광고를 어떤 매체에 실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광고주의 몫이다. 한국언론재단은 광고주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문 구독률이나 열독률, 방송 시청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광고주는 광고의 성격에 따라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게 된다. 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사람들이 매체에 접촉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열독률, 시청률이다. 정부광고의 매체 선정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편견이나 직관, 관행이 개입

할 여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는 모두 언론 발전을 위해 쓰이는데, 언론인 연수가 그 중 하나다. 수습기자들에 대한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견 언론인 심화교육 등 한국언론재단 연수프로그램을 거쳐 간 언론인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해만 해도 190여 개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4,400여 명의 기자가 연수에 참여했다. 한국언론재단은 연수를 신청하는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골고루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한국언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는 부문도 있다. 해외 장기연수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연수 분야이기는 하지만 기자 자신 또는 언론사 사정으로 연수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간의 연수자 선정결과를 보면 중앙일간지와 방송사들에서 골고루 교육기회를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기자들의 취재의욕을 북돋우고 우수한 기사들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각종 기자상 시상이다.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한국언론재단은 후보작과 수상작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언론인들 스스로 평가하고 선정한 기사가 상의 가치를 높인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후략) □

신청인 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를 친정부 성향 매체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고 ○ ○)
피신청인 : 인터넷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인터넷내일신문 : 『한국언론재단 독점의 그늘, 3만 공공기관 광고 독점』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인터넷내일신문 : 『'한국언론재단 독점의 그늘'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4일자 1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27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이 학교 급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청 감사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Ⅵ

사건번호 : 2009대구조정2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썬뉴스 : 『경기 남양주 ○○중학교 학교급식 영양사 비리 말썽』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28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이 디지털 씨씨엠의 회장으로서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디지털 씨씨엠의 회장이 아니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Ⅰ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넥스트이코노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넥스트이코노미 : 『디지털 씨씨엠 김○○ 회장, 징역 3년 집유 4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뉴스면)
내 용 : 디지털씨씨엠의 김태암 전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8일, 디지털 씨씨엠 전 회장 등 임원진과 대표사업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디지털 씨씨엠 전 회장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현 대표이사 오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방판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상위사업자 6명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디지털 씨씨엠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디지털 씨씨엠 김 회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9일자 직접 판매면에 "디지털 씨씨엠 김회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디지털 씨씨엠과 김회장은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김회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 중임을 밝힙니다.

합의사항

• '넥스트이코노미(http://www.nexteconomy.co.kr/) 2009년 10월 9일자 '디지털 씨씨엠 김○○ 회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 제하의 기사내용 중 김○○ 씨를 디지털 씨씨엠 회장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 '김태암 씨는 디지털 씨씨엠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현재는 디지털 씨씨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정대상기사를 수정한다.

• 위 항의 이행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넥스트이코노미 : 『디지털 씨씨엠 김○○ 회장, 징역 3년 집유 4년』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8일 20:00)

내 용 : (전략) 한편, 김○○ 전 디지털 씨씨엠 회장은 "본인은 디지털 씨씨엠과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존 단협이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 이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4일자 14면)

내 용 : 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노조가 14일부터 장기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지부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 측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쟁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1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24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현 박기성 원장 취임 후 연구원 운영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어왔으며, 올 2월 사 측이 "인사·경영권 침해가 명백한 단협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서 노사 대립이 본격화됐다. 이 연구원 단협은 원장 및 주요 보직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고, 연구 성과물을 평가하는 연구심의평가위원장도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원장이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평가할 수 없고, 박사급 연구위원도 최대 18%까지만 평가권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일방적인 단협 해지는 결국 연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연구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국가기관 연구자들이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박 원장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노조원들이 박 원장이 사는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성 집회를 갖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9년 9월 14일자 A14면에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연구원의 단협이 「①원장 및 주요 보직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고, 연구 성과물을 평가하는 연구심의평가위원장도 될 수 없도록 했다」, 「②원장이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평가할 수 없고, 박사급 연구위원도 최대 18%까지만 평가권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며 연구원의 기존 단협이 사 측의 정상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 측의 단협 해지는 합리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노동연구원 노조의 파업은 지지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노동연구원의 단협은 ①인사위원회위원장을 연구원의 부원장이 맡도록 정하고 있어 주요 보직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도록 되어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심의평가위원회의 경우는 관련 내용이 단협에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문받을 사람(원장)이 원장을 보조하는 자문기구의 위원장이 되는 것

은 이치에 닿지 않아 한국노동연구원과 성격이 같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모두에서 이들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원장이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연구원 단협은 박사급 연구위원의 평가방법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원장의 석사급 연구원 및 행정직원의 평가 권한과 관련하여서, 원장은 이들의 업무수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평가권을 일선 팀장 등 보직자에게 부여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임금협약시 평가방법 개정에 대해 2009년 임금교섭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여 이번 단협으로 인한 파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
대표자 이 ○ ○
조정대리인 성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타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사회부 차장 송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체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통상적인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9.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9월 14일자 14면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 기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단협에 원장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고 보도했으나 예시된 조항들은 단협에는 없고 연구원 각종 위원회 규정 등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2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존 단협이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 이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의 황당한 파업』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5일자 3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3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존 단협이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 이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본분 망각한 노동연구원의 어이없는 파업』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5일자 A3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3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존 단협이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 이 ○ ○)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경제 : 『"노동문제 연구 기관에서 기득권 위해 파업하다니..."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5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3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3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9월 15일자 2면 『"노동문제 연구 기관인데 기득권 위해 파업하다니..."』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 단협에는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 보직자인 부원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박사급 연구위원의 평가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석사급 연구원 및 행

정직원의 평가방법은 200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임금교섭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서 이번 파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14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경제〉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5일자 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공무원노조 지부장인 신청인이 출장신청을 거부한 상급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오히려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인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신문 : 『공무원노조 지부장 상급자 폭행, 행안부 조사착수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4일자 5면)

내 용 : A팀장과 B씨가 뒤엉켜 넘어지자 동료 직원들이 말려 사태(?)는 진정됐다.

하지만, 이튿날 행정안전부 조사관까지 이 사실을 알고 구에 경위파악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구는 A팀장과 B씨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각각 경위서를 받은 결과, B씨가 A팀장에게 체납관련 조사 건으로 출장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폭행사태까지 야기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팀장의 가슴을 먼저 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무원노조 지부장 상급자 폭행' 바로잡습니다(또는 '공무원노조 지부장 상급자 폭행'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3일자 사회면에 "공무원노조 지부장 상급자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최○○ 공무원노조 인천서구지부장이 상급자 윤모 씨를 폭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 최○○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출장신청서 결재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윤모 씨 주먹으로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과 귀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뇌진탕을 포함한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음을 확인하여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디지털 씨씨엠의 회장으로서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디지털 씨씨엠의 회장이 아니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Ⅱ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3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마케팅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마케팅신문 : 『디지털 씨씨엠 김태암 회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3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3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3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마케팅신문 : 『디지털 씨씨엠 회장 징역3년, 집유 4년 선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0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최근 헌재판결 취지에 따라 면장이 신청인의 이장직을 직권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도했으나, 판결 취지가 잘못 해석되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5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심 ○ ○
피신청인 : 장성군민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장성군민신문 : 『헌재 "이장 임명권은 지자체장 고유 권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6일자 10면)
내 용 : "이장의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헌재는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주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대신 다른 사람을 임명한 면장의 행위에 대해 적법하다며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 요지를 보면 "지방자치법은 이장직 임명권을 면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라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면장의 행위는 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음을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성군 이장 임명은 주민총회의 추천자 중에서만 면장이 임명"가능(또는 이장 임명권은 지자체장 고유 권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또는 http://www.jsnews.co.kr)은 지난 11월 16일자 10면(또는 http://www.jsnews.co.kr)에 헌재 "이장 임명권은 지자체장 고유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 규칙'에 근거 덕성 3리 이장을 직권해임한 남면 면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을 정밀히 확인한 결과, 헌재에서 선고한 이장 임명권은 경북 경주시의 규칙(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제약이 없음)에 대하여 선고한 내용이었으며,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

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7.7.25)여서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규칙'에 근거 덕성3리 이장을 직권해임한 남면 면장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16일자 10면 "헌제 '이장 임명권은 지자체장 고유 권한'" 제목의 기사에서 "이장의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지난 10월 21일 남면 덕성3리 심흥섭 이장을 직권해임한 남면 면장의 행위도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흥섭 씨는 보도상 이장 또는 이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은 장성군 이장 임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결정내용이라고 주장해 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장성군민신문 10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헌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장성군민신문 군정소식란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헌재판결…)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12월 3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장성군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8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최근 헌재판결 취지에 따라 면장이 신청인의 이장직을 직권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도했으나, 판결 취지가 잘못 해석되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심 ○ ○
피신청인 : 인터넷장성군민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터넷장성군민신문 : 『"이장의 임명권 지자체 장에게 있다" 헌재판결』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1일자 사회종합면)
내 용 : 〈2009광주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광주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광주조정5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장성군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09년 12월 17일 사회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109㎡형의 보상비가 25억 원이며 주민 50% 이상이 통합개발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28兆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시동』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A14면)

내 용 :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용산역세권과 서부이촌동(이촌2동)을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한강철교~원효대교 사이 서부이촌동 일대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53만3115.5㎡)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안을 확정·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용산역세권과 서부이촌동 통합 개발안이 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고, 앞으로 토지 보상작업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략)

보상비는 인근 거래 가격과 비교해 보상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시세를 반영해 책정되는데, 주거이전비와 금융비용 등 기타 보상분을 합치면 대림아파트 109㎡형의 경우 2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보상비는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에 들어갈 때 인근 거래가의 시세를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서부이촌동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한편 설득작업도 병행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8조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시동'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4일자 사회면에 "28조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시동"라는 제목으로 용산역세권,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서 대림아파트의 보상비가 109제곱미터형의 경우 25억 원 정도 되고, 이번 개발에 대한 서부이촌동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림아파트의 보상비는 개발이익배제에 따라서 5~7억 원 정도이고 이번 개발에 대한 서부이촌동 주민의 동의율은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용산 통합 개발 반대"… 대림·동원·중산아파트 비상대책위 성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0일 A35면)

내 용 :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용산역세권과 서부이촌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서울시 결정과 관련, 대림·동원·중산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통합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통합 개발 공람 공고 기간에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3분의 2이상 반대의견을 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고, 수용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서도 시행사 주장과 달리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시행사는 전단을 통해 30억 원 보상을 운운하며 국민과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30억 원 보상이란 분양대금이 없는 주민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입주권 프리미엄과 중도금 유예기간 중 이자, 그리고 감정평가상 받을 수 없는 시세 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109㎡형의 보상비가 25억 원이며 주민 50% 이상이 통합개발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 ○)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조선닷컴 : 『28兆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시동』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8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조선닷컴 : 『[수도권] '용산 통합 개발 반대' 대림·동원·중산아파트 비상대책위 성명』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9일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40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109㎡형의 보상비가 25억 원이며 주민 50% 이상이 통합개발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 ○)
피신청인 : 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산업 탄력』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840의 보도내용 참조〉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109㎡형의 보상비가 25억 원이며 주민 50% 이상이 통합개발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 ○)
피신청인 : 인터넷파이낸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터넷파이낸셜뉴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산업 탄력』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8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109㎡형의 보상비가 25억 원이며 주민 50% 이상이 통합개발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용산업무지구-서부이촌동 통합개발 확정』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23면)
내　　용 : 〈2008서울조정8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109㎡형의 보상비가 25억 원이며 주민 50% 이상이 통합개발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Ⅵ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 ○)
피신청인 :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경닷컴 : 『용산역세권-이촌동 통합개발, 사업추진 '탄력'』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8서울조정8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 회사의 석산개발 때문에 인근 마을 농작물과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3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용하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대전KBS-1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KBS-1TV : 「시사터치 큐」 프로그램 『석산분쟁, 마을이 무너지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13일 19:30)
내 용 : (전략)
▷나레이터 : 아산시 인주면 ○○리 고향에서 무, 배추 등 밭 작물을 재배하는 김○○ 씨는 수확을 앞두고 막바지 농작물 점검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리 저리 배추 속을 살피는 김○○씨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김○○(○○리 주민) : 뭐 금년에 김장을 또 담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김장을 또 담가 가지고 잘 먹게 될지 또 김장을 해야 될지 식구들 전체까지 먹는 김장인데 얼마만큼 안전하게 될지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고 걱정됩니다.
▷나레이터 : 그가 직접 키운 배추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유는 배추밭 바로 뒤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석산개발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나레이터 : ○○리 주민들은 마을이 법적제한거리인 300m 밖에 있더라도 석산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석산 개발에 따른 피해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석산피해"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3일 「시사터치 큐」에서 방송한 석산 주변마을 주민의 작물 및 건물 피해가 전적으로 석산개발업체의 석산개발 때문인 것처럼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석산개발업체 용하산업(주)는

1) 지난 18년 간 석산개발로 인해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없고

2) 보도에 피해 본 주민들로 비춰진 건물이나 밭은 용하산업(주)의 석산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작물 피해를 대비한 농작물 피해 보상 예치금 ₩30,000,000을 ○○리에서 보관 중입니다.

3) 문제의 마을에 대한 개별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리는 직접 피해지역으로 개별보상이 이루어졌고, ○○리는 몇몇의 개별 보상보다는 마을 기금 출연을 통한 마을 발전을 원하여 단체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취하 후 보도문

대전 KBS-1TV : 「시사터치 큐」 프로그램 『"석산분쟁, 마을이 무너지고 있다" 편』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3일 20:24)

내 용 : ▷앵커 : 지난 7월 15일 ○○리 주민 100여 명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신청에 대한 반대 시위입니다.

토석채취에 기간연장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16여년 간 반대시위가 없다가 시위를 하게 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피해보상 문제였습니다.

▷주민 : "민원을 넣다 보면 석산 측에서 어떤 개별보상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앵커 : ○○리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지만 그동안 마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로 업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입증하기 어려운 발파 소음문제까지 제기해 그 뒷맛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

진주 40대 부녀자 납치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신청인의 음성과 뒷모습 등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보도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당신이 궁금한 그 이야기 - 큐브 cube」 프로그램 (2009년 12월 4일 20:50)

내 용 :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두 남자가 탄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한 시간 후 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보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서 내리는 두 남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계단 통로로 향하는데요. 다시 밖으로 나온 한 남자,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갑작스러운 폭력. 두 남자는 쓰러진 여자를 끌고 가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여자는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여자를 납치한 두 남자는 황급히 지하주차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 : 처음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제가 발버둥을 많이 쳐서…칼로 위협을 하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보도삭제〉 □

신청인이 국정감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은 재 (국회의원)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노컷뉴스 : 『씁쓸한 '국감 한건주의'…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2009년 10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소방방재청과 중앙 119 구조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활약상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기자들은 이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전날 서울시 국감에 앞서 이 의원실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청장 집무실 표준 면적을 준수한 곳은 송파구와 서초구 등 단 2곳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강남구청장의 집무실은 표준 면적을 크게 초과해 교실 평균 면적의 3.56배에 이르는 235㎡(71평)이 넘고 성북구와 노원구의 구청장 집무실 면적도 20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시민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지만 강남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강남구청장실 면적은 비서실을 포함해 127.9㎡로 서울시 25개구 중 19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원구청도 구청장 집무실 면적이 200㎡가 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실제로는 136.7평방미터라며 다른 의원들의 요구 때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황당해 했다. 성북구청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은 이은재 의원실에서 기사 한 줄 나오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냈던가, 작업 중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준비하랴, 제출된 이후에는 잘못된 의원실 보도자료 바로 잡으랴…. 국감 시즌에 바쁜 공무원들이 서울시 각 구청의 직원들만은 아닐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씁쓸한 '국감 한건주의'…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정정보도문
•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10월 9일자 「안○○ 기자의 포인트 뉴스」에 "씁쓸한 '국감 한건주의'…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도하는 한편 개인 신상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법령상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와 강남구청 간에 발생된 문제로서 이은재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노컷뉴스는 지난 10월 9일자 「포인트 뉴스」에 "씁쓸한 '국감 한건주의'…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은재 의원의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은재 의원실에서 작업 중의 착오 등의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씁쓸한 '국감 한건주의'…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정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정감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은 재 (국회의원)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버 : 『씁쓸한 '국감 한건주의'…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4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버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정감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은 재 (국회의원)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트 : 『씁쓸한 '국감 한건주의'…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4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네이트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정감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은 재 (국회의원)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다 음 : 『씁쓸한 '국감 한건주의'…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2009년 10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4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다 음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정감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은 재 (국회의원)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야 후 : 『쏩쓸한 '국감 한건주의'…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2009년 10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4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4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4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야 후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5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ETF(상장지수펀드)를 국내 주식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배○○ 삼성투신운용 상무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한 것이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경닷컴 : 『ETF 맹신자 배○○ "나까마 비용 줄여야 부자된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9일자 경제면)
내 용 :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던 2001년 1월. 배○○ 삼성투신운용 상무(48·사진, 당시 코스닥 운용팀장)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고 경영진 A씨의 전화 호출이었다. 시장 급락에 '밥값'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던 터라 임원실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중략)

최고 경영진 A씨는 자신이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책이라며 배상무에게 두꺼운 책을 건네 줬다. 그 책은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인 뱅가드 펀드(Vanguard fund)의 설립자 존 보글(john C. Bogle)이 쓴 '뮤추얼 펀드에 관한 일반상식(Common sense on mutual funds)'이었다. 존 보글은 프린스턴 대학시절 인덱스 펀드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졸업 후 이를 사업으로 실천해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를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한 배상무는 ETF와 처음으로 연을 맺게 된 계기를 이렇게 떠올렸다. 인덱스펀드의 대가가 저술한 책을 접하면서 코스닥펀드 등 액티브펀드(시장대비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펀드)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 그 대신 인덱스펀드나 ETF처럼 지수를 따라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패시브펀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ETF 맹신자 배○○ "나까마 비용 줄여야 부자된다"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9일자에 'ETF 맹신자 배○○ "나까마 비용 줄여야 부자된다"' 라는 제목으로 ETF 도입경과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관련자들의 자료 및 그 당시 언론 보도내용 등에 따르면 실제 ETF 과정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해당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 또한 해당 보도는 기획·연재 기사이고, 인터뷰 기사이므로 반론 게재할 경우 인터뷰이의 양해를 얻어야 하는 문제 있음. 향후 신청인의 인터뷰를 후속성 보도로 게재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 □

신청인 축협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축협 소유의 양돈장을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결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모든 절차는 이사회의 승인 및 감사의 입회 하에 투명하게 이뤄졌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 ○)
피신청인 : 전남저널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남저널 : 『양돈장 매각, 배임·분식결산 의혹』 제하의 기사(2009년 12월 3일자 1면)
내 용 : 나주축협이 9년 전에 매각한 양돈장(나주시 반남면 ○○리 일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배임과 분식회계의 의혹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축협이 매수자의 분할납부 계약 위반으로 이미 매각한 양돈장을 회수한 다음 재매각하면서 그 동안 밀린 수 억 원의 이자를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징구하지 않아 배임의혹이 일고 있으며 현재가치 할인차금 계정을 이용한 분식회계로 당기 순이익을 허위로 높였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나주축협 관련 기사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3일자 1면 전체지면을 이용하여 "양돈장 매각, 배임·분식결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나주축협이 이자 수억 원을 징구 기피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이용 수익부풀렸으며 조합 토지담보로 대출까지 해줬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월 2일 나주축협 임원간담회 시 참석한 한○○ 공인회계사가 "처분당시 축협 종돈장 회계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사업 외 수익 항목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무시하고 나간 본보의 보도는 오보임으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축협이 매수자의 분할납부 계약위반으로… 그동안 밀린 수억 원의 이자를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징구하지 않아 배임의혹이 일고 있으며 현재가치 할인차금계정을 이용한 분식회계로 당기 순이익을 허위로 높였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나주축협은 매각 당시 이사회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당시 중앙회 경영관리역 및 조합감사까지 입회 하에 종돈장 매각을 결정한 바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이자감면 등의 절차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이는 본보에서 정확한 취재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또 나주축협이 지난 2000년 4월 10일 장부가격 38억 원인 조합소유 양돈장을 J모 씨에게 20억 원

에 매각하였는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확인 결과 양돈장의 장부가격이 28억 원으로 밝혀져 제보자의 말만 믿고 보도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나주축협은 재매각 금액 19억 원 가운데 당초 매각 후 9년 분할 미회수 원금 12억 6천만 원과 당초 매수자의 축협 외상사료대금 4억 3천여만 원까지 포함하여 17억여 원을 회수했는데 남은 잔금 2억 원마저도 당초 매수자에게 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양돈장 관련한 모든 결정은 나주축협의 이사회의 전원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모든 계약은 당시 조합 감사의 입회 하에 이루어 졌으며 계약서에는 감사의 확인 날인도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사내용 중 의문·의혹·배임·분식결산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축협은 M농협의 설정과 대체하면서 추가대출을 해줬는데 토지를 이전해준 잘못 때문에 축협이 축협의 땅을 담보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또한 확인 결과 나주축협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원 매수자 J씨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방지키 위해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지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다거나 M농협의 설정과 대체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정확한 취재없이 보도하게 되었음으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정정보도청구가 과다하여 수용 불가 □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는 철도 노조원이 4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시절이 바뀌고 있다』 제하의 칼럼(2009년 12월 8일자 39면)
내 용 : (전략)

지난 정권만 해도 정권이 파업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았다. 노동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노조 말을 들어주도록 유도했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그런 방침 아래서 누가 노조와 맞붙을 수 있었겠는가. 말로는 소외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노조천국인 나라로 만들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절이 바뀌고 있다"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8일 문창극 칼럼을 통해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는 철도 노조원이 400명이 넘게 된 것이다. 이러고서도 임금을 더 인상하라고 파업을 하니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는가'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 사장의 총 연봉은 2억여 원이나 됩니다. 노조원이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 파업의 이유도 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무리한 단체협약 개악 및 임금

구조 변경으로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파업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선의의 피해를 본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사과드립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조정대리인 백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1월 13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철도노조 관련 반론

2) 내 용 : 본지 2009년 12월 8일자 39면 「시절이 바뀌고 있다」 제하의 칼럼에서 철도공사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는 노조원이 400명이 넘고, 철도노조가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장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노조원은 없으며, 11월 26일자 파업은 사 측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 및 임금 구조 변경 강행 등에 따른 것으로 임금인상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조정결정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8일자 33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는 철도 노조원이 4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조인스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조인스닷컴 : 『시절이 바뀌고 있다』 제하의 칼럼 (2009년 12월 7일자 오피니언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854의 결정조서 참조〉

조정결정 이행결과

조인스닷컴 : 『반론』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오피니언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줄기세포 배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제공한 줄기세포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이로 인해 혈액암에 걸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알앤엘바이오 (대표이사 라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0.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줄기세포는 만병통치』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30일 23:00)
내　　용 : ▷"박씨는 자신이 암에 걸리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박씨는 이 줄기세포 치료가 자신의 암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줄기세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30일 밤 11시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줄기세포는 만병통치?"라는 제목으로, 줄기세포 보관배양업체로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소개받은 박모 씨가 줄기세포치료로 인하여 혈액암이 발병하였으며, 줄기세포 보관배양업체가 국내환자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옮겨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내 줄기세포 보관배양업체가 제공한 줄기세포 치료로 인하여 혈액암이 발생하였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줄기세포 보관배양업체가 줄기세포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알앤엘바이오
대표이사 라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주　　문 :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10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말미에 〈별지〉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자막으로 방송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3.

〈별 지〉

• 제　목 : 줄기세포 치료 보도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11월 30일 방영된 〈줄기세포는 만병통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줄기세포 치료와 혈액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MBC-TV :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줄기세포 치료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10일 23:05)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신청인 조합장이 임원들과 공모해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받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7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 ○ ○) 외 1인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국매일 : 『구로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비리로 '시끌'』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1일자 10면)

내 용 : 조합장이 새시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수뢰)로 구속되는가 하면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구속되는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구로구 모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이사, 감사 등 10명의 집행부 전원이 조합원들로부터 고소·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세간의 떠도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250여 명이 현 집행부를 불신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규석)를 구성하고 고소·고발 등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위원장 한규석 씨는 조합장 박모 씨를 비롯해 집행부 전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성과급 지급 관련)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1월 21일 제1차 이사 및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박씨에게 20억 원 성과급(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실제로 6억5,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구로구 재건축아파트 조합 비리"에 관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11월 11일자 10면 자치행정면과 인터넷(www.jeonmae.co.kr)에 "구로구 재건축조합 비리로 시끌"이란 제목으로, 신청인 조합장 박○○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사 및 감사들과 공모하여 성과급 지급을 받아, 구속되는 등 신청인 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비리로 불신을 당하고 조합장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조합장 박○○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성과급 지급 부분도, 조합이 서울시와 구로구청을 통해서 임대주택 176세대에 귀속되는 토지보상비 약120억 원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공원조성비 약160억 원 등을 무상양도 받는 과정에서 조합장 박○○이 백방으로 노력하여 조합에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킨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에게 특별상여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구로구 재건축아파트 조합 비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1월 11일자 10면 "구로구 재건축조합 비리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구로구 모 재건축정비조합장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조합이 서울시와 구로구청을 통해서 임대주택 176세대에 귀속되는 토지보상비 약 120억 원과 아파트단지 내 도로 및 공원조성비 약 160억 원 등을 무상양도 받는 과정에서 조합장의 노력으로 조

합에 재산 상 이익을 발생시킨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혀와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3일 10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하단 기사에 소제목(동대문구 금연·금주 공원으로 조성)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국매일 인터넷(www.jeonmae.co.kr)판에 위 보도문이 게시 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국매일 : 『"구로구 재건축아파트 조합 비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벤처기업 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중앙SUNDAY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SUNDAY : (1) 『정부 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1면)

내 용 : 검찰이 벤처기업 대표가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스트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리스트에는 전·현직 공무원 5명과 현직 교수 한 명, 기업체 임직원 15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일본 기업인도 한 명 있다.

공무원은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서울시내 모 구청 소속이다. 대기업 임직원은 3명이고 정보통신 및 게임 벤처 대표가 9명이다.

리스트는 게임 개발업체인 A사 대표 H씨(47)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리스트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접대한 사람과 접대 날짜·장소, 성접대한 여성의 이름 등을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기록돼 있다. 파일 이름은 '나이트 리포트(night report)', '밤의 보고서'란 의미다. 여기에는 성접대 여성이 상대방 남자와의 성행위 시간·스타일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리스트는 이 회사의 전 감사 P씨(50)가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H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P씨는 4일 밤 본지 기자와 만나 "성접대 여성은 '마타'라는 항목으로, 상대 남은 M으로 표기돼 있다. 마타하리와 MAN의 약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는 H씨가 성접대 여성 36명에게 보고를 받아 만든 것"이라며 "펀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후략)

(2) 『사이 틀어진 대표-감사, 사기·폭행 등 쌍방 고소만 6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4면)

내 용 : 벤처기업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등 20여 명이 등장하는 성접대 리스트. 작성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업의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리스트가 공개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부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

대 의혹 조사"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6일자 사회면 1면에 "정부 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의혹 조사"라는 제목으로, 사회면 4, 5면에 "사이 틀어진 대표-감사, 사기·폭행 등 쌍방 고소만 6건"이라는 제목으로, 벤처기업 대표인 H씨가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나이트 리포트(Night Report)'라는 제목의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입수한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H씨가 정부로부터 모태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H씨 및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위 보도 기사 게재 당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지도 않았고 검찰이 성접대 리스트를 수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H씨는 본 신문이 인용한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위 리스트와 정부의 펀드자금 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로 인해 H씨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하였으며 앞으로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덧붙여 H씨를 전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사기와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이 기사로 인해 피해는 물론 의혹을 받았을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 부처의 명예를 손상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한 기사 게재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임을 알립니다. 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12월 16일자 1면 '정부 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의혹 조사' 및 4, 5면 관련 기사에서 벤처기업 대표인 H씨가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했고 정부로부터 모태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게재 당시에는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검찰에서 H씨가 성접대를 하거나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H씨가 운영하던 게임회사와 중기청의 투자를 받은 펀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0일까지 〈중앙SUNDAY〉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중앙SUNDAY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그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본건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협조 요청을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SUNDAY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벤처기업 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조인스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인스닷컴 : 『정부 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 제하의 기사(2009년 12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5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인스닷컴 : 『[바로잡습니다] 벤처기업 성접대 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해고자 50인을 무조건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5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막가는' 철도노조』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6일자 4면)
내　　용 : 공기업 최대 노조인 철도노조가 26일 전면파업에 나서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올들어 벌써 4번째인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 원인은 철도공사 측이 해지를 통보한 '기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간의 견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측은 기존 협약 내용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불합리한 독소조항과 잘못된 관행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노조 측은 사 측이 무리하게 기존 임단협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해고자 복직은 철도 노사분규의 단골메뉴다. 공사는 노조 측이 각종 불법행위 등에 따른 50명의 해고자를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막가는 철도노조'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11월 26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도하면서 철도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전임자가 64명임에도 불구하고 61명으로 보도하고 노조가 해고자 50명을 무조건 원직 복직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등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또 유급휴일 축소 등을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일정 부분 의견접근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대표적 조항이라 하는 등 사실을 심각히 왜곡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본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전국철도노조는 본지 11월 26일자 「'막가는' 철도노조」 기사에 대해 "해고자 복직은 2004년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이행을 촉구했던 것인데 마치 노조가 해고자의 복직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조는 12월 1일자 「盧정부 노동위 결정이 배짱 키워」 기사에 대해 "몇몇 집행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노동위의 결정으로 단체협약 제32조 '부당징계의 구제' 조항에 따라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24일까지 '문화일보' 5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는 문화일보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금전배상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해고자 50인을 무조건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닷컴 : 『'막가는' 철도노조』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5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경의선 개통식 행사에서 달리는 열차를 강제로 세우는 등 강경투쟁을 일삼아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2007년 불법파업 주동자 징계 번복 … 盧 정부 노동위 결정이 배짱 키워』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5면)

내 용 : 올해만 4번째이자 역대 최장기 파업을 진행중인 철도노조가 툭하면 파업 등의 강경투쟁에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 측의 징계권을 무력화시키는 '친 노조 성향'의 노동위원회 결정과 검·경 등의 소극적 수사자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비 쟁의행위 기간에도 철도노조의 '막가파 식 무한투쟁'은 고질병화 되고 있다. 폭행, 폭언, 농성, 행사 방해 등의 투쟁으로 올해 사 측이 고소한 노조원만 170명에 이른다. 달리는 열차를 노조원들이 강제로 세우는 아찔한 사태까지 벌어져도 공권력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지난 7월 1일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열렸던 경의선 복선화 개통식 행사의 경우 행사를 원천봉쇄하려는 노조원들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강제 정차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철도노조 툭하면 강경투쟁 왜?(부제목)'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12월 1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도하면서 철도노조가 막가파 식 무한투쟁을 하고 있다며 폭언, 폭행, 농성, 행사방해 등을 했고 달리는 열차를 강제로 세우고 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강제로 세웠지만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징계기간 동안 통상급여를 돌려 받고 급여의 200%에 달하는 보너스까지 챙긴다며 노조에 부정적 이미지만을 기사화했습니다.

열차를 강제로 세웠다면 철도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와 관련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공사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징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징계기간 동안 통산급여를 받고 급여 200%의 보너스를 챙겼다는 부분은 공사의 징계가 무혐의로 판결날 경우 불이익을 당한 해당임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200%의 보너스는 공사의 잘못된 징계에 따른 위로금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선의의 피해를 본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5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경의선 개통식 행사에서 달리는 열차를 강제로 세우는 등 강경투쟁을 일삼아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닷컴 : 『2007년 불법파업 주동자 징계 번복… 盧 정부 노동위 결정이 배짱 키워』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일자 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5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파업의 이유를 왜곡하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철도노조 파업 이유' 왜곡 홍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철도 전면파업이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각종 진보단체의 지원을 등에 업고 파업 정당성 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노조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실상을 교묘히 왜곡해 파업 책임을 떠넘기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스캔들'식의 이중잣대를 적용한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실 왜곡사례가 노조 측이 내세운 파업 강행 이유. 노조 측은 지난 11월 24일 단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기습적인 단협해지 통보로 26일부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한다고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중략)

해고자 복직에 대한 노조 측의 대외 선전도 왜곡됐다는 것이 사 측 주장. 노조 측은 "해고자 문제는 이번 파업이유가 아니고 다만 지난해 노사간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 측은 "노사합의는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해고자 '조치'로 노조가 문구를 바꿔치기해 여론을 현혹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철도노조 파업 이유 왜곡 홍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12월 2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도하면서 철도노조가 파업 이유를 왜곡 홍보하고 있다는 일방적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공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

성한 기사입니다. 특히 파업돌입의 공방과 노조 측의 친 서민 위장행보 등도 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해고자 복직관련한 공방도 공사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문화일보 닷컴은 노조와 공사가 파업 관련 쟁점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는 취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선의의 피해를 본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12월 2일자 5면 「'철도노조 파업 이유' 왜곡 홍보」, 4일자 3면 「철도공사 "파업病 뿌리뽑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국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은 사 측의 단협 해지 통보 때문이며 정치파업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일반열차의 운행을 늘리라는 노조의 주장이 '친서민 위장행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 측에 건의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월 12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5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문화일보〉의 통상적인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8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파업의 이유를 왜곡하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닷컴 : 『'철도노조 파업 이유' 왜곡 홍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6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6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6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닷컴 :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로서 각종 정치파업을 벌이며 강경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철도공사 "파업病 뿌리뽑겠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질적인 철도노조의 '습관성 파업병' 근절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조의 3일 파업 철회에 대해 일부에서는 '백기 투항'으로 해석하며 향후 파업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코레일 측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3일 파업철회가 '진정성이 결여된 전략적 후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법과 사규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왜곡된 공기업 노조문화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대 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핵심 관계자는 4일 "노조가 늦게나마 파업을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선례로 볼 때 파업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을 기회로 잘못된 악습을 일소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사 측이 노조 측에 교섭재개 조건으로 향후 무파업 공개선언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강한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철도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위대로 나서 각종 정치성 파업을 벌이며 강경투쟁을 되풀이한 배경에는 철도 특유의 직장 특성 속에서 조합원들이 간부진의 지시나 사 측의 징계보다 오히려 노조를 더 두려워하는 '조폭식 노조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철도공사 "파업병 뿌리뽑겠다"
• 부제목 : 본 신문 12월 4일자 "파업병 뿌리뽑겠다"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12월 4일 철도노조의 경고파업을 보도하면서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로써 각종 정치파업을 벌였으며 조폭 식 노조문화가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보도였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선의의 피해를 본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6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8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로서 각종 정치파업을 벌이며 강경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문화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닷컴 : 『철도공사 "파업病 뿌리뽑겠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6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6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5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6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닷컴 : 『알림』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학교가 운동장 개방을 빌미로 구청으로부터 급식소 공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7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인천주안초등학교 (교장 정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부일보 : 『주안초교 운동장 이용해 돈벌이 '비난'』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9일자 22면)
내 용 : 인천 남구 주안초교가 최근 운동장에 '외부인 주차금지' 조치를 내려 이 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7일자 22면 보도) 학교가 운동장을 통해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남구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주안초교는 학교 급식소 공사를 지원받으려는 목적으로 구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주안초교 운동장 이용해 돈벌이 '비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9일자 22면 "주안초교 운동장 이용해 돈벌이 '비난'"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남구 주안초교가 지난 3년 간 주차장으로 개방했던 운동장 재계약 건과 관련, 구청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으며, 웨딩홀 업체들에게는 주차 계약 금액을 배로 올렸고, 부구청장이 학교로 찾아가 운동장 개방을 호소하자 급식소 공사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반대 학부모들에게 개방을 번복하는데 대한 명분을 세울 해결책을 요구하는 듯한 주안초교 관계자의 멘트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안초교 측은 구청 측에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운동장 개방 연장 계획에 대한 문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연장 계획이 없다고 거절한 구청측의 통보를 받고 현수막, 홈페이지,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운동장 개방을 실시하지 않음을 홍보하여 오던 중, 계약 만료기간 3일 전 구청 측에서 운동장 개방에 대한 요구를 해 와 운동장 개방 당시

여러 문제점을 들어 개방 불가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없음을 구청관계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써 운동장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 했다거나 운동장 개방을 빌미로 구청에 급식소 지원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웨딩홀에 대한 주차 계약은 운동장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차 계약금액도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학교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인상한 것으로 돈벌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주안초교 운동장 이용해 돈벌이 '비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2월 9일자 22면에 "주안초교 운동장 이용해 돈벌이 '비난'" 제목으로 보도한 인천남구 주안초교가 지난 3년 간 주차장으로 개방했던 운동장 재계약 건 관련, 주안초교 측은 연장 계획이 없다는 구청 측의 통보를 받고 현수막, 홈페이지,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운동장 개방을 실시하지 않음을 홍보하여 오던 중, 계약 만료 기간 3일 전 구청 측에서 운동장 개방에 대한 요구를 해 와 운동장 개방 당시 여러 문제점을 들어 개방 불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번복할 수 없음을 구청관계자에게 설명한 것이며, 웨딩홀들에 대한 주차 계약은 운동장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차 계약금액도 인천시 교육청 공유 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인상한 것으로 운동장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 했다거나 운동장 개방을 빌미로 구청에 급식소 지원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3일까지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남구 주차장개방 요청에 급식소 공사비 지원 요구)로,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부일보 인터넷(www.joongboo.com)판에 위 보도문이 게시 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주안초교 운동장 이용해 돈벌이 '비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비를 부당하게 증액했다고 보도했으나, 공익적 차원의 타당한 증액이었다

사건번호 : 2009광주조정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시장 박 광 태)
피신청인 : 광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광주일보 : 『광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비 몰래 증액』 제하의 기사(2009년 11월 14일자 2면)

내 용 :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비가 담당 국장도 모르는 사이에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조광향 의원(민주·비례대표)은 13일 광주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당초 사업비가 500억 원에서 7개월만에 700억 원으로 40%나 증액됐다"며 증액 사유를 따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비 몰래 증액'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4일자 종합면에 "광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비 몰래 증액" 제하의 기사에서 "시의회 당초 500억→700억 증액 이유 뭐냐, 담당 국장도 몰라…배경 의혹 싸고 논란 커져"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주광역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업비 증액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수질 오염, 악취 등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시민들의 안녕과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용역사의 보고로 사업비 증액사실을 알고 재검토를 지시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액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마치 담당자들이 담당국장도 모르게 마음대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처럼 왜곡 보도함으로서 사실관계를 오해하게 한 데 대해 독자들과 광주시 관계자들에게 사과드리고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는 진실보도이므로 신청인 주장 수용 불가 □

신청인이 최근 왕십리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난 연쇄 방화사건의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보도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보상금 불만 '방화'』 제하의 보도(2009년 11월 19일 21:00)

내 용 : 최근 왕십리 재개발 지역에 석 달 사이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30여 건 났습니다. 잡고 보니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다 끄기도 전에 불과 2, 30미터 거리에서 또 불길이 솟았습니다. 모두 7군데에서 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8월 철거공사가 시작된 왕십리 재개발 지역은 건물이 대부분 비었습니다. 영세업주와 세입자 80여 가구만 남아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 달새 30여 건의 불이 나 골목마다 타다만 잿더미가 보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입니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구청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 : "상공인하고 세입자를 어떻게든 (방화범으로)엮어서 자기들 공사를 빨리 하게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가게."

재개발 시공업체는 반대로 공사를 막기 위한 방화로 봤습니다.

▷"저희로서는 (불 때문에) 자재를 다시 쓸 수가 없죠."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여 방화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영세가공업을 하는 42살 유모 씨입니다. 유씨는 경찰에서 재개발 보상금으로는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방화 용의자 가족 : "술 먹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불을 냈다고."

주민들은 "소외된 이들의 애처로운 행동이었다며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보상금 불만 방화' 정정보도문(또는 뉴타운 연쇄 방화범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9일 KBS 뉴스 9에서 "보상금 불만 방화"라는 제목으로 최근 왕십

리 재개발 지역에 석 달 사이 방화로 추정되는 30여 건의 불이 났는데 그 범인을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방송에 연쇄방화범으로 보도된 주민은 왕십리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무관하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방송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본 방송으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보도삭제〉 □

마을이장인 신청인이 회의록 허위작성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천 ○ ○
피신청인 : 한려투데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려투데이 : 『희대의 토지 사기인가? 단순한 주민갈등인가?』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3일자 1면)

내 용 :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수륙마을 공동재산인 370.440㎡의 토지를 전 마을이장과 특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져만 가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전 마을이장을 비롯한 특정인들이 시세차액을 노린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 마을이장 C씨는 주민다수가 원했으며 정상적인 회의절차를 밟았다고 주장,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고소와 맞고소에 이어 대책위가 C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부산고등법원에 항고를 해 논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마을소유 임야 매각에 따른 마을 규약 및 회의록 조작 관련보도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11월 13일자 일면에 "희대의 토지사기인가? 단순한 주민갈등인가?"라는 제목으로 2007년 C씨의 이장 취임, 없던 규약제정, 회의록 허위 작성 등으로 마을 주민들은 C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장직을 해임하기에 이른다 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전 이장 C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26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 돼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산양읍 수륙마을 공동재산 처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13일자 "희대의 토지사기인가? 단순한 주민갈등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통영시 산양읍 수륙마을 공동재산 매매 과정에 대해 특정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린 명백한 사기라는 대책위 주장과 전 마을이장을 대책위원회가 회의록 허위작성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여 항고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 마을 이장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창원지검 통영지청

에서 무혐의 처분되었고 고소인들이 부산고검에 항고하였으나 11월 26일 기각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땅을 매입한 B리조트 대표는 대다수 주민들의 매각 찬성과 동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휴지인 임야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영해상자연휴양림으로 산림청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2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려투데이〉 1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 부제목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차후 다시 이 건과 관련한 후속 보도로 인해 법률문제가 발생할 시, 이 건 보도에 대해서도 재론할 수 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려투데이 : 『산양읍 수륙마을 공동재산 처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9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주민들의 동의 하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불순한 세력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조정19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려투데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려투데이 : 『희대의 토지 사기인가? 단순한 주민갈등인가?』 제하의 기사(2009년 11월 13일자 1면)

내 용 : 〈2009경남조정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산양읍 수륙마을 공동재산 임의처분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11월 13일자 일면에 "희대의 토지사기인가? 단순한 주민갈등인가?"라는 제목으로 11만 평이란 땅의 크기가 말하듯 시세차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불순한 세력을 의심해 볼만하지 않은가?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 평당 수 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더라, 계약당사자가 뒤에 누구, 누구가 있다더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서울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분할매수자를 모집한 사람이 있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륙마을 공동재산인 임야는 대다수 주민들의 매각찬성과 동의에 의해 계약체결을 하게 된 것이며 유휴지인 임야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영 해상자연휴양림으로 산림청에서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9경남조정1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려투데이 : 『산양읍 수륙마을 공동재산 처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9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시가 '부패' 이미지를 갖고 있고, 문화재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갖고 있으며, 서울시청 에너지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오 세 훈)
피신청인 : 프라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프라임경제 : (1) 『오세훈 시장, 금융허브·도덕성에 올인한 까닭』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9일자 정치면)
내 용 : "접대 골프 치지 마라", "서울은 경쟁 도시들보다 금융허브 기반 면에서 우수한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최근 상기된 표정으로 발언하는 일이 늘었다. 오 시장이 골프와 접대의 상관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 시장의 이같은 강경한 발언은 지펠 냉장고 폭발 사고에 대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대로(大怒)와 비교되면서 더 큰 눈길을 모았다. 아울러 금융허브 기반 발언은 지난 6일 국제금융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상당히 밝은 금융허브의 미래에 대한 '호스트'의 설렘을 반영한 발언이 기자회견 내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중략)

◇부패한 서울시 이미지 아직 못 벗어

이런 상황은 오 시장이 전임 시장처럼 토목 문제로 특별히 풍성한 정치적 수확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되는데, 다른 영역에서도 오 시장을 초조하게 하는 징표는 발견된다.

바로 오 시장 부임 이후에도 답보 조짐을 보이는 부패 개선 문제다. 최근 불거진 상수도사업본부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후략)

(2) 『빠르고 멋진 것에 정신뺏겨 역사 잊은 서울시』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1일자 종합면)
내 용 : 조선시대 한성부 개청 이래 오랜 세월 우리 나라의 중심도시로 기능해 온 역사도시 서울.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서울은 오랜 세월 수도이자 각 영역의 허브로 기능하면서, 영욕을 누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그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은 오세훈 시장 치세 기간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10월 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개장과 이면의 논란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의 문화감각 부재를 간략히 되돌아 봤다. (후략)

(3) 『능력·제도 한계 무시한 서울시 '전시 행정' 우려』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3일자 정치일반면)
내 용 : 서울시의 행정 체계에서 각종 실험적 조치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 없이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추진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졸속 시행에 들어가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가 과시용(보여주기) 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내년으로 바짝 다가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치적쌓기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오세훈 시장, 금융허브·도덕성에 올인한 까닭' 정정보도문(또는 '오세훈 시장, 금융허브·도덕성에 올인한 까닭'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9일자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 및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화면에 "오세훈 시장, 금융허브·도덕성에 올인한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부패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 해결 또한 불가능한 조직인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국(서울시청)에 확인한 결과,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공직에서 퇴출함은 물론, 이러한 공무원은 퇴출 후에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는 등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 한번만으로도 금액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 징계 또는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청렴도시 구현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1) 제목 : '빠르고 멋진 것에 정신뺏겨 역사 잊은 서울시' 정정보도문(또는 '빠르고 멋진 것에 정신뺏겨 역사 잊은 서울시'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1일자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 및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화면에 "빠르고 멋진 것에 정신뺏겨 역사 잊은 서을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행사효과만을 크게 보고, 경희궁을 욕 보이는 문화재 경시 풍조를 갖고 있으며,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 안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이전하여 입점할 곳이 없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국(서울시청)에 확인한 결과, '프라다 프랜스포머 전시회'는 서울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서울의 패션문화예술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의한 서울시의 위상 제고와 이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었던, 서울시에 필요한 행사였고, 서울시는 문화재 복원 및 지정 등 문화재 관리를 서울시의 문화정책 중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목표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 안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민족 고유의 풍물과 서민의 정취가 깃들어져 있음은 물론 전통의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을 함께 제공'하는 '풍물 한마당'으로의 자리 매김을 목표로 동대문 구 신설동 소재(옛, 숭인여중 부지)에 새로 조성된 "서울풍물시장"에,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에 입점해 있던 894개 점포상인(풍물벼룩 158개, 의류잡화 503개, 전자공구 126개, 음식스넥 107개)들이 이전·입점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1) 제목 : '능력·제도 한계 무시한 서울시 '전시 행정' 우려' 정정보도문(또는 '능력·제도 한계 무시한 서울시 '전시 행정' 우려' 관련 바로잡습니다)

(2) 내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3일자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 및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화면에 "능력·제도 한계 무시한 서울시 '전시 행정' 우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청의 총 에너지사용량이 2006년 대비 6.9% 나 증가했다."라는 인용 보도를 단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국(서울시청)에 확인한 결과, 보도내용이 시 본관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분(369.9 Toe/년)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능이 강화된 서소문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만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서, 서울시 5개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6년도 2,374Toe, 2007년도 2,355Toe, 2008년도 2,326Toe이며, 따라서, 서울시 청사의 3년간 에너지 총사용량은 실제로는 2.02% 감소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시에서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위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4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리 공직자를 공직에서 퇴출함은 물론, 퇴출 후 관련기관 취업까지 영구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 5명의 공무원을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마련함

으로써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12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라임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오세훈 시장, 금융허브·도덕성에 올인한 까닭」 제하의 보도)의 본문 하단에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 제 목 : 서울시에서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위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자 '프라다 트랜스포머 전시회'의 유치에 성공해 패션·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울시 문화정책 중 문화재 관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동대문 운동장이 헐리면서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에 입점해있던 점포상인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신설동(옛 숭인여중 부지)에 새롭게 "서울풍물시장"을 조성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12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라임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빠르고 멋진 것에 정신뺏겨 역사 잊은 서울시」 제하의 보도)의 본문 하단에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위 보도와 관련해 본지 확인 결과, 서울시 청사(본관, 서소문별관, 을지로별관, 남산별관)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6년도 2,374Toe, 2007년도 2,355Toe, 2008년도 2,326Toe로, 지난 3년 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문을 2009년 12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라임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능력·제도 한계 무시한 서울시 '전시 행정' 우려」 제하의 보도)의 본문 하단에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프라임경제 : (1) 『[서울시에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정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2) 『[서울시에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종합면)
〈합의사항 참조〉
(3)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4일자 정치일반면)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제조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가 음질이 불량하고 오작동 하는 등 제품상 하자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한길에이치씨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에이블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에이블뉴스 : 『경의선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심각한 오류』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4

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7월 1일 개통한 경의선 17개 역사 중 행신역을 제외한 16개 역사에 설치된 음성유도기가 동시에 동작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 시각장애인 보행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음성유도기는 시각장애인이 리모컨을 누르면 시설물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장치인데, 리모컨을 눌렀을 때 여러 곳의 정보를 동시에 음성을 전해주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할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현장 점검을 마친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직원 및 시각장애인 당사자 4명은 "음성유도기가 동시에 울리고 음질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유도기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한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철도시설공단 수도권통신팀과 감리업체 측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 전기사업단 신호통신처 관계자들도 경의선에 설치된 제품과 같은 회사의 제품이 설치된 대전역을 둘러본 후, 음성유도기가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음성유도기의 문제점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지적되고 있지만 관할당국인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통신팀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시민교통안전협회에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수도권본부장에게 보낸 공문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 얻은 결과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의선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심각한 오류"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4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경의선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심각한 오류"라는 제목으로 경의선에 음성유도기를 납품한(주)한길에이치씨) 제품이 심각한 오류(동시동작)와 음질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단과 감리단.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중앙회)가 확인한 결과, 해당 역사는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작동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사과 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대입수학능력평가시험 성적표를 받아 보는 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Ⅰ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2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전북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 『희비교차』 제하의 사진 (2009년 12월 9일자 4면)

내　　용 : (사진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대입수학능력평가시험 성적표를 받아 보는 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전북조정2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인터넷전북도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5.
처리결과 : 취 하

사진 (2009년 12월 9일자)
내 용 : (사진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보도내용

인터넷전북도민일보 : 『수능점수 희비교차』 제하의 〈기사삭제〉 □

국정원이 진보, 좌파 인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대북 전문요원들을 투입하는 등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정보원 (원장 원 세 훈)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서울 : 『대북정보 먹통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0일자 816호 2~3면)

내 용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월 1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엄정하게 정치 중립을 지키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원장의 직분에 충실할 것"이라며 "정보의 생명이 진실성과 비편향성에 있다는 점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또 원 원장은 이날 "물샐 틈 없는 국가안보의 확립이야말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이자 국정원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원 원장은 당시 했던 다짐과 반대로 가고 있다. 진보·좌파 인사와 야당 정치인 밀착감시 등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극비리에 추진 중이던 사업내용이 외부로 새 문제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또 최근 원 원장의 국정원 개혁시도가 논란이다. 개혁시도 그 자체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가 문제다. 상당수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원 원장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치권과 주요언론은 원 원장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원 원장이 MB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략)

원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얼마나 안일한지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에 홍수가 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정원은 방류 사건과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중요인사

와 더불어 주요기관, 주요시설, 주요지역 등의 동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휴전선 부근의 댐은 수공가능성에 따라 주요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방류 직전까지도 수위나 수문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수문 방류 시 이를 평양에 알리도록 돼 있고 평양은 다시 이를 남 측에 알린다. 이번에 평양은 남 측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북한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중략)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때도 국정원의 대북라인은 '먹통'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날 오후 국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이 사실이 빠른 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까지도 국정원 핵심 간부는 관련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랬다면 원 원장도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화폐개혁 당일 국회 정보위에 원 원장이 참석했으나 이에 대한 보고나 브리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라인구축 실패 원인을 놓고 원 원장의 조직·인사 개편이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북 정보수집과 해외 경제정보수집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 게 대북 정보 채널에 큰 구멍을 냈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위한 국정원 업무를 하는 것인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일요서울은 2009년 12월 20일자(제816호) 2~3면 「대북 정보 먹통 "대한 민국이 위험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인사' 등의 익명의 출처를 사용, 국정원 인사 내용 및 對北 정보 역량 등에 대해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정보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야당과 진보·좌파 인사들의 동향 감시를 위해 대북 전문요원들을 투입하고 있다"거나 "고위급 간부들이 국가적인 중대사안보다 정치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혈안이 돼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맞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기사에 언급된 인적청산이나 정치동향 파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나 북한 화폐개혁 때 국정원의 정보파악 여부에 대한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잦은 인사로 대북정보 채널에 큰 구멍이 난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편집, 보도함으로써 국정원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20일자(816호) 2~3면 『대북정보 먹통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국정원은 야당 및 진보·좌파 인사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대북 전문요원들을 투입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 고위급 간부들이 국가적인 중대사안보다 정치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국정원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맞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나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819호 2면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은 〈일요서울〉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서울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가 방과 후 학교의 강사를 알선하면서 강사비를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 (회장 한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 『못 믿을 전기제품 인증제』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6일 21:40)

내 용 : 방과후 학교 강사를 일선 학교에 알선해 주는 사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강사들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많게는 월급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 봤습니다.

▷이○○(방과후 학교 수강 학생) : "학교 끝나고 놀 수 있지만 짬짬이 시간 내서 피아노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보람있는 일 같아요."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학부모들에게 방과후 학교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학부모) : "일단 학원에 다니면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서 많은 위험도 있는데 학교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나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에 불법 알선업체들이 끼어들면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략)

취재파일은 연합회 산하 지회와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맺은 계약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강사는 연합회가 추천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독립할 수 없으며, 위약시 연합회의 추천으로 채용된 학교 전부를 출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지회의 계약서. 방과후 학교 강사료와 재료비를 연합회가 관리하며, 강사는 강사료 입금 통장의 금액을 연합회의 허락없이 인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과후 강사'는 봉?" 정정보도문(또는 "'방과후 강사'는 봉?"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6일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에서 "사단법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가 방과후 학교의 중간 강사알선 명목으로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임이 확인돼 해당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방과후교육연합회, "강사 송출 목적 업체 아니다"
• 내 용 : 지난 12월 6일 방송한 〈취재파일 4321〉의 「'방과후 강사'는 봉?」 보도와 관련하여 사단

법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는, 자신들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을 위해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로 강사만 알선하는 송출업체와는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KBS-1TV의 〈KBS 뉴스〉 프로그램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금전배상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KBS 뉴스」 프로그램 『방과후교육연합회 "강사 송출 목적업체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30일 09: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몸 속에 수술바늘을 넣고 봉합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은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환자 몸 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사건사고면)

내 용 : 환자의 몸 속에 수술바늘을 넣고 봉합해 상해를 입힌 은병원 병원장이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08년 12월 광주시 소재 은병원에서 고소인 박모(여·51) 씨를 상대로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하면서 약 5cm 가량의 수술 바늘을 뱃속에 넣어둔 채로 봉합해 해당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은병원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환자 몸 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6일자 사건사고면에 "환자 몸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병원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병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또한 혐의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레이저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라는 문구와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는 문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몸 속에 수술바늘을 넣고 봉합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Ⅱ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3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은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버 : 『환자 몸 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기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네이버(www.naver.com)〉의 검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몸 속에 수술바늘을 넣고 봉합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Ⅲ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4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은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네이트 : 『환자 몸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7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몸 속에 수술바늘을 넣고 봉합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Ⅳ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5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은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다 음 : 『환자 몸 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처리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몸속에 수술바늘을 넣고 봉합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Ⅴ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6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은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야 후 : 『환자 몸 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6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은 ○ ○
조정대리인 손 ○ ○
피신청인 :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9 JS타워 10층
대표이사 김 대 선
주 문 : 1. 피신청인은 1월 10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야후(kr.yahoo.com)〉의 검색대상에서 본건 기사를 제외하여 조정대상기사가 더 이상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조정결정 이행결과

〈기사삭제〉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몸속에 수술바늘을 넣고 봉합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Ⅵ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7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은 ○ ○
피신청인 :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파 란 : 『환자 몸 속에 수술바늘 넣고 봉합, 병원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73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삭제〉 □

조산원에서 '역아 돌리기'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산사의 '역아 돌리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을 거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내 용 : 지난 22일 드디어 아내가 몸을 풀었다. 예정일을 넘길 것 같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3일이나 일찍 나온 우리 까꿍이. 여느 남편과 아빠처럼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말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지만, 감회가 조금 다른 건 사실이었다. 아내가 산부인과가 아닌 조산원,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집에서 몸 풀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까닭이었다. (중략)

역아 돌리기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아내는 회사에 있던 내게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 울먹거렸다. 놀란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의사가 말하길 뱃속 까꿍이가 역아니까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본 뒤, 안 돌아가면 수술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중략)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친구 부인이 또 하나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조산원 중에 역아 돌리기로 유명한 조산원이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자신은 시기를 놓쳐 역아를 돌리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많은 산모들이 역아를 돌리기 위해 그 조산사를 찾아 안산에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까꿍이 출산기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까꿍이 출산기"의 제목으로 조산사의 불법의료 행위(초음파 검사, 역아 외회전술, 회음절개술)를 정당한 의료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기사 내용 중 초음파검사, 역아 외회전술과 회음절개술은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행위이며 잘못된 의료정보의 전달로 인해 국민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충분한 심의와 자문을 거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주)오마이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5
대표이사 오 연 호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별지 목록과 같음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6일자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을 거야"』 제하의 기사에서 조산원에서 뱃속에 거꾸로 서 있는 태아를 손으로 돌리는 역아 회전술을 받았다는 등의 기자의 개인적 경험담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산사의 역아 회전술과 초음파검사, 회음절개술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잘못된 의료정보를 전달하여 국민 보건과 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언급되거나 거명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을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조산원에서 역아 회전술 등을 실시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4.

〈별 지〉

신청취지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조산원에서 '역아 돌리기'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산사의 '역아 돌리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7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네이버 :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을 거야"』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09년 12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9서울조정878의 결정문 참조〉 □

조산원에서 '역아 돌리기'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산사의 '역아 돌리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네이트 :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을 거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9서울조정878의 결정문 참조〉 □

조산원에서 '역아 돌리기'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산사의 '역아 돌리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다 음 :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을 거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9서울조정878의 결정문 참조〉 □

조산원에서 '역아 돌리기'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산사의 '역아 돌리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Ⅴ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드림위즈 :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을 거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9서울조정878의 결정문 참조〉 □

조산원에서 '역아 돌리기'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산사의 '역아 돌리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Ⅵ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야 후 :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을 거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7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87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9서울조정878의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신문사 본연의 업무 아닌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민족의학신문사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의협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의협신문 : 『한의사를 위한 〈해리슨 내과학〉 공동구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7일자 10면)
내 용 : 최근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해리슨 내과학 원론〉(16판 국역본) 공동구매가 한창이다. 창간한 지 20년이 넘은 국내 유력 한의계 전문지 '민족의학신문'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중략)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한의계 전문지의 의도도 확신이 안 간다. 정말 한의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말이다. 이 신문사가 요즘 부쩍 신문사 본연의 업무 이외에 강의사업 등 수익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돌고 있다. 최근 2년도 안 된 사이에 편집국장이 두 명이나 교체됐고, 요 몇달 새 20년여년 간 이 신문사에 재직했던 베테랑 기자 2명과 7년 넘게 보험영역을 커버하던 기자 1명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직하면서 이전에 이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문지다운 전문성도 눈에 띄게 희색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의협신문은 지난 12월 7일자 10면 기자수첩에서 "20여년 간 이 신문사에 재직했던 베테랑 기자 2명과 7년 넘게 보험영역을 커버하던 기자 1명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직하면서"라고 보도했는데, 민족의학신문엔 20년 넘게 근무했던 기자가 없을 뿐더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간 기자는 1명에 불과하며 보험영역을 커버한 기자 역시 7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바로 잡으며 또한 "이 신문사가 요즘 부쩍 신문사 본연의 업무 이외에 강의사업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민족의학신문의 수익사업 활동은 여타 언론사들과 비교해 오히려 뒤떨어지는 만큼 본의 아니게 민족의학신문에 누를 끼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이고, 신청인 측 퇴직 기자를 취재원으로 작성한 보도이므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 이에 반론을 게재할 수 없음. □

신청인 회사가 신문사 본연의 업무 아닌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민족의학신문사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인터넷의협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인터넷의협신문 : 『한의사를 위한 〈해리슨 내과학〉 공동구매?』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7일자 사회칼럼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8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8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원

피신청인 주장

〈2009서울조정884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사용량 만큼 난방비를 내도록 하는 온수 조절 시스템이 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없으며, 이는 불량 조절밸브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장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1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난방비 솔솔』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14일 21:00)

제 목 : 비용 줄이려고 일부러 난방 장치 꺼두는 분들 많으시죠. 효과가 별로 없다는데,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난방온수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내도록 돼 있는 이 아파트는 난방을 켜는 만큼 난방온수 사용량이 조절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중략)

▷산업대학교 교수 : "절약하려고 다 끄고 하나만 켰는데도 전체 유량이 흐르니까…난방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거지요."

난방용 온수가 이처럼 낭비되는 이유는 온수 사용량을 자동 조절하도록 돼 있는 '조절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2009년 12월 14일 은준수 기자가 보도한 지역난방의 난방온수를 사용하는 세대에서 난방을 켜는 만큼 사용량이 조절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각 방의 조절밸브를 잠궈도 난방온수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아 난방비 절감이 되지않고, 난방온수 사용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밸브가 사용된 것은 건설사가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로 이를 사용하는 지역난방 사용자들의 오해를 일으킨 점은 사과드리며, 업계 관계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지역난방의 경우 전체 세대에 유량밸런싱을 위해 세대입구 계량기 전단에 정유량밸브가 부착이 되는데 이러한 밸브가 설치된 경우 각방의 밸브를 전부 열거나 하나만 열거나 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일정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방의 난방을 잠그고 필요한 방만 난방을 하는 경우 그 방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므로 전체 방을 난방하는 경우에 비해 난방시간이 절감되어 결국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동안에 전체 방을 난방하는 경우 한 방만을 난방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되는 물온도가 낮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전체난방을 하는 세대에 비해 적은 열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같은 경우 지금의 유량계 방식에서는 다소 불리한 경우가 있고, 2009년 10월 이후에 적용하는 지역난방 세대의 경우 열량계방식으로 채택되므로 이러한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취하 후 보도문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한겨울 난방 이렇게 절약하세요!』 제하의 보도 (2010년 1월 8일 21:00)

내 용 : 강추위 속에 난방비가 부담되는 분들 많으시죠. 한 나절 정도 집을 비우는 거라면 난방을 완전히 끄지 않는 게 이익이라고 합니다. 난방을 하지 않고는 잠자기 힘든 한겨울. 난방비 부담에 낮이면 가급적 난방을 꺼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공○○(가정주부) : "아침에 아이들 학교 다 가거나 그러면 껐다가 저녁에 오후 해 떨어지면 다시 켜고 그런 식으로 쓰지요."

하지만 요즘같은 혹한기에는 아예 끄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난방을 해 주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지역난방을 쓰는 한 아파트에서 실험해본 결과 10시간 동안 난방을 끈 뒤 실내 온도를 23도까지 다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난방 온수는 68리터. 하지만 난방을 끄지 않고 설정온도만 2도 정도 낮춰둘 경우는 66리터만 들어갑니다. 실내온도를 23도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난방공사 : "난방비를 크게 더 내지 않으면서도 난방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난방을 유지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이슬맺힘 현상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도배지의 수명도 늘어나는 부수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

에도 해가 진 뒤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난방비를 30%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연대 교수) : "유리창을 통해 야간에 손실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베란다 등 난방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찬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실문을 잘 닫기만해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

벤처기업 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벤처 性 접대 '나이트 리포트'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7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5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벤처기업 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경닷컴 : 『벤처 性 접대 '나이트 리포트'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9서울조정85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경닷컴 : 『[바로잡습니다] 벤처기업 性접대 리스트 관련』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31일자 뉴스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벤처기업 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Ⅴ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인터넷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터넷머니투데이 : 『벤처기업 성접대 '나이트 리포트' 공개』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인터넷머니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벤처기업 성접대 리스트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벤처기업 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성접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Ⅵ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조선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닷컴 : 『공무원 성접대 '나이트 리포트' 파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조선닷컴 : 『[바로잡습니다] 벤처기업 성접대 리스트 관련』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6일자 종합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벤처기업 대표인 신청인이 공무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후 성접대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Ⅷ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프레시안 : 『검찰, 벤처기업 성접대 리스트 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5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프레시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57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부정적인 보도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모습이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아이 맡길 데가 없어요"』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20일 21:00)
내 용 :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일수록 부모들의 고민이 커진다는 얘긴데 이래서야 저출산 문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40명 넘게 돌보던 이 어린이집은 다음달 문을 닫습니다. 재개발을 이유로 폐원 신고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문을 닫기에 앞서 모든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학부모회 일부 임원에게만 먼저 통보했습니다.

▷어린이집 직원(음성변조) : "연말하고 12월 중순쯤에 원장님께서 학부모 총회, 총회를 하셔 가지고 (폐원 고지를) 할 건지…"

권○○ 씨는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갑작스레 문을 닫게 되자,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딸을 맡길 만한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폐원 피해 학부모) : "그렇게 다시 옮겨서 저도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아침 일찍 와서 두시 반까지 밖에 안 봐주기 때문에…"

지난해 299군데 보육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인 보육시설이 149곳, 가정 보육시설이 126곳으로 민간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12군데만 폐원했습니다. 국공립은 폐원 절차가 까다

롭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물론, 폐원을 신고할 때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전원계획을 제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 : "유예기간을 두고서 부모님들이 다른 보육시설을 알아보게 하거나 폐원을 할 때 주변의 다른 보육시설을 안내해 준다거나…"

정부는 지난해 민간 보육시설에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지원액을 늘리고는 있지만 문닫는 어린이집이 많아, 서민층 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

신청인 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검찰 수사계획을 사전에 유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내사』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5일자 A1면)
내 용 :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파악돼 검찰이 수사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공노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1일 오전 6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부 및 서울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주요 서류와 컴퓨터는 물론 홈페이지 및 e메일 데이터 등이 담긴 캐비닛 형태의 서버를 미리 치운 상태였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전공노 전산 담당자가 수사관들이 모두 돌아간 것으로 착각해 서버를 사무실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붙잡아 조사한 끝에 숨겨둔 서버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전공노가 미리 압수수색 정보를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법원 관계자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사실을 전공노 측에 알려줬거나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보안이 샜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3명을 불러 조사했다.

(2)『검찰 수사계획을 노조에 빼돌리는 '두더지들'』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5일자 A39면)
내 용 : 법원의 재판 전산망에 들어있는 검찰 수사정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넘겨진 일이 또 발생했다. 최근 경찰이 전공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된 흔적이 나타났으며, 철도노조 파업 중에도 핵심 간부들이 체포계획을 미리 알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노조가 수사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작년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5일자 1면에서 「전공노 압수수색 정보 사전유출 내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A39면 사설에서 「검찰 수사계획을 노조에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제목으로 법원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사는 출처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 □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사설학원에서 수년간 고액강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낮엔 교수, 밤엔 학원강사』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8일자 1면)

내 용 : 학원강의를 포함한 과외교습이 허용되지 않는 국공립대 교수가 수년 간 사설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무와 금융,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사설학원에 따르면 충남대 A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학원에서 A 교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Financial Risk Management)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신용리스크(Credit Risk)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중략)

A 교수는 이 학원에서 FRM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정규과정을 비롯해 시험응시자를 위한 핵심체크 및 문제풀이반 과정 등에서 신용리스크 분야를 맡아 수강생들을 가르쳐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수의 불법 학원강의'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충청투데이는 지난 9월 28일자 신문 1면에 "낮엔 교수, 밤엔 학원강사"라는 제목으로 충남대 A 교수가 서울 사설학원에서 수년 간 고액강의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A 교수가 강의한 시설은 사설학원이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이며, 불법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오보로 A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교수 불법 학원강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28일자 1면 『낮엔 교수, 밤엔 학원강사』 제하의 기사에서 충남대 A 교수가 서울 사설학원에서 수년 간 고액 강의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교수가 강의한 시설은 사설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A 교수는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강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로 A 교수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에 2010년 1월 8일까지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교수 불법 학원강의' 관련 정정보도문)는 충청투데이가 통상적으로 싣는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문제를 상호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교수 불법 학원강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전시티즌이 육성 중인 유소년 축구 클럽운영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대전시티즌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충청시대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시대 : 『대전시티즌 유소년클럽 시스템 '엉망'』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1면)
내　　용 : 대전시티즌이 육성하고 있는 유소년클럽 지도자들이 음주 후 자정이 넘어 숙소 방문으로 인한 물의를 빚은 것과 구타사건 발생 및 후임 지도자 선임없이 U18세 감독의 계약 만료로 인한 해임결정 등에 따른 지도자 공백이 우려되면서 유소년클럽 운영에 각종 문제가 들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28일 자정이 넘은 시간 U15세 지도자들이 음주 후에 U18세 선수 숙소를 방문해 취침을 방해한 것과 29일에는 U15 코치가 U18세 선수 숙소를 찾아와 선수들을 단체로 모여 놓고 특정 선수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라는 추궁과 함께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편파 오류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6일자 종합 1면에 『대전시티즌 유소년 클럽 시스템 '엉망'』이라는 제목으로 흡연 학생에 대한 구타사건과 감독 교체에 관한 학부모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흡연학생 체벌에 관한 내용 중, "U15 코치의 집요한 추궁과 당시 분위기와 구타가 무서워 거짓으로 담배를 피었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은 진술서와 제3자를 통한 사실 확인 결과 다른 내용으로 밝혀졌으며 편파적인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대전시티즌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16일자 1면 『대전시티즌 유소년 클럽 시스템 '엉망'』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전시티즌 측은 U18세 감독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감독선임 및 계약 체결 권리는 구단에 있으며, 감독의 계약기간이 적법하게 만료된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계훈련과 관련해 학부모와 구단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어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기계공고 축구클럽 선정 및 운영협약서에 관한 학

부모 입장 및 요구사항" 문건과 관련해 구단에서는 직접적으로 위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구단 관계자가 구두로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시대에 2010년 1월 8일까지 2면 우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대전시티즌 관련 반론보도문)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U15세 지도자 음주…)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시대 : 『대전시티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전시티즌의 유소년 축구클럽 지원비 집행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조정34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대전시티즌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충청시대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시대 : 『유소년 클럽 지원비 사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8일자 1면)

내 용 : 대전시티즌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클럽의 지원금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주)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주최단체에 유소년 육성, 경기력 향상 등에 배분, 지원되어 국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쓰이고 있다. 대전시티즌 역시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2009년에는 5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대전시티즌 산하 유소년 축구클럽운영(U12, U15, U18)에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에는 지원받은 금액이 부족해 대략 1억5,000만 원을 구단의 재정에서 추가 지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대전 시티즌 관계자도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큰 돈의 집행 규모 및 세부 항목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대전 시티즌 측만 알고 있으면서 외부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편과 오류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8일자 종합 1면을 통해 『유소년 클럽 지원비 사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유소년 지원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 파악 없이 편파 보도를 하였습니다.

첫째, 보도내용 중 "대전시티즌 이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알려주지 않고 있고 지원받는 학교 및 학부형은 물론이며 대전시 실무담당자까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구단과 市 실무담당자는 사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의견을 전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구단 측은 이사진에게 유소년 클럽 지원비 사용 내역을 상법과 정관에 따라 결산 시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대전시티즌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18일자 1면 『유소년 클럽 지원비 사용 '의혹'』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전시티즌은 다음과 같이 반론해왔습니다.

첫째, 보도내용 중 "대전시티즌 이사들의 요구에

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알려주지 않고 있고 지원받는 학교 및 학부형은 물론이며 대전시 실무 담당자까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는 내용과 관련해, 언론과 학부모 및 학교 측에 기금사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그러한 취지를 구단과 시 담당자가 교환하였으며, 구단은 이사진에게 유소년 클럽 지원비 사용 내역을 상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하고 있고, 이는 적법한 회계처리입니다.

둘째, 지원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해 대전시티즌 관계자가 무책임한 답변을 했으며, 집행총액의 큰 항목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단이 구체적인 항목까지 언론 등에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 확인이 안된 추 측성 과장보도입니다.

셋째, "실제로 U18세 학부모들은 협약체결 이전과 이후의 부담비용은 매월 6~7만 원 절감은 있으나 최근 지도자 해임과 같은 독선적인 행위 및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상업적 접근으로 인한 선수들의 고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대전시티즌 구단 측이 식사 및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후원하고 있어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시대에 2010년 1월 8일까지 2면 우 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대전시티즌 관련 반론보도문)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관계자 "집행 규모…)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시대 : 『대전시티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강북구청장 부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경작시키면서, 관련 사항을 작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강북구청 (구청장 김 현 풍)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4.
처리결과 :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MBC-TV :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제하의 보도 (2009년 11월 23일 21:00)

내 용 : ▷앵커 : 구청예산으로 고용된 인부들이 밭을 갈았고, 누구 밭인지 취재해 봤더니 다름 아닌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청 얘기인데요,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구청장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마을, 인부들이 쟁기와 곡괭이 등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켠에 쌓여있는 퇴비를 밭에 골고루 뿌리기도 합니다.

▷작업인부 : "호박에서부터 오이, 고추, 토마토, 가지, 그리고 그 외에 무, 배추 이런 작업을…" (중략)

▷기자 : 오늘 열린 강북구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김현풍 구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켰다는 사람은 없는데 공공근로자들이 구청장 부인 밭일을 해주는 이상한 일이 서울 강북구청에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3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강북구청장 부인 명의의 밭을 공공근로

를 동원하여 경작시켰고, 의정부를 다녀왔다는 기재가 작업일지 및 구청 차량운행일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보도된 토지의 용도는 밭이 아니고, 강북 구청장이 배우자의 토지를 강북구청의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어 현재에도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청의 양묘장이며, ② 강북구청장이 공공근로를 시켜 밭 경작을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③ 작업일지 및 구청 차량운행일지 어디에도 의정부를 다녀왔다는 기재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구청장 김 현 풍
대리인 홍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의 보도문을 2010년 1월 2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보도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2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 홈페이지(www.imbc.co.kr)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별지]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 줄간격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항들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5.

〈별 지〉

• 제 목 :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11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 제하의 보도에서 '강북구청은 공공근로를 동원해 의정부에 소재한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을 경작하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땅은 김현풍 구청장이 강북구에 양묘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빌려준 땅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강북구청은 2009년 9월 3일자 작업일지 및 구청차량 운행일지는 없으나 그 외 다른 날짜에는 의정부 양묘장을 다녀왔다는 기재가 있으며, 구청장의 지시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정부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0년 7월 6일 21:00)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간에는 유치인들이 누워있지 못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수사부장의 지시였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무조건 앉혀라!"』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23일 21:00)
내 용 : 서울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용의자들을 낮에는 눕지 못하게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유치장을 둘러봤습니다. 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유치인들이 왜 누워 있나, 낮에는 앉아 있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누우면 안된다?』 제하의 보도 (2009년 12월 24일 06:00)
내 용 :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경찰청 "유치인 무조건 앉혀라!"」 및 "'유치장 무조건 앉아 있으라' … 인권침해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MBC에서는 지난 12월 2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서울경찰청 "유치인 무조건 앉혀라!"」, 12월 24일자 뉴스투데이에서 "'유치장 무조건 앉아 있으라'…인권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유치장을 둘러봤습니다. 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유치인들이 왜 누워 있나, 낮에는 앉아 있게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장 내 질서유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일과시간 내에 유치인을 누워있지 못하게 지시한 것으로 무조건 유치인을 앉아 있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더욱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 유치장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부장이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자 청장 조 현 오
조정대리인 반 ○ ○
피신청인 : (주)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송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MBC-TV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중에 각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1.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23일자 〈뉴스데스크〉 「"무조건 앉혀라!"」 및 12월 24일자 〈뉴스투데이〉 「누우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 탈주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시내 일선 경

찰서 유치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유치인들이 왜 누워 있나, 낮에는 앉아 있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장 내 질서유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일과시간 동안 유치인을 누워있지 못하게 지시한 것으로, 무조건 유치인을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주상용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 유치장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부장이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간에는 유치인들이 누워있지 못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수사부장의 지시였다 Ⅱ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imbc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8.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imbc : 『서울경찰청 "유치인 무조건 앉혀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9서울조정895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참조〉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간에는 유치인들이 누워있지 못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수사부장의 지시였다 Ⅲ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네이버 : 『서울경찰청 "유치인 무조건 앉혀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간에는 유치인들이 누워있지 못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수사부장의 지시였다 Ⅳ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주 상 용)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다 음 : 『서울경찰청 "유치인 무조건 앉혀라!"』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노조 파업발생 50여일 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계획을 세워 파업을 유도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Ⅰ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 준 영)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경향신문 :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6일자 1면)
내 용 :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발생 50여일 전인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당시 노조의 향후 대응 방향을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예상1)와 '파업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 (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협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16일자 종합면(1면)에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이라는 제목과 ["노조 산발투쟁 계속 땐 단협 해지로 압박" 사전 시나리오]라는 부제로, 한국철도공사가 「단협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 종합면(3면)에 ['단협 해지→파업, 복귀→중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이라는 제목과 [교섭 결렬 직후 노사팀장 회의 문건서 드러나, 쟁의 찬반투표 전 노조원 일대일 설득 강요도]라는 부제로, 「공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깊

숙이 개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태업과 파업에도 불구하고 단협 갱신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며 11월 12일부터 특별교섭팀을 구성하여 집중(최종)교섭을 전개하였으나, 반면 철도노조는 집중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11. 18.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11. 26. 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실제 11. 21.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11. 26. 파업 돌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조합들에게 11. 28.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파업 직전인 11. 24. 노사간 최종 입장 조율을 위한 집중교섭이 있었으나 철도노조는 11. 26.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핵심 현안의 관철만을 고수하므로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단협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단협 해지에 이른 것이고, 보도에서 지적된 담당과장 등 노조가입자(186명)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가입 범위에서 벗어난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 본분을 소홀히 하여 혼란을 초래한 직원들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모색한 것인 바, 「단협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직원 설득은 이미 여러 차례의 불법 태업과 불법 파업을 지속한 상태에서 또 다시 불합리한 투쟁에 나아가지 않도록 직원들을 설득하도록 독려한 것으로서 [쟁의 찬반투표 전 노조원 일대일 설득 강요도]「공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보인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89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허 준 영
조정대리인 법무팀장 변호사 고 ○ ○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 영 승
조정대리인 사회부 차장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알려왔습니다' 활자체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통상적인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청구, 손해배상청구와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0.

〈별 지〉

보도문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6일자 1면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기사와 관련, 공사의 단협 해지는 노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단체협약 상 과장급 이상 직원은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직을 변경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노조 파업발생 50여일 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계획을 세워 파업을 유도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0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 준 영)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동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1)『"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1면)
내 용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중인 노조에 '파업철회-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의혹(경향신문 12월 16일자 1·3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후략)

(2)『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17일자 31면)
내 용 : 한국철도공사의 노조 파업 유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입수한 공사의 대외비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공사는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단협 해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공사가 파업 철회와 함께 노사 교섭 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의 제동으로 철회했다는 노조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2009년 12월 17일자 종합면(1면)에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라는 제목과 [노조 "사 측, 제안 하루만에 철회"… 민주. 민노당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부제로, 「"지난 1일 밤 10시 50분 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은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섭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1일 한국철도공사의 노사관련 담당업무책임자가 노조 집행부의 한 간부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의 내용은 "파업을 철회하는 시점에 대화를 하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당시 철도노조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한 지난 2일 노조 집행부의 다른 간부와 통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더 이상의 답변이 없어 "그렇다면 그만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종료한 것으로써, 철도노조 간부와의 대화에서 청와대를 거론한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0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허 준 영
조정대리인 법무팀장 변호사 고 ○ ○
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 영 승
조정대리인 사회부 차장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체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통상적인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항 경우, 본건과 관련한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0.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해 12월 17일 1면 '철도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기사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노무관계자가 노조 간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를 특정해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철도공사는 공사 측이 파업 대책을 주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2월 9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 참조〉 □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0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왜냐면]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1일자 29면)

내 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을 경우, 종전에는 차명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자신이 명의를 도용했거나 차명했음을 밝히고, 돈을 찾아가면 차명임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명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10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언니가 김씨 명의로 은행에 거액을 예금하면서 금융재산 과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당하고, 의료급여도 끊겨 강제퇴원을 당해 이 엄동설한에 불쌍한 환자가 거리에 나앉을 지경에 이르렀

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김씨를 부정수급자로 몰아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토해 내라고 하고 있다.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빈곤문제연구소 상담원은 동사무소-해운대구청-부산시-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자에게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단지 전산상으로 김씨 명의의 금융재산이 발견된 사실만으로 수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니,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그동안만이라도 급여를 끊지 말아 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든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받는다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고 매정하게 김씨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끊었다. 10월 13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수사를 해운대경찰서 경제2팀의 진 경사에게 맡겼다. 진 경사는 "관련자들과 통화해 보니 김씨 네 가족의 돈이더라. 이 사안은 경찰 업무가 아니라 복지 업무이다"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담당 복지사는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를 재개할 수 없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21일자 사회면 "왜냐면" 이라는 지면에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라는 제목으로 올해 10월 13일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명의로 권익위원회에 인터넷으로 기초수급자가 수급이 끊긴 내용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 수사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한겨레 신문에 "해운대경찰서 경제2팀의 진경사 수사도 하지않은 채 부정수급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여 기초수급을 재개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투고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위 기초 수급자 관련 경찰에서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허위내용을 투고했기에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겨레 : 『"신문고 민원 수사 최선을 다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29면)

내 용 : 〈한겨레〉는 2009년 12월 21일치 29면 왜냐면에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라는 제목 아래 "해운대 경찰서 경제2팀의 진 경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여 부정수급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기초수급을 재개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서 담당 사회복지사 및 기초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하여 수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가족과 빈곤문제연구소에 2회에 걸쳐 답변해주고 사건을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수급자의 급여 수급 역시 수사 개시 이전에 이미 끊겼으며,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부정수급자라는 누명을 씌운 것처럼 표현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힙니다. □

경찰관 신분인 신청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민원은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0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왜냐면]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1일자 2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0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한겨레 : 『"신문고 민원 수사 최선을 다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월 14일자 2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01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김포시 보디빌딩협회 회장으로부터 선수보조금 횡령에 관한 제보를 듣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9경기조정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12.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부일보 : 『김포시 보디빌딩협 '선수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12월 25일자 5면)
내 용 : ○…김포시 보디빌딩협회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선수 보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의혹이 제기돼 파문.

더구나 김기환 협회장이 시 해당 부서 과장을 직접 찾아가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과장은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체육계의 총체적인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팽배.

21일 시와 보디빌딩협회에 따르면 시는 도 체전과 국민 생활 대축전 등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훈련비 지급 외에 별도로 식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적게는 선수·임원 1인당 12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

김 회장은 "협회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는 최모 전무가 지난 5월께 광명시에서 치러졌던 도협회장단 대회에서 실제 참가인원은 4명인데도 3명을 더 부풀려 7명을 시에 보고한 뒤 84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포시 해당 부서과장 보도 내용과 달라.(김포시 보디빌딩협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25일자 사회면(5면) "김포시 보디빌딩협 '선수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김기환 협회장이 해당 부서과장을 직접 만나 내부비리의혹을 제기했으나 과장은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부서장은 담당 실무자에게 보디빌딩 협회장이 제보한 내용에 표시까지 하며 조속히 조사토록 지시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언론중재신청사례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95년 사망한 故 김성재(가수)가 자살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1면)
내 용 : 자살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에도 연예인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90년 2월 가수 장덕 씨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95년 11월에는 전성기를 누리던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96년 1월 1일에는 가수 김광석 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듀스 김성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3일자 9면 '연예인 잇단 자살 왜 - 인기 집착·악플 고통이 우울증 키워' 제하의 기사에서 '1990년대에도 연예인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95년 11월에는 전성기를 누리던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듀스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사체 부검 결과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되었고, 문제의 주사바늘 자국과 그 당시 사건 피고인이 동물 마취제 '졸레틸'을 모 동물 병원에서 사간 적이 있으며, 그 피고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날 찾아와 약물을 사간 사실을 숨겨 달라고 했다는 동물 병원장의 자진신고로 타살이라는 의심이 짙어졌었고,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판사는 무기징역을 언도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자살이라고 잘못 보도해 고인에게 불명예를 끼쳤으며 그 유족들에게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정보도 합니다. 또한 유족들은 과거 13년 간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오셨습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는 차후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좀 더 세세한 면까지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면서도 바른 기사를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조 민 제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보도문을 2009년 1월 16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바로잡습니다)은 정정보도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자체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중재대상기사("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본문 하단에 〈별지1〉 기재의 보도문

을 첨부하도록 하되, 자체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1면 상단 및 홈페이지(쿠기뉴스)에 〈별지 2〉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국민일보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8년 10월 3일자 1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하의 기사에서 연예인 자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연예인 자살 주요 일지'라는 표를 게재하며 1990년 이후 자살한 연예인들의 명단을 보도하였는데, 1995년도에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를 이 명단에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인 故 김성재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난 바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故 김성재를 자살한 연예인으로 보도함으로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유족의 정신적 피해가 심대해졌다면서 2008. 12. 24.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 금 10,000,000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384)을 하였으나, 조정 계류 중에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분쟁은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1. 8.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며 신청인이 구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전달했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내용 보도태도, 그리고 조정신청 이후의 적극적인 해결자세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아들인 故 김성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리기만 하면 족하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밝혔다.

판단하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故 김성재의 사인이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의 과다투여로 인한 약물중독때문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사망 당시 故 김성재의 우측 팔목에 다수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됐다는 것과, 당시 유력한 살인용의자가 기소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용의자가 2심과 3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故 김성재의 죽음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한 연예인의 목록에 김성재를 포함한 이 사건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보도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신청인 등 유족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 만큼 피신청인은 그 피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짐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협의사항,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8.

〈별지 1〉

1. 제 목 :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10월 3일자 1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하의 기사에 나타난 표에서 1995년 사망한 듀스 김성재 씨를 자살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예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씨의 죽음과 관련, 타살 가능성이 있어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과 3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가 내려졌으며, 고인의 자살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2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95년 사망한 故 김성재(가수)가 자살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각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8일자 14:22)
내 용 : 〈2009서울중재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중재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화해 결정문

〈2009서울중재1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연합뉴스 : 『故 김성재 母 "아들 명예 되찾고 싶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1일 09:00)
내 용 : 지난 1995년 11월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로 활약하다 솔로로 데뷔한 김성재가 숙소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그 후로 만 13년이 넘게 흘렀지만 고(故) 김성재의 어머니 육○○(63) 씨의 눈에서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풀리지 않은 의문에 속이 타는 데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마다 아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더 가슴이 찢어진다. 지난 해에도 최진실과 안재환 등 연이은 연예인의 충격적인 자살사건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냈다. (중략)

그는 "성재는 절대로 자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사실로 각인되어질까 두려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싹텄다"고 밝혔다. (후략) □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95년 사망한 故 김성재(가수)가 자살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세계일보 : 『연예인 또 자살 '쇼크' 청소년 모방 부추길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9면)
내 용 : 〈2009서울중재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중재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1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95년 사망한 故 김성재(가수)가 자살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Ⅳ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민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민주신문 : 『화려한 유리상자 속 삶 그들은 외롭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2일자 8면)
내 용 : 〈2009서울중재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중재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1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민주신문 : 『가슴에 묻은 아들, 편히 잠들게 해줬으면…』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2일자 15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95년 사망한 故 김성재(가수)가 자살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Ⅴ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브레이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각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브레이크뉴스 : 『최진실 죽음 계기 긴급점검』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8일자 연예면)
내 용 : 〈2009서울중재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중재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중재화해 결정문

〈2009서울중재1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브레이크뉴스 : 『연예인 자살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9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95년 사망한 故 김성재(가수)가 자살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Ⅵ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주간현대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각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주간현대 : 『긴급점검 연예인 왜 자꾸 자살하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2일자 30면)
내 용 : 〈2009서울중재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중재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중재화해 결정문

〈2009서울중재1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주간현대 : 『'듀스' 김성재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31일자 36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불법음원을 사용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지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15.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시사저널 : 『"올챙이들이 모여 뻔뻔한 음저협 횡포 널리 알리겠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0일자 98~9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지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시사저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2
대표이사 신 상 철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보도문을 2009년 2월 1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독자한마당」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정정보도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사람과 사람」면 앞단에 〈별지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제999호 98~99면 「"올챙이들이 모여 뻔뻔한 음저협 횡포 널리 알리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 챙김이(올챙이) 이재범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인터넷카페 등에서 불법음원을 사용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저협이 불법음원 사용을 이유로 청소년들을 고소한 적이 없었다며 2009. 1. 9.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8)을 하였다가 2009년 1월 15일자로 조정신청을 취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1. 15.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정정보도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전달했고, 신청인은 음저협이 불법음원을 사용한 청소년들을 고소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기만 한다면 족하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밝힌 바 있다.

판단하건대, 음저협이 불법음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실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신청인이 당한 피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짐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된 보도문을 당 중재부에 제출하였고, 당 중재부는 제출된 보도문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협의사항,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1〉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시사저널〉 지난 12월 10일자(제999호) 「사람과 사람」면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챙김이(올챙이) 이재범 대표의 인터뷰 기사 중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블로그 등에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고소를 남발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음저협이 직접 혹은 법무법인을 통해 청소년 등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적은 한 건도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시사저널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0일자 7면)
내 용 : 〈결정문 별지 1 내용 참조〉 □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모 씨가 '나라사랑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1.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장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보도문을 2009년 2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부제목('노무현 토론방'도 참여…)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우측 하단에 〈별지2〉 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9년 1월 10일자 1면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으며, 이 단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박대성 씨가 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긴 하였으나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는 동명이인일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과 이 단체는 20~30대 직장 청년들이 정치적 활동 외에 동아리 활동,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건강한 청년단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 2009년 1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0)을 하였다가 2009년 1월 21일 조정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 21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검찰 수사결과를 전재하였으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구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밝혔다.

한편 신청인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나라사랑청년회'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나라사랑청년회'가 20~30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정치활동 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밝히길 원한다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전해왔다.

판단하건대, '나라사랑청년회'에서 활동했던 박

대성 씨는 1969년 1월 13일생으로 30대 초반인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동일인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신청인 또한 자신의 보도에 대해 오보임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사 제목 및 본문을 통해 신청인 단체를 '대선 때 MB 퇴진 운동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해당보도를 접하게 되더라도 신청인 단체를 정치활동에 국한된 단체로 인식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한 신청인 단체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나라사랑청년회'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 하도록 하고, '나라사랑청년회'는 단순한 정치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취지로 반론보도함이 마땅하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당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 하도록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협의사항,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2.

〈별 지1〉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1월 10일자 1면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대선 때 MB 퇴진운동단체인 '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이 단체에서 활동한 박대성 씨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며 미네르바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회원들은 "청년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20~30대 모임이다"고 밝혀 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4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별지1 내용 참조〉 □

신청인이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 및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3.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내일신문 :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 건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3일자 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중재대리인 운하지원팀 시설사무관
박 ○ ○, 팀장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내일신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55
대표이사 장 명 국
중재대리인 정책팀 팀장 장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보도문을 2009년 2월 10일까지(토요일자 발행신문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내일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내일신문의 통상적인 정정 내지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내일신문 종합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2〉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라.

이 유 : 피신청인은 그가 운영하는 내일신문에 2009년 1월 13일자로 게재한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 건설, 국토부 일방적 계획발표〉 제하 기사에서 신청인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지에 경인운하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지 소유권자인 서울시나 환경부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경인운하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환경부, 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경인운하사업 확정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009년 1월 15일에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2)을 하였다.

조정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 23일에 본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화해한 후 〈별지3〉 '중재화해서'를 당 중재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중재부는 당사자의 화해내용과 당사자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3.

〈별 지1〉

• 제 목 : 국토해양부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1월 13일자 1면 "김포매립지에 경인운하 터미널 건설, 국토부 일방적 계획발표, 서울시, 환경부와 협의 없어" 기사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환경부, 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으며, '08년 2월에는 DHV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에 협의 요청하여 서울시는 경인운하사업 확정시 협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내일신문 : 『국토해양부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4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별지1 내용 참조〉 □

동료의사가 개발한 심장질환 관련 수술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신청인이 부작용의 원인은 주입기구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데일리메디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5.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데일리메디 : (1)『○○근 수술법 공론화시킨 건대 심장내과』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일자 뉴스면)

내 용 : [초점 상]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로 통하는 송○○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근래 화두의 정점에 서 있다. 그가 고안한 'CARVAR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이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쟁점은 이 수술법을 신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보험을 적용시킬 것인가 여부. 당사자인 송○○ 교수는 10여 년 이상된 수술 결과물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흉부외과학회 내에서 소위 '안티 송○○'으로 알려진 교수들의 필사적인 반대와 저지가 뒤따르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이와 관련, 금번 송○○ 교수 수술법의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시킨(금년 추계 심장학회서 구연 발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A교수와 과장인 B교수를 어렵게 만나봤다. (중략)

최근 보험 적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 교수의 CARVAR(카바) 수술법에 대해 당사자격인 건대병원 심장내과 A교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0월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송○○ 교수에게서 'CARVAR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을 받은 후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인해 재수술 받은 환자 4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CARVAR 수술의 부작용을 학회에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일이어서 어찌보면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 됐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송○○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위를 해명했다.

실제로 데일리메디가 취재한 결과 그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 A교수는 "CARVAR 수술 후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것은 송 교수가 말했듯이 '폴리스탄 심정지액 주입기구'(이하 폴리스탄) 사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수술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송 교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CARVAR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수술 후 관상동맥이 좁아져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4명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독특한 경험이어서 심장학회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학회에 발표하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 교수 주장대로 폴리스탄을 사용해서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며 "이유는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4명 모두 폴리스탄을 사용했고 폴리스탄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중 부작용을 보인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카바수술법이 더욱 확실한 예측을 위해서는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오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교수의 CARVAR 수술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사망률이 없다는 등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해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A교수는 "카바수술의 경우 수학적 계산과정 없이 정답을 푼 격이어서 일반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송○○ 교수가 계산과정을 풀어줬으면 의문이 많이 풀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심장내과 B교수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그는 "송○○ 교수가 시행하고 있는 CARVAR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폴리스탄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런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2)『부담 커진 건대병원 심장내과 '입장 번복'』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8일자)

내 용 : (전략)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 피력한 A교수. 그는 타 매체(코메디닷컴)에 데일리메디가 자신의 입장을 왜곡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데일리메디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A교수와 이틀 간 접했던 모든 내용, 즉 첫째 날과 달라진 그의 일문일답을 기재한다.[편집자주]

△12월 1일 첫째 날(사안 중 CARVAR 수술 부작용 원인에 관련된 것만 게재)

Q: CARVAR 수술법에 대한 안전성과 논란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술 후,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환자 4명의 사례를 학계에 보고했다. 송○○ 교수는 폴리스탄 심정지액 주입기구(이하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수술한 후 환자 4명에서 관상동맥협착증이 나타나 재수술했다. 이 과정에서 흉부외과 신○○ 교수가 심장내과에 와서 부작용 원인에 대해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말 폴리스탄에 의한 것인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오래 두고 봐야 한다.

Q: 송○○ 교수는 폴리스탄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CARVAR 수술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설명했다.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난 이들 환자 4명은 모두 폴리스탄을 사용한 환자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폴리스탄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부작용 사례가 없는가?

A: 관상동맥협착증이 나타난 4명 환자 모두 송 교수가 말한 것처럼 폴리스탄을 사용한 시기에 수술 받은 것이 맞다. 그리고 아직까지 폴리스탄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는 부작용을 보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Q: 그렇다면 폴리스탄에 의한 부작용으로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

A: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것은 독특한 경험인데 그 원인에 대해 어떤 한 가지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해봐야 하는데 오래 두고 봐야 한다.(장기관찰 필요성 주장)

데일리메디는 이 같은 질의 응답을 통해 송○○ 교수와 A교수 간 공통 분모를 확인했고 확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그 해답을 '폴리스탄'으로 추측했다. 이번 송○○ 교수 CARVAR 수술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인 만큼 독자들에 정확한 문제 원인을 제공하고자 폴리스탄 위주로 내용을 게재했다.

△12월 2일 둘째 날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기자는 오전 A교수로부터 "추가 설명할 게 있으니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날 오후 늦게 만난 A교수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나갔으니 수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하면서 CARVAR 수술 부작용 원인에 대해 전날 설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소개했다.

Q: 보도된 기사에 대해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가?

A: CARVAR 수술 후 발생하는 관상동맥 협착이 모두 폴리스탄 카테터(폴리스탄)에 의한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번 심장학회에 발표한 내용도 혈관 내 초음파 소견을 근거로 과도한 이물질에 대한 염증반응 등 관상동맥 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문제로 협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즉,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 맞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모두 삭제해야 하며, 폴리스탄 이외 또 다른 기전에 의한 협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전 날 말했던 입장과 180도 달라진 표현. 그날 A교수는 외부 압박 가능성은 제기하지 않음)

Q: 그럼 송○○ 교수가 말한 것처럼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A: 모두(부작용 4건) 폴리스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매우 전문적인 얘기라서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관상동맥협착증 부작용을 보인 4명 환자 모두 폴리스탄처럼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눌린 관상동맥 압박소견'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서 중요한 것은 A교수가 첫 날에는 전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음 날 기사가 나간 후 새롭게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현재 의료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두 번에 걸쳐, 특히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말이 바뀌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CARVAR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건

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견해, 본보의 보도내용에 오류"

• 내 용 : 본 데일리메디는 지난 12월 2일 『송○○ 수술법 공론화시킨 건대 심장내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가 CARVAR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이 합병증은 폴리스탄 심정지액 주입기구에 의한 것이고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는 이 합병증이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계속 견지해 왔으며 취재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대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정정 요구에 대해 본 매체는 12월 8일 『부담커진 건대병원 심장내과 입장 번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는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으며 잘못 게재된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본 매체는 이 기사들로 인해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는 취재과정에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진의 의견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재화해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의 10
한일빌딩 4층 403호
대표이사 안 순 범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 초기화면 좌측 사고란 맨 상단에 2009년 2월 10일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의 내용이 나오도록 한다.

2. 2009년 2월 11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피신청인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 사고란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3. 2009년 2월 13일 이후부터 중재대상기사 중 2009년 12월 8일자는 삭제한다.

4. 신청인은 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 피신청인 및 취재기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 2009년 12월 2일자 『송○○ 수술법 공론화시킨 건대 심장내과』 제목의 기사 및 동년 12월 8일자 『부담 커진 건대병원 심장내과 입장 번복』 제목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결정사항과 같음.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쌍방 당사자가 화해한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그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6.

〈별 지〉

• 제 목 : CARVAR 수술에 대한 건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견해 관련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보는 지난해 12월 2일자 '송○○ 수술법 공론화시킨 건대 심장내과' 제목의 기사 및 12월 8일자 '부담 커진 건대병원 심장내과 입장 번복' 제목의 기사에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가 CARVAR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부작용에 대해 이 합병증은 폴리스탄 심정지액 주입기구(이하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고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건대병원 심장혈관내과는 이 합병증이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 계속 견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보의 보도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데일리메디 : 『[사고] CARVAR 수술에 대한 건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견해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0일자 사고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수억의 불법자금을 전달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철 국 (국회의원)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5.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박연차 씨가 수억 전달"』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0일자 1면)

내　　용 : 박연차(63·구속)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전달한 단서를 일부 잡은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회장의 자금 수억 원이 민주당 최철국(경남 김해을)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사저(私邸)가 있는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서 17대에 이어 올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민주당 내에서 당(黨)과 노 전 대통령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다.

김해는 박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 본사와 골프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회장을 상대로 최의원 등에게 전달한 자금의 성격을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김해를 기반으로 한 박회장의 사업을 도와 주고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과 함께 정치자금 명목 또는 단순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 정치인이 박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도 잡고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지난 2월 박회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해 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 차용증은 국세청이 올 7월부터 박회장 기업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확보했던 것이다. 국세청은 박회장의 소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농촌환경활동과 관련해 돈을 차용해 갔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박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이 차용증 등 세무조사 자료 일부를 넘기지 않았다가 뒤늦게 검찰에 제출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당 최철국 의원 불법 자금 받은 적 없어 (또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 불법 자금 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30일자 종합 1면에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박연차 씨가 수억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최철국 의원이 박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철국 의원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중재화해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철 국
중재대리인 임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중재대리인 정 ○ ○
결 정 사 항 : 1. 피신청인 조선일보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신청인 최철국 국회의원 관련 피신청인 조선일보 2008년 12월 30일자 및 동년 12월 31일자 기사가 오보로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 지체 없이 정치면의 상단 또는 중단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 및 형태는 피신청인 조선일보 2008년 12월 30일자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검찰, 계좌추적…단서잡아)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오보로 명백히 밝혀지는 시점은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수사 종결 발표 뿐만 아니라 수사기획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의 중간 수사 브리핑도 포함되며, 수사 종결발표 시 또는 중간 브리핑 시 신청인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조선일보 2008년 12월 30일자 A1면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박연차 씨가 수억 전달』 제목의 기사 및 동년 12월 31일자 A1면 『노 전 대통령 박연차 돈거래 추적』 제목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결정사항과 같음.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쌍방 당사자가 화해한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그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6.

〈별 지〉

• 제 목 : 민주당 최철국 의원 불법 자금 받은 적 없어

• 본 문 : 본보는 지난해 12월 30일자 A1면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박연차씨가 수억 전달"』 제목의 기사 및 동년 12월 31일자 A1면 『노 전 대통령-박연차 돈거래 추적』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3일자 A2면)
내 용 : 〈결정문 별지 내용 참조〉 □

KBS-2TV의 사극 '대왕세종'의 일부 내용이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2. 윤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5.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KBS 사극 '대왕세종' 표절논란』 제하

의 기사 (2008년 10월 29일자 1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중재대리인 변호사　구 ○ ○
2. 윤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중재대리인　정 ○ ○
결 정 사 항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일 이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중앙일보 문화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 기사 중 10월 30일자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과 동시에 조인스닷컴(www.joins.com) 사이트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

신청의 표시 : 1. 중앙일보 2008년 10월 29일자 『KBS 사극 '대왕세종' 표절논란』 제목의 기사 및 동년 10월 30일자 『'대왕세종' 표절 쓰나미』 제목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문화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 중 10월 30일자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조인스닷컴(www.joins.com) 사이트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쌍방 당사자가 화해한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그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6.

〈별 지〉

• 제　목 : KBS '대왕세종' 표절 관련 기사 사실과 달라

• 본　문 : 본지는 지난해 10월 29일 "KBS 사극 '대왕세종' 표절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대왕세종'의 윤○○ 작가가 표절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윤○○ 작가는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사실이 없고, 표절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대왕세종' 표절 쓰나미"라는 제목으로 '대왕세종'이 김미숙씨의 '소설 장영실'에서 장영실과 신빈 김씨, 세종의 삼각관계를 허락없이 도용하였고, '대왕세종'의 대표자문을 맡고 있는 문중양 교수가 "대왕세종은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아 역사적으로 틀린 게 엄청나게 많아 곤란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왕세종'에는 장영실과 신빈 김씨, 세종의 삼각관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문 교수는 대표자문이 아닌 7명의 자문

중 한 명으로, 인터뷰의 취지는 "'대왕세종'에서의 일부 픽션은 드라마에서 허용되는 상상력의 범위 내"라는 것이었고, '대왕세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윤○○ 작가와 KBS 측에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KBS '대왕세종' 표절 관련 기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9일자 23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에 위그선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조차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9.
처리결과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경인운하에 검증 안 된 '위그선' 추진』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9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중재대리인 이 ○ ○, 정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이 영 만
중재대리인 김 ○

결 정 사 항 : 1.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 보도문을 2009년 2월 20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 또는 경제면에 제목은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제목 양식의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향닷컴'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조정대상기사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경향신문 2009년 1월 29일자 2면 『경인운하에 검증 안 된 '위그선' 추진』 제하의 기사 및 동년 동월 동일자 17면 『위그선 상용화 국가 없어…경제성 의문』 제하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경향신문 종합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과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의 내용대로 중재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

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9.

〈별 지1〉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본 문 : 2009년 1월 29일자 2면 및 7면 정부가 경인운하에 위그선을 띄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 작업은 위그선 상용화를 위한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따른 것으로 경인운하에 위그선을 띄우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9일자 17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설치한 불량 새시에 대해 교체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건업(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m b n : 「mbn뉴스」 프로그램 (2009년 1월 8일 05:00 및 08:00)
내 용 : 〈2009서울조정3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33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매일경제TV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1
대표이사 장 대 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MBN이 지난 1월 8일 방송한 'LG화학, 불량새시 설치' 보도와 관련해 시공업체는 "해당 제품은 정품으로 설치되었고 중고품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를 이행함에 있어 2009년 2월 19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일경제TV에 17시 및 20시에 방송되는 뉴스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방송하되, 제목(밝혀왔습니다)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의 프로그램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일경제TV 「5시 뉴스」 및 「8시 뉴스」에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일경제TV 2009년 1월 8일자 17시 및 20시의 각 뉴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신청인 회사가 수원의 아

파트 입주공사에서 불량새시를 설치하고도 교체 등을 해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고새시를 사용했다는 제보자의 인터뷰와 함께 흠집난 상태로 설치된 새시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불량새시를 설치한 적은 전혀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불량새시라고 보도한 제품은 정품으로서 설치과정에서 훼손이 있었던 것이고 훼손된 부분은 마무리 작업에서 보정하거나 교체를 해주고 있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보도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09년 2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3)을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2월 12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건 신청사건에서 신청인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양을 줄이고 그 표현 수위를 완화하기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도할 문안까지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기사제목, 보도일, 보도횟수, 보도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 양자 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중고품은 있을 수 없다', '부분적인 흠집을 보완하는 컬러펜이나 시트지가 따로 있다'는 신청인 측의 인터뷰를 방송하기는 하였으나, 신청인 측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제보자의 인터뷰는 2회에 걸쳐 방송하고 보도전반에 걸쳐 흠집난 새시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던 것에 반해 신청인 측의 인터뷰는 단 1회에 그쳤으며 그 방송시간도 아주 짧게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임에도 신청인 측의 반론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상호간 협의된 반론보도문을 당 중재부에 제출하였고, 당 중재부는 제출된 보도문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반론보도문을 결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반론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반론보도 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원 중재대상보도가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된 점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횟수는 신청인이 요구한 시간대를 포함하여 2회 이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매일경제TV : 「mbn뉴스」 프로그램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14일 17:00 및 20:00)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Ⅰ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등단 10대 시인 60년 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5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중재대리인 윤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중재대리인 엄 ○ ○
결 정 사 항 : 1. 피신청인은 수정된 중재대상기사(「등단 고교생 시인 탄생」)본문 중 "윤새롬(당시 15세) 양이 2006년 월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나서기도 했다."를 "윤○○(당시 15세) 양이 2006년 월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로 재수정한다.

2.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20일까지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 〈싸이월드〉 등 포털사이트에서 초판 중재대상기사(「최연소 등단 고교생 시인 60년 만에 탄생」) 대신 위 항대로 수정한 기사가 검색되도록 각 포털사이트에 요청한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연합뉴스〉 2009년 2월 5일자 『등단 10대 시인 60년 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과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의 내용대로 중재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6.

〈별 지〉

• 제 목 : 최연소 등단 시인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뉴스에 "등단 10대 시인 60여년 만에 탄생" 이라는 제목으로 만 17세의 고교생 시인 노지연 씨가 정식 등단 절차를 밟은 시인으로는 최연소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정식 등단 절차를 거친 최연소 시인은 만 15세에 등단한 윤○○ 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중재결정 이행결과

연합뉴스 : 『등단 고교생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5일자 15:27)
내 용 : 고양예고 2학년 노지연 '시인세계' 등단
만 17세의 고교생 시인이 탄생했다.

계간 시 전문지 '시인세계'는 제13회 신인작품 공모에서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991년생의 노지연 양이 당선됐다고 5일 밝혔다.

노양은 '세상의 모든 저녁' 등 열두 편의 작품으로 하여진(49) 씨와 함께 공동 당선자로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김종해 시인은 수상작에 대해 "상상

력의 공간이 넓고 언어 운용이 활달하다"며 "우주와 천체의 움직임을 사람의 미각과 결합시켜 저녁 식탁 위에 먹음직스럽게 올려놓은 상상력이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한국 현대 시단에서 고교생으로 등단한 대표적인 시인은 '낙화'의 이형기 시인으로 시인은 진주농림학교 재학 시절인 1949년 만 17세로 '문예'지를 통해 시단에 나왔다.

문단 전체로 보면 아동문학가 고(故) 윤석중이 14세의 나이로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가작 입선한 것이 좀처럼 깨지기 힘든 역대 최연소 기록이다.

이밖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상계'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소설가 황석영 씨,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한 소설가 최인호 씨 등이 대표적인 10대 등단 문사(文士)들이며 최근에는 윤○○(당시 15세) 양이 2006년 월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7.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 『17세 여고생 최연소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3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한국경제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33면)
내 용 : 2009년 2월 6일자 '17세 여고생 최연소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관련, 윤○○ 양(당시 15세)이 2006년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스포츠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7.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스포츠칸 : 『고양예고 노지연 양 최연소 시인 등단』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스포츠칸)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이 영 만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게재하라.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스포츠칸 2월 6일자 23면 '고양예고에 재학중인 노지연(17세) 양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윤○○ 양은 자신이 2006년 15세 나이로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칸 23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스포츠칸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제목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일반기사의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칸 사회면 좌 측 상단에 〈별지〉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및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칸 2009년 2월 6일자 23면에서 '고양예고 노지연 양이 17세로 계간 시 전문지인 〈시인세계〉 신인작품 공모에 당선되어 정식 등단절차를 밟은 시인으로는 1949년 같은 나이에 등단한 고(故) 이형기 시인 이후 60년 만에 최연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6년 7월 〈기다림〉이라는 시집을 발간했고 같은 해 10월 월간지 〈문예사조〉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기에 고(故) 이형기 시인 이후 최초로 등단한 10대 시인은 노지연 양이 아니라 신청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2009년 2월 17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칸 2009년 2월 6일자 23면을 통해 '17세로 등단한 노지연이 고(故) 이형기 시인 이후 최연소 시인이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2006년 7월 시집 〈기다림〉을 발간함과 아울러 동년 10월 월간 〈문예사조〉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신인상을 수상함으로써 신청인은 노지연보다 2세 앞선 15세에 시인으로 등단했음이 확인된 만큼 피신청인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고(故) 이형기 시인 이후 최연소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중재신청 이후 김소연이 2000년에 11세(당시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로 등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신청인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고(故) 이형기 시인 이후 최연소라는 이유로 신청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 언론사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독자들에게 바로 알릴 책임이 있다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반론보도 수준에서 원만히 타협하기로 하고 상호 협의된 보도문을 당 중재부에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상호 간 협의된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재부가 양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대로 보도하도록 결정하여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원 기사의 보도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스포츠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23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7.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고교생 시인 60년 만에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4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17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1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Ⅴ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7.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60년만에 고교생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아시아투데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Ⅵ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7.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매일경제 : 『60년 만에 고교생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매일경제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A3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Ⅶ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8.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 『'고교생 시인' 60년 만에 등단』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6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Ⅷ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8.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60년 만에 최연소 '고교생 시인'』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1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1일자 사회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Ⅸ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8.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서울경제 : 『17세 여고생 시인 탄생 고양예고 노지연 양』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37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서울경제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6일자 37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Ⅹ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8.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 『17세 여고생 시인 나왔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국민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8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교복업체가 판촉 활동을 벌이면서 불량 청소년 및 졸업생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충북중재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 ○ ○
피신청인 : 충청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8.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충청일보 :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3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충북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충북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충북중재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충청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695
대표이사 이 규 택
중재대리인 박 ○ ○
결 정 사 항 : 1. 보도문
• 제 목 :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3일자 사회면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 제하의 기사에서 공주지역 내의 한 교복업체 W대표가 불량청소년과 학생을 동원해 판촉경쟁을 벌이는 등 비양심적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 중 "영향력있는 학생을 고용해 옷 속 상표를 뒤집는 등 학생을 위협했다"는 부분은 U씨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 실제 피해학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모 의류업체 W대표가 불량청소년을 동원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등 불법적으로 판촉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W대표는 불량청소년 혹은 학교 짱 출신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일보 2009년 2월 27일까지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공주 특정업체…)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충청일보〉 2009년 2월 3일자 사회면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 제하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충청일보 사회3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과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의 내용대로 중재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8.

〈별 지〉

• 제 목 :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3일자 사회면에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판매설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공주지역 내의 한 교복업체 W대표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W씨가 대표로 있는 교복업체에서는 불량청소년을 동원하여 기사내용과 같이 영업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충청일보 : 『불량청소년 동원 교복 판매설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7일자 3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X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0.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60년 만에 17세 시인 탄생』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29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서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5일자 29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만 17세의 고교생이 60년 만에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미 만 15세에 등단한 바 있다 X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12.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세계일보 : 『'17살 고교생' 시인으로 등단』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사람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3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15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6일자 27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피신청인 : 디앤디포커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4.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디앤디포커스 : 『"동맹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한국 못 믿겠다"며 게이츠 미 국방장관, SCM 회의를 보이콧 하려 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호 40~45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4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 방 부
장관 이 상 희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안보정책네트웍스
(디앤디포커스)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35-9
고금빌딩 4층
대표이사 홍 성 민
결 정 사 항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 디앤디포커스 2009년 4월호의 40면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을 상자형태로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40페이지 "게이츠 미 국방장관, SCM회의를 보이콧 하려 했다!"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제 목 : 디앤디포커스 2009년 1월호 "한미동맹 이상기류" 제하의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디앤디포커스 2009년 1월호 "한미동맹 이상기류"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방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디앤디포커스는 2009년 1월호 "한미동맹 이상기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첫째, 美 국방장관이 지

난 제40차 SCM을 보이콧하려 하는 등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美 국방부와 주한 美 대사관, 그리고 주한미군사 관계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美 국방장관은 제40차 SCM을 보이콧하려 한 바 없으며, 게이츠 장관은 한·미동맹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둘째, 한국 국방부 장관이 美側과 사전 조율 없이 「연계전력」 개념을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연계전력」 개념은 이상희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미국에서 먼저 제시한 개념으로 이를 한·미 간 합의하여 2006년 SCM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념은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념이 아닙니다. 셋째, 지난 해 6월 게이츠 美 국방장관의 방한 시 청와대의 초청에 불응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청와대는 당시 게이츠 장관을 초대한 사실이 없으며, 게이츠 장관의 방한은 연합사령관 이·취임식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한 단기 방한으로, 짧은 방한 일정상 청와대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 측은 게이츠 장관을 초청할 계획이 없었으며, 주한 미군사도 당시 청와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넷째,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 인선 시 국방부에 한·미동맹에 정통한 장성을 선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청와대는 동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하지 않았고, 국방부도 청와대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특히 국방비서관은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직책이 아니므로 한·미동맹에 관한 지식이 인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디앤디포커스 2009년 4월호의 목차에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일까지 매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디앤디포커스〉 2009년 1월호 『한미동맹 이상기류-"게이츠 미 국방장관, SCM회의를 보이콧 하려 했다!"』 제하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31일 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 디앤디포커스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과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의 내용대로 중재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정이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5.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디앤디포커스 : 『반론보도문 D&D 포커스 09년 1월호 '한미동맹 이상기류' 제하의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호 47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재단이 대전 유일의 문화재 발굴 기관임을 내세워 학하지구 문화재 발굴 용역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금강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유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5.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문화재 발굴기관 믿는 구석 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2일자 6면)
내 용 : 〈2009대전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대전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대전중재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금강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유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원 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중재대리인 유 ○ ○
결 정 사 항 : 1. 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2일자 사회면 『문화재 발굴기관 믿는 구석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발굴 용역계약 건을 보도하면서 문화재 발굴기관들의 지역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전지역에서는 그동안 P문화재 발굴기관 설립 이전부터 타 지역 발굴기관들이 조사를 주도하여 왔기에 설립된 지 1년에 불과한 P발굴 기관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역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09년 3월 10일까지 사회면 우 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정정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중간제목(대전소재 업체…)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신청인은 이 건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충청투데이〉 2009년 2월 12일자 사회면 『문화재 발굴기관 믿는 구석 있다?』 제하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충청투데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2/3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중재신청사항
신청인은 신청인 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발굴조사 계약을 유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문화재 발굴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지역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중재대상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과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의 내용대로 중재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5.

〈별 지〉

• 제 목 : 문화재 발굴기관 독과점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2일자 사회면에 "문화재 발굴기관 믿는 구석 있다?"라는 제목으로 대전소재 P문화재 발굴기관이 독과점에 '큰소리'를 쳐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의 문화재 발굴기관들이 공공연히 '지역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의 관행

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전지역에서는 그동안 P문화재 발굴기관 설립 이전부터 타 지역 발굴기관들이 조사를 주도하여 왔기에 설립된 지 1년에 불과한 P발굴기관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비용산출 및 계약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전국의 발굴기관들의 지역 제한 없이 타 지역 발굴에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6일자 6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하나은행이 고객 계좌의 돈을 무단으로 입출금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만든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 ○ ○, 김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황당' 은행~ 멋대로 입출금, 고객 연체자 만들어"』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3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 ○ ○, 김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0의 4
영동테크노타워 706호
대표이사 류 태 현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다음날까지 〈별지1〉 기재 사항을 이행하되, 수정된 활자는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와 같게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위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의 웹사이트 메인화면 중앙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중재신청에 대한 결과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1주일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이 사건 기사에서 고객 계좌에 무단으로 돈을 입출금하여 고객을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신청을 하여 이 사건 중재절차가 계속되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3〉 기재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6.

〈별 지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 중 「이처럼 은행이 고객의 통장에 돈을 멋대로 넣은 뒤 다시 인출해 멀쩡한 사람을 연체자로 만든 사례는 처음이다」, 「"기업카드의 연체기록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2개 카드가 모두 연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를 각 삭제하고, 기사 제목을 「"하나은행 때문에 연체자 됐다"」로, 「무단으로」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로, 「63만여 원」을 「61만여 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를 「말했다」로 각 수정한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3〉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 중 「이처럼 은행이 고객의 통장에 돈을 멋대로 넣은 뒤 다시 인출해 멀쩡한 사람을 연체자로 만든 사례는 처음이다」, 「"기업카드의 연체기록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2개 카드가 모두 연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를 각 삭제하고, 기사 제목을 「"하나은행 때문에 연체자 됐다"」로, 「무단으로」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로, 「63만여 원」을 「61만여 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를 「말했다」로 각 수정한다.

2. 피신청인은 위 항을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후 다음날까지 이행하되, 수정된 활자는 원 중재대상기사와 같게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위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황당' 은행~ 멋대로 입출금, 고객 연체자 만들어"』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7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현재의 물 부족사태가 신청인 공사의 무분별한 방류와 무계획적인 관리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체계적인 수계 운영계획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3.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물관리 실패로 바닥보이는 낙동강댐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일자 A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7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1〉기재 보도문을 2009년 3월 31일까지(토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 혹은 사회이슈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알려왔습니다'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라.

2.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선일보 3월 2일자 「물관리 실패로 '바닥' 보이는 낙동강댐들」, 3월 7일자 「유입량과 방류량 조절을 잘못한 것이 관리부실」 제하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정정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기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08면(사회면) 좌 측 상단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기사에서 낙동강 유역 5개 댐의 저수량이 적어 향후 심각한 물 부족이 우려되는데 그 이유는 가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작년에 대부분의 물을 홍수 조절 등의 이유로 방류해 버리는 등 물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따라 이 사건 중재절차가 계속되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 3〉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3.

〈별 지1〉

• 제 목 : 밝혀 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일자 A8면 「물관리 실패로 '바닥' 보이는 낙동강댐들」 기사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5개 댐 유입량의 대부분을 홍수 조절 등의 이유로 방류한 것이 아니라 생활·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했으며, 우기 전까지 물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3〉

• 위 당사자는 2009서울중재29(2009서울중재30사건과 병합) 정정보도 청구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였기에 이 서면을 제출합니다.

• 위 당사자는 중재부에서 내리는 중재결정이 사법적인 최종 판단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알고서 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10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현재의 물 부족사태가 신청인 공사의 무분별한 방류와 무계획적인 관리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체계적인 수계 운영계획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3.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7일자 A2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7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서울중재29의 중재화해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31일자 10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주말 드라마에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3. 2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SBS-TV : 「사랑은 아무나 하나」 프로그램 (2009년 3월 16일 20:50)
내 용 : 〈2009서울조정9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하 금 열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신청인에게 2009년 4월 9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에스비에스(SBS-TV)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하의 드라마에서 신청인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약 2초 간 방영한 바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초상을 촬영한 후 이를 주변에서 식별 가능할 정도로 게재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다 할 것이나, 신청인의 초상이 부정적 맥락에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점,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재된 이 건 보도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중재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내성 발현율이 14.7%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실제 학회장에서는 3.6%로 발표됐다 (기사삭제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광약품 (주)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3.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데일리팜 : 『부광 '레보비르', 환자 14.7%서 내성 발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광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중재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 ○, 허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데일리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7-1
소망B/D 5층
대표이사 민 경 두
중재대리인 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2월 16일자 「부광 '레보비르', 환자 14.7%서 내성 발현」 제하의 기사를 삭제하고, 2월 18일자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에 〈별지 1〉 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구분선을 삽입하고 〈별지 1〉 보도문의 제목 활자 크기·본문 활자 크기·줄간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단, 〈별지 1〉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굵게 처리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가. 별지 2.의 가.항 기재 중재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나. 예비적으로 데일리팜(http://www.dreamdrug.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제목을 조정결정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라.

2. 피신청인은 〈별지 3〉 기재 중재대상기사를 삭제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데일리팜은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신청인이 개발한 '레보비르'의 내성발현율이 14.7%인 것으로 발표됐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따라 이 사건 중재절차가 계속되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 4.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

〈별 지 1〉

• 제 목 : 부광 '레보비르'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아리송한 초

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에서 강북삼성병원의 김홍주 교수가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의 내성 발현율과 관련하여 초록집 자료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김홍주 교수의 해당 연구는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광약품과 무관하며, 연구 과정 및 결과 발표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별 지 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 3〉

2009. 2. 18. 데일리팜 천○○ 기자가 작성한 수첩면 기사

〈별 지 4〉

1.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2월 16일자 「부광 '레보비르', 환자 14.7%서 내성 발현」 제하의 기사를 삭제하고, 2월 18일자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에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구분선을 삽입하고 아래의 보도문의 제목 활자 크기·본문 활자 크기·줄간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단, 아래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굵게 처리한다.

- 아 래 -

• 제 목 : 부광 '레보비르'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에서 강북삼성병원의 김홍주 교수가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의 내성 발현율과 관련하여 초록집 자료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김홍주 교수의 해당 연구는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광약품과 무관하며, 연구 과정 및 결과 발표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데일리팜 : 『부광 '레보비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6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학원이 참여한 SEED(뇌기반인성교육프로그램)가 '두뇌계발을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이사장 권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3.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 『"SEED, 두뇌계발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30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9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이사장 권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조 민 제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1] 보도문을 〈국민일보〉 30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국민일보)의 부제목(동의대사건 전말-재심추진 경위)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항을 이행함과 함께 [별지1] 보도문의 제목을 〈쿠키뉴스〉 초기화면에 12시간 이상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쿠키뉴스)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각 동일하게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운영하는 〈국민일보〉와 〈쿠키뉴스〉에 [별지2] 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및 신청 이유
피신청인 국민일보 주식회사는 국민일보 2009. 3. 16. 30면 「"SEED(뇌기반인성교육프로그램), 두뇌계발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 쿠키뉴스 2009. 3. 16. 10:15 「부산교육청의 SEED 프로그램, 교계 "미신" 반발」 제하의 각 기사에서 '부산교육청이 단월드(단선학원) 연계 기관인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이하 뇌교육대학) 등과 함께 시범운영계획 중인 SEED 프로그램은 풍수지리와 무속신앙 등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미신 프로젝트이고, 이승헌 대선사가 설립한 단월드와 선불교의 산하 조직인 뇌교육대학은 한때 전국 초중고와 공공장소에 단군상을 설치한 기관으로 기를 통해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무작위로 일지 희망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서적을 판매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SEED 프로그램은 체조, 웃음, 음악, 명상 등을 활용하여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풍수지리나 무속신앙의 미신적 요소는 전혀 없고, '일지 희망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관련서적을 판매하거나 기를 통해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한 적이 없고, 뇌교육대학은 단월드와 선불교 산하 조직이 아니며 전국 초중고와 공공장소에 단군상을 설치한 적도 없다면서 2009. 3. 26.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96, 2009서울조정97)을 하였다가 2009년 4월 3일 자로 조정신청을 취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4. 3.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반론보도 형태로 보도하기로 하고 보도할 문안까지 협의 완료하였으나, 보도지면, 보도일, 보도기간 및 보도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피신청인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언론회,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등이 부산시교육청의 SEED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들을 보도하면서 'SEED 프로그램에는 무속적 내용이 없다'는 부산시교육청의 반론을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SEED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신청인 측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할 수 있고, 뇌교육대학이 단월드나 선불교의 산하 조직이라고 단정하여 보도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임에도 신청인 측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부산시교육청의 반론을 신청인 측의 주장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측의 주장은 현저히 부족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내지 반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정정보도 내지 추가적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상호간 협의된 보도문을 당 중재부에 제출하였고, 당 중재부는 제출된 보도문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보도 문안을 결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일간지인 〈국민일보〉의 경우 일간신문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정 및 반론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인 〈쿠키뉴스〉의 경우 초기화면에 12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6.

〈별 지1〉

• 제 목 : "SEED(뇌기반인성교육) 프로그램, 미신 프로젝트 아니다"

• 내 용 : 지난 3월 6일자 '부산교육청이 단월드(단선학원) 연계 기관인 국제 뇌교육대학원대학교 등과 함께 시범운영계획중인 SEED 프로그램은 풍수지리와 무속신앙 등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미신 프로젝트다'는 보도에 대해, 뇌교육대학은 "SEED는 체조, 웃음, 음악, 명상 등을 활용하여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풍수지리나 무속신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뇌교육대학은 '일지 희망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교회 홈페이지 또는 거리 등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련 서적을 판매한 적이 없었으며, 한때 전국 초중고와 공공장소에 단군상을 설치한 기관도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뇌교육대학은 단월드와 선불교 산하 조직이 아니며, 기를 통해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국민일보 : 『"SEED 프로그램, 미신 프로젝트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1일자 2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학원이 참여한 SEED(뇌기반인성교육프로그램)가 '두뇌계발을 빙자한 미신 프로젝트'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이사장 권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3.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쿠키뉴스 : 『부산교육청의 SEED 프로그램, 교계 "미신" 반발』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종교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9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33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쿠키뉴스 : 『"SEED 프로그램, 미신 프로젝트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0일자 종교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부산시가 신청인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뇌교육의 날'을 선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한국뇌과학연구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3.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쿠키뉴스 : 『바문연, "정부차원 뇌교육 검증" 촉구』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6일자 종교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9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한국뇌과학연구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대표이사 조 민 제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바문연, "정부차원…) 본문 하단에 [별지1] 보도문을 첨부하도록 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별지1] 보도문의 제목을 〈쿠키뉴스〉 초기화면에 12시간 이상 게재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쿠키뉴스〉에 [별지2] 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및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인 쿠키뉴스 2009. 3. 16. 16:58「바문연, "정부차원 뇌교육 검증" 촉구」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이하 '바문연')이 뇌교육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검증을 촉구하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취재, 기사화하면서 '부산시가 단월드(단선학원)와 선불교(단군민족종교)의 설립자인 이승헌 대선사의 영향으로 뇌교육의 날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설 기관의 연구에만 의존한 것이 문제이며, 의학전문가들이 뇌파진동 등을 일환으로 하는 SEED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선불교의 설립자는 이승헌이 아니라 손정은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부산시는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뇌교육의 날'을 지정하였고 SEED 프로그램은 체조, 웃음, 음악, 명상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3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98)을 하였다가 2009년 4월 3일자로 조정신청을 취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4월 3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이승헌이 선불교의 설립자인지에 대한 정정여부와 보도일, 보도기간, 보도위치 및 보도방법 등의 구체적인 보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이 관련되어 있는 '뇌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문연의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의 입장 내지 주장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기에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게 반론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선불교의 설립자가 손정은임에도 이승헌이 선불교의 설립자라고 잘못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중재부는 '이승헌이 선불교의 설립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부분 정정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 협의된 문안대로 반론보도하도록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그 게재기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6.

〈별 지1〉

• 제 목 : "'뇌교육의 날' 지정, 적절한 절차 거쳐"
• 내 용 : 본보는 지난달 16일 "부산시가 단월드(단학선원)와 선불교(단군민족종교)의 설립자인 이승헌 대선사의 영향으로 뇌교육의 날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설기관의 연구에만 의존했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는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뇌과학연구원은 "부산시는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미국 뉴욕시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뇌교육의 날'을 지정하였던 것이다"며 바문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연구원 측은 "SEED 프로그램은 체조, 웃음, 음악, 명상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랜 기간 과학적 연구를 거친 것으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헌 이사장은 선불교의 설립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쿠키뉴스 : 『정정보도자료 '뇌교육의 날' 지정, 적절한 절차 거쳐』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0일자 종교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치아 미백에 관한 기사에서 마치 신청인과 인터뷰한 것처럼 성명과 사진이 도용되어 피해를 입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건강다이제스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6.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건강다이제스트 : 『하얗고 튼튼한 치아로~ 치아 케어법!』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호

60, 6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이 정 숙(건강다이제스트)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
대신빌딩 3층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칼럼을 두 페이지 분량으로 2009년 6월호~2010년 5월호까지 1년간 12회 연재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치과에 대한 탐방기사를 취재하여 2009년 6월호에 1회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6월호~2010년 5월호까지 매월 발생되는 건강다이제스트 50권을 증정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추리소설이 출간되면 출간 시점으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건강다이제스트에 전면 1페이지 광고를 게재하되, 1년간 12회에 걸쳐 게재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건강다이제스트에 한 페이지 전면기사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이정숙(건강다이제스트 발행인)은 「하얗고 튼튼한 치아로~ 치아 케어법!」 제하의 기사에서 치아 미백법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성명과 초상,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고, 초상 및 성명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 2〉와 같이 합의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중재부에서 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하므로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9.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2〉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칼럼을 두 페이지 분량으로 2009년 6월호~2010년 5월호까지 1년간 12회 연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치과에 대한 탐방 기사를 취재하여 2009년 6월호에 1회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6월호~2010년 5월호까지 매월 발행되는 건강다이제스트 50권을 증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추리소설이 출간되면 출간 시점으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건강다이제스트에 전면 1페이지 광고를 게재하되, 1년 간 12회에 걸쳐 게재한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건강다이제스트 : 『추리소설 쓰는 치과의사 김○○ 원장의 별난 삶』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호)
내　　용 : "치과의사는 운명처럼 선택한 길… 추리소설은 삶의 활력제입니다"
치과의사가 추리소설을 써?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정체가 궁금해진다. 수소문 끝에 밝혀진 소문의 주인공은 의정부에 소재한 샌프란시스코치과

김○○ 원장. 남다른 재능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의 저력은 과연 뭘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나선 길.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을 준다. 입을 다물 수 없는 화려한 경력 때문이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 누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 그 삶 속에서 자신의 꿈을 쫓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 원장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국 유학, 그리고 치과의사가 되다!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최고의 수재들만 갈 수 있는 학교다. 밝은 미래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을까? 미국 유학을 결정했다.

미국 유학은 김○○ 원장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학구파인 그에게는 별천지와도 같았다. 하고 싶은 학문도 많았다. 우선 위스콘신 주립대학 의예과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알라바마 주립대에 진학하여 영문학도 전공했다.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다. 곧이어 치과대학원에 진학, 치의학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후략) □

신청인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았으며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철 국 (국회의원)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각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소환의원' 5, 6명으로 늘어』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5일자 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0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0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철 국
중재대리인 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이 병 로
중재대리인 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1〉 보도문을 2009년 4월 11일 토요일자 〈문화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통상적인 1단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줄간격으로 게재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문화일보 종합 1면 중앙 상단 좌 측에 〈별지 2〉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청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따라 이 사건 중재절차가 계속되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 3〉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0.

〈별 지1〉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3월 25일자 1면 「'소환의원' 5, 6명으로 늘어」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소환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4월 10일 현재까지 소환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3〉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2009년 3월 25일자 1면 「'소환의원' 5, 6명으로 늘어」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소환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4월 10일 현재까지 소환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11일 토요일자 〈문화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통상적인 1단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줄간격으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1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사람이 K씨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짜 미네르바이다 (사과문 게재)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3.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신동아 :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호 218~237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8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8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중재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신동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대표이사 김 재 호
중재대리인 조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9년 5월호(2009. 4. 17. 발간 예정) 「말길 글길」 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말길 글길」면의 통상의 제목 크기 이상으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신동아 표지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미네르바 K는 가짜로 판명되었다. 박○○ 씨에게 사과한다"를 게재하고,

2. 목차에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의 제목 크기 활자로 "박대성씨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3. 본문에 〈별지2〉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사람이 K씨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신청을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3〉기재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3.

〈별 지1〉

알려드립니다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의 미네르바 진위논쟁 보도와 관련해 현재 이 사건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씨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3〉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본 문 :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의 미네르바 진위논쟁 보도와 관련해 현재 이 사건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씨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9년 5월호(2009. 4. 17. 발간 예정) 「말길 글길」 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말길 글길」면의 통상의 제목 크기 이상으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신동아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타업체의 친환경 농약제조 기술을 이용해 유사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7.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근무 회사 기술 빼돌린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대전중재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원 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중재대리인　유 ○ ○
결 정 사 항 : 1. 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31일자 사회면 『근무회사 기밀 빼돌린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경찰청이 농약제조 기술을 빼돌린 연구원 3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은 농자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일 뿐 검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한편 D회사의 대표 박씨는 지난 2005년 이미 D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퇴사한 문씨와 함께 동종업체 D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인터넷판 사회면 원 기사에 2009년 4월 25일 12:00까지 링크시키되, 제목 활자 크기(정정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근무회사 기밀…)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 내용을 즉시 후속보도한다.

4. 신청인은 이 건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충청투데이〉 2009년 3월 31일자 사회면 『근무회사 기밀 빼돌린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3. 중재신청사항
피신청인은 위 중재대상기사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친환경 농약제조 핵심기술을 빼돌린 연구원을 검거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검거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결 정 이 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7.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2일자 인터넷판 오피니언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유권자로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이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7.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 『"與 견제하려면 스타급 정치인 필요" "대선후보 지낸 양반이 지방은 좀…"』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A8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2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2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중림동 441
대표이사 신 상 민
중재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한국경제의 정치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서체는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정동영 출마설 전주민심은)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한국경제 2면 상단에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의 초기화면과 정치기사란(http://www.hankyung.com/news/app/newslistphpsid=010610&nid=00_6&type=1) 중앙 중단부에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0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위 보도와 같은 견해를 밝힌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는 사실,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한경 닷컴) 기사를 수정한 사실,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7.

〈별 지1〉

전주시 유○○ 씨 견해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2월 6일자 A8면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한 지역 여론을 전하면서 진북동 공인중개사 유○○ 씨가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 씨가 아닌 다른 주민의 견해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한국경제 : 『전주시 유○○ 씨 견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5일자 A6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신청인 회사가 폐업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을 뿐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에프아이투어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21.
처리결과 : 각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에프아이투어의 최후』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일자 16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2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프아이투어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신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11층
대표이사 권 대 우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 보도문을 2009년 4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라.

2.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증권 섹션 초기화면 중 「증권최신기사」 목록 최상단에 〈별지 1〉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09년 4월 3일 아시아경제 16면 「옛 여행박사 '비참한 최후'」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아시아경제 2면 좌 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고,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 주식회사 에프아이투어(舊 여행박사)가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중재절차가 계속되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 3.〉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어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2.

〈별 지1〉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지난 4월 3일 본지 〈옛 여행박사 '비참한 최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에프아이투어(옛 여행박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보도와 관련해 에프아이투어는 여행박사의 2008년 매출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여행업계의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3〉

• 보도문
〈별지 1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4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위 보도문을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증권 섹션 초기화면 중 「증권 최신기사」 목록 최상단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아시아경제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4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경찰인 신청인들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일반인을 마치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신청인 : 프레시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2.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프레시안 :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8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18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41
청 구 명 : 정정·반론보도
신 청 인 : 임 ○ ○ 외 1인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프레시안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9-29
대표이사 박 인 규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별지1] 보도문의 제목을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위 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바로 아래에 [별지1]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레시안에 [별지2] 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및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09. 5. 11. 18:48에 게시한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경찰신분인 신청인들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고성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던 윤모 씨 일행을 인근 지구대에 끌고 가는 과정에서 윤씨 등이 신청인들에게 관등성명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를 요구했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묵살하고 윤씨 일행의 손목을 꺾은 채 경찰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윤씨 일행이 관등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여 제복에 적혀 있는 이름과 계급을 밝힘과 아울러 신분증까지 제시하였기에 관등성명 제시 요구를 묵살한 바 없었고, 윤씨 일행의 임의동행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손목을 꺾는 등의 폭력행사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으며, 음주소란 행위는 체포 대상이 아니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2009. 5. 14.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액 1천만 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181)을 하였다가 2009년 5월 22일자로 조정신청을 모두 취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2009년 5월 22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보도일, 보도위치, 활자 크기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 양자 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해당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피신청인 또한 제보자의 제보에 근거해 보도한 만큼 정정보도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 바, 당 중재부는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중재대상기사가 오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정정보도하도록 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들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윤모 씨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입장 내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만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반론권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이행하도록 하되 그 문안은 양 당사자 간에 협의된 내용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에서 반론보도 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따르도록 하면서 그 게재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5.

〈별 지1〉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프레시안은 5월 11일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제하의 기사에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을 지나던 윤모 씨 일행

은 고성으로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인근 지구대에 끌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윤씨 등은 출동 경찰에게 관등성명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채 손목이 꺾여서 경찰차를 타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윤씨 등의 요청으로 관등성명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해 주었으며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폭력 사용 없이 임의동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음주소란 행위는 경범죄로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라 임의동행 대상이었기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해 왔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프레시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대전일보 :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4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강 ○ ○
중재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전일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7
대표이사 신 수 용
중재대리인 김 ○ ○

결정사항 : 1. 보도문

가. 제 목 : 목원대 교수 논문 표절 관련 추후보도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해 7월 10일자 사회면 『목원대 교수 일부논문 표절』 제하의 기사로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이 대학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들이 일부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해당교수들은 표절을 전제로 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9년 6월 5일까지 사회면 우 측 중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논문 표절…)는 중재대상기사의 중간제목(연구윤리위…)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게재한 다음날부터는 인터넷상의 중재신청대상 기사에 링크시켜 보여지게 해야 한다.

4. 신청인은 이 건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의 표시 : 1. 중재대상보도

〈대전일보〉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 제하의 기사.

2.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에 〈별지1〉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라.

3. 중재신청사항

피신청인은 위 중재대상기사에서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용,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들인 신청인들이 제자의 논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신청인들은 검찰 조사결과 표절과 관련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결정이유 : 위 당사자는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였는 바,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그 취지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4조에 의거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대전일보 : 『목원대 교수 논문표절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6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중도일보 : 『목원대 교수 3명 조사 결과 '표절' 결론』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5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대전중재3의 중재화해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중도일보 : 『목원대 교수 논문 표절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6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5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옥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대전일보 : 『목원대 교수 일부 논문 표절』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대전중재3의 중재화해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대전일보 : 『목원대 교수 논문 표절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6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대전중재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옥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6.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중도일보 : 『목원대 교수 3명 조사 결과 '표절' 결론』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대전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대전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2009대전중재3의 중재화해결정문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중도일보 : 『목원대 교수 논문 표절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6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경외과 의사인 신청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되고 다른 잡지에 실었던 글이 도용되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건강다이제스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0.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건강다이제스트 : 『덜덜덜~ 수전증 창피하다구요?』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80~8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1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1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이 정 숙 (건강다이제스트 발행인)
서울 용산구 효창동 5의 3 대신빌딩 3층
중재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건강다이제스트 2009년 8월호의 '이달의 질병' 코너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중 '덜덜덜 ~ 수전증'과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건강다이제스트 '이달의 질병' 코너 바로 앞에 한쪽 분량으로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건강다이제스트는 2009년 5월호 '이달의 질병' 코너에서 수전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신청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청인이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신청인의 도움말을 받은 것처럼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보도의 동기·목적, 피신청인 매체의 영향력, 피신청인 언론사의 재정·규모상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5.

〈별 지1〉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호 '이달의 질병' 코너에 수전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강동성심병원 강○○ 교수의 도움말과 함께 강 교수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 교수의 동의 없이 강 교수가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과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본지에서 글의 내용을 의학적 근거 없이 추가하였습니다. 강○○ 교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 교수는 본지에서 임의로 추가한 내용 중 금연, 금주, 매일 규칙적 1-2km정도 걷기운동이 수전증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킨다는 부분은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수전증의 경우 특정 질병에 의한 경우가 있어 고단백 식이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수전증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건강다이제스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호 49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시티홀’이라는 드라마에 신청인의 증명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엄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5. 29.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SBS-TV : 「시티홀」 프로그램 (2009년 4월 30일 21:55)
내 용 : 〈2009서울조정22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
서울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하 금 열
중재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SBS-TV는 2009. 4. 30. 21:55 방영한 「시티홀」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약 1초 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보도의 동기·목적, 피신청인 매체의 영향력, 피신청인 언론사의 재정·규모상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5.

중재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과거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신청인 재단 운영진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노컷뉴스 : 『복지시설 탈출한 장애인들의 '표류기' 복지금 횡령 김포 석암재단 수용 장애인, 오늘부터 천막 농성』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4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4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 홍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노컷뉴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CBS빌딩 2층
대표이사 이 정 식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2009년 7월 6일자 노컷뉴스의 초기화면 중상단에 09:00부터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2009년 6월 4일자 및 2009년 6월 14일자)의 각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 시설의 현실을 왜곡 혹은 폄하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2〉 기재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노컷뉴스는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 요양원이 장애인들을 수용한 뒤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재단이 중징계를 받고 고발조치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문제의 이사들과 운영진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히려 인간적인 대우와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켜 압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4일 석암재단에서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 온 장애인 8명이 그곳에서 뛰쳐나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가 계속되던 중 중재신청으로 전환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3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어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

〈별 지1〉

1. 보도문
• 제 목 :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6월 4일자 및 14일자 『복지시설 탈출한 장애인들의 '표류기'』 제하의 기사 등과 관련해 석암재단 측은 과거 부정을 저지른 이사진 대부분을 퇴출시키고 새로이 공임이사 7명을 더 충원하였으며, 신임원장을 사회복지 전문인으로 공개 채용하여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인터뷰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니며,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은 외출이 자유롭고 장애인들도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언제나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며, 여러 차례 부정에 대한 조사감찰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2009년 7월 6일자 노컷뉴스의 초기화면 중상단에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2009년 6월 4일자 및 2009년 6월 14일자)의 각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3〉

〈별지1 참조〉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노컷뉴스 :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서울시가 동선3구역 한옥마을 재개발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구역은 한옥마을이 아니며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됐을 뿐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동선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위원장 홍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9.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6일 1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8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8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동선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홍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6월 26일 12면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 기사의 제목에서 '서울시 재개발 포기'라고 했으나, '서울시 한옥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 항소 포기'가 정확한 표현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를 이행함에 있어 2009년 7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바로잡습니다)은 한겨레가 정정이나 반론보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 크기로 하며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사회면 좌 측 상단에 〈별지〉 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9년 6월 26일자 12면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성북구 동소문동 6가 재개발구역에 대한 법원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라고 기사제목을 뽑아 마치 동선3구역이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해될 수 있고, 서울시가 동선3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없었음에도 재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동선3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2009년 6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81)을 하였다가 2009년 7월 8일 조정 신청을 취하한 후,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7월 9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

면서 동선3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재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밝혀왔다.

그리고 신청인은 '동선3구역'은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와 '동선3구역 재개발추진위 측은 법원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전해왔다.

판단하건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의 동선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그 보도내용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전혀 찾을 수는 없으나,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라고 제목을 달아 중재대상기사는 애초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또한 이에 대한 실수를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함께 구하고 있는 '동선3구역은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와 '동선3구역 재개발추진위 측은 법원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에 대해 살펴보면, 기사제목으로 사용된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라는 표현이 동선3구역이 한옥마을로 지정되었음을 단정한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라면 '동선3구역에 한옥마을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기 십상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서울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지만 신청인 측이 이에 대해 항소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해당보도는 서울시의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졌던 것으로 신청인 측의 항소여부는 보도에 있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 및 반론 중 '서울시가 동선3구역의 재개발을 포기했다'는 부분만 정정보도하도록 결정하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정정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협의사항,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0.

〈별 지〉

• 제 목 : 동선3구역의 한옥마을과 서울시 재개발 포기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6일자 12면에 "동선3구역 한옥마을 서울시 재개발 포기" 라는 제목으로 40여 채에 달하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법원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재개발을 포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선3구역은 현재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동선3구역 재개발추진위 측은 이해당사자로서 법원 판결에 대해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중재결정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4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업체가 궤도용품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그 비리의 핵심이 신청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주)철도기술공사(사장 김 ○ ○)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0.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일요서울 : 『심층취재 3탄 - 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1일자 1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27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1,000,000원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
대표이사 김 대 영
중재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일요서울)
서울시 중구 쌍림동 쌍림빌딩 13층
대표이사 고 재 구
중재대리인 조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1.] 보도문을 2009년 7월 26일 이내에 정치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 1. 이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천1백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 2.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
1. 피신청인은 인터넷 일요서울 제790호(2009년 06월 21일 정치면 P12면)의 보도내용과 일요서울 홈페이지(인터넷)에 보도(2009년 06월 17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 주간신문의 동일한 지면에 동일기자로 하여금 [별지 2.]와 같은 중재내용의 기사를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는 (주)한국철도기술공사가 궤도용품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이 있으며, 이러한 비리의 핵심은 'L모 감사'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특정 제보자의 문건에 의해 보도한 정황이 있는 사실, 2009서울조정274, 276 사건 심리 중 피신청인이 본 건 기사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또한 본 건 기사들에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인 신청인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신청인 2. 소속 직원들이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의 법인전환 과정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바 있고,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어 사회감시·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0.

〈별 지1〉

• 제 목 : (주)철도기술공사(KRTC) 리베이트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2009년 6월 21일자 12면 「[심층취재 3탄] 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주)한국철도기술공사(이하 "KRTC")가 궤도용품 업체 Y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업체가 가진 특허를 무상으로 받아 제품설계에 반영하는 대가로 9억~20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KRTC는 업체

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것은 KRTC가 자체개발한 기술 사용 대가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이며, 특허 사용 시 관련 개발자의 상세 이력을 특허인증사항에 기록하고 있어 타업체의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사용한 바 없고, Y사와는 기술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KRTC가 2004년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당시 재단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나눠주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충당했다는 보도 관련, 임직원들이 특별상여금을 나눠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납입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경부고속철 제2단계 공사 궤도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된 것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KRTC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 지2〉

〈2009서울조정27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일요서울 : 『(주)철도기술공사(KRTC) 리베이트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6일자 정치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타 방송사 라디오 공개방송을 방청하는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촬영 및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M. net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M.net : 「스캔들」 프로그램 (2009년 6월 17일 23:00)
내 용 :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7-1
대표이사 박 광 원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2008년 7월 29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엠넷미디어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도에서 CBS 라디오 공개방송에 참석한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보도의 동기와 목적, 피신청인 매체의 영향력, 피신청인 언론사의 규모,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5.

중재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노원구의 각종 사업들이 구청장과 서울시의 마찰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구청장과의 마찰 때문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노원구 (구청장 이 노 근)
피신청인 : 노원우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28.
처리결과 : 각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노원우리신문 : 『노원구의 언론플레이(여론몰이)에 각종 특혜(?)사업 제동걸고 나선 서울시』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30일자 3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72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화해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노 원 구
구청장 이 노 근
중재대리인 함 ○ ○
피신청인 : 양 창 호 (노원우리신문 발행인)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55의 77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노원우리신문 2009년 7월 30일자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노원구의 언론플레이…)과,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각각 같게 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노원우리신문 3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해당 조정 대상기사(발행인 칼럼)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노원우리신문은 이 사건 기사에서 노원구청장과 서울시장의 협력관계의 균열 등으로 노원구의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노원구청장의 정치력 부재 등을 비판한 발행인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가 계속되던 중 중재신청으로 전환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 3〉 기재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어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별 지1〉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9년 4월 30일자 본지 3면에 『민선 4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노원구, 노원구의 언론플레이(여론몰이)에 각종 특혜(?)사업 제동걸고 나선 서울시』란 제하의 '발행인 칼럼'을 통

해 보도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는 한편 노원구의 반론이 있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정정보도문〉

첫째, 노원구가 서울시의 굵직한 사업으로 노원역 문화의 거리 조성,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개관, 서울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등을 유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세 가지 사업가운데 노원역 문화의 거리, 서울영어과학 교육센터 및 서울영어과학공원 조성 등 두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구가 기획하여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한 것이고, 사업명칭도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아니라 '서울영어과학 교육센터' 및 '서울영어과학공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둘째, 노원구의 발전이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꼴찌로 구 예산이 1300여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실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금년도 노원구 자체 재원은 1209억 원, 직원 인건비는 931억 원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셋째,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균열로 전액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노원구와의 매칭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그 예시로 동일로 보행녹도사업, 서울시립북부여성발전센터, 경남 롯데 및 성원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들어 보도하였으나 동일로 보행녹도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현재 2012년까지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매칭사업이 아닌 서울시 사업임이 확인되었고, 서울시립북부여성발전센터 증축공사 역시 이런 저런 사유로 무기연기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에 따라 조기집행 우선사업에서 제외돼 후순위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이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해 예산 반납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으나 본 사업은 국시비(50:50) 매칭사업에 의해 지난해는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를 통해 지원받아 구비 부담이 없었고 올해는 시장 방침(2008.5)에 의해 노원구 뿐 아니라 타 자치구도 사업비를 부담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문〉

국가적 사업인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물론 경전철 유치, 동부간선도로 확장,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 등도 노원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의 노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노원구는 당연히 이 지역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안에 따라 정치권 및 시·구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62만 구민의 행정 수장인 이노근 구청장의 문제제기, 발로 뛰는 강력한 추진력 등의 주도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구청장의 정치력 부재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관계에 균열이 생겨 서울시의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서울시 및 노원구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 구청장은 강남북 균형발전, 주택 재건축 연한 불균형, 공릉 55층 주상복합빌딩 건립 등 그간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신껏 이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을 대변해 당연히 목소리를 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한편 이 지역의 지도자들과도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조를 받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구청장의 업무 수행을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표현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결과적으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별 지3〉

1. 보도문

〈별지 1 참조〉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노원우리신문 2009년 7월 30일자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

목(노원구의 언론플레이…)과,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각 같게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중재화해결정 이행결과

노원우리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3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한강 및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1.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악화'』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일자 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9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9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광 헌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하라.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7월 1일자 1면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악화' 및 7월 2일자 2면 '4대강 사업뒤 한강도 수질악화' 제하의 각 기사 관련,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수량 등 수질 여건이 2006년과 같다는 전제 아래 4대강 사업 완료 예정 시점인 2012년 수질을 예 측한 것이므로 2007·2008년의 실제 측정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으며, 2007·2008년 실 측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수질 예 측치가 더 개선될 것이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를 이행함에 있어 2009년 8월 6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알려왔습니다)은 한겨레가 정정이나 반론보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 크기로 하며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1면 및 2면 아래에 〈별지1〉과 〈별지2〉기재의 보도문을 각 게재하도록 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9년 7월 1일자 1면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악화'」, 2009년 7월 2일자 2면 「4대강 사업 뒤 '한강도 수질악화'」 제하의 각 기사를 통해 '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도의 수질을 예 측한 결과 낙동강 및 한강 등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실 측한 수질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12년도의 수질예 측은

2006년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강수량 등 제반 수질여건이 2006년도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를 모의로 한 것이므로 2007년과 2008년의 실제 측정결과와는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으며, 2007년과 2008년에 실측된 수치를 기준하여 예 측시스템을 가동해 보아도 2012년의 수질이 훨씬 더 개선되는 예 측치가 나오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7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97, 2009서울조정298)을 하였다가 2009년 7월 31일자로 조정신청을 취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7. 31.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세부적인 보도문안, 보도일, 보도위치 및 보도방법 등의 구체적인 보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피신청인은 2006년의 수질여건을 기준하여 4대강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2012년의 수질을 예 측한 결과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청인 측의 수질예 측에 대해 2007년과 2008년의 실 측한 수질에 비교하면 신청인 측이 예 측한 2012년의 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허구라고 보도함으로써 해당보도를 접한 독자들로 하여금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4대강 사업 추진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신청인 측 입장이나 반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게 반론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중재부는 '수질예측 결과는 2006년의 강수량 등 제반 수질여건을 기준하여 2012년도의 수질을 예 측한 것으로 2007·2008년의 실제 측정치와 비교할 수는 없고, 2007·2008년의 실 측수치를 기준하여 2012년의 수질을 예 측해도 수질이 개선된다는 결과치가 나온다'는 취지가 실릴 수 있도록 양 당사자 간에 협의된 문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협의된 문안대로 보도하도록 결정하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합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

〈별 지1〉

• 제 목 :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 악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일자 제1면에서 「4대강 사업 뒤 '낙동강 수질 악화'」라는 제목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 측 결과와 2007년·2008년 수질 측정 자료를 단순 비교하여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예 측 지점의 절반 이상에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정체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 측 결과는 2006년 수질과 강수량 등 수질여건을 전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을 예 측한 것으로, 2007년·2008년 실제 측정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2007년·200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질이 훨씬 더 개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환경부는 "단순비교 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보도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별 지2〉

• 제 목 : 4대강 사업 뒤 '한강도 수질 악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일자 제2면 「4대강

사업 뒤 '한강도 수질 악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결과 한강 및 낙동강의 수질은 더 나빠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 낙동강과 한강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정체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수질예 측결과는 2006년 수질과 강수량 등 수질여건을 전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을 예 측한 것으로, 2007년·2008년 실제 측정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2007년·200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질이 훨씬 더 개선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

중재결정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6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한강 및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4대강 사업 뒤 '한강도 수질악화'』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일자 2면)
내 용 : 〈2009서울조정29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29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49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6일자 2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경찰청장이 헬맷을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보도 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주행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강 희 락) 외 1인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4.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안전 불감 '자전거 사고 특별시' 창원』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7일 11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0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30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5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경찰청
청장 강 희 락
2. 강희락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하라.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7월 17일자 11면에 보도된 '안전불감 자전거 사고 특별시 창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찰청장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 자전거 순찰대원들과 함께 지역순찰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었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를 문화일보 11면에 2009. 8. 21.까지 게재하되, 제목(알려왔습니다)은 문화일보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 크기로 하며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11면에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도록 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009년 7월 17일자 11면 「안전 불감 '자전거 사고 특별시' 창원」 제하의 기사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 등이 자전거 순찰대원들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면서 일반 경찰근무복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찰청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창원에서는 안전장구 착용 없이 자전거를 타다보니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경찰청장의 자전거 순찰은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도 하고 치안현장 방문 중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고,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주행 시 헬멧 착용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마치 헬멧 미착용이 불법행위인 양 보도를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수호하는 경찰청장 및 이하 경찰관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3.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08)을 하였다가 2009. 8. 14.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8. 14.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세부적인 보도문안, 보도일, 보도위치 및 보도방법 등 구체적인 보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피신청인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 순찰을 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안전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까지…"라는 부제목과 함께 "강희락 경찰청장도 … 자전거 순찰대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고 도로를 누볐다"고 보도한 후, "안전정구 착용 없이 자전거를 타다보니 4주 이상 진

단을 받은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해당기사를 접한 독자들로 하여금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 순찰을 하는 경찰청장이나 자전거 순찰대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해당보도는 경찰청장이나 경찰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은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반론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중재부는 해당보도에 대해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순찰대원들과 함께 자전거 순찰시범을 보였다'는 내용과 '경찰청장 등이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일반 근무복장으로 자전거 순찰을 한 것은 현행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반론보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양 당사자 간 협의된 문안은 이러한 취지가 십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재부는 상호 협의된 문안대로 보도하도록 결정하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반론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합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7.

〈별 지1〉

• 제 목 : 7월 17일자 경찰청장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7일자 11면에서 『안전불감 '자전거 사고 특별시' 창원』이라는 제목 및 『안전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까지…』라는 사진제목으로 강희락 경찰청장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이번 경찰청장의 자전거 순찰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주행 시 헬멧 착용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적법한 행위였으며, 치안현장 방문 중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중재결정 이행결과

문화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10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Ⅰ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KBS-1TV,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7.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KBS-1TV : 「9뉴스」 프로그램 『'페놀 박피' 의사 2명 과실치상 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 21:00) 외4건)
내 용 : 〈2009서울조정3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5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대표이사 이 병 순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8월 31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1TV 2009. 8. 3. 21:00경 방송된 「KBS 9시뉴스」 프로그램 및 23:00경 방송된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내 "'폐놀 박피' 의사 2명, 과실치상 혐의 기소" 제목의 각 기사와, KBS-2TV 2009. 8. 3. 20:00경 방송된 「KBS 8뉴스타임」 프로그램 및 24:00경 방송된 「KBS 뉴스」 프로그램 내 "폐놀 박시 시술로 얼굴에 화상" 제목의 각 기사를 통해 폐놀성분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변조된 음성 및 얼굴의 일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모두 15초 남짓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방송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 횟수 또한 자신이 동의한 수준을 벗어남으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09. 8. 11.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20,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14)을 하였다가, 2008. 8. 17. 조정심리 진행 중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 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인터뷰에 응했고 보도 당시 신청인의 음성을 충분히 변조했음은 물론 신청인 얼굴의 측면부를 방송하는 등 신청인의 초상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정신청 접수 후 담당기자 등은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인터넷 방송의 다시보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비록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얼굴 등을 철저히 가려달라고 당부하고 방송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확답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방송한 것은 자신의 동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에게 방송 횟수 및 얼굴의 공표 범위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만큼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임의로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방송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해당방송을 검토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얼굴 측면부를 방송하는 등 신청인의 초상을 보호하려 노력한 정황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는 하나, 장시간에 걸쳐 여러 각도에서 신청인의 얼굴 측면부를 방송함으로써 신청인이 십 수 년간 일해왔던 무용업계 관계자들이 신청인을 알아보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게 된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 초상보호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초상권 등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수준,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보도시간대, 시청률, 신청인의 나이·직업, 신청인 초상의 노출시간, 보도 내용, 인터넷 다시보기에서의 후속조치, 보도 후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표명,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7.

중재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Ⅱ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7.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 프로그램 『'페놀 성분' 박피술 피해실태… 피부 속았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 21:00) 외4건)

내 용 : 〈2009서울조정3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52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2,500,000원 손해배상금 지급〉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Ⅲ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mbn : 「뉴스」 프로그램 『아기피부되려다… 페놀 박피' 의사 2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 08:00) 외4건)

내 용 : 〈2009서울조정3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경제티브이(mbn)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
대표이사 장 대 환
중재대리인 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9월 4일까지 금 2,3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향후 본 건과 유사 사건을 보도할 경우 본 건 방송 중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화면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청인 관련 화면을 사용할 경우 보도 1회당 금 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이유 : 1. 이 사건 보도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경제티브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n〉 2009. 8. 3. 08:00, 10:00, 13:00, 15:00 「아기 피부 되려다… '페놀 박피' 의사 2명 기소」 제하의 보도에서 페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 시술의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인터뷰 중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뷰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조건 하에 인터뷰를 승낙한 것인데,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인터뷰 당시의 예상 방송 횟수를 초과하여 방송되어 동의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2009. 8. 11. 당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16)을 하였다가, 2008. 8. 24. 조정심리 진행 중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부의 결정에 종국적으로 따르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초상권 및 음성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및 음성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 사람이 사회통념 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기타 신체적 특징, 음성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 및 수집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나 음성을 촬영 및 수집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촬영 및 수집 과정에서 공표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위 권리들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 건 방송 인터뷰에 동의했고 보도 당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신청인의 초상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다수의 언론사들과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옷에 마이크를 꽂은 채 발언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일응 신청인이 초상 및 음성에 대한 촬영 및 수집, 공표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 검증한 본 방송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뿐 안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의 윤곽선이 노출됨과 동시에 음성은 변조되지 않은 채 13초 가량 방송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도의 대상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는 인터뷰 당시 신청인의 승낙 범위를 벗어난 공표라 할 것이고, 결국 본 건 방송이 페놀 성분의 박피 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술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본 건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방송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

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승낙 범위, 보도의 목적, 피신청인의 규모 및 사회적 위치, 신청인의 나이 및 직업, 신청인 초상 및 음성의 노출 시간, 보도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 삭제 등의 후속 조치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송으로 인하여 장래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추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4.

중재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300,000원 지급〉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Ⅳ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ＹＴＮ : 「5시뉴스」 프로그램 『'페놀 박피성형" 부작용… 전문의 2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 17:00)

내 용 : 〈2009서울조정3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54의 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1,500,000원 손해배상금 지급〉 □

경찰이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깔아뭉개고 탄압했다고 보도했으나 불법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절차였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남대문경찰서 (서장 현 재 섭)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9.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갰다"』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9일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7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372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56
청 구 명 : 반론보도
신 청 인 :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 현 재 섭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대표이사 오 연 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1] 보도문의 제목을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위 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바로 아래에 [별지1] 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도록 하되,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별지2]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메인화면 현출시간 만큼 게시하도록 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및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2009. 8. 29. 21:11「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갰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추모예배를 위해 분향소 등을 설치하려는 것을 경찰이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들을 물고 뜯고 할퀴면서 깔아뭉개기도 했으며 개처럼 끌어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시위진압 임무를 맡은 신청인은, 추모예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집회초기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추도예배가 과격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대가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하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하였던 것이라면서 2009. 9. 4.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액 1천만 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72)을 하였다가 2009년 9월 9일자로 조정신청을 모두 취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9. 9.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보도일, 보도위치, 활자 크기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용산참사 추모예배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청인 측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도 신청인 측의 입장 내지 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어 해당보도를 접한 독자들이라면 신청인이 위법하게 시위대를 진압했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높은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독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반론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반론보도하도록 하되 그 문안은 양 당사자 간에 협의된 대로 결정하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반론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1.

〈별 지1〉

• 제 목 : [반론] 용산참사 관련 기사에 대한 남대문 서 입장
• 내 용 : 본지는 지난달 29일자「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갰다"」 제하의 기

사를 통해,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추모 예배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을 보도하며 '경찰이 우리를 개처럼 끌어냈다', '경찰이 물고 뜯고 할퀴면서 깔아뭉개고 탄압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추모예배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저녁부터 구호를 제창하는 등 불법집회로 확산되어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추모예배가 시작된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 20분부터 검거 및 이동조치가 이행된 것이다. 이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의무이행이었을 뿐인데 마치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한 것처럼 보도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혀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반론] 용산참사 관련 기사에 대한 남대문 서 입장』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 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페놀 피부 박피술의 피해사례로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불완전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 Ⅴ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9경기중재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OBS-TV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OBS-TV : 「뉴스 755」 프로그램 『얼굴 박피시술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일 19:55)

내 용 : 〈2009서울중재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52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여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네이버 : 『'국민의례 거부' … 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5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 ○
피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대표이사 김 상 헌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1] 기재 보도문이 네이버(http://www.naver.com/)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기간까지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맨〉 코너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별지1] 기재 보도문의 게시를 완료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네이버(http://www.naver.com/)의 뉴스 검색 화면에서 『노동硏 노사갈등 알고보니 '국민의례 거부'』, 또는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검색되는 경우에는 [별지2]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도 나란히 검색되도록 하고 중재대상기사의 제목을 검색하고 이를 클릭했을 때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함께 표시되도록 링크를 설정하며, 검색창에서 중재대상기사가 검색될 경우 중재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이어서 게시되도록 하라.

이 유 : 1. 신청 이유 및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를 통해 2009년 8월 17일 18:33 『노동硏 노사갈등 알고보니 '국민의례 거부'』(동년 동월 18일자에서 제목을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도 노사갈등』으로 수정) 제하의 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또는 매개한 바, 해당기사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영진 측 입장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 보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를 운영하며 기사를 취재·작성·편집·전송하는 한국경제신문 및 한경닷컴(http://www.hankyoung.com/)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를 제공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매개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중재대상기사를 취재·작성·편집·전송했던 한국경제신문 및 한경닷컴은 2009년 9월 10일 진행된 위원회 조정절차(09서울조정356, 09서울조정357)를 통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하기로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반론보도하기로 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이에,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정할 수 있거나 편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사제공 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09서울조정356 및 09서울조정357 사건의 합의사항을 이행한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으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를 제공받아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매개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실익, 원 기사의 게시 방법 그리고 포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1.

〈별 지1〉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 노동硏 또 노사 갈등'
• 내 용 : 본지 8월 18일자 A13면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 갈등' 제하 기사와 관련, 'H박사는 경영진의 강요와 설득으로 8월부터 경영설명회에 참석했고 H박사의 국민의례 거부에 대해 다른 박사 노조원 10여 명도 이를 지지하는 표시로 국민의례 거부에 동참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지난 2월부터 경영설명회에 참석해 왔으며 국민의례에 참여하지 않은 박사 노조원은 3~4명'으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노조는 "연구원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은 국민의례 거부가 아니라 연구의 중립성 보장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네이버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여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 ○)
피신청인 : 드림위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드림위즈 : 『'국민의례 거부'… 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57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드림위즈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 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노조가 국민의례 거부로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지지 표시로 국민의례를 거부하여 노사갈등을 확산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노동조합
(위원장 황 ○ ○)
피신청인 : 파란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파 란 : 『'국민의례 거부'… 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35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35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57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파 란 :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노동硏 또 노사갈등』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회사의 공장이전이 관계기관과 결탁하여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경남중재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궁전콘크리트(주) (대표이사 전 ○ ○)
피신청인 : 경남연합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9. 9. 14.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경남연합일보 : 『창녕, 공해업체 웬말 허가취소하라』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31일자 1면)
내 용 : 〈2009경남조정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경남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경남중재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궁전콘크리트(주)
대표이사 전 형 진
중재대리인 정 ○ ○
피 신 청 인 : (주)제일미디어 (경남연합일보)
경남 창원시 팔용동 190
팔용종합상가 3층
대표이사 이 병 학
중재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9년 9월 21일 경남연합일보 1면 좌 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9월 9일자 조정대상 기사 부제목 "불법행위 계속 드러나 양산시 봐주기 의혹"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 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중재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연합일보에 별지의 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7.

〈별 지〉

• 제 목 : 궁전콘크리트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31일 "창녕, '공해업체 웬말 허가 취소하라" 제하의 기사 및 9월 9일 "궁전콘크리트 행정처분 받고도 가동" 제하의 기사에서 양산시로부터 공장폐쇄 명령을 받은 궁전콘크리트가 공해업체로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장가동 중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궁전콘크리트 창녕 소재 지역은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불가 지역이 아니며, 공장 설립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궁전콘크리트는 공해 유발업체가 아니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설명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양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공장을 불법으로 가동한 사실이 없으며 5월 31일까지 양산시로부터 연장가동 승인을 득한 후 가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증명원 발급과 관련 조사원이 궁전콘크리트 상무로 재직 중이어서 정상적인 발급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확인 결과 부산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발급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중재결정 이행결과

경남연합일보 : 『궁전콘크리트 관련 반론·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9월 21일자 1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Ⅰ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네이버 : 『[窓]"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자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60
청 구 명 : 정정·반론보도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피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대표이사 김 상 헌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1] 기재 보도문이 네이버(http://www.naver.com/)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

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기간까지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별지1] 기재 보도문의 게시를 완료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네이버(http://www.naver.com/)의 뉴스홈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2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라.

이 유 : 1. 신청 이유 및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를 통해 2009년 10월 16일 03:18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또는 매개한 바, 해당기사는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서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서 진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를 운영하며 기사를 취재·작성·편집·전송하는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http://www.donga.com/)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를 제공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매개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를 취재·작성·편집·전송했던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한 위원회 조정절차(09서울조정471, 09서울조정472)가 2009년 11월 2일 10:00와 10:30에 각 진행되었고, 해당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당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신청인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도록 반론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반론보도하도록 직권조정결정을 한 바 있다.(직권조정결정에 앞서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보도할 문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상호 협의된 대로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협의된 문안을 당 중재부에 전달해왔으며,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 협의된 문안대로 직권조정결정을 하게 이르렀다.)

이에,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정할 수 있거나 편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사제공 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09서울조정471 및 09서울조정472 사건에 대한 직권조정결정의 사항을 이행한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으로부터 정정 또는 반론기사를 제공받아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naver.com/)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매개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실익, 원 기사의 게시 방법 그리고 포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

〈별 지1〉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동아일보 10월 16일자 〈[窓] "사장님 나빠요"〉 기사와 관련해 U산업은 회사의 신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출국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네이버 : 『[알려왔습니다] 10월 16일자 '사장님 나빠요'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속보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Ⅱ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네이트 :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 뉴스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60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네이트 : 『[알려왔습니다] 10월 16일자 '사장님 나빠요'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최신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출국 당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우주특수산업(주)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야 후 : 『[窓] "사장님 나빠요"』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9서울조정4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9서울조정4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60의 중재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야 후 : 『[알려왔습니다] 10월 16일자 '사장님 나빠요'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6일자 속보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유해동물 포획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챙기고 운영비 등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Ⅰ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YTN : 「뉴스Q」 프로그램 『까치 포획 부풀려 보조금 챙겨』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 16:25)
내 용 : 〈2009서울조정4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2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63
청 구 명 : 추후보도
신 청 인 : 김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와이티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대표이사 배 석 규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YTN 「뉴스Q 1, 2부」 프로그램 말미에 〈별지1〉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YTN 「뉴스Q 1, 2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2〉 기재의 추후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중재대상보도와 동일한 화면과 함께 〈별지2〉 제목을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이 유 : 1. 이 사건 보도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은 2009. 3. 10. 16:25 경 YTN 「뉴스Q 1,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까치 포획 부풀려 보조금 챙겨'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이하 '협회') 부회장 54살 김모 씨 등 임직원 네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와 협회 운영비 등 1억2천만 원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 부회장인 신청인은 당시 보도된 바와 같은 혐의로 광역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된 것은 사실이나, 검찰수사 결과 신청인에게 해당 범죄의 혐의가 없음이 확인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8. 5.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서 2009년 11월 5일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492)을 하였다가 2009년 11월 11일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1월 11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전재하였던 것인데 검찰의 보강수사 결과 신청인에 대한 혐의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구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보도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밝혀왔다.

그리고 신청인 역시 자신의 범죄혐의가 무혐의로 결정났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만 하면 족하다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전해왔다.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2008. 2. 1.부터 협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보도에 언급된 '협회 부회장 54살 김모 씨'라 표현된 당사자이고,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와 협회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09. 3. 10.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당한 사실이 있어 중재대상보도는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2009년 8월 5일자로 신청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 만큼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후보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야생동물협회 김○○ 부회장이 협회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도록 하되,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YTN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추후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2.

〈별 지1〉

• 제 목 : '야생동물 포획 보조금 횡령' 관련 추후보도
• 내 용 : 지난 3월 10일 「뉴스Q」에서는 야생동식물협회 김○○ 부회장이 협회 보조비와 운영비를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8월 5일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 지1〉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YTN : 「뉴스」 프로그램 『야생동물 포획 보조금 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3일 16:50)
내 용 : 〈결정문 참조〉

신청인이 유해동물 포획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챙기고 운영비 등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Ⅱ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뉴시스 : 『국고보조 횡령·포획실적 과정…수렵단체 임직원 덜미』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0일 14:17)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64
청 구 명 : 추후보도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
대표이사 배 기 철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별지1] 보도문의 제목을 뉴시스(http://www.newsis.com/)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위 항을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바로 아래에 [별지1] 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도록 하고,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재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뉴시스(http://www.newsis.com/)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2〉 기재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24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2.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2〉 기재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은 뉴시스 2009. 3. 10. 14:17「국고보조 횡령·포획실적 과정… 수렵단체 임직원 덜미」제하의 기사를 통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참여하는 엽사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이하 '협회') 부회장 김모 씨(54)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참여할 엽사 추천의 대가로 200만 원을 수재한 수렵관리팀장 문모 씨(50)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당시 보도된 혐의로 광역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으나, 검찰수사 결과 신청인들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지난 8.월 5일자로 각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11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493)을 하였다가 2009년 11월 10일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11. 11.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는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전재하였던 것인데, 검찰의 보강수사 결과 신청인에 대한 혐의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구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보도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밝혀왔다.

그리고 신청인들 역시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만 하면 족하다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전해왔다.

판단하건대, 신청인들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와 협회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와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참여할 엽사 추천대가로 금품을 수재한 혐의로 2009년 3월 10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각각 불구속 임건당한 사실이 있어 중재대상보도는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9년 8월 5일자로 신청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 만큼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후보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야생동물협회 부회장과 수렵관리팀장이 각각 협회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도록 하되,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뉴시스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추후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2.

〈별 지1〉

• 제 목 : 국고보조금 횡령혐의 수렵단체 임직원 '무혐의'

• 내 용 : 【수원=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부회장 김모 씨(54)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아온 이 협회 수렵관리팀장 문모 씨(50)를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회 운영비 8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문씨는 인천공항에 엽사를 추천하는 대가로 회원 이모 씨(45)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3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급여와 상여금 9400만 원을 받지 못하다가 2006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8,200만 원을 그동안 밀린 급여 명목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문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뉴시스 : 『국고보조금 횡령혐의 수렵단체 임직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3일 09:05)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이 유해동물 포획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챙기고 운영비 등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Ⅲ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5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1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검찰, 동물보호협회 부회장 영장 보완 지시』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11일 19:38)

내 용 : 〈2009서울조정49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9서울조정4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64의 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연합뉴스 : 『야생동물보호협회 보조금 횡령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16일 14:50)

내 용 : 〈결정문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추진한 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운동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를 준 꼴이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6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라북도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이사장 백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뉴시스 : 『"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운동 알고보니 종교단체 좋은 일만』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18일 11:00)
내 용 : 〈2009전북조정1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전북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9전북조정17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 건 번 호 : 2009서울중재66
청 구 명 : 정정·반론보도
신 청 인 : 사단법인 전라북도재래시장
활성화운동본부
이사장 백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
대표이사 배 기 철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별지1〉 보도문의 제목을 뉴시스(http://www.newsis.com/)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하고,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뉴시스(http://www.newsis.com/)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별지2〉 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각각 같게 한다.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은 뉴시스 2009. 10. 18. 11:00「"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운동 알고보니 종교단체 좋은 일만"」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라북도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 정읍지회의 주관으로 정읍 관내 13개 교회와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이 체결됐는데, 그 내용은 운동본부 회원들이 재래시장공동상품권을 구입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 바, 교회 신도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운동본부 회원들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3%를 교회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유인물을 교회 지도자가 회원들에게 배포해 실제로 판매금액의 일부가 교회로 유입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받는 수수료는 운동본부 계좌로 입금되어 상품권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며, 상품권 구입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교회로 유입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2009. 11. 10.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액으로 2천5백만 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511)을 하였다가 2009. 11. 20.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11. 20.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신청인 단체와 피신청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보도일, 보도위치, 활자 크기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운동본부 정읍지회가 주관한 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운동이 특정 종교단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취지로 단정하여 보도한 바 있으나, 신청인 단체가 제시한 정읍지회의 상품권의 판매액은 496만 원이

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액의 3%인 148,800원으로 확인되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도 부정하지 아니한 바, 1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액수가 교회에 유입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 '교회 좋은 일만' 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더구나, 신청인 단체는 해당 수수료를 운동본부 계좌로 입금한 뒤 상품권 외상구입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 독자가 해당보도를 접한다면 신청인 단체가 자신들이 소속된 교회의 이익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 이용을 독려한 것이라고 오해할 개연성이 높은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 단체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반론보도를 허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당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하도록 의결하되 그 문안은 양 당사자 간에 협의된 대로 결정하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뉴시스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3.

〈별 지1〉

• 제 목 :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상품권 판매 앞장 재래시장 사수"

• 내 용 : 【전주=뉴시스】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운동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액이 109억 원으로 당초 올해 목표액 100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는 지난 한해 구매액 54억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이 재래시장 상품권이 불티나게 팔린 것은 상품권 판매 위탁에 나선 단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중에서도 상품권 판매를 위해 발품으로 현장을 누비며 직접 판매에 나선 전북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재래시장운동본부가 올해 들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실적은 2억 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것을 보면 적지 않은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재래시장운동본부가 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일이다. 이들 발걸음의 출발점은 전주에서 시작됐다. 전주를 시작으로 정읍과 군산에 지회를 결성한데 이어 김제와 남원, 장수 등지에도 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 재래시장운동본부는 이를 토대로 전북 각 시군 전 지역에 지회 결성과 함께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과 협약 체결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가 각 지역 교회를 연계해 자매결연을 맺어 그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구매한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재래시장 분위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 상인들의 반응이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면서 거둔 결실이라 남다르다.

이런 활동에 장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료 목사들은 "왜 이런 사업을 교회에서 나서야 하는가"라는 반응과 함께 일부에서는 "상품권 구매 수수료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하는 지도부의 명분을 전하며 끈질긴 설득을 한 결과 한 곳 두 곳에서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고무가 되고 있다.

전북도는 상품권 위탁 단체에 향후 판매망 확대를 위해 3%의 수수료를 지급토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 수수료는 전북도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에 적립돼 판매망 확대를 위해 쓰이기 대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인 셈이다. 이 수수료는 판매망 확대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비영리단체인 재래시장운동본부 임원들은 교회의 기부금과 임원들의 호주머니를 털

어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덕에 전북도가 마련한 올해 상품권과 판매 수수료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돼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다. 그나마 해당 예산도 바닥나 이제는 이마저도 쓸 돈이 없어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되레 걱정이다.

하금식 사무국장(전주 예전교회 목사)은 "한때 종교단체의 이미지 손상까지 감수하면서 활동하게 된 것이 이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픔보다 이제는 보람을 느낀다"며 "이를 계기로 골목상권이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일으키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다.

백○○ 이사장(전주 효자동 교회)도 "어떻게든 전북사람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먼저 살려야 했다"며 "그런 일념으로 운동을 한 것이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 흐뭇하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운동본부의 왕성한 활동은 전북도민이 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운동은 대형마트 반대운동과 더불어 도민들에게 지역을 살리는 출발점이란 생각을 갖게 해 지역민심을 지탱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실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해 사이 두 배나 증가된 좋은 실적을 보인 것은 상품권 위탁판매 단체의 희생적인 활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뉴시스 :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상품권 판매 앞장 "재래시장 사수"』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3일 17:10)

내 용 : 〈결정문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Ⅰ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네이버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③』 제하의 뉴스면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엔에이치엔(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분당벤처타운A동 9층
대표이사 김 상 헌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1〉 기재 보도문을 '네이버(htpp://www.naver.com/)'의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네이버' 뉴스홈의 〈e옴부즈맨〉 '정

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 코너에 〈별지1〉 기재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ISplus가 수정하여 제공한 중재대상기사를 '네이버'의 뉴스 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네이버'의 홈페이지 뉴스 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백년명가1', '백년명가2'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엔에이치엔(주)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를 통해 'ISplus(http://isplus.joins.com)'가 제공한 중재대상기사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매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중재대상기사를 게재했던 'ISplus'는 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정정보도 게재 및 중재대상기사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된 바 있다(2009서울조정69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정할 수 있거나 편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사제공 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바, 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ISplus로부터 2009서울조정692 사건의 합의사항대로 이행한 정정보도 기사 및 수정된 중재대상기사를 제공받아 이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매개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당사자들의 이익, 원 기사의 게시방법, 포털의 특성 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별 지1〉 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7일자 35면 〈100년 명가, 간장게장〉 기사 중 서백자 씨의 프로간장게장이 "1981년 개업, 28년째 간장게장을 고집하는 곳", "30년 가까이 사용하는 '접장'의 효과다", "원래 상호는 '목포집'. 목포는 서 사장의 고향이다. 1980~90년대 단골로 드나들던 프로스포츠 스타들이 '맛이 프로급'이라며 아예 이름을 바꾸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리, 서백자 씨는 4년 전에 '서백자의 프로간장게장' 매장을 오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네이버 : 『[바로잡습니다] 백년명가 - 간장게장 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속보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Ⅱ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다음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다 음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③』 제하의 각 기사 (2009년 10

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67의 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다 음 : 『[바로잡습니다] 백년명가 - 간장게장 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연예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야후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야 후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결 따로 있다③』 제하의 각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67의 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야 후 : 『[바로잡습니다] 백년명가 - 간장게장 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속보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

서○○ 씨가 운영하는 잠원동 소재 '프로간장게장'의 역사가 28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Ⅳ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프로간장게장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네이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09. 11. 2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네이트 : 『[백년명가②]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비

결 따로 있다③』 제하의 기사 (2009년 10월 7일자)

내 용 : 〈2009서울조정69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9서울조정69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중재결정문

〈2009서울중재67의 결정문 참조〉

중재결정 이행결과

네이트 : 『[바로잡습니다] 백년명가 - 간장게장 편』 제하의 기사 (2009년 11월 27일자 최신뉴스면)

내 용 : 〈결정문 참조〉 □